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

# 구급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연구책임자 : 한영수】

경원대학교



#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평가지침서 개발  
연구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4. 8. 16

연구책임자

한영수(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자

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승환(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정학과 교수)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경 원 대 학 교

## <제목 차례>

<b>[요약문]</b> .....	1
1. 구금시설 평가지침서의 개발 .....	1
2. 평가기준의 설정 .....	1
3. 평가지침서의 내용과 구성 .....	2
가.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	2
1) 시설 .....	2
2) 분류 및 누진처우 .....	3
3) 급여 및 영치 .....	3
4) 보건의료 .....	4
5)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	4
6) 외부교통 및 정보권 .....	5
7) 작업, 직업훈련, 교육 .....	5
8) 수용생활 .....	5
9) 권리구제 .....	6
10) 교정직원 .....	6
11) 소수수용자 .....	6
나. 평가방법 .....	7
 <b>&lt;서론&gt;</b> .....	 8
1. 연구목적 .....	8
2. 연구내용 .....	8
가. 연구범위 .....	8
1) 교도소와 구치소 .....	9
2) 개방구금시설과 폐쇄구금시설 .....	9
3) 특수구금시설 .....	9
나. 평가영역의 세분화작업 .....	10
다. 평가기준의 설정 .....	11
3. 연구방법 .....	12
가.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2
나. 구금시설 방문조사 .....	12
1) 예비조사 .....	12
2) 본 조사 .....	13
다. 회의 (토론) .....	13
4. 평가지침서의 구성과 편제 .....	14
가. 평가지침서의 구성 .....	14
나. 평가지침서의 편제 .....	14
5. 평가지침서 활용방안 .....	15

<b>&lt;본론&gt;</b> .....	17
<b>A. 시설</b> .....	18
A1. 전체시설 .....	18
A1.1. 구금시설의 규모 .....	18
A1.2. 수용시설의 입지 .....	19
A1.3. 구금시설의 구분수용형태 .....	20
A2. 거실 .....	23
A2.1. 독거실 .....	23
A2.2. 혼거실 .....	27
A2.3. 거실의 조건 .....	31
A2.4. 사동 .....	38
A3. 공동이용 시설 .....	42
A3.1. 운동장 .....	42
A3.2. 목욕탕 및 이발실 .....	44
A3.3. 작업장 및 교육장 .....	48
A3.4. 신입실 및 출정실 .....	51
<b>B. 분류 및 누진처우</b> .....	54
B1. 분류 .....	54
B1.1. 분류심사기구 .....	54
B1.2. 분류심사 .....	58
B1.3. 분류심사와 수용자의 권리 .....	62
B2. 누진처우 .....	65
B2.1. 진급 .....	65
B2.2. 자치활동 .....	68
B2.3.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한 누진처우 .....	71
B2.4. 제1급 수형자에 대한 누진처우 .....	73
<b>C. 급여 및 영치</b> .....	76
C1. 급여 .....	76
C1.1. 의류와 침구 .....	76
C1.2. 생활용품 .....	80
C1.3. 급식 .....	81
C2. 영치 .....	87
C2.1. 영치물품 .....	87
C2.2. 영치물품의 구매와 관리 .....	88
<b>D. 보건의료</b> .....	91
D1. 의료 인력 .....	91
D1.1. 의사 .....	91
D1.2. 치과의사 .....	93
D1.3. 정신과 의사 .....	94
D1.4. 전문의에 의한 진료 .....	95
D1.5.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 .....	96

D2. 의료(의무과)시설 .....	101
D2.1. 진료실 .....	101
D2.2. 기타 의무과 시설 .....	103
D2.3. 의료장비 .....	104
D3. 병사 .....	106
D3.1. 병사수용능력 .....	106
D3.2. 격리병실 .....	108
D3.3. 병실생활 .....	110
D4. 의료서비스 .....	114
D4.1. 의무과 연출 .....	114
D4.2. 진료의 만족도 .....	114
D4.3. 응급환자치료 .....	116
D4.4. 순회 진료 .....	117
D4.5. 병사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	119
D4.6. 치과진료대기시간 .....	120
D4.7. 약품의 처방 .....	120
D4.8. 외부진료 .....	122
D4.9. 건강검진 .....	126
D5. 위생 .....	130
D5.1. 방역 .....	130
D5.2. 방충 .....	131
D5.3. 목욕 .....	132
D5.4. 담요(모포) .....	134
D5.5. 세탁 .....	135
D6. 운동 .....	136
D6.1. 실외운동가능성 .....	136
D6.2. 운동여건 .....	137
<b>E.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b> .....	<b>140</b>
E1. 규율과 징벌 .....	140
E1.1.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고지와 교육 .....	140
E1.2. 규율에 관한 수용자의 인지도 .....	144
E1.3. 규율위반행위의 발생정도 .....	144
E1.4. 조사절차의 적정성과 신속성 .....	146
E1.5. 징벌위원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	158
E1.6. 징벌의 적정성 .....	165
E1.7. 징벌집행의 적정성 .....	171
E1.8. 징벌실의 인권침해여부 .....	178
E2. 계구 사용 .....	184
E2.1. 계구사용절차의 준수 .....	184
E2.2. 계구 사용의 적정성 .....	191
E2.3. 계구 사용시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한가 .....	208

E3. 보안장비의 사용 .....	213
E3.1. 무기의 남용 여부 .....	213
E3.2. 보안장비의 남용여부 .....	213
<b>F. 외부교통 및 정보권 .....</b>	<b>215</b>
F1. 접견 .....	215
F1.1. 접견시설의 확보정도 .....	215
F1.2. 접견권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도 및 접견권에 대한 외부안내 .....	222
F1.3. 접견횟수의 이용정도 .....	226
F1.4. 접견시간의 보장정도 .....	228
F1.5.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	231
F1.6. 접견권의 제한처분 .....	239
F2. 서신 .....	244
F2.1. 서신업무에 관한 기관내규 .....	244
F2.2. 서신권에 대한 교육과 수용자의 인지정도 .....	245
F2.3. 서신발송과 교부의 신속성 .....	246
F2.4.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의 이용정도 .....	248
F2.5. 서신권 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	252
F2.6. 서신수발권의 제한처분 .....	256
F3. 집필 .....	263
F3.1. 집필권의 이용 정도 .....	263
F3.2. 집필권 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	268
F3.3. 집필권의 제한처분 .....	272
F4. 전화 .....	274
F4.1. 전화설비의 확보정도 .....	274
F4.2. 전화사용권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도 .....	276
F4.3. 전화사용횟수의 보장정도 .....	277
F4.4. 전화통화시간의 보장 .....	280
F4.5. 수용자의 전화사용의 증진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	281
F4.6. 전화사용의 제한처분 .....	283
F5. 신문도서의 구독과 열람 .....	287
F5.1. 신문도서 열람의 활용 정도 .....	287
F5.2. 신문도서 열람권의 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	288
F5.3. 신문도서의 열람권에 대한 제한처분 .....	293
F6. TV 시청 .....	298
F6.1. TV의 설치와 관리 .....	298
F6.2. TV 방송과 수용자의 정보권 보장 .....	299
F6.3. 방송을 통한 정보권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	303
F7. 귀휴 및 개방처우 .....	307
F7.1. 귀휴에 관한 교육과 수행자의 인지 정도 .....	307
F7.2. 귀휴의 보장 정도 .....	309
F7.3. 귀휴심사위원회 심사의 적절성 .....	312

F7.4. 기타 개방처우의 활용 .....	315
F8.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	318
F8.1. 수용자 및 타인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	318
F8.2. 수용자의 정보열람권 .....	324
<b>G. 작업, 직업훈련, 교육</b> .....	326
G1. 작업 .....	326
G1.1. 작업 미지정인원 .....	326
G1.2. 작업유형과 작업조건 등 .....	327
G1.3. 작업 중 상해 .....	330
G1.4. 작업량 .....	331
G1.5. 작업상여금 .....	332
G1.6. 휴일 .....	336
G2. 직업훈련 .....	337
G2.1. 직업훈련의 유형과 효과 .....	337
G2.2. 직업훈련교사의 확보여부와 전문성 .....	339
G3. 교육(신입자교육, 정신교육, 학과교육 등) .....	342
G3.1. 신입자교육 .....	342
G3.2. 정신교육의 효과 .....	343
G3.3. 학과교육 .....	344
G3.4. 수용자인권교육 .....	347
<b>H. 수용생활</b> .....	349
H1. 종교생활 .....	349
H1.1. 종교집회(의례)의 보장 .....	349
H1.2. 종교적 활동의 보장 .....	356
H1.3.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	365
H2. 취미활동 .....	368
H2.1. 취미활동 모임의 보장 .....	368
H2.3. 수용자를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 .....	374
H3. 수용자-직원 관계와 수용자간의 관계 .....	377
H3.1. 수용자와 교도관의 관계 .....	377
H3.2. 동료수용자와의 관계 .....	378
H3.3. 신체검사 .....	380
H3.4. 거실검사 .....	382
H4. 상담 .....	384
H4.1. 교정상담 전문가 확보와 상담실적 .....	384
<b>I. 권리구제</b> .....	389
I 1. 소장면담 .....	389
I 1.1. 소장면담 제도에 관한 고지 및 교육 .....	389
I 1.2. 소장면담의 보장 .....	391
I 2. 청원 .....	395
I 2.1. 청원 제도에 관한 고지 및 교육 .....	395

I 2.2. 청원의 보장 .....	397
I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	401
I 3.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에 관한 고지 및 교육 .....	401
I 3.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보장 .....	403
I 4.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	408
I 4.1.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고지 및 교육 .....	408
I 4.2. 권리구제 절차의 보장 .....	410
<b>J. 교정직원</b> .....	415
J1. 교정인력과 업무수행 .....	415
J1.1. 교정인력 .....	415
J1.2. 업무수행 .....	418
J2. 근무여건 .....	422
J2.1. 근무시간 .....	422
J3. 후생복지 .....	424
J3.1. 사기진작책 .....	424
J3.2. 시설접근성 .....	424
J3.3. 휴가 등 .....	425
J3.4. 시설과 환경만족도 .....	425
J4. 수용자와의 관계 .....	429
J4.1. 수용자로부터의 욕설과 무시 .....	429
J4.2. 수용자로부터의 신체적 폭행 .....	429
J5. 여성교도관과 양성평등 .....	431
J5.1. 여성교도관의 업무 .....	431
J5.2. 여직원을 위한 편의시설 .....	431
J5.3. 양성평등적 근무평정 .....	432
J5.4. 모성지원책 .....	433
J5.5. 직무교육 기회 .....	434
<b>K. 소수수용자</b> .....	435
K1. 여성수용자 .....	435
K1.1. 여성수용자 작업, 직업훈련 그리고 교육 .....	435
K1.2. 여성성 유지를 위한 지원 실태 .....	438
K1.3. 여성을 위한 상담 .....	442
K1.4. 의료서비스 .....	443
K1.5. 여성수용자를 위한 가족접견 실태 .....	444
K1.6. 임신수용자와 출산 수용자를 위한 처우 .....	446
K1.7. 여사 폐쇄회로 관리 .....	449
K2. 소년수용자 .....	451
K2.1. 소년수용자의 수용 .....	451
K2.2. 소년수용자의 접견과 서신 .....	453
K2.3. 소년수용자의 운동과 건강관리 .....	454
K2.4. 소년수용자의 교육과 교회 .....	455

K3: 외국인 수용자 .....	459
K3.1. 언어사용 .....	459
K3.2. 분리수용 .....	461
K3.3. 거실생활 .....	462
K3.4. 식생활 .....	464
K3.5. 종교생활 보장 .....	465
K4. 장애수용자 .....	467
K4.1. 장애거실 수용능력 .....	467
K4.2. 장애수용자의 생활 .....	468
K4.3. 장애수용자의 운동, 목욕, 작업 .....	471
K4.4. 장애수용자의 외부교통 .....	474
K4.5.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의 처우 .....	475
<b>[부록]</b> .....	478
<b>1. 요청자료목록</b> .....	479
<b>2. 면담조사목록</b> .....	513
1) 수용자면담조사 .....	513
2) 교정직원 면담조사 .....	534
<b>3. 현장조사</b> .....	540
1) 시설분야 현장조사표 .....	540
2) 현장조사목록 .....	549
<b>4. 기록조사목록</b> .....	561
<b>5. 설문지</b> .....	571
<b>6. 평가양식 (별첨)</b>	

# [ 요약문 ]

## 1. 구금시설 평가지침서의 개발

각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을 찾고 그에 따라 적절한 권고결정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진은 개별 구금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매뉴얼 형태로 개발하였다. 특정사안에 한정된 조사의 틀을 벗어나 개별 구금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구금시설간의 특성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연구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10개 구금시설(예비조사: 4곳, 본조사: 6곳)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했다. 종합적인 평가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의 제반문제를 모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영역별로 평가항목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 조사 과정에서도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들은 삭제하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새로이 추가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또한 각 구금시설에 요청하는 자료목록도 여러 번에 걸쳐 수정하였다. 각 구금시설 방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설문조사결과도 분석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없는 설문은 삭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새로이 추가된 항목을 위하여 설문을 추가하는 식으로 설문수정작업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연구기간 동안 거의 매주 1회 이상 모여 장시간에 걸친 회의를 하였다. 어느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각 연구원이 작성한 평가지침 초안은 여러 번의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직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 2. 평가기준의 설정

평가영역별로 필요한 만큼 평가항목을 찾고, 각 평가항목마다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평가지침을 작성했다.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시정요함(1점)의 5단계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각 항목의 평가지

표의 성격에 따라 3~4단계로 축소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비추어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금시설로 발전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구금시설 관련 국제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교정관련 법령과 판례들을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구금시설 관련 국제규약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유럽형사시설규칙'을 주로 참고하였다.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실태는 보편적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는 긍정적인 답변이 90% 이상이면 탁월(5점), 70% 이상 90% 미만이면 우수(4점), 50% 이상 70% 미만이면 보통(3점), 30% 이상 50% 미만이면 미흡(2점), 30% 미만이면 시정요함(1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문 성격과 평가지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평가지침서의 내용과 구성

평가지침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영역별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해설>과 <평가지침>이 첨부되어 있다. <해설>에는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으며, <평가지침>에는 평가자가 각 구금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가.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평가영역은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본 연구진이 구분하여 놓은 것이다. 총 11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10개의 일반적인 평가영역과 1개의 특수한 평가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평가영역은 쉽게 구별되도록 A부터 K까지 영문 알파벳순으로 번호를 매겼다.

##### 1) 시설

A 영역은 '시설'부분 평가영역이다. 크게 전체시설(A1), 거실(A2), 공동이용시설(A3)로

구별하여 평가되도록 하였다.

전체시설로는 시설규모(수용능력과 수용인원), 입지(교통여건과 주변여건) 및 시설유형과 형태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500명 이내의 소규모 수용시설에 비하여 대규모 수용시설의 문제점은 이미 익히 알려진 상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급시설에서 수용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과밀수용의 문제는 수용자 인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수용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평가항목을 설정한 것이다.

거실은 수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독거실과 혼거실로 구분되며, 사동별로 관리되고 있다. 거주공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설비(난방시설, 화장실, 세면시설, 사물함, 선반, 선풍기)는 물론 채광, 환기, 조명, 방충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기 위한 거주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거실의 경우는 1.5평 이상, 혼거실의 경우 1평 이상이어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수용생활이 주로 사동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동의 구조가 적절한지, 사동에 충분한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세탁시설과 식당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공동이용시설로는 운동장, 목욕시설, 이발하는 장소, 작업장 및 교육장, 취사장, 신입실 및 출정실 등의 기본여건과 시설구조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하였다. 접견실은 외부교통 및 정보권(F영역)부분에서 다루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2) 분류 및 누진처우

B 영역은 분류(B1)와 누진처우(B2)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분류는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분류급을 어떻게 판정받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처우가 달라지고 가석방의 여부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류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개별상황이 세밀하게 배려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분류심사기구, 분류전담직원의 전문성, 분류처우(예비)회의, 분류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주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다.

4급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누진처우제도는 커다란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누진처우제도가 수형생활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진급, 자치활동, 급수에 따른 처우의 완화 등이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다.

## 3) 급여 및 영치

C 영역은 급여(C1) 및 영치(C2) 부분이다. 급여부분은 의류, 이불, 매트리스, 담요와 베개, 침구, 생활용품의 지급여부와 지급된 물품의 질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식과 부식, 자변식품, 식수, 특별급식의 문제도 다루었다. 영치부분은 영치물품의 종류와 질에 대해 살펴보고, 영치물품의 구매절차가 공정한 지 여부와 영치물품의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 4) 보건의료

D 영역은 '보건의료'부분이다. 보건의료부분은 의료인력(D1), 의료시설(D2), 병사(D3), 의료서비스(D4), 위생(D5), 운동(D6)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현재 구금시설 내 보건의료 시스템은 업무과중으로 '과부하'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아픈 수용자는 많은데 의사, 치과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치과위생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기본적 의료장비가 미비하며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병사시설은 일반사회에 비유하자면 병원의 입원실에 비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겨울에 난방이 잘된다는 점 이외에는 다른 거실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의료서비스가 좋을 수 없다. 건강보험 급여정지자로 되어 있는 수용자들은 치료비부담이 커서 외부진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수용자의 진정 중에서 보건 의료관련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은 현재의 구금시설 내 보건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5)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E 영역은 '규율과 징벌'(E1), 계구사용(E2), 보안장비의 관리와 사용(E3)으로 구성되어 있다. 징벌과 계구사용의 문제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만들기가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최근에 징벌규칙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계구사용규칙을 새로이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제정)된 규칙에 따라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새로이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징벌은 구금시설 내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구금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징벌의 부과절차가 공정하여야 하고, 징벌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규율의 신속한 고지, 규율내용에 관한 충분한 교육, 징벌혐의자에 대한 조사기간의 적정성,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징벌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징벌집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능성 배제 등의 문제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계구는 수용생활의 위험예방을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법령에 따른 계구사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특히 자살자해의 우려를 이유로 계구사용을 할 때에는 자살자해의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 6) 외부교통 및 정보권

F 영역은 평가영역 중 가장 많은 평가항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외부교통'의 문제이거나 '외부교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 및 정보권의 문제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접견(F1), 서신(F2), 집필(F3), 전화(F4), 신문도서의 구독과 열람(F5), TV시청(F6), 귀휴 및 개방처우(F7), 자기정보통제권(F8)으로 구분되어 있다. 외부교통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외부세계와의 단절과 격리로 인한 인격의 파괴 등 구금생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외부교통의 가능성을 최대한 넓히는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설정하였으며 보다 전향적 관점에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 7) 작업, 직업훈련, 교육

G 영역은 크게 작업(G1)과 직업훈련(G2) 및 교육(G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 부분은 작업기회의 보장, 작업변경의 유연성, 작업 중의 수용자안전, 적정한 작업량, 충분한 작업상여금의 지급, 휴가보장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수용자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작업상여금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작업상여금은 출소 후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량에 비례하여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직업훈련은 수용자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유형과 효과,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따라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획득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는 직종이어야 한다. 교육은 신입자교육, 정신교육, 학과교육, 인권교육 등의 순서로 평가하도록 했다.

#### 8) 수용생활

H 영역인 수용생활 부분은 크게 종교생활(H1), 취미활동(H2), 수용자와 직원과의 관계 및 수용자 상호관계(H3), 상담(H4)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종교생활

부분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수용자가 정기적인 종교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 미결수용자도 이러한 종교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독교, 불교, 카톨릭 등 3대 종교모임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는지, 소수종교의 집회장소는 있는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취미활동 부분에서는 수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취미활동이 허용되고 있는지, 취미활동을 위해 외부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해 구금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수용자와 직원과의 관계 및 수용자 상호관계' 부분에서는 수용자와 교도관과의 관계,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받았는지 여부, 동료수용자와의 공동생활로 인한 문제점 등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신체검사 및 거실 검사의 문제도 이 부분에 삽입하였다. 상담 부분은 주로 교정위원 및 교화위원의 상담 실적 및 상담효과 등이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 9) 권리구제

I 영역은 수용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장면담(I-1), 청원(I-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I-3),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I-4)로 나누어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고지 및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권리구제제도의 기회보장, 권리구제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등을 각각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 10) 교정직원

J 영역은 교정직원에 관한 부분으로서 교정직원의 업무부담의 적정성(J1), 근무여건(J2), 후생복지(J3)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과밀수용상태에서는 교정직원 1인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많다. 또한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수용자와 밀접하게 생활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이나 후생복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업무부담이 크고 근무여건이나 후생복리가 열악한 상태에서는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신경을 쓰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11) 소수수용자

K 영역은 소수수용자의 문제를 특별히 평가하는 부분이다. 소수수용자로는 남성수용자에 비하여 소수에 속하는 여성수용자(K1), 성인수용자에 비하여 소수에 속하는 소년

수용자(K2), 내국인수용자에 비하여 소수에 속하는 외국인수용자(K3),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장애수용자(K4)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여성, 소년, 외국인, 장애 수용자를 소수수용자로 따로 떼어 이들의 특수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만들었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여성성의 보장, 소년수용자의 경우 미성숙함의 보호,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언어 및 문화 풍습의 존중, 장애수용자의 경우 장애로 인한 불편함의 인정 등의 문제를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 나. 평가방법

평가자료로 제시된 평가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다. 첫째는 평가대상 구금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담당부서 직원을 직접 조사하는 현장조사가 있으며, 넷째는 수용자 또는 교도관과 직접 대면하여 질문하는 면담조사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방문조사 시에 조사관이 관련기록을 제출받아 현장에서 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 <서론>

### 1. 연구목적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구금시설 간에는 수용자처우의 내용적인 면에서, 또한 구조적인 면(예: 시설여건, 수용인원, 교정직원의 수, 교정직원의 근무환경 등)에서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여건이 좋지 못한 구금시설의 경우 수용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즉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원인은 구금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과밀수용’의 상태가 되면, ‘적정수용’의 구금시설보다 인권침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임의사가 부족한 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구금시설관련 실태조사는 대부분 특정주제에 국한하여 수행되었다. 각 개별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각 개별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을 찾고 그에 따라 적절한 권고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별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별 구금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매뉴얼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사안에 한정된 조사의 틀을 벗어나 각 개별 구금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개별 구금시설간의 특성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구금시설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다.

### 2. 연구내용

#### 가. 연구범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구금시설들은 그 유형에 따라 성격이 서로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 구금시설의 유형은 1) 교도소와 구치소, 2) 개방구금시설과 폐쇄구금시설, 3) 특수구금시설과 일반구금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금시설의 각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하고 연구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모든 구금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되, 하나의 공통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유형의 시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1) 교도소와 구치소

원칙적으로 구금시설은 교도소와 구치소로 구별되어 교도소에는 수형자,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도소에도 상당수의 미결수용자가 수용되어 있고 구치소에도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다. 따라서 양 시설을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미결수용자의 처우문제를 포함한 공통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교도소와 구치소를 다같이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평가지침서가 교도소와 구치소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각각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공통의 평가기준을 만든다.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도 특별히 문제되는 평가항목에서 언급하는 식으로 평가지침서를 작성한다. 미결수용자에 관한 문제이기에 앞서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수용자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기술하지 않고 공통의 평가기준을 정립한다.

교도소의 경우 초범위주로 수용하는 구금시설과 재범이상을 수용하는 구금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어떤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가 보다는 어떠한 시설에서 어떠한 처우를 해주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지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개방구금시설과 폐쇄구금시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전형적인 개방구금시설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천안개방교도소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단지 폐쇄구금시설과 개방구금시설 사이의 중간적 형태의 구금시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개방교도소의 문제는 '개방처우'라는 평가항목에서 어느 정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만들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폐쇄구금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침서를 개발하기로 한다.

### 3) 특수구금시설

특수구금시설에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소와 치료감호소가 있고, 균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軍)교도소가 있으며, 여성만을 수용하는 여성교도소, 소년을 위주로 수용하는 소년교도소 등이 있다.

구금시설로서 보호감호소와 치료감호소는 일반구금시설인 교도소와 구치소와는 그 법률적 근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평가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더욱이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회보호법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과제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교도소의 경우는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구금시설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이 군교도소에도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의료교도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구금시설도 일반구금시설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연구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여성교도소와 소년교도소의 경우는 보호감호소나 치료감호소와 달리 일반구금시설과 구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부분의 일반구금시설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성과 소년을 함께 수용하고 있으며, 소년교도소에도 성인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소수수용자라는 점에서 역시 소수에 속하는 외국인수용자와 장애수용자와 함께 소수수용자의 처우문제를 다루는 평가지침서의 별도의 장에서 특별히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만들기로 한다.

## 나. 평가영역의 세분화작업

구금시설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본 과제의 주요 연구목적이다. 따라서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하여 일반구금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용환경(하드웨어적 측면)과 수용자처우(소프트웨어적 측면)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별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금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10가지 평가영역을 세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고자 한다.

- 1) 시설 - 전체시설, 거실, 공동이용시설
- 2) 분류와 누진처우
- 3) 급여와 영치

- 4) 보건의료 - 의료인력, 의료시설, 병사, 의료서비스, 위생, 운동
- 5)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 규율과 징벌, 계구, 보안장비
- 6) 외부교통 및 정보권
  - 접견, 서신, 집필, 전화, TV 시청, 귀휴 및 개방처우, 자기정보통제권
- 7) 작업, 직업훈련, 교육
- 8) 수용생활 - 종교생활, 취미활동, 수용자-교도관의 상호관계, 상담
- 9) 권리구제 - 소장면담, 청원, 진정,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 10) 교정직원 - 교정인력과 업무수행, 근무여건, 후생복리,  
수용자와의 관계, 여성교도관과 양성평등

이와 같이 10가지 평가영역으로 세분하여 평가지침을 만들되, 수용자 중에서 '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국가의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에 관한 특수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수수용자'영역을 추가하여 여성수용자, 소년수용자, 외국인수용자,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처우문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다. 평가기준의 설정

평가영역별로 필요한 만큼 평가항목을 찾고, 각 평가항목마다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평가기준은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시정요함(1점)의 5단계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항목의 지표에 따라 평가단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비추어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금시설로 발전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교정관련법령과 판례들을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만들고자 한다. 구금시설관련 국제규약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최저기준규칙**으로 약칭),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하 **피구금자보호원칙**으로 약칭), 유럽형사시설규칙을 주로 참고한다. 구금시설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는 긍정적인 답변이 90% 이상이면 탁월(5점), 70% 이상 90% 미만이면 우수(4점), 50% 이상 70% 미만이면 보통(3점)으로 평가하며, 30% 이상 50% 미만이면 미흡(2점)으로, 30% 미만이면 시정요함(1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문의 성격과 평가지표에 따라 다르게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 3. 연구방법

#### 가.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구금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침서의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관련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로서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구금시설 여성수용자 실태조사',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그리고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유형별로 인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을 지침형태로 개발한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과 지침개발'이 주요한 선행연구로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지침서의 기본 틀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편찬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지침서'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지침서'의 양식을 많이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 나. 구금시설 방문조사

##### 1) 예비조사

연구초기단계에서 본 연구진은 평가영역별로 분담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작성하고, 이러한 평가항목들이 실제적으로 검증(평가)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구금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기초자료(평가대상자료)의 수집과 함께 특정 구금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조사와 수용자심층면담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유형의 구금시설 4개(여주교도소, 성동구치소, 광주교도소, 안양교도소)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하였다. 건립연도, 규모, 용도 등에서 서로 상이한 4개 구금시설은 비교 대상으로 적격이었다. 여주교도소는 2004년 1월 29일, 성동구치소는 2004년 1월 30일, 안양교도소는 2004년 2월 5일, 광주교도소는 2004년 2월 6일 각각 방문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방문조사하기 전에 해당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자료목록을 작성하여 각 구금시설에서 미리 준비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서면조사(각 구금시설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와 함께 각 시설을 방문하여 관찰조사를 실시했고, 특정 수용자와 구금시설 직원과의 심층면담을 하였다. 다만, 설문조사는 평가항목이 세부적으로 작성된 이후에 본 조사 단계에

서 행하기로 하였다. 예비조사가 끝난 후 각 연구진은 '구금시설 예비방문조사 일지'를 작성했으며, 각 구금시설에서 수집한 자료(구금시설 현황)를 엮어 자료집을 만들어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삼았다.

4개 구금시설에 대한 예비조사결과는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다듬고,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예비조사는 각 구금시설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정립하고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삭제하며 평가가 필요한 사항을 새로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현재까지 '진정'이 없었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항목들을 찾아내어 평가항목으로 삼는 작업에 큰 기여를 했다.

## 2) 본 조사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자료수집과 함께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작업을 한 다음 서로 상이한 6개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5월 7일 제주 교도소를 필두로 하여, 5월 10일 청송교도소, 5월 13일 수원구치소, 5월 25일 대구교도소, 7월 5일 김천소년교도소, 7월 8일 의정부교도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5명의 연구원과 2~3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함께 조사팀이 되어 평가영역별로 3~4개조로 나누어서 조사활동을 펼쳤다.

평가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의 제반문제를 모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영역별로 평가항목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본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들을 삭제하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각 구금시설에 요청하는 자료목록도 여러 번에 걸쳐 수정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때는 하지 않았던 설문조사도 교정직원 50여명과 수용자 120여명(남성: 100여명,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구금시설 방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설문조사결과도 분석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없는 설문은 삭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새로이 추가된 항목을 위하여 설문을 추가하는 식으로 설문수정작업도 병행하였다.

6개 구금시설 방문조사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수정하고 다듬는 작업에 매우 유용하였다. 또한 각 구금시설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 다. 회의 (토론)

본 연구진은 연구기간 동안 거의 주 1회 이상 모여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하였다. 어느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각 연구원이 작성한 평가지침 초안은 여러 번의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직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4. 평가지침서의 구성과 편제

### 가. 평가지침서의 구성

평가지침서는 기본적으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의 순으로 구성되며 <해설>과 <평가지침>이 기록되어 있다. <해설>에는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으며, <평가지침>에는 평가자가 각 구금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수록하였다. 평가방법은 크게 5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 서면조사(제출자료), 2) 현장조사, 3) 기록조사, 4) 설문조사, 5) 면담조사(수용자면담, 직원면담)이다. <평가지침>에는 해당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평가지침서의 부록으로는 평가를 하기에 앞서 해당 구금시설에 요청할 자료목록(요청자료목록)과 설문조사에 필요한 설문지(수용자, 교도관) 및 현장조사에 유용한 시설점검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각 평가항목에서 필요한 현장조사목록, 면담조사목록 및 기록조사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 나. 평가지침서의 편제

평가지침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10개의 일반적인 평가영역과 1개의 특수한 평가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평가영역은 영문 알파벳순으로 번호가 매겨졌다. A(시설)에서 J(교정직원)까지는 일반적인 평가영역이며, K(소수수용자)부분은 특별한 평가영역으로 이해하면 된다.

#### A. 시설

- B. 분류 및 누진처우
- C. 급여 및 영치
- D. 보건의료
- E.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 F. 외부교통 및 정보권
- G. 작업, 직업훈련, 교육
- H. 수용생활
  - H1. 종교생활
  - H2. 취미활동
  - H3. 수용자-교도관의 상호관계
  - H4. 상담
- I. 권리구제
- J. 교정직원
- K. 소수수용자
  - K1. 여성수용자
  - K2. 소년수용자
  - K3. 외국인수용자
  - K4. 장애수용자

## 5. 평가지침서 활용방안

구금시설 평가지침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료에 속한다. 전국 구금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각 구금시설 간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각 개별 구금시설의 전반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 개별 구금시설의 구체적 문제점의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향후 이 평가지침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는 먼저 해당 구금시설에 자료요청을 하고 최소한 1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조사방법은 3~5인 정도의 조사관이 약 3일에 걸쳐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역할분담을 잘 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조사관은 본 연구진이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본조사결과보고서, 구금시설 제출자료, 설문조사결과, 사진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 <본론>

- A. 시설
- B. 분류 및 누진처우
- C. 급여 및 영치
- D. 보건의료
- E.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 F. 외부교통 및 정보권
- G. 작업, 직업훈련, 교육
- H. 수용생활
  - H1. 종교생활
  - H2. 취미활동
  - H3. 수용자-교도관의 상호관계
  - H4. 상담
- I. 권리구제
- J. 교정직원
- K. 소수수용자
  - K1. 여성수용자
  - K2. 소년수용자
  - K3. 외국인수용자
  - K4. 장애수용자

## A. 시설

### A1. 전체시설

#### A1.1. 구급시설의 규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1.1.1. 수용정원	전체 수용정원은 적정 규모인가?	탁월(5)	전체 수용정원 500명 미만	제출자료
		우수(4)	전체 수용정원 500명 이상 750명 미만	
		보통(3)	전체 수용정원 750명 이상 1000명 미만	
		미흡(2)	전체 수용정원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	
		시정요함(1)	전체 수용정원 1500명 이상	
<p>&lt;해설&gt; 구급시설이 안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대규모의 수용인원에서 비롯된다. 대규모의 구급시설에서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기준규칙 제63조 제3항은 “폐쇄시설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적정한 수용인원으로 몇몇 나라에서 제시하는 500명을 예로 들고 있다. 더불어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수용규모가 너무 작아서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용규모는 시설별로 500명 내외가 적당할 것이다. 법무부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의 대규모 시설 위주에서 500명 정도 수용규모의 중간 규모 시설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토대로 구급시설의 수용정원을 파악하여 평가한다.</p> <p>[제출자료] A1. 구급시설의 수용정원</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1.1.2.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적정한가?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적정한가?	탁월(5)	정원의 85% 미만 수용	제출자료
		우수(4)	정원의 85% 이상 95% 미만 수용	
		보통(3)	정원의 95% 이상 105% 미만 수용	
		미흡(2)	정원의 105% 이상 115% 미만 수용	
		시정요함(1)	정원의 115% 이상 수용	
<p>&lt;해설&gt;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은 과밀수용에 있으므로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수용정원 대비 현재 수용인원의 비율을 평가하되 그 기준을 정원의 100% 수용으로 한다. 정원의 100%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과밀수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의 100% 수용이 ‘보통’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원의 95%, 더 나아가 85% 정도를 수용할 경우 분</p>				

리수용이나 추가적 신입수용에서 여유가 생겨 실질적으로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수용정원 대비 현 수용인원의 비율을 산출한다. 이때 수용인원은 자료제출시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출자료]  
 A2. 현재 수용인원  
 A3. 최근 5년간 1일 평균 수용인원

A1.2. 수용시설의 입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1.2.1. 구금시설의 교통여건	민원인이 구금시설에 접근하기 용이한가?	탁월(5)	도보로 10분 이내에 전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다.	현장조사
		우수(4)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는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보통(3)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는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미흡(2)	도보로 10분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버스는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운행한다.	
		시정요함(1)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61조는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수용자들이 가족이나 친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때 원활한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교통여건이 우수한 곳에 시설이 위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효율적인 접견교통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을 확인한다.</p> <p>[현장조사]                  직접 구금시설과 전철역 또는 버스정류장과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용도과에서 버스시간표를 확인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1.2.2. 구금시설의 주변여건	구금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였고 관련시설과도 인접한 거리에 있는가?	세부지표	a. 일반주민 거주지와 경계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지 않다.	현장조사
			b.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법원과 검찰청이 위치하고 있다.	
			c.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다.	
			d.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수형자들이 취업가능한 외부공장이 있다.	
			탁월(5)	
		우수(4)	세개 해당	
보통(3)	두개 해당			
미흡(2)	한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 사항 없음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61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수형자에게는 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유대가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용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지나친 격리감을 주는 환경은 좋지 않다. 특히 구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원과 검찰청, 병원, 외부공장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교정협회에서 제시하는 구금시설의 부지선정기준에서도 1) 법원 및 검찰청과 인접한 곳, 2) 종합병원과 1시간 거리 내에 위치한 곳, 3) 고속도로 근접위치 등 교통 상 편리한 곳, 대학 등 교육시설이 인접한 곳, 기타 환경기준에 적합한 곳 등을 이상적인 부지로 평가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통해 세부지표를 확인한다.</p> <p>[현장조사]</p> <p>a. 일반주민 거주지의 경계에서 구금시설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때 일반 주민 거주지의 경계는 상업시설 및 주택들이 연이어 밀집해 있는 곳의 끝 지점을 경계로 한다. 즉, 외따로 떨어져 있는 주택이나 공장 등은 경계로 삼지 않는다.</p> <p>b. c. 서무과에서 법원 및 검찰청, 그리고 병원과 구금시설의 거리를 조사한다.</p> <p>d. 작업과에서 외부통근 작업장의 위치와 거리를 조사한다.</p>				

### A1.3. 구금시설의 구분수용형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1.3.1. 기결수와 기결/미결 사동의 구분형태	기결수와 미결수는 구분수용되고	우수(4)	수용시설 자체가 미결수용시설과 기결수용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보통(3)	기결수와 미결수가 별도의 구역에 수용되어 있다.	

	있는가?	미흡(2)	기결수와 미결수가 동일건물 내에서 사동별로 분리되어 있다.	
		시정요함(1)	기결수와 미결수가 같은 사동 내에 거실별로 분리되어 있다.	
<p>&lt;해설&gt; 기결수와 미결수는 수용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처우의 방향도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제8조 b호와 제85조에서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구분수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2조 3항도 미결수용자를 구치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결수와 미결수가 구분수용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형태에서 어느 정도의 구분되느냐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구금시설 자체가 미결수수용시설과 기결수수용시설로 구분되어야 한다. 문제는 많은 교도소에서 미결수를 함께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형법 제3조 제1항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시설 내에서의 엄격한 구분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의 지표로 평가한다. 이 때 ‘별도의 구역’이란 출입문을 달리하는 별도의 장벽으로 분리된 구역을 말한다. 또한 별도의 구역 내에 미결수와 기결수가 이용하는 기본시설들(예컨대 운동장, 목욕탕, 접견실 등)이 각각 구분되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우수’의 지표로서 기결수 또는 미결수 전담수용시설 중에서 특히 미결수 수용시설에 관용작업을 위한 기결수가 수용되어 있는 경우는 미결수 전담수용시설로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에서 미결수 수용현황을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구분형태를 확인한다.</p> <p>[제출자료]</p> <p>A4. 연령별·성별·범죄별 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p> <p>A5. 연령별·성별·범죄혐의별 미결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p> <p>[현장조사]</p> <p>기결수와 미결수가 함께 수용된 시설의 경우 보안과에서 사동별 수용현황을 파악하고 각 사동을 현장 확인하여 구분정도를 평가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1.3.2. 남성/여성 사동의 구별형태	남성과 여성은 구분수용되고 있는가?	우수(4)	수용시설 자체가 남성수용시설과 여성수용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보통(3)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가 별도의 구역에 수용되어 있으며 모든 부대시설도 여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미흡(2)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가 별도의 건물	

			에 분리수용 되어 있고 일부 부대시설을 남성수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시정요함(1)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가 동일건물 내에서 사동별로 분리되어 있다.	

<해설> ‘최저기준규칙’은 제8조 a호에서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급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4조도 남자와 여자를 격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여성수용자를 여성전용구급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단 하나의 전담시설만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를 한 구급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적어도 별도의 구역에 수용하되, 모든 부대시설이 여성전용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부대시설이란 진료실, 접견실, 교회당, 작업장, 분류심사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시설 중 일부라도 남성수용자와 같이 사용할 경우 이동 중에 남성수용자와 마주치게 되어 이로 인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쉽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에서 여성수용자의 수용현황을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구분형태를 확인한다.

[제출자료]

A4. 연령별·성별·범죄별 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A5. 연령별·성별·범죄혐의별 미결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현장조사]

여성수용시설을 현장 조사하되, 진료실, 접견실, 교회당, 작업장, 분류심사실 등의 부대시설이 여성전용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 A2. 거실

### A2.1. 독거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1.1. 독거실과 혼거실의 수용인원 비율	독거수용의 원칙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	탁월(5)	독거수용인원이 전체수용인원의 50% 이상이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독거수용인원이 전체 수용인원의 40% 이상 50% 미만이다.	
		보통(3)	독거수용인원이 전체 수용인원의 30% 이상 40% 미만이다	
		미흡(2)	독거수용인원이 전체 수용인원의 20% 이상 30% 미만이다.	
		시정요함(1)	독거수용인원이 전체 수용인원의 20% 미만이다.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9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11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들의 독거수용 요구가 폭증하여 심지어 독거수용을 위해 고의로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수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혼거실에서의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실무적 측면을 고려하면 독거수용인원이 적어도 전체수용인원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다만 수용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전체 수용인원의 30-40%의 인원이 독거수용되는 것을 ‘보통’의 지표로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토대로 하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다.</p> <p>[제출자료] A6. 전체수용인원 중 독거수용인원의 비율(자료제출일 현재, 독거실 수용인원이 아니라 실제 독거수용 중인 인원)</p> <p>[현장조사] 독거수용인원은 실질적으로 독거수용되고 있는 인원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독거실이지만 혼거수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징별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도 독거수용인원에서 제외한다. 조사는 제출자료를 참조하되, 구금시설 방문조사 당일에 보안과에서 모든 거실의 수용인원 현황이 파악된 현황표를 요구하여 이를 토대로 파악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1.2. 독거실의 면적	독거실의	탁월(5)	2.0평 이상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적은	우수(4)	1.5평 이상 2.0평 미만	
	1인이	보통(3)	1.2평 이상 1.5평 미만	
	생활하기에	미흡(2)	0.9평 이상 1.2평 미만	
	적정한가?	시정요함(1)	0.9평 미만	
<p>&lt;해설&gt; 독거실의 면적은 1인의 수용자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일반인의 생활환경이 최대한 유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독거수용자의 거실면적의 기준은 건설교통부가 주택법에 따라 규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소주거면적은 3.6평이다. 이는 방 1개를 포함한 총 주거면적을 의미하므로 구급시설의 경우 거실면적만으로 평가하면 2.0평 이상의 면적을 ‘탁월’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시설기준규칙은 일반 독거실의 경우 4.62㎡, 즉 1.4평을 기준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엄정독거실은 3.63㎡(1.1평), 징벌실은 2.97㎡(0.9평)을 기준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거실의 면적이 1.2평에서 1.5평 미만인 것을 ‘보통’의 지표로 평가하며, 0.9평을 넘지 않을 경우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3월 10일 권고는 징벌실의 면적을 최소한 1인당 0.9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거실면적만 기준이 되므로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에서 독거실의 종류별 개수를 확인한 후 독거실의 종류별(면적별)로 한 곳씩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p> <p>[제출자료] A7. 모든 독거실의 종류별 개수와 각각의 면적</p> <p>[현장조사]</p> <p>위 제출자료에 제시된 독거실의 종류별로 모두 실측하여 면적을 기록한다. 실측할 때는 화장실면적을 제외하고 측정하여 도면을 기재한다. 거실 내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그리고 독거실의 규모가 각각 다를 경우 평균값이 아닌 가장 작은 면적의 거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1.3. 독거실의 기본설비	독거실의 기본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세부지표	a. TV를 갖추고 있다. b. 선풍기를 갖추고 있다. c. 식탁 겸 독서대를 갖추고 있다. d. 벽장형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다. e. 침구보관용 선반이 설치되어 있다.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해설> 독거실에는 독거수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최저기준 제60조의 ‘유사성의 원칙’이 요구하는 바이다. 미국교정협회에서 제시하는 독거실의 기본시설은 욕실, 침대, 책상, 의자, 책꽂이, 옷장이다. 행정법시행령 제77조는 제1항에서 “소장은 거실 또는 작업장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거실·작업장에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3조는 “수형자의 거실에는 책상·서화·화분·거울·시계·달력 및 텔레비전 등의 비품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거실의 기본시설에 관한 독립적 규정은 없고 다만 ‘시설 주요부분 설계기준’에서 이불함과 관물함, 그리고 TV, 선풍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일부 구금시설에서 독거실의 경우 혼거실과 달리 TV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선풍기가 부족할 경우 독거실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독거수용자들이 개인용품들을 거실바닥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비좁은 거실면적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출입문 문턱에 도서 등을 쌓아 두어 최대한 거실공간을 확보하려는 수용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용품을 보관하는 사물함 및 침구를 보관하는 선반 등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독거실 내의 기본시설을 확인한다.

[현장조사] 독거실의 종류별로 방문하여 독거실 내의 기본시설을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1.4. 독거실의 화장실 구조	독거실의 화장실 구조는 적정한가?	세부지표	a. 변기는 좌변기로 설치되어 있다. b. 거실출입문에서 볼 때 바닥으로부터 90cm 이상의 시각적 차단시설이 되어 있다. c. 화장실 출입문이 있고 화장실이 거실과 분리되어 후각적 차단시설이 되어 있다.	현장조사
		우수(4)	모든 독거실의 화장실이 a. b. c.에 해당	
		보통(3)	일부 독거실이 a. b. c.에 해당하고 나머지 독거실이 a. b.에 해당, 또는 모든 독거실이 a. b.에 해당	
		미흡(2)	일부 독거실이 a. b.에 해당하고 나머지 독거실이 a. 또는 b.에 해당, 또는 모든	

		독거실이 a. 또는 b.에 해당	
	시정요함(1)	일부 독거실이 a. b. c. 모두 해당 없음	
<p>&lt;해설&gt; 거실 내의 화장실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수불가결의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구급시설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화장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독거실의 경우는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라 해서 차폐시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혼자 생활하더라도 용변을 볼 때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므로 외부의 시각으로부터 차단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계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90cm 이상의 차단막이나 차단시설을 두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악취가 거실에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거실이라 하더라도 출입문을 설치하여 거실공간과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각적, 후각적 차단시설을 ‘차폐시설’로 지칭한다. 그리고 변기는 수용자의 이용편리성과 악취예방을 위해 수세식 좌변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최저기준규칙 제60조가 규정하는 ‘유사성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며, 더불어 동 규칙 제12조는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급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는 구급의 목적과 교정사고 예방 및 시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수용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징벌실 등의 화장실에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003.2.10.자 02직인1089결정). 법무부의 시설기준규칙에는 화장실에 대해 양변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차폐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칸막이의 창대높이’를 바닥으로부터 90cm 이상, ‘외부와 면한 창대높이’는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변기’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나 ‘좌변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칸막이의 창대높이’에서 ‘창대높이’란 창틀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시각적, 후각적 차단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게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통해 독거실의 종류별로 화장실의 구조를 확인한다.</p> <p>[현장조사] 독거실을 종류별로 방문하여 화장실 구조를 확인하되, 화장실이 거실과 구별되지 않고 거실 내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b.와 c.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1.5. 독거실의 세면시설	독거실의 세면시설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세부지표	a. 화장실 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면대를 설치함 b. 화장실 내에 간이 세면대를 설치하거나 거실 내에 세면대 설치	현장조사

있는가?		c. 화장실에서 별도의 세면대 없이 세면하고 있음	
	우수(4)	모든 독거실이 a.에 해당	
	보통(3)	일부 독거실이 a.에 나머지 독거실이 b.에 해당, 또는 모든 독거실이 b.에 해당	
	미흡(2)	일부 독거실이 b.에 나머지 독거실이 c.에 해당	
	시정요함(1)	모든 독거실이 c.에 해당	

<해설> 세면시설도 거실 내의 필수불가결의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별도의 세면시설 없이 화장실에서 세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무시설기준규칙의 화장실 설계기준에 의하면 화장실에 변기와 세면기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세면기 없이 화장실에서 세면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세면대를 설치할 때에도 일반사회에서 이용하는 세면대와 유사한 높이와 크기를 갖춘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을 고려하여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구금시설에서 화장실에 간이 세면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흡하거나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간이 세면대라 함은 높이가 낮고 물받이 크기가 작은 세면대가 화장실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규정에 따라 세면기를 설치한 것이지만 실제 이용에 있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어 화장실의 공간만 더 좁히고 있을 뿐이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독거실의 세면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독거실의 종류별로 화장실을 조사하여 세면시설의 상태를 파악한다.

A2.2. 혼거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2.1. 혼거실의 면적	수용자	탁월(5)	1인당 평균 1.5평 이상	제출자료 현장조사
	1인당 평균 거실면적은 확보되어 있는가?	우수(4)	1인당 평균 1.0평 이상 1.5평 미만	
		보통(3)	1인당 평균 0.75평 이상 1.0평 미만	
		미흡(2)	1인당 평균 0.5평 이상 0.75평 미만	
		시정요함(1)	1인당 평균 0.5평 미만	

<해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혼거실의 1인당 평균면적을 0.75평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1인당 0.5평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적어도 1인당 1평은 보장되어야 한다. 거실에 취침공간 이외에 각종 가구와 기본설비를 들여놓을 공간이 함께 필요하므로 1인당 0.75평으로 할 경우 취침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1인당 1평을 권장기

준으로 하되 이 면적은 화장실을 제외한 면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에서 혼거실의 종류별(면적별) 개수를 확인한 후 현장조사에서 혼거실의 면적을 종류별로 실측한다.

[제출자료] A8. 모든 혼거실의 종류별 면적과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현장조사]

위 제출자료에 제시된 거실의 종류별로 모두 실측하여 면적을 기록한다. 실측할 때는 화장실면적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실측한 결과에 따른 총 면적을 자료제출 당시의 수용인원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2.2. 혼거실의 정원	혼거실의 정원책정은 적정한가?	세부지표	a. 모든 혼거실에 정원이 책정되어 있고 혼거실 입구에 정원이 표시되어 있다. b. 혼거실 정원은 1인당 평균거실면적에 부합하도록 책정되어 있다. c. 혼거실 정원은 3인 이상 8인 이내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d. 책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된 거실이 없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행형법시행령 제37조 “혼거실에는 그 면적·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 수용표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구금시설은 이 규정에 따라 거실 입구에 수용표를 부착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원의 개념이 유동적인 경우도 있다. 즉 특정거실의 정원이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혼거실의 정원을 책정하고 명기하는 것은 과밀수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즉, 교정당국과 수용자가 혼거실의 정원을 인식하고 있을 때와 혼거실의 정원이 수시로 변동될 때와는 과밀수용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a. 특정거실의 정원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b. 그때의 정원은 1인당 평균 거실면적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 또한 c. 혼거실의 정원은 최소 3인 이상 최대 8명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행형법시행령 제33조는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거실에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2인이 수용된 상태에서 다툼이 생겼을 경우 이를 만류, 조정할 제3자가 필요하기</p>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구급시설에서 독거실에 2인의 수용자를 혼거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예외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혼거실 수용정원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화장실의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9인 초과 혼거실에는 대변기를 2개 이상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9인 초과, 또는 9인 이상의 수용자가 한꺼번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화장실 사용 등에 있어 서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혼거실의 최대 수용인원은 8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많은 수용자가 한 거실에서 생활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에서 혼거실의 정원책정 상황을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제출자료] A8. 모든 혼거실의 종류별 면적과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현장조사]  
혼거실의 정원책정 여부와 정원책정의 적정성, 정원의 준수여부 등을 혼거실별로 점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2.3. 혼거실의 화장실 구조	혼거실의 화장실 구조는 적정한가?	세부지표	a. 화장실과 세면실이 분리되어 있다. b. 변기는 좌변기로 설치되어 있다. c. 거실출입문에서 볼 때 바닥으로부터 90cm 이상의 시각적 차단시설이 되어 있다. d. 화장실 출입문이 있고 화장실이 거실과 분리되어 후각적 차단시설이 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평가의 근거와 내용은 독거실의 화장실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다. 다만 혼거실의 경우 여러 사람이 생활하므로 세면실과 분리함으로써 화장실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으며, 차폐시설의 중요성은 독거실에서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통해 혼거실의 화장실 구조를 파악하되, 혼거실 중 일부에서라도 위의 시설 중 하나가 없으면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p> <p>[현장조사] 혼거실의 종류별로 화장실의 구조를 확인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2.4. 혼거실의 세면시설	혼거실의 세면시설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화장실과 별개의 세면실을 갖추고 세면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면대를 설치함 b. 화장실 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면대를 설치함 c. 화장실 내에 간이 세면대를 설치함 d. 화장실에서 별도의 세면대 없이 세면하고 있음	현장조사
		탁월(5)	모든 혼거실이 a.에 해당	
		우수(4)	일부 혼거실이 a.에, 나머지 혼거실이 b.에 해당, 또는 모든 혼거실이 b.에 해당	
		보통(3)	일부 혼거실이 b.에, 나머지 혼거실이 c.에 해당, 또는 모든 혼거실이 c.에 해당	
		미흡(2)	일부 혼거실이 c.에, 나머지 혼거실이 d.에 해당	
		시정요함(1)	모든 혼거실이 d.에 해당	
<p>&lt;해설&gt; 평가의 근거와 내용은 독거실의 세면시설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혼거실의 경우 여러 사람이 생활하므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과 별개의 세면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다.</p> <p>[현장조사] 혼거실의 종류별로 세면시설의 구조를 파악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2.5. 혼거실의 기본설비	혼거실의 기본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세부지표	a. TV를 갖추고 있다. b. 선풍기를 갖추고 있다. c. 혼거실 정원에 상응하는 수의 식탁 겸 독서대를 갖추고 있다. d. 혼거실 정원에 일치하는 수의 벽장형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다. e. 침구보관용 선반이 설치되어 있다.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해설> 평가의 근거와 내용은 독거실의 기본시설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식탁 또는 독서대로 사용하는 테이블의 경우 혼거실의 정원에 상응하는 수를 갖추어야 하며, 사물함의 경우에도 혼거실 정원에 상응하는 수의 사물함을 갖추되 그 형태는 시정가능한 문이 있는 벽장형이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물함은 주머니형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개인사물을 보관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하되, 혼거실 중 일부라도 위 시설이 없으면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현장조사] 혼거실을 종류별로 각각 방문하여 혼거실 내의 기본시설을 확인한다.

**A2.3. 거실의 조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1. 거실의 난방형태	거실난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탁월(5)	바닥 온돌난방 및 복도 라디에이터	현장조사
		우수(4)	바닥 온돌난방	
		보통(3)	거실 라디에이터 난방	
		미흡(2)	복도 라디에이터 난방	
		시정요함(1)	난방 없음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시설기준규칙의 ‘시설 주요부분 설계기준’에 의하면 난방방식은 “바닥난방 방식에 비닐시트 바닥재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거실의 난방형태는 원칙적으로 바닥 온돌난방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복도에도 방열기(라디에이터) 설치를 통해 난방을 함으로써 사동근무자의 근무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현재 많은 시설에서 복도에 방열기를 설치하는 형태의 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거실에까지 충분한 난방효과가 미치지 않고 단열이 잘 안된 시설의 경우 열손실로 인한 에너지낭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방형태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현장조사] 사동과 거실별로 방문하여 난방형태를 파악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2. 거실의 난방상황	평균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수용자들이 평소 난방에 불만이 없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대답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대답이 10% 이상 2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대답이 20% 이상 3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대답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대답이 50%이상	
<p>&lt;해설&gt; 난방설비와 더불어 난방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난방의 실제상황은 수용자가 느끼는 체감정도에 의해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A1. 겨울철 거실의 난방상태는 지내기에 어떻습니까?                  ① 매우 춥다      ② 춥다      ③ 따뜻하다      ④ 매우 따뜻하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3. 거실창문 의 재질	거실의 창문은 적합한 재료로 시설되었 는가?	탁월(5)	모든 창문이 강화유리 창문, 모든 창틀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현장조사
		우수(4)	강화유리 및 아크릴 창문, 모든 창틀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보통(3)	모든 창문이 아크릴 창문, 모든 창틀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미흡(2)	아크릴 창문 및 비닐 창문 / 창틀은 일부 플라스틱·알루미늄, 일부 목재	
		시정요함(1)	비닐 창문 및 창문 폐쇄, 창틀은 목재	
<p>&lt;해설&gt; 거실 창호의 재료는 거실의 채광과 단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의 ‘주요부분 설계기준’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계 창틀에 강화유리 5mm를 끼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에 면한 창문에는 강화유리 이중창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구급시설은 사고예방과 비용을 고려하여 아크릴로 창호재료를 삼고 있다. 하지만 아크릴 창문은 강화유리 창문에 비해 시야가 투명하지 못해 피구급자들에게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단열기능이 유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닐을 창호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피구급자들의 시야를 현저히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단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은 법무시설</p>				

기준규칙에 따라 거실창문의 창호재료를 강화유리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구금시설에서 아직도 여전히 낡은 목재창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틀끼리 아귀가 맞지 않아 바람막이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창틀을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맞게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창틀로 교체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현장조사]  
거실창문과 사동복도의 창틀 및 창호의 재료를 가능한 한 모두 살펴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4. 거실창문의 규격	거실의 창문은 채광과 환기를 위해 필요한 규격을 갖추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외부에 면한 창문면적이 거실바닥면적의 1/10이상이다. b. 복도에 면한 창문의 면적이 거실바닥면적의 1/10이상이다. c. 창문의 개폐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자연채광과 신선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는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및 건강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 위의 A2.3.1에 명기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 이외에 최저기준규칙 제11조 a항은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해야 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채광과 환기를 위해 창문은 일정 규격 이상의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거실창문의 크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복도에 면한 거실창문의 높이를 복도바닥으로부터 90cm이하, 외부에 면한 거실창문은 수용거실의 바닥으로부터 90cm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복도에 면한 거실창문의 높이를 90cm이하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창문의 면적이 넓어져 채광과 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면적의 기준은 거실바닥면적의 1/10이상이어야 하고 통풍을 위한 창문면적의 기준은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의 독거실 창문의 자연채광과 통풍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있다(2004.4.17.자 03진인5167 결정).</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통해 창문규격을 확인한다.</p>				

[현장조사] 거실의 종류별로 외부에 면한 창문면적, 복도에 면한 창문의 면적, 창문개폐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5. 거실의 채광	거실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 주간에 인공조명 없이도 독서가 가능한가?	탁월(5)	①과 ②의 대답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대답이 10%이상 2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대답이 20%이상 3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대답이 30%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대답이 50%이상	

<해설> 자연채광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실창문의 크기가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한편, 수용자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통해서도 평가하여야 한다. 거실창문의 크기가 적절한 규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방향,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을 방해하는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채광의 정도는 달라지는데 현장조사를 통해 이 모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용자들의 체감정도를 통해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설문조사]

A2. 귀하의 거실은 낮에 실내등을 켜지 않고도 책을 읽기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 ① 매우 불편하다
- ② 불편한 편이다
- ③ 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6. 거실의 환기	거실은 충분히 환기가 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대답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대답이 10% 이상 2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대답이 20% 이상 3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대답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대답이 50% 이상	

<해설> 거실의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수용자들의 체감정도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창문을 규격대로 갖추었다 하더라도 평소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평가지침>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설문조사]

A3. 귀하의 거실은 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① 환기가 전혀 안 된다                      ② 환기가 잘 안되는 편이다  
 ③ 환기가 잘 되는 편이다                    ④ 환기가 매우 잘 되고 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7. 거실의 조명	거실의 조명은 충분하여 야간의 독서 등에 지장이 없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대답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대답이 10%이상 2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대답이 20%이상 3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대답이 30%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대답이 50% 이상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11조 b호는 “인공조명은 피구급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거실 조명시설로 ‘노출 천장 직부등(형광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취침전의 조도가 300LUX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용자들이 수용거실의 조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느끼고, 수감생활로 인해 시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실조명이 충분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조명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즉 기계적 조사를 위해서는 야간에 조도측정기구를 갖추고 방문하여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체감하는 조명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평가지침>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설문조사]

A4. 독서나 편지쓰기 등을 고려할 때 야간의 거실조명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어둡다    ② 어두운 편이다    ③ 밝은 편이다    ④ 충분히 밝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8. 거실의	취침 시에는	우수(4)	조도조절시설이 되어 있고, 설문에서 ③의 응답이 70% 이상	현장조사 설문조사

취침조명	조명을 조절하여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가?	보통(3)	조도조절시설이 되어 있고, 설문에서 ③의 응답이 50% 이상	
		미흡	조도조절시설이 되어 있지만, 설문에서 ②의 응답이 50% 이상	
		시정요함(1)	조도조절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설문에서 ①의 응답이 50% 이상	
<p>&lt;해설&gt; 수면권은 인간의 생존과 건강, 인격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취침시간에도 ‘일몰 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조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 대해 수용자가 취침할 때 조도를 낮추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일선 교정기관이 조명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용자의 수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2004.1.16.자 03진인1067(병합 5053)결정). 법무시설기준규칙은 취침 후 거실의 조도를 60LUX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침시간에 조도를 낮추지 않는 것은 이러한 권고와 규칙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인 수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취침시간에 조도를 낮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시설을 현장조사하여 조도를 낮추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한 시설의 예로는 별도로 설치된 낮은 조도의 취침등이나 조도를 낮추는 기계장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야간취침조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병행하도록 한다.</p> <p>[현장조사] 거실 종류별로 취침등이나 조도조절장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p> <p>[설문조사]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A5. 귀하의 거실은 밤에 잘 때 조명을 낮추어 잠자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까? ① 취침조명을 실시하지 않는다. ② 취침조명을 실시하지만 여전히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 ③ 취침조명을 실시하여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있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9. 거실의 방충망 설비	거실은 방충망 설비가 되어 있어 해충으로부터	세부지표	a. 모든 거실과 복도의 바깥쪽 창문에 방충망이 설비되어 있다. b. 설치된 방충망은 망가진 곳이 없다. c. 방충망은 개폐식으로 설치되어	현장조사

터 보호되고 있는가?		있다.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a. b.에 해당	
	미흡(2)	a.에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여름철 거실 내에 파리, 모기 등이 늘어날 경우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충방제를 위한 방충망이 거실 외부창문에 설치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방충망의 설비상태를 파악한다.

[현장조사]  
거실을 조사할 때 방충망 설비여부를 조사하며, 용도과에서 전체 시설의 방충망 설비 현황을 조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3.10. 거실 내 화장실의 위생상태 유지되고 있는가?	거실 내 화장실의 위생상태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화장실의 변기 주변 바닥과 벽면이 배수에 지장 없도록 잘 정돈되어 있다. b. 화장실은 채광과 환기가 잘되고 있다. c. 화장실의 악취가 거실로 확산되지 않는다.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14조는 “피구급자가 항상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급자가 사용하는 시설 중에서 거실 내의 화장실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시설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급 시설에서 거실 내 화장실은 작업장이나 기타 거실 외부의 화장실에 비해 위생상태가 열악한 형편이다. 이렇게 화장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은 거실 내 악취와 습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화장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평가한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거실 내 화장실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현장조사]  
a.의 경우 변기 주변 바닥과 벽면을 타일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닥과 벽면에 패인 곳이 없고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을 경우 긍정의 평가를 내린다. 화장실 바닥

에 수용자들의 세면용구 등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부정의 평가를 내린다.

b.의 경우 화장실이 거실 외부를 향해 위치하지 않고 거실 내에 폐쇄적 구조로 위치하여 채광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부정의 평가를 내린다.

c.의 경우 조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더불어 수용자들에게 현장에서 질문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A2.4. 사동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4.1. 사동의 구조	사동의 구조는 적절한가?	우수(4)	사동의 수용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고 사동은 단방식 구조이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보통(3)	사동의 수용인원이 80명을 넘지 않고 사동은 단방식 구조이다.	
		미흡(2)	사동의 수용인원은 50명을 넘지 않지만 사동의 구조가 복방식이다.	
		시정요함(1)	사동의 수용인원이 80명을 넘거나 사동의 구조가 복방식이다.	

<해설> 사동은 구급시설 내에서 처우가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단위시설(Unit)이 된다. 사동별로 목욕, 운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동별로 수용자를 분류하여 수용한다. 그러므로 한 사동의 수용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 효율적인 관리와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 사동의 수용인원은 50명 정도가 적당하다. 호주의 교정시설 기준은 한 사동에 50명 이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경미보안 시설의 경우 8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사동별 수용인원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사동의 구조가 복방식일 경우 거실이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어 채광과 환기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란스러움으로 인해 수용자의 생활이나 교정직원의 근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복방식 또는 복수 사동이란 사동의 복도 양쪽에 수용거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방식 또는 단수사동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평가한다. 평가할 때에는 복방식과 단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구급시설은 복방식으로 평가하고, 사동의 수용인원은 평균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장 많은 수용인원이 있는 사동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자료] A9. 사동별 거실 수와 수용인원

[현장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단방식인지 복방식인지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4.2. 사동의 샤워실	사동에 샤워실이 갖추어져 이용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사동별로 샤워실을 갖추고 있다. b. 샤워실의 면적은 3평 이상이다. c. 샤워실은 매일 이용되고 있다. d. 샤워실은 주로 하절기에만 이용한다. e. 샤워실에 온수가 보급된다.	현장조사 면담조사
		탁월(5)	a. b. c. e.에 모두 해당	
		우수(4)	a. b. c.에 해당	
		보통(3)	a. b. d. / 또는 a. c.에 해당	
		미흡(2)	a. b. / 또는 a. d.에만 해당	
		시정요함(1)	a.에만 해당하거나 모두 해당 없음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13조는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급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8조도 최저기준규칙과 거의 유사하지만 “가능한 경우에 합리적인 횟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사동별로 목욕실과 탈의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목욕실의 면적은 3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때의 목욕실은 ‘각층 감시실마다 1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무직원을 위한 목욕실인지 수용자를 위한 목욕실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직원을 위한 목욕실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용자를 위한 목욕실로 이해할 수 있다. 신축된 여주교도소의 경우는 사동별로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구급시설에서 수용자들이 화장실에서 바가지 등을 이용해 샤워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작업장에 취업하는 수용자는 작업장에 간이 샤워시설이 있어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미지정 수용자들과 미결수들은 하루 종일 거실에 머물고 있으므로 샤워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샤워는 최저기준규칙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생상 꼭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법무시설기준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동별로 샤워실이 마련되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통해 샤워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샤워실의 이용현황을 평가한다.</p> <p>[현장조사] 사동별로 샤워실의 설치여부와 면적을 조사한다.</p> <p>[면담조사] 수용자 면담을 통해 샤워실의 이용현황(세부지표 a, b, c, d, e 참조)을 조사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4.3. 사동의 세탁시설	수용자들이 별도의 세탁실 및 건조실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수(4)	사동별로 별도의 세탁실과 건조시설이 있어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	현장조사 면담조사
		보통(3)	별도의 세탁실은 없지만 샤워실 등에서 세탁하고 탈수기를 이용해 건조하고 있다.	
		미흡(2)	사동별로 설치된 세탁실/건조실이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	
		시정요함(1)	별도의 세탁시설은 없고 화장실에서 세탁하고 거실에서 건조시키고 있다.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17조 제2항은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개인의 의류를 자비로 외부 세탁소 등에 의뢰하여 세탁할 수 있지만 비용이 적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횟수도 주 1-2회에 불과하여 대부분 시설 내에서 스스로 세탁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의 세탁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세탁한 후 거실 내에서 건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는 수용자들에게 매우 불편하여 수용자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거실의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최저기준규칙 제60조에 따라 수용자들의 생활이 일반인의 생활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탁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세면시설과는 달리 세탁은 거실별로 돌아가면서 세탁실을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사동에 세탁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통해 세탁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세탁실의 이용현황을 평가한다.</p> <p>[현장조사] 사동별로 세탁실의 설치여부와 시설을 조사한다.</p> <p>[면담조사] 수용자 면담을 통해 세탁실의 이용현황(세탁시간, 세탁장소, 세탁방법 등)을 조사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2.4.4. 사동의 식당시설	수용자들이 별도의 식당시설 에서 식사하고 있는가?	우수(4)	사동별로 별도의 식당시설이 있고 모든 수용자들이 매 식사 때마다 이용하고 있다.	현장조사 면담조사
		보통(3)	사동별로 별도의 식당시설이 있고 출역 나가는 수용자들이 아침, 저녁식사에 이용하고 있다.	
		미흡(2)	사동별로 별도의 식당시설이 있지만 잘 이용하지 않거나 식당시설이 없어 거실 내에서 식탁을 이용하여 식사한다.	
		시정요함(1)	별도의 식당시설은 물론 거실 내의	

		식탁도 없다.	
<p>&lt;해설&gt;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수용자들은 작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아침과 저녁을 거실 내에서, 점심은 작업장에서 식사하고 있고, 미지정 수용자와 미결수용자는 모든 식사를 거실 내에서 하고 있다. 최근에 건축된 여주교도소의 경우는 사동입구에 간이식당이 있어 수용자들이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뒤편의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출역수들만 아침과 저녁에 사동의 식당을 이용하고 미지정 수용자들은 여전히 거실 내에서 식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거실 내에서 식사할 때에는 거실 출입문의 좁은 배식구로 음식이 배급되고 식사 후에는 화장실에서 식기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생존의 최소조건인 급식의 과정에서 인간적 모멸감을 겪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부는 거실 내에 싱크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좁은 거실 내에 싱크대를 들여 놓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구금시설의 식당시설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미국의 교정협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면 병동이나 격리사동을 제외하고는 중앙식당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중앙식당의 면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저기준규칙 제60조의 유사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이 거실이 아닌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통해 사동별 식당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식당의 이용 현황을 평가한다.</p> <p>[현장조사]  사동별로 식당의 설치여부와 시설을 조사한다.</p> <p>[면담조사]  수용자 면담을 통해 식당의 이용현황(식당장소, 별도의 식당시설 유무 등)을 조사한다.</p>			

### A3. 공동이용 시설

#### A3.1. 운동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1.1. 기결수 운동장	기결수 운동장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실외운동장외에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다. b. 수용인원에 비례한 실외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c. 실외운동장은 운동을 위한 전용시설로서 장방형의 형태이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수용자들에게는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운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운동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실외작업을 하지 않는 모든 피구급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형사시설규칙 제84조에서는 “적절하게 조직된 체육, 운동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처우와 훈련제도의 기본구도 및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간, 설비, 기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24조는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에 따라 구급시설에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위한 실외운동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실외운동을 할 수 없는 날씨일 때 실내운동이 가능하도록 실내운동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호주의 교정시설 설계지침에는 실내운동장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외운동장은 약 6천평의 크기로 구기운동과 트랙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체육관은 약210평의 크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a. 항에서 필수적인 실외운동장은 물론 실내운동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b. 항에서는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실외운동장의 면적이 적당한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한 기준은 법무시설기준규칙 등에서 침묵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령인 ‘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시설기준령’ 제7조의 ‘체육장’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판단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운동장의 “기준평수는 학생정원 500명까지는 1,500평 이상으로 하고 500명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 1인에 대하여 2평이상씩을 가산”한다. c. 항에서는 실외운동장이 운동을 위한 전용시설로 마련된 것인지를 평가한다. 많은 구급시설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을 운동장이라 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운동장의 평가에서 제외하며, 운동장의 전체면적에서도 제외한다.</p>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수용정원에 비례한 운동장면적이 갖추어졌는지를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예: 수용정원 500명인 구급시설 - 1,500평 이상, 수용정원 1000명인 구급시설 - 2,500평 이상). 현장조사에서는 실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면적과 시설을 조사한다.

[제출자료] A10. 운동장의 종류별 면적

[현장조사] 실외운동장의 형태와 면적, 실내운동시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1.2. 미결수 운동장	미결수 운동장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실외운동장외에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다. b. 수용인원에 비례한 실외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c. 실외운동장은 운동을 위한 전용시설로서 장방형의 형태이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평가내용과 기준은 기결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많은 구급시설에서 미결수를 위한 운동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개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특히 실내운동시설만 마련하고 실외운동장이 없는 구급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수용정원에 비례한 운동장면적이 갖추어졌는지를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예: 수용정원 500명인 구급시설 - 1,500평 이상, 수용정원 1000명인 구급시설 - 2,500평 이상). 현장조사에서는 실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면적과 시설을 조사한다.

[제출자료] A10. 운동장의 종류별 면적

[현장조사] 실외운동장의 형태와 면적, 실내운동시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1.3. 운동장의 시설	운동장의 시설은 운동하기에 적당한가?	세부지표	a. 운동장의 바닥은 잘 정리되어 있다. b. 배수가 잘 되고 있다. c. 세 종목 이상의 구기운동이 동시에 가능한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d. 운동기구가 지급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장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유급형사시설규칙 제84조에서는 “적절하게 조직된 체육, 운동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처우와 훈련제도의 기본구도 및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간, 설비, 기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운동장 이외에 운동을 위한 설비와 기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목에서는 이것을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p> <p>a. b. 현장조사를 통해 운동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후에 따라 운동장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용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보충한다.</p> <p>c. d. 수용자들이 운동하는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면담조사를 통해 보충조사 한다.</p> <p>[현장조사] 운동장 바닥의 상태와 운동시설, 운동기구를 확인한다.</p> <p>[면담조사]</p> <p>우천 이후 운동장 바닥의 상태와 배수 상태, 운동시설과 운동기구의 이용에 대해 면담을 통해 조사한다.</p>				

### A3.2. 목욕탕 및 이발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2.1. 목욕탕의 시설	목욕탕의 시설은 목욕하기에 적당한가?	세부지표	a. 목욕탕의 면적은 수용정원에 비례하여 적당하다. b. 목욕탕의 바닥은 잘 정리되어 있으며 배수가 잘 되고 있다. c. 목욕탕의 벽면은 깨끗하여 곰팡이, 얼룩 등이 없다. d. 샤워꼭지는 충분하며 모두 잘	제출자료 현장조사

			작동한다. e. 수용자가 물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13조는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급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8조도 최저기준규칙과 거의 유사하지만 “가능한 경우에 합리적인 횟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95조는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소장이 정한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 이상,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회 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에 따라 목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목욕탕시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a. 우선 목욕탕의 면적에 대해 법무시설최저기준규칙은 “수용정원 500명 미만은 50㎡(약 15평), 500-600명 미만은 66㎡(약 20평), 600-700명 미만은 83㎡(약 25평), 800-900명 미만은 109㎡(약 33평), 900명 이상은 100명 증가마다 5.86㎡(약 1.8평) 가산”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목욕탕 면적에 대한 평가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제출자료에서 수용정원과 목욕탕면적을 비교한다.

b~e. 목욕탕을 현장 조사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A11. 목욕탕의 종류별 면적

[현장조사]  
목욕탕을 방문하여 바닥과 벽, 천정 등을 살펴보고 수도꼭지의 작동여부, 수용자의 물 조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2.2. 탈의실의 시설	탈의실의 시설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탈의실의 면적은 충분히 넓다. b. 탈의실의 바닥은 깨끗이 관리되고 있다. c. 탈의실의 벽면은 깨끗하여 곰팡이, 얼룩 등이 없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d. 탈의실의 보관함은 잘 정돈되어 있다. e. 겨울철 탈의실은 난방이 된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목욕탕의 부대시설로서 탈의실도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법무시설기준 규칙은 공동목욕탕에 부설된 탈의실의 면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사동의 목욕실에 부설된 탈의실 면적은 목욕실의 60%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탈의실은 면적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탈의실의 상태는 현장조사를 통해 세부지표별로 점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해 탈의실의 면적을 목욕탕의 면적과 비교하고 탈의실의 상태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제출자료] A12. 탈의실의 면적

[현장조사]  
탈의실의 바닥과 벽면, 천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관함과 난방의 운용상태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2.3. 이발실의 규모	이발실이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는가?	탁월(5)	전체이발실과 사동별 이발실이 있고 이발실의 면적이 기준에 부합한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전체이발실과 사동별 이발실이 있지만 이발실의 면적은 기준에 비해 부족하다.	
		보통(3)	전체이발실만 있고 이발실의 면적이 기준에 부합한다.	
		미흡(2)	전체이발실이 있지만 이발실 면적이 기준에 비해 부족하다.	
		시정요함(1)	이발실이 전혀 없다.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16조는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적당히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형법 제23조는 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깎도록 정하고 있고, 행형법시행령 제93조는 “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구금

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두발에 대해 수용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발의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이발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의하면 전체이발실은 기결수용자 1인당 0.05㎡의 규모이어야 하며, 사동 각층 마다 하나의 이발실을 두어 그 면적을 17㎡로 하여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이발실 면적이 적정함을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제출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전체이발실의 경우는 수용정원과 비교하여 그 면적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500명 정원의 경우 500×0.05㎡=25㎡이 되어야 한다.

[제출자료] A13. 수용자 이발실의 종류별 면적

[현장조사] 전체이발실과 사동이발실의 설치여부와 실제면적을 점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2.4. 이발실의 시설과 운용	이발실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들이 대부분 이발실을 이용하고 있다. b. 이발실의 바닥과 벽면은 깨끗하며, 곰팡이 얼룩 등이 없다. c. 이발의자가 구비되어 있고 잘 작동한다. d. 거울은 깨끗하고 조명이 잘 되어 있다. e. 이발도구는 깨끗하며 잘 작동한다.	현장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이발실의 설치여부와 별개로 이발실의 시설은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와 이발실이 실제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이발실의 시설을 평가하고 면담조사에서는 이발실의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현장조사]  
이발실별로 시설을 점검한다. 현재는 사동별 이발실이 없으므로 전체 이발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면담조사] 수용자 면담을 통해 이발실의 이용실태(세부지표 a, b, c, d, e)를 조사한다.

### A3.3 작업장 및 교육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3.1. 작업장의 면적과 기본여건	작업장의 기본여건은 적정한가?	세부지표	a. 작업장의 면적은 적정하다. b. 작업장은 채광이 잘 된다. c. 작업장은 환기가 잘 되고 있다. d. 작업장의 인공조명은 충분히 밝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기결수용자의 경우 일과의 대부분을 작업장에서 보내므로 작업장의 여건과 환경이 수용자의 작업과 건강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본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11조 a항은 “피구급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해야 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피구급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항은 “인공조명은 피구급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시설기준규칙은 작업장의 면적을 1인당 3.3㎡(1평)으로 정하고 있다(일반 작업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여사 작업실의 면적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작업장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작업장의 면적과 기본환경을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작업장의 면적은 제출자료를 토대로 법무시설기준규칙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조명과 환기 여건은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평가한다.</p> <p>[제출자료] A14. 작업장의 종류별 취업인원과 면적</p> <p>[현장조사] 작업장 종류별로 실제면적과 조명, 환기 상태를 점검한다. 조명은 조도측정장치를 이용하여 300LUX 이상의 조도가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고 환기와 채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창문크기를 바닥면적에 비교하여 평가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3.2. 작업장의 시설	작업장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세부지표	a. 작업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b. 작업장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c. 작업장내의 샤워실과 화장실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 d. 작업장에 별도의 식당시설이 있다.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작업장의 기본여건과 더불어 작업장에도 거실과 유사한 생활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냉·난방시설과 위생시설, 식당시설 등은 필수적이다. 난방시설의 경우 작업장에 고정적 난방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드물고 아직도 이동식 연탄난로를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시설이 많다. 이는 건강과 안전을 생각할 때 문제점이 많을 뿐 아니라 난방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식당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 작업대를 임시로 치우고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도 대부분의 구급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관용부 수용자 1인당 0.6㎡의 식당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식당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작업장의 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조사]

a. 난방시설은 고정식 방열기(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동식 연탄난로는 난방시설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작업의 성격상 난방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평가한다.

b. 선풍기는 여름철에 조사할 때는 직접 설치 및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겨울철에 조사할 때는 선풍기 설치가능한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면담을 통해 선풍기 설치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작업의 성격상 선풍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장의 경우 평가에서 예외로 한다.

c. 작업장의 샤워실은 차폐시설이 갖추어진 제대로 된 샤워실인지 아니면 단지 간이 세면시설인지를 확인하여, 제대로 설치된 샤워실의 경우에만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화장실의 경우에도 차폐시설이 잘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d. 직접 작업장을 방문하여 별도의 식당시설의 설비유무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3.3. 교육장의 기본여건	교육장은 기본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세부지표	a. 교육장의 면적은 적정하다. b. 교육장은 채광이 잘 된다. c. 교육장은 환기가 잘 되고 있다. d. 교육장의 인공조명은 충분히 밝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교육장의 기본여건에 대한 평가내용은 작업장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교육장의 면적에 대한 기준을 달리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의할 때 기결수용자 300명당 1실의 교실이 필요하고, 최소한 2실을 갖추어야 하며, 1실의 면적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지침> 작업장의 면적은 제출자료를 토대로 법무시설기준규칙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조명과 환기 여건은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제출자료] A15. 교육장의 종류별 교육인원과 면적

[현장조사] 교육장 종류별로 실제면적과 조명, 환기 상태(세부지표 a, b, c, d 참조)를 점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3.4. 교육장의 시설	교육장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세부지표	a. 교육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b. 교육장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c. 교육장내의 샤워실과 화장실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 d. 교육장에 별도의 식당시설이 있다.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교육장의 시설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그 기준은 작업장의 그것과 동일하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교육장의 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조사]

- 난방시설은 고정식 방열기(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동식 연탄난로는 난방시설로 평가하지 않는다.
- 선풍기는 여름철에 조사할 때는 직접 설치 및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겨울철에 조사할 때는 선풍기 설치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면담을 통해 선풍기 설치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장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교육장에 별도의 식당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3.5. 취사장의 시설	취사장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세부지표	a. 취사장의 면적은 적정하다. b. 취사장의 환기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 c. 취사장의 채광과 조명은 적당하다. d. 취사장내의 샤워실과 화장실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 e. 취사장의 바닥은 잘 정리되어 물이 고이거나 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5개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작업장 중에서 취사장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별도로 평가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는 취사장의 면적을 400명 미만을 수용하는 경우 125㎡(약 37.8평)를 기준으로 하고, 400명 이상 수용할 경우는 100명 증가마다 7.85㎡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사장은 작업강도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작업환경이라 할 수 있는 환기와 조명, 채광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나아가 취사장은 음식을 다루는 곳이므로 샤워실과 화장실의 청결한 위생상태가 필수적이다. 취사장 바닥의 경우도 취사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바닥이 고르지 않아 여기저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비위생적인 미생물 등의 서식환경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작업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취사장 면적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취사장의 시설을 점검한다.</p> <p>[제출자료] A16. 취사장의 면적</p> <p>[현장조사] 취사장의 환기시설은 그 설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채광과 조명은 일반 작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한다(A3.3.1. 참조). 샤워실과 화장실도 작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p>				

**A3.4. 신입실 및 출정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4.1. 신입실의 시설	신입실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세부지표	a. 신입실의 면적은 적정하다. b. 신입실의 조명은 충분히 밝다. c. 탈의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있는가?		d. 샤워실은 깨끗이 관리되고 있다. e. 겨울철 신입실, 탈의실, 샤워실은 난방이 된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해당

<해설> 신입실은 수용자가 구급시설을 처음 경험하는 장소이며, 대개의 경우 수용자에게 구급시설에서의 첫 날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다. 그러므로 신입실은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수용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공간의 확보는 물론, 어둡거나 지나치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입실의 면적, 조명과 기타 시설을 파악하여 평가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의하면 신입자교육실의 면적은 수용자 1,000명 미만의 구급시설의 경우 33㎡(10평)이며, 1,000명 이상은 300명 증가마다 3.3㎡(1평)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신입자교육실은 평균적으로 입소하는 신입자의 수를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신입실의 면적기준도 이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시설로는 탈의실과 샤워실이다. 신입실에서 수용자들은 수용복을 지급받고 옷을 갈아입게 되므로 칸막이 시설이 된 탈의실이 필수적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샤워가 가능하도록 샤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에는 겨울철 난방이 가능하여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해 신입실의 면적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세부시설들을 평가한다.

[제출자료] A17. 신입실의 면적

[현장조사]  
신입실을 방문하여 조명상태와, 탈의시설, 샤워실, 난방시설 등(세부지표 a, b, c, d, e 참조)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A3.4.2. 출정실의 시설	출정실의 시설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출정실의 면적은 적정하다. b. 출정실의 바닥과 벽면은 깨끗하다. c. 출정실에는 탈의를 위한 구별시설이 있다. d. 출정실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e. 출정실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해설> 출정실은 수용자들이 법원 등의 외부시설에 출정을 나가고 들어올 때 거치는 곳으로 계구를 시정하거나 몸수색, 신체검사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미결수용자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곳으로 경우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일부시설은 출정실 없이 사동의 일부나 관구실 등에서 출정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의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출정대기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미결수용자×1/15×0.6’이다. a.항목은 위 기준에 따라 면적을 실측하여 평가한다. b.항목에서는 출정실의 청결상태를 점검하려는 것이다. 출정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신체검사를 위해 탈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탈의를 위한 칸막이 시설이 있어야 한다. c.항목에서 이것을 평가한다. 그리고 출정실에 난방시설과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해 출정실의 면적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세부시설들을 평가한다.

[제출자료] A18. 출정(대기)실의 면적

[현장조사]  
출정실을 방문하여 면적과 청결상태, 탈의시설, 난방시설 등(세부지표 a, b, c, d, e 참조)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 B. 분류 및 누진처우

### B1. 분류

#### B1.1. 분류심사기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1.1. 분류전담 직원의 확보	분류전담직원은 적정인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탁월(5)	분류직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가 50인 이하	제출자료
		우수(4)	분류직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가 50인 초과 70인 이하	
		보통(3)	분류직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가 70인 초과 100인 이하	
		미흡(2)	분류직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가 100인 초과 150인 이하	
		시정요함(1)	분류직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가 150인 초과	
<p>&lt;해설&gt; 분류는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분류급을 어떻게 판정받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처우가 달라지고 가석방의 여부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류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개별상황이 세밀하게 배려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전담직원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분류직원 한 사람이 300-400여명의 수용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별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전담직원의 확보정도를 평가한다. 평가의 기준은 분류전담직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이다. 담당 수용자의 수는 실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지침 마련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수용정원 1600명에 실제 수용인원 2300여명인 A시설의 경우 1년간 정기·부정기 심사대상이 되는 총인원이 2300여명 이었으며, 수용정원 400명에 현 실제 수용인원 640여명인 B시설은 1년간 심사대상 인원이 800여명이었다. 수용정원 1500명에 실제 수용인원 1485명인 C시설의 연간 심사대상인원은 1200여명이었다. 대체적으로 보아 실제 수용인원과 연간 심사대상 총인원이 비례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 수용자 수는 실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분류직원 1인당 적정 담당인원은 70-10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이다. 미국의 경우 주당 20-30명의 수용자를 심사하는 분류센터 (Reception Center)에서 필요한 최소인원을 20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사무직원과 보안직원을 제외한, 순수한 분류전담직원의 숫자이다. 이 기준을 한국의 시설에 적용할 경우 예컨대 연간 1200여명, 매달 100여명을 심사하는 C시설에서 필요한 직원의 수가 약 20명이라 할 수 있다. 그 경우 분류전담직원 1인이 담당하는 수용인원은 75명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적정 인원을 70-100명으로 산정하였다.</p>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분류직 직원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전체 수용자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제출자료] B1. 분류과 직원의 직역별, 성별 구성인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1.2. 분류전담 직원의 전문성	분류전담 직원은 전문지식에 따라 전문업무에 만 종사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분류전담직원은 분류심사 관련 업무에 만 전문적으로 종사한다. b. 분류심사과에 분류전담직원을 돕는 사무직원이 확보되어 있다. c. 분류직 전담직원의 80% 이상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d. 분류직 전담직원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대부분의 시설에서 분류심사과는 분류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문업무 보다는 서류작성 등의 일반사무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분류전담직원들이 분류업무에 적합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와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토대로 분류심사과의 인적 구성을 확인하고 직원면담조사를 통해 분류직 직원의 업무내용과 재교육 여부를 확인한다.</p> <p>a. 직원 면담조사를 통해 분류직원이 사무업무와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p> <p>b. 분류직원 2인당 1인의 사무직원이 배정되어 있을 때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c. 제출자료에서 분류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파악한다. 분류관련 전문자격증은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상담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의 범주에 속하는 자격증을 말하고, 관련 학문분야의 석사·박사학위도 전문자격증으로 파악한다.</p> <p>d. 직원면담조사를 통해 분류직의 전문적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교정직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 등에 참여한 것은 전문적 재교육의 범주에서 제외한다.</p> <p>[제출자료] B1. 분류과 직원의 직역별, 성별 구성 인원</p>				

<p>B2. 분류직원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p> <p>B3. 전년도 분류과 직원의 분류직 관련 재교육 내역</p> <p>[면담조사]</p> <p>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직원은 분류업무에만 종사하는가? 다른 잡무의 정도는?</li> <li>- 분류직원은 분류직과 관련한 전문적인 재교육을 받고 있는가?</li> </ul>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1.3. 분류처우 예비회의 의 운영	분류처우 예비회의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p>a. 분류처우예비회의의 구성은 10-15인이다.</p> <p>b. 분류처우예비회의의 구성인원은 각 직역별로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다.</p> <p>c. 예비회의는 매월 7일에 개최되고 있다.</p> <p>d. 예비회의에서는 회의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p>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77조는 제1항에서 “분류처우회의에 회부할 수형자의 분류 및 누진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에 분류처우예비회의(이하 ‘예비회의’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예비회의는 매월 7일에 개최하되 회의 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79조에서는 예비회의의 구성에 대해 “예비회의는 작업담당·보안담당·분류심사 담당·누진처우담당 및 관구책임교도관 등 관계교도관 중에서 분류심사과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분류처우예비회의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기록조사와 직원 면담조사를 통해 세부지표들을 점검하되, 기록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면담조사는 참고사항으로 한다.

a. 예비회의의 구성원이 10-15인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예비회의의 구성원을 특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담당자 몇이 참석해서 회의를 구성한다. 그러나 분류처우규칙 제81조에 의하면 예비회의의 의결과 관련하여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즉 예비회의에 재적구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재적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b. 구성인원의 적정성에 관한 것인데, 회의에 참가한 교도관들이 분류처우심사에 적합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나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가자의 명단이 실명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참가자의 서명이 동일한 사

람에 의해 작성된 흔적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참가자가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서명도 참가자가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될 때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c. 일부 시설에서 예비회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당일 시설의 월간일정표에 예비회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년도 기록에서 예비회의 회의록은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 가지라도 누락되어 있을 경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d. 정성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나 전년도 회의록을 검토하여 회의록의 문구가 거의 모두 동일할 경우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기록조사] 평가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일년간 분류처우예비회의 회의록

[면담조사] 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위의 세부지표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1.4. 분류처우 회의의 운영	분류처우 회의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분류처우회의의 구성은 7-9인이다. b. 분류처우회의의 구성원은 7급 이상 교도관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 분류처우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되고 있다. d. 회의에서는 회의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84조는 제1항에서 “(분류)처우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해 교도소장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처우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 및 각 과장과 교도소장 등이 지명하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83조는 제2항에서 “처우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당해 교도소장 등이 수형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분류처우회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기록조사와 직원 면담조사를 통해 세부지표들을 점검하되, 기록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면담조사는 참고사항으로 한다. 항목별 평가내용은 분류처우예비회의에 대한 평가내용을 준용한다.

[기록조사] 평가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일년간 분류처우회의 회의록
[면담조사] 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위의 세부지표를 확인한다.

## B1.2. 분류심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2.1. 분류조사의 적정성	분류조사는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분류조사의 조사내용은 충실하다. b. 심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c. 수형자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d. 분류처우심사표는 빠짐없이 잘 작성·비치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제11조는 제1항에서 “교도소장 등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분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교도소장 등은 분류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여 수형자의 가정환경 및 보호관계 등을 조사하거나 검찰청·경찰서 기타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교도소장 등은 효과적인 분류조사를 위하여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 및 정신의학 등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고충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조사의 내용은 이후 분류처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활용되므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시설에서 분류직원이 조사해야할 조사대상자가 과다하게 많은 까닭에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관계서류 등을 토대로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와 기록조사, 직원 면담조사를 통해 세부지표들을 확인한다.

a. 분류조사의 조사내용이 모두 충실하게 조사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분류조사를 위해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기록조사를 통해 분류처우심사표에 이러한 사항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b. c. 제출자료를 통해 전년도 1년간의 관계기관 조회건수와 전문가 상담 건수를 확인하

여 평가하되, 각각 연간 심사대상 건수의 10% 이상의 건수가 있을 때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d. 분류처우심사표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B4. 전년도 1년간 신입심사 및 정기·부정기재심사 실시 대상인원  
 B5. 전년도 1년간 분류조사 관련 관계기관 조회 건수  
 B6. 전년도 1년간 분류조사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건수

[기록조사] 수용자 10명의 분류처우심사표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다.

[면담조사] 기록조사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세부지표들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2.2. 신입심사	신입심사는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신입심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되고 있다. b. 신입심사대상자는 심사기간 동안 독거실에 수용되고 있다. c. 정밀분류심사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해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d. 신입심사의 실시결과는 적정하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9조는 신입심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 달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정밀분류심사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신입심사대상자는 독거실에 수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신입심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와 기록조사를 통해 세부지표별로 점검하되,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p> <p>a.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서 형집행지휘서접수일과 신입심사 판정일을 비교하여 불필요하게 신입심사가 늦게 실시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신입심사가 늦게 실시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서 정밀분류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a.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p>				

<p>으로 본다.</p> <p>b.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신입심사 당시 독거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한다.</p> <p>c. 제출자료에서 정밀분류심사 건수를 확인하여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d. 분류처우심사표 10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신입심사의 판정내역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하되, 규정에 어긋난 평가결과가 발견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p>[제출자료] B7. 전년도 신입심사 관련 정밀분류심사 실시 건수</p> <p>[기록조사] 분류처우심사표 10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신입심사 결과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다.</p> <p>[면담조사]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신입심사 당시 독거실에 수용되었는지 확인한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2.3. 재심사	재심사는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정기재심사는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b. 부정기재심사는 사유가 있을 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 정기재심사의 실시결과는 적정하다. d. 부정기재심사의 실시결과는 적정하다.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69조는 “적당한 형기에 놓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형자의 개인적 필요와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입심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동안 변화한 수형자의 상황에 맞는 처우가 가능하도록 수형자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0조는 재심사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또는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는 형기의 2분의 1과 3분의 2에 도달한 때 각각 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는 사유로 1. 신입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교정사과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하기로 결정한 때, 4. 가석방 또는 귀휴심사상 필요한 때, 5. 전

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고시에 합격한 때, 6.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정기·부정기 재심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평가지침>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를 토대로 a, b, c, d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a. 형기의 1/2, 2/3에 도달한 날과 재심사 실시 일을 비교하여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조사한다. 기간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되면 이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b. 부정기재심사가 실시된 경우가 기재된 분류처우심사표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부정기 재심사 해당사유의 발생일과 재심사 실시 일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수용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부정기재심사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c. 정기재심사의 결과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정기재심사에서 주로 심사되는 것은 개선급의 변경여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에서 형기의 1/2에 도달한 때에는 개선급을 변경해 주지 않는 반면 형기의 2/3에 도달한 때에는 변경을 허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 심사가 실시된 결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년도 분류처우회의록을 조사하여 형기의 1/2에 도달한 경우와 2/3에 도달한 경우의 심사결과가 상하로 20% 이상 차이가 나면 정기재심사의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예비회의와 처우회의의 결과가 100% 동일한 경우도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d. 부정기 재심사의 해당사유와 심사결과가 상세히 적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기록조사]

1. 분류처우심사표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심사내역을 평가한다.
2. 전년도 분류처우회의록을 조사하여 정기·부정기 재심사의 결과를 평가한다.

[면담조사] 수용자를 대상으로 부정기재심사의 실시현황을 파악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2.4. 분류심사에서 여성의 고령이 고려되는가?	세부지표	a. 분류직 직원 중에 여성을 담당하는 여성직원이 있다.	b. 분류처우예비회의에 여성교도관이 참여하여 여성수용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c. 분류처우회의에 여성교도관이 참여하여 여성수용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d. 분류조사 내용에서 여성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분류심사과정에서 여성수용자를 남성교도관이 심사하고 뿐만 아니라 분류처우에 대한 회의과정에서도 여성수용자를 담당하는 여성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여성수용자에 대한 개별적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남성수용자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분류심사과정에서 여성수용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와 기록조사 및 면담조사를 토대로 평가한다.

- 제출자료에서 분류직 직원 중 여성직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전년도 분류처우예비회의록을 조사하여 여성교도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를 평가한다. 회의록에 회의 참가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전년도 분류처우회의록을 조사하여 여성교도관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한다. 평가방법은 b항과 동일하다.
- 분류조사지표의 적용, 심리검사와 적성검사 문항의 내용 등이 남성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B1. 분류직 직원의 직역별, 성별 구성 인원

[기록조사] 전년도 분류처우예비회의록 및 분류처우회의록

[면담조사]

분류직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 분류조사지표와 심리검사, 적성검사의 내용에서 여성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B1.3. 분류심사와 수용자의 권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3.1. 분류심사와 수용자의 참여	분류심사과정에서 수용자는 자기정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세부지표	a. 수용자는 자신의 분류심사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b. 수용자는 분류심사와 관련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c. 수용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다. d. 수용자는 분류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설문조사 면담조사

참여할 수 있는가?		제기할 수 있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분류는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행형의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이러한 행형의 계획에는 수형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행형당국이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수형자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수긍하고 그에 대해 협조할 자세를 갖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형자에게 분류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고 수형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분류체계에서는 수형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수형자가 분류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반발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7조에서 행형성적을 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염려는 근거 없다. 행형성적을 공개할 때도 당해 수형자의 불만과 반발이 염려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류심사과정에서도 수형자가 자신의 분류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류심사를 위해 제공되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정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평가지침> 수형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직원 및 수형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세부지표들을 확인한다. a.항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아래의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대답이 30%를 넘으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b. c. d.항은 분류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설문조사]  
 B1. 귀하는 귀하에 대한 구금시설의 분류심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면담조사] 분류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b. c. d.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1.3.2. 분류심사의 공개성	담당직원은 분류심사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해	세부지표	a. 분류직원은 수용자에게 분류심사의 기준과 내용,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b. 분류직원은 분류심사를 위해 수용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개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c. 분류직원은 분류심사 결과에 대한 수형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분류심사과정에 대한 수형자의 참여를 분류직원 측에서 얼마나 배려하고 장려하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수형자는 구금시설에서 피동적 위치에 있으므로 분류직원이 적극적으로 분류심사에 대해 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형자는 스스로의 수형생활에 책임지는 위치를 학습할 수 있다.

<평가지침> 수형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직원 및 수형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세부지표들을 확인한다.

a. b.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아래의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대답이 30%를 넘으면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c. 분류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설문조사]

B2. 분류과 직원은 귀하에게 분류심사의 절차와 기준,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까?

①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                      ② 거의 설명해주지 않았다  
 ③ 조금 설명해 주었다                              ④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B3. 귀하는 분류심사 과정에서 분류과 직원과 상담을 하였습니까?

① 전혀 상담하지 않았다                      ②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③ 상담을 한 편이다                                  ④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면담조사] 분류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c.항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B2. 누진처우

### B2.1. 진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1.1. 행형성적의 평가과정에 대한 정보권의 보장	수형자는 행형성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세부지표	a.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수형자에게 소득점수를 고지하고 있다. b. 수형자는 원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행형성적(책임점수, 소득점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c. 수형자는 행형성적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류과장 혹은 담당직원과 면담하도록 보장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7조 제2항은 “분류심사과장은 행형성적채점 및 고지서를 분류처우회의의 심의·의결 후 매월 20일까지 해당관구 책임교도관에게 배부하고, 관구책임교도관은 보안 또는 작업담당교도관으로 하여금 당해 수형자에게 소득점수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가 자신의 행형성적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평가항목은 수형자에게 행형성적에 대한 정보권과 이의제기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평가자는 시설 측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수형자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a.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의 고지방법을 시설측이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행형성적채점 및 고지서’에서 행형성적의 고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더불어 수형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b. 수형자가 매월 고지되는 것과는 별개로 필요한 경우 자신의 행형성적을 열람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자는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 행형성적 열람신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열람신청이 있다면 그에 대한 허가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형자를 면담해 보아야 한다.

c. 행형성적에 대하여 수형자가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원만히 처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자는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 행형성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보고전을 내거나 분류과장의 면담을 신청하는 보고전을 낸 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분류과장면담이나 담당직원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p>[제출자료] B8. 수형자에 대한 행형성적의 고지방법 및 불만처리방법</p> <p>[기록조사] ‘행형성적채점 및 고지서’10개 이상을 확인한다.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서 행형성적과 관련한 불만처리사례를 확인한다.</p> <p>[면담조사] 수용자를 대상으로 위 세부지표에 대해 확인한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1.2. 긴급정지 및 강급의 적용실태	긴급정지 및 강급의 처분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긴급정지사유는 적절하다. b. 긴급정지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한 사례가 있다. c. 강급의 사유는 적절하다. d. 강급처분을 유예한 사례가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2조 제1항은 긴급정지의 사유로서 “1. 징벌처분을 받은 때, 2.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형의 확정 이 예정되는 때, 3. 기타 긴급시킬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1호와 2호의 경우는 사유가 객관적인 반면 제3호의 사유는 주관적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제3호에 의한 긴급정지는 가능한 한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34조는 긴급정지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같은 규칙 제35조는 강급의 사유로서 “1. 징벌로 긴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징벌종료 후 1년 이내에 또 다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때, 2. 소행점수가 현저히 불량하여 당해누진계급에 의한 처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제2호의 경우는 주관적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강급사유로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 같은 규칙 제37조는 강급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강급처분을 유예하여 잘못이 있는 수형자에게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긴급정지와 강급의 처분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와 기록조사를 통해 평가한다.</p> <p>a.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긴급정지가 전체 긴급정지 건수의 10%를 초과하면 긴급정지 사유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분류처우예비회의와 분류처우회의의 회의록에서 긴급정지 사례를 살펴보고 사유가 구체적인지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p> <p>b. 제출자료에서 긴급정지를 감경 또는 면제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례가 있을 경</p>				

우 이것이 분류처우예비회의와 분류처우회의의 회의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c. d. 각각 a. b.항에 준하여 평가한다.  
 c.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5조 제2호에 의한 강급사유가 전체 강급 건수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제출자료]  
 B9. 전년도 진급정지의 사유별 건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2조의 사유별 건수)  
 B10. 전년도 진급정지의 감경 및 면제 건수  
 B11. 전년도 강급조치의 사유별 건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5조의 사유별 건수)  
 B12. 전년도 강급의 유예조치 건수

[기록조사] 분류처우예비회의 및 분류처우회의 회의록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1.3. 진급에 대한 수형자들의 기대	진급제도가 수형자들에게 동기부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대답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대답이 10% 이상 2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대답이 20%이상 3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대답이 30%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대답이 50% 이상	
<p>&lt;해설&gt; 누진처우에서 진급제도를 둔 것은 수형자들이 진급에 따른 처우의 개선을 기대하여 수용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저기준규칙 제70조에서도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급과 진급 이후의 처우개선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진처우의 취지는 퇴색하게 된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형자들이 진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아래의 설문에 대한 수형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                      B4. 귀하가 앞으로 진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능성이 전혀 없다                      ② 가능성이 없는 편이다                      ③ 가능성이 조금 있다                      ④ 가능성이 매우 높다</p>				

**B2.2. 자치활동**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2.1. 수형자 자치활동의 실시 대상인원	수형자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의 비율은 적정한가?	세부지표	a. 제2급 이상의 수형자 중에서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의 비율이 80% 이상이다. b. 제2급 이상의 수형자 중에서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의 비율이 50% 이상이다. c.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 중에 제3급 이하의 수형자가 포함되어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a.와 c에 해당	
		우수(4)	b.와 c.에 해당	
		보통(3)	a.에만 해당	
		미흡(2)	b.에만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누진처우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수형자에게 자치활동을 허가하는 것이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7조 제1항은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활동은 수형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구급시설에서는 자치활동을 가능한 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2급 이상 수형자의 80% 이상이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제3급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도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가 있는 경우를 ‘탁월’의 지표로 선정하였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a.와 b.에서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p> $\text{자치활동 수형자 수} \div \text{제2급 이상 수형자 총인원} \times 100$ <p>[제출자료] B13. 현재 수형자의 누진처우와 관련하여 각급별 수용인원 B14. 현재 자치사동 거주 수용자의 처우 급별 인원</p> <p>[면담조사] 자치사동에 거주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의 구성내용을 조사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2.2. 수형자 자치회의 조직	수형자 자치회의 조직은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자치회장은 제1급 수형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다. b. 모든 자치수형자가 참여하는 자치총회가 구성되어 최소한 월1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c. 자치회장 외에 거실별 분임장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d. 자치활동 수형자들이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 모여 매주 1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6조는 제1항에서 “전체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 및 희망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급 수형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표자는 제1급 수형자의 호선에 의해 교도소장 등이 지명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무부 예규인 ‘수형자 자치제 시행지침’ 제6조 제1항은 “자치수형자는 자치총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자치총회는 모든 자치수형자를 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임과 자치총회 등 단계별 조직을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분임은 거실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분임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고 자치총회는 월1회의 정기총회와 소장 또는 자치총회장의 요청에 의한 임시총회로 구분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7조 3항은 “자치활동 대상 수형자들은 교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매주 1회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론회 개최를 필수적·의무적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항목에서는 수형자의 자치회 조직이 이와 같은 규정들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p> <p>a. 대부분의 교도소 등에서 수형자 자치회장을 수형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교도소 등의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치수형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p> <p>b. c. d. 실제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p> <p>[제출자료] B15. 수형자 자치활동의 내용</p> <p>[면담조사] 자치사동에 거주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치회의 조직 내용을 조사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2.3. 수형자 자치활동의 내용의 내용	수형자 자치활동의 내용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a. 자치사동 내에서는 자치활동 시간에 거실간 통방이 허용된다. b. 자치활동에서는 자치수형자의 급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c. 자치활동 수형자의 잘못 때문에 동일 거실에 수용된 모든 수형자의 자치활동이 취소되지 않는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a. b. c.에 모두 해당	
		우수(4)	a.에 해당하고 b. c. 중 한 가지에 해당	
		보통(3)	b. c.에 해당	
		미흡(2)	b. c. 중 한 가지에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자치회의 조직과 더불어 자치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 일부 시설에서는 자치사동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 실질적 자치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7조 제2항은 “자치활동의 범위는 인원 점검·취미활동 및 거실안의 생활 등으로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수형자들은 다양한 자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모든 자치수형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치활동은 야간의 불침번제도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분류처우규칙이 규정하는 자치활동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취미활동이나 휴일의 체육활동 등 일부 자치활동은 제1급 수형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수형자 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자치활동의 기회는 자치에 참여하는 모든 수형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7조 제4항은 “자치활동을 허가받은 수형자가 신체·의류·거실 등에 대한 검사·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도소장 등은 동일 거실 안의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대책임’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료수용자가 관규를 위반했을 때 연대책임을 물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도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인정한 바 있고(2004.2.27.자 03진인5188 결정),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4년 3월 31일 ‘수용자 연대책임에 의한 제한조치 관련 유의사항 시달’을 통해 연대책임에 의한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 제한 조치는 직접책임이 없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비록 수형자 자치제도와 직접 관련있는 결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형자 자치에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치활동의 내용으로서 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적어도 자치사동 내에서는 자치활동 시간에 거실간 통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탁월’의 지표로 설정하였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자치사동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p>				

통해 실제 자치활동의 내용을 조사한다.

[제출자료] B15. 수형자 자치활동의 내용

[면담조사] 자치사동에 거주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치활동 내용을 조사한다.

**B2.3.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한 누진처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3.1. 경기 및 오락회 개최	제2급 이상 수형자의 경기 및 오락회 개최는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우수(4)	경기 또는 오락회를 연간 1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1회 당 평균 참여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80% 이상이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보통(3)	경기 또는 오락회를 연간 6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1회 당 평균 참여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80% 이상이다.	
		미흡(2)	경기 또는 오락회를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1회 당 평균 참여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60% 이상이다.	
		시정요함(1)	경기 또는 오락회를 연간 3회 이하로 개최하거나 1회 당 평균 참여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60% 미만이다.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70조는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진처우의 상위 급수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전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9조는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수형자들이 경기나 오락회를 개최하는 것은 수형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기 등을 통하여 수형자들이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급시설에서는 경기나 오락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평가항목은 제2급 이상 수형자에게 허가된 경기나 오락회의 개최현황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서 월 2회 이내라고 했으므로 최소한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에 훨씬 미흡한 것이며, 현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연 6회 정도 개최하는 것이 ‘보통’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① 평가자는 시설 측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전년도 1년간 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횟수 및 인원을 평가하되, 필요하다면 수형자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제출자료의 진위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② 체육대회는 경기에 속하며, 기타 장기자랑 등은 오락회라고 볼 수 있다. 1회의 행사에서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등 오락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면 이는 1회의 행사로 평가한다.

③ 1회 당 평균 참여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년간 경기 또는 오락회 참여연인원 ÷ 평가기준일 제2급 이상 수형자 수 × 100

[제출자료]  
 B16. 전년도 1년간 제2급 이상 수형자의 경기 및 오락회 개최 내역  
 (경기 내용, 일시, 장소, 참여인원 등)

[면담조사]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3.2. 견학 및 사회봉사활동	제2급 이상 수형자에게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고 있는가?	우수(4)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1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연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80% 이상이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보통(3)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6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연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70% 이상이다.	
		미흡(2)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연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60% 이상이다.	
		시정요함(1)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3회 이하로 개최하거나, 참여연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60% 이하이다.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70조는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진처우의 상위 급수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전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4조 내지 65조는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견학과 사회봉사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활동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처우방법이다. 따라서 구금시설은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많은 수형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취지에서 시설에서 실시한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활동의 횟수 및 참여인원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연간 개최횟수에 대한 평가기준은 경기 및 오락회 개최횟수에 대한 기준과 동일한 관점에서 설정되었다.</p> <p>&lt;평가지침&gt;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전년도 1년간 수형자의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활동의 실</p>				

<p>시횃수 및 인원을 평가한다. 제출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수형자에 대한 면담을 해 볼 수 있다.</p> <p>2. 사회견학과 사회봉사활동은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구별하여 시행하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본 평가항목도 사회견학과 사회봉사활동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합하여 횃수와 인원수를 계산하도록 한다. 다만, 제출자료 중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의 성격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것은 횃수 및 인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p> <p>3.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연인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ath>\{1\text{년간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인원수의 합} \div \text{평가기준일 제2급 이상 수형자수} \times 100\}</math></p> <p>[제출자료]                  B17. 전년도 1년간 제2급 이상 수형자의 사회 견학 및 사회봉사활동 실시 내역 (일시, 방문 장소, 참여인원 등)</p> <p>[면담조사]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한다.</p>
---

**B2.4. 제1급 수형자에 대한 누진처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4.1. 외부종교행사참석	제1급 수형자에게 외부종교행사 참석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는가?	우수(4)	외부종교행사 참석허가 건수가 연 4회 이상이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보통(2)	외부종교행사 참석허가 건수가 연 2-3회이다.	
		시정요함(1)	외부종교행사 참석허가 건수가 1회 이하이다.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70조는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진처우의 상위 급수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전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6조는 제1급 수형자에게 처우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가 신봉하는 종파의 외부 종교행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는 교화수단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구금시설의 특성상 외부종교행사에 참석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금시설 내의 종교행사가 해당 종교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종교행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 또한 외부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금시설은 제1급 수형자에게 외부종교행사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p>				

평가항목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외부종교행사의 참석기회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외부종교행사 참석횟수는 최소 분기별 1회로 설정하였다. 경기 및 오락회 개최와 같이 최소 매월 1회 이상 참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부 행사이므로 계호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로 설정하였다. 현재 거의 모든 시설에서 외부 종교행사 참석을 허용한 건수가 전혀 없으므로 분기별 1회 참석을 ‘우수’의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전년도 1년간 외부종교행사의 참석횟수 및 인원수를 평가한다. 평가자는 제출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경험이 있는 수용자를 면담해 볼 수 있다.
2. 여기에서 평가하는 것은 외부의 종교행사에서의 참석횟수이다. 외부의 종교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라도 해당 종교의 전형적인 종교행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출자료]

B18. 전년도 1년간 제1급 수형자의 외부종교행사 참석 내역  
(일시, 행사내용 및 장소, 참석인원 등)

[면담조사] 제1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B2.4.2. 외부영화 관람	제1급수형자에게 외부영화 등의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우수(3)	외부 영화 등 관람의 허가 건수가 연 4회 이상이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보통(2)	외부 영화 등 관람의 허가건수가 연 2-3회이다.	
		시정요함(1)	외부 영화 등 관람의 허가건수가 1회 이하이다.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70조는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진처우의 상위 급수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전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7조는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자신의 경비로 시설 외부에서 영화 등의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람은 수형자의 수형생활의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재사회화에도 유익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본 평가항목은 외부사회에서 상영(혹은 공연)되는 영화 등의 관람기회를 시설측이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외부영화 관람횟수에 대한 평가기준은 외부 종교행사 참석횟수에 대한 평가기준과 동일하다.</p>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전년도 1년간 외부의 영화 등 관람횟수를 평가한다. 제출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자는 해당 경험이 있는 수형자를 면담해 볼 수 있다.
2. 여기서 말하는 “영화 등”이란 영화, 연극, 뮤지컬, 라이브 공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3. 시설 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출자료] B19. 전년도 1년간 제1급 수형자의 외부영화관람 허가 내역 (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

[면담조사] 제1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한다.

## C. 급여 및 영치

### C1. 급여

#### C1.1. 의류와 침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1.1. 의류의 지급	의류는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의류는 규정에 따라 종류별로 수용자들에게 지급되어 착용되고 있다. b. 의류는 정해진 시기에 동복, 춘추복, 하복이 지급되고 있다. c. 의류는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교환되고 있다. d. 수용자는 관급의류의 품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기록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17조는 제1항에서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급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2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20조 제1항은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행형법시행령 제73조는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마련된 법무부령인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의류의 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 수용자의 수용생활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의류와 침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의류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a.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의류의 종류와 착용구분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제출자료를 토대로 하되 거실과 작업장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류를 확인하고 관리과에서 ‘수용자 피복수급계획’ 장부를 확인하여 수용자 인원수에 비례하는 의복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b. c.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정한 바에 의하면 의류는 동복, 춘추복, 하복이 각각 12월 3월 6월에 지급되어야 하며, 의류의 사용기간은 대개 2년이다. 이 기간을 지켜 의류가 지급되고 교환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수용자피복수급계획’의 기록을 조사하고 관리과 직원 및 수용자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d.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아래의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대답이 50%를 넘으면 이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C1. 관급의류의 지급종류와 품목별 전년도 지급현황

[현장조사] 거실과 작업장, 병동 등의 현장에서 수용자들의 의류착용상황을 확인한다.

[기록조사] ‘수용자피복수급계획’(용도과)

[면담조사]  
용도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의류의 종류별 지급상황 및 지급시기와 교환시기에 대해 확인한다.

[설문조사]  
C1. 관급되는 의류는 착용하기에 편안하고 귀하의 건강유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1.2. 이불의 지급	이불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우수(4)	원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이불이 지급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미흡(2)	수형자 중 일부에게만 이불이 지급되고 있다.	
		시정요함(1)	이불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다.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19조는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침구의 지급과 관련한 국내 법령의 규정은 위의 C1.1.1.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침구 중에서 이불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이불 급여대상에 대해 “이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용자는 누진계급 1,2급 우량수형자 및 관용부 중에서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 기타 교화상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불은 원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수용자에

게 이불이 지급되는 것을 ‘우수’로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용도과에서 기록을 조사하고 수용자를 대상으로 면담하여 확인한다. 연간 이불의 지급건수를 전체 수용인원과 1,2급 수형자의 인원 등에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때 이불의 지급량은 3인에 1매인 점 (환자는 1인 1매)을 고려하여 지급량을 산정한다. 즉, 수용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 만큼의 이불이 지급된 경우 ‘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1,2급 수형자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이불이 지급되었으면 ‘미흡’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C2. 관급침구의 지급종류와 품목별 전년도 지급현황

[기록조사] 용도과에서 이불지급 기록을 조사한다.

[면담조사] 용도과 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1.3. 매트리스의 지급	매트리스는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일반매트리스가 모든 수용자에게 1매씩 지급된다. b. 일반매트리스가 모든 거실의 바닥 면적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다. c. 일반매트리스가 일부 수용자에게만 지급된다. d. 환자매트리스가 1인 1매씩 지급된다. e. 환자매트리스가 일부 환자에게 지급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탁월(5)	a. d.에 해당	
		우수(4)	b. d.에 해당	
		보통(3)	c. d.에 해당	
		미흡(2)	c. e.에 해당	
		시정요함(1)	c. 나 e.에만 해당하거나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의하면 일반매트리스는 겨울철에 수용자에게 급여하되 거실구조에 따라 ‘적의 지급’하며 환자매트리스는 1인당 1매를 연중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매트리스의 지급여부를 평가하되, 수용자의 취침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매트리스의 경우도 1인당 1매를 ‘우수’의 기준으로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되 기록을 조사하고 용도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면담하여 확인한다.</p>				

<p>[제출자료] C2. 관급침구의 지급종류와 품목별 전년도 지급현황</p> <p>[기록조사] 용도과에서 매트리스 지급 기록을 조사한다.</p> <p>[면담조사] 용도과 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한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1.4. 담요와 베개의 지급	담요와 베개는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담요는 원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2매 이상씩 지급된다. b. 담요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환된다. c. 베개가 1인 1개씩 지급된다. d. 베개는 1년에 1회 교환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a. c.에 해당하고 b. d. 중 하나에 해당	
		미흡(2)	a. c. 중 하나와 b. d. 중 하나에 해당	
		시정요함(1)	하나만 해당	
<p>&lt;해설&gt;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의하면 담요는 1인당 2매를 지급하되 거실의 구조,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의 지급’하며 베개는 1인당 1매를 지급하되 사용기간은 1년이다. 이 기준에 따라 담요와 베개가 지급되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되 기록을 조사하고 용도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면담하여 확인한다.</p> <p>[제출자료] C2. 관급침구의 지급종류와 품목별 전년도 지급현황</p> <p>[기록조사] 용도과에서 담요와 베개 지급 기록을 조사한다.</p> <p>[면담조사] 용도과 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1.5. 침구의 지급상태	침구는 청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지급되고 있는가?	우수(4)	설문 ①과 ②의 답이 30% 미만	설문조사
		보통(3)	설문 ①과 ②의 답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설문 ①과 ②의 답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설문 ①과 ②의 답이 70% 이상	

<p>&lt;해설&gt; 침구의 지급상태를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아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C2. 관급되는 침구는 청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

**C1.2. 생활용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2.1. 생활용품의 지급	생활용품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생활용품이 지급기준에 따라 원하는 모든 수형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b. 생활용품이 지급기준에 따라 원하는 모든 미결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c. 수용자들은 생활용품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15조는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20조 제1항은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행형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칫솔·치약·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법무부 예규‘수용자 생활용품 급여지침’제3조는 아래와 같은 급여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항목은 이러한 급여기준에 적합하게 생활용품들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용자 생활용품 급여지침’ 제4조 제1항은 생활용품을 “전 수용자에게 지급하고 미결수용자는 자비부담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되, 기타 교화 상 소장이 급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급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구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생활용품의 관급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게도 급여기준에 따라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참고하되 용도과에서 생활용품 급여 기록을 조사하고 용도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면담하여 실제 급여여부를 확인한다. 생활용품의 품질에 대해</p>				

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평가하되, 아래 질문에 대한 ①과 ②의 답이 50% 이상일 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생활용품 급여기준

	치약	칫솔	세면비누	세탁비누	수건	화장지
1인당 급여수량	150g	1개	140g	300g	1매	1개
사용기간(월)	2	2	2	3	3	1
연간급여횟수	6	6	6	4	4	12

[제출자료] C3. 관급 생활용품의 종류와 전년도 지급현황

[기록조사] 용도과에서 생활용품 지급 기록을 조사한다.

[면담조사] 용도과 직원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한다.

[설문조사]

C3. 관급되는 생활용품(치약,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등)의 질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 ① 매우 불편하다
- ② 불편한 편이다
- ③ 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불편하지 않다

### C1.3. 급식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3.1. 주·부식의 급여	주식과 부식은 적정하게 급여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식단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다. b. 급식은 식단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c. 수용자는 식사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d. 수용자는 식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자료 설문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20조 제1항은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6조 1항 a호에서는 의사가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소장에게 조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주식과 부식의 지급은 수용자의 생존권과 건강,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

인 것이다. 행형법 제21조 제1항은 “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시행령 제78조는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은 주식·부식·음료 기타 영양물로 하되 필요한 영양을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주식과 부식의 급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a.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급양관리지침’ 제17조는 제1항에서 “식단의 작성은 중앙기준 식단을 참고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지방급식관리 위원회에서 세밀히 분석 검토 심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출자료를 토대로 3개월간의 식단이 중앙기준식단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b.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식단에 맞추어 급식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되, 아래의 설문 C4에서 ①과 ②의 답이 50%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c.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평가하되 아래 설문 C5에서 ①과 ②의 답이 70%를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d. 수용자들이 자치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식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반영되는지를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e. 의무과에서 의사를 상대로 급식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소장에게 조언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출자료] C4. 지난 3개월간의 식단표 (자료제출일 기준)

[설문조사]

C4. 식사는 식단은 짜여진 대로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5. 매일 제공되는 식사의 질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면담조사]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들이 식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의무과 의사를 대상으로 급식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소장에게 조언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3.2. 자변부식	자변부식의 질과 지급상황은 적절한가?	세부지표	a. 자변부식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b. 자변부식의 가격에 대해 수용자가 만족하고 있다. c. 수용자는 자변부식의 질에 만족하고	제출자료 면담조사 설문조사

			있다. d. 수용자는 자변부식의 종류와 가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행형법 제22조 제1항은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은 “소장은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교도소 등의 직원회에서 경영하는 판매소에서 이를 판매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자변으로 부식을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변부식에 대해 수용자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자변부식의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a. 자변부식의 품목별로 그 가짓수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종류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적어도 2-3개의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출자료를 토대로 자변부식의 품목별 가짓수가 다양한지 평가한다.

b. 자변부식의 가격을 시중 유사제품의 가격과 비교해 보고 수용자들이 가격에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되, 아래의 설문 C6에 대한 수용자들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응답이 70% 이상이면 수용자들이 가격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c. 수용자들이 자변부식의 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되, 아래의 설문 C7에 대한 수용자들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응답이 70% 이상이면 수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d. 수용자들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자변부식의 종류나 가격 등에 대해 자치회조직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제출자료] C5. 구매 가능한 자변부식의 종류와 지난달의 구매 현황

[면담조사]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변부식의 가격과 질에 대한 만족 여부, 그리고 자변부식에 대한 의견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C6. 영치금으로 구입하는 부식의 가격은 시중가격과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p>① 매우 비싸다    ② 비싼 편이다    ③ 저렴한 편이다    ④ 매우 저렴하다</p> <p>C7. 영치금으로 직접 구입하는 부식의 질은 어떻습니까?</p> <p>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3.3. 식수의 제공	식수는 충분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식수는 충분하게 지급되고 있다. b. 겨울철에는 따뜻한 식수가 계속 제공되고 있다. c. 식수의 위생상태와 질에 대해 수용자는 만족하고 있다.	설문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20조 제2항은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부식과는 별도로 식수는 수용자들이 거실에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겨울철에는 온수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수의 위생 상태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식수의 적절한 공급여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p> <p>a. 식수가 부족하게 공급되지 않는지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되, 아래의 설문 C8에서 ①과 ②의 답변비율이 50% 이상이면 식수가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p> <p>b.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평가한다.</p> <p>c.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되, 아래의 설문 C9에서 ①과 ②의 답변비율이 50% 이상이면 수용자들이 식수의 위생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C8. 거실 내에서 마시는 식수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화장실의 수도물 등 사용 제외)</p> <p>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충분한 편이다    ④ 매우 충분하다</p> <p>C9. 식수의 위생상태와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p> <p>[면담조사]</p>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온수제공 여부, 식수의 위생상태와 질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1.3.4. 특별급식	특별급식은 적절하게 급여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국경일 등에 연간 9회 특별급식이 급여되고 있다. b. 규정에 의한 연간 9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급식이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c. 환자, 노약자, 임산부 및 유아 등에게 특별급식이 급여되고 있다. d. 수용자는 특별급식의 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행형법시행령 제82조는 “소장은 국경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급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소장은 환자, 노약자, 임산부 및 유아를 데리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죽 등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으며, 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급양관리지침 제14조에서는 특별급식의 횟수를 연간 9회에 걸쳐 국경일 및 기념일 등에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특별급식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b.의 경우는 특별급식의 횟수를 9회로 제한한 것이 법무부 예규이고 상위법에는 급여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규에 정해진 횟수 이외에 추가로 특별급식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b.에 해당할 경우 ‘탁월’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평가지침> a. b. c. 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하되 용도과에서 기록조사를 통해 특별급식의 급여상황을 확인하고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서 이를 확인한다. d.에 대해서는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되 아래 설문에 대한 수용자들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답변비율이 70% 이상이면 특별급식의 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C6. 전년도 특별급식의 지급 현황

[기록조사] ‘주·부식 급여결과 보고서(월보 및 연보)’ (용도과)

[면담조사]

용도과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급식의 급여상황을 파악하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 이를 확인한다.

[설문조사]

C10. 국경일 등에 지급되는 특별급식의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 ③ 만족스러운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하다

## C2. 영치

### C2.1. 영치물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2.1.1. 영치물품의 종류와 질	영치물품의 종류와 질은 적정한가?	세부지표	a. 영치물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b. 영치물품의 질에 대해 수용자는 만족하고 있다. c. 영치물품의 가격에 대해 수용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d. 수용자는 영치물품의 종류와 구입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설문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이 항목에서는 관급되는 의류와 침구, 생활용품 이외에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의류 및 침구, 생활용품 등의 영치물품들이 그 종류와 질에서 수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평가한다. 자변부식과 마찬가지로 자변물품 등을 영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구입가능한 자변물품의 종류가 품목별로 다양하여 수용자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정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품목별로 한 가지 물품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선택가능성을 배제할 뿐 아니라 제품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영치물품의 종류가 다양한지, 영치물품의 가격과 질은 적당한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의견을 확인한다.</p> <p>a. 영치물품이 품목별로 두 가지 이상 구입가능한지를 제출자료와 수용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한다.</p> <p>b.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되, 아래의 설문 C11에서 ①과 ②의 답변비율이 70% 이상이면 영치물품의 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c.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되, 아래의 설문 C12에서 ①과 ②의 답변비율이 70% 이상이면 영치물품의 가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d. 영치물품의 종류와 구입방법 등에 대해 자치회조직 등을 통한 공식적 의견제시가 가능한지를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한다.</p> <p>[제출자료] C7. 자변으로 구입가능한 영치물품의 종류와 가격</p>				

<p>[면담조사]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구입 가능한 자변물품 종류, 구입하고자 하는 자변물품의 종류와 구입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의 가능 여부 등을 질문하여 평가한다.</p> <p>[설문조사] C11. 자변으로 구입하는 의류와 생활용품 등 영치물품의 품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만족스러운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p> <p>C12. 자변으로 구입하는 의류와 생활용품 등 영치물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만족스러운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p>
---

**C2.2. 영치물품의 구매와 관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C2.2.1. 영치물품의 구매절차	영치물품의 구매과정에서 부당한 공동구매가 강요되고 있는가?	탁월(5)	설문 ①과 ②의 답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설문 ①과 ②의 답이 70% 이상 90% 미만	
		보통(3)	설문 ①과 ②의 답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설문 ①과 ②의 답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설문 ①과 ②의 답이 30% 미만	
<p>&lt;해설&gt; 현행 영치금품 관리규정은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할 경우 본인의 손도장을 정확하게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는 여러 차례의 지시공문을 통해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구매를 신청할 경우 담당교도관이 직접 수용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의 무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업무를 사동 소지(청소원)나 거실 봉사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각 거실의 봉사원이 대표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작성하고 거실 봉사원이 물품 신청자를 대신해서 손도장을 찍고, 사동근무자는 구매물품의 신청 및 교부 과정을 직접 감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영치물품의 구매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용자들 중에서 원치 않는 구매물품을 같은 거실에 수용된 다른 수용자들의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매절차를 준수하고 구매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영치금을 사용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2003.11.28.자 03진인1049 결정). 이 항목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영치금품의 구매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설문조사]

C14. 영치물품을 영치하거나 본인이 받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하다
- ③ 불편하지 않다                      ④ 전혀 불편하지 않다

## D. 보건의료

### D1. 의료 인력

#### D1.1. 의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1.1. 의사 1인당 수용정원	수용정원에 비하여 의사의 수가 충분한가?	탁월(5)	150명 미만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150명 이상 250명 미만	
		보통(3)	250명 이상 400명 미만	
		미흡(2)	400명 이상 500명 미만	
		시정요함(1)	500명 이상	

<해설> 의사 1인당 수용정원이 많을수록 의사의 업무량은 많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수용자의 의사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용정원이 많을수록 의사의 수는 더 많아야 한다. 즉, 의사 1인당 수용정원은 적을수록 좋다. 최소한 수용자 500명당 1인의 전임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현재의 수용인원을 의사의 수로 나눈다. [수용정원 ÷ 의사의 수]

1. '수용정원'은 각 구급시설에서 자료를 제출한 시점의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의사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치과의사 부분은 별도로 평가함)
3. 의사는 전임과 비전임을 구분하여야 한다. 비전임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 구급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면 0.5인으로 계산하며, 1주일에 1~2회만 구급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면 0.3인으로 계산한다.
4. 공중보건 의사는 전임으로 보며, 공중보건의 중에서 치과의사는 일반의사가 아니므로 '의사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출자료] D2.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

전임여부 (전임, 비전임, 공보의 구분)	전공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으로 명기함)	비전임인 경우: 진료시간 (예: 월-금, 10:00~12:00)	직책 (예: 의무과장, 의무관)

[직원면담] 의무과에서 의무과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본다.

- 1) 의사의 수, 전임-비전임 여부, 의무관의 전공, 공중보건 의사의 수 및 전공
- 2) 의무관이 비전임인 경우 '1주일 정기 진료시간' (진료요일, 진료횟수)

[수용자면담] 의무관이 비전임인 경우 수용자에게 정기 진료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탁월(5)	10명 미만	
D1.1.2. 병사수용정 의사 1인당 병사수용 정원과 진료인원 충분한가?	원과 1일 진료인원에 에 비하여 의사의 수가	우수(4)	10명 이상 20명 미만	제출자료 현장조사 기록조사
		보통(3)	20명 이상 30명 미만	
		미흡(2)	30명 이상 40명 미만	
		시정요함(1)	40명 이상	

<해설> 병사수용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일반병원으로 비유하면 입원환자에 해당한다. 집중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병사수용자가 많으면, 이들을 진료할 의사도 상대적으로 많아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 1인당 병사수용인원이 다소(多少)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져야 한다. 즉 의사 1인당 병사수용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평가결과로 이어진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별표4)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이나 (개인)의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의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구급시설에 대입하면, 1일 진료인원 3인은 병사수용인원 1인에 해당한다. 즉, 1일 평균 진료인원을 3분의 1로 나눈 값에 병사수용정원을 합한 인원 20인에 1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 (1일\ 평균\ 진료인원 \times \frac{1}{3}) + 병사수용정원 \} \div 의사의\ 수$

1. 1일 평균 진료인원은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과 순회 진료인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출자료는 단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의무과 기록(연보, 월보, 일일보고서)을 확인하여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진료인원을 정확히 산출한다.
2. 병사수용정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해두며, 현장조사 시에 병사를 관찰하고 병사수용정원을 확인한다.
3. 의사의 수는 D1.1.1.을 참조한다. (치과의사 제외)
4. 1일 평균 진료인원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울 때는 병사수용정원만을 가지고 평가하되, 평가지표상의 기준을 각각 2분의 1로 낮추어 평가한다.

[제출자료]

- D21. 병사수용정원 및 현재 병사수용인원
- D30. 최근 1개월간의 진료인원과 진료건수(기간 명시), 1일 평균진료인원
- D31. 최근 1개월간의 의무과연출인원(기간 명시)과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
- D33. 순회진료

최근 1개월간의 순회진료인원 (기간 명시)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순회진료인원	
최근 1개월간의 1주일 평균 순회진료인원	
순회진료의 장소	
순회진료시간 (의사별료 구분하여 작성)	

<p>[현장조사]                  병사를 방문하여 각 실별 수용정원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 조사한다.</p> <p>[기록조사]                  의무과 기록(연보, 월보, 일일보고서)을 검토하여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과 순회 진료 인원을 산출한다.</p>
--

D1.2. 치과 의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2.1. 치과 의사가	충분한 치과 의사가 확보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전임 치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b. 매주 3회 이상 치과 전문의의 진료 시간이 정해져 있다. c. 치과 의사 1인당 수용정원이 1,000명 이하이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각 구급시설마다 치과진료시간이 다르다. 최근에 법무부는 각 구급시설에 배정되는 공중보건 의사를 증원하였다. 이처럼 증원된 공중보건 의사 중의 일부는 치과 의사이다. 전임 치과 의사가 있는 구급시설에서는 치과진료가 매일(평일)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임 치과 의사가 1명도 없는 구급시설에서는 외부 치과 의사와 협약을 맺고 1주일(또는 1월)에 1~2회씩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치과진료를 행하고 있다. 외부 치과 의사가 자원봉사로 시설을 방문하여 무료진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2조 제3항은 “모든 피구금자는 유자격 치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치과진료가 매일(평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각 구급시설에는 전임 치과 의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p> <p>a. 전임 치과 의사 유무: 공중보건 의사가 치과 의사인 경우 전임 의사로 본다.</p> <p>b. 매주 3회 이상 치과 전문의의 진료 여부: 실제로 매주 3회 이상 정기적인 치과진료시간이 있는지 확인한다.</p> <p>c. 치과 의사 1인당 수용정원: 치과 의사를 수용정원을 나눈다. 치과 의사가 비전임인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 구급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면 0.5인으로 계산하며, 1주일에 1~2회만 방문하여 진료하면 0.3인으로 계산한다.</p>				

[제출자료] D3. 치과의사

전임여부 (전임, 비전임, 공보의 구분)	진료시간 (전임, 비전임 모두 명기) (예: 월-금, 10:00~12:00)	전문의 여부 (‘전문의’와 ‘일반’으로 구분)

[직원면담]  
의무과직원과 면담하여 제출자료의 치과진료시간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수용자면담]  
수용자면담을 통해 제출자료상의 치과진료시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치과진료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무슨 요일, 몇 시에 있습니까?”

### D1.3. 정신과 의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3.1 정신과 의사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이 가능한가?	탁월(5)	7점 이상	면담조사 기록조사
		우수(4)	5~6점	
		보통(3)	4점	
		미흡(2)	3점	
		시정요함(1)	2점 이하	

<해설>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는 사회적 격리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수용자들에게는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2조 1항도 “모든 구금시설에는 어느 정도 정신의학에 식견이 있는 1명 이상의 유자격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기준규칙 제82조는 “①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용자는 교도소에 구금해 두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용자는 의료관리를 받는 전문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③ 이들 수용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④ 구금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구금시

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4.6.4.자 03진인1328 결정).

<평가지침>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다.

전임 의사	a. 정신과 전문의가 전임으로 시설에서 근무함	5점	합계:
비전임 의사	b. 정신과 전문의가 매주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4점	
	c. 정신과 전문의가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3점	
자원봉사	d. 정신과 전문의가 매주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3점	
	e. 정신과 전문의가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2점	
	f. 정신과 전문의가 부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	1점	

[제출자료] D4. 정신과의사의 시설방문 진료 여부, 진료시간

[면담조사]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정신과진료현황을 살펴보고, 정기적인 정신과진료가 이루어지 알아보도록 한다.

[기록조사]

월보 및 연보를 살펴보고, 정신과 진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D1.4. 전문의에 의한 진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4.1. 전문의에 의한 진료 가능성	각 전공별로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탁월(5)	6개 과목 이상	제출자료 면담조사 기록조사
		우수(4)	5개 과목	
		보통(3)	4개 과목	
		미흡(2)	3개 과목	
		시정요함(1)	2개 과목 이하	

<해설> 질병의 종류에 따라 각 전공별로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제2항은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치료시설 또는 민간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자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지침> 전문의로부터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과목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시설의사가 전문의인 경우 진료과목의 수에 포함시킨다.
2. 외부 전문의가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수에 포함시킨다. 자원봉사의 경우라도 상관없다.

3. 치과와 정신과는 여기서 제외한다. (앞의 평가지표에 있기 때문임)

[제출자료]

D2.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

전임여부 (전임, 비전임, 공보의 구분)	전공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으로 명기함)	비전임인 경우: 진료시간 (예: 월-금, 10:00~12:00)	직책 (예: 의무과장, 의무관)

D5. 방문의사(자원봉사)의 전공과 진료시간

	전공	진료시간 (예: 월-금, 10:00~12:00)	소속 (병/의원)
1			
2			
3			
4			

[면담조사]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전문의로부터 진료가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기록조사] 진료일지(월보, 연보)를 검토하여 각 전공별 진료가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D1.5.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5.1. 간호사 1인당 병사수용 정원과 진료인원	간호사 1인당 병사수용정 원과 1일 진료인원이 적정한가?	탁월(5)	1명 미만	제출자료
		우수(4)	1명 이상 2명 미만	
		보통(3)	2명 이상 4명 미만	
		미흡(2)	4명 이상 8명 미만	
		시정요함(1)	8명 이상	

<해설> 구급시설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런데 각 구급시설마다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가 부족하면, 그만큼 의사의 진료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병사수용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구급시설마다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구급시설의 의료인력 부족문제는 주로 '의사의 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의사만 있으면 진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의사의 진료활동을 돕는 간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원활한 진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별표 4)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이나 (개인)의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인에 대하여 간호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입원환자 20인에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간호사의 경우는 입원환자 2인에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간호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간호사의 경우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구급시설에 대입하면, 1일 평균 진료인원 12인은 병사수용인원(입원환자) 1인에 해당한다. 구급시설의 경우 의무과 정복 직원 중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의무과 정복 직원도 간호사의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3항 참조).

<평가지침>  $[(1일\ 평균\ 진료인원 \div 12) + 병사수용정원] \div 간호사의\ 수$

1. 1일 평균 진료인원은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과 순회 진료인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출자료는 단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의무과 기록(연보, 월보, 일일보고서)을 확인하여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진료인원을 정확히 산출한다.
2. 병사수용정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해두며, 현장조사 시에 병사를 관찰하고 병사수용정원을 확인한다.
3. 간호사는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이수한 정식 간호사를 의미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의무과 정복 직원은 계호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수'를 산출할 때는 0.5인으로 계산한다.
4. 유자격 간호사가 1명도 없는 구급시설은 무조건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D1. 의료인력(의사 ○명, 약사 ○명, 간호사 ○명, 약사 ○명, 의료기사 ○명)

D7. 의사, 약사, 간호사를 제외한 의무과(정복)직원의 업무 (총 인원 별도 명기)

	의무과 직원의 주요업무내역 (예: 진료보조, 행정, 방역)	간호조무사 자격 여부	직위, 직급
1			
2			
3			
4			

D21. 병사수용정원 및 현재 병사수용인원

D30. 최근 1개월간의 진료인원과 진료건수(기간 명시), 1일 평균진료인원

D31. 최근 1개월간의 의무과연출인원(기간 명시)과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

D33. 순회진료

최근 1개월간의 순회진료인원 (기간 명시)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순회진료인원	
최근 1개월간의 1주일 평균 순회진료인원	
순회진료의 장소	

<p>순회진료시간 (의사별료 구분하여 작성)</p>	
<p>[현장조사] 병사를 방문하여 각 실별 수용정원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 조사한다.</p> <p>[기록조사] 의무과 기록(연보, 월보, 일일보고서)을 검토하여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과 순회 진료 인원을 산출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5.2. 약사 1인당 1일 투약인원	1일 투약인원에 비하여 약사는 충분한가?	탁월(5)	80명 미만	제출자료 면담조사 기록조사
		우수(4)	80명 이상 160명 미만	
		보통(3)	160명 이상 240명 미만	
		미흡(2)	240명 이상 320명 미만	
		시정요함(1)	320명 이상	

<해설> 약을 남용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약을 복용하는 수용자들이 많고, 자변구매약품을 복용하는 수용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각 구금시설마다 약의 조제업무를 담당하고 약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약사가 필요하다.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확하게 조제할 뿐만 아니라, 약의 정확한 복용방법에 대해서도 수용자 및 의무과 직원에게 신뢰도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구금시설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자변구매도 포함하여 투약인원이 상당히 많고, 수많은 종류의 약품을 다루어야 하는 각 구금시설에 약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금시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는 하지만, 수용자의 투약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자변약품과 차입약품의 활용도 크므로 이러한 약품들을 조제하고 감독 관리할 ‘약사’가 필요하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인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구금시설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모든 구금시설이 병사시설을 갖춘 수용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기준을 원용할 수는 있다. 즉, 1일 투약인원 80명에 약사 1인씩을 두어 약품의 조제는 물론 약품관리와 약품복용감독 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침> 약사 1인당 투약인원은 [1일 평균 투약인원 ÷ 약사의 수]로 계산한다.

1. 1일 평균 투약인원은 ‘관에서 지급하는 약품’을 복용하는 인원을 말한다.
2. 그러므로 차입약품과 자변구매약품을 복용하는 인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변구매약품 중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약품이나 영양제가 대부분이며, 차입약품은 외부진료를 통해 외부의사가 처방하는 것으로서 시설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약사가 1명도 없는 구금시설의 경우는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D1. 의료인력(의사 ○명, 약사 ○명, 간호사 ○명, 약사 ○명, 의료기사 ○명)  
 D34. 최근 1개월간의 투약인원과 1일 평균 투약인원

투약종류	최근 1개월간의 투약인원 및 건수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인원 및 건수
관지급 약품		
차입약품		
자변약품		

[면담조사] 약품 담당 의무과 직원에게 1일 평균 투약인원에 대해서 질문한다.

[기록조사]  
 의무과 투약기록(연보, 월보, 일일보고서)을 검토하여 1일 평균 투약인원을 정확히 산출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5.3. 의료기사 의료기사	필요한 의료기사를 확보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방사선기사가 1명 이상 있다. b. 임상병리기사가 1명 이상 있다. c. 재활(물리)치료사가 1명 이상 있다.	제출자료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의사, 간호사, 약사 이외에 전문적인 의료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모든 구급시설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의료기사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의료기사(방사선기사, 임상병리기사, 재활치료사)의 유무 확인</p> <p>[제출자료] D6. 방사선기사, 임상병리기사, 재활(물리)치료사 유무</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1.5.4. 의무과 직원 1인당 수용정원	의무과 직원이 충분한가?	탁월(5)	50명 미만	제출자료
		우수(4)	50명 이상 100명 미만	
		보통(3)	100명 이상 150명 미만	
		미흡(2)	150명 이상 200명 미만	
		시정요함(1)	200명 이상	

<해설> 구급시설에서 의무과 직원은 수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과 방역 등을 책임지며, 외부진료 시에는 계호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외부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과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진료 대기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용인원 대비 의무과 직원의 수가 적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의무과 직원의 수는 기본적으로 의사 대비 3배수는 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의무과직원 1인당 수용정원은 [수용정원 ÷ 의무과직원의 수]로 계산한다.  
 1. 의무과직원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의무과에서 근무하는 순수한 교정직 공무원의 수를 계산하도록 한다.  
 2. 의무과직원의 수는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며, 현장조사 시에 의무과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제출자료]

D7. 의사, 약사, 간호사를 제외한 의무과(정복)직원의 업무 (총 인원 별도 명기)

	의무과(정복)직원의 주요업무내역 (예: 진료보조, 행정, 방역)	직위, 직급
1		
2		
3		
4		
5		
6		
7		
8		
9		
10		
11		

## D2. 의료(의무과)시설

### D2.1. 진료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1.1. 1일 평균 진료인원 대비 진료실의 면적	진료실의 면적이 진료인원에 비추어 적당한가?	탁월(5)	1.32㎡ 이상	제출자료 면담조사 기록조사
		우수(4)	0.99~1.32㎡	
		보통(3)	0.66~0.99㎡	
		미흡(2)	0.33~0.66㎡	
		시정요함(1)	0.33㎡ 미만	

<해설> 진료실의 면적이 적당한가 여부는 실제로 진료를 받는 인원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수용인원이 적더라도 진료인원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진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실의 면적은 1일 평균 진료인원에 비례의 관계에 있다. 순회 진료는 사동에서 실시되므로, 여기서 진료인원이란 의무과연출인원을 뜻한다. 참고로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따르면 진료실의 크기는 최소한 20㎡ 이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진료실의 전체 크기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진료인원에 상관없이 ‘시정요함’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지침> 1일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진료실의 면적은 [진료실의 면적(㎡) ÷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으로 계산한다. 단,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이 수용정원의 3% 미만일 때에는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을 수용정원의 3%로 계산한다. 의무과 연출을 잘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 진료실은 일반진료실을 의미하며, 치과진료실은 제외한다.
2. 진료실의 면적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며, 평(坪)은 3.3을 곱하여 평방미터(㎡)로 환산한다.
3. 여기서 진료인원은 의무과 연출인원으로 한정하며, 순회 진료인원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순회 진료는 진료실에서 하지 않기 때문이다.
4. 1일 평균 의무과연출인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고, 현장조사 시에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의무과 1일보고서나 진료일지를 검토한다.
5. 진료실의 전체 크기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진료인원에 상관없이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D9. 진료실(치과진료실 제외)의 면적

D31. 최근 1개월간의 의무과 연출인원(기간 명시)과 1일 평균 의무과연출인원(투약환자, 치과환자 제외)

[면담조사]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1일 의무과연출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확인한다.

[기록조사]  
 진료일지(1일 보고서, 월보, 연보)를 검토하여 하루 평균 의무과연출인원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여 제출자료의 인원과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1.2. 진료대기 실의 환자 편의성	진료실대기 실이 환자가 대기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바람이 잘 통한다. (선풍기설치) b. 수용정원 1,000명 이하의 구급시설의 경우는 의자가 10석 이상, 수용정원 1,000명 이상의 구급시설의 경우는 15석 이상의 의자가 갖추어져 있다. c. 대부분 딱딱하지 않은 편안한 의자이다. d.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해설> 환자들이 의무과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진료대기실의 구조와 환경이 좋아야 한다. 특히 환자들이 앉아 있기에 편한 의자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여름철에는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진료대기실의 의자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참고로 범무시설기준규칙에 따르면 수용자 1,000명 미만의 구급시설의 경우는 최소한 10석 이상, 매500명 증가할 때마다 3석을 더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평가지침> 현장조사 시 의무과에서 진료대기실의 구조와 환경 및 설비시설을 관찰하여 세부지표 a, b, c, d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조사]

- a. 환기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b. 의자가 몇 석인지 조사한다.
- c. 의자가 딱딱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한다. 직접 앉아보고, 의자가 앉기에 편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d.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조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1.3. 치과 진료실	치과진료실의 면적이 충분하며, 진료하기에 적합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치과진료실의 면적이 수용정원 1,000명 미만의 경우 17㎡ 이상이고, 수용정원 1,000명 이상의 경우 34㎡ 이상이다. b. 치과유닛이 수용정원 1,000명 미만의 경우 1대 이상이고, 수용정원 1,000명 이상의 경우 2대 이상이다. c. 치과위생사가 1명 이상 있다.	제출자료
		우수(4)	모두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수용자들은 일반시민에 비하여 치과질환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각 구급시설에는 치과진료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용인원이 많은 경우 치과진료실의 면적도 상대적으로 넓어야 한다. 참고로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따르면 치과진료실의 경우 각 구급시설마다 17㎡의 1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구급시설마다 치과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용정원 1,000명 이상의 대형 구급시설의 경우 2실 이상의 치과진료실이 필요하다. 치과유닛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 1인에 최소한 1명의 치과위생사가 있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치과진료실의 면적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며, 평(坪)은 3.3을 곱하여 평방미터(㎡)로 환산한다. 치과진료실이 없는 구급시설의 경우는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치과진료실에 들어가서 치과유닛 수를 확인한다.</p> <p>[제출자료] D.12 치과진료실의 면적 (치과유닛 수도 함께 명기함)</p>				

D2.2. 기타 의무과 시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2.1. 의무과의 실별 종류	약제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사실 등이 있는가?	세부지표	a. 별도의 약제실이 있다. b. 별도의 방사선실이 있다. c. 별도의 임상병리실이 있다. d. 별도의 약품보관실이 있다. e. 별도의 재활(물리)치료실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구급시설 의무과에는 진료실과 진료대기실 이외에도 약제실(약국), 방사선실(X-ray 실), 약품창고, 임상병리실, 재활(물리)치료실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구급시설의 경우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더불어 일반병원의 입원실에 해당하는 병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에 열거한 의무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참고로 범무시설기준규칙에 따르면 진료실과 진료대기실 이외에도 X-ray실, 약국, 약품창고, 영안실, 암실 등을 갖추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안실의 경우는 사망사고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방사선실과 약국(조제실), 약품창고 및 임상병리실과 재활(물리)치료실은 꼭 있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의무과의 실별 종류를 미리 파악하고 의무과 시설조사 시에 위의 각 시설의 유무를 확인한다. 기타 특별히 유용한 시설이 있으면, a, b, c, d, e 중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출자료] D8. 의무과의 실별 종류 및 각각의 면적</p> <p>[현장조사] 의무과 시설조사를 할 때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실별 종류를 확인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진료실을 제외한 의무과의 실별 종류</th> <th>있음</th> <th>없음</th> </tr> </thead> <tbody> <tr> <td>a. 약제실</td> <td></td> <td></td> </tr> <tr> <td>b. 방사선실</td> <td></td> <td></td> </tr> <tr> <td>c. 임상병리실</td> <td></td> <td></td> </tr> <tr> <td>d. 약품창고</td> <td></td> <td></td> </tr> <tr> <td>e. 재활(물리)치료실</td> <td></td> <td></td> </tr> <tr> <td>f. 기타 시설 ( )</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진료실을 제외한 의무과의 실별 종류	있음	없음	a. 약제실			b. 방사선실			c. 임상병리실			d. 약품창고			e. 재활(물리)치료실			f. 기타 시설 ( )		
진료실을 제외한 의무과의 실별 종류	있음	없음																							
a. 약제실																									
b. 방사선실																									
c. 임상병리실																									
d. 약품창고																									
e. 재활(물리)치료실																									
f. 기타 시설 ( )																									

### D2.3. 의료장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2.3.1. 기본 의료장비	필수적인 의료장비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가?	탁월(5)	15점 이상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12~14점	
		보통(3)	9~11점	
		미흡(2)	6~8점	
		시정요함(1)	0~5점	
<p>&lt;해설&gt; 구급시설 의무과에는 기본적인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22조 2항 제2문은 “입원실이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p>				

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병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든 구급시설 의무과에는 필요한 의료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각각의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각 의료장비의 구비 여부는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며, 방문조사 시에 눈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그 활용도에 대해 의무과직원과의 상담 및 의무과기록을 검토하여 살펴본다. 아래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1차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의료장비가 있는 경우 추가하여 합산 평가한다. X-ray기는 최근 1개월간 30회 이상, 심전도기, 초음파기, 내시경기구, 응급처치기(산소호흡기)는 최근 1개월간 2회 이상 사용하였으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의료장비	구비하고 있으며, 활용도 높음 (2점)	구비하고 있으나, 활용도 낮음 (1점)	없음 (0점)	점수
X-ray기				
혈액검사기				
심전도기				
초음파기				
내시경기구				
적외선치료기				
응급처치기(산소호흡기)				

[제출자료] D17. X-ray기, 혈액검사기, 심전도기, 초음파기, 내시경기구, 적외선치료기

	구비 유무 (장비의 수)	최근 1개월간의 활용횟수 (기간 명시)	노후 여부 (구입연도)
X-ray기			
혈액검사기			
심전도기			
초음파기			
내시경기구			
적외선치료기			
응급처치기(산소호흡기)			

[면담조사]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각종 의료장비의 활용도를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기록(예: 심전도기 사용일지)을 검토한다.

### D3. 병사

#### D3.1. 병사수용능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1.1. 병사 수용정원	수용자	탁월(5)	12명 이상	제출자료 현장조사
	100명당	우수(4)	9명 이상 12명 미만	
	병사	보통(3)	6명 이상 9명 미만	
	수용정원은	미흡(2)	3명 이상 6명 미만	
	충분한가?	시정요함(1)	3명 미만	

<해설> 수용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병사수용능력이 부족하면, 일반거실에서 병사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병사에 수용해야 할 환자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병사는 수용인원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용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병사수용정원은 병사수용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수용자 가운데 약 10%를 병사에 수용할 수 있는 정도면 우수하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3%이하의 인원밖에 수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평가지침> 수용자 100명당 병사수용정원은 [병사수용정원 ÷ 수용정원 × 100]으로 계산한다. 병사수용정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한다. 병사수용정원이 병사면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사면적 1평(3.3㎡)당 1명으로 계산하여 병사수용정원을 다시 정하거나 현재의 병사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D21. 병사수용정원 및 현재 병사수용인원

[현장조사]

병사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본다. 일반수용거실에 비하여 더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수용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병사수용정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1.2. 병사 수용정원 대비 병사면적	병사수용정 원에 비추어 병사면적이 충분한가?	탁월(5)	7.3㎡ 이상	제출자료
		우수(4)	6.3~7.3㎡	
		보통(3)	4.3~6.3㎡	
		미흡(2)	3.3~4.3㎡	
		시정요함(1)	3.3㎡ 미만	

<해설> 병사수용능력은 병사면적에 좌우된다고 본다. 수용정원에 비추어 병사면적이 너

무 작다면, 병사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구급시설은 수용정원에 상응하는 크기의 병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별표2)에 따르면,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인 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원용하면, 병사수용인원 1인당 최소한 4.3㎡ 이상은 되어야 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도 혼거병실이나 독거병실의 면적을 수용자 1인당 4.3㎡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지침> [병사면적(㎡) ÷ 병사수용정원]

1. 병사면적은 제출자료로 판단하며, 평(坪)은 3.3을 곱하여 평방미터(㎡)로 환산한다.
2. 병사수용정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고, 현장조사 시에 확인한다.

[제출자료]

D20. 병사의 실별 종류 및 각각의 면적과 총면적  
D21. 병사수용정원 및 현재 병사수용인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1.3. 병사수용인원 대비 병사면적	병사수용인원에 비추어 병사면적이 충분한가?	탁월(5)	7.3㎡ 이상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6.3~7.3㎡	
		보통(3)	4.3~6.3㎡	
		미흡(2)	3.3~4.3㎡	
		시정요함(1)	3.3㎡ 미만	

<해설> 현재 병사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 1인당 거실면적은 현 시점의 실제적인 병사수용능력을 보여준다. 몸이 편치 않은 환자들이 거하는 병사는 일반거실에 비추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할당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별표2)에 따르면,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인 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원용하면, 병사수용인원 1인당 최소한 4.3㎡ 이상은 되어야 한다. 1평(3.3㎡)도 안 되는 공간에 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심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해야 한다.

<평가지침> 병사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은 [병사면적(㎡) ÷ 병사수용인원]으로 계산한다.

1. 병사면적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며, 평(坪)은 3.3을 곱하여 평방미터(㎡)로 환산한다. 병사거실 중 공실(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실)의 면적은 병사면적에서 제한다. 현재 병사에 수용 중인 환자 1인당 거실면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병사수용인원은 제출자료 시점에 현재 병사에 수용 중인 인원을 의미한다.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두며, 현장조사 시에 확인하도록 한다. 제출시점과 현장조사시점의

<p>병사 수용인원이 서로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점의 병사수용인원을 병사수용인원으로 한다.</p> <p>[제출자료] D20. 병사의 실별 종류 및 각각의 면적과 총면적 D21. 병사수용정원 및 현재 병사수용인원</p> <p>[현장조사] 제출자료 시점의 병사수용인원과 시설방문시점의 병사수용인원이 큰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다. 공실이 있는지 확인한다.</p>
---

### D3.2. 격리병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2.1. 격리병실의 종류와 체계	격리병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탁월(5)	a. 전염병 환자 거실에는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설비가 되어 있다. b. 중환자실이 설치되어 있음. c. 중환자실 수용정원이 전체 병사수용정원의 5% 이상임. d. 중환자실의 구조와 설비는 일반병실과 큰 차이가 난다. e. 중환자실에는 간병부가 근무한다. f. 병동거실이 질병의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병동 거실은 질병의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전염병 환자를 구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별표3)에 따르면,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타인 또는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염병 환자 거실은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각 구급시설마다 병사에는 1개 이상의 중환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환자실의 설비수준은 일반병실의 거실과 큰 차이가 나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별표3)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병상 수는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구급시설에 적용하면, 중환자실 수용가능인원은 최소한 병사수용정원의 5% 이상은 되어야 한다. 중환자가 있을 경우 간병부가 꼭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병동 거실은 질병의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전염병환자거실과 중환자실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병동 거실의 종류와 수를 조사한다. 특히 중환자실과 전염병환자거실의 설비와 구조를 조사한다.

- a. 전염병환자거실의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b. 중환자실의 설치유무를 조사하고, 중환자실 수용가능인원과 전체 병사수용정원을 대비하여 본다.
- c. 중환자실은 최소한 현재 의정부교도소의 중환자실 정도의 설비와 구조를 지녀야 한다. (환자용 침대, 90cm 이상의 출입문, 화장실, 온수시설 등)
- d. 중환자실 간병부의 유무
- e. 질병의 종류에 따른 체계적 수용 여부를 조사한다.

[제출자료]

D22. 격리병실의 종류와 수 (독거실과 혼거실을 구분할 것)

D24. 전염병 환자 격리 여부 (구체적으로 명기)

D25. 중환자실 설치 여부

[현장조사]

병사를 조사할 때 격리병실의 종류와 수를 조사한다. 병사수용인원현황판을 보면서 각 병실의 체계적 분류와 환자의 질병에 따른 적절한 분리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전염병환자거실과 중환자실의 존재 여부와 각 격리병실의 설비와 구조를 자세하게 조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2.2. 격리병실의 관리	격리병실의 청결과 위생은?	탁월(5)	11~12점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9~10점	
		보통(3)	7~8점	
		미흡(2)	5~6점	
		시정요함(1)	0~4점	
<p>&lt;해설&gt; 병사는 일반사동에 비하여 병원이나 세균의 감염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청소와 모포털이도 자주 하도록 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격리병실에 대한 소독횟수, 모포털이 횟수, 모포교환주기는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며, 현장조사 시에 관련내용의 진위 여부를 의무과직원과 병사수용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p>				

병사	(2점)	(1점)	(0점)	점수
격리병실 소독횟수	1일 1회 이상	주 3회 이상	주 3회 미만	
격리병실 담요세탁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월 2회 미만	
담요건조 (모포털이)	1일 1회 이상	주 3회 이상	주 3회 미만	
환자 퇴소 후 소독방법	전체적인 소독		부분적인 소독	
격리병실 환자의 목욕방법	동계 및 하계 모두 거실 내 온수목욕	겨울철에만 거실 내 온수목욕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목욕	
격리병실 환자의 목욕시간	1일 1회 이상	주 3회 이상	주 3회 미만	

[제출자료] D23. 격리병실의 관리

지난 1개월간의 소독 횟수 (기간 명기)	
소독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	
지난 1개월간의 모포교환 횟수 (기간 명기)	
지난 1개월간의 모포털이 횟수 (기간 명기)	
격리병실 수용자의 목욕방법과 목욕횟수	
기타 특별관리 내역 (있는 경우에 한함)	

[면담조사]

병사수용자와 면담을 통해 제출자료의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D3.3. 병실생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3.1. 병동거실	환자들이 거실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가?	탁월(5)	8점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7점	
		보통(3)	6점	
		미흡(2)	5점	
		시정요함(1)	0~4점	
<p>&lt;해설&gt; 병동 거실은 일반거실에 비하여 환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적어야 한다. 일반거실보다 화장실과 세면시설의 이용,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선풍기 활용 등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 시에 병동 거실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 아래 표를 참조하여 평가하도록 한다.</p>				

병동거실	(2점)	(1점)	(0점)	점수
화장실	모든 병동거실에 좌변기 설치됨	중환자실을 비롯한 일부 병동거실에 좌변기 설치됨	좌변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세면대	화장실 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면대를 설치함	화장실 내에 간이 세면대를 설치하거나 거실 내에 세면대 설치함	화장실에서 별도의 세면대 없이 세면하고 있음	
난방(겨울)	거실 내에 온돌장치 되어 있음	거실 내에 온돌 이외의 난방시설 설치되어 있음	거실 내에 난방장치 되어 있지 않음	
선풍기(여름)	에어컨 설치됨	선풍기 설치됨	선풍기 설치되어 있지 않음	

[제출자료]  
D26. 병동거실의 화장실 (좌변기 설치된 거실의 수)  
D27. 병동거실의 난방의 종류 (온돌, 전기판넬 등)

[현장조사] 병동거실의 기본설비구조를 확인하고 위의 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3.2. 병사 수용자의 운동	환자들이 운동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세부지표	a. 1회 운동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b. 1회 운동시간이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 c. 운동장이 병사와 가까워 접근하기 용이하다. (최소한 도보 3분 이내) d. 운동장의 크기가 최소한 가로 100m, 세로 20m 이상이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병사 수용환자들에게도 규칙적인 실외운동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병사에서 운동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실외작업에 출력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면 매일 적어도 1시간 정도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평가지침> 병사수용자의 1회 운동시간을 조사하고, 운동장과의 접근성과 운동장의 크기를 조사하여 평가한다. 병사운동장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d’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D28. 병사운동(장)

	병사수용자	일반수용자와 비교
1회 운동시간 (분)		
운동장과의 접근성	도보 ( )분 이내	
운동장의 크기 (가로, 세로 길이)	(병사운동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조사]  
병사운동장의 크기를 확인하고, 병동거실과 병사운동장과 도보 몇 분 이내의 거리에 놓여 있는지 살펴본다.

[면담조사] 병사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1회 운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3.3.3. 병사수용자의 목욕	환자들이 목욕하기에 어려움은 없는가?	세부지표	목욕시간, 목욕횟수, 목욕장소 (제출자료) (현장조사)
		a.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목욕횟수가 많다.	
		b.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목욕시간이 길다.	
		c. 여름철에도 온수목욕이 가능하다.	
		d.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목욕도우미(간병부)의 보조를 받는다.	
e. 목욕탕(실)에 환자용 안전손잡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f. 탕(욕조)안에 들어가 목욕할 수 있다.			
g. 온수의 온도를 수용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h. 샤워꼭지가 벽의 낮은 곳에도 설치되어 있어 앉아서 목욕할 수 있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6~7개 해당		
보통(3)	5개 해당		
미흡(2)	4개 해당		
시정요함(1)	3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병사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목욕은 규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목욕시간도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p>			

<평가지침> 제출자료의 도표를 참조하여 a, b, c, d, e, f, g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a. 목욕횟수는 기본적으로 동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b. 목욕시간도 동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병사수용자의 1회 목욕시간이 최소한 10분 이상 더 길 때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목욕시간이 긴 것으로 판단한다.
- c. 병사거실 내에 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하계온수목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 d. 간병부의 1회성 목욕보조는 목욕도우미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목욕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목욕도우미로 보아야 한다.
- e, f, g, h. 병사수용자 목욕시설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D29. 병사수용자의 목욕

	병사수용자	일반수용자와 비교
목욕횟수 (동계)		
목욕횟수 (하계)		
1회 목욕시간 (동계기준)		
하계 온수목욕 가능 여부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목욕도우미(간병부) 유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목욕탕 안전손잡이 설치여부		
'탕' 입수목욕 가능 여부	(예: '샤워'만 가능)	

[현장조사]

병사수용자의 목욕시설을 관찰하고,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와 탕(욕조)안에 들어가 목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샤워용 수도꼭지의 구조를 살펴보고 온도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한다.

[면담조사]

병사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1) 목욕횟수, 2) 목욕시간, 3) 하계 온수목욕 가능여부, 4)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목욕도우미(간병부) 유무, 5) 목욕시설에 환자용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6) 탕(욕조) 안에 들어가 목욕할 수 있는지 여부, 7) 목욕을 할 때 온수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D4. 의료서비스

### D4.1. 의무과 연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1.1. 의무과 연출의 수월성	의무과 연출은 수월한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제출자료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p>&lt;해설&gt;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과 연출이 수월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즉, 의사의 진료를 원하는 수용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를 기초로 평가하되, 제출자료를 참고한다.</p> <p>[설문조사]</p> <p>D1. 의무과 연출을 신청하면 의무과 연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대체로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④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p> <p>[제출자료]</p> <p>D31. 최근 1개월간의 의무과연출인원(기간명시)과 1일 평균 의무과연출인원(투약환자, 치과환자 제외함)</p>				

### D4.2. 진료의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2.1. 의사의 진료의 만족도	의사의 진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탁월(5)	설문 19에서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이고, 설문 20에서 ②의 응답이 10% 미만인 경우	설문조사 면담조사
		우수(4)	설문 19에서 ①과 ②의 답변이 설문 30% 미만이고, 설문 20에서 ②의 답변이 30% 미만인 경우	

		보통(3)	설문 19에서 ①과 ②의 답변이 설문 50% 미만이고, 설문 20에서 ②의 답변이 50% 미만인 경우
		미흡(2)	설문 19에서 ①과 ②의 답변이 설문 70% 미만이고, 설문 20에서 ②의 답변이 70% 미만인 경우
		시정요함(1)	설문 19에서 ①과 ②의 답변이 설문 70% 이상이거나, 설문 20에서 ②의 답변이 70%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만이라도 70% 이상인 경우)

<해설> 진료행위는 의료서비스의 핵심내용이다.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구급시설 내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료의 만족도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자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도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기는 하지만, 2~3명의 수용자면담을 통해서만 전체 수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단지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보충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관이 구치소 수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면서 비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구급시설의 장에게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3.3.4.자 02진인1029 결정).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되, 수용자면담조사를 보충적으로 참고한다. 설문 D2.와 D3.은 수용자에게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있다. 첫째는 의사가 수용자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는 입장인가 하는 질문이고, 둘째는 의사가 수용자에게 진료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설문조사]

D2. 의무관은 당신이 호소하는 얘기를 잘 들어 주는 편입니까?

① 전혀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② 나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편이었다.  
 ③ 나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편이었다.  
 ④ 나의 이야기를 매우 잘 들어 주었다.

D3. 의무관은 진찰 후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면담조사] 수용자에게 위 2개 설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물어본다.

D4.3. 응급환자치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3.1. 응급환자 치료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의사의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가?	탁월(5)	①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면담조사
		우수(4)	①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보통(3)	①의 비율이 70% 미만이지만, ①과 ②의 비율이 합쳐서 70% 이상	
		미흡(2)	①과 ②의 비율이 합쳐서 70% 미만이고, ①과 ② 및 ③의 비율이 70% 이상	
		시정요함(1)	①과 ② 및 ③의 비율이 70% 미만	
<p>&lt;해설&gt;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구급시설에서 의사들은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곧 구급시설로 복귀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 형식적으로는 -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말, (공)휴일의 진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 의무과직원으로부터 모두 ‘그렇다’는 확신에 찬 대답만을 듣게 된다. 따라서 정말로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열려 있고, 이때에도 의사가 시설에 복귀하여 진료를 해주는지 알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용자가 몸이 아픈 경우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면담을 요구하는 수용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이 설문은 야간, 주말, 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사의 진료를 요청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질문내용은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①의 답변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시스템이 실제적으로도 잘 구축되어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는 ①의 비율, ①과 ②를 합산한 비율, ①과 ② 및 ③을 합산한 비율, ④와 ⑤를 합산한 비율을 각각 산출하도록 한다.</p> <p>[설문조사]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진료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주세요.) D4.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① 의사면담을 신청한 날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② 의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경미한 증세라서 간호사나 의무과 직원을 통해 약을 받았다. ③ 하루나 이틀 지나서 평일 진료시간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④ 의사를 만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외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⑤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p> <p>[면담조사] 설문과 동일한 내용을 수용자에게 질문한다.</p>				

D4.4. 순회 진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4.1. 순회 진료 방법과 장소	순회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순회 진료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b. 의사 1인당 순회 진료인원이 평균 25명 이상 45명 이하이다.											
			c. 순회 진료장소가 진료하기에 적합하다. (쾌적함, 청결함, 조용함)											
			d. 순회 진료장소 안의 컴퓨터로 의무과 진료프로그램(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e. 징별사동(조사실)도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순회 진료는 보안상의 문제(계호인력의 부족)로 의무과 연출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직접 사동을 순회하며 진료를 요청하는 수용자나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찾아 진료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순회 진료는 진료하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정인원을 진료할 때 효과가 있다. 진료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진료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를 기초로 평가하되 제출자료를 참고한다.</p> <p>a.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매일 순회 진료가 이루어지는 확인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p> <p>b. 1일 평균 순회 진료 인원을 순회 진료 하는 의사 수로 나눈다. [제출자료]를 참조할 것.</p> <p>c. 순회 진료장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평가한다.</p> <p>d. 순회 진료장소(대개는 관구실)의 컴퓨터로 의무과 진료시스템(예: 보라매 시스템)에 접속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즉, 의사가 그곳에서 직접 수용자의 진료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p> <p>e. 징별사동(조사실 포함)에 의사가 언제 순회 진료를 나갔는지 조사한다.</p> <p>[제출자료] D33. 순회 진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최근 1개월간의 순회 진료 인원 (기간 명시)</td> <td></td> </tr> <tr> <td>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순회 진료 인원</td> <td></td> </tr> <tr> <td>최근 1개월간의 1주일 평균 순회 진료 인원</td> <td></td> </tr> <tr> <td>순회 진료의 장소</td> <td></td> </tr> <tr> <td>순회 진료 시간 (의사별로 구분하여 작성)</td> <td></td> </tr> </table> <p>[현장조사] 순회 진료장소를 2~3곳 방문하여 조사한다.</p> <p>[면담조사] 의무과직원에게 순회 진료(시기, 방법, 장소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한다.</p>					최근 1개월간의 순회 진료 인원 (기간 명시)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순회 진료 인원		최근 1개월간의 1주일 평균 순회 진료 인원		순회 진료의 장소		순회 진료 시간 (의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최근 1개월간의 순회 진료 인원 (기간 명시)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순회 진료 인원														
최근 1개월간의 1주일 평균 순회 진료 인원														
순회 진료의 장소														
순회 진료 시간 (의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4.2. 순회 진료의 만족도	순회 진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탁월(5)	설문 22에서 ①과 ②의 응답이 10% 미만이고, 설문 23에서 ①의 응답이 10% 미만인 경우	설문조사 면담조사
		우수(4)	설문 22에서 ①과 ②의 응답이 30% 미만이고, 설문 23에서 ①의 응답이 30% 미만인 경우	
		보통(3)	설문 22에서 ①과 ②의 응답이 50% 미만이고, 설문 23에서 ①의 응답이 50% 미만인 경우	
		미흡(2)	설문 22에서 ①과 ②의 응답이 70% 미만이고, 설문 23에서 ①의 응답이 70% 미만인 경우	
		시정요함(1)	설문 22에서 ①과 ②의 응답이 70% 이상이거나 설문 23에서 ①의 응답이 70%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만이라도 70% 이상인 경우)	

<해설> 순회 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두 가지 평가지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의사의 진료태도에 대한 만족도이고, 둘째는 의사의 진료결과에 대한 만족도이다. 대부분 이 두 가지 평가지표는 유사하게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즉, 진료결과가 나쁘면 의사의 진료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기 쉽고, 의사의 진료태도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진료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설문조사]

(의무과가 아닌, 일반사동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만 대답해주세요.)

D5. 진료를 하는 의사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 ① 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설명도 잘 해 주지 않았다.
- ② 건성으로 나의 말을 듣고 설명도 대충 대충 해주는 편이었다.
- ③ 조금 친절하고 성의가 있는 편이었다.
- ④ 매우 친절하고 성의도 많았다.

(의무과가 아닌, 일반사동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만 대답해주세요.)

D6.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이 나왔습니까?

- ① 전혀 낫지 않았다.
- ② 경미한 증세라서 저절로 나았던 것 같다.
- ③ 조금 호전되었다.
- ④ 깨끗이 나왔다.

[면담조사] 설문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용자에게 질문한다.

**D4.5. 병사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5.1. 병사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중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현장조사 면담조사 제출자료	
		b. 전염병환자를 세분하여 구별 수용하면서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c. 약물/알코올 중독(의심)환자를 구별해서 치료해주고 있다.		
		d.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 병사수용자에게는 일반수용자와 달리 거실에서의 정좌의무(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함)를 면제하고 있다.		
		f. 의무과 연출을 요구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준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5개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환자들인 병사수용자에 대해서는 질병의 종류나 병세의 경중에 따라 개별적인 처우와 치료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중환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전염병환자에 대한 특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처우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의무과 연출을 원하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시설 방문조사 시에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병사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의무과직원과 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아래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다분히 정성적 평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관찰조사와 함께 실제 처우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다만, 아래의 제출자료를 참고한다.</p> <p>[직원면담] 의무과직원에게 a, b, c, d, e, f 관련 질문을 한다.</p> <p>[수용자면담] 병사수용자에게 a, b, c, d, e, f 관련 질문을 한다.</p> <p>[제출자료]</p> <p>D41. 중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서술하십시오.</p> <p>D42. 전염병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서술하십시오.</p> <p>D56. 현재 수용인원 중에서 약물/알코올중독(의심)인원</p> <p>D5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용자 사망사고 횟수와 각각의 사망원인(병명)</p>				

D4.6. 치과진료대기시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6.1. 치과진료 대기시간	치과진료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인 경우	설문조사 제출자료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p>&lt;해설&gt; 수용자들은 일반시민에 비하여 치과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따라서 각 구금시설은 충분한 치과진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치과진료 대기자가 많거나 치과진료 대기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치과진료의 기회가 적다는 뜻이다. 치과진료 대기자의 수나 대기기간은 결국 치과진료시간과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 또한 치과진료장비나 치과진료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를 기초로 평가하되, 제출자료를 참고한다.</p> <p>[설문조사] D7. 치과진료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①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②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③ 1주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④ 1주일 이내에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출자료] D38. 현재 최과진료대기자 수와 1개월 전 치과진료대기자 수 (기일 명시) D39. 현재 치과진료 대기기간과 1개월 전 치과진료 대기기간 (기일 명시)</p>				

**D4.7. 약품의 처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7.1. 약품의 처방과 복용	약품처방과 약품복용이 적절	탁월(5)	설문 2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10% 미만이고, 설문 26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설문조사 면담조사 제출자료
		우수(4)	설문 2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 미만이고, 설문 26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보통(3)	설문 2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고, 설문 26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미흡(2)	설문 2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미만이고 설문 26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시정요함(1)	설문 2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이거나 설문 26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p>&lt;해설&gt; 많은 수용자가 약품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품복용이 필요한 수용자가 모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약품복용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많은 인원에게 한꺼번에 약품을 처방해 주어야 하므로 환자 개개인의 체질별로 다른 약품을 처방하기보다 천편일률적으로 처방해서 수용자들에게 불신을 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사가 지시한 방법대로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자가 복용하는 약품은 그 효능이 검증된 것이어야 하고, 복용하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후검증이 필요하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의무과 직원과 수용자와의 면담을 병행한다. 제출자료의 투약인원 비율도 참고한다.</p> <p>[설문조사]</p> <p>D8. 의사의 진료를 받고 난 다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품이 지급됩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 항상 그런 편이다.</p> <p>D9. 약품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전혀 남용되고 있지 않다.                  ② 대체로 남용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 대체로 남용되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남용되고 있는 편이다.</p> <p>[직원면담] 의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약품처방과 약품복용 실태를 조사한다.</p> <p>[수용자면담] 수용자에게 약품처방과 약품남용 여부를 질문한다.</p> <p>[제출자료] D34. 최근 1개월간의 투약인원과 1일 평균 투약인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약종류</th> <th>최근 1개월간의 투약인원 및 건수 (기간 명시)</th> <th>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인원 및 건수</th> </tr> </thead> <tbody> <tr> <td>관 지급 약품</td> <td></td> <td>(처방인원 및 건수)</td> </tr> <tr> <td>차입약품</td> <td></td> <td>(투약인원 및 건수)</td> </tr> <tr> <td>자변약품</td> <td></td> <td>(자변약품 구매건수)</td> </tr> </tbody> </table>				투약종류	최근 1개월간의 투약인원 및 건수 (기간 명시)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인원 및 건수	관 지급 약품		(처방인원 및 건수)	차입약품		(투약인원 및 건수)	자변약품		(자변약품 구매건수)
투약종류	최근 1개월간의 투약인원 및 건수 (기간 명시)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인원 및 건수													
관 지급 약품		(처방인원 및 건수)													
차입약품		(투약인원 및 건수)													
자변약품		(자변약품 구매건수)													

D4.8. 외부진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8.1. 외부진료 가능성	외부진료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최근 1개월간의 외부진료인원이 수용정원의 5%를 초과한다. b. 최근 1년간의 외부병원 입원자의 수가 수용정원의 5%를 초과한다. c. 외부진료 대기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진료과목이 하나도 없다. d. 미결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자비부담을 전제로 특정 외부의사의 시설 내 방문치료를 허용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외부진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부병원에서의 진료인원과 입원인원 및 입원일수와 수술횟수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외부진료·입원·수술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진료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외부진료 대기기간은 일주일을 절대로 넘지 않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들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보유 장비 및 인력난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4.1.16.자 03진인 399 결정).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부진료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p> <p>구급되기 직전까지 사회에서 특정의사로부터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던 미결수용자의 경우 자신의 주치의사로부터 지속적인 진료를 받기 원할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91조는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결수용자를 위한 외부 전담의사의 시설 내 방문치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외부병원의 자신의 주치의사로부터 진료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98조도 “미결수용자에게는 진료신청에 이유가 있는 한 자기의 의사 및 치과의사의 방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단, 위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구급시설 당국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되, 외부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제출자료의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p> <p>a. 최근 1개월간의 외부진료인원 ÷ 수용정원 × 100</p>				

b. 최근 1년간의 외부병원 입원자의 수 ÷ 수용정원 × 100  
 c. 제출자료와 면담조사를 통해 조사한다.  
 d. 의무과 직원에게 질문하여 허용여부를 확인한다.

[제출자료]  
 D43. 최근 1개월간의 외부진료인원 (기간 명시)  
 D44. 최근 1년간의 외부병원 입원자 수 및 입원일수(총계, 평균) (기간 명시)  
 D45. 진료내역별 외부진료 횟수 및 진료대기기간

	최근 1년간 외부진료횟수 (기간 명시)	현재 외부진료대기기간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정신과		

[기록조사] 외부진료신청보고전과 실제 외부진료기록을 대조해 본다.  
 [직원면담] 외부진료 담당 의무과 직원에게 외부진료 대기기간에 대해서 질문한다.  
 [수용자면담] 수용자와 면담을 할 때 외부진료 대기기간을 물어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8.2. 외부병원 과의 진료협조	외부병원과 협조(연계)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탁월(5)	1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음	제출자료
		우수(4)	8~9개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음	
		보통(3)	5~7개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음	
		미흡(2)	3~4개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음	
		시정요함(1)	0~2개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음	
<p>&lt;해설&gt; 구급시설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의료기관과 협조체계가 잘 짜여져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2004년 5월 4일, 전국 교정기관에 시설 인근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수용자 전용병실'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법무부 2004.5.6. 보도자료).</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해당 구급시설과 협약을 맺고 있는 외부 의료기관의 종류</p>				

와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현장조사 시에 이처럼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의원)과의 업무 협조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1. 대형종합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2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외부진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협약병원은 여기서 제외하도록 한다.

[제출자료] D46. 현재 협약을 맺고 있는 외부병원(의원)의 종류와 규모

병원 이름	규모 (병상 수)	전용병실 설치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8.3. 외부병원의 수용자 전용병실 설치여부	외부병원에 수용자용 전용병실을 갖추고 있는가?	탁월(5)	2개 이상의 외부병원에 수용자용 전용병실을 각각 설치하고 있다.	제출자료
		우수(4)	1개의 외부병원에 수용자용 전용병실을 갖추고 있다.	
		미흡(2)	법무부 방침에 따라 전용병실협약을 체결할 외부 의료기관을 모색하고 있다.	
		시정요함(1)	수용자용 전용병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외부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p>&lt;해설&gt;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기관에 시설 인근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수용자 전용병실’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법무부 2004.5.6. 보도자료). 지금까지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입원할 때는 도주의 방지를 위해 사슬로 묶어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용자용 전용병실을 외부의 큰 병원에 설치할 경우 계호 면에서 훨씬 수월해진다. 따라서 수용자용 전용병실의 설치에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수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p> <p>&lt;평가지침&gt; 의무과직원에게 전용병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전용병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재 전용병실을 설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에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한다.</p>				

[제출자료] D46. 현재 협약을 맺고 있는 외부병원(의원)의 종류와 규모

병원 이름	규모 (병상 수)	전용병실 설치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8.4. 외부진료에 대한 만족도	진료결과 및 진료비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주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비율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해설> 외부병원에서 계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의사로부터 병의 증세와 진료내역에 관하여 인격적인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진료내역에 대해서 전달받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수용자는 치료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고, 영치금의 차감금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는 아무리 수용자라 하더라도 진료결과 및 진료내역에 대해서 환자인 수용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담당직원은 수용자에게 치료비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

<평가지침> 설문조사

[설문조사]

D.10 외부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결과 및 치료비용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습니까?

- ① 전혀 없었다.
- ② 의사로부터 약간의 설명을 받았으나, 직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설명을 받지 않았다.
- ③ 직원이 설명했다.
- ④ 의사와 직원이 모두 설명을 해주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8.5. 외부진료 비용 부담	수용자	탁월(5)	10% 미만	제출자료
	자신이 부담 하는 외부진료 비용이 적당한가?	우수(4)	10% 이상 20% 미만	
		보통(3)	20% 이상 30% 미만	
		미흡(2)	30% 이상 40% 미만	
		시정요함(1)	40% 이상	
<p>&lt;해설&gt; 수용자가 외부진료를 받으려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비용부담의 문제다. 건강보험급여정지 상태인 수용자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 그러므로 각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외부진료를 받을 때는 외부진료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진료비용 중에서 수용자의 자기부담비율이 낮을수록 외부진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높음을 뜻한다. 피구금자보호원칙 제24조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의학적 검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 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의학적 치료 및 진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 치료와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비의 국가부담원칙을 정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외부진료비용에서 수용자의 자기부담비율은 [1년 동안 수용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용 ÷ 외부진료 비용총액 × 100]으로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동안 수용자 본인이 부담한 외부진료비용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며, 현장조사 시에 담당 의무과직원으로부터 확인하도록 한다.</li> <li>외부진료 비용총액이란 순전히 국가에서 부담한 외부진료비용과 수용자 자기부담 진료비용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여야 한다.</li> </ol> <p>[제출자료]</p> <p>D47. 최근 1년간 수용자 외부병원 진료비용 총액 (기간 명시)</p> <p>D48. 최근 1년간 수용자 외부병원 진료비용 중 수용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p>				

#### D4.9. 건강검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9.1. 건강검진 실시여부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우수(4)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 수용인원의 90% 이상 검진 받음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보통(3)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 수용인원의 70% 이상 90% 미만 검진	
		미흡(2)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 수용인원의 50% 이상 70% 미만 검진	

	있는가?	시정요함(1)	정기검사 시에 수용인원의 50% 미만이 검진을 받거나 부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함	
<p>&lt;해설&gt;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거의 모든 구급시설에서 4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수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은 적은 경우가 많다. 너무 형식적인 검사라서 수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lt;평가지침&gt; [최근 1년간 건강검진인원 ÷ 정기검진횟수 ÷ 수용인원 × 100]</p> <p>1. 제출자료를 통해 전년도 건강검진 실시횟수와 실시대상인원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조사 시에 전년도 건강검진 실시일자와 대상인원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내역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고 확인하도록 한다.</p> <p>2. 수용인원은 자료제출 시점의 현재 수용인원을 의미한다(현재의 수용인원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경우 100%를 초과한 비율이 나올 수도 있다. 100%를 초과한 경우 최근 1년간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p> <p>[제출자료] D59.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실시 횟수와 실시대상 총인원 (기간 명시)</p> <p>[기록조사] 최근 1년간의 건강검진기록을 살펴본다.</p> <p>[직원면담]</p> <p>건강검진 담당 의무과 직원에게 최근 1년 동안의 건강검진 현황에 대해 질문한다.</p> <p>[수용자면담] 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건강검진의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9.2. 건강검진 내역	필수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신장, 체중, 시력, 청력 등 신체계측</li> <li>b. 혈압검사</li> <li>c. 체성분검사</li> <li>d. 구강검사</li> <li>e. 소변검사</li> <li>f. 대변검사</li> <li>g. 혈액검사</li> <li>h. 심전도검사</li> <li>i. 호흡기능검사</li> <li>j. 안압검사</li> <li>k. 초음파검사</li> <li>l. X-선 검사</li> </ul>	제출자료 면담조사

		m. 정신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n. 4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암 검사	
	탁월(5)	14개 모두 해당	
	우수(4)	12-13개 해당	
	보통(3)	10-11개 해당	
	미흡(2)	8-9개 해당	
	시정요함(1)	7개 이하 해당	

<해설> 건강검진에는 기본적인 질병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역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참고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기본검사항목으로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검사종목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종목		발견질환	검사종목	발견질환
혈압측정및신체계측		혈압,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심전도검사	심근경색, 심부전증, 부정맥 등
체성분검사		체지방, 영양상태, 비만진단	호흡기능검사	폐기종, 급 만성기관지 천식
영양상담		체력평가 및 식습관조절	안저촬영 및 안압	고혈압, 당뇨질환, 녹내장, 안질환
스트레스측정		스트레스, 신경성소화기질환	간장초음파	간암, 지방간, 간경화
구강검사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담낭초음파	담낭암, 담낭결석, 담낭염
소변검사		신장염, 방관염, 요로계질환	췌장초음파	췌장암, 췌장염
대변검사	잠혈반응검사	소화관의 궤양, 종양	신장초음파	신장암, 신장결석, 신낭포
	기생충검사	간디스토마, 조충, 회충 등	비장초음파	비장암, 비장종대
혈액검사	간장기능검사	간기능 장애 여부	식도검사	식도암, 식도정맥류
	B형 간염검사	B형 간염감염, 항체생성여부	위장검사	위암, 위궤양, 위염
	C형 간염검사	C형 간염감염, 항체생성여부	십이지장	십이지장암, 궤양, 염증
	신장기능검사	신장기능장애, 신부전 등	흉부X-선촬영	폐암, 폐결핵, 폐렴 등
	혈청지질검사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남)
	통풍검사	통풍성 관절염(남)	전립선 검사	전립선 암표지자(남)
	췌장기능검사	급성췌장염, 췌장암 등	간암	간세포암, 원발성간암(남)
	당뇨병검사	혈당, 당뇨병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질염, 트리코모나스(여)
	혈액질환검사	빈혈, 백혈병, 염증성질환 등	유방X-선검사	유방암, 유선염 등(여)
		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기능항진 및 저하증(여)	

위 표에 나타나 있듯이 신장, 체중, 시력, 청력 등 신체계측은 물론 혈압검사, 체성분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호흡기능검사, 안압검사, 초음파검사, X-선검사 등이 필수적인 건강검진 항목임을 알 수 있다. 건강검진이 형식적인 검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필수적인 주요검사항목이 빠져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암 검사 등도 필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수용자는 구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정신건강진단이 요구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건강검진의 주요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건강검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p>[제출자료]</p> <p>D60.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일시 및 검진내역 (구체적으로 작성)</p> <p>D58. 최근 1년간 수용자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 실시횟수 (기간 명시)</p> <p>[직원면담]</p> <p>의사에게 건강검진 내역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 의무과직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주요항목에 대해서 물어본다. 특히 신장, 체중, 시력, 청력 등 신체계측은 물론 혈압검사, 체성분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호흡기능검사, 안압검사, 초음파검사, X-선검사 등이 실제로 행해지는지 조사한다.</p> <p>[수용자면담]</p> <p>건강검진의 주요내역에 대해 질문한다. 특히 신장, 체중, 시력, 청력 등 신체계측은 물론 혈압검사, 체성분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호흡기능검사, 안압검사, 초음파검사, X-선검사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4.9.3. 건강검진 의 효용성	건강검진이 질병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비율이 1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p>&lt;해설&gt;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예방을 위함이지, 신체 체형이나 체위를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건강검진이 질병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면, 수용자들 스스로 건강검진의 효용성을 높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 할 것이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결과 분석</p> <p>[설문조사]</p> <p>(최근 1년 동안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p> <p>D11. 건강검진이 질병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너무 형식적이라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p> <p>② 형식적이라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p> <p>③ 형식적이긴 했으나 약간 도움이 되었다.</p> <p>④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p>				

## D5. 위생

### D5.1. 방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1.1. 정기적 방역활동	정기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지역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여름철 연막소독을 4회 이상 실시한다. b. 구급시설 자체적으로 여름철 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한다. c. 의무과에서 분무기를 장만하여 분무소독을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d. 거실 및 시설 내 특정장소에 대한 소독을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e. 외부 방역회사에 위탁하여 연중방역활동을 실시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4개 이상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주기적인 방역활동이 필요하다. 연막소독, 분무소독, 거실소독 및 시설 내 특정장소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연막소독, 분무소독, 거실소독 등에 관한 방역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자료를 통해 연간 방역횟수를 미리 파악하며, 현장조사 시에 방역 및 위생 담당 의무과직원에게 관련내용을 상세히 질문하도록 한다.</li> <li>2. 의무과 직원 중 1명이 방역과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방역활동내역과 최근 방역활동에 대해 질문하여 실제로 방역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li> <li>3. 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무과직원의 답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li> <li>4. 제출자료에 구체적인 방역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방역담당 의무과 직원의 답변이 구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li> </ol> <p>[제출자료]</p> <p>D62. 최근 1년간 방역횟수와 방역내역 (구체적으로 작성)</p> <p>D63. 최근 1개월간 거실 소독 횟수, 소독방법과 소독내역 (구체적으로 작성)</p> <p>[면담조사]</p> <p>위생(방역)담당 의무과 직원에게 최근 1개월간의 방역활동내역과 여름철 방역활동내역에 대해 질문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1.2. 방역예산	방역예산은 충분한가?	탁월(5)	10,000원 이상	제출자료
		우수(4)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보통(3)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미흡(2)	1,000원 이상 2,000원 미만	
		시정요함(1)	1,000원 미만	
<p>&lt;해설&gt; 방역예산이 풍부해야 방역활동을 잘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역예산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구급시설에서 방역예산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시설 내 특정장소를 소독하는 데 필요한 약품(크레졸)을 구입하는 비용이 전부인 구급시설도 많다. 방역예산이 적기 때문에 방역활동이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충분한 방역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 1인당 방역예산은 [연간 방역예산 ÷ 수용인원]으로 계산한다.</p>				

## D5.2. 방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2.1. 방충	여름철 방충활동이 충분한가?	탁월(5)	①의 응답비율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의 응답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의 응답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p>&lt;해설&gt; 여름철에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 수용자들이 많다. 특히 방문을 폐쇄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가 실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름철에 방충활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평가하되 제출자료를 참조한다.</p> <p>[설문조사]</p> <p>D.12 여름철에 거실에서 모기나 기타 벌레에 물려 고통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p> <p>① 실내에 모기(벌레)가 너무 많아 고생했다.</p> <p>② 모기(벌레)가 적지 않았지만, 실내에서는 견딜 수 있는 정도였다.</p> <p>③ 실내에 모기(벌레)가 별로 많지 않아 괜찮았다.</p> <p>④ 모기(벌레)가 거의 없었다.</p> <p>[제출자료] D65. 여름철 방충활동에 관하여 서술하십시오.</p>				

D5.3. 목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3.1. 목욕탕의 구조	목욕탕의 구조가 목욕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목욕탕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 b. 샤워꼭지가 천정이 아닌 벽에 붙어 있어서 물이 직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c. 온수의 온도를 수용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d. 샤워꼭지가 낮은 데도 달려 있어 몸이 불편한 수용자가 앉아서 목욕할 수 있다. e. 탕 안에 들어가 목욕할 수 있다. f. 탕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g. 목욕탕 내에도 화장실이 있다. h. 목욕탕 탈의실에 온돌난방 땀	현장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6-7개 해당	
		보통(3)	5개 해당	
		미흡(2)	4개 해당	
		시정요함(1)	3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일반수용자가 목욕하는 목욕탕의 구조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사회목욕탕과 크게 달라야 할 필요는 없다. 적지 않은 구급시설의 경우 목욕탕 중앙에 탕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샤워꼭지를 천정에 달아 놓아 물이 머리 위로 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간부족, 시간부족 등의 사유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반면, 몇몇 구급시설의 경우 온수의 온도를 수용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샤워꼭지가 벽면의 낮은 곳에도 부착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수용자가 앉아서 목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도 하다.</p> <p>&lt;평가지침&gt; 목욕탕의 구조를 살펴보고, 담당 직원과 일반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목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p> <p>[현장조사] 목욕시설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위의 a, b, c, d, e, f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p> <p>[수용자면담] ‘탕’시설 활용가능 여부와 온수의 온도조절가능 여부를 확인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3.2. 목욕기회	목욕기회를 충분히 허용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동계 1회 목욕시간이 30분 이상이다. b. 동계 주1회, 하계 매일 정기적인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 c. 하계에도 주1회 목욕탕에서 정기적인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 d. 하계에도 온수목욕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 1회에 한하여 온수목욕을 허용하고 있다. e. 특정수용자(예: 조사실 또는 징벌방 수용자)에 대한 목욕제한을 전혀 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설문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지내야 하는 수용자들에게 목욕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목욕횟수와 목욕시간 및 목욕방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평가한다.</p> <p>a. 설문조사 결과 ①, ②, ③의 응답비율이 합하여 50% 미만이면 1회 목욕시간이 30분 이상으로 평가한다.</p> <p>b. 제출자료와 면담조사를 통해 평가한다.</p> <p>c. 여기서 목욕탕이란 동계 일반수용자가 목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p> <p>d. 온수목욕을 원하는 수용자에게 목욕탕에서 목욕을 허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p> <p>[제출자료] D66. 일반수용자 목욕횟수 및 목욕시간 (하계와 동계를 구분)</p> <p>[설문조사]</p> <p>D14. 한번 목욕할 때 목욕시간(목욕탕에서 실제 목욕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p> <p>① 10분 미만                      ② 10분이상 20분 미만                      ③ 20분 이상 30분 미만                      ④ 30분 이상 40분 미만                      ⑤ 40분 이상</p> <p>[직원면담] 일반사동근무자에게 위의 a, b, c, d 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질문한다.</p> <p>[수용자면담] 수용자에게 a, b, c, d 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질문한다.</p>				

**D5.4. 담요(모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탁월(5)	매주 1회 (월 4회) 이상	
D5.4.1. 담요세탁	담요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고 있는가?	우수(4)	격주 1회 (월 2회) 이상	면담조사
		보통(3)	월 1회 이상	
		미흡(2)	격월 1회 (월 0.5회) 이상	
		시정요함(1)	격월 1회 (월 0.5회) 미만	
<p>&lt;해설&gt; 담요(모포)는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세균이 번식해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한다.</p> <p>&lt;평가지침&gt; 정기적인 담요세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주로 평가한다.</p> <p>1. 여기서 담요세탁은 정기적인 모포세탁을 의미하며, 부정기적으로 담요를 세탁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p> <p>2. 사동별로, 사방별로 주기적인 담요세탁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담요세탁은 정기적인 담요세탁으로 평가한다.</p> <p>[직원면담] 사동근무자에게 담요세탁에 대해서 질문한다.</p> <p>[수용자면담] 수용자에게 담요세탁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물어보고, 정기적인 모포세탁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탁월(5)	5일마다 1회 이상	
D5.4.2. 담요(모포) )털이 및 건조	담요(모포) 를 자주 털게 하고 건조하게 하고 있는가?	우수(4)	6~7일마다 1회	현장조사 면담조사
		보통(3)	8~10일마다 1회	
		미흡(2)	11~13일마다 1회	
		시정요함(1)	2주 1회 이하	
<p>&lt;해설&gt; 모포털이는 최소한 1주일에 1번씩은 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세균이 번식해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자주 햇볕에 건조시켜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모포털이(담요건조) 여부, 횟수</p> <p>[현장조사] 최근 1개월간의 모포털이 횟수가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 2~3개 사동 수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질문하여 조사한다.</p> <p>[수용자면담] 최근 1개월간의 모포털이 횟수를 물어보고, 모포털이 주기를 조사한다.</p>				

D5.5. 세탁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5.5.1. 세탁	세탁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주 1회 이상 1시간 정도의 정기적 세탁시간을 준다.	현장조사 면담조사
			b. 사동 입구 세면장(샤워장)에서 주1회 이상 세탁을 할 수 있다.	
			c. 사동 입구 세면장(샤워장)에 탈수기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d. 사동 입구 세면장(샤워장)에 세탁기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e. 사동 밖에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 비가 오는 경우에는 세면장 내에 일시적으로 세탁물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5개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각종 옷과 사제담요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 구급시설에서는 사동 입구 세면장을 사동청소부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수용자들은 거실 내 좁은 화장실에서만 세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급시설의 경우 세면장(샤워장) 내에 탈수기를 두어 거실 내에서 세탁한 물건의 탈수만을 도와주고 있다. 세탁은 위생과 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수용자들이 세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구급시설처럼 사동 내 세면장(샤워장)에서 정기적인 세탁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그곳에 세탁기와 탈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세탁과 탈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세탁장소, 세탁시간, 세탁방법, 세탁시설 및 세탁장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평가한다.</p> <p>[현장조사] 사동입구 세면장(샤워장)에서의 세탁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곳에 탈수기, 세탁기, 건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사동 밖에 건조대 시설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건조대를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알아본다.</p> <p>[면담조사] 수용자에게 세탁장소, 세탁시간, 세탁방법 등에 대해 질문한다.</p>				

## D6. 운동

### D6.1. 실외운동가능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1.1. 실외운동가능성	누구나 실외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a. 일반수용자의 경우 1일 평균 40분미만 운동시킨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b. 일반수용자와 독거수용자의 운동시간이 동일하다.	
		c. 동계에 목욕을 하는 날에는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d. 징벌집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e. 조사실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는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f. 특정수용자에 대해서는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실내 거실만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탁월(5)   해당사항 없음	
		우수(4)   1-2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4개 해당	
		시정요함(1)   5개 이상 해당	
<p>&lt;해설&gt; 실외운동은 모든 피구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유엔의 ‘피구급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에는 “실외작업에 출력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급자는 날씨가 허락하면 매일 적어도 1시간 정도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시설 중에는 특정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할 수 없도록 실내거실만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조사실수용자와 징벌집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운동을 시키지 않거나 목욕시간을 운동시간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다. 또한 독거수용자와 일반거실 수용자의 목욕시간이 30분 이하로 동일한 구급시설도 있다.</p> <p>&lt;평가지침&gt; 일반수용자의 운동시간, 독거수용자의 운동시간, 목욕시간의 운동시간 대체 여부, 조사실수용자의 운동허용 여부, 실내운동장의 존재 유무</p> <p>a. 설문조사결과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합하여 50% 이상인 때에는 1일 평균 운동시간이 40분미만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참조)</p> <p>b. 독거수용거실의 수용자에게 1회 운동시간을 질문하여 확인한다.</p> <p>c. 일반사동 수용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동계 목욕 시)</p> <p>d. 징벌사동 수용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p> <p>e. 조사실 수용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p> <p>f. 특히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운동장이 실외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p> <p>[제출자료] A11. 운동장의 종류별 면적 D69. 일반수용자의 운동</p>			

	미결수용자	수형자(출력자)	수형자(미지정)
1회 운동시간			
허용되는 운동기구			
운동장소			
운동시설			

[현장조사] 운동장소와 운동시설을 관찰하고 제출자료의 내역을 확인한다.

[설문조사]

D.13 한번 운동 나가면 운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분 미만  
 ② 20분 이상 40분 미만  
 ③ 40분 이상 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

[직원면담] 사동근무자에게 a, b, c, d, e, f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수용자면담] 수용자에게 a, b, c, d, e, f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D6.2. 운동여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2.1. 운동장	운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인가?	세부지표	a. 모든 수용자들이 각각 넓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b. 모든 운동장에 운동시설이 3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c. 모든 운동장에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 비가 오고 난 직후에도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실외운동장은 각 수용자가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한다. 최소한 족구와 농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10명 이상이 충분히 땀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한다. 또한 운동장에서 철봉, 윗몸일으키기, 족구, 배구, 농구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운동장이 배수가 잘 안 되어 비가 온 다음 날까지도 질퍽거리 운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급시설이 더러 있다. 구급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있어서 운동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므로 비가 왔다고 해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운동장 배수시설을 잘 하여 비가 오고 난 후에도 운동을 곧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구급시설에서 공장에 출력하는 수형자들에게는 대운동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구기 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미결수용자나 여성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들에게는 아무런 운동시설도 없는 매우 협소한 운동장(일반적으로 ‘운동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조그만 공터)에서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운동’은 공장에 출력하는 수형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엔의 피구금지처우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에는 “실외작업에 출력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지”에게 적어도 1시간 정도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실외작업에 출력하는 수형자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수용자들의 운동허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수용자들이 각각 넓은 공간에서 적당한 실외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a. 각 운동장의 면적은 최소한 2,000㎡, 가로 및 세로 길이가 최소한 20m, 100m 이상이어야 한다. 이 지표는 가장 작은 운동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b. 운동장에 철봉, 윗몸일으키기, 족구, 배구, 농구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조사한다.

c. 비가 오지 않은 날에 조사하러 갈 때에는 수용자 면담을 통해 운동장이 질퍽거리지 않는지 조사한다.

[제출자료] A11. 운동장의 종류별 면적

[현장조사]

각 운동장을 종류별로 관찰하고, 가로 및 세로 길이를 재 보도록 한다. 그리고 각 운동장에 충분한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비가 온 다음에 배수가 잘 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수용자면담]

운동장의 배수가 잘 되는지 여부를 묻는다. 특히 비가 온 다음에도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D6.2.2. 운동기구	운동기구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탁월(5)	거의 모든 수용자에게 5가지 이상의 운동기구를 허용하고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거의 모든 수용자에게 4가지 이상의 운동기구를 허용하고 있다.	
		보통(3)	거의 모든 수용자에게 3가지 이상의 운동기구를 허용하고 있다.	
		미흡(2)	출력수형자 등 일부 수용자에게만 3가지 이상의 운동기구를 허용하고 있다.	

		시정요함(1)	두 가지 이하의 운동기구를 허용하고 있다.																					
<p>&lt;해설&gt; 여기서 운동기구란 축구공이나 농구공 또는 배구공, 배드민턴 채와 공, 테니스 채와 공 등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구를 뜻한다. 구급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매일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운동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허용함으로써 충분한 운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다수의 구급시설에서 출력 수형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미결수용자나 여성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들에게는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p> <p>&lt;평가지침&gt;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수는 일반사동의 수용자에게 질문함으로써 ‘실제로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먼저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수를 알아내고, 이것이 모든 수용자에게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 기결수용자에만 허용되는 특권인가를 조사한다.</p> <p>[제출자료] D69. 일반수용자의 운동</p> <table border="1" data-bbox="277 992 1313 1167"> <thead> <tr> <th></th> <th>미결수용자</th> <th>수형자(출력자)</th> <th>수형자(미지정)</th> </tr> </thead> <tbody> <tr> <td>1회 운동시간</td> <td></td> <td></td> <td></td> </tr> <tr> <td>허용되는 운동기구</td> <td></td> <td></td> <td></td> </tr> <tr> <td>운동장소</td> <td></td> <td></td> <td></td> </tr> <tr> <td>운동시설</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직원면담]</p> <p>운동 담당 보안과 직원에게 실제로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를 묻고, 수용자들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결수용자 가운데 출력하지 않고 미지정 상태에 있는 수용자와 미결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를 묻도록 한다.</p> <p>[수용자면담] 수용자에게 실제로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를 질문한다.</p>						미결수용자	수형자(출력자)	수형자(미지정)	1회 운동시간				허용되는 운동기구				운동장소				운동시설			
	미결수용자	수형자(출력자)	수형자(미지정)																					
1회 운동시간																								
허용되는 운동기구																								
운동장소																								
운동시설																								

## E.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 E1. 규율과 징벌

#### E1.1.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고지와 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1.1. 신입자에 대한 규율·징벌의 고지와 교육의 적절성	신입자에 대하여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수(4)	신입자교육 시 규율 및 징벌에 대하여 상세한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보통(3)	신입자교육 시 규율 및 징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세한 설명이나 교육자료 없이 규율과 징벌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다.	
		미흡(2)	신입자교육 시 규율 및 징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규율목록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시정요함(1)	신입자교육 시 규율 및 징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규율에 관한 서면고지도 없다.	

<해설>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규율과 징벌을 교육·고지하는 것은 수용생활에서 수용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만약 수용자가 규율과 징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서 수용자는 수용과 동시에 구금시설에 적용되는 규율과 징벌에 관한 사항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35조 제1항은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의 규칙들, 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규율사항, 정보를 청구하고 불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수용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제2항에서는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형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소장은 규율과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신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기준과 행형법에 근거하여 볼 때, 구금시설에서는 신입수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행동이 규율에 위반되는 것이며, 어떠한 징벌이 부과되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법무부훈령인 ‘신입수용안내 및 신입식예방지침’ 제3조(‘수용자정신교육지침’ 제21조 1항도 동일)는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입소일 또는 형집행지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입안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자정신교육지침’ 제21조 2항은 7시간의 범위 내에서 신입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신입수용안내 및 신입식예방지침’ 제6조는 “수용자준수사항 등 행동지침, 접견, 진료 등 수용생활안내,

신입식의 위험성 및 신고요령 등을 세부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유인물이나 영상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제2항). 신입자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수용자정신교육 지침’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본 평가항목은 신입자교육 시 규율과 징벌에 관한 사항의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와 수용자면담을 통하여 신입자교육 시 규율과 징벌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입자교육은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담당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종종 신입실에서 신입수용자에 대한 신원확인, 신체검사 등과 함께 짝막하게 생활안내사항을 고지하거나, 신입수용 후 관구실 등에서 신입자에 대한 개별상담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공식적이고 요식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신입자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구금시설에서 공식적인 신입자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시정요함’으로 평가하면 된다.
2. 교육의 내용이 실제 수용자들이 규율내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충실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우선 신입자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자료(유인물 또는 영상물)를 통하여 규율과 징벌에 관하여 상세한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파악하고, 신입자교육시간 중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에 할애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본다. 유인물이나 영상물 등의 공식적인 교육자료가 있고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에 할애된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일 때 ‘상세한 교육’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 E1. 신입자교육 시 규율과 징벌에 대한 교육방법(※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E2. 전년도 1년간 신입자교육의 실시현황

[기록조사]

‘신입안내교육일지’를 조사하여, 신입자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입자교육에서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면담조사]

1. 규율과 징벌에 관한 면담대상 수용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며, 징벌에 관한 아래 평가항목의 면담조사에도 적용한다.
  - 1) 최근 1개월 사이에 징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최근 1개월 내의 징벌경험자 중 아래의 요건에 맞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의 징벌경험자 중에서 면담대상자를 선정한다).
  - 2) 수용자 3인은 모두 금지처분을 선고받아 집행을 완료한 자로 한다.
  - 3) 수용자 3인은 가급적 수형자 2인과 미결수용자 1인으로 하도록 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금시설에서는 수형자 3인으로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에는 수형자 1인, 미결수용자 2인으로 선정한다.
  - 4) 수용자 3인 모두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한다.

- 5) 면담대상 수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금시설 측에 최근 1개월간(혹은 3개월 간)의 “징벌자현황” 및 “조사자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수용자에게는 다음을 질문하여 확인해 본다.
- 1) 신입자교육을 받았는가 여부
  - 2) 신입자교육을 받았다면 규율과 징벌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 3)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의 자료와 교육시간, 교육방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1.2. 규율에 관한 정기교육의 충실성	규율에 대한 교육은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규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b. 비디오 등 영상자료를 활용한다. c. 교육담당직원이 정해져 있다. d. 거실 내에 규율에 관한 설명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수용자가 규율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율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불필요한 규율위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구금시설의 질서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경우 교정처우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규율이 개정되어 일부 규율이 추가 혹은 폐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자교육을 통해 규율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특히 2004. 6.29 개정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하 ‘징벌규칙’이라 하고, 개정전의 것은 ‘구 징벌규칙’이라 함)은 구 징벌규칙에 비하여 규율을 대폭 정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규율에 관한 수용자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규율에 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세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통하여 수용자들이 규율과 징벌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신입자교육을 제외하고, 수용생활 중에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법무부훈령인 ‘수용자정신교육지침’ 제5조는 모든 수형자에게 연 1회 2주간의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에 규율과 징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동 훈령 제8조 참조)은 의문이다. 다만, ‘신입수용안내 및 신입식예방지침’ 제10조에서 “소장은 사동 및 작업장별로 신입자에 대한 신입식 금지 등 수용자준수사항을 수시로 반복교육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벌과 동시에 형사입건 등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됨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p>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하여 규율에 관한 교육의 실시여부 및 실시내용을 파악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규율에 관한 교육이란 구금시설 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교육장과 같은 일정한 장소에 다수의 수용자를 모아놓고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거실 내 TV의 방송자막을 통한 규율의 안내나 규율에 관한 안내문의 배부 등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 a. 정기교육의 실시여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 2회 이상”이란 순차적인 교육을 통해 각 수용자에게 연 2회 이상의 교육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규율에 관한 교육에서 활용하는 영상자료를 말한다. 영상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규율에 관한 교육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c. 규율에 관한 교육의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 d. 모든 거실에 규율에 관한 설명책자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규율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함께 포함된 설명책자라도 상관없으나, 규율에 관한 설명책자는 모든 거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규율에 관한 설명책자는 단순히 규율목록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율에 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규율목록을 거실 벽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설명책자라고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출자료]

E3. 전년도 1년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규율 및 징벌에 대한 교육의 실시내용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기록조사]

1. 규율에 관한 교육자료(영상자료 등)의 내용을 확인한다.
2. 전년도 1년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규율에 관한 교육의 일지를 제출자료와 대조하여 봄으로써 규율에 관한 교육의 실시여부 및 실시내용을 확인한다.

[면담조사]

1.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1.1. 참조).
2. 수용자 3인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
  - 1) 정신교육 등의 교육시간에 규율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가 여부
  - 2)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의 자료와 교육시간, 교육방법
  - 3) 규율에 관한 설명책자의 거실비치여부

[현장조사]

거실에 비치된 생활안내책자를 살펴본다. 그 안에 규율에 관한 설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한다.

**E1.2. 규율에 관한 수용자의 인지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2.1. 규율에 관한 수용자의 인지도	수용자는 규율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90% 이상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9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50% 미만	
<p>&lt;해설&gt; 수용자들이 규율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수용생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들이 규율에 대하여 실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E1. 귀하는 규율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① 충분히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거의 알지 못 한다                      ④ 전혀 알지 못 한다</p>				

**E1.3. 규율위반행위의 발생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3.1. 규율위반 행위의 발생정도	1년간 규율위반 행위의 발생빈도 는 어떠한가?	탁월(5)	수용인원 100명당 규율위반건수 5건 미만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수용인원 100명당 규율위반건수 5건 이상 10건 미만	
		보통(3)	수용인원 100명당 규율위반건수 10건 이상 20건 미만	
		미흡(2)	수용인원 100명당 규율위반건수 20건 이상 30건 미만	
		시정요함(1)	수용인원 100명당 규율위반건수 30건 이상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27조는 “규율과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시설 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규율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질서유지에 불필요한 과잉규율과 지시는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양산하게 되어 오히려 수용질서를 해치게 될 우려가 높은 만큼, 규율과 지시는 수용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불필요한 규율과 지시가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규율위반행위의 발생정</p>				

도는 구금시설의 질서유지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규율위반건수가 많다는 것은 구금시설 내에서 수용자와 수용자의 갈등, 직원과 수용자 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용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구금시설측이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소홀하거나 과잉반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금시설은 수용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정직원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시를 남발함으로써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조장해서도 안 된다. 규율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구금시설에서는 교정처우에 효과를 보기가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규율위반행위의 발생정도를 통하여 구금시설 내 수용질서의 안정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평가지침>

1. 수용인원 100명당 규율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text{전년도의 규율위반행위 총 건수} \div \text{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수용인원} \times 100 \}$
2.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며, 징벌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확인한다.

[제출자료] E4. 전년도 1년간 시설 내에서 발생한 규율위반행위의 건수와 인원수 (표)

전년도 12. 31 현재 수용인원	규율위반행위 건수	규율위반행위 수용자수	규율위반행위 건수/ 수용인원	규율위반 수용자수/ 수용인원
수형자				
미결수용 자				

[기록조사]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 혹은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통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규율위반건수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3.2. 징벌 집행 중 규율위 반행위의 발생 정도	징벌집행 중 규율위반 행위의 발생 건수는 어떠한가?	탁월(5)	없음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전체 규율위반행위 발생건수의 1% 미만	
		보통(3)	전체 규율위반행위 발생건수의 1% 이상 2% 미만	
		미흡(2)	전체 규율위반행위 발생건수의 2% 이상 3% 미만	
		시정요함(1)	전체 규율위반행위 발생건수의 3% 이상	
<p>&lt;해설&gt; 징벌집행 중에 또 다시 규율위반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용질서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징표가 된다. 징벌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저지르는 규율위반행위는 대개 이</p>				

물질취식 등 자해행위(징벌규칙 제3조 제14호), 고성 등 수용생활 방해 행위(동 제19호) 그리고 지시불이행(동 제21호) 정도인데, 이러한 규율위반행위는 일회적이라기보다는 수용자와 직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 내지 수용자의 구급시설에 대한 불만, 집행중인 징벌에 대한 불만 등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징벌집행 중에 계속되는 규율위반행위는 대부분 수용자와 구급시설 간의 누적된 갈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며, 이는 재차 징벌을 부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징벌집행 중의 규율위반행위는 징벌가중사유가 되며(징벌규칙 제8조 제2항), 수용자는 계속된 징벌을 통해 수용생활이 황폐화될 수 있다. 이러한 규율위반-징벌(가중)의 악순환은 수용질서의 불안정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며, 구급시설이 수용자의 갈등상황이나 불만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로 오로지 징벌이라는 억압적 수단에 의존해 수용질서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구급시설에서는 규율위반행위에 단순히 징벌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규율위반의 원인이 된 갈등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수용자의 계속된 규율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징벌집행 중에 발생한 규율위반행위가 1건도 없는 것을 ‘탁월’로 본다. 그것은 징벌에 대하여 수용자가 수긍하고 징벌의 원인이 된 갈등이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전체 규율위반행위 중 징벌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 3% 이상이면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이는 수용자들이 징벌집행에 수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벌의 원인이 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급시설이 강압적 징벌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지침>

1. 전년도 1년간 징벌집행 중 발생한 규율위반행위의 건수를 백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징벌집행 중 발생한 규율위반행위 건수 ÷ 규율위반행위 총 건수 × 100}
2.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징벌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확인한다.

[제출자료]

E5. 전년도 1년간 징벌집행 중에 발생한 규율위반행위 건수 및 인원 수

[기록조사]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검토하여 징벌집행 중에 발생한 규율위반건수를 확인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E1.4. 조사절차의 적정성과 신속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4.1. 징벌혐의로 조사실등 조사실등에	징벌혐의로 조사실등 다른 거실에 격리수용된	탁월(5)	징벌혐의자 중 30% 미만 격리수용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40% 미만)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징벌혐의자 중 30% 이상 40% 미만 격리수용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격리수용된 수용자 수	수용자는 어느 정도인가?		경우 40% 이상 50% 미만)
		보통(3)	징벌혐의자 중 40% 이상 - 50% 미만 격리수용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50% 이상 60% 미만)
		미흡(2)	징벌혐의자 중 50% 이상 - 60% 미만 격리수용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6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징벌혐의자 중 60% 이상 격리수용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70% 이상)

<해설>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은 일반사회에서 범죄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구속이 엄격한 구속사유를 전제로 하고 비례성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격리수용 자체가 이미 징벌혐의에 대한 수용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지난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 제11조 제1항은 “소장은 조사기간 중 징벌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벌혐의자를 다른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징벌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조사실에 수용하여 처우를 제한하였던 것에 비하면 이 규정은 수용자 인권보호에 진일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령인 행형법시행령 제143조가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의 모순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도입된 징벌규칙 제11조 제1항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구급시설에서는 징벌혐의자를 무조건 조사실에 격리수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타 수용자를 해칠 우려 또는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한정된 범위에서 징벌혐의자를 격리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징벌혐의 수용자가 격리수용되면, 규율위반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징벌규칙 제11조 제2. 3항에 의하여 수용자의 접견, 서신 등의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징벌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혐의자를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취지로 징벌규칙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격리수용사유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조사실 등 격리수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징벌규칙 제11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르면, 증거인멸의 우려와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 외에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의 적용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격리수용사유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징벌혐의로 격리수용된 수용자의 비율은 50% 미만의 수준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 즉 ‘보통’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후 징벌규칙 제11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의 비율을 다소 조정하였다.

<평가지침>  
1. 전년도 1년간 징벌혐의자 중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된 수용자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된 수용자 수 ÷ 전체 징벌혐의자 수(규율위반행위 수용자수) × 100}

2.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평가지표의 비율이 달리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3.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이란 조사실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징벌혐의자를 규율위반행위 당시의 수용거실에 수용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와 격리된 거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격리수용이 반드시 독거수용일 필요는 없다. 또한 격리수용이 반드시 처우 내지 권리의 제한을 동반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처우의 제한이 수반되지 아니한 격리수용도 포함된다.

[제출자료]

E6. 전년도 1년간 규율위반혐의로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된 수용자의 수(표)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구분		징벌혐의자 수	조사실 등 격리수용된 수용자수
2004.1.1.- 2004.6.28			
2004.6.29 - 2004.12.31	증거인멸의 우려		
	타 수용자를 해칠 우려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계		
합계			

(수용자에게 2개 이상의 격리수용사유가 중복 적용된 경우 주된 사유 1건으로 기재함)

<2005년 이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구분		징벌혐의자 수	조사실 등 격리수용된 수용자수
격리수용사 유	증거인멸의 우려		
	타 수용자를 해칠 우려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합계		

(수용자에게 2개 이상의 격리수용사유가 중복 적용된 경우 주된 사유 1건으로 기재함)

[기록조사]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과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통하여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현황을 파악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4.2.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	조사실수용 등 격리수용의 기간은	탁월(5)	7일 이내의 격리수용이 전체의 95% 이상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그리고 평균격리수용기간이 3일 미만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기간	적정한가?	우수(4)	7일 이내의 격리수용이 전체의 90% 이상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그리고 평균격리수용기간이 5일 미만이다.
		보통(3)	7일 이내의 격리수용이 전체의 85% 이상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그리고 평균격리수용기간이 7일 미만이다.
		미흡(2)	7일 이내의 격리수용이 전체의 80% 이상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시정요함(1)	7일 이내의 격리수용이 전체의 80% 미만이거나,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있다.

<해설> 징벌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조사기간(격리수용가능기간)은 7일 이내이고 7일의 범위에서 소장의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다(구 징벌규칙 제7조 제3항도 동일). 징벌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조사기간 중 격리수용이 가능하므로, 징벌혐의자를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4일이다. 그러나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소한도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리수용 자체가 징벌혐의에 대한 수용자의 방어능력을 상당부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격리수용된 수용자라 하더라도 조사기간 내내 격리수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구금시설의 직원이 사실상 규율위반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를 완료하였다면 더 이상 격리수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격리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한편, 징벌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할 때 격리수용기간이 모두 징벌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였던 구 징벌규칙 제7조 제5항과 대조되는 규정이다. 징벌규칙 제1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처우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과 처우제한은 요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징벌규칙 제11조 참조) 실무에서 양자는 중첩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격리수용기간(내지 처우제한기간)이 징벌기간에 산입되지 않거나 일부만 산입된다면 격리수용기간은 사실상 징벌(특히 금지)의 기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격리수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최소한도 단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기간이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일 때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징벌규칙 제10조 제1항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징벌규칙 제4조 제3호가 10일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호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자에 대해서는 금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기간은 매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 징벌혐의로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된 수용자의 수용기간별 인원수를 파악한다.
2. 7일 이내의 격리수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백분율로 계산한다 :  

$$\{7\text{일 이내 격리수용된 수용자 수} \div \text{격리수용된 전체 수용자 수} \times 100\}$$
3. 평균 격리수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text{격리수용기간의 합} \div \text{격리수용된 전체 수용자 수}\}$$
4. 징벌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할 때 14일을 초과하는 조사는 불가능하므로, 격리수용기간이 14일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면, 다른 세부지표에 상관없이 ‘시정요함’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출자료]

E7. 전년도 1년간 규율위반혐의로 격리수용된 수용자의 격리수용기간별 인원수 및 격리수용기간 평균 (표)

격리수용기간	인원수(%)	1인당 평균 격리수용기간
7일 이내		(※ 격리수용기간의 합 ÷ 인원수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계산)
7일 초과 14일 이내		
14일 초과		

[기록조사]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과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통하여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기간의 현황을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4.3. 조사기간의 적정성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탁월(5)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이 전체의 90% 이상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그리고 평균조사기간이 5일 미만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이 전체의 90% 이상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그리고 평균조사기간이 7일 미만이다.	
		보통(3)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이 전체의 80% 이상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그리고 평균조사기간이 7일 미만이다.	
		미흡(2)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이 전체의 70% 이상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시정요함(1)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이 전체의 70% 미만이거나,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있다.	

<해설> 조사절차의 신속성을 평가한다. 징벌혐의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벌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의 불안정한 지위가 장기화되고, 특히 징벌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격리수용되거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과잉침해의 소지가 있다. 징벌규칙 제10조 제1항은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의 연장은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평가항목에서는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이 전체 조사건수의 80% 이상은 되어야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여기에 평균조사기간을 감안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평가항목은 위 E1.4.2. 항목(격리수용기간)과 구별되어야 한다. 2004.6.29 징벌규칙 개정 전 실무에서는 징벌혐의자의 대부분을 조사기간 내내 조사실에 격리수용하였기 때문에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기간과 조사기간은 사실상 일치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징벌규칙에 의하면,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위 평가항목 E1.4.1 참조) 조사기간과 격리수용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항목은 조사기간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리수용되지 않은 징벌혐의자의 조사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 징벌혐의자에 대한 실제 조사기간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사기간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백분율로 계산한다:  

$$\{7\text{일 이내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징벌혐의자 수} \div \text{전체 징벌혐의자 수} \times 100\}$$
3. 평균 조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조사기간의 합} \div \text{전체 징벌혐의자 수}\}$
4. 징벌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할 때 14일을 초과하는 조사는 불가능하므로, 조사기간이 14일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면 다른 세부지표에 상관없이 ‘시정요함’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출자료] E8. 전년도 1년간 징벌혐의자의 조사기간 (표)

(조사기간 = 조사 착수일로부터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일 전일까지의 기간)

조사기간	인원수(%)	평균 조사기간
7일 이내		(※조사기간의 합 ÷ 인원수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계산)
7일 초과 14일 이내		
14일 초과		
합계		

[기록조사]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조사기간을 확인해 본다. ‘징벌위원회회의록’에는 조사일수와 징벌기간에의 산입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특히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건수를 제출자료와 대조해 보아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4.4. 조사기간 중 징벌협약자의 권리제한	조사기간 중 징벌협약자의 권리제한은 적정한가?	세부지표	a.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의 제한 내지 금지는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의 방지필요라는 요건에 따라 개별적인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b.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의 제한 내지 금지는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방지필요라는 요건에 합치한다.	
			c. 운동,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d. 운동,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의 제한 내지 금지 사례가 있지만, 타인을 해칠 우려라는 요건에 합치한다.	
			e. 목욕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f. 집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g. 신문도서의 열람과 라디오 및 TV 시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탁월(5)	a. c. e. f. g. 해당			
우수(4)	b. c. e. f. g. 해당			
보통(3)	a. b. 중 1개 해당하고 d. e. f. g. 해당			
미흡(2)	a. b. c. d. 중 1개 해당하고 e. f. g. 해당, 또는 a. b. c. d. 중 2개 해당하고 e. f. g. 중 2개 해당			
시정요함(1)	3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 제11조 제2항은 “소장은 규율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벌협약자에 대하여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소장은 징벌협약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협약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징벌규칙 제7조 제2항이 징벌협약자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의 열람, 라디오청취 및 TV 시청, 그리고 자비물품 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였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규정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징벌협약의만으로 수용자의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제한은 징벌협약자에게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구 징벌규칙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리제한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대신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권고한 바 있다(2002.12.9. 02진인1064 결정). 또한 조사 중 운동과 목욕을 금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결정도 있다(2004.2.11. 03진인</p>				

5055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결정의 취지는 징벌혐의만으로 수용자의 거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이라는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징벌혐의자의 권리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일 뿐이며, 그 경우에도 제한 가능한 권리는 접견, 서신, 전화통화뿐이다. 그 외에 운동과 목욕, 집필, 작업, 신문도서의 열람, 라디오 및 TV 시청, 자비물품사용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와는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징벌혐의가 있다고 하여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징벌규칙 제11조의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원칙에 근거를 두고자 한다.

첫째, 징벌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한 접견, 서신수발과 전화통화의 제한은 개별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접견, 서신수발 및 전화통화의 개별적인 경우마다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벌혐의자의 모든 접견, 서신수발과 전화통화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징벌규칙 제11조 제3항이 규정한 운동과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의 제한은 그 자체로 징벌혐의자의 인권에 대한 과잉침해에 해당한다.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규정이다. 제한의 요건인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라는 것은 주로 싸움이나 폭행의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싸움의 상대방과 격리조치를 취하면 될 뿐이며, 그로 인해 운동과 교도작업 등을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징벌규칙 제11조 제3항이 위와 같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장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재량은 “0”으로 축소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 평가에서는 소장의 재량으로 징벌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징벌규칙 제11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목욕의 금지인데,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 때문에 목욕을 제한한다는 것 역시 과잉침해에 해당한다.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82조 제3항도 “징벌혐의자의 목욕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목욕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있다. 그러므로 목욕은 어떠한 이유로도 징벌혐의자에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구 징벌규칙 제7조 제2항에 비하여 개정 징벌규칙 제11조에서는 집필, 신문도서의 열람, 라디오 및 TV 시청, 자비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는 징벌혐의자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징벌혐의자의 권리제한은 징벌규칙 제11조의 범위 내에서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이다. 징벌혐의자의 권리제한은 소장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그 재량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로 엄격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징벌혐의자의 권리제한의 현황을 파악한 후, 기록조사와 수용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a. 증거인멸의 방지를 이유로 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를 제한하되, 그 제한처분이 증거인멸의 방지필요라는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조사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접견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적인 제한조치가 행해지더라도 그 제한조치가 증거인멸의 방지필요성이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가족과의 접견과 서신수발, 전화통화는 매우 특수하게 해당 가족이 규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증거인멸의 방지필요성이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과의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를 제한한다면 이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여부는 제출자료와 함께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b. 증거인멸의 방지를 이유로 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를 제한하되, 그 제한처분이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규율위반의 내용과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제한처분이 증거인멸의 방지필요성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증거인멸의 방지필요성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규율위반의 내용으로 볼 때 외부인과의 접견이나 서신수발, 전화통화를 통하여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포괄적인 제한처분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의 해당여부는 제출자료에서 평가할 수 없으며,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c. 운동,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의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징벌규칙 제11조 제3항이 부여한 소장의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제출자료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d. 운동,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의 제한조치가 행해지지만, “타인을 해칠 우려”라는 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여부는 제출자료에서 평가할 수 없으며,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e. 목욕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제출자료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f. 집필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제출자료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g. 신문도서의 열람과 라디오 및 TV 시청의 제한조치의 유무를 파악한다.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제출자료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 세부지표들의 관계에서 a와 b는 서로 비 양립의 관계에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양자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러한 관계는 c와 d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출자료] E9. 전년도 1년간 징벌혐의자에 대한 처우제한의 현황 (표)

(※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

구분		인원수	징벌혐의자 대비 비율(%)
징벌규칙 제11조 제2항	접견의 제한 및 금지		
	서신수발의 제한 및 금지		
	전화통화의 제한 및 금지		

징벌규칙 제11조 제3항	운동의 제한 및 금지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참석의 제한 및 금지			
	기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의 차단	목욕		
		기타 *		
기타	집필의 제한 및 금지			
	신문도서의 열람의 제한 및 금지			
	라디오와 TV 시청의 제한 및 금지			
	자변물품사용의 제한 및 금지			

(\* 기타는 목욕 외에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록조사]

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건의 사례를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 1)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의 사례 중에서 선정한다.
  - 2) 10건의 사례는 모두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1개 이상의 권리제한을 받은 사례여야 한다. 징벌수용자에게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었던 사례는 선정하지 않는다. 만약 조사기간 중의 권리제한 현황이 ‘징벌위원회회의록’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먼저 2배수(20건) 정도의 사례를 선정하고 각 건에 대하여 구급시설의 일일보고자료인 “조사자현황” 또는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 등의 기록을 요구하여 권리제한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10건의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3) 10건의 사례 중 5건은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건으로 선정한다.
2. 선정된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징벌위원회회의록’에 기재된 규율위반행위의 내용을 파악하고 난 후, “조사자현황” 또는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 기록을 통하여 권리제한 현황을 파악하여 위의 세부지표에의 해당여부를 평가한다. 10건 모두 위의 세부지표 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1건이라도 지표상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면담조사]

1.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1.1. 참조).
2. 수용자 3인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
  - 1) 규율위반의 내용과 징벌의 내용
  - 2) 조사기간 중 수용거실
  - 3)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의 제한 여부
  - 4) 운동과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의 제한 여부
  - 5) 목욕의 제한 여부
  - 6) 집필의 제한 여부
  - 7) 신문도서의 열람, 라디오 및 TV 시청의 제한 여부
3. 수용자 면담결과의 평가방식은 기록조사의 그것과 동일하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4.5. 조사기간 중 권리제한을 받는 징벌혐의자의 비율	조사기간 중 권리제한을 받는 징벌혐의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5)	항목 모두에서 권리제한을 받은 수용자의 비율이 20% 미만이다.	제출자료
		우수(4)	항목 모두에서 권리제한을 받은 수용자의 비율이 30% 미만이다.	
	보통(3)	항목 모두에서 권리제한을 받은 수용자의 비율이 40% 미만이다.		
	미흡(2)	항목 모두에서 권리제한을 받은 수용자의 비율이 50% 미만이다.		
	시정요함(1)	권리제한을 받은 수용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항목이 있다.		
<p>&lt;해설&gt;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조사기간 중 징벌혐의자의 권리제한은 소장의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징벌규칙 제11조 제2항은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접견과 서신수발, 전화통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제3항에서는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동,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E1.4.4.의 해설에서 보듯이, 징벌혐의만으로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러한 권리제한은 징벌혐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하거나 방어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징벌혐의자에 대한 권리제한은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구금시설에서는 징벌혐의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소장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그 재량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징벌혐의자의 권리제한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평가항목은 징벌규칙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권리제한의 정도를 양적 비율로 평가해 본다. 징벌규칙 제11조는 징벌혐의자에 대한 권리제한을 최소한도로 자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권리제한의 요건을 구 징벌규칙 제7조 제2항보다 구체화하였다. 구금시설에서는 과거 징벌혐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였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권리제한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준수할 것이 요망된다. 본 평가에서는 징벌혐의자 중 권리제한을 받는 수용자의 비율이 각 권리영역별로 40% 미만일 때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지표를 설정하였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자료를 통하여 징벌혐의자 중 권리제한을 받은 수용자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권리제한을 받은 수용자 수 ÷ 징벌혐의자 수 × 100}</li> <li>2. 권리제한을 받은 수용자의 비율은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운동,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 기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의 차단” 각 권리항목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각 권리항목별 비율이 평가지표에서 정한 비율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li> <li>3. 제출자료 E9.의 표 중에서 집필, 목욕, 신문도서의 열람과 라디오 및 TV 시청, 자비물품의 사용 항목은 제외한다.</li> </ol> <p>[제출자료] E9. 전년도 1년간 징벌혐의자에 대한 처우제한의 현황 (표) (※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p>				

구분		인원수	징벌혐의자 대비 비율(%)
징벌규칙 제11조 제2항	접견의 제한 및 금지		
	서신수발의 제한 및 금지		
	전화통화의 제한 및 금지		
징벌규칙 제11조 제3항	운동의 제한 및 금지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참석의 제한 및 금지		
	기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의 차단	목욕 기타*	
기타	집필의 제한 및 금지		
	신문도서의 열람의 제한 및 금지		
	라디오와 TV 시청의 제한 및 금지		
	자변물품사용의 제한 및 금지		

(\*기타는 목욕 외에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4.6. 조사기간 중 수용자의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는가?	중 충분한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는가?	우수(4)	①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비율이 50% 미만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30조 제2항은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보 받고 이에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을 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혐의에 대하여 조사함에 있어 수용자에게 충분한 자기변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절차에서 요구되는 당연한 사항이다. 징벌규칙 제9조에서도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평가항목은 징벌혐의로 조사받는 동안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징벌경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 E2. (징벌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귀하는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 진술의 기회가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았다. ②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진술을 하였다.</p>				

- ③ 거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 ④ 진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E1.5. 징벌위원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5.1. 징벌위원회 구성	징벌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위원의 참여는 적정한수준인가?	탁월(5)	외부위원 3인 이상을 위촉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중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외부위원 3인 이상을 위촉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중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가 1인이다.	
		보통(3)	외부위원 3인 이상을 위촉하고 있지만, 외부위원 중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가 없다. 또는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중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가 1인 이상이다.	
		미흡(2)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중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가 없다.	
		시정요함(1)	외부위원 1인을 위촉하고 있거나 외부위원의 위촉이 없다.	
<p>&lt;해설&gt; 징벌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행형법 제47조 제2항은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 제13조 제1항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외부 인사 중에서 2인 이상을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 징벌규칙 제8조의 2 제1항에서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에 비하여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의 역할은 구금시설의 징벌권이 보다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보장하고 구금시설의 징벌권 남용을 외부사회의 눈으로 감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의 수를 2인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p> <p>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징벌규칙 개정 이전에도 외부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실제 외부위원들이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부위원의</p>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평가에서는 외부위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한다.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만큼(징벌규칙 제 17조 제3항), 외부위원 2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부위원이 3인 이상이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그 만큼 징벌위원회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구 징벌규칙과는 달리, 개정 징벌규칙 제13조 제1항이 제1호 내지 제3호로 위촉해야 할 외부위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변호사”나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특별히 위촉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징벌위원회가 일반사회의 형사재판과 유사하게 법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 취지를 살린다면 구금시설에서는 “변호사”나 “대학의 법학교수(전임강사 이상)”를 적극적으로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징벌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와 기록조사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의 징벌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평가한다.
2. “변호사”는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강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대우교수나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은 제외해야 하고, 법학을 전공한 자여야 한다.
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1년 중 어느 때든지 외부위원이 교체되거나 외부위원의 수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변동 전후를 비교할 때 평가 지표상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평가지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전반기에는 외부위원 2인 중 변호사나 대학의 법학전임교원에 해당하는 자가 1인이 있었으나 외부위원이 교체되어 후반기에는 변호사나 대학의 법학전임교원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한다.
4.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후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E10. 전년도 1년간 징벌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 외부위원의 수와 직업 (외부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명시)

[기록조사]

‘징벌위원회회의록’에는 징벌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다.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을 검토하여 외부위원의 실제 참석실적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참석실적이 전혀 없는 외부위원은 위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5.2.	징벌위원	세부지표	a. 외부위원 1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가	제출자료

징벌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회는 공정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전체 징벌위원회 회의의 90% 이상이다. b. 외부위원 2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가 전체 징벌위원회 회의의 50% 이상이다. c.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서 개최된다. d. 충분한 정도의 회의시간을 갖고 심리한다.	기록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징벌위원회의 활동이 징벌위원회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외부위원의 참석은 징벌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외부위원이 위촉되었지만 실제 징벌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는다면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징벌규칙 제13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위촉된다고 전제할 때 외부위원 2인 이상의 참석은 전체 징벌위원회의 50% 이상, 외부위원 1인 이상의 참석은 90%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징벌위원회는 그 심리와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집무실에서 개최되어서는 안 되며 독립된 심리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종종 보안과장실에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직원집무실은 징벌위원회에 출석한 수용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징벌위원회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징벌위원회가 요식절차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가 이루어지는가도 중요한 평가항목이 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 징벌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며, 기록조사를 병행한다.

a.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외부위원 1인 이상 참석한 회의건수 \div 1년간 전체 징벌위원회 개최건수 \times 100\}$

b.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외부위원 2인 이상 참석한 회의건수 \div 1년간 전체 징벌위원회 개최건수 \times 100\}$

c. 징벌위원회의 개최장소가 보안과장실이나 보안과상황실 등 직원집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인가를 평가한다. 회의실이나 상담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장 집무실에서 징벌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서 개최된 것으로 간주한다.

d. 제출자료의 회의시간과 기록조사를 통하여 징벌위원회의 심리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충분한 심리'란 징벌의결 1건 당 회의시간이 평균 30분 이상이고, 심리의 내용이 규율위반행위의 사실관계의 확인 및 징벌양정 양자에 관하여 징벌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것을 말한다.

[제출자료] E11. 전년도 1년간 징벌위원회의 개최현황 (표)

징벌위원회	회의일시 및 회의시간	개최장소	징벌위원중 참석위원 수	참석한 외부위원 수	징벌의결 건수
제1차					
제2차					

(징벌위원회의 개최현황을 순차적으로 모두 작성함.)

[기록조사]

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을 검토하여 외부위원의 참석여부, 개최장소, 회의시간을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임의로 3-5개의 징벌위원회회의록을 제출자료와 대조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4.4. 참조).
3.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충분한 회의시간을 가지고 심리가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징벌위원회회의록’에는 회의시간이 기재된 경우가 많은데, 기재된 회의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회의록 상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정도의 심리가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5.3. 징벌위원회 의결절차의 적정성	징벌위원회 의결절차는 적정한가?	세부지표	a. 징벌위원회는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징벌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다. b. 징벌위원회는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결하였다. c.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하였다. d.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을 준수하였다.	기록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징벌위원회의 의결절차는 징벌규칙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이 평가항목은 징벌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은 의결절차를 다소 수정하였다. 징벌규칙 제16조 제1항은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규칙 제19조는 “징벌위원회는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p>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벌규칙 제17조 제3항은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징벌위원회의 의결절차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징벌위원회의 발언내용과 의결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기록조사와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세부지표의 징벌위원회 의결절차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 a. 수용자면담을 통하여 확인한다. 면담 수용자 모두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b. ‘징벌위원회회의록’에서 선정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관련 징벌의결요구서를 대비해 봄으로써 평가한다. 10개의 사례 모두 5일 이내의 의결을 준수한 경우일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수용자면담을 통하여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날과 징벌위원회의결일의 기간을 확인해 본다.
- c. 샘플로 선정된 10개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이 징벌위원회의 심리사항 및 의결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징벌위원회의 회의록은 징벌위원회의 진행순서, 징벌위원회 위원들의 발언내용, 의결방법, 의결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사례 10개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종종 징벌위원회 회의록이 매우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다른 사건인데도 징벌위원의 발언순서나 발언내용이千篇일률적이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가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 d. 샘플로 선정된 10개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의 기재사항을 통하여 평가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여부는 징벌위원의 서명날인을 보아 평가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는 회의록에 최종적인 징벌의결에 찬성한 위원이 누구인지, 반대한 위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록조사]

- 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4.4. 참조).
- 2.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위의 세부지표에 해당하는지 평가한다.

[면담조사]

- 1.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1.1. 참조).
- 2. 수용자 3인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
  - 1)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았는가 여부
  - 2)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날과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일 사이의 기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5.4.	징벌위원	세부지표	a. 다른 수용자가 징벌혐의의 수용자를	제출자료

징벌위원회와 적법절차의 보장	회는 수용자에게 적법절차의 보장을 제공하는가?		위하여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b. 외부인이 징벌혐의의 수용자를 위하여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c. 징벌혐의의 수용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징벌위원회의 의결과정을 방청할 수 있다. d. 다른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의 의결과정을 방청할 수 있다.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구금시설에서 징벌은 일반 사회의 형벌에 비교할 수 있는 만큼, 적법절차의 요청은 징벌위원회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징벌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는 형사사건의 미결수용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3나 35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헌법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구금시설에서 징벌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 적법절차의 요청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나 외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준용). 징벌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는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관계법령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수용자나 변호사 등 외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특히 문맹이거나 학력 내지 지능이 낮아 언어이해력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다소 떨어지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그리고 징벌위원회의 회의과정은 일정 정도 공개되어야 한다(헌법상 재판공개주의의 준용). 구금시설의 특성상 일반인에게 징벌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의 대상은 징벌혐의자의 가족과 동료수용자 정도일 것이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와 수용자 면담을 통하여 평가지표의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제출자료에 위의 세부지표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과 최근 1년간의 적용사례가 없다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 a. 동료수용자가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호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은 징벌혐의자와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b. 외부인이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호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은 징벌혐의자와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c. 징벌혐의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원할 경우 징벌위원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징벌혐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다.
- d. 징벌혐의자 외의 다른 수용자가 원할 경우 징벌위원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할 수 있다

는 의미이다. 징벌혐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다.

[제출자료]

E12. 징벌위원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서술하시오.

- ① 다른 수용자가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과 최근 1년간의 사례건수
- ② 외부인이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과 최근 1년간의 사례건수
- ③ 징벌혐의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징벌위원회에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방청이 가능하다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과 최근 1년간의 사례건수
- ④ 징벌혐의자 외의 다른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방청이 가능하다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과 최근 1년간의 사례건수

[면담조사]

- 1.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1.1. 참조).
- 2. 수용자 3인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
  - 1) 다른 수용자가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 외부인이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 3) 징벌혐의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징벌위원회에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
  - 4) 징벌혐의자 외의 다른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5.5.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의 진술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가?		보통(3)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미흡(2)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시정요함(1)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	

<해설> 징벌혐의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인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할 경우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것도 적법절차의 요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자기변호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이다. 징벌규칙 제17조 제1항은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혐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징벌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이지만, 적법절차의 요청 상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항이다.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자료를 통하여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한 사례가 전체 징벌위원회 의결건수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참조하여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진술 여부를 평가한다.</li> <li>2. 여기에서 말하는 충분한 진술의 기회란 수용자에게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가, 그리고 징벌위원회 위원들이 수용자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등 실질적인 심리가 진행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li> <li>3. 기록조사와 수용자 면담조사에서 모두 충분한 진술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올 때 ‘보통’으로 평가한다.</li> </ol>	
<p>[제출자료]</p> <p>E13. 전년도 1년간 수용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징벌위원회의 개최횟수 및 징벌의결건수</p>	
<p>[기록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4.4. 참조).</li> <li>2. 선정된 10개의 사례 중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한 5개의 사례에 대하여 징벌위원회회의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는가를 평가한다.</li> </ol>	
<p>[면담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1.1. 참조).</li> <li>2. 수용자 3인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벌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술하였는가?</li> <li>2) 징벌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들었는가? (‘반성하고 있습니까?’ 따위의 요식적인 질문은 제외함)</li> </ol> </li> </ol>	

**E1.6. 징벌의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6.1. 징벌 외의 다른 대처방법	혼계처분과 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의 활용정도	탁월(5)	혼계처분과 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이 징벌혐의자 중 30% 이상이다.	제출자료
		우수(4)	혼계처분과 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이 징벌혐의자 중 25% 이상 30% 미만이다.	
		보통(3)	혼계처분과 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이 징벌혐의자 중 20% 이상 25% 미만이다.	
		미흡(2)	혼계처분과 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이 징벌혐의자 중 15% 이상 20% 미만이다.	
		시정요함(1)	혼계처분과 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이 징벌혐의자 중 15% 미만이다.	

<해설> 규율위반행위가 있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징벌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는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징벌을 부과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징벌은 시설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행형법 제46조 제3항에서도 “징벌은…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징벌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징벌 외에 다른 대처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경미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징벌 이외의 다른 대처방법에 대해서 구징벌규칙은 뚜렷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 제12조 제1항은 이에 관련하여 “소장은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 요구, 2. 징벌혐의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혐의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장은 징벌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나 징벌위원회 회부보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비유할 수 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듯이, 징벌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항상 징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최근 5년간 검찰의 기소유예율이 대략 10~15% 정도임을 감안하여(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3, 165면 참조)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징벌혐의자가 이미 구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훈계 및 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의 비율은 검찰의 기소유예율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훈계처분과 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훈계처분과 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의 건수의 합 ÷ 전체 징벌혐의자 × 100}
2. 여기에서 말하는 훈계처분은 징벌의 일종인 경고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E14. 전년도 1년간 조사종결처분의 현황 (표)

(※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재함)

구분	수용자 수	징벌혐의자 중 비율(%)
징벌위원회 징벌의결 요구		
징벌혐의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징벌혐의자에 대한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합계		100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6.2. 금치이외의 징벌의	금치이외의 경한	탁월(5)	금치 외의 다른 징벌 4종을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금치 외의 징벌의 활용빈도가 전체 징벌건수의 50%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활용정도	징벌을 활용하고 있는가?	우수(4)	금치 외의 다른 징벌을 3종 이상 활용하고 있으며, 금치 외의 징벌의 활용빈도가 전체 징벌건수의 40% 이상이다.
		보통(3)	금치 외의 다른 징벌을 3종 이상 활용하고 있으며, 금치 외의 징벌의 활용빈도가 전체 징벌건수의 30% 이상이다.
		미흡(2)	금치 외의 다른 징벌을 2종 이상 활용하고 있으며, 금치 외의 징벌의 활용빈도가 전체 징벌건수의 20% 이상이다.
		시정요함(1)	금치 외의 다른 징벌을 2종 이상 활용하고 있지만, 금치 이외의 징벌의 활용빈도가 20% 미만이다. 또는 금치 외의 징벌을 1종만 활용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p>&lt;해설&gt; 행형법 제46조 제2항은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그리고 금치의 5가지 징벌을 규정하고 있다. 징벌은 규율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행형법 제46조 제3항에서도 “징벌은 …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징벌부과기준을 구체화한 구 징벌규칙 제4조가 거의 금치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4가지 징벌의 활용가능성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 제4조는 구 징벌규칙 제4조보다 징벌부과기준을 상당히 완화하였다는데 특색이 있다. 징벌규칙 제4조 제4호는 모든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자에 대해서는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또는 경고”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제2호와 제3호는 징벌규칙 제3조가 규정한 21가지 규율위반행위 중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율위반에 대해서는 작업상여금의 삭감을 금치와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금치 이외의 4가지 징벌의 활용가능성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진 셈이다. 규율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금치를 선고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임에 틀림없다. 금치는 징벌 중 최후의 수단이며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만큼 그 사용이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 1990년 UN이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7조는 “징벌로서의 독거구금을 폐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고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금시설에서는 징벌부과기준을 완화한 징벌규칙 제4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금치 이외의 징벌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금치 위주의 징벌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금치 이외의 징벌을 3종 이상 활용하고 그 빈도가 30% 이상일 때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금치 외의 징벌의 활용빈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공판사건 처리현황을 볼 때 징역형의 선고비율이 65-73% 임을 감안한 것이며(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3, 202면 참조), 금치의 폐지 내지 사용억제라는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선고비율보다 다소 높게 비율을 책정하였다.</p>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먼저 금치 이외의 징벌이 몇 가지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2. 금치 이외의 징벌의 활용빈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text{금치 이외의 징벌의 선고건수의 합} \div \text{전체 징벌선고건수} \times 100 \}$
3.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된 징벌을 기준으로 한다.
4. 2004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E15. 전년도 1년간 징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징벌의 내역 (표)

규율(징벌규칙 제3조)	징벌건수	징벌내용 (예 : 금치 20일 0건, 금치 1월 0건 등)	가중 여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1호위반부터 제21호위반까지 같은 표양식으로 기재함)  
 (※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  
 (※ 집행유예의 경우 별도표기 안하고 선고된 징벌내역을 기재함)

[기록조사]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의 징벌내용을 검토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해 본다. 예를 들어, 비교적 선고건수가 적은 징벌인 작업상여금의 삭감 건수를 징벌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하여 제출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볼 수 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6.3. 금치의 활용의 적정성	금치선고는 적정한 수준인가?	세부지표	제출자료 기록조사
		a. 5일 이하의 단기금치를 활용하고 있다.	
		b. 30일 이하의 금치선고가 전체 금치선고건수의 95% 이상이다.	
		c. 선고된 금치의 평균기간이 20일 미만이다.	
		d. 금치집행 중 연속하여 금치를 선고한 경우가 전체 금치선고건수의 5% 미만이다.	
		탁월(5)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금치는 가장 중한 징벌이며 수용자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상당한 해를 줄 수 있는 징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치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서는 안 된다. 행형법 제46조 제3항이 “징벌은 …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징벌을 부과하지 말고, 징벌을 부과하더라도 가능한 한 경한 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금치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행형법은 2월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 제4조는 다행스럽게도 원칙적으로 30일 이하의 금치를 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치기간의 상한선을 축소하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징벌규칙 제8조의 징벌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가중을 인정함으로써 실제로는 금치 45일이 현재 징벌규칙상의 금치의 상한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치기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 최저기준규칙을 발전적으로 해석한 Making Standards Work(Penal Reform International, 2001)는 금치가 예외적이고 드물게 사용해야 할 징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7면). 1990년 UN이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7조는 “징벌로서의 독거구금을 폐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고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는 1월 이상의 금치를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결정하였다(Making Standards Work, 47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상한선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2월 이내로 규정된 금치기간을 제한하도록 법령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2003.6.16, 02진인643, 1096, 1575 병합결정). 참고로 독일행형법 제103조는 4주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따라 본 평가항목은 금치를 선고하더라도 그 기간을 최소한도로 단축하도록 지표를 설정하였다.

징벌규칙 제4조의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30일 이하의 금치가 전체 금치선고건수의 95%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속징벌에 대해서는,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 제24조에서 “① 소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금치처분을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치처분을 집행한 후 이미 집행한 금치기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음 금치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연속하여 집행할 금치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연속징벌이 금치의 상한선을 일탈하는 수단이 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었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연속징벌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3.2.10자, 02진인962 결정). 징벌규칙 제24조는 금치와 금치의 연이은 집행 사이에 약간의 경과기간을 두는 것으로 연속징벌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중간의 짧은 경과기간이 금치가 가져올 건강상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금치집행 중에 연속하여 금치가 선고되는 경향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기록조사를 통하여 건수를 확인한다.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후의 현황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다.

- a. 선고된 금치일수가 5일 이내인 경우가 1건이라도 있는지에 따른다.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포함한다.
- b. 30일 이하의 금치선고건수가 전체 금치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0일 이하의 금치선고건수 ÷ 전체 금치선고건수 × 100}. 집행이 유예된 건수도 포함한다.
- c. 제출자료의 평균금치선고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d. 금치집행 중 연속하여 금치를 선고한 건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금치집행 중 연속하여 금치를 선고한 건수 ÷ 전체 금치선고건수 × 100}. 금치의 집행유예는 제외한다.

[제출자료]

E15. 전년도 1년간 징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징벌의 내역 (표)

규율(징벌규칙 제3조)	징벌건수	징벌내용 (예 : 금치 20일 0건, 금치 1월 0건 등)	가중 여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1호위반부터 제21호위반까지 같은 표양식으로 기재함)

(※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

E16. 전년도 1년간 징벌로 금치가 선고된 경우 금치기간별 현황 (표)

(※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

금치기간	금치선고건수 (금치의 집행유예 포함)	금치선고건수 중 집행유예 선고건수	평균 금치기간
5일 이내			(금치기간의 총합 ÷ 금치선고건수) ※ 일단위로 계산하되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
6-10일			
11-20일			
21일-1월			
1월 초과 2월			
2월 초과			
합계			

E17. 전년도 1년간 금치 집행 중 연속하여 금치선고를 한 건수(집행유예는 제외)

[기록조사]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을 검토하여 5일 이내의 단기금치의 선고건수와 30일 이하의 금치의 선고건수를 확인하고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E1.7. 징벌집행의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7.1. 징벌집행유예제도의 활용정도의 활용정도	징벌집행유예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탁월(5)	징벌집행유예의 건수가 전체 징벌의결건수의 60% 이상임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징벌집행유예의 건수가 전체 징벌의결건수의 50% 이상 60% 미만임	
		보통(3)	징벌집행유예의 건수가 전체 징벌의결건수의 40% 이상 50% 미만임	
		미흡(2)	징벌집행유예의 건수가 전체 징벌의결건수의 30% 이상 40% 미만임	
		시정요함(1)	징벌집행유예의 건수가 전체 징벌의결건수의 30% 미만임	
<p>&lt;해설&gt; 행형법 제48조의 2 제1항은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누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여 징벌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다. 그 방식은 형법상의 집행유예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오히려 징벌집행유예제도는 모든 징벌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법상의 집행유예제도보다 적용범위는 훨씬 넓다. 징벌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특히 금지하는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가 다시 규율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벌집행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평가항목은 징벌집행유예제도의 활용정도를 평가한다. 집행유예의 활용비율을 세분화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전체 공판사건의 40~45% 정도이며, 징역형 선고 중 60%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3, 202면 참조)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1년간 징벌집행유예의 활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math display="block">\{ \text{징벌집행유예의 건수} \div \text{전체 징벌선고건수} \times 100 \}</math> </li> <li>제출자료의 징벌집행유예건수를 기록조사로 확인해 본다.</li> </ol> <p>[제출자료]</p> <p>E18. 전년도 1년간 징벌집행유예의 건수 및 전체 징벌선고건수 대비 비율</p> <p>[기록조사]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을 통하여 징벌집행유예의 건수를 확인하고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	------	------

E1.7.2. 징벌감면 제도의 활용정도	징벌감면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탁월(5)	징벌감면건수가 집행유예를 제외한 전체 징벌건수의 50%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징벌감면건수가 집행유예를 제외한 전체 징벌건수의 40% 이상 50% 미만이다.	
		보통(3)	징벌감면건수가 집행유예를 제외한 전체 징벌건수의 30% 이상 40% 미만이다.	
		미흡(2)	징벌감면건수가 집행유예를 제외한 전체 징벌건수의 20% 이상 30% 미만이다.	
		시정요함(1)	징벌감면건수가 집행유예를 제외한 전체 징벌건수의 20% 미만이다.	

<해설> 행형법 제48조 제2항은 “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누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장에게 징벌감면(소위 잔벌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징벌감면제도는 징벌의 가혹성을 사후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특히 금치의 상한선이 국제기준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치가 수용자의 인격과 건강권에 미치는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치의 선고 내지 선고일수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징벌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구금시설별로 징벌감면제도의 활용정도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징벌감면은 징벌의 가혹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어야 하며, 소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이용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본 평가항목은 징벌감면제도의 활용비율을 평가해 본다. 징벌감면제도는 징벌집행유예제도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 징벌집행유예를 많이 활용하는 구금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징벌감면의 이용비율이 저조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평가항목에서는 집행유예를 제외한 징벌선고건수 대비 징벌감면의 이용률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전년도 1년간 징벌감면의 활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징벌감면건수 ÷ 집행유예를 제외한 전체 징벌선고건수 × 100}
2. 집행유예를 제외한 전체 징벌선고건수는 제출자료 E18.에서 계산한다.
3. 징벌감면건수는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며, 기록조사를 통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제출자료]

E18. 전년도 1년간 징벌집행유예의 건수 및 전체 징벌선고건수 대비 비율

E19. 전년도 1년간 행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징벌감경 및 징벌면제의 건수

[기록조사]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통하여 징벌감면의 건수를 확인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	------	------	------

E1.7.3. 금치 집행 수용자의 권리보장	금치집행 의 경우 해당 수용자의 권리보장 에 충실 한가?	세부지표	a. 접견 b. 집필 c. 서신수발 d. 운동 e.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의 비치 및 사용 f.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든 금치수용자에게 a에서 f까지 모두 허용하고 있다.	
		우수(4)	모든 금치수용자에게 a에서 e까지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f는 일부 금치수용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보통(3)	모든 금치수용자에게 a ~ e 중에서 4개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부 금치수용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미흡(2)	모든 금치수용자에게 a ~ e 중에서 4개를 허용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모든 금치수용자에게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또는, 모든 금치수용자에게 a ~ e 중에서 3개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부 금치수용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시정요함(1)	모든 금치수용자에게 a ~ e 중에서 2개 이하를 허용하고 있거나 모든 금치수용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1개도 없다.	
<p>&lt;해설&gt;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로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 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구금시설의 실무에서 단서조항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거의 대부분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형법 제46조 제3항이 규정한 바 “수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과잉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접견, 서신 등의 포괄적인 권리제한은 금치처분에 대하여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p> <p>이러한 금치처분은 총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최저기준규칙 제31조가 규정한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하여 금치의 집행내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접견, 서신수발, 집필, 운동, 의료와 관련한 자비부담물품의 사용 등을 허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2003.6.16.자, 02진인</p>				

643, 1096, 1575 병합결정).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은 제23조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징벌규칙 제23조 제1항은 “소장은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화상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처우(1. 접견, 2. 집필, 3. 서신수발, 4.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5. 수용자의 비용을 구입한 생활필수품 또는 의약품의 비치 및 그 사용)를 허가한다. 다만, 규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처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금치기간 중의 권리제한을 규정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을 개정해야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징벌규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징벌규칙 제23조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활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행형법 제145조 제2항에 의한 포괄적인 권리제한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위헌적,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결정에 기초하여 금치처분에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권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집필”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집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원초적인 인권이며 그것이 수용목적 내지 징벌목적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금치기간 중뿐만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게 집필은 허가사항으로 규제할 수 없다(국가인권위 2003. 8. 25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1권 제5호 참조).

둘째, “접견”과 “서신수발”의 권리도 금치의 내용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접견과 서신수발을 금지하면 수용자는 금치기간을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보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수용자가 징벌이나 기타 처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운동”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운동은 수용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행형법시행령 제96조는 독거수용자에 대해서는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독거수용이 수용자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징벌로 독거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금치 중일지라도 운동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의 사용은 금지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금치처분이라도 집필, 접견, 서신수발, 운동, 자비구입 의약품과 생활필수품의 사용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권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구금시설에서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과 징벌규칙 제23조 제1항의 “교화상 또는 처우상 필요”라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처우는 교화에 악영향을 끼칠 따름이기 때문이다. 운동의 경우 실무에서는 허용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운동금지가 반인권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금시설에서는 금치수용자에게 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지침> 전년도 1년간 금치수용자의 권리제한의 현황을 제출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고 난 후,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는 2004.6.29 이후의 현황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다.

- a. 징벌수용자의 급수에 상응하는 접견이 통상적인 수용 시와 마찬가지로 금지기간 중에도 허용됨을 의미한다. 일회적으로 접견을 허가해 주었다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접견의 허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b. c. d. 집필, 서신수발, 운동이 통상적인 수용 시와 마찬가지로 금지기간 중에도 허용됨을 의미한다. 설사 일회적으로 허가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평가지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e. f. 금지기간 내내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출자료]

E20. 전년도 1년간 금지집행 수용자의 권리제한의 현황 (표)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

권리의 구분	권리가 허용된 금지집행수용자 수	권리가 제한된 금지집행수용자 수	전체 금지수용자 수 대비 권리가 허용된 수용자의 비율(%)
접견			
집필			
서신수발			
운동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의 비치 및 사용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 권리가 허용된다 함은 통상적인 수용시와 마찬가지로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일회적인 허용은 권리의 허용이 아님)

[기록조사]

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4.4. 참조).
2.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해당 ‘징벌집행통지서’를 요구하여 그 안에 기재된 권리제한(처우제한)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해 본다.

[면담조사]

1.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1.1. 참조).
2. 수용자에게는 다음을 질문하여 확인한다.
  - 1) 금지기간 중 접견권의 허용 여부
  - 2) 금지기간 중 집필권의 허용 여부
  - 3) 금지기간 중 서신수발권의 허용여부
  - 4) 금지기간 중 운동의 허용여부
  - 5) 금지기간 중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의 비치 및 사용의 허용 여부

6) 금치기간 중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의 허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7.4. 금치집행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진단	금치집행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진단은 충실히 시행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금치집행 전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진단하고 있다. b. 금치집행 중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1회 이상 진단하고 있다. c. 금치집행 후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진단하고 있다. d. 금치집행 전 의사는 수용자가 금치집행을 견딜만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금치는 수용자의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최저기준규칙 제 32조 제1항은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어 동 제3항에서는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시행령은 금치집행 전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제145조 3항)고 규정하고, 또한 금치집행 중에 수시로(제146조), 그리고 금치집행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제148조) 의무관으로 하여금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어떠한 경우에도 건강진단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건강진단의 주체는 의사여야 하며, 건강진단은 금치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자세한 진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금치집행 전의 건강검진에서 서면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행형법시행령의 규정은 최저기준규칙 제32조가 설정한 기준보다는 미흡하다. 서면증명은 수용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우려를 씻을 수 있으며, 차후 금치집행으로 수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최저기준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치집행 전에는 의사의 서면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평가항목은 금치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진단이 얼마나 충실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본다.</p>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금치집행 전후와 집행 중의 건강진단의 실시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기록조사와 수용자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실한 진단”은 혈압과 체중뿐만 아니라 청진기검사와 X-ray검사를 진단의 기본항목으로 하면서 의사의 문진이 10분 이상 동반된 경우를 말한다.

a. 금치집행 전에 실시하는 의사의 건강진단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통상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과에 들러 혈압과 체중을 재는 등의 극히 형식적인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건강진단은 사실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b. 금치집행 중에 의사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 항목은 건강진단의 충실성보다는 횟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의사는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금치집행 중인 수용자를 실제로 면담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순히 징벌실의 복도를 지나치면서 금치집행수용자를 관찰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진단이 아니다.

c. 금치집행 종료 후의 건강진단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이는 a와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이 단순히 혈압과 체중을 재는 정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건강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한다.

[제출자료]

E21. 금치집행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진단(최근 3개월 동안의 통상적인 방법)

- ① 금치집행 전 건강진단(진단의 주체, 진단방법, 진단항목을 기재)
- ② 금치집행 중 건강진단(진단의 주체, 진단방법, 진단항목을 기재)
- ③ 금치집행 후 건강진단(진단의 주체, 진단방법, 진단항목을 기재)

[기록조사]

1. ‘수용자징벌(집행)부’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금치집행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진단방법이나 진단항목 등이 제출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수용자징벌(집행)부’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금치집행 수용자 중에서 임의로 3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의무과에 해당 수용자의 ‘재소자건강진단부’를 요구하여 기록을 확인해 본다.

[면담조사]

1.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1.1. 참조).
2. 수용자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
  - 1) 징벌집행 전의 건강진단은 누가 어떻게 하였는가?
  - 2) 징벌집행 중에 본인 위해서 의무과 연출을 한 것을 제외하고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건강진단을 하였는가?
  - 3) 징벌집행 후의 건강진단은 누가 어떻게 하였는가?

E1.8. 징벌실의 인권침해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8.1. 징별실의 면적	징별실의 면적은 1인의 생활공간으 로 충분한가?	탁월(5)	모든 징별실의 면적이 2평 이상이다.	현장조사
		우수(4)	모든 징별실의 면적이 1.5평 이상이다.	
		보통(3)	모든 징별실의 면적이 1.2평 이상이다.	
		미흡(2)	모든 징별실의 면적이 0.9평 이상이다.	
		시정요함(1)	면적이 0.9평 미만인 징별실이 있다.	
<p>&lt;해설&gt; 징별실은 독거실의 일종이다. 징별로서의 금치가 일반 독거수용과 구별되는 것은 수용생활의 여러 가지 편의와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 있다. 금치의 경우 작업, 신문도서의 열람, 라디오 및 TV의 시청, 의약품과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자비물품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 외 금치가 일반 독거실보다 좁은 면적의 열악한 징별실에 수용함으로써 수용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자는 목적을 지니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징별실의 면적은 독거실의 1인 생활의 기본면적기준과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 징별실은 일반독거실보다 작아도 된다거나 작아야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적 발상이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독거실의 면적에 관한 평가항목(A2.1.2.)의 지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징별실의 면적을 평가한다. 참고로 법무시설기준규칙은 일반독거실의 경우 4.62㎡(1.4평)을, 엄정독거실의 경우 3.63㎡(1.1평), 징별실의 경우 2.97㎡(0.9평)을 기준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징별실의 면적이 일반독거실보다 작게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기준에 따를 때 징별실의 면적이 0.9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요함’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화장실을 제외한 징별실의 면적이 0.9평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최소한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정한 1인당 0.9평으로 증개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별실의 면적에 대하여 실측하여 조사한다. 면적이 다른 징별실이 있는 경우 각 징별실을 모두 실측해 보아야 하며, 그 중 가장 면적이 작은 징별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li> <li>2. 여기에서 말하는 징별실의 면적은 화장실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li> </ol> <p>[현장조사]</p> <p>징별실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제외한 징별실의 면적을 실측한다. 면적이 다른 징별실을 모두 실측해야 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8.2. 징별실의 구조	징별실의 구조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세부지표	a.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있으며,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b.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c. 창문으로 충분한 자연채광이 가능하다. d. 창문으로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다. e. 조명은 야간에 책을 읽는데 지장이 없는	현장조사

수준인가?		수준이다. f. 난방은 바닥 난방이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5개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해설> 징벌실의 구조도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11조는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해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b. 인공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제12조는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평가항목은 화장실 및 세면시설, 창문의 환기와 채광, 조명, 난방 등 징벌실의 기본구조와 시설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지침> 징벌실을 현장조사하여 징벌실의 구조와 시설을 확인한다. 구조와 시설이 다른 징벌실이 있는 경우 각 징벌실을 모두 방문하여 구조와 시설을 확인해야 하며, 각 징벌실이 모두 세부지표의 기준을 충족할 때 세부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a.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실이 징벌실의 거실에서 볼 때 바닥으로부터 90cm이상의 시각적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변기 등 화장실의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벌실 등에 화장실 칸막이가 아예 없거나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높이 50cm 정도의 가림막만이 설치된 것은 수용자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차폐시설의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2003.2.10. 자, 02진인1089 결정). 실제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징벌실에 화장실 칸막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높이 30-50cm 정도의 가림막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차폐시설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변기 등 화장실의 위생상태는 변기의 파손여부와 막힘 여부,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나 오물이 묻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b. 화장실 내 혹은 거실 내에 별도의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을 말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따르면 화장실 내에 세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장실 내외를 불문하고 세면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세면기는 일반 사회에서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높이와 크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구금시설에서는 징벌실의 경우 세면기가 아예 없이 화장실에 수도꼭지만 있거나, 화장실 구석에 높이가 낮고 크기가 매우 작은 간이세면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기에서 말하는 세면시설이라 볼 수 없다. 세면시설의 위생상태는 세면대와 수도꼭지의 파손여부와

배수,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나 오물이 묻어 있는지, 녹이 슬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c. 창문이 자연채광이 충분할 정도의 크기와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법무시설 기준규칙에는 창문의 크기에 관한 기준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거실의 창문크기에 관하여 법무부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채광과 환기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단 건설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창문면적이 채광기준으로는 거실바닥면적의 1/10 이상, 환기기준으로는 1/2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2004.4.7.자, 03진인5167 결정). 이 기준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크기는 거실바닥면적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창문크기와 함께 창문으로 실제 자연채광이 가능한지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일부 구급시설에서는 창문의 크기와 상관없이 창문의 아크릴판이 지지분하여 실제 자연채광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거실창문 바깥에 또 다른 외벽이 있어 실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창문크기와 상관없이 본 세부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d. 환기에 관한 것으로 창문의 크기가 위에서 제시한 대로 거실바닥면적의 1/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채광을 기준으로 할 때 창문크기는 창문의 전체면적이 기준이 되지만, 환기를 기준으로 할 때 창문크기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창문면적을 말한다. 즉 창문의 전체면적 중 열어서 환기가 가능한 창문면적이 거실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수용자가 안에서 창문을 열 수 있다면 열리는 창문의 크기를 조사해야 하며, 열 수 없다면 그 상태에서 창문 중 환기가 가능한 창문면적을 조사한다. 일부 구급시설에서는 창문을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만들면서 창문의 아크릴판에 구멍을 뚫어 환기시설이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본 세부지표에 해당할 수 없다. 환기는 신선한 외부공기가 유입되는가가 기준이 되며, 환풍기 등 인공적인 환기시설의 설치여부는 불문한다.

e. 조명이 야간에 책을 읽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밝다는 것을 말한다. 법무시설기준 규칙은 거실조명시설의 취침 전 조도가 300LUX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조도측정기구를 통하여 정확한 조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60W 형광등 2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통상 30W 형광등 2개를 거실바닥에서 1.8m 높이에 설치하였을 때 거실 책상에서 측정하는 조도는 140-160LUX 정도임을 감안한 것이다.

f. 난방방식을 평가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의하면 난방방식은 바닥난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징벌실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징벌실이 일반 독거실과 난방 등 생활여건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징벌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의 세부지표에 해당하는지 평가한다.

a. 화장실의 차폐시설의 높이를 측정하고, 변기의 상태와 막힘 현상, 오물과 얼룩을 확인한다. 변기의 막힘 현상 여부는 현장조사 시 징벌수용자에게 질문해 본다.

b. 세면기의 설치여부와 설치높이 및 크기를 확인하고, 세면기의 파손여부, 배수의 원활함, 얼룩과 오물을 확인한다. 배수의 원활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시 징벌수용자에게 질

- 문해 본다.
- c. 창문의 면적과 투명성의 정도, 창문 바깥의 외벽설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 d. 창문의 개폐여부와 창문을 열었을 때 창문의 열린 부분의 면적 등을 확인한다.
  - e. 조도측정기구로 실제 조도를 측정해 보거나, 아니면 징벌실 내에 설치된 형광등의 W(와트)를 확인한다.
  - f. 거실의 난방형태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8.3. 징벌실의 설비	징벌실에는 수용자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세부지표	a. 사물함 또는 사물보관용 선반이 있다. b. 칫솔·치약의 보관대가 있다. c. 책상을 갖추고 있다. d. 선풍기가 있다. e. 빨래걸이를 갖추고 있다.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징벌실에도 일반 독거실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10조, 제12조, 제15조 등은 피구금자의 건강과 청결유지에 필요한 설비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거실의 기본설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없고, 이불함과 관물함, TV와 선풍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데 불과하다. 그런데 실제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징벌실의 설비는 일반 독거실보다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징벌은 수용자에게 일상생활상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징벌실의 경우에도 사물함 내지 사물보관용 선반을 갖추어야 하고 책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징벌실은 물론이고 일반 독거실의 경우에도 고정된 사물함이나 사물보관용 선반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수용자가 개인 생활용품을 거실 바닥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좁은 거실공간을 더욱 비좁게 만든다. 과거 징벌실에 수용하게 되면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의하여 수용자의 거의 모든 편의와 권리가 제한되는 결과 실제 징벌실 수용자는 비누, 치약, 칫솔 등 지극히 기본적인 용품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생활용품을 거실에 가져오거나 비치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 제23조는 교화상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금치수용자에게도 접견, 집필, 서신수발,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수용자의 비용을 구입한 생활필수품 또는 의약품의 비치 및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앞의 평가항목 E1.7.3.에서 언급한 것처럼 징벌수용자라 하더라도 접견, 집필, 서신수발, 운동과 목욕, 생활필수품 및 의약품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허용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3.6.16.자, 02진인643, 1096, 1575 병합결정 참조). 그렇다면 징벌실의 경우에도 집필과 서신작성을 위한 용품이라든가 자비구입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집필과 식사, 독서를 위한 책상이 있어야 한다. 사물함의 경우 고정된 사물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물보관용 선반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구급시설에서는 일반 독거실의 경우 많은 경우에 칫솔 등의 보관대, 선풍기와 TV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징벌실에는 그러한 설비가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징벌실의 생활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징벌실에도 당연히 칫솔 등의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선풍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금치 수용의 경우 TV 시청은 제한가능하므로 징벌실에 반드시 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벌실 수용자가 빨래를 널어 말릴 수 있도록 빨래걸이도 거실 내에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징벌실을 현장조사하여 징벌실의 설비를 확인한다. 설비조건이 서로 다른 징벌실이 있는 경우 각 징벌실을 모두 방문하여 설비를 확인해야 하며, 각 징벌실의 설비가 모두 세부지표의 기준을 충족할 때 세부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a. 고정된 사물함이나 사물보관용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주머니형 개인사물함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물함이 아니다.
- b. 칫솔·치약의 보관대가 징벌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거실 내이건 화장실 내이건 상관없지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칫솔·치약의 보관대는 바닥으로부터 5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일부 구급시설에서는 칫솔·치약의 보관대가 징벌실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칫솔·치약의 보관대를 바깥에 설치하는 이유는 징벌실 수용자가 칫솔 등으로 자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칫솔 등을 이용한 자해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만 생활용품을 따로 보관하면 된다(징벌규칙 제23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 c. 거실 내에 책상이 있는 것을 말한다. 거실 내에 있어 수용자가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구급시설에서는 상자박스를 이용하여 책상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책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d. 선풍기의 설치여부를 평가한다.
- e. 빨래걸이의 설치여부를 평가한다.

[현장조사] 징벌실을 방문하여 위의 세부지표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 a. 고정된 사물함이나 사물보관용 선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b. 칫솔·치약의 보관대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높이를 측정한다.
- c. d. e. 책상, 선풍기, 빨래걸이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1.8.4.	징벌실에	보통(3)	징벌실에 2인 이상 수용한 예가 없다.	기록조사

징벌실의 운영	2인 이상 수용하지 않는가?	시정요함(1)	징벌실에 2인 이상 수용한 예가 있다.	면담조사
<p>&lt;해설&gt; 징벌실은 독거실이다. 징벌실에는 2인 이상 수용해서는 안 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이 규정한 징벌실의 면적 0.9평은 1인 생활공간으로도 부족한 것이지만, 어쨌든 0.9평이라는 징벌실 면적기준도 1인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징벌실의 면적이 실제 0.9평에 미달하고 징벌실의 시설이나 설비도 일반 독거실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벌실에 2명 이상 수용한다면 그 자체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징벌실에 2인 이상 수용하는 문제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문제와도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징벌실이 부족하여 한 징벌실에 2인 이상 수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지 위주의 징벌관행 때문이며, 이는 징벌을 다양화하고 징벌부과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평가지침에서는 한 징벌실에 1인을 수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통’으로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록조사와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징벌실에 2인 이상을 수용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에 모두 2인 이상 수용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보통’으로 평가한다.</li> <li>2. 2인 이상 수용은 6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의 보수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6시간 미만동안 잠시 한 징벌실에 2인 이상을 수용한 경우는 제외하고 평가한다.</li> </ol> <p>[기록조사]</p> <p>최근 3개월 간의 “징벌자현황” 자료 혹은 “거실수용현황” 자료를 통하여 금지수용자의 징벌실 수용현황을 파악한다.</p> <p>[면담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1.1. 참조).</li> <li>2. 수용자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벌실 수용 당시 2인 이상이 동시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가?</li> <li>2) 징벌실 수용 당시 다른 징벌실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수용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li> </ol> </li> </ol>				

## E2. 계구 사용

### E2.1. 계구사용절차의 준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1.1. 계구사용에 관한 기록의 적정성	계구사용에 관한 기록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사용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이 특정되어 있다. b. 계구사용이유가 충분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c. 계구의 종류별로, 사용방법별로 사용날짜와 시각 및 해제날짜와 시각이 기록되어 있다. d. 하체승으로 포승을 사용하거나 사슬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매 시간 기록하고 있다.	기록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계구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그 사용이유와 사용방법 및 시간 등의 기록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계구사용에 관한 기록은 차후 수용자가 계구의 부당한 남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구제를 받고자 할 때 중요한 근거서류가 되는 만큼 철저하고 자세한 기록이 필수적이다. 2004.6.29 이전에는 계구사용기록의 유지방법에 관하여 행형법령에 규정이 없음은 물론, 법무부훈령(제333호)이었던 ‘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구 계구규칙’이라 함)에도 규정이 없었다.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계구사용감독부’등 계구관련서류에 계구의 종류와 사용날짜 및 해제날짜를 기록하고 계구사용이유를 “교정사고 우려” 등으로 매우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계구의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사용시각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실무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2004.6.29 새로이 법무부령(제00556호)으로 제정된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이하 ‘계구규칙’이라 함) 제7조 제1항은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계구사용심사부에 계구사용의 이유, 계구의 종류, 계구의 사용방법 및 사용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구의 사용이유와 계구종류는 물론 사용방법을 기재하게 하고, 사용날짜뿐만 아니라 사용시간까지 기재하게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계구의 사용이유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구규칙 제7조 제2항은 “하체승의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하거나 사슬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매 시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본 평가항목은 계구규칙 제7조의 취지에 맞게 계구사용에 관한 기록이 유지·관리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계구사용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다.

- a. 사용계구의 종류(예를 들어 금속수갑, 포승 등)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예를 들어 포승의 경우 상체승, 하체승 등)이 특정되어 있음을 말한다.
- b. 계구사용의 근거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도주의 우려”나 “자살자해의 우려”와 같은 계구사용요건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한다. 판단의 근거에는 반드시 계구사용자의 특정한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 없이, 예를 들어 “심적 동요가 심하여 자살의 우려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계구사용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
- c. 계구의 사용과 해제의 날짜뿐만 아니라 그 시각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계구를 중복 사용한 경우 혹은 계구의 종류나 사용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 계구별로 사용과 해제의 날짜와 시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d. 포승을 하체승으로 사용하거나 사슬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수용자의 상태에 관한 직원의 관찰사항이 시간 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식의 기록이 반복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기록조사]

1.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전의 기록은 ‘계구사용감독부’를 조사하고, 2004.6.29 이후의 기록은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한다. 2005년 이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한다.
2. ‘계구사용심사부’에서 10개의 사례를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10건의 사례는 계구사용에 관한 아래 평가항목의 기록조사 중 사례조사를 실시하는데 함께 활용한다.
  - 1)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의 사례 중에서 선정한다.
  - 2) 10개의 사례는 모두 평가 당시 해당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사례로 선정한다.
  - 3) 10개의 사례 중 8건은 계구사용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사례로 선정하며, 그 중 사용시간이 3일 이상인 사례를 5건 이상 포함하도록 선정한다.
  - 4) 10개의 사례 중에는 포승을 사용한 경우가 1-2건, 사슬을 사용한 경우가 2-3건이 포함되도록 선정한다.
  - 5) 10개의 사례 중에는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 사례가 7건이 되도록 선정한다.
  - 6) 10개의 사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 6-7인, 미결수용자 3-4인으로 선정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금시설에서는 수형자만으로 10개의 사례를 선정하며, 구치소의 경우 수형자 3-4인, 미결수용자 6-7인으로 선정한다.
3.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다음을 조사한다. 10개의 사례 모두에서 세부지표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a. ‘계구사용심사부’의 “계구사용사항”란에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b. ‘계구사용심사부’의 “수용자동정 확인사항”란과 “관계자 의견”란에 계구사용이유로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한다.
- c. ‘계구사용심사부’의 “계구사용사항”란에 계구의 종류별, 사용방법별로 사용날짜와 시각, 해제날짜와 시각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한다.
- d. ‘계구사용심사부’에 포승 중 하체승과 사슬을 사용한 사례에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매시간 기록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한다. ‘계구사용심사부’에 이에 관한 기록이 없더라도 별도의 “동정시찰보고”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1.2. 소장의 계구사용 명령의 적정성	소장의 계구사용 명령은 합리적·구체적으로 행해지는가?(긴급 사용은 제외함)	세부지표	a. 소장은 계구사용명령 시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특정하고 있다. b. 소장은 계구사용의 중지여부(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1회 이상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c. 소장은 계구사용명령 전에 계구사용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수용자와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행정법시행령 제45조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구규칙 제4조 제2항도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교도관은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계구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 중인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구의 사용여부 및 사용중지여부에 대한 최종권한은 소장에게 있다. 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계구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계구의 사용은 헌법상의 비례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계구사용에 대하여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그러한 만큼 소장의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명령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p> <p>소장의 계구사용명령의 신중성과 관련하여 구 계구규칙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4.6.29 제정된 계구규칙은 이에 관한 몇 가지 의미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였</p>				

다. 계구규칙 제4조 제3항은 “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계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하는 때에는 해당 수용자와의 면담, 담당교도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10조는 “소장은 계구를 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사용심사부의 점검사항 및 관계직원의 의견을 토대로 계구의 계속사용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소장의 계구사용명령이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들이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소장이 계구사용을 명령함에 있어 계구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등을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먼저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금시설의 통상적인 계구사용절차를 파악하고 난 후, 기록조사와 소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다.

a.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소장이 특정하여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계구의 종류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용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b. 소장이 계구사용요건의 해당여부를 매일 1회 이상 심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심사 결과는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c. 소장이 계구사용명령 전에 해당 수용자를 면담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자와의 면담은 반드시 소장실에서 행해질 필요는 없지만, 조용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 소장이 사동을 방문하여 수용자에게 몇 마디 질문을 던지는 정도는 면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면담의 주요 내용이 기록으로 확인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출자료에 면담건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면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면담건수가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건수(긴급사용 제외)의 50% 이상이어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E22. 계구사용절차(긴급사용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 ① 소장의 명령이 있기까지의 보고 체계
- ② 소장에게 보고 시 첨부하는 서류목록
- ③ 계구규칙 제10조에 의한 매일심사의 방법
- ④ 전년도 1년간 소장이 사전에 계구사용을 명령(긴급사용은 제외)한 총 건수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건수)
- ⑤ 전년도 1년간 소장이 계구사용명령 전에 해당 수용자를 면담한 건수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건수)

[기록조사]

1.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2.1.1. 참조).
2.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다음을 조사한다. 10개의 사례 모두에서 세부지표의 기

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a. '계구사용심사부'의 “소장심사”란에 계구사용명령 시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특정하여 결재하는가를 확인한다.

b. '계구사용심사부'의 “소장심사”란에 계구의 계속사용여부에 관한 매일의 심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c. '계구사용심사부' 혹은 다른 기록, 예를 들어 '소장면담부' 등에서 소장이 계구사용 전에 해당 수용자와 면담한 것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건수를 제출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본다.

[면담조사]  
 구급시설의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을 질문한다.

- 1) 계구사용명령 시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특정하여 명령하는지 여부
- 2) 계구의 계속사용여부(사용중지여부)를 매일 심사하는지 여부, 매일 심사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 3) 계구사용명령 전에 해당 수용자를 면담하는지 여부, 면담한다면 어느 장소에서 하며, 무엇을 질문하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1.3. 자살·자해의 우려자에 대한 의사의 사전진찰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기 전에(긴급사용의 경우에는 사용직후에)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가?	탁월(5)	항상 의사의 사전진찰(긴급사용의 경우 즉시진찰)을 받는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의 90% 이상이 의사의 사전진찰(긴급사용의 경우 즉시진찰)을 받는다.	
		보통(3)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의 70% 이상이 의사의 사전진찰(긴급사용의 경우 즉시진찰)을 받는다.	
		미흡(2)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의 50% 이상이 의사의 사전진찰(긴급사용의 경우 즉시진찰)을 받는다.	
		시정요함(1)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의 50% 미만이 의사의 사전진찰(긴급사용의 경우 즉시진찰)을 받거나, 의사의 사전진찰(긴급사용의 경우 즉시진찰)을 받는 예가 없다.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33조는 계구사용요건으로 b항에서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c항에서는 “피구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서는 방지할 수 없어 소장이 계구사용을 명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c항의 경우에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구규칙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소장이 계구사용명령을 하기 전에 의사로 하여금 해당 수용자를 진찰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계구사용여부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자살이나 자해의 현저한 우려”라는 요건(계구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은 계구의 장기사용의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자살이나 자해의 현저한 우려가 흥분 등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경우이다. 이 때에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자살과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계구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 계구의 장기사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수용자의 흥분상태가 진정되면 자살 혹은 자해의 현저한 우려가 없으므로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두 번째 유형은 자살 내지 자해의 우려가 수용자의 지속적인 불안정한 심리상태 내지 정신적 질환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계구의 장기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계구사용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한 수용자에게는 적절한 심리상담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급시설의 실무에서는 거의 계구사용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자살·자해의 우려라는 요건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의 진단을 거쳐 그 위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하며, 소장은 의사의 의견을 들어 계구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살·자해의 우려가 급박하여 당장 계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의사의 사전진찰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이는 긴급사용에 해당한다) 계구사용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평가항목에서는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의 모든 사례에서 의사의 사전진찰 혹은 긴급사용 후 즉시진찰을 받게 하는 것을 ‘탁월’로 평가하며, 최소한 그 비율이 70% 이상일 때 ‘보통’의 평가를 받도록 지표를 설정하였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 중 의사의 사전진찰 내지 즉시진찰(긴급사용)을 받은 건수를 파악한 후, 기록조사를 통하여 제출자료의 건수를 확인한다.
2. 의사의 진찰건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사전진찰건수 + 즉시진찰건수) \div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의 총 건수 \times 100\}$
3.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다.
4. 의사의 사전진찰이란 소장의 계구사용명령 전에 해당 수용자를 의사로 하여금 진찰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계구사용여부의 결정에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진찰이란 계구의 긴급사용 시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즉시라 함은 계구사용 직후 30분 이내를 말한다. 모든 경우에 의사의 진찰여부는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출자료]

E23.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

(긴급사용을 포함하며,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함)

E24. 전년도 1년간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의 총 건수, 그 중 긴급사용의 건수,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에서 해당 수용자가 사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은 건수,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의 긴급사용 건수 중 의사의 즉시진찰(30분 이내)을 받은 건수(2004년의 경우 모두 2004.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건수로 기재함)

[기록조사]  
 ‘계구사용심사부’에서 자살, 자해의 우려를 이유로 한 사례를 모두 검토하여 ‘계구사용심사부’의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직원”란에 사전진찰의 사실 내지 즉시진찰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건수를 조사하여 제출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본다. 제출자료의 건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 기록조사에서 확인된 건수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1.4. 계구사용이유의 고지	계구사용 전에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며, ①의 응답비율이 60% 이상이다.	설문조사
	계구사용 이유를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80% 이상이며, ①의 응답비율이 50% 이상이다.	
	수용자에게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이며, ①의 응답비율이 40% 이상이다.	
	고지하고 있는가?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미만이거나, ①의 응답비율이 40% 미만이다.	
<p>&lt;해설&gt; 계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용자에게 계구사용이유를 고지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계구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수용자의 당연한 알 권리에 속한다. 구 계구규칙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4.6.29 제정된 계구규칙은 제6조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규정이다. 계구사용이유를 고지함에 있어서는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계구사용이유를 간단하게 고지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본 평가항목은 계구사용의 경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전에 계구사용이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의 비율과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은 고지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응답 ①의 비율은 고지 시 충분한 설명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p> <p>[설문조사]                      E4. (계구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계구를 사용하기 전에 교도관이 귀하에게 계구사용이유를 알려 주었습니까?                      ① 계구사용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② 상세하지는 않지만 계구사용이유를 간단히 말해 주었다                      ③ 계구사용이유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1.5.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경고의 남용여부	수용자에게 계구사용의 경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가?	탁월(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이상 1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10% 이상 2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20% 이상 3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이상	
<p>&lt;해설&gt; 계구는 계구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한 사유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수용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수용자를 직원의 지시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수용자에 대한 협박으로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본 평가항목은 실제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직원이 수용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구사용의 경고를 남발하고 있는가 여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E3. 시설의 직원이 귀하에게 혹은 귀하의 동료수용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웠다는 등 계구사용의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p> <p>① 본인에게 한 적이 있다                  ② 본인에게 한 적은 없지만 동료수용자에게 한 경우를 목격하였다                  ③ 그런 경험이 없다</p>				

E2.2. 계구 사용의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2.1. 계구사용의 보충성: 대안의 강구	계구사용 외에 다른(덜 침해적인) 계호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보호실(안정실)을 2개실 이상 갖추고 있으며, 계구사용 없이 보호실에 수용한 건수가 계구사용건수의 10% 이상이다. b. 계구사용 없이 대면계호를 활용한 건수가 계구사용건수의 30% 이상이다. c. 자살·자해 우려자나 비정상적으로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활용실적이 계구사용건수의 30% 이상이다. d. 자살·자해 우려자나 비정상적으로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제출자료 기록조사 현장조사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활용실적이 계구사용건수의 30% 이상이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계구사용은 계호의 한 방법이다. 계호는 시설의 질서유지와 수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조치를 말한다.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억압하는 조치인 만큼 계호의 다양한 수단 중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기준규칙 제34조는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정도,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003.7.14.자, 02진인126, 329 / 02진인76, 100, 1245 병합결정).

계구규칙 제14조 제2항도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충성 원칙 내지 최후수단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다른 계호수단으로는 계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구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독거실에 격리수용함으로써 그러한 폭행의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계호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계구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계구사용의 보충성원칙을 행형실무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대안적 계호수단으로는 보호실 수용, 대면계호의 활용,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의 제공,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전문적인 치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의 폐지를 권고하면서 대신에 머리를 벽에 부딪쳐도 신체적 손상이 거의 없는 안정실을 강구하고 정신과적 병리현상으로서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4년 1월 26일자 ‘계구규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2권 제2호 참조).

이러한 계호방법들은 전혀 낮은 제도가 아니다. 이미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10조 제1항은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소장 또는 그 대리자의 명령에 의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예규인 ‘문제수용자 관리지침’은 폭행의 위험성이나 자살, 자해의 위험성이 있는 수용자 등을 문제수용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제3, 4조 참조), 문제수용자에 대해서는 독거수용하도록 하고( 제16조), “문제수용자가 교정사고 등을 유발할 우려가 극히 높을 때에는 당해 거실 앞에 직원 등을 배치하여 대면계호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제22조), 상담책임자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문제수용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

하도록 하고(제38조), 운동과 목욕, 이발 등을 지정된 장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43, 44, 46조). 이러한 조치들은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상당부분 완화시켜 주는 것들이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보호실수용, 대면계호, 심리상담프로그램과 정신과의료처우를 중심으로 하여 구금시설에서 계구사용 외에 다른 덜 침해적인 계호수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대체수단들은 계구사용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면서 그와 같은 수단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이 항목의 평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지침> 전년도 1년간 구금시설에서 사용한 계호방법에 대하여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실제 그러한 계호방법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현장조사와 기록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각 기록조사에서 사례가 계구사용요건에 합치하는가 여부는 아래 평가항목 E2.2.3.의 해설과 평가지침을 참조한다.

a. 보호실(안정실)의 수를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제출자료에 기재된 전년도 1년간 보호실수용건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보호실에 수용된 적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구금시설에 요청하여 검토한다. 보호실은 거실 벽에 자해방지를 위한 안전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분장 기록조사에서는 보호실 수용여부와 함께, 계구사용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보호실 수용기간에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보호실에 수용되었다도 애당초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례, 혹은 계구를 사용하면서 보호실에 수용된 사례가 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출자료의 보호실수용건수에서 제하고 난 후 계구사용건수 대비 보호실수용건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예를 들어, 5건의 보호실수용사례를 조사하여 1건이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제출자료의 보호실수용건수에서 1/5, 즉 20%를 제한 건수로 평가한다).

b. 대면계호의 활용건수를 기록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대면계호란 직원이 거실의 복도 쪽 문 앞에서 1:1 계호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조사의 방법은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대면계호를 받은 적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구금시설에 요청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신분장 기록조사에서는 대면계호를 받았는가 여부와 함께, 계구사용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대면계호기간에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면계호를 받았더라도 계구사용요건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았던 사례, 혹은 계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대면계호를 실시하였던 사례가 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출자료의 대면계호건수에서 제하고 난 후 계구사용건수 대비 대면계호건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예를 들어, 5건의 대면계호사례를 조사하여 1건이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제출자료의 대면계호건수에서 1/5, 즉 20%를 제한 건수로 평가한다).

c. 임상심리학자나 범죄심리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심리상담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반 수용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자살·자해 우려자나 비정상적으로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일회적 상담이 아니라 심리상담전문가의 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먼저 그와 같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시설 내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기록조사를 통하여 제출자료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활용건수를 확인해 본다. 기록조사의 방법은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

에 위와 같은 심리상담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구급시설에 요청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신분장 기록조사에서는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가 여부와 함께, 계구사용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더라도 애당초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례, 혹은 계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던 사례가 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출자료의 심리상담프로그램 활용건수에서 제하고 난 후 계구사용건수 대비 심리상담프로그램 활용건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예는 위 참조).

d. 자살·자해 우려자나 비정상적으로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말한다. 정신과전문의는 구급시설의 전임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먼저 그와 같은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이 시설 내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기록조사를 통하여 제출자료의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의 활용건수를 확인해 본다. 기록조사의 방법은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위와 같은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구급시설에 요청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신분장 기록조사에서는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가 여부와 함께, 계구사용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더라도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례, 혹은 계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던 사례가 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출자료의 정신과치료프로그램 활용건수에서 제하고 난 후 계구사용건수 대비 정신과치료프로그램 활용건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예는 위 참조).

[제출자료]

E25.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이외에 실시한 계호방법 및 그 활용정도

- ① 시설 내 보호실(혹은 안정실)의 수,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만 계구사용 없이 보호실(혹은 안정실)에 수용한 건수
- ② 대면계호를 활용한 건수 및 그 중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만 계구사용 없이 대면계호를 활용한 건수
- ③ 자살·자해 우려자와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의 내용(자격증소지자에 의한 체계적 상담프로그램을 말함) 및 활용건수, 활용건수 중 계구사용 없이 수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수
- ④ 자살·자해 우려자와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의 내용(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말함) 및 활용건수, 활용건수 중 계구사용 없이 수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수

[기록조사]

- a.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보호실(안정실)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조사한다.
- b.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대면계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조사한다.
- c.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전문가가 운영하는 심리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조사한다.  
 d.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조사한다.

[현장조사]  
 a. 보호실의 구조와 수를 조사한다. 보호실은 거실 벽 등에 머리 등을 부딪쳐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설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거실 벽에 나무판자를 덧대어 놓은 정도로는 안전설비라 할 수 없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2.2. 계구사용 의 보충성 : 계구사용 건수	계구사용 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있는가?	탁월(5)	계구사용건수가 전체 수용인원 대비 3% 미만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계구사용건수가 전체 수용인원 대비 3% 이상 5% 미만이다.	
		보통(3)	계구사용건수가 전체 수용인원 대비 5% 이상 10% 미만이다.	
		미흡(2)	계구사용건수가 전체 수용인원 대비 10% 이상 20% 미만이다.	
		시정요함(1)	계구사용건수가 전체 수용인원 대비 20% 이상이다.	

<해설> 계구는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억압적 도구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이미 위 E2.2.1.에서 해설하였다. 구금 시설에서는 계구사용 외의 보다 덜 침해적인 계호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궁극적으로 계구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대안적 계호방법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여전히 계구사용에 의존하여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징벌과 함께 계구는 대표적으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수단인 만큼 그 사용이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최저기준규칙 제 33조는 계구사용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엄격한 보충성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a. 호송 중 도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b.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 c.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서는 방지할 수 없어 소장이 계구사용을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에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제34조는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에서 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계구사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의 계구사용 총 건수(긴급사용 포함)를 파악하여 평

가한다.

2. 계구사용건수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text{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총 건수} \div \text{전년도 12.31 현재 수용인원} \times 100 \}$

3. 전년도 12.31. 현재 수용인원은 제출자료 E4.에서 파악한다.

[제출자료]  
 E23.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  
 (긴급사용을 포함하며,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

[기록조사]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의 계구사용 총 건수를 확인하여 제출 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본다.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전의 건수는 ‘계구사용감독부’를 조사하고, 2004.6.29 이후의 건수는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 하면 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2.3. 계구사용요건과 최소침해의 원칙	계구사용은 사용요건에 합치하는가? (호송 시 제외)	우수(4)	모두 계구사용요건에 합치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보통(3)	1건이 계구사용요건에 합치하지 않는다.	
		미흡(2)	2건이 계구사용요건에 합치하지 않는다.	
		시정요함(1)	3건 이상이 계구사용요건에 합치하지 않는다.	

<해설> 불가피하게 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계구는 사용요건에 엄격히 합치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헌법상 요구되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원칙의 첫 번째 관문이 보충성원칙이라면 두 번째 관문은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의 원칙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정도,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2003.7.14.자, 02진인126, 329 / 02진인76, 100, 1245 병합결정),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 단지 중형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금속수갑을 6개월 동안 착용하도록 한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과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한 것이라 결정하였다(2004.6.14, 03진인6158). 계구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교도관은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계구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없이 사용 중인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동 제14조 제2항이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필요최소한도 제한의 원칙의 준수여부는 우선적으로 계구사용 시 사용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하였는가를 통하여 평가해 볼 수 있다. 계구사용요건과 관련하여 2004.6.29 제정된 계구규칙 제4조 제1항은 다음의 5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1. 이송, 출정, 그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3.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4.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5.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 호송시를 제외하고, 이처럼 “현저한 우려”를 요건으로 한 것은 행형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용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강화된 것이다. 구 계구규칙 제4조가 “~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였던 것에 비하면, 이처럼 계구사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계구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현저한 우려”라는 요건도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라는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4년 1월 26일자 ‘계구규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2권 제2호 참조). 본 평가항목에서는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원칙을 근거로 하여 계구사용이 사용요건에 엄격하게 합치하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1년간의 계구사용상황을 파악한 후, 10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면밀한 기록조사를 통하여 계구사용의 요건 합치 여부를 평가한다. 호송 중의 계구사용은 제외한다.
2.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본 항목에서는 2004.6.29 이후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다.
3. 기록조사 시 계구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도주·자살·자해·폭행·손괴의 우려가 현저한 때”라는 요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적용한다.
  - 1) “현저한 우려”라는 것은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중형 구형 등 심적 동요가 있어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다’는 식의 막연한 추측적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우려가 현저하다.”는 요건은 자의적 해석과 남용의 여지가 있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저한 우려”는 “~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2) “현저한 우려”는 보호법익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폭행이나 시설물에 대한 손괴의 현저한 우려는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다. 그리고 독거실에 수용된 자가 거실 문을 발로 마구 찬다든가 하는 소란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것이 타인에 대한 폭행이나 시설물에 대한 손괴의 위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 기록조사 시 계구사용요건의 합치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2004.6.29 제정된 계구규칙 제5조에서 계구의 종류별로 사용요건과 사용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계구규칙 제5조는 다음과 같다.

제5조(계구의 사용방법) ①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간이승 방법에 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또는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별표 3의 상체승 방법에 의할 것
3.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체승으로 이를 방지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4의 하체승 방법에 의할 것

②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5의 방법에 의할 것
2. 벨트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금속수갑을 사용하면 자해의 도구 등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6의 방법에 의할 것
3. 플라스틱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도관의 제지에 항거하는 때 또는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제압이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에 의할 것. 다만, 플라스틱수갑을 사용한 후에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플라스틱수갑을 다른 계구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사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짧은 사슬은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용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긴 사슬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포승을 사용하면 이를 자살의 수단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크고 달리 자살을 방지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9의 방법에 의할 것

④안면보호구는 수용자가 벽이나 철격자 등에 자신의 머리 또는 안면을 부딪쳐 자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해당 수용자가 이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포승 또는 수갑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⑤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승과 사슬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계구규칙 제5조를 해석하고 적용함에는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1) 포승 중 하체승(구 계구규칙 하의 하지승)은 신체를 완전히 결박하여 신체의 활동을 철저히 제압하는 방식인데, 계구규칙 제5조의 하체승의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거실이나 보호실 등에 수용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사실상 하체승의 사용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존재하기 어렵다.
- 2) 금속수갑과 포승의 상체승(구 계구규칙 하의 양수승)은 사용요건이 상당부분 중복된다. 수갑과 포승의 양수승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속박의 정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용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수갑을 계구사용의 원칙으로 하고 포승 중 양수승은 수갑으로 위험방지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3) 사슬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 계구규칙 하의 가죽수갑과 함께 사슬을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2003.7.14.자, 02진인126 등 결정). 최저기준규칙 제33조도 “사슬이나 차꼬는 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자료]

E26. 전년도 1년간 계구의 종류별/사용방법별 사용건수와 평균사용시간 (표)

(※ 호송 시 계구사용은 제외함)

(※ 동일 수용자에게 두개 이상의 계구를 중복사용한 경우 사용건수는 각 계구별로 한건으로 기록함)

(※ 평균사용시간 = 사용시간의 합 ÷ 사용건수)

(※ 평균사용시간은 항목별로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함)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계구의 종류	2004.1.1 - 2004.6.28			2004.6.29 - 2004.12.31		
	사용방법	사용건수	평균사용시간	사용방법	사용건수	평균사용시간
수갑	금속수갑			금속수갑		
	가죽수갑			벨트수갑		
				플라스틱수갑		
포승	신사승			간이승		
	양수승			상체승		
	하퇴승			하체승		
	하지승					
사슬	양수승과 같은 방법			긴 사슬		
	양수승의 변형방법					
	하퇴승과 같은 방법					
	짧은 사슬 (외부병원 입원시)			짧은 사슬 (외부병원 입원시)		
안면보호구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					

<2005년 이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사용건수	평균사용시간
수갑	금속수갑		
	벨트수갑		
	플라스틱수갑		
포승	간이승		
	상체승		
	하체승		
사슬	긴 사슬		
	짧은 사슬 (외부병원 입원시)		
안면보호구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기록조사]

1.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2.1.1. 참조).
2.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위의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각 계구사용이 사용요건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한다. 먼저 판단의 자료로는 ‘계구사용심사부’에 기재된 수용자동정사항과 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에 나타난 계구사용관련 “동정시찰보고”기록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계구사용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수용자의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계구사용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평가해야 한다. 판단의 구체적인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계구사용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판단하면 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2.4. 계구의 비인도적 사용금지의 원칙(사슬)	사슬의 사용은 금지 내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가?	탁월(5)	사슬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사슬의 사용비율이 전체 계구사용의 1% 미만이다.	
		보통(3)	사슬의 사용비율이 전체 계구사용의 1% 이상 3% 미만이다.	
		미흡(2)	사슬의 사용비율이 전체 계구사용의 3% 이상 5% 미만이다.	
		시정요함(1)	사슬의 사용비율이 전체 계구사용의 5% 이상이다.	

<해설>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거나 기타 수용자에게 모욕감 또는 굴욕감을 주는 방식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구규칙 제14조 제3항에서는 “이 규칙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형법령은 국제인권기준에서 사용을 금지하라고 한 사슬을 계구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최저기준규칙 제33조는 “수갑, 사슬,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슬이나 차꼬는 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사슬을 비인도적인 계구로 규정하고 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슬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계구의 종류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지만(2003.7.14.자, 02진인126 등 결정), 2004. 6.29. 새로 제정된 계구규칙에 사슬의 사용금지의 원칙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구 계구규칙에 비하여 사슬의 사용방법을 다소 완화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물론 사슬은 행형법 제14조에서 계구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형법 개정으로 사슬을 금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개정 전이라도 구금시설에서는 “사실상” 사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평가항목은 대표적인 비인도적 계구로 비판받고 있는 사슬의 사용금지여부 내지 사용억제경향을 평가해 본다. 사슬을 전혀 사용하

지 않는 구급시설이 ‘탁월’의 평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결정에서 사슬과 함께 가축수감도 폐지하라고 권고하였다. 그 후 가축수감은 2004.6.29. 제정된 계구규칙에서 계구의 종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는 사슬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와 기록조사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 사슬의 사용건수를 확인하여 그 사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text{전년도 1년간 사슬의 총 사용건수} \div \text{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 \times 100 \}$$
2. 전년도 1년간 사슬의 총 사용건수는 제출자료 E26.의 사슬부분에서 확인하고,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는 제출자료 E23.에서 확인한다.

[제출자료]

E23.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  
 (긴급사용을 포함하며,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

E26. 전년도 1년간 계구의 종류별/사용방법별 사용건수와 평균사용시간 (표 생략)

[기록조사]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 사슬의 총 사용건수를 확인하여 제출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본다.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전의 건수는 ‘계구사용감독부’를 조사하고, 2004.6.29 이후의 건수는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하면 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2.5. 계구 사용시간과 최소침해의 원칙	계구의 사용시간은 적절한 수준인가? (호송 시는 제외)	세부지표	a. 계구의 사용시간이 7일을 초과한 건수가 전체 계구사용건수의 5% 미만이다. b. 계구의 평균사용시간이 72시간 미만이다. c. 포승과 사슬의 평균사용시간이 각 12시간 미만이다. d. 안면보호구의 평균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이다.	제출자료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34조는 “계구는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p>				

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계구의 사용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003.7.14.자, 02진인126, 329 / 02진인76, 100, 1245 병합결정). 특히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 단지 중형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금속수갑을 6개월 동안 착용하도록 하였던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한 계구사용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2004.6.14.자, 03진인6158). 계구규칙 제10조에서 계구의 계속사용여부를 매일 심사하게 하고, 동 제11조 제1항에서 계구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 중인 계구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14조 제2항이 “계구는 교정사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계구의 사용시간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계구사용에 적용되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계구의 사용시간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는 것이다. 계구의 사용시간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이 안면보호구의 계속사용시간을 원칙적으로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구 사용시간의 명시적인 제한규정은 없다. 그러나 계구는 그 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계구규칙 제11조 제1항). 계구의 사용시간의 한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계구는 일시적이고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구의 사용이 수일을 지속하여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앞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에서처럼,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중형이 예상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속수갑을 1개월 이상 심지어는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실무관행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대체로 계구사용이 수일을 초과하는 사례라면 이는 계구사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예컨대 의료적 처우나 심리상담 등)이 더욱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 하에 본 평가항목은 계구의 사용시간이 적절한가 여부를 평가한다. 우선 모든 계구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2004.6.29 제정된 계구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계구사용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장이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계구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보고하게 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그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근거가 된다. 그리고 7일이 부당한 장기사용의 한계지점이라면 평균지점은 3일 정도일 것이다. 이에 따라 계구사용의 전체 평균시간이 72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설정하였다. 계구 중에서 포승과 사슬은 수용자의 신체에 대한 압박의 강도나 인격적 모욕감의 유발 등으로 볼 때 인권에 대한 침해의 강도가 금속수갑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포승과 사슬의 평균사용시간은 12시간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물론 사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안면보호구는 사용시간의 한계가 6시간으로 규정된 점을 감안하여 평균사용시간을 2시간미만으로 설정하였다.

<평가지침> 전년도 1년간의 계구사용시간에 관하여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호송 시의 계구사용은 제외한다.

a. 계구사용기간이 7일을 초과한 건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평가한다 :

$$\{7\text{일 초과 건수} \div \text{계구사용 총 건수} \times 100\}$$

- b. 제출자료에서 계구사용시간의 전체평균을 평가한다.
- c. 제출자료에서 포승과 사슬의 각각의 평균사용시간으로 평가한다. 포승과 사슬 모두 평균사용시간이 12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 d. 제출자료에서 안면보호구의 평균사용시간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E27. 전년도 1년간 계구의 사용시간별 건수 (표)(※ 호송 시 계구사용은 제외함)

계구의 사용시간	전체 계구사용 건수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	계구사용시간 전체평균
1시간 이내			계구사용 총 시간 ÷ 계구사용 총 건수 (시간단위로 계산하며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
1시간 초과-3시간 이내			
3시간 초과-6시간 이내			
6시간 초과-12시간 이내			
12시간 초과-24시간 이내			
24시간 초과-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72시간 이내			
72시간 초과-5일 이내			
5일 초과-7일 이내			
7일 초과-14일 이내			
14일 초과			
합계			

E26. 전년도 1년간 계구의 종류별/사용방법별 사용건수와 평균사용시간 (표)(※ 호송 시 계구사용은 제외함)

(※ 동일 수용자에게 두개 이상의 계구를 중복사용한 경우 사용건수는 각 계구별로 한 건으로 기록함)

(※ 평균사용시간 = 사용시간의 합 ÷ 사용건수)

(※ 평균사용시간은 항목별로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함)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계구의 종류	2004.1.1 - 2004.6.28			2004.6.29 - 2004.12.31		
	사용방법	사용건수	평균사용시간	사용방법	사용건수	평균사용시간
수갑	금속수갑			금속수갑		
	가죽수갑			벨트수갑		
포승	신사승			플라스틱수갑		
	양수승			간이승		
	하퇴승			상체승		
	하지승			하체승		
사슬	양수승과 같은 방법			긴 사슬		
	양수승의 변형방법					
	하퇴승과 같은 방법					

	짧은 사슬 (외부병원 입원시)			짧은 사슬 (외부병원 입원시)		
안면보호구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					

<2005년 이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사용건수	평균사용시간
수갑	금속수갑		
	벨트수갑		
	플라스틱수갑		
포승	간이승		
	상체승		
	하체승		
사슬	긴 사슬		
	짧은 사슬 (외부병원 입원시)		
안면보호구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2.6. 자살·자해 우려자에 대한 계구사용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가 전체 계구사용건수의 60% 미만이다. b.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 중 사용기간이 7일을 초과한 건수가 10% 미만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c.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출자료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계구사용사유 중에서 가장 남용의 위험이 높은 것은 바로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라는 사유이다. 특히 구급시설의 실무에서 미결수용자의 경우에 중형구형이 예상된

다는 이유로 막연히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를 이유로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계구사용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계구의 장기사용은 자살 내지 자해의 (현저한) 우려가 수용자의 지속적인 불안정한 심리상태 내지 정신적 질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수용자에게는 근본적으로 적절한 심리상담과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지, 계구의 장기사용이라는 간편하지만 억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본 평가항목은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를 이유로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사용의 위험을 구급시설이 적절하게 억제 내지 조절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라는 요건에 대한 판단의 신중성 문제라든가,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계구 사용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방법 등도 중요하지만 이는 앞의 다른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가항목에서는 특별히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의 장기사용의 통제에 집중하여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 a. 제출자료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의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의 건수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전년도 1년간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의 건수 ÷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 × 100}
- b. 제출자료를 통하여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의 건수 중 7일을 초과한 건수와 14일을 초과한 건수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 c. 제출자료를 통하여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심리상담프로그램과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의 현황과 참여실적을 파악한다. 심리상담프로그램과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은 수용자의 자비부담이 아니라 구급시설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범죄심리사나 정신과의사와의 일회적인 상담 내지 일회적인 진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E23.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  
(긴급사용을 포함하며,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

E24. 전년도 1년간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의 총 건수, 그 중 긴급사용의 건수,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에서 해당 수용자가 사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은 건수,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의 긴급사용 건수 중 의사의 즉시진찰(30분 이내)을 받은 건수(2004년의 경우 모두 2004.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건수로 기재함)

E25.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이외에 실시한 계호방법 및 그 활용정도

- ① 시설 내 보호실(혹은 안정실)의 수,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만 계구사용 없이 보호실(혹은 안정실)에 수용한 건수
- ② 대면계호를 활용한 건수 및 그 중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만 계구사용 없이 대면

계호를 활용한 건수

③ 자살·자해 우려자와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의 내용(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체계적 상담프로그램을 말함) 및 활용건수, 활용건수 중 계구사용 없이 수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수

④ 자살·자해 우려자와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의 내용(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말함) 및 활용건수, 활용건수 중 계구사용 없이 수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수

E27. 전년도 1년간 계구의 사용시간별 건수 (표)(※ 호송 시 계구사용은 제외함)

계구의 사용시간	전체 계구사용 건수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	계구사용시간 전체평균
1시간 이내			계구사용 총 시간 ÷ 계구사용 총 건수 (시간단위로 계산하며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
1시간 초과-3시간 이내			
3시간 초과-6시간 이내			
6시간 초과-12시간 이내			
12시간 초과-24시간 이내			
24시간 초과-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72시간 이내			
72시간 초과-5일 이내			
5일 초과-7일 이내			
7일 초과-14일 이내			
14일 초과			
합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2.7. 호송 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방법은 적정한가?	호송 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방법은 적정한가?	우수(4)	호송 시 금속수갑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속수갑과 함께 간이승이나 상체승은 예외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보통(3)	호송 시 금속수갑과 간이승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속수갑과 함께 상체승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미흡(2)	호송 시 금속수갑과 함께 간이승 혹은 상체승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정요함(1)	호송 시 금속수갑과 함께 상체승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설> 호송 시의 계구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은 당연한 원칙이다. 호송이란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계구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호송을 독립된 계구사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호송 시의 계구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2004.6.29 제정된 계구규칙의 규정이 구 계구규칙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계구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때”에는 간이승(구 신사승)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상체승(구 양수승)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제5조 제2항 제1호는 호송 시에 금속수갑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호송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계구는 포승과 금속수갑이며, 포승은 상체승을 기본으로 하면서 간이승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상체승은 양팔을 상체에 고정시킴으로써 양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계구규칙 별표 3 참조) 그 신체적 속박이 간이승이나 금속수갑에 비하여 매우 크다. 더구나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호송 시에 금속수갑과 함께 상체승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계호근무준칙’ 제291조 제4호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계구사용방식이 필요 최소한도의 사용원칙에 합치하는가는 의문이다. 호송 시에 도주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도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수갑과 상체승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상반신을 완전히 결박하는 것은 도주방지라는 목적에 비하여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욱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포승과 사슬이 사용되지 않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호송 시에도 금속수갑만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호송 시에는 호송근무자와 경비교도대원이 K2 내지 M16총과 권총을 휴대하게 된다는 점(‘계호근무준칙’ 제34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호송 중의 계구는 금속수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속수갑과 상체승의 중복사용은 현행 계구규칙 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은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하고 억압적인 계구사용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시정요함’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호송시의 계구사용방법을 파악하고, 기록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 a. 기록조사에서 금속수갑만 사용한 사례가 전체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b. 기록조사에서 금속수갑과 간이승을 함께 사용한 사례가 전체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c. 기록조사에서 금속수갑과 간이승을 함께 사용한 사례가 전체의 20% 이상 80% 미만이며, 나머지는 금속수갑과 상체승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 d. 기록조사에서 금속수갑과 상체승을 함께 사용한 사례가 전체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출자료] E28. 호송 시 사용하는 계구와 계구사용방법에 대해 서술

[기록조사]

최근 1개월간의 ‘호송계획서’를 검토하여 각 계구사용방법 별로(금속수갑만, 금속수갑 +

간이승, 금속수갑 + 상체승) 건수와 비율을 측정한다.

### E2.3. 계구 사용시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한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3.1. 계구사용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점검	의사는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적정하게 점검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의사는 매일 1회 이상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b. 의사는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자를 면담하고 필요한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c. 의사는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d. 의사는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악화의 우려 등을 이유로 계구사용의 중지 등을 소장에게 건의한 적이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계구사용, 특히 장기간의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계구규칙 제8조 제1항은 “의무관은 계구를 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구규칙에서는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였던 것을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계구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장은 매일 계구의 계속사용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나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수시로”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 2003년 12월 법무부가 처음에 마련한 계구규칙제정령안에서는 “매일”로 규정하였던 것이 “수시로”로 바뀐 것으로 원안보다 후퇴한 느낌이다. 하지만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계구규칙 제14조 제3항의 취지와 수용자의 건강보호, 그리고 계구의 최소침해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는 “매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사의 건강점검이 형식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의사는 수용자를 면담하여 문진하고 계구사용의 폐해에 관한 수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계구규칙 동조 제2항은 “의무관은 계속적인 계구사용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계구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구규칙에서와 동일한 규정이다 이는 구 금시설 내 수용자의 건강보호를 책임지는 의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실제로 계구사용중지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로

인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애당초 의료적 처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계구의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손상 위험도 훨씬 증대되는 만큼 의사는 그러한 수용자의 계구사용(중지)여부에 대하여 “사실상”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33조가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 소장이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불가피하게 소장이 계구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로 계구의 계속사용문제가 의료적 처우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의사가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점검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기록조사와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실제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한 건강점검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 a. 의사가 매일 1회 이상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횟수를 평가한다. 건강점검의 횟수는 ‘계구사용심사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고,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최종 평가한다.
- b. 의사의 건강진단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동태관찰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충실하게 건강진단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의사는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와 최소한 10분 이상 면담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수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의료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의 해당여부는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c. 의사가 건강점검의 내용을 ‘계구사용심사부’에 충실하게 기재하는지를 확인한다. ‘계구사용심사부’의 “관계자의견” 중 “의무관”란에 기재된 내용을 조사한다. ‘이상 없음’ 정도의 기재 혹은 체중과 혈압을 기록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기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 d. 의사가 계구사용의 중지를 실제로 소장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 항목도 실제로 계구사용 중지를 건의한 내용이 ‘계구사용심사부’의 기재사항에서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출자료]

E29.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검진 실시내용 및 방법

- ① 의사가 계구사용수용자를 방문하여 건강검진하는 횟수와 방법
- ② 의사가 계구사용수용자를 방문하여 건강검진할 때의 검진내용(체중, 혈압 등 체크하는 항목)
- ③ 최근 6개월 간 의사가 계구사용 중지를 소장에게 건의한 건수 및 내용

[기록조사]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2.1.1. 참조).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계구사용심사부’의 기재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을 확인한다.

- a. 의사의 건강점검횟수의 기재사항

c. 의사의 건강점검의 내용에 관한 기재사항  
 d. 최근 6개월간의 ‘계구사용심사부’를 통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계구사용중지 건의 건수를 확인해 본다.

[면담조사]

1. 최근 1개월 사이에 계구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수용자 3인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최근 1개월 내의 경험자 중 아래의 요건에 맞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의 계구경험자 중에서 면담대상자를 선정한다).

1) 수용자 3인 중 1인은 미결수용자로 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시설은 수형자로 3인을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를 2인으로 한다.

2) 수용자 3인 중 1인은 포승이나 사슬의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한다.

3) 수용자 3인 중 1인은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자로 한다.

2. 수용자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

1) 계구사용기간 중 의사가 방문한 적이 있는가, 얼마나 자주 방문하였는가?  
 2) 의사가 방문하였다면, 의사와 몇 분 정도 면담을 하였는가, 의사와의 면담에서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  
 3) 의사가 방문시 실시한 의료적 진단은 어떠한 것들인가?(예를 들어 체중, 혈압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3.2. 계구사용 수용자의 거실	계구사용 수용자의 거실수용 은 적절한가?	탁월(5)	계구사용 수용자를 모두 독거수용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계구사용 수용자 중 독거수용의 비율이 90% 이상이다.	
		보통(3)	계구사용 수용자 중 독거수용의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이다.	
		미흡(2)	계구사용 수용자 중 독거수용의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이다.	
		시정요함(1)	계구사용 수용자 중 독거수용의 비율이 70% 미만이다.	
<p>&lt;해설&gt; 계구규칙 제12조는 “계구를 사용 중인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수용형편상 또는 처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계구 사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구사용이 남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면, 계구를 사용 중이라는 것은 자살·자해(또는 도주나 폭행, 시설손괴)의 현저한 우려가 지속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현저한 우려는 급박한 위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계구규칙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혼거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구사용 수용자 중에서 혼거수용자의 비율은 20% 미만인 정도가 되어야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즉 독거수용의 비율이 80% 이상일 때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한다.</p>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수용자의 거실수용현황을 평가한다. 기록조사를 통하여 독거수용의 건수와 비율을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2. 독거수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text{계구사용건수 중 독거수용 건수} \div \text{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총 건수} \times 100 \}$$

[제출자료]

E23.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  
 (긴급사용을 포함하며,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

E30.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수용자의 거실수용 현황  
 (혼거실수용 건수와 독거실수용 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기록조사]

1.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에는 계구사용 중 수용자의 수용거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독거실수용과 혼거실수용의 건수를 조사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2.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전의 것은 ‘계구사용감독부’를 조사하고, 2004.6.29 이후의 기록은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한다. 2005년 이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2.3.3. 계 구 의 일시완화 와 해제	식사, 용변, 목욕 등을 위하여 계구를 일시완화하 거나 일시해제하 고 있는가?	탁월(5)	3개의 설문에서 모두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다.	설문조사
		우수(4)	3개의 설문에서 모두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80% 이상이다.	
		보통(3)	3개의 설문에서 모두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이다.	
		미흡(2)	3개의 설문에서 모두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60% 이상이다.	
		시정요함(1)	3개의 설문 중 1개 이상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60% 미만이다.	

<해설> 불가피하게 계구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가 식사나 용변, 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제해 주거나 느슨하게 하는 등으로 완화해 주어야 한다. 계구를 착용한 상태로 식사를 하거나 용변을 보아야 한다면 이는 수용자에게 극도의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계구의 비인도적인 사용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도 가옥수갑을 422일 동안, 그리고 동시에 금속수갑을 466일 동안 착용하게 하면서 특히 초기 26일 동안 단 한차례도 계구를 해제하지 않아 목욕은 물론 식사와 수면, 용변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계구의 장기사용이 인간으로서의 최

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구 계구규칙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지만, 다행히도 2004.6.29 제정된 계구규칙 제11조 제2항은 “소장은 계구를 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구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목욕, 식사, 용변, 치료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동과 집필의 경우에도 일시완화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완화할 수 있다.”고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한 점이다. 계구의 일시완화 내지 해제는 계구사용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구금시설의 실무에서 소장은 그 재량을 한껏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계구의 일시해제여부에 대하여 목욕과 식사, 용변시를 중심으로 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구금시설의 계구 일시 완화정책을 파악한 후, 계구 경험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①과 ②의 응답비율을 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사실상 세 개의 설문이 합쳐져 있는 것이다. 분석은 식사, 용변, 목욕의 3개 항목을 각기 나누어 한다.

[설문조사]

E5-7. (계구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식사, 용변, 목욕 등을 위하여 계구를 일시 해제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각각의 경우에 어떠했는지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주세요.

	① 항상 해제해준다	②가끔 해제해 준적이 있다	③해제해준 적이 없다
E5.식사할 때			
E6.용변할 때			
E7.목욕할 때			

[제출자료]

E31. 계구의 일시 완화 및 일시해제의 실시방법(목욕, 식사, 용변, 치료, 운동을 구분하여 각 경우에 계구를 일시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내부기준 및 실시방법을 서술)

### E3. 보안장비의 사용

#### E3.1. 무기의 남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3.1.1. 무기의 남용 여부	무기의 사용경고를 수용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남용하고 있지 않은가?	탁월(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미만이다.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이다.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다.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다.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 이상이다.	
<p>&lt;해설&gt; 총기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총기휴대 근무자는 수용자와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훈령인 ‘보안장비관리규정’에서도 자세한 많은 규정을 두어 총기휴대근무자의 근무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총기는 언제든지 오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총기휴대근무자나 그 외의 직원이 총기를 수용자를 위협하거나 제어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본 평가항목은 실무에서 무기를 수용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한 예가 있는지를 수용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 E8. 시설의 직원이 귀하에게 혹은 귀하의 동료수용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본인에게 한 적이 있다 ② 본인에게 한 적은 없지만 동료수용자에게 한 경우를 목격하였다 ③ 그러한 경험이 없다</p>				

#### E3.2. 보안장비의 남용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E3.2.1. 보안장비의 남용여부	수용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보안장비의 사용경고를	탁월(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이상 1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10% 이상 20% 미만	

남용하고 있지 않은가?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20% 이상 3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 이상
<p>&lt;해설&gt; 구금시설에는 무기가 아니더라도 경비업무와 소요 등을 제압하기 위한 장비로 교도봉, 전기교도봉, 가스총 등의 보안장비를 다수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장비는 그 사용과 휴대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철저히 보관 및 휴대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장비의 오남용의 위험은 부정하기 어렵다. 교도봉, 가스총 등은 휴대근무자나 그 외의 직원에 의하여 수용자를 위협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도 있다. 본 평가항목은 실무에서 보안장비를 수용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한 예가 있는지를 수용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E9. 시설의 직원이 귀하에게 혹은 귀하의 동료수용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교도봉이나 전기교도봉 등을 사용하겠다고 부당하게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p> <p>① 본인에게 한 적이 있다</p> <p>② 본인에게 한 적은 없지만 동료수용자에게 한 경우를 목격하였다</p> <p>③ 그러한 경험이 없다</p>		

## F. 외부교통 및 정보권

### F1. 접견

#### F1.1. 접견시설의 확보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1.1. (칸막이)접 견실의 수	수용인원에 비추어 (칸막이)접 견실의 수는 충분한가?	탁월(5)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30명 미만(교도소 기준, 구치소는 20명 미만)이며, 여자접견실도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단, 여자접견실은 여자수용자의 수에 상관없이 2개실 이상 있어야 한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50명 미만(교도소 기준, 구치소는 25명 미만)이며, 여자접견실도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단, 여자접견실은 여자수용자의 수에 상관없이 2개실 이상 있어야 한다).	
		보통(3)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교도소 기준, 구치소는 50명 미만)이며, 여자접견실은 2개실 이상이다.	
		미흡(2)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교도소 기준, 구치소는 50명 미만)이지만, 여자접견실은 1개실이다. 또는,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교도소 기준, 구치소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다.	
		시정요함(1)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 100명 미만(교도소 기준, 구치소는 50명 미만)이지만, 여자접견실은 별도로 없다. 또는,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 200명 이상(교도소 기준, 구치소는 100명 이상)이다.	

<해설> 수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부의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수용자는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접견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37조는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유럽형사시설규칙 제43조 제1항은 “피구금자는 그 처우, 보안 및 시설의 적정한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한 및 감시 하에 가능한 한 자주 모든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통신하고 그들로부터 방문을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수용자의 접견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중의 하나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대법원 1992.5.8. 91부8). 이처럼 헌법상의 기본권에서 연유하는 수용자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접견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접견실이 부족하면, 시설에서는 1인당 허용되는 접견시간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접견실의 부족은 접견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를 수반하게 된다. 본 평가항목은 접견실의 수가 적정한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의하였다. 1회 접견시간을 행정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30분을 기준으로 하여 접견실 1실에서 하루에 16회 접견이 가능하고 한달이면 대략 400회의 접견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누진계급에 따라 다르지만 월평균 6회를 기준으로 하고(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8조 참조), 미결수용자의 경우 매일 1회의 접견이 허용되므로 월 25회를 최대기준으로 설정하여(행정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수형자와 미결수용자가 구분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의 경우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비율을 통상 7:3으로 하여 필요한 접견실을 산출해 보면 대략 수용인원 100명당 3개실 정도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산출된다. 구치소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비율을 교도소와 반대로 3:7로 하여 계산하면 대략 수용인원 100명당 5개실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접견횟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탁월’로 평가될 수 있다. 참고로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는 접견실의 수에 관하여 교도소의 경우 수용자 250명당 1실, 구치소의 경우 수용정원 500명까지는 100명당 1실, 500명을 초과할 때에는 200명당 1실이라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자접견실은 최소 2실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법령이 허용되는 자신의 접견권을 거의 다 사용한다고 할 때 1인당 접견시간 30분 보장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접견실의 수와 함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여자접견실의 수이다. 여자사동은 남자사동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접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비율은 원칙적으로 남자사동의 접견실과 같은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하고는 여자수용자의 수가 일반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정한 기준인 여자접견실 2개실 이상의 기준은 충족되어야 ‘보통’ 이상이 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로 접견실의 수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2.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전체 수용인원 ÷ 전체 접견실 수}. 수용인원은 제출자료 A2.를 참조한다.
3. 교도소인가 구치소인가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4. 여자접견실의 경우에는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여자 수용인원 ÷ 여자접견실 수}

[제출자료]

F1. 접견실의 수와 위치 (표)

구분		수	위치
칸막이접견실	남자접견실		
	여자접견실		
번호인접견실			
장소변경접견실			

[현장조사]  
 제출자료에 제시된 접견실이 실제 접견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여자접견실은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1.2. 변호인접견실의 수	수용인원에 비추어 변호인접견실의 수는 충분한가?	탁월(5)	변호인접견실 1실 당 미결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이다(단, 변호인접견실은 최소 2개실 이상 있어야 한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변호인접견실 1실 당 미결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이다(단, 변호인접견실은 최소 2개실 이상 있어야 한다).	
		보통(3)	변호인접견실 1실 당 미결수용인원이 150명 이상 180명 미만이다(단, 변호인접견실은 최소 2개실 이상 있어야 한다).	
		미흡(2)	변호인접견실 1실 당 미결수용인원이 180명 이상 200명 미만이다(단, 변호인접견실은 최소 2개실 이상 있어야 한다).	
		시정요함(1)	변호인접견실 1실 당 미결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거나, 변호인접견실이 1개실 이하이다.	

<해설> 미결수용자의 경우 변호인접견은 방어권의 핵심적인 사항에 속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만큼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은 접견횟수나 접견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행형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 참조). 그러한 만큼 구금시설에 변호인접견실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수용자의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하게 됨은 물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인원에 비추어 변호인접견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변호인접견실의 수에 관하여 “미결수용자 200명 미만은 2실, 1,500명 미만은 200명 증가마다 1실 가산, 1,500명 이상은 300명 증가마다 1실 가산”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1,000명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의 경우 변호인접견실이 6개실 필요하고, 1,600명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의 경우 9개실이 필요하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의 기준을 변호인접견실 1실 당 미결수용인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보면, 대략 160-180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법무시설기준규칙이 미결수용자 200명 미만인 경우 2실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미결수용인원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한 변호인접견실은 2개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접견실 1실 당 미결수용인원은 100명 미만은 되어야 ‘탁월’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상응하는 수준은 ‘보통’이 되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변호인접견실의 수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2. 변호인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미결수용인원 ÷ 변호인접견실 수}. 미결수용인원은 제출자료 A5.를 참조한다.
3.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급시설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변호인접견실이 3개실 이상인 경우를 ‘우수’로, 2개실인 경우를 ‘보통’으로, 1개실인 경우를 ‘미흡’으로, 없는 경우를 ‘시정요함’으로 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더라도, 수형자의 경우에 재심신청을 위하여 혹은 구급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변호사접견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형자의 변호인접견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에 준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수수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각감시만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급시설에서도 최소한도의 변호인접견실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제출자료] F1. 접견실의 수와 위치 (표)

구분		수	위치
칸막이접견실	남자접견실		
	여자접견실		
변호인접견실			
장소변경접견실			

[현장조사] 변호인접견실을 방문조사하여 실제 변호인접견실의 수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1.3. 칸막이접견실의 구조	칸막이접견실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가?	세부지표	a. 청취가 양호하다. b. 시야가 상대방을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c. 접견실의 민원인 쪽 면적이 6.6㎡(2평) 이상이며, 동시에 5인의 민원인이 접견가능하다. d. 장애인용 접견실이 1개실 이상 있다.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접견시에는 원칙적으로 신체접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칸막이접견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접견상대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 청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접견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접견실이 너무 좁아 극히 소수의 인원밖에 접견할 수 없다면 이는 접견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p>				

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견실은 5인의 민원인이 동시에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접견실의 면적을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접견민원인측 방과 수용자측 방을 합한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도의 면적이라면 민원인 3명 정도가 간신히 서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접견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접견시 접견가능인원은 5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접견업무지침’ 제3조는 동시접견인원을 3인이내로 하면서 원거리접견인을 감안하여 5인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명의 접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접견민원인측 방의 면적이 최소한 2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원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동 지침 제36조는 장애인 전용 접견실을 시설별로 1개실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시설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평가지침> 칸막이접견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로 평가한다.

- a. 조용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많은 구금시설에서 접견실의 칸막이는 아크릴 판에 구멍을 뚫거나, 아크릴판 위에 스텐레스 철망을 설치하여 그곳을 통해 대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는 큰 소리로 대화해야 하며, 옆방의 소음까지 겹치면 사실상 조용한 대화는 불가능하다. 반면에 마이크를 이용한 대화는 조용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b. 특히 아크릴 칸막이가 뿌옇게 되어 상대방에 대한 시야의 확보에 지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 c. 접견실의 민원인측 방의 면적이 2평 이상임을 의미한다.
- d. 장애인전용접견실이 1개실 이상 있는가를 평가한다.

[현장조사] 칸막이접견실 중 1개실을 방문하여 a, b, c, d의 해당여부를 확인해 본다.

- a. 실제 대화를 해 보아야 한다.
- c. 접견실 내 민원인 방의 면적을 실측해 보아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1.4. 변호인접견실의 구조	변호인접견실은 변호인과의 상담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가?	세부지표	a. 대화의 비밀이 잘 유지된다. b. 서류와 물건을 함께 열람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c. 수용자는 필기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d. 동시에 3명의 변호인이 접견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다. 최저기준규칙 제93조는 “미결수용자는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변호인과 비밀이 유지된 대화와 지시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필기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구금시설 공무원의 시각에 의한 감시는 가능하지만 대화내용의 청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형법 제18조 제3항 및 제66조 제1항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의 시각 감시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접견실은 교도관의 청취 및 기록, 녹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대화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는 서류와 물건을 함께 자유로이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용자도 집필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3명 정도의 변호인이 동시에 접견가능한 정도의 면적과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가지침> 변호인접견실 1개실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평가한다.

a. 접견실 외부에서 교도관의 청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교도관의 근무위치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대화내용이 들리는가를 실제 조사해보아야 한다.

b.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서류와 물건을 자유롭게 수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많은 구금시설에서 변호인접견실 안에 변호인석과 수용자석의 책상 사이에 높이 20cm정도의 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서류의 자유로운 검토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c. 변호인접견실 내의 수용자석에 메모지와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준비성 있는 수용자라면 변호인과의 접견 전에 스스로 집필도구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자는 접견 도중 필요하다면 집필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d. 변호인 3명 이상이 동시에 앉아서 접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공간인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변호인접견실 중 1개실을 방문하여 a, b, c, d의 해당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교도관의 근무위치에서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지를 실제 재연해 보아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1.5.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장소변경접견 등을 위하여	탁월(5)	신체접촉이 가능한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200명 미만이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신체접촉이	우수(4)	신체접촉이 가능한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 400명 미만이다.	

접견실의 구비	허용되는 접견실은 적절하게 구비하고 있는가?(변호인접견실·합동접견실 제외)	보통(3)	신체접촉이 가능한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 600명 미만이다.
		미흡(2)	신체접촉이 가능한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600명 이상 800명 미만이다.
		시정요함(1)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이 600명 이상이거나 신체접촉접견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다.

<해설> 수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접견 시 접견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허용되어야 한다. 수용자가 특히 가족 등과 접견할 때에는 손을 맞잡는다거나 가벼운 포옹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체적 접촉은 접견권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칸막이접견실 등으로 신체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접견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체접촉의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구금시설에서 모든 접견을 원칙적으로 칸막이접견실에서 하게 함으로써 신체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형법시행령 제59조는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접견업무지침’ 제8조는 접견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용자와 접견인 사이의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접견은 장소변경접견과 합동접견의 경우이다. 합동접견은 단체로 이루어지는 접견이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접견에서는 제외하고 이 평가항목에서는 주로 장소변경접견을 위하여 신체접촉이 가능한 접견실을 얼마나 구비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행형법시행령 제59조 단서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장소변경접견이라 부른다(‘수용자 접견업무지침’ 제34조 참조). 수용자의 실질적인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장소변경접견을 확대시행해야 한다. 장소변경접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접견시설이 적정규모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지침>

-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접견실 1실 당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수용인원 ÷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접견실의 수}
-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장소변경접견이 별도의 접견실 없이 그냥 교무과 사무실이나 상담실 등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사무실을 이용하여 장소변경접견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기에서 말하는 접견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 접견실이 다른 사무실 용도를 겸하고 있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접견실은 신체접촉이 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접견실을 말하며, 특별접견실 혹은 장소변경접견실 등의 명칭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접견이 가능하도록 의자와 탁자시설은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면 충분하다.

[제출자료] F1. 접견실의 수와 위치 (표)

구분		수	위치
칸막이접견	남자접견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 민원실에 접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안내책자(브로슈어)가 비치되어 민원인이 가져갈 수 있다.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수용자의 가족 등 외부인은 접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멀리서 헛걸음을 하기도 한다. 접견권은 수용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외부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접견의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은 수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외부접견인이 해당 구금시설의 접견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접견민원실이나 구금시설의 홈페이지이다. 접견민원실은 접견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쉽게 접견신청을 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접견민원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접견안내책자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본 평가항목은 외부인에 대한 접견의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접견민원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로 평가한다.</p> <p>a. b. 각각 접견민원실과 홈페이지 상에 ①기본적인 접견의 절차에 대한 안내 ②접견예약안내 ③화상접견안내 ④공휴일접견안내 중 3가지 이상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c. 접견민원실에 접견에 관한 안내책자 내지 브로슈어가 비치되어 있어 민원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접견민원실의 안내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안내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내책자는 접견 외의 다른 사항(예를 들어 영치의 절차 안내 등)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라도 상관없다.</p> <p>[현장조사] 접견민원실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평가한다.</p> <p>a. ①기본적인 접견의 절차에 대한 안내 ②접견예약안내 ③화상접견안내 ④공휴일접견안내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p> <p>c. 접견민원실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확인하고 평가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2.3. 수용자의 가족에 대한	수용 초기 수용자의 가족에게 접견에 대한	우수(4)	수용 초기에 수용자가족에게 접견에 대한 안내문(브로슈어)을 발송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접견안내	안내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흡(2)	수용자 가족에게 접견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p>&lt;해설&gt; 수용자의 원활한 접견을 위해서는 수용 초기에 수용자가족에게 수용사실과 함께 시설의 위치와 접견방법 등을 안내해 주도록 해야 한다. 그냥 홈페이지나 접견민원실의 안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접견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 이상으로, 수용 초기 수용자가족에게는 수용사실과 함께 접견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87조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체포·구속한 때에 그의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구속사실과 함께 구속일시와 장소, 구속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내용이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 초기 수용자 가족에게 접견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을 ‘우수’로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자료를 통하여 수용 초기에 수용자 가족에게 접견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접견민원실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내문을 입수하여 그 내용과 형식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li> <li>2. 안내문은 내용이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며, 브로슈어형태로 되어 있는 안내문이면 바람직하지만 안내문의 형식을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안내문에는 수용일시, 구금시설의 명칭, 구금시설의 주소와 민원실의 안내전화번호, 그리고 접견 등에 관한 절차의 안내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내문으로 평가하지 않는다.</li> </ol> <p>[제출자료]</p> <p>F2. 신입수용 시 수용자 가족에게 접견에 관한 안내를 하는 방법(안내문의 발송여부 및 안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안내문을 첨부함)</p> <p>[현장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접견민원실에서 안내문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다.</li> <li>2. 접견민원실에서 수용초기 가족에게 안내문을 보낸 발송대장을 확인하여 안내문의 발송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li> </ol>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2.4. 가족에 대한 접견금지 사실의 통보	수용자의 접견이 제한되는 경우	우수(4)	먼저 수용자에게 의사를 물어본 후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접견금지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접견금지사실을	보통(3)	먼저 수용자에게 의사를 물어본 후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접견금지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가족에게 적절하게 통지하는가?	미흡(2)	수용자가 원할 경우에만 접견금지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한다.
		시정요함(1)	접견금지사실을 가족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는다.

<해설> 징벌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금치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용자의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징벌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23조 참조). 이 때에는 접견제한사실을 즉시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징벌규칙 제11조 제5항은 조사기간 중의 처우제한과 관련하여 “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혐의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보의 방법에 대하여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접견업무지침’ 제7조는 “조사·징벌 중인 수용자가 접견 등이 제한됨을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직간부 등이 이를 조사·징벌수용자 접견금지 통보부에 기록하고 접견금지 안내문을 참조하여 전화나 편지 등으로 가족 등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현재 구금시설에서는 조사 내지 징벌로 접견이 금지된 수용자의 경우 수용자의 의사에 따라 가족에 통지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2004.6.29. 개정된 징벌규칙에 새로이 도입된 제11조 제5항의 규정과 그 전부터 적용되었던 ‘수용자 접견업무지침’ 제7조의 규정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구금시설에 가족에 통지의무를 부여하면서 수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통지하지 않을 수 있게 규정한 것이지만, 후자의 규정은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원할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징벌규칙은 법무부령이고, ‘수용자 접견업무지침’은 법무부예규에 불과하므로 징벌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방식이 타당하다. 지침상의 방식에 의하면 수용자가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통지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통지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수용자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금시설에서는 징벌규칙 제11조 제5항의 취지에 따라 먼저 해당 수용자에게 가족 등에게 통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그 의사를 물어보고 난 후,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통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접견금지사실의 통지에 관한 실무현황을 파악한 후, 기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2. ‘우수’에 해당하려면 먼저 접견이 제한되는 모든 수용자에게 접견금지사실의 통지여부에 대하여 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은 후에 통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서면확인이 생략되긴 하였지만 먼저 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면 ‘보통’으로 평가한다. 구금시설 직원이 접견금지사실의 통지여부에 관하여 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수용자의 통지요구가 있을 때에만 통지한다면 이는 ‘미흡’으로 평가한다. 아예 가족 등에게 접견금지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정요함’에 해당한다.

<p>[제출자료]</p> <p>F3. 접견제한사실(예 : 조사중 혹은 징벌)을 가족에게 통지하는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통지의 방법(전화, 우편 등)</li> <li>② 통지의 내용(접견금지이유와 금지기간 등)</li> <li>③ 통지의 시기(접견금지사실 발생 후 얼마만에 통지하는가)</li> <li>④ 통지여부에 대한 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li> </ol> <p>[기록조사] ‘조사·징벌대상자 접견금지 통보부’의 기록을 확인한다.</p> <p>[면담조사]</p> <p>규율과 징벌(E) 영역의 면담대상 수용자에게 다음을 질문한다(규율과 징벌 영역의 평가자에게 면담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접견제한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할 것인가 여부를 구금시설직원이 물어보았는가</li> <li>2) 통지해 달라고 하였는가</li> <li>3) 통지하지 말라고 한 경우 직원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았는가</li> </ol>
---

**F1.3. 접견횟수의 이용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3.1. 수형자의 접견 이용정도	수형자는 접견횟수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탁월(5)	전체 월평균 접견횟수가 6회 이상이고, 누진계급별로 제1급이 10회, 제2급이 5회, 제3급이 4회, 제4급이 3회 이상이다.	제출자료
		우수(4)	전체 월평균 접견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진계급별로 제1급이 6회, 제2급이 4회, 제3급이 3회, 제4급이 2회 이상이다.	
		보통(3)	전체 월평균 접견횟수가 4회 이상이고, 누진계급별로 제1급이 5회, 제2급이 3회, 제3급과 제4급이 2회 이상이다.	
		미흡(2)	전체 월평균 접견횟수가 3회 이상이고, 제4급의 접견횟수가 2회 이상이다.	
		시정요함(1)	전체월평균접견횟수가 3회 미만이다.	

<해설> 접견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가족과의 접견은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천명한 헌법 제36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행형목표로 삼고 있는 구금시설에서는 수형자의 접견을 장려하고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접견은 수형자의 고립화, 그리고 그로부터 연유하는 현실감각, 의사소통 및 타인과의 접촉에 있어서의 위험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접견을 통하여 수형자는 구금중일지라도 외부사회와 최소한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접견은 교도소 내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복귀

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평가항목은 수형자의 월평균 접견횟수를 평가함으로써 원활한 접견의 정도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접견의 실질적인 횟수의 증가 내지 활발한 접견은 시설의 노력과 함께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 등 외부접견인의 적극적인 접견의지가 융화될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구금시설에서는 수형자에게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도록 일깨우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접견횟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근 3개월간 누진계급별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접견횟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최근 3개월간 누진계급별 수형자의 접견횟수 ÷ 해당 누진계급의 수형자 수 ÷ 3}
2. 수형자 1인당 전체월평균접견횟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누진계급별 월평균접견횟수의 합 ÷ 4}

[제출자료]

F4. 최근 3개월간 수형자가 실제 사용한 접견의 횟수 (표)

(※ 급외자도 처우기준에 상응하여 누진계급별 인원수에 포함함)

(※ 수형자 1인당 월평균접견횟수= 최근 3개월간 접견횟수 ÷ 수형자수 ÷ 3)

누진계급별	시설내 수형자 수	최근 3개월간 접견횟수	수형자 1인당 월 평균접견횟수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3.2. 미결수용자의 접견 이용정도	미결수용자는 접견횟수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변호인접견은 제외)	우수(4)	월 평균 15회 이상	제출자료
		보통(3)	월 평균 10회 이상 15회 미만	
		미흡(2)	월 평균 5회 이상 10회 미만	
		시정요함(1)	월 평균 5회 미만	

<해설> 미결수용자에게도 접견은 수용자에게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게 하고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호활동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형법시행령 제56조 2항은 미결수용자에게 수형자와는 달리 매일 1회의 접견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금시설은 미결수용자들이 접견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배려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족이 구금시설을 방문

하여 접견을 하고자 해도 그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든가 하면 향후 접견이 활발하게 이용되기 어렵다. 본 평가항목은 미결수용자의 월평균 접견횟수를 기준으로 미결수용자의 접견 이용정도를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하여 미결수용자의 월평균 접견횟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 ÷ 미결수용자수 ÷ 3}

[제출자료]

F5.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가 실제 사용한 접견의 횟수 (표)

(※ 변호인접견은 제외)

(※ 미결수용자1인당 월평균접견횟수 = 최근 3개월간 총접견횟수 ÷ 미결수용자수 ÷ 3)

시설 내 미결수용자의 수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의 총접견횟수	미결수용자 1인당 월 평균접견횟수

#### F1.4. 접견시간의 보장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4.1. 수형자의 접견시간	수형자는	탁월(5)	30분 초과	제출자료 면담조사 현장조사
	접견시간을	우수(4)	20분 초과 30분 이내	
	충분히	보통(3)	15분 초과 20분 이내	
	보장받고	미흡(2)	10분 초과 15분 이내	
	있는가?	시정요함(1)	10분 이내	

<해설> 행형법시행령 제54조는 접견시간을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접견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수용자의 권리가기 때문에 “30분 이내”라는 상한선 규제의 규정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규정은 수용자의 접견권에 대한 최소보장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30분”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많은 구급시설에서는 규정이 “30분 이내”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용자의 접견시간을 실제로는 10분 내외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관행은 시설의 수용규모에 비하여 접견시설이 모자란 데에도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접견시설이 충분한 구급시설에서도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접견시간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접견시간의 보장이 수용자의 접견권의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접견시간은 실질적인 접견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이다. 10분 내외의 접견시간은 접견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현행 행형법령의 틀 내에서 수용자의 접견이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20분을 넘은 접견시간이 보장되어야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그런데 제출자료에 나타난 접견시간과 실제 수용자들이 전하는 접견시간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용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접견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제출자료의 접견시간과 수용자들이 응답한 접견시간이 차이가 난다면 수용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2. 접견실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접견실에서 실제 접견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재보도록 한다.

[제출자료]

F6.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1회 당 실제 접견시간

[면담조사]

1.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한 면담대상 수용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7인을 선정하고, 아래 외부교통 및 정보권에 관한 평가항목의 수용자면담조사에도 적용한다.
  - 1) 원칙적으로 수형자 4인, 미결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시설에서는 수형자 5-7인을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 수형자 3인, 미결수용자 4인으로 선정한다.
  - 2) 수형자 4인은 해당 구금시설에 입소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누진계급별로 각 1인씩 선정하고, 미결수용자는 해당 구금시설에 입소한 지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 3) 수형자 4인 중에는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을 많이 하여 소위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자를 2인 포함하도록 한다(‘문제수용자 관리지침’ 제3조 제3호 “교도관을 처벌받게 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이를 왜곡, 과장하여 상습적으로 진정, 고소, 고발 등을 반복하는 자”).
  - 4) 미결수용자 중에는 변호인과의 서신교환의 경험이 있는 수용자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측에 최근 3개월간 변호인과의 서신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명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 5) 구금시설에서 서신검열제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중 1인은 서신검열제외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검열제외대상자명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6) 서신의 발송불허처분과 교부불허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를 각 1인 씩 포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불허서신처리부’를 요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2. 선정된 수용자 7인 중 수형자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실제 접견시간은 몇 분인가

[현장조사]

접견실을 방문하여 수형자의 접견의 실제시간을 샘플로 측정해 보도록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구분	기준	
F1.4.2. 미결수용자의 접견시간	미결수용자는 접견시간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가? (번호인접견은 제외)	탁월(5)	30분 초과	제출자료 면담조사 현장조사
		우수(4)	20분 초과 30분 이내	
		보통(3)	15분 초과 20분 이내	
		미흡(2)	10분 초과 15분 이내	
		시정요함(1)	10분 이내	

<해설> 행형법시행령 제54조는 접견시간을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접견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수용자의 권리가기 때문에 “30분 이내”라는 규정은 최소 30분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규정이 “30분 이내”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용자의 접견시간을 10분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사정은 미결수용자나 수형자나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오히려 일부 구급시설에서는 미결수용자는 수형자보다 접견을 훨씬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수형자보다 더 적은 접견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0분 내외의 접견시간은 실질적으로 접견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평가항목은 수형자의 접견시간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20분을 넘은 접견시간이 보장되어야 ‘우수’로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그런데 제출자료에 나타난 접견시간과 실제 수용자들이 전하는 접견시간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용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접견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제출자료의 접견시간과 수용자들이 응답한 접견시간이 차이가 난다면 수용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2. 접견실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접견실에서 실제 접견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재보도록 한다.

[제출자료]

F6.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1회 당 실제 접견시간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질문한다.

- 실제 접견시간은 몇 분인가

[현장조사]

접견실을 방문하여 미결수용자의 접견의 실제시간을 샘플로 측정해 보도록 한다.

F1.5.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5.1. 공휴일 접견의 실시	공휴일 접견을 적절하게 실시하는가?	우수(4)	모든 접견인에게 평일과 동일하게 공휴일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보통(3)	원거리 접견인(타시도거주)에게만 공휴일 접견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일에 접견한 접견인에게는 공휴일 접견을 허용한다.	
		시정요함(1)	평일에 접견한 접견인에게는 공휴일 접견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휴일접견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	

<해설> 공휴일접견은 접견을 증진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수용자 접견업무지침’ 제27조는 “원거리에서 수용자 접견을 위하여 교도소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휴일(일요일포함)에도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휴일접견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지침 제28조는 “교정시설 소재지와 다른 시도 등 원거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당해 주간의 평일에 접견하지 않은 민원인에 한한다. 다만, 기관의 실정에 따라 원거리의 범위 등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휴일 접견의 허용범위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 공휴일 접견이 원거리 거주자에게 편의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거리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등에 얽매어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휴일접견을 원거리거주자에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해 주간의 평일에 접견한 사람에게는 공휴일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접견은 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월별로 한정된 접견횟수를 누구와 언제 접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수용자와 그의 가족 등이 결정할 문제이다. 당해 주간의 평일에 접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휴일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더구나 2004년 7월 1일부터 구금시설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무토요일(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휴무)의 접견도 공휴일접견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용자 및 외부민원인의 접견권이 종전보다 오히려 제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구금시설에서는 공휴일접견에 관한 위와 같은 제한을 없애고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견을 보장해야 한다. 구금시설은 접견을 최대한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휴일 접견의 보장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와 홈페이지의 공휴일접견안내 등을 참조하여 공휴일접견의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공휴일접견의 실질적인 실시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용자면담조사를 실시한다.

2. 공휴일접견을 타 시·도에 주소를 가진 접견민원인에게 한정하여 허용하는가 여부와 당해 주간의 평일에 접견한 자의 공휴일 접견을 허용하는가 여부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두 가지 제한이 모두 없다면 ‘우수’로 평가하고, 전자의 제한은 있으나 후자의 제한은 없다면 ‘보통’으로, 전자의 제한과 후자의 제한이 모두 있다면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p>[제출자료]</p> <p>F7. 공휴일 접건의 실시방법과 최근 3개월간의 실시현황</p> <p>① 원거리 거주자로 제한하는가 여부, 제한하고 있다면 공휴일 접건이 불허되는 시도의 범위</p> <p>② 당해 주간의 평일에 접건한 자의 공휴일 접건을 제한하는가 여부</p> <p>③ 기타 공휴일 접건의 실시기준</p> <p>④ 최근 3개월 간 공휴일 접건의 실시건수(월별 건수로 기재)</p> <p>[면담조사]</p> <p>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다음을 질문한다.</p> <p>1) 공휴일 접건을 해 본 적이 있는가</p> <p>2) 공휴일 접건의 요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5.2. 접견예약제의 실시	접견예약제는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 그리고 방문시 접견예약이 가능하다. b.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견예약이 가능하다. c. 접견민원실과 홈페이지에는 접견예약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d. 최근 3개월 동안 접견예약제의 이용률이 동기간 전체접견횟수의 10%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접견예약제란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민원인이 통신 및 방문수단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접견을 예약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이 예약된 일시에 접견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수용자 접견업무지침’ 제40조). 접견예약제는 접견민원인이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하고 접견대기시간을 최소화해 주는 장점이 있어 접건의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본 평가항목은 접견예약제의 실시를 위한 구급시설의 노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접견예약제가 널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접견민원실과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약이 쉬워야 한다. 예약은 전화나 팩스, 방문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등 모든 수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접견예약제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한다. 접견예약제의 이용률은 구급시설의 위치나 구급시설의 수용특성 등에 의해서도 좌우되기는 하지만, 구급시설은 접견예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접견예약제의 실시현황을 파악한 후, 홈페이지의 안내 및 예약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며, 접견민원실을 방문하여 접견예약의 실시현황을 체크해 본다. 그리고 기록조사를 통하여 접견예약제의 실시건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접견예약에 대한 안내여부를 확인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의 가능여부와 예약의 방법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a. 전화와 팩스 그리고 방문예약의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한 가지라도 불가능하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b.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의 가능여부를 평가한다.

c. 접견민원실과 홈페이지의 접견예약제에 관한 안내가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안내는 접견예약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d. 접견예약제의 이용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최근 3개월 간의 접견예약에 의한 접견횟수 ÷ 동기간 전체접견횟수 × 100}

[제출자료]  
 F8. 접견예약제의 실시방법 및 최근 3개월간의 실시건수  
 ① 접견예약의 가능한 모든 방법  
 ② 최근 3개월간 접견예약제의 실시건수(월별 건수로 기재)

[기록조사]  
 접견민원실에서 ‘접견예약현황표’(최근 3개월 분)를 조사하여 접견예약건수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접견민원실을 방문하여 접견예약에 대한 안내여부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등의 접견예약의 방법에 대하여 민원실 직원에게 샘플을 확인해 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5.3. 원격화상접견의 실시	원격화상접견을 실시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원격화상접견실이 잘 구비되어 있으며, 화상이 양호하다. b. 홈페이지와 접견민원실에는 원격화상접견제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c. 원격화상접견의 신청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로 할 수 있다. d. 최근 3개월 동안 원격화상접견의 이용률이 동기간 전체접견횟수의 5%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원격화상접견제도는 원거리의 민원인이 구급시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거주지 인근의 시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용자와 접견하는 제도이다. 비록 수용자와 접견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화상접견은 최근 발달한 컴퓨터통신기술 덕택에 구급시설을 방문하여 접견할 수 없는 민원인에게는 그나마 화면으로 수용자의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실제 접견에 준하는 정도의 접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격화상접견제도는 접견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본 평가항목은 원격화상접견의 실시정도를 가늠해 봄으로써 접견의 활성화를 위한 구급시설의 노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화상접견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하며, 화상접견의 실시기록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p> <p>a. 화상접견실을 방문하여 화상접견실이 화상접견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장소인가, 그리고 화상 및 음질의 명확성의 정도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p> <p>b. 홈페이지 상에 안내되어 있는 화상접견에 대한 내용과 접견민원실 안내판에 게시되어 있는 안내문이 민원인들에게 화상접견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화상접견의 신청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야 한다.</p> <p>c. 민원인이 화상접견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방법으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메일 예약(혹은 홈페이지 상의 예약)이 가능한가를 평가한다. 3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해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d. 화상접견 이용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math display="block">\{ \text{최근 3개월 간의 원격화상접견횟수} \div \text{동기간 전체접견횟수} \times 100 \}</math></p> <p>[제출자료]</p> <p>F9. 원격화상접견의 실시방법 및 최근 3개월간의 실시건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원격화상접견실의 설치현황</li> <li>② 화상접견의 예약의 가능한 모든 방법</li> <li>③ 최근 3개월 간 화상접견의 실시건수(월별 건수로 기재)</li> </ol> <p>[기록조사]</p> <p>‘화상접견예약신청원’(최근 3개월 분)의 기록을 조사하여 화상접견의 실시건수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수는 해당 구급시설의 수용자가 접견한 건수를 말한다.</p> <p>[현장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상접견실을 방문하여 화상접견실의 화상접견시설을 확인한다. 컴퓨터의 화상과 음질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li> <li>2. 접견민원실을 방문하여 화상접견에 대한 안내여부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등의 화상접견예약의 방법에 대하여 민원실 직원에게 샘플을 확인해 본다.</li> </ol>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5.4. 합동접건의 실시	합동접건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연간 8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b. 수형자 1인당 5인까지 접견인을 만날 수 있다. c. 합동접건의 장소가 쾌적하고 음식물을 나눠먹으며 자유로이 대화할 수 있다. d. 합동접견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전체 수형자의 20%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a.와 d. 포함, 3개 해당	
		보통(3)	a.와 d. 중 1개 포함,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합동접견은 접견실 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용자가 가족과 함께 음식물을 나눠먹으며 자유로이 대화하고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도 허용되는 접견제도이다(‘수용자 합동접견 시행지침’ 제3조 참조). 법령상의 근거는 행형법시행령 제59조 단서조항이다. ‘수용자 합동접견 시행지침’ 제2조와 제4조는 그 대상을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 중에서 누진계급 제2급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는 제외된다. 통상적인 접견이 칸막이접견실에서 교도관의 감시 하에 행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합동접견은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각 시설에서는 합동접견과 같은 형태의 접견을 보다 많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형자에게 합동접견이 가능하도록 시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동접견의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동지침 제4조는 설날, 어버이날, 추석 등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개최하도록 하고, 실시횟수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동접견의 실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많은 구급시설에서는 연 4~6회 정도의 범위에서 합동접견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소문제나 계호문제 등으로 인하여 합동접견에 참여하는 인원도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합동접견은 보통 야외에서 실시하지만 반드시 야외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대강당 등을 이용하여 참여인원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합동접견의 실시횟수는 연 4회 이상의 범위에서 소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인데, 실시횟수도 근본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합동접견이 칸막이접견실에서의 접견을 대체하여 보다 자유롭고 친밀한 접견을 보장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합동접견은 현재 수형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임을 주의해야 한다. 본 평가항목도 수형자에 대한 합동접견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출자료로 전년도 1년간의 합동접견의 실시현황을 파악한 후, 기록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a. 합동접견의 실시횟수를 평가한다. 본 평가지침에서 8회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연간 4회라는 최소한도의 기준 이상으로 합동접견이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p>기준이다.</p> <p>b. 합동접견 시 수행자 1인당 만날 수 있는 가족의 인원수를 조사하여 평가한다. ‘수용자 합동접견 시행지침’ 제7조는 친족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수용자 면담조사와 기록조사로 평가한다.</p> <p>c. 합동접견의 장소가 음식물을 나눠먹으며 자유로이 대화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합동접견의 장소가 음식물을 먹기에 적당한 장소여야 하며, 가족과의 대화가 청취 혹은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d. 합동접견에 참여한 수행자의 연인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math display="block">\{ \text{전년도 1년간 합동접견에 참여한 연인원수} \div \text{시설 내 수행자수} \times 100 \}</math></p> <p>[제출자료]</p> <p>F10. 전년도 1년간 합동접견의 실시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실시일시와 각 합동접견 시 참여수행자수</li> <li>② 수행자 1인당 접견가족수의 제한기준</li> <li>③ 합동접견의 실시장소</li> <li>④ 합동접견 시 계호의 방법</li> </ol> <p>[기록조사]</p> <p>합동접견의 실시기록을 요구하여 실시건수와 참여수행자 수, 외부접견인의 수를 제출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해 본다.</p> <p>[면담조사]</p> <p>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합동접견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li> <li>2) 합동접견의 장소는 어디인가, 그곳은 음식물을 먹기에 적당한 장소인가?</li> <li>3) 1년에 몇 번 합동접견을 실시하는가?</li> <li>4) 합동접견 시 가족 등 접견인은 몇 명이 입장할 수 있는가?</li> <li>5) 합동접견 시 교도관은 어떻게 감시하는가,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지는 않는가?</li> </ol> <p>[현장조사]</p> <p>합동접견에 이용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그 장소가 음식물을 나누어 먹기에 적절한 장소인가를 확인한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5.5. 무계호접 무계호접	무계호접견(	탁월(5)	실시횟수가 전체 접견의 20%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행형법	우수(4)	실시횟수가 전체 접견의 10% 이상 20% 미만이다.	

견의 실시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보통(3)	실시횟수가 전체 접건의 5% 이상 10% 미만이다.	현장조사
		미흡(2)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횟수가 전체 접건의 5% 미만이다.	
		시정요함(1)	무계호접건을 실시하지 않는다.	

<해설> 행형법 제18조 제3항은 접건에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교도관의 참여와 기록을 당연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교화상 특히 필요한 자”에게는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건을 허가할 수 있게끔 규정하여 마치 교도관의 참여에 의한 통제가 당연하고 교도관의 불참여는 일종의 특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태도는 비례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의 접건권에 대한 과잉제한에 해당한다. 교도관의 참여와 감시는 접건에 대한 제한의 일종이며, 따라서 일정한 제한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접건에 대한 감시는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혹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그것도 교도관의 시각에 의한 감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즉, 무계호접건이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마땅하다. 참고로 독일행형법에서 접건의 감시(Überwachung)는 처우 혹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제27조 1항 1문). 감시의 방법은 시각에 의한 감시(optische Überwachung)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화청취(akustische Überwachung)는 그것이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제27조 1항 2문). 따라서 대화청취를 위해서는 교정기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그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독일 행형법의 규정과 비교할 때 우리의 접건제도는 수용자의 접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나마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계호접건을 실시할 수 있는 재량이 소장에게 있는 만큼, 각 구금시설은 이러한 재량을 이용하여 무계호접건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본 평가항목은 무계호접건의 실시여부 및 정도를 평가해 봄으로써 각 시설이 수용자의 접건권의 보장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무계호접건을 실시한다고 자료를 제출한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계호접건의 실시에 관한 기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는 무계호접건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특히 무계호접건을 실시하는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무계호접건에 이용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무계호접건에 적당한 장소인지 여부를 조사해 보아야 하며, 만약 무계호접건의 장소가 실제 교도관의 접건감시(청취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장소라면 이는 무계호접건의 취지에 반하므로 무계호접건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3. 무계호접건의 실시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최근 3개월간 무계호접건의 실시횟수 ÷ 동기간 전체 접건횟수(제출자료의 F4. + F5.) × 100}

[제출자료]		
F11. 최근 3개월 간 무계호접견(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실시현황 (표)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접견횟수	장소
제1호		
제2호		
제3호		
[기록조사]		
제출자료에 실시건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무계호접견의 실시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확인한다.		
[현장조사]		
무계호접견의 실시건수가 있으면, 그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대화감시를 하지 않고 접견이 가능한 장소인지를 확인해 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5.6. 장소변경접견의 실시	장소변경접견(행형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탁월(5)	실시횟수가 전체 접견의 30%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실시횟수가 전체 접견의 20% 이상 30% 미만이다.	
		보통(3)	실시횟수가 전체 접견의 10% 이상 20% 미만이다.	
		미흡(2)	실시횟수가 전체 접견의 5% 이상 10% 미만이다.	
		시정요함(1)	실시횟수가 전체 접견의 5% 미만이거나 장소변경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	
<p>&lt;해설&gt; 행형법시행령 제59조 단서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변경접견은 교도관이 참여하여 감시와 기록은 하되,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수용자와 접견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접견과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장소변경접견은 그 전용공간에서 실시되어야 하지만,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공간문제로 인하여 상담실 등에서 장소변경접견을 실시하곤 한다. 장소변경접견은 현재 행형법령 상으로는 예외적인 허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용자의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장소변경접견은 오히려 접견의 원칙적인 형식이 되어야 한다. 칸막이접견실의 접견은 접견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조치로, 그것은 제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견권제한의 헌법적 원칙을 감안한다면, 장소변경접견이 비록 예외적인 소장의 허가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시설에서는 이를 원칙적인 형태의 접견으로 점차 격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소변경접견은 무계호접견보다 계호상의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구금시설에서는 그 확대시행에 대한 부담도 무계호접견의 경우보다 훨씬 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계호접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평</p>				

<p>가하도록 한다.</p> <p>&lt;평가지침&gt;</p> <p>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기록조사로 제출자료의 실시건수를 확인해 본다.</p> <p>2. 장소변경접건의 실시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 <p style="padding-left: 40px;">{최근 3개월간 장소변경접건의 실시횟수 ÷ 동기간 전체 접건횟수 × 100}</p> <p>[제출자료]</p> <p>F12. 최근 3개월간 장소변경접건(행형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실시횟수와 장소 (실시횟수를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p> <p>[기록조사]</p> <p>장소변경접건의 실시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실시건수를 확인한다.</p>
--

**F1.6. 접견권의 제한처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6.1. 접견의 강제종료	접견의 강제종료(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행해지는가?	탁월(5)	접견의 부당한 강제종료사례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미만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설문조사
		우수(4)	접견의 부당한 강제종료사례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이다.	
		보통(3)	접견의 부당한 강제종료사례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다.	
		미흡(2)	접견의 부당한 강제종료사례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다.	
		시정요함(1)	접견의 강제종료의 부당한 건수가 1건 이상 있거나,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 이상이다.	

<해설>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접견의 강제종료에 대하여 “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 1. 범죄를 선동, 조장하는 때, 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상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 4. 기타 법 및 이 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접견의 강제종료는 접견권에 대한 침해할 수반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매우 엄격한 기준과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본 평가항목은 접견의 강제종료의 적절성을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에 접견의 강제종료건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우선 그 중 10개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하여 접견강제종료의 관련기록을 조사함으로써 접견의 강제종료처분이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기록상 공식적인 강제종료사례가 한건도 없다면 설문조사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
2. 기록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1) “범죄를 선동·조장하는 때”란 모든 범죄의 선동·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혹은 수용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범죄를 선동·조장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선동·조장”이란 구체적인 범죄를 행할 것을 교사 혹은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동·조장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막연히 범죄를 저지르도록 충동을 유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모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라는 제한요건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용자가 접견자에게 처우나 교도소의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허위사실일지라도 그 자체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용자의 교화 또는 처우에 부적당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4) “기타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라는 제한요건도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정위반이 실질적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수용자의 교화 또는 처우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제출자료]

F13. 전년도 1년간 접견의 강제종료(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례건수

접견 강제종료의 사유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건수	비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기록조사]

전년도 1년간 접견의 강제종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그 사례 중 임의로 10건을 선정하고, 그것이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조사한다. 강제종료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1건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기록상 강제종료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강제종료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이는 강제종료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설문조사]  
 F2. 접견 도중에 교도관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부당하게 접견의 대화내용을  
 제지하거나, 강제로 접견을 끝내게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런 적이 매우 많다      ② 그런 적이 많은 편이다  
 ③ 그런 적이 가끔 있다      ④ 그런 적이 없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1.6.2. 접견불허처 분	접견의 불허처분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고 있는가?	탁월(5)	접견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미만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설문조사
		우수(4)	접견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이다.	
		보통(3)	접견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다.	
		미흡(2)	접견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다.	
		시정요함(1)	접견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1건 이상 있거나,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이상이다.	

<해설> 행형법 제18조 제2항은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견을 불허할 수 있는 셈이다. 이 평가항목에서 문제 삼는 접견불허처분은 접견 횟수제한에 걸리지 않은 수용자에게 처우상의 이유로 접견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징벌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금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해지는 접견불허처분이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징벌조사 중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2002.12.9.자, 02진인1064 결정), 또 금지집행 중에도 접견을 허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2003.6.16.자, 02진인643, 1096, 1575 병합결정). 징벌조사 내지 금지 중의 접견불허에 대해서는 E영역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본 평가항목은 그 외에 처우상의 근거에서 행해지는 접견불허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접견불허처분은 수용자의 접견권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불허사유에 해당해야 함은 물론 불허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구급시설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전년도 1년간 접견이 불허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접견불허처분은 행형법 제1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평가지침>

<p>1. 접견불허처분에 관한 제출자료에서 접견불허처분의 건수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록조사를 통해 접견불허처분사례 중 10건을 임의로 선정하여 관련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접견불허처분이 행형법 제18조 제2항의 취지에 합치하는 것이었는지를 평가한다.</p> <p>2.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는 접견불허처분이 공식적으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견불허처분사례의 기록조사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공식적인 접견불허처분의 사례가 1건도 없다면 설문조사만으로 평가한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3. 기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형법 제18조 제2항의 해석을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엄격히 해야 한다.</p> <p>1) 접견의 불허처분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접견에 대하여 가능하며, 특정인과의 장래의 접견에 대한 포괄적인 불허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p> <p>2) 친족에 대한 접견불허처분은 “수용자의 교화 또는 처우상 특별히 부적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친족과의 접견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p> <p>3) 행형법 제18조 제2항의 접견불허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접견자의 검색 내지 접견에 대한 감시의 방법에 의하여 상쇄될 수 있다면 접견의 불허는 정당하지 않다.</p> <p>4) 접견불허사유는 대체로 다음의 우려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p> <p>(1)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반입 우려</p> <p>(2) 도주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의 반입 우려</p> <p>(3) 도주의 모의 우려</p> <p>(4) 알코올이나 마약류의 반입 우려</p> <p>(5) 접견자가 만취한 상태이거나 전염병 전파의 우려</p> <p>(6) 수용자의 재범의 경향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p> <p>[제출자료] F14. 전년도 1년간 접견불허건수 및 사유별 현황</p> <p>[기록조사] 전년도 1년간 접견불허처분사례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그 사례 중 임의로 10건을 선정하고, 그것이 행형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조사한다. 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1건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기록상 접견불허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이는 접견불허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p> <p>[설문조사]</p> <p>F3. (징벌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이어서 접견을 못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 소환되어 접견을 못한 경우, 접견횟수초과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접견이 가능한데 접견을 못한 경우만 생각해서 대답해 주세요) 최근 3개월 동안에 외부사람이 귀하를 접견하러 왔다가 접견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p> <p>① 그런 경우가 두 번 이상 있다</p> <p>② 그런 경우가 한 번 있다</p>
--

③ 그런 경우가 없다

## F2. 서신

### F2.1. 서신업무에 관한 기관내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1.1. 서신에 관한 기관내규의 적절성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의거한 기관내규는 적절한가?	탁월(5)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항목이 3개 이상 있으며, 서신수발권을 법령보다 제한하는 항목은 없다.	제출자료
		우수(4)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항목이 2개 있으며, 서신수발권을 법령보다 제한하는 항목은 없다.	
		보통(3)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항목이 1개 있으며, 서신수발권을 법령보다 제한하는 항목은 없다.	
		미흡(2)	수용자의 서신수발에 기여하는 항목도, 서신수발권을 법령보다 제한하는 항목도 없다.	
		시정요함(1)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을 법령의 기준보다 제한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있다.	

<해설>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서신은 수용자 권리행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은 업무임을 감안, 각 소장은 관련법규 및 본 지침을 근거로 기관실정에 적합한 내규를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규제정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관내규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많은 구급시설은 서신에 관한 기관내규를 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형법 및 시행령 중 서신에 관한 규정과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의 규정내용을 단순히 반복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관내규는 의미가 없다. 기관내규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내용은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의 규정보다 더욱 자세하게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각 구급시설의 서신업무에 관한 기관내규에 대하여 그것이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의 보호 및 신장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평가한다. 기관내규가 서신에 관한 법령의 기준을 상회하여 수용자의 서신수발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법령의 기준을 단순반복하거나 소극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불과한지, 혹은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더욱 후퇴하여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1. 기관내규에 대하여 그 규정내용을 아래의 항목별로 서신에 관한 법령의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2. 비교항목 : 1) 서신발송의 횟수 2) 서신의 검열 3) 서신검열제외제도의 운영 4) 서신검열도장의 날인범위 5)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 6) 발송불허서신의 처리 7) 교부불허서신의 처리
3. 비교의 방법 : 기관내규의 규정이 행형법령 및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의 관련규정에

비하여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을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행형법령이 규정한 재량을 이용하여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을 법령의 원칙적 기준보다 제한하여 운영하는가를 비교해 본다. 예를 들어,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서신발송횟수를 “1일 1통”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형법시행령 제61조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비교해 보면, 행형법시행령 제61조의 원칙적 기준(횟수제한 없음)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기관내규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단순히 반복하는데 불과하다면 ‘미흡’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15. 서신업무에 관한 기관내규(제출)

**F2.2. 서신권에 대한 교육과 수용자의 인지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2.1. 서신수발권에 관한 수용자의 인지도	수용자는 서신수발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다.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이다.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이다.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p>&lt;해설&gt; 행형법 제8조의 2는 소장으로 하여금 신입자에게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접견과 서신이 수용자의 수용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은 서신수발의 범위와 절차, 제한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F4. 귀하는 서신수발의 횟수와 방법, 서신에 집필해서는 안 되는 내용 등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p> <p>① 충분히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p> <p>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p>				

**F2.3. 서신발송과 교부의 신속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3.1. 서신발송의 신속성	수용자가 발송을 의뢰한 서신은 신속하게 발송되는가?	우수(4)	발송절차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보통(3)	발송절차가 24시간을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한다.	
		시정요함(1)	발송절차가 26시간을 초과한다.	

<해설>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1항에서도 “수용자가 발송을 의뢰하거나 접수한 서신은 가급적 신속하게 발송 및 교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 제11조는 징벌조사 중이거나 금지집행 중인 자로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동안 구금시설에서 접수한 서신을 “금지해제일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가끔 서신의 발송과 교부가 필요 이상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을 침해하게 된다. 구금시설의 특성상 서신의 발송 및 교부절차가 일반 사회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고 또 검열에 어느 정도의 절대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의 지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신의 발송 및 교부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 하며, 발송 및 교부의 소요시간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지집행이 끝난 후 곧바로 서신을 교부하지 않은 사례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고(2003.4.21.자, 02진인133), 또 구금시설 내에서 직원 간에 서신을 전달하고 검열하는 과정에서 서신처리가 지연된 것도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결정한 바 있다(2003.5.21, 01진인498). 본 평가항목은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개별적인 사례에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구금시설의 서신발송체계가 수용자의 신속한 서신수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고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평가한다.

2. 발송절차는 사동직원이 수용자로부터 서신을 취합하는 최종시점으로부터 교무과의 검열을 거쳐 우체국직원에게 서신이 인계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사동직원이 폐방 후에 서신을 수거하여 퇴근하면서 이를 보안과에 모아 두었다가 다음날 교무과에 인계하여 검열을 거치고 우체국직원에게 인계하거나 우체국을 방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사동직원이 수용자로부터 서신을 취합하는 최종시점은 사동근무자가 퇴근하는 시점이 된다.

[제출자료]

F16. 시설의 서신발송 및 교부절차(시간대별로 서술)  
 (※ 발송의 경우 사동직원이 서신을 취합하는 최종시점으로부터 우체국직원에게 서신을 인계하는 시점까지, 교부의 경우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신을 접수받은 시점부터 수용자

에게 교부하는 시점까지임)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서신을 작성하여 사동직원에게 인계하는 시점은 하루 중 언제인가
- 2) 그 후에 사동직원은 수용자로부터 받은 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3) 서신의 발송절차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현장조사]  
교무과를 방문하여 서신담당직원의 서신발송 및 교부과정을 살펴보고, 또 서신담당직원에게 질문하여 봄으로써 방문시점에 제출자료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서신발송업무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3.2. 서신교부의 신속성	접수한 서신을	우수(4)	교부절차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신속하게 수용자에게	보통(3)	발송절차가 24시간을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한다.	
	교부하고 있는가?	시정요함(1)	발송절차가 26시간을 초과한다.	

<해설> 서신의 발송뿐만 아니라 교부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해설은 위 평가항목 F2.3.1.을 참조한다. 이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의 서신교부절차가 수용자의 신속한 서신수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의 기준은 서신발송절차의 그것과 동일하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고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평가한다.
2. 교부절차는 구금시설의 직원이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수용자서신을 인계받는 시점부터 교무과의 서신검열을 거쳐 수용자에게 서신이 교부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제출자료]  
F16. 시설의 서신발송 및 교부절차(시간대별로 서술)  
(※ 발송의 경우 사동직원이 서신을 취합하는 최종시점으로부터 우체국직원에게 서신을 인계하는 시점까지, 교부의 경우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신을 접수받은 시점부터 수용자에게 교부하는 시점까지임)

<p>[면담조사]</p> <p>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다음을 질문한다.</p> <p>1) 직원으로부터 서신을 교부받는 시점은 하루 중 언제인가</p> <p>2) 서신의 교부절차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p> <p>[현장조사]</p> <p>교무과를 방문하여 서신담당직원의 서신발송 및 교부과정을 살펴보고 또 서신담당직원에게 질문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서신교부업무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본다.</p>
--

**F2.4.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의 이용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4.1. 수형자의 서신수발이 이용	수형자는 서신수발권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가?	탁월(5)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서신발송횟수가 20통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서신발송횟수가 15통 이상 20통 미만이다.	
		보통(3)	수형자 1인당 월평균서신발송횟수가 10통 이상 15통 미만이다.	
		미흡(2)	수형자 1인당 월평균서신발송횟수가 5통 이상 10통 미만이다.	
		시정요함(1)	수형자 1인당 월평균서신발송횟수가 5통 미만이다.	
<p>&lt;해설&gt; 서신교환은 수용자의 외부교통 및 정보권권의 핵심적인 권리이다.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에서 연유하는 기본권이다. 최저기준규칙 제37조는 피구금자의 접견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신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는 당연히 서신수발이 포함된다. 피구금자보호원칙 제19조도 “구금된 자는 법률 혹은 법률에 근거한 규칙에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 하에서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신교환은 수용자에게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구금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복귀에도 유익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서신을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미결수용자와는 달리 접견의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서신수발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진다. 본 평가항목은 수형자의 경우에 서신발송횟수를 평가해 봄으로써 구금시설의 서신수발권 보장의 정도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서신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는 구금시설의 노력과 더불어 수용자 자신의 적극적인 의사, 가족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귀를 행형목적으로 하는 구</p>				

금시설에서는 수행자에게 외부사회와의 유대를 지속하도록 일깨우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행자의 서신발송횟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이 수행자의 재사회화에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수행자의 서신수발권에 유형·무형의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행자 1인당 월평균 서신발송횟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최근 1개월 간 수행자의 총 서신발송횟수 ÷ 시설 내 수행자수}
2. 기록조사로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파악해 본다.

[제출자료] F17. 최근 1개월 간 수행자의 전체 서신발송횟수 및 서신교부횟수

[기록조사]

1.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에는 날짜별로 서신의 수발신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최근 1개월 간의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의 기록을 검토하여 제출자료의 건수를 확인해 본다. 최근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이라는 서류 대신에 수용자의 서신을 관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접수와 발신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금시설에서는 최근 1개월간의 서신수발현황을 컴퓨터의 해당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 수용자 개인별로는 ‘서신표’라는 것이 있다. 필요하다면, 일부 수용자의 ‘서신표’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4.2. 미결수용자의 서신수발 이용	미결수용자는 서신수발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가? (번호인과의 서신은 제외)	탁월(5)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서신발송횟수가 15통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서신발송횟수가 10통 이상 15통 미만이다.	
		보통(3)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서신발송횟수가 8통 이상 10통 미만이다.	
		미흡(2)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서신발송횟수가 5통 이상 8통 미만이다.	
		시정요함(1)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서신발송횟수가 5통 미만이다.	

<해설> 미결수용자의 서신수발권도 수행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행형법은 서신수발에 관하여 미결수용자와 수행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양자 모두 서신발송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신수발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 평가항목 F2.4.1.의 해설을 참조한다. 서신교환은 미결수용자에게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게 하고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가 된다는 점에서 구금시설은 미결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해야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경우 접견이 매일 1회 허용되기 때문에 접견이 제한적인 수행자보다 서신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본 평가항목은 이를 감안하여 수형자의 경우와는 평가기준을 다소 다르게 조정하였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서신발송횟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최근 1개월 간 미결수용자의 총 서신발송횟수 ÷ 시설 내 미결수용자수}
2. 기록조사로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파악해 본다.
3.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금시설에는 본 평가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F18. 최근 1개월 간 미결수용자의 전체 서신발송횟수 및 서신교부횟수(※ 변호인과의 서신은 제외함)

[기록조사]

1.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에는 날짜별로 서신의 수발신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최근 1개월 간의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의 기록을 검토하여 제출자료의 건수를 확인해 본다. 최근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이라는 서류 대신에 수용자의 서신을 관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접수와 발신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금시설에서는 최근 1개월간의 서신수발현황을 컴퓨터의 해당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 수용자 개인별로는 ‘서신표’라는 것이 있다. 필요하다면, 일부 수용자의 ‘서신표’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4.3.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의 검열금지 원칙의 준수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서신에 대해서는 검열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발신의 경우에는 직원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변호인과의 서신임을 확인한 후 봉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b. 교부의 경우 직원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을 개봉하여 마약 등 금지품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변호인과의 서신에 대해서 행형법 제66조 제2항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 등의 법률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 규정은 미결수

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과잉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2호가 문제된다. 금지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과의 서신의 내용에 대한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내용검열은 방어권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구금시설에서 제2호를 이유로 하여 변호인과의 서신의 대부분을 사실상 검열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법원은 변호인으로부터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고 다만 수용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 밀수품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는 정도의 제한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다 (Smith v. Robbins, 454 F.2d 696(1st Cir. 1972) 참조). 그러므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내용검열은 금지되어야 한다. 검열이 허용되는 것은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서신에 마약 등 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내용검열을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검열금지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에 대해서는, 우선 발송서신의 경우에는 구금시설 직원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겉면에 적힌 수신인 또는 발신인이 수용자의 변호인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봉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부서신의 경우에는 구금시설직원이 수용자 앞에서 서신을 개봉하고 서신 안에 마약 등 금지품이 들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수용자에게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인권기준으로 권고되는 것이기도 하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 중 검열건수 및 발송금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변호인서신의 처리방법을 파악한다. 제출자료의 검열 현황으로 기재된 사항은 실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에 대한 검열의 실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본 평가에서는 변호인서신의 검열 및 처리방식에 대하여 수용자면담조사에 의하도록 평가하도록 한다.

[제출자료]

F19.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의 검열현황 (표)

미결수용자 수	최근 3개월간 변호인과의 서신교환 총 건수 (발송 및 교부)		최근 3개월간 변호인과의 서신 중 검열된 건수		최근 3개월간 변호인과의 서신 중 검열 후 발송 및 교부가 불허된 건수	
	총건수 ( )	발송건수 ( )	총 건수 ( )	발송시검열건수 ( )	총 건수 ( )	발송불허건수 ( )
		교부건수 ( )		교부시검열건수 ( )		교부불허건수 ( )

F20.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의 발송 및 교부절차에 관하여

- ①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발송하고자 할 때의 발송절차 (특히 일반서신발송절차와 다른 점을 서술)
- ② 변호인으로부터 접수된 서신을 미결수용자에게 교부할 때의 교부절차 (특히 일반서신발송절차와 다른 점을 서술)

<p>[면담조사]</p> <p>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 중 미결수용자에게 질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인과 서신을 교환해 본 경험이 있는가?</li> <li>2) 변호인에게 서신을 발송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직원에게 서신을 건네주는가, 수용자가 스스로 서신을 봉할 수 있는가?</li> <li>3) 변호인에게서 온 서신을 교부받을 때 직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가, 이미 개봉된 채로 전달받는가 아니면 수용자 앞에서 직원이 개봉하는가?</li> </ol>
---

### F2.5. 서신권 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5.1. 서신검열제외제도의 활용	서신검열제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우수(4)	서신검열제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이 정하는 각호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보통(3)	서신검열제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이 정하는 각호의 사유 중 2개를 적용하고 있다.	
		미흡(2)	서신검열제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이 정하는 각호의 사유 중 1개만을 적용하고 있다.	
		시정요함(1)	서신검열제외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p>&lt;해설&gt; 행형법 제18조의 2 제3항은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단서에서 서신검열제외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열이 기본권제한처분인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원칙에 따라 검열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에 근거를 둔 기본권으로서, 그 제한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서신검열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구금시설의 장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혹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참고로 독일 행형법 제29조 3항은 “처우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근거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신을 검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형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서신검열원칙은 헌법상의 비례성원칙과 행형법 제18조의 2 제3항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신검열제외제도가 원칙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구금시설에서는 서신검열제외제도가 검열처분을</p>				

완화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시설에서 서신검열제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기록조사를 통하여 ‘서신검열제외대상자명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일부 구급시설에서는 서신검열제외대상자명단을 작성해 놓고는 실제로는 모든 서신에 대한 검열을 함으로써 서신검열제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서신검열제외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용자 면담조사를 활용한다.

[제출자료]

F21. 현재 서신검열제외대상자 통계 (표)

행형법 제58조 제2항 각호	인원수	비고
제1호		
제2호		
제3호		

[기록조사] ‘서신검열제외대상자명부’를 검토하여 제출자료의 인원수를 확인한다.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서신검열제외제도를 알고 있는가?
- 2) 서신검열제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가?
- 3) 포함되어 있다면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수용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5.2. 시설 내 우편취급소의 유치	시설 내에 우편취급소를 유치하고 있는가?	우수(4)	유치하고 있다.	제출자료
		미흡(2)	유치하지 않았다.	
<p>&lt;해설&gt;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8조 2항은 소장은 소 내에 우편취급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시설 내에 우편취급소가 유치되어 있다면 그만큼 서신의 발송과 교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평가항목은 시설 내에 우편취급소가 유치되어 있는가를 평가해 본다.</p>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하여 시설 내에 우편취급소가 유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교정 아파트 구내에 우편취급소가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치된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22. 시설 내 우편취급소의 유치여부 및 위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5.3. 전자서신제도의 이용	전자서신제도를 활용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전담직원이 배정되어 있다. b. 홈페이지 상에 전자서신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전자서신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c. 24시간 이내에 수용자에게 교부된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최근 각 구금시설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서신교부제도가 거의 모든 구금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민원인의 경우에 일반 서신보다 쉽고 빠르게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외부교통 및 정보권권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다. 본 평가항목은 전자서신제도가 이러한 취지를 살려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자서신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홈페이지상의 전자서신에 대한 안내 및 이용방법의 편리성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교무과에서 전자서신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실무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평가한다.

a. 전자서신의 전담직원이 배정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전자서신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전자서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서신을 담당하는 직원 혹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자서신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면 이는 전담직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b.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자서신에 관한 안내가 있는가 여부, 그리고 전자서신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가 여부를 평가한다. 외부인의 전자서신의 작성방법이라든가 전자서신을 작성하는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c. 전자서신교부의 신속성을 평가한다. 전자서신도 검열을 거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일반서신과 마찬가지로 구금시설직원이 전자서신을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구금시설직원이 전자서신을 접수한 때란 외부민원인이 전자서신을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구금시설의 직원이 전

<p>자서신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때를 말한다. 담당직원은 최소한 하루에 1회 이상은 전자서신을 접수해야 한다.</p> <p>[제출자료] F23. 인터넷홈페이지의 전자서신제도의 실시방법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자서신의 전담직원의 여부와 그 수</li> <li>② 전자서신의 교부방법</li> <li>③ 전자서신의 교부절차</li> </ol> <p>[현장조사] 교무과를 방문하여 전자서신의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신의 교부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하여 실무상의 운영상황을 체크해 본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5.4. 서신검열도장의 날인 여부	발송서신에 대하여 서신검열도장의 날인 여부	우수(4)	발송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날인하지 않는가?	시정요함(1)	발송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한다.	
<p>&lt;해설&gt;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호는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에는 마지막장 우측 하단 여백에 1회 검열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부서신의 경우 서신의 매장마다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도소의 서신은 모두 우체국의 우편사서함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신결봉에서는 구금시설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에 검열도장을 찍을 경우 이를 아는 사람에게는 서신의 발신인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발송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행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2002.12.23,자 02진기6결정).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열사실 및 발송사실 등은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이나 ‘서신표’등에 기재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열사실을 도장으로 공표하는 것은 과잉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인격권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위해서는 구금시설에서는 검열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수용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p> <p>&lt;평가지침&gt; 발송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지 여부를 제출자료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평가한다.</p>				

<p>[제출자료] F24. 발송서신과 교부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p> <p>[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 발송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지 여부</p>
--

### F2.6. 서신수발권의 제한처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6.1. 서신의 발송불허 처분	발송불허처분은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탁월(5)	부당한 서신발송불허사례가 없고, 설문조사 F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미만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설문조사
		우수(4)	부당한 서신발송불허사례가 없으며, 설문조사 F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이다.	
		보통(3)	부당한 서신발송불허사례가 없으며, 설문조사 F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다.	
		미흡(2)	부당한 서신발송불허사례가 없으며, 설문조사 F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다.	
		시정요함(1)	부당한 서신발송불허사례가 1건 이상 있거나, 설문조사 F5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 이상이다.	

<해설> 서신발송의 불허처분은 서신수발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제한처분이다. 수용자의 서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허처분은 엄격하게 그 불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가 서신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서신발송을 불허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발송불허처분이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 제출자료에 서신발송불허건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중 10건을 임의로 선정하여 불허서신처리부의 기록을 조사함으로써 서신발송불허처분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하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병행하여 최종 평가한다. 만약에 공식적인 서신발송불허처분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설문조사결과만으로 평가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
- 구금시설에서 서신발송불허처분이 공식적으로는 한건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불허서신의 기록만으로는 실제 서신발송불허처분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평

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무에서는 시설직원은 수용자에게 서신발송불허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서신을 다시 쓰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3. 기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서신발송불허사유에 해당하는가를 관련기록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때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각호의 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1) 제1호는 서신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금시설이 서신의 발송과 수취를 중개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제3호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인가 여부는 해당 서신의 내용, 발송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다소 부정확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과격한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2002. 6. 20, 2001나 57883 판결 참조).
- 3) 제4호 “기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사유는 일반조항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그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한다. 서신내용에서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 4) 그 외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3조가 규정한 바, “2. 교정참여인사, 사회단체 및 타 수용자 가족 등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외부인 상호간에 금품을 교부하게 하는 내용, 3. 수용자의 신분을 속이고 편팔을 하는 등 상대방을 기만한 우려가 있는 내용, 4. 기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서신에 대해서도 발송을 불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히 제4호의 사회불안 야기 조항은 그 개념이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출자료]

F25. 전년도 1년간 서신발송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 (표)

서신발송불허의 사유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건수	폐기여부 (예 : 폐기 0건, 영치 0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합계		

[기록조사]

서신발송불허건수가 있어 기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허서신처리부’의 기록을 우선 검토하여 10건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한다. 전체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선정하여 검토한다.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불허서신처리부’에 기재된 발송불허사유에 합치하는 판단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영치되어 있는 해당서신을 요구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설문조사]

F5.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에 서신을 발송하고자 했으나, 교도관이 발송을 못하게 제지

한 적이 있습니까?

① 두 번 이상 있다  
 ② 한 번 있다  
 ③ 없다

F6. (앞의 문항 F5에서 서신발송이 제지된 적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발송이 제지된 적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항목에 모두 V표 해주세요.

①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② 처우 혹은 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③ 암호가 쓰여 있다는 이유로  
 ④ 수용자의 신분을 속였다는 이유로  
 ⑤ 사회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⑥ 수감생활 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외부의 도움(친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⑦ 기타 (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6.2. 서신의 교부불허 처분	서신의 교부불허처 분은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보통(3)	공식적인 교부불허사례가 없거나, 부당한 교부불허사례가 1건도 없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미흡(2)	부당한 교부불허사례가 1건 있다.	
		시정요함(1)	부당한 교부불허사례가 2건 이상 있다.	
<p>&lt;해설&gt; 발송불허와 마찬가지로 교부불허처분도 수용자의 서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조치이기 때문에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사유에 엄격하게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서신에 대하여 교부불허처분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p> <p>1. 제출자료에 공식적으로 서신교부불허건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중 10건을 임의로 선정하여 '불허서신처리부'의 기록을 조사함으로써 교부불허처분이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적절한 것이었는가를 평가한다.</p> <p>2. 교부불허처분의 사례 중 교부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없다면 '보통'으로 평가하고, 교부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1건이라면 '미흡'으로, 2건 이상이라면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p> <p>3. 구금시설에서 공식적인 교부불허서신의 건수가 1건도 없다면 '보통'으로 평가한다.</p> <p>4. 기록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서신교부불허사유에 해당하는가를 관련기록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때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각호의 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을 유의하여야 한다.</p>				

다.

- 1) 제1호는 서신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급시설이 서신의 발송과 수취를 중개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제3호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인가 여부는 해당 서신의 내용, 발송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다소 부정확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과격한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2002. 6. 20, 2001나 57883 판결 참조).
- 3) 제4호 “기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사유는 일반조항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그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한다. 서신내용에서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 4) 그 외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3조가 규정한 바, “2. 교정참여인사, 사회단체 및 타 수용자 가족 등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외부인 상호간에 금품을 교부하게 하는 내용, 3. 수용자의 신분을 속이고 편팔을 하는 등 상대방을 기만한 우려가 있는 내용, 4. 기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서신에 대해서도 발송을 불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히 제4호의 사회불안 야기 조항은 그 개념이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출자료]

F26. 전년도 1년간 서신교부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 (표)

서신교부불허의 사유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건수	폐기여부 (예 : 폐기 0건, 영치 0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합계		

[기록조사]

서신교부불허건수가 있어 기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허서신처리부’의 기록을 우선 검토하여 10건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한다. 전체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선정하여 검토한다.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불허서신처리부’에 기재된 교부불허사유에 합치하는 판단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영치되어 있는 해당서신을 요구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6.3. 발송불허서 신의 처리	발송불허처 분의 경우 서신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우수(4)	발송불허사유를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발송불허서신을 모두 본인에게 돌려주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보통(3)	발송불허사유를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발송불허서신을 영치한다.		

	있는가?	시정요함(1)	발송불허사유를 통지하지 않거나, 발송불허서신을 폐기한 경우가 있다.	
<p>&lt;해설&gt; 발송불허서신의 경우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발송불허사유를 수용자에게 통지하고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송이 불허된 서신을 구금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은 수용자의 서신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서신발송불허처분에 대하여 차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발송이 불허된 서신을 폐기하지 말고 영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003.5.7.자, 01진인432, 545, 02진인722 결정). 그러나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발송불허서신을 해당 수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에서 발송불허서신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송불허사유를 통지한다는 것은 발송불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어떠한 서신내용이 어떠한 불허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수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발송불허사실만을 통지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통지는 발송불허서신의 폐기 내지 영치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li> <li>2. 발송불허서신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허서신처리부’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영치 혹은 폐기여부, 발송불허서신을 본인에게 돌려주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건이라도 폐기한 경우가 있다면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li> </ol> <p>[제출자료]</p> <p>F27. 서신발송불허처분 시 조치에 대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용자에게 발송불허서신을 돌려주는지 아니면 영치, 폐기 여부 및 전년도 1년간 발송불허서신의 각 처리건수</li> <li>② 발송불허처분 시 수용자에게 발송불허사실을 통지하는 방법</li> </ol> <p>[기록조사] ‘불허서신처리부’를 검토하여 발송불허서신의 처리현황을 확인한다.</p> <p>[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다음을 질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신의 발송불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li> <li>2) 있었다면, 서신 중 무슨 내용 때문이었는가?</li> <li>3) 있었다면, 발송불허서신을 돌려받았는가 아니면 영치되어 있는가?</li> <li>4) 있었다면, 발송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었는가?</li> </ol>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2.6.4. 교부불허 서신의 처리	교부불허처 분의 경우	우수(4)	교부불허사유를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교부불허서신을 모두 영치하여 석방시 가지고 갈 수 있게 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서신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통(3)	교부불허사유를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교부불허서신을 일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영치하거나 폐기한다.	
	있는가?	시정요함(1)	교부불허사유를 통지하지 않거나, 교부불허서신을 모두 폐기한다.	
<p>&lt;해설&gt; 교부불허서신의 경우 행형법 제18조의 2 제5항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송불허처분 시 서신의 폐기에 대해서는 행형법에는 규정이 없이 동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교부불허서신의 경우에는 그 폐기여부가 행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부불허서신도 발송불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발송불허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불허처분의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교부불허서신의 경우에도 수용자 본인에게 누구에서 온 서신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교부가 불허된 것인지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평가항목은 교부불허서신의 처리방법과 통지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부불허사유를 통지한다는 것은 교부불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누구에게서 온 서신인지, 그리고 서신 중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불허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수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부불허사실만을 통지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통지 시에는 불허서신의 영치 및 폐기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li> <li>2. 교부불허서신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허서신처리부’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영치 혹은 폐기여부를 확인해 본다. 영치하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구금시설에서 그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기록조사 시에 서신담당직원에게 질문해 보도록 한다. 만약 일정한 기준이 없이 영치하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시정요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li> </ol> <p>[제출자료]</p> <p>F28. 서신교부불허처분 시 조치에 대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년도 1년간 교부불허서신의 영치건수와 폐기건수</li> <li>② 영치와 폐기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li> <li>③ 교부불허처분 시 수용자에게 교부불허사실을 통지하는 방법</li> </ol> <p>[기록조사]</p> <p>‘불허서신처리부’를 검토하여 교부불허서신의 영치, 폐기여부 및 각 해당건수를 확인한다.</p>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 1) 서신의 교부불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
- 2) 있었다면, 서신 중 무슨 내용 때문이었는지 아는가?
- 3) 있었다면, 교부불허서신이 영치되어 있는가, 영치 내지 폐기여부를 알고 있는가?
- 4) 있었다면, 교부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었는가?

### F3. 집필

#### F3.1. 집필권의 이용 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1.1. 수형자의 집필 이용	수형자는 집필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가? (서신 제외)	우수(4)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가 1건 이상이며 집필내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보통(3)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가 0.5건 이상 1건 미만이며 집필내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미흡(2)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가 0.5건 미만이며 집필내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시정요함(1)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가 0.5건 미만이며 집필내용이 편중되어 있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법 제33조의 3에 규정된 집필허가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와 같이, 집필의 자유는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2003.8.25.자, ‘수용자의 집필권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1권 제5호 참조). 집필의 자유는 서신 등 외부교통을 위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청원이나 진정,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전제가 되며, 근본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의 기초가 되는 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법 제33조의 3이 집필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금시설의 실무에서 집필은 사전허가제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구금시설에서는 사전허가제의 운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집필을 허가함으로써 집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평가항목은 수형자들이 실제 허가에 의한 집필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구금시설측이 사전허가제를 통하여 수형자의 집필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평가지침>

1. 최근 3개월 간 허가된 집필건수 및 집필내용을 토대로 하여 조사한다. 허가된 집필건수 및 집필내용은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교무과의 ‘집필허가부’와 보안과의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실무상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학습활동은 교무과에서, 소송서류의 작성, 청원서, 민원서류의 작성은 보안과에서 허가관리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2.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text{최근 3개월 간 수형자의 총 집필건수} \div \text{수형자 수} \div 3\}$$
3. 집필내용의 분포는 제출자료에 명시된 항목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소송서류의 작성”,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 “정보공개청구”의 각 항목이 전체집필건수의 10% 이상이며, 특정항목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을 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29. 최근 3개월간 수형자의 허가받은 집필건수 및 내역 (※서신작성 등 수용자집필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는 집필은 제외함)

집필내용(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참조)	건수(%)	비고
소송서류의 작성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		
정보공개청구		
기타		
합계		

[기록조사]

- 최근 3개월간의 ‘집필허가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을 조사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집필건수를 확인한다.
- 특히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서 집필보고전을 낸 것으로 기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샘플로 10건에 대하여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을 확인하여 집필이 실제 허가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1.2. 미결수용 자의 집필 이용	미결수용자 는 집필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가?	우수(4)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가 1건 이상이며 집필내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보통(3)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가 0.5건 이상 1건 미만이며 집필내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미흡(2)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가 0.5건 미만이며 집필내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시정요함(1)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가 0.5건 미만이며 집필내용이 편중되어 있다.	
<p>&lt;해설&gt;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형법 제33조의 3에 규정된 집필허가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와 같이, 집필의 자유는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집필의 자유는 서신 등 외부교통을 위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청원이나 진정,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전제가 되며, 근본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의 기초가 되는 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형법 제33조의 3이 집필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금시설의 실무에서 집필은 사전허가제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구금시설에서는 사전허가제의 운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집필을 허가함으로써 집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평가항목은 미결수용자들이 실제 허가에 의한 집필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구금시설측이 사전허가제를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집필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개월 간 허가된 집필건수 및 집필내용을 토대로 하여 조사한다. 허가된 집필건수</li> </ol>				

및 집필내용은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교무과의 ‘집필허가부’와 보안과의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실무상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학습활동은 교무과에서, 소송서류의 작성, 청원서, 민원서류의 작성은 보안과에서 허가관리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2.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최근 3개월 간 미결수용자의 총 집필건수 ÷ 미결수용자 수 ÷ 3}

3. 집필내용의 분포는 제출자료에 명시된 항목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소송서류의 작성”,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 “정보공개청구”의 각 항목이 전체집필건수의 10% 이상이며, 특정항목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을 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30.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의 허가받은 집필건수 (표) (※ 서신작성 등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제3조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는 집필은 제외함)

집필내용(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참조)	건수(%)	비고
소송서류의 작성(미결수용자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한 소송서류의 작성은 제외)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		
정보공개청구		
기타		
합계		

[기록조사]  
 1. 최근 3개월 간의 ‘집필허가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을 조사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집필건수를 확인한다.  
 2. 특히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서 집필보고전을 낸 것으로 기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샘플로 10건에 대하여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을 확인하여 집필이 실제 허가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1.3. 휴일과 휴게시간의 집필의 자유	일요일, 휴일, 휴게시간에 거실에서 집필이 자유로이 보장되고 있는가?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	

<p>&lt;해설&gt; 수용자들이 거실에서 실제 자유로이 집필할 수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 F7. 귀하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그리고 평일 휴식시간에 거실에서 집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1.4. 작업장 안에서 집필의 자유	작업장 안에서 집필은 가능한가?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	
<p>&lt;해설&gt; 집필은 필요하다면 작업장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얼마나 자유로이 집필할 수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 F8. 귀하는 작업장 안에서 집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1.5. 집필용구의 소지	수용자는 집필하기에 충분한 집필용구를 소지하고 있는가?	우수(4)	노트(학습용제외)는 2권 이상 소지할 수 있으며, 볼펜은 검정·파랑·빨강 각기 1자루 이상, 샤프나 연필 1자루 이상, 형광펜 1자루 이상, 수성펜 검정·파랑·빨강 각기 1자루 이상, 지우개 1개 이상 소지할 수 있다.	제출자료 설문조사

		<p>보통(3)</p>	<p>노트(학습용제외)는 2권 이상 소지할 수 있으며, 볼펜은 검정·파랑·빨강 중 2종류 이상(혹은 수성펜 검정·파랑·빨강 중 2종류 이상), 샤프나 연필 1자루 이상, 형광펜·기타 필기구 중 1자루 이상, 지우개 1개 이상 소지할 수 있다.</p>	
		<p>미흡(2)</p>	<p>노트(학습용제외)는 1권만 소지할 수 있지만, 볼펜은 검정·파랑·빨강 중 2종류 이상(혹은 수성펜 검정·파랑·빨강 중 2종류 이상), 샤프나 연필 1자루 이상, 형광펜·기타 필기구 중 1자루 이상, 지우개 1개 이상 소지할 수 있다. 또는 노트(학습용제외)는 2권 이상 소지할 수 있으나 필기구는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p>	
		<p>시정요함(1)</p>	<p>노트(학습용제외)는 1권만 소지가 가능하며, 필기구는 “볼펜 검정·파랑·빨강 중 2종류 이상(혹은 수성펜 검정·파랑·빨강 중 2종류 이상), 샤프나 연필 1자루 이상, 형광펜·기타 필기구 중 1자루 이상, 지우개 1개 이상 소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p>	

<해설> 수용자들이 집필용구로 무엇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원하는 집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는 다양한 집필용구를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집필용구는 “검정색볼펜 1자루, 집필용 노트 매월 30매 한권, 학습용노트 매월 30매 한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2003년 12월 20일자 법무부공문 ‘수용자집필업무관련지시’에 의하면, 필기도구는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종류를 확대(볼펜, 샤프펜슬, 형광펜, 수성펜, 지우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노트 2권 이상’, ‘볼펜 검정·파랑·빨강 중 2종류 이상(혹은 수성펜 검정·파랑·빨강 중 2종류 이상), 샤프나 연필 1자루 이상, 형광펜·기타 필기구 중 1자루 이상, 지우개 1개 이상 소지’를 기준점으로 삼고자 한다. 필기도구의 다양성의 면에서 볼펜과 수성펜은 대체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평가지침>

1. 집필용구의 소지에 관한 구금시설의 내부기준을 제출자료에서 확인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구금시설에 내부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2. 집필용구의 소지에 관한 기준이 실제 수용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한다. 내부기준상 소지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볼 때 실제 소지하는 수용자가 1명도 없는 것은 소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31. 집필용구의 소지에 관한 내부기준 및 운용현황

[설문조사]  
F9-21. 현재 귀하께서 소지하고 있는 집필용구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칸에 가지고 있는 개수를 모두 써 주십시오.

F9. 종이 종류		노트 ( ) 권		
펜 종류	볼펜	F10. 검정색( )자루	F11. 파랑색( )자루	F12. 빨강색( )자루
	수성펜	F13. 검정색( )자루	F14. 파랑색( )자루	F15. 빨강색( )자루
	형광펜	F16. 노랑색( )자루	F17. 주황색 혹은 분홍색 ( )자루	F18. 파랑색 혹은 초록색 ( )자루
	연필과 샤프	F19. 연필( )자루	F20. 샤프( )자루	
	지우개	F21. 지우개 ( )개		

**F3.2. 집필권 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2.1. 집필 사전허가 의 폐지 운영정도	허가 없이 집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가?	세부지표	a. 소송서류의 작성 시 b.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시 c. 청원서 작성 시 d. 정보공개의 청구서 작성 시 e. 고소장이나 고발장 작성 시 f. 기타 민원서류 작성 시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허가 없이 집필할 수 있다.	
		우수(4)	5개는 허가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보통(3)	4개는 허가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미흡(2)	3개는 허가 없이 집필할 수 있다.	
		시정요함(1)	허가 없이 집필할 수 있는 것은 2개 이하이거나 없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법 제33조의 3이 규정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다(2003.8.25.자, ‘수용자의 집필권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1권 제5호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집필은 문학, 학문, 예술, 문서작성 등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문자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집필의 자유는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고도의 정신활동 영역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한 방식이다. 집필권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2조의 학

문예술의 자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등의 내용으로 볼 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집필권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이며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고도의 정신적 기본권이자 대국가적 방어권(자유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집필행위를 사전허가에 의하여 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행형법 제33조의 3 제1항은 수용자의 집필행위를 사전허가에 의하여 통제함과 동시에 집필의 내용이 “1.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집필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허가식의 집필제한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집필행위 자체를 사전허가제로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집필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금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혹은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집필행위 자체는 그 집필문서가 서신발송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로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집필내용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필 후 그 내용을 검열해야 하는데, 집필 전에 행해지는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에서는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집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에 집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가 집필할 내용에 대한 예단적 판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이는 수용자의 집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행형법 제33조의 3이 규정한 사전허가제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동조가 규정한 집필불허사유는 집필내용을 확인해야만 판단가능한 것인데, 이를 집필 전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넷째, 사전허가제는 수용자로 하여금 집필허가보고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행되고 있다(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제2, 3조). 그런데 국가인권위의 진정사례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직원이 집필보고전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집필권 침해는 집필에 대하여 사전허가제를 운영함으로써 유발되는 이차적인 침해에 해당한다. 사전허가제는 구금시설의 실무와 관행에서 수용자의 집필의 자유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하여 허가 없이 집필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수용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전에 집필허가를 받지 않고 집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와 수용자면담조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담조사에 나타난 결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32. 다음 중 사전허가 없이 집필할 수 있는 것을 적시하십시오.

- ① 소송서류의 작성
- ②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 ③ 청원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정보공개청구서 작성</li> <li>⑤ 고소장이나 고발장 작성</li> <li>⑥ 기타 민원서류 작성</li> </ul> <p>[면담조사]</p> <p>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p> <p>- 다음 중 허가없이 집필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송서류의 작성</li> <li>②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li> <li>③ 청원서 작성</li> <li>④ 정보공개청구서 작성</li> <li>⑤ 고소장이나 고발장 작성</li> <li>⑥ 기타 민원서류 작성</li> </ul>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2.2. 수용자의 집필물 소지권의 보장	수용자에게 집필물의 소지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며, ①의 응답비율이 50% 이상이다.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지만, ①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이다.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이다.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p>&lt;해설&gt; 행형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는 구금시설에 영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소장이 기간 또는 분량을 정하여 수용자에게 그 소지를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용자가 집필물의 소지를 원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거실 내에 소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집필물의 소지는 집필의 자유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수용자는 자유로이 집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집필물을 거실 내에서 자유로이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형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조항은 집필물의 소지를 소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집필물의 소지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집필물을 자유로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에게 집필물의 소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장되는지를 수용자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해 본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과 응답 ①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가한다.</p>				

[설문조사]  
 F22. 집필한 노트(예를 들어, 일기나 수기, 소셜 등)를 거실에서 몇 권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까?  
 ① 수용자가 원하면 여러 권이라도 소지할 수 있다  
 ② 노트 두 권까지는 소지할 수 있다  
 ③ 노트 한 권만 소지할 수 있으며, 다 쓴 노트를 영치해야 다른 노트를 쓸 수 있다  
 ④ 잘 모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2.3. 수용자가 스스로 집필할 수 없는 경우 집필보장	수용자가 스스로	탁월(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며, ①의 응답비율이 50% 이상이다.	설문조사
	집필할 수 없는 경우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지만, ①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집필이 가능하도록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이다.	
	적절히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이다.	
	보장하고 있는가?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해설> 수용자가 글을 모르거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집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료수용자가 대신 집필해 주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용자 사이에 대필이 얼마나 허용되는지를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과 응답 ①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F23. 귀하는 만약 동료수용자가 글을 쓸 줄 모르는 경우 집필을 원한다면 동료 수용자가 대신 집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허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허용되며, 교도관이 전혀 제지하지 않는다  
 ② 허용되는 편이지만, 교도관이 제지하는 경우도 있다  
 ③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교도관이 안다면 주로 제지하는 편이다  
 ④ 전혀 허용되지 않으며, 항상 교도관의 단속대상이다

**F3.3. 집필권의 제한처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3.3.1. 집필불허 처분	집필의 불허처분은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탁월(5)	집필불허처분의 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미만임	제출자료 설문조사
		우수(4)	집필불허처분의 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 이상 10% 미만임	
		보통(3)	집필불허처분의 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임	
		미흡(2)	집필불허처분의 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임	
		시정요함(1)	집필불허처분의 건수가 1건 이상 있거나,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0% 이상임	

<해설> 이미 앞에서 언급한대로 집필은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구금시설의 실무에서 설사 집필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형식을 유지하더라도 이로 인해 불허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집필 자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허되어서는 안 된다. 수용자가 집필물을 영치하거나 서신 등으로 외부에 발송하고자 한다면 그 때에는 서신검열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용자의 집필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가 집필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집필보고전을 냈으나, 집필을 불허한 경우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1건이라도 있으면 ‘시정요함’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집필이 자유롭게 허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평가지침>

1. 집필불허처분에 관한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집필불허건수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2.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공식적인 집필불허처분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자료와 공식기록만으로는 실제 집필이 자유롭게 허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집필불허처분의 현황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제출자료]

F33. 전년도 1년간 집필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 (표)

집필불허처분의 사유(행형법 제33조의 3 제1항)	건수	비고
제1호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주시오)		
제2호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주시오)		



## F4. 전화

### F4.1. 전화설비의 확보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1.1. 전화설비의 수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설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탁월(5)	전화 1대 당 수용자 수 500명 미만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전화 1대 당 수용자 수 500명 이상 600명 미만	
		보통(3)	전화 1대 당 수용자 수 600명 이상 700명 미만	
		미흡(2)	전화 1대 당 수용자 수 700명 이상 800명 미만	
		시정요함(1)	전화 1대 당 수용자 800명 이상	

<해설> 아래 F4.3.1.의 평가지표에서처럼 수용자 1인당 월평균 전화이용횟수는 누진계급에 상관없이 4회 이상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용자 1인당 한달에 평균 4회 전화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전화 1대당 하루에 90회의 통화(1회 통화당 3분 통화 및 준비시간 포함 총 소요시간 5분으로 계산하고, 하루 8시간 전화이용이 가능하다고 계산)가 가능하다고 계산하면, 수용자 675명 당 전화 1대가 설치되어야 최소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전화설비의 수가 부족하면 수용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전화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지침>

1. 전화 1대 당 수용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평가한다 :  
{수용자 총수 ÷ 전화대수}
2. 전화 대수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각 전화를 수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3. 시설 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평가이다.

[제출자료]

F34. 시설 내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의 설치현황  
(기결사동 □대, 미결사동 □대, 여사 □대 등으로 구분)

[현장조사]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의 대수를 확인한다. 그리고 전화기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1.2. 미결수용사 동과 여성수용사 동에 전화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가?	미결수용사 동과	우수(4)	미결사동 및 여성사동에 모두 전화가 1대 이상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여성수용사 동에	보통(3)	미결사동과 여성사동 중 한곳에만 전화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다.	
	전화기	시정요함(1)	미결사동 및 여성사동 모두에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p>&lt;해설&gt; 대부분의 구금시설은 기결수형자의 사동과 미결수용자의 사동, 그리고 여성수용자의 사동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는 기결수형자의 사동에만 전화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결수용자나 여성수용자의 경우 전화를 이용하고자 할 때 수형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요일을 정해 전화를 이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영실무는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이렇게 되면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전화이용에서 상당한 불편과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금시설에서는 미결사동과 여성사동에 별도의 전화실을 설치하여 구분수용에 따른 제한 없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결수용사동과 여성수용사동에 별도로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출자료와 현장조사로 평가해 본다.</li> <li>2. 일부 시설에서는 미결사동이나 여성사동에 전화실을 설치하고도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전화실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전화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li> <li>3. 청송교도소와 같이 미결수용과 여성수용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이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li> </ol> <p>[제출자료]</p> <p>F34. 시설 내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의 설치현황 (기결사동 □대, 미결사동 □대, 여사 □대 등으로 구분)</p> <p>[현장조사]</p> <p>미결수용사동과 여성수용사동의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의 대수를 확인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1.3. 전화실의 구조와 전화기의 상태	전화실 설비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수준인가?	세부지표	a. 청취가 양호하며 잡음이 없다. b. 타인(입회교도관 1인 제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할 수 있다. c. 수화기의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전화실 설비는 실제 수용자들이 전화통화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수화기 등의 위생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자는 전화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된 공간에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청은 기계를 통해 하게 되므로, 교도관이 수용자가 전화에 대고 하는 말을 직접 들으려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전화를 사용하는 수용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의 소음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전화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로 평가한다. 공중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전화를 해 보아야 한다.</p> <p>a. 통화 시 잡음이 없고 소리가 너무 작지 않은 것을 말한다.</p> <p>b. 주위에 대기하는 동료수용자나 다른 직원 등으로부터 대화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는지를 평가한다. 이것은 전화통화장소가 대기하는 동료수용자나 직원의 소음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p> <p>c. 수화기의 위생상태를 평가자가 직접 점검해 본다.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냄새가 나는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평가한다.</p> <p>[현장조사] 전화실을 방문하여 a, b, c의 해당여부를 직접 확인해 본다.</p>				

#### F4.2. 전화사용권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2.1. 전화사용 권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도	수용자는 전화사용방 법, 횟수제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다.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이다.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이다.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견과 서신의 경우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다르며, 이는 수용자의 전화이용을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 태도이다. 하지만, 전화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보급된 통신수단이며, 일반 사회에서 서신보다 오히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의사소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화이용은 접견, 서신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전화통화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Johnson v. Galli, 596 F.Supp. 135(D.Nev. 1984)). 본 평가항목에서는 수용자의 전화이용권은 접견권에 준하여, 모든 수용자에게 최소한 월 4회, 제1급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최소한 월 5회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와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7조에 따르면, 수형자의 경우 제1급은 월 5회, 제2급은 월 3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미결수용자의 경우 월 5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급과 제4급 수형자에게도 전화이용을 최소한 월 4회 이상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서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규정된 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 전화사용을 확대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특히 실무상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허가되지 않는 제3, 4급 수형자 외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건수에 대해서는 ‘공중전화관리기록부’가 아닌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기록을 요구하여 검토해야 한다.
2. 수형자 1인당 전체 월평균 전화이용횟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최근 1개월 간 수형자 전화이용 총 횟수 ÷ 시설 내 수형자수}
3. 각 누진계급별 월평균전화이용횟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최근 1개월간의 누진계급별 전화이용횟수 ÷ 해당누진계급의 수형자수}

[제출자료]

F35. 최근 1개월간 수형자가 실제 전화를 사용한 횟수 (표)

(※ 급외자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5조의 급외자의 누진계급편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각 누진계급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함)

누진계급별	시설 내 수형자 수	최근 한달간 총전화이용횟수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전화이용횟수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전체			

[기록조사] 최근 1개월간의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을 검토하여 수형자의 전화이용건수를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3.2.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	미결수용자는 전화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탁월(5)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전화이용횟수가 4회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전화이용횟수가 3회 이상 4회 미만이다.	
		보통(3)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전화이용횟수가 2회 이상 3회 미만이다.	
		미흡(2)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전화이용횟수가 1회 이상 2회 미만이다.	
		시정요함(1)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전화이용횟수가 1회 미만이거나, 미결수용자에게 전화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해설> 위 F4.3.1.의 해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화이용은 접견, 서신과 함께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7조에 의하면, 미결수용자의 경우 월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급시설에서는 미결수용자에게 전화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무는 법무부훈령인 ‘수용자전화사용지침’에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비록 행정법이 전화사용을 수용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급시설에서는 전화사용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결수용자의 경우 최소한 월 5회의 전화사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전화사용을 허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건수가 있다면 이를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향처리부’의 기록을 검토하여 확인해 보도록 한다. 만약 제출자료에는 허가건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허가건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2.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전화이용횟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최근 1개월간 미결수용자 전화이용 총 횟수 ÷ 시설 내 미결수용자수}

[제출자료] F36.최근 1개월간 미결수용자가 실제 전화를 사용한 횟수 (표)

시설 내 미결수용자 수	최근 1개월간 총 전화이용횟수	미결수용자 1인당 월 평균 전화이용횟수

[기록조사] 최근 1개월간의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향처리부’의 기록을 검토하여 미결수용자의 전화이용건수를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 F4.4. 전화통화시간의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4.1. 전화통화시간	전화통화시간은 충분한가?	탁월(5)	전화통화의 허가시간이 5분을 초과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현장조사
		우수(4)	전화통화의 허가시간이 3분 초과 5분 이내이다.	
		보통(3)	전화통화의 허가시간이 2분 초과 3분 이내이다.	
		시정요함(1)	전화통화의 허가시간이 2분 이내이다.	

<해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범위에서 전화통화시간이 보장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8조는 통화시간을 3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분의 제한기준은 수용자에게 외부교통권으로서 실질적인 전화이용을 보장하는 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수용자의 인권보장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3분 이내”라는 규정은 “최소한 3분”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급시설에서는 재량에 의하여 수용자의 전화통화시간을 3분 이상의 적절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것이 권장되어야 한다. 본 평가지침은 3분 이내의 통화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보통' 정도로 평가하고자 한다.

#####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1회 전화통화 시 통화시간이 몇 분인가를 평가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통화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수용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인한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전화통화의 허가시간이란 공식적으로 허가되는 통화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구급시설이 제출자료에서 3분을 초과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구급시설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공식문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구급시설에서는 개별적인 경우에 실제 통화시간을 3분 기준 이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화시간의 평가기준은 공식적인 허가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제출자료] F37.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에게 허가되는 전화통화 1회당 통화시간(분단위)

#####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 1) 전화를 사용해 본 적은 있는가?
- 2) 월 몇 회나 사용할 수 있는가?
- 3) 1회 당 통화시간은 몇 분인가?

[현장조사]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통화과정을 지켜보면서 통화시간을 평가해 본다.

F4.5. 수용자의 전화사용의 증진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5.1. 긴급한 경우의 전화사용의 보장	긴급한 경우에 전화사용을 적절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탁월(5)	최근 1개월 간 긴급한 용무를 이유로 전화사용을 허가한 건수가 전체 전화사용건수 대비 10%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우수(4)	최근 1개월 간 긴급한 용무를 이유로 전화사용을 허가한 건수가 전체 전화사용건수 대비 5% 이상 10% 미만이다.	
		보통(3)	최근 1개월 간 긴급한 용무를 이유로 전화사용을 허가한 건수가 전체 전화사용건수 대비 3% 이상 5% 미만이다.	
		미흡(2)	최근 1개월 간 긴급한 용무를 이유로 전화사용을 허가한 건수가 전체 전화사용건수 대비 3% 미만이지만 긴급한 용무를 넓게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정요함(1)	최근 1개월간 긴급한 용무를 이유로 전화사용을 허가한 건수가 전체 전화사용건수 대비 3% 미만이며, 긴급한 용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설>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7조 2항에 의하면,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횡수제한에 상관없이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화통화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특히 접견이나 서신의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전화는 매우 유용한 외부교통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현행 행형법령이 전화사용을 수용자의 권리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용무”를 탄력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제3,4급 수형자에게는 전화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바, 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긴급한 용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 운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실질적인 전화사용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평가항목은 “긴급한 용무”로 인하여 전화사용을 허가한 횡수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을 대조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전화사용건수가 실제 긴급한 용무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긴급한 용무”의 해석운용에 대해서는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에서 허가사유를 일별해 봄으로서 판단해야 한다. 허가사유가 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용무로 한정되어 있으면 이는 “긴급한 용무”를 협소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가족이나 친지에게 결혼, 상,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안부를 묻는 전화를 허용한다면 이는 “긴급한 용무”를 탄력적으로 넓게 운용하는 예가 될 것이다.

3. 긴급용무로 인한 허가건수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최근 1개월간 긴급한 용무로 인한 전화사용 건수 ÷ 동기간 전체 전화사용건수 × 100}

4. 긴급한 용무로 인한 전화사용 건수가 없다면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38. 최근 1개월간 긴급한 용무를 이유로 수용자에게 전화사용을 허가한 건수 및 사유  
 (※ 긴급한 용무란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횡수제한을 초과하여 전화사용을 허가한 경우를 말하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 및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상의 통상적인 전화사용범위 내의 경우는 제외함)  
 (※ 긴급한 용무의 허가사유를 구분하여 건수를 계산함)

[기록조사]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서 긴급한 용무에 해당하는 사례건수를 확인하고 그 허가사유를 검토하여 긴급한 용무의 해석과 운영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5.2. 수신자부담 의 전화사용	수신자부담 의 전화사용이 가능한가?	우수(4)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을 실제 허가하고 있으며,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보통(3)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을 실제 허가한 예가 있으나 그에 관한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정요함(1)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을 허가한 예가 없다.	

<해설> 현재 구금시설에 설치된 전화는 카드식 공중전화이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 제4항 및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1조는 전화카드의 구입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전화사용비를 수용자의 개인부담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영치금이 없어 전화카드를 구입할 수 없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전화이용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같다. 전화이용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 수용자가 원할 경우 수신자부담의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에서 카드식 공중전화사용 외에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을 허가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통하여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이 허가되는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에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이 허가된다고 되어 있으면 실제 허가되는지 여부를 기록조사로 관련기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관련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에 관한 내부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2. 본 평가항목에서는 수신자부담의 전화이용이 가능한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허가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

[제출자료]  
 F39.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의 허가에 관한 내부기준과 전년도 1년간 수신자부담의 전화 사용 건수  
 ①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의 허가에 관한 내부기준  
 ② 평가 전년도 1년간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건수

[기록조사]  
 ‘공중전화관리기록부’ 등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을 허가한 기록을 요구하여 확인한다.

F4.6. 전화사용의 제한처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6.1. 전화통화의 차단처분의 적절성	전화통화의 차단처분은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우수(4)	전화통화차단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문항의 응답 비율이 3% 미만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설문조사
		보통(3)	전화통화차단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문항의 응답 비율이 3% 이상 5% 미만이다.	
		미흡(2)	전화통화차단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문항의 응답 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이다.	
		시정요함(1)	전화통화차단의 부당한 건수가 1건 이상 있거나,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문항의 응답 비율이 10% 이상이다.	
<p>&lt;해설&gt;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 제3항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4조는 국어사용의 원칙과 함께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유해한 내용, 범죄의 모의, 교사 및 증거인멸을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즉시 통화를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통화차단처분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p> <p>&lt;평가지침&gt;                      1. 제출자료에 전화통화차단건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기록조사를 통하여 그 중 10개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하여 전화통화차단의 관련기록을 조사함으로써 전화통화차단처분이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4조의 사유에 합치하는 것인가를 평가한다.</p>				

2.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는 전화통화차단건수가 공식적으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자료와 기록조사를 통하여 전화통화차단처분이 합리적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평가항목에서는 전화통화차단에 관하여 수용자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취한다.
3. 수용자설문조사는 최근 3개월 동안 전화통화를 차단당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문항의 응답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40. 전년도 1년간 전화통화의 차단처분의 건수 (표)

전화통화차단의 사유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4조 참조)	건수	비고
외국어사용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유해한 내용		
범죄의 모의, 교사		
증거인멸의 시도		
합계		

[기록조사]

전화통화차단사례가 있다면 그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그 중 10건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 후, 전화통화차단처분이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4조의 사유에 합치하는 것인가를 평가한다.

[설문조사]

F27. (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최근 1년 동안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에 교도관이 부당하게 전화통화를 강제로 차단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두 번 이상 있다
- ② 한 번 있다
- ③ 한 번도 없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6.2. 전화사용의 불허처분의 합리적인가?	전화사용의 불허처분은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우수(4)	전화사용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미만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설문조사
		보통(3)	전화사용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3%이상 5%미만이다.	
		미흡(2)	전화사용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없으며,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	

		이 5%이상 10%미만이다.	
	시정요함(1)	전화사용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가 1건 이상 있거나, 설문조사에서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10%이상이다.	

<해설>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5조는 전화사용의 불허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는 위 F4.6.1.의 전화통화차단처분의 사유와 같다. 본 평가항목은 전화사용불허처분이 적절한지 여부, 즉 전화사용불허처분이 남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화사용불허처분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전화사용불허처분이 있다면 그 중 10건을 임의로 선정하여 관련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전화사용불허처분이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5조의 사유에 합치하는 것이었는지를 평가해 본다.
2.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는 전화사용불허처분이 공식적으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사용불허처분의 기록조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평가에서는 수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취한다.

[제출자료]

F41. 전년도 1년간 전화사용 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 (표)

전화통화불허처분의 사유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5조 참조)	건수	비고
외국어사용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유해한 내용		
범죄의 모의, 교사		
증거인멸의 시도		
합계		

[기록조사]

전화사용불허사례가 있다면 그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그 중 10건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한 후, 전화통화불허처분이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4조의 사유에 합치하는 것인가를 평가한다.

[설문조사]

F26. 귀하는 최근 1년 동안에 전화사용신청을 하였으나 부당하게 전화사용이 불허된 적이 있습니까?

- ① 두 번 이상 있다
- ② 한 번 있다
- ③ 한 번도 없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4.6.3. 통화감시의 고지	F4.6.3.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이 감시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고지하는가?	우수(4)	수용자의 전화통화 전에 시설직원이 상대방에게 통화내용이 감시된다는 것을 알려주며, 상대방에게 통화여부에 관한 결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면담조사 현장조사
		보통(3)	수용자의 전화통화 전에 시설직원이 상대방에게 통화내용이 감시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상대방에게 통화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시정요함(1)	수용자의 전화통화 전에 시설직원이 상대방에게 통화내용이 감시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p>&lt;해설&gt; 수용자의 전화통화 시 행형법 제18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통화내용은 감시될 수 있다. 이 때 구금시설의 직원은 수용자와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통화내용이 감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감시에도 불구하고 통화할 것인가 하는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2조 제3항은 “통화는 먼저 담당직원이 수신자에게 교도소임을 밝히고 감청동의를 받은 후 시작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화통화의 비밀은 수용자와 상대방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감시사실을 알 권리는 상대방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통화여부의 결정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에서 전화통화시 상대방에게 통화감시사실을 알려주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통화결정의 기회를 주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 수용자의 통화과정을 지켜보면서 구금시설 직원이 통화초기에 상대방에게 통화감시사실을 어떻게 고지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통화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면, 전화실 직원에게 통화상대방에게 감청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수용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통화 시 상대방에게 직원이 통화감시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li> <li>2. 직원이 통화상대방에게 “통화감시사실을 알려주는지 여부”와 함께 “상대방에게 통화를 원하는지를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i> </ol> <p>[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화사용의 경험이 있는가?</li> <li>2)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감청 사실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려주는가?</li> <li>3) 상대방에게 감청사실을 알려준 후에 ‘전화통화를 하시겠습니까?’라고 하여 통화결정의 기회를 주는가?</li> </ol> <p>[현장조사]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 수용자의 통화과정을 지켜보면서 구금시설 직원이 통화초기에 상대방에게 통화감시사실을 어떻게 고지하는지를 살펴본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전화실 직원에게 통화상대방에게 감청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물어본다.</p>				

## F5. 신문도서의 구독과 열람

### F5.1. 신문도서 열람의 활용 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5.1.1. 관용도서의 활용정도	수용자는 관용도서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다.	제출자료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이다.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이다.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해설> 수용자들이 개인의 영치금이나 외부인의 도움으로 구입하는 개인도서와는 별도로 구급시설에서는 관용도서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정보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구급시설에서는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용도서를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용도서가 낡고 오래된 책들이거나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된 도서만이 제공된다면 이는 수용자의 정보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들의 관용도서의 이용정도를 평가해 봄으로써 관용도서가 실제로 수용자들의 정보권에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의 관용도서 이용현황을 참조한 후,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42. 현재 수용자의 관용도서 열람현황 (표)

관용도서열람	수형자수	미결수용자수	수용자 수 (수형자+ 미결수용자)	비고
도서열람 안함				
5권 이하 열람				
6-10권 열람				
10권 이상 열람				
합계				

[설문조사]

F28. 귀하는 관용도서를 얼마나 열람하고 있습니까?

- ① 자주 열람한다
- ② 가끔 열람하는 편이다
- ③ 별로 열람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열람하지 않는다



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규정하고 1인 1종류 1부(독거수용자는 2종류 각 1부)로 구독가능한 신문의 종류와 부수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의 종류 및 부수의 제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2003.9.15.자, 03진인 150, 499, 513, 515, 522, 902 결정). 이에 부응하여 법무부는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를 개정하여 신문의 구독 가능 수량과 부수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다. 이제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원하는 한 1인이 다수의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에서 실제 구독신문의 수량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지 여부,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기록조사를 통해 제출자료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수용자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신문의 구독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제출자료]

F43. 수용자 1인당 구독가능 신문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내부기준  
(혼거실 수용자와 독거실 수용자의 구분하여 설명)

[기록조사] ‘수용자신문열람허가자명부’의 기록을 조사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 1인당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부수에 제한이 있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5.2.2. 신문열람실의 설치와 운영	신문열람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신문열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b. 신문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용자를 제한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급수에 따른 제한 등). c. 신문열람실에는 최소한 10종 이상의 일간신문이 1부 이상 비치되어 있다. d. 신문열람실의 이용시간이 1회당 1시간 이상 보장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a에 해당, b, c, d 중에서 2개 해당	
		미흡(2)	a에 해당, b, c, d 중에서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신문은 외부사회의 정보를 취득하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고, 신문열람권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수용자의 신문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 자비부담으로 신문을 구독하도록 보장하는 것 못지않게 구금시설에서 신문열람실을 운영함으로써 비용 때문에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도 외부사회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신문을 구독하는 수용자에게도 자신이 구독하지 않는 신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금시설의 신문열람실 운영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라 말할 수 있다. 법무부예규인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5조와 제6조는 신문열람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문열람실의 설치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수용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해서 구금시설은 신문열람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평가항목은 신문열람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한다면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하는지를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우선 제출자료를 통하여 신문열람실을 별도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다. 만약에 신문열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신문열람실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또 신문열람실 운영에 관한 내부기준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거실 내지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신문열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누진계급이나 기결/미결 등에 의하여 신문열람실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알 권리는 누진계급 등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 신문열람실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종 이상의 신문을 각 1부 이상씩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문열람실에서 확인한다.
- 신문열람실의 이용시간이 모든 수용자에게 1회 당 1시간 이상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제출자료]  
F44. 신문열람실(거실과 별개의 열람실)의 운영여부 및 운영에 관한 내부기준

[현장조사]  
신문열람실을 방문하여 세부지표의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b에 대해서는 신문열람실의 운영직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5.2.3. 수용자 1인당 거실내 소지가가능한 도서의 수	수용자 1인당	우수(4)	제한하지 않거나 제한기준이 51권 이상이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거실내 소지가가능한	보통(3)	31권 이상 50권 이하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도서의 수	미흡(2)	11권 이상 30권 이하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적정한 수준인가?	시정요함(1)	10권 이하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p>&lt;해설&gt;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법무부훈령인 ‘수용자열람도서관리규정’ 제7조 제3항에서 “소장은 거실 형편 등을 감안하여 수용자 1인당 거실 내에서 보관하며 열람할 수 있는 개인도서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거실 내 도서소지의 제한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이는 수용자의 도서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서소지의 기준으로는 최소한 30권 정도의 소지는 보장해야 한다. 이를 최소기준으로 보아 그 이상이면 ‘보통’은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거실 내 소지가능한 도서의 수량에 관한 제한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li> <li>2. 제한기준이 실제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자면담조사를 실시한다.</li> </ol> <p>[제출자료]</p> <p>F45. 수용자 1인당 거실 내 소지가능한 도서의 수에 관한 내부기준</p> <p>[면담조사]</p> <p>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실 내 도서소지의 수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는가?</li> <li>2) 있다면 몇 권까지인가?</li> </ol>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5.2.4. 도서실의 운영	도서실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	세부지표	a. 수용자 1인당 도서실의 장서 수가 20권 이상이다. b. 도서실의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c. 도서의 분류와 대출 등 도서실의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다. d. 소장도서의 검색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 수용자는 도서실을 방문하여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수용자의 도서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도서를 구입하도록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구금시설은 자체적으로 도서실을 설치하고 적정한 규모의 장서를 확보함으로써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실의 설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연유하는 구금시설(국가)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법무시설기준규칙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설치하는 도서실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서고의 경우 장서수/200㎡, 열람실은 서고의 20%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도서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도서실의 면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장서수와 도서의 분류 및 대출시스템 등 관리가 적정한가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도서실은 수용자가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하면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평가항목은 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도서실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후, 해당 시설의 도서실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해 보아야 한다.

- a.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도서실 장서수 ÷ 수용자수}
- b. 도서실에 관용도서의 분류와 대출 등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c. 도서실의 소장도서가 한국십진분류법의 기준에 상응하여 분류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아야 하며, 도서가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열되어 있는가를 살펴서 평가한다.
- d. 도서실의 소장도서의 목록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어 도서명, 저자명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가를 평가한다.
- e. 수용자들이 도서실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열람하거나 검색 또는 대출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F46. 도서실의 운영현황

- ① 도서실의 장서의 수
- ② 도서실의 전담직원의 배치현황
- ③ 도서실의 도서관리시스템(분류와 대출, 검색시스템)

[현장조사]

도서실을 방문하여 b, c, d의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도서실 직원에게 관련사항을 질문하여 확인한다.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 도서실을 방문하여 소장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가?

F5.3. 신문도서의 열람권에 대한 제한처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5.3.1. 신문의 기사삭제 처분	신문의 기사삭제 처분은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우수(4)	삭제된 기사내용이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의 사유에 모두 합치하며,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 복사 등으로 뒷면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보통(3)	삭제된 기사내용이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의 사유에 모두 합치하지만, 기사를 삭제하는 결과 뒷면에 대한 열람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미흡(2)	삭제된 기사내용이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의 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2건 이하 있다.	
		시정요함(1)	삭제된 기사내용이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의 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3건 이상 있다.	

<해설> 수용자의 신문열람은 외부사회의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원천이므로 신문기사의 삭제처분은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신문기사삭제처분에 관해서는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 “1. 도주, 자살, 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 2. 취식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및 광고”(2004.1.1. 개정 전의 것은 다음과 같다 : “1. 조직폭력, 마약 등 당해 수용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2.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관련기사, 3.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동성광고 및 관련기사”). 개정 전의 이 규정에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열람제외기사를 교도소 내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여 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3.9.15.자, 03지인150, 499, 513, 515, 522, 902 결정).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도 “기사삭제와 열람 제한은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나 탈주에 관한 사항이나 집단단식, 선동 등 교도소내의 단체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 등 교화 등 구금목적의 달성이나 교도소내의 질서유지와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2002.6.20 선고, 2001나 57883). 2004.1.1. 동 지침 제9조 제1항의 개정은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도 “교정사고”라든가, “수용질서의 교란” 등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자칫 이 개념을 확대적용하게 되면 기사삭제처분이 수용자의 정보권에 대한 과잉침해가 될 수 있다.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은 다른 기본권의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신문·잡지의 구독은 서신의 자유보다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은 주로 통신의 자유 내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의 보장이 전면에 부각되는 것인 반면에, 신문열람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연유하는 수용자의 알 권리 내지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신수발권에 대한 제한이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가능한 반면에, 신문열람권은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요건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 행형법 제68조는 수용자의 신문·잡지 구독권에 대한 제한은 재사회화 내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형법 제33조 제2항에서 신문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는 서신수발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신문열람권은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엄격한 제한원칙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수용자의 정보의 자유에 대한 과잉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신문기사의 삭제처분이 수용자의 정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의 신문기사삭제건수를 참조하여 ‘열람제외기사검토부’에 기재된 신문기사삭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삭제된 기사 중 삭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2. 기록조사는 전년도 1년간의 모든 기사삭제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3. 기록조사로 신문기사삭제가 적절한 처분이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는 다음의 해석기준을 적용한다.
  - 1) 신문기사삭제처분은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리고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 2) “도주, 자살, 난동 등 교정관련기사”의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자세히 기사화되어 그것이 수용자에게 도주나 자살, 난동 등의 의욕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도주, 자살, 난동의 사실이 짙막하게 기사화된 경우까지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외국 교도소의 탈주사건에 관한 기사 역시 삭제해서는 안 된다.
  - 3) “취식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및 광고”의 경우에도 수용질서의 교란의 위험이 현저하고 구체적인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 4) 구금시설관련기사라도 다음과 같은 기사는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 구금시설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을 보도한 기사, 구금시설의 인권과 관련된 고소, 고발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보도기사,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부의 지시에 관한 보도기사, 구금시설의 실태나 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르포형식의 기사.
4. 기사삭제의 경우 뒷면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전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되, 수용자면담조사에서 삭제뒷면의 보전방법에 관하여 질문하여 확인해 보도록 한다.

[제출자료]

F47. 신문기사삭제방식에 관한 내부기준과 뒷면보전방법(예를 들어, 칼로 오린다든가, 매직으로 지운다든가 등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F48. 전년도 1년간 신문기사 삭제처분의 내역별 건수 (표)

신문기사 삭제의 사유별	삭제건수	비고
--------------	------	----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 제1항)	(※동일신문의 동일기사삭제는 배포부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취급하며, 다른 신문의 서로 유사한 기사의 삭제는 신문종류별로 1건으로 취급함)	
제1호		
제2호		
합계		

[기록조사]  
 ‘열람제외기사검토부’에서 삭제된 기사의 전건에 대하여 삭제된 기사내용이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 제1항에 엄격히 합치하는가를 조사한다.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 어떠한 기사가 주로 삭제되는가?
- 기사를 삭제한 후 뒷면은 어떻게 보전해 주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5.3.2. 도서열람불허처분	도서열람불허처분은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우수(4)	열람불허처분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열람불허도서의 내용이 열람불허사유에 모두 합치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설문조사
		보통(3)	열람불허처분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열람불허도서의 내용이 열람불허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건수가 1건이다.	
		미흡(2)	열람불허처분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열람불허도서의 내용이 열람불허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건수가 2-3건이다.	
		시정요함(1)	열람불허처분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열람불허도서의 내용이 열람불허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건수가 4건 이상이다.	
<p>&lt;해설&gt; ‘수용자열람도서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은 도서열람불허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는 내용, 3.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4. 사회질서 혼란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왜곡 또는 날조하는 내용, 5. 퇴폐적 행위로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살인, 폭력 등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마약사용을 조장하는 내용,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적표현물 또는 음란물로 인정된 도서, 8. 훼손이 심하거나 낙서가 있는 도서, 9.</p>				

기타 수용자 도서열람 허가목적에 반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수용자의 도서열람권이 정보권 내지 알권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임에 반해, 이 규정은 도서열람불허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권에 대한 과잉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구급시설에서는 도서열람불허사유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도서열람권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구급시설에서 도서열람불허사유를 얼마나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열람불허처분된 도서의 목록을 파악한다. 그리고 ‘도서열람불허대장’ 기록을 통하여 제출자료의 건수와 목록을 대조한다. 그 다음, 열람불허된 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열람불허처분이 열람불허사유에 실질적으로 합치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합치하지 않는 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2. 기록조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도서열람불허처분은 도서의 내용이 수용자의 재사회화 내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도서의 내용이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란 음란물(음란물은 아니지만 청소년유해물로 분류된 잡지와 화보는 포함)과 도서의 주된 내용이 범죄의 충동을 구체적으로 야기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란 도서의 주된 내용이 도주와 난동, 규율위반을 구체적으로 선동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지 구급시설에 관한 내용이 도서에 포함된 것만으로는 열람불허사유가 되지 않는다.
  - 3) 법령집과 법률도서, 인권관련도서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열람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급시설이 도서구입을 불허하면서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도서열람불허에 대한 수용자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용자들이 제시한 열람불허도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그 도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제출자료] F49. 전년도 1년간 개인도서 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와 도서명 (표)

도서열람불허처분 (수용자열람도서관리규정 제3조 제1항)	건수 (※동일도서라도 열람을 신청한 수용자가 다른 경우 각기 한건으로 취급)	도서명 (※모두 기재)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합계		

[기록조사]

제출자료와 ‘도서열람불허대장’, 그리고 수용자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열람불허도서에 대하여 그 내용이 평가지침에서 제시한 열람불허사유에 해당하는가를 평가한다. ‘수용자열람도서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지침에서 설명한 열람불허사유에 해당하는가가 기준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설문조사]

F30. 귀하는 최근 1년 동안에 도서열람신청을 하였는데 불허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책제목은 무엇입니까?

- ① 있다 ⇒ 불허된 책제목을 모두 써 주세요( )
- ② 도서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적이 없다
- ③ 도서열람신청을 한 적이 없다

## F6. TV 시청

### F6.1. TV의 설치와 관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1.1. TV모니터 의 설치현황	TV모니터 는 모든 거실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가?	탁월(5)	모든 거실(징벌실 제외)에 TV가 설치되어 있다.	제출자료
		우수(4)	거실(징벌실 제외)의 95% 이상 100% 미만에 TV가 설치되어 있다.	
		보통(3)	거실(징벌실 제외)의 90% 이상 95% 미만에 TV가 설치되어 있다.	
		미흡(2)	거실(징벌실 제외)의 80% 이상 90% 미만에 TV가 설치되어 있다.	
		시정요함(1)	거실(징벌실 제외)의 80% 미만에서만 TV가 설치되어 있다.	
<p>&lt;해설&gt; TV시청권은 수용자의 정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에게 TV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실에 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징벌실에서는 TV시청이 제한되므로 징벌실은 제외하지만 그 외 모든 거실을 포함해야 한다. 징벌혐의로 조사 중에 격리수용하는 거실(조사실)에도 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p> <p>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TV가 설치된 거실의 수를 파악하여 평가한다.</p> <p>2. 거실의 TV설치비율을 계산함에는 징벌실을 제외한 모든 거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조사실도 포함한다. TV 설치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p> $\{TV가\ 설치된\ 거실의\ 수 \div 전체\ 거실\ 수(징벌실\ 제외) \times 100\}$ <p>[제출자료]</p> <p>F50. 거실종류별 TV설치현황(TV가 설치되지 않은 거실의 종류와 거실수를 제시하시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1.2. 거실 TV의 관리실태	거실 TV는 시청에 지장이 없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다.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이다.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이다.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해설> 본 평가항목은 거실 내 TV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거실에 설치된 TV는 화질과 음질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용자설문조사를 통하여 거실 내 TV의 화질과 음질을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

[설문조사]  
F31. 거실 안에 있는 TV는 화질이나 소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④ 매우 불만족스럽다

**F6.2. TV 방송과 수용자의 정보권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2.1. TV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적 적합성	TV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은 수용자의 정보권보장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생방송의 비율이 전체방송시간의 30% 이상이다. b. 뉴스를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방송하고 있다. c. 드라마, 교양 및 시사, 오락, 스포츠, 영화 각 장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정 장르에 방송이 편중되어 있지 않다. d. 뉴스를 제외하고, 녹화방송의 경우 일반사회방송에 비하여 발생하는 시간지체가 2일 이내이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신문·잡지 및 도서의 열람과 함께 TV의 시청은 수용자가 외부세계의 뉴스와 소식을 접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따라서 수용자에게는 TV시청의 권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함은 신문·잡지의 구독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할 수 있다. TV시청권과 관련하여 행정법 제33조의 2는 “소장은 수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법시행령 제114조는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p>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라디오와 TV 시청을 수용자의 알 권리의 하나로 보장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구급시설이 제공하는 교정처우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구급시설에서 TV방송은 수용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수용자에 대한 교화 내지 교육용이 아니다. TV방송은 신문과 함께 수용자들이 외부사회의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급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생방송으로 TV 방송을 중개하여야 하며,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정보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드라마, 교양 및 시사, 오락, 스포츠,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고르게 편성되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급시설의 방송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정보권보장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TV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디오방송, 기타 음악방송은 제외한다. 주간방송계획이 실제방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방송일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a.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생방송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 \text{최근 1개월간 생방송의 방송시간} \div \text{동기간 전체 방송시간} \times 100 \}$$
- b. 제출자료의 통계와 주간방송계획에서 뉴스(생방송 및 녹화방송 포함)의 방송횟수 및 방송시간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녹화의 경우 당일 뉴스의 녹화방송만 포함한다.
- c. 드라마, 교양 및 시사, 오락, 스포츠, 영화의 5개 장르별로 최소한 4건 이상, 방송시간으로 4시간 이상 분포되어 있을 때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평가하며, 5개 장르 중 어느 한 분야의 비중이 3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으로 편중여부를 평가한다.
- d. 뉴스 외에 녹화방송이 실제 사회방송에 비하여 지체되는 정도가 2일(48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F51. 최근 1개월 간의 주간방송계획

F52. 최근 1개월간 실제 방송한 TV프로그램의 성격별 구분 (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건수(%)	방송시간(%)	비고
교화용방송		예 : 00건(00%)	예 : 00시간00분 (00%)	
사회방송TV 뉴스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교양 및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오락프로그램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스포츠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드라마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영화	생방송			
	녹화방송			
교화용제작 외의 비디오테이프				
합계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 1) TV는 어떠한 방송을 주로 하는가, 어제 하루의 방송프로그램을 기억해 보시오
- 2) 최근 1주일 사이에 생방송으로 방송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 3) 뉴스는 하루에 몇 번 방송하며, 뉴스시간은 몇 분인가?
- 4) 뉴스는 녹화인가 생방송인가, 녹화라면 언제 뉴스인가?
- 5) 뉴스 외의 다른 프로그램은 사회방송보다 얼마나 늦게 녹화 방송되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2.2. TV 방송시간	TV 방송시간은 수용자의 정보권 보장에 충분한가?	우수(4)	평일 5시간 이상, 공휴일 12시간 이상	제출자료 면담조사
		보통(3)	평일 4시간 이상, 공휴일 10시간 이상	
		미흡(2)	평일 3시간 이상, 공휴일 8시간 이상	
		시정요함(1)	평일 3시간 미만이거나 공휴일 8시간 미만	

<해설> 본 평가항목은 방송시간이 실제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4조는 평일 방송시간은 1일 5시간 이내로 소장이 정하도록 하고 작업이 없는 날이나 공휴일에는 방송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미취업수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TV방송은 수용자의 정보권에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휴식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시간을 가능한 한 확장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취업수용자의 거실의 경우 아침시간 1시간, 저녁시간 4-5시간 정도가 주로 TV방송이 가능한 시간일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평가항목에서는 평일 4시간을 ‘보통’의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지침>

1. 교화용방송이나 고지사항 방송은 제외하고 사회방송을 녹화 혹은 생방송으로 방송한 시간 및 비디오테이프의 상영시간만으로 평가한다.
2. 제출자료 및 주간방송계획에 의거하여 평가하되, 실제방송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일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제출자료]  
 F51. 최근 1개월 간의 주간방송계획  
 F52. 최근 1개월간 실제 방송한 TV프로그램의 성격별 구분 (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건수(%)	방송시간(%)	비고
교화용방송		예 : 00건(00%)	예 : 00시간00분(00%)	
사회방송TV 뉴스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교양 및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오락프로그램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스포츠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드라마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영화	생방송			
	녹화방송			
비디오테이프				
합계				

F53. 최근 1개월 동안의 평균 TV방송시간(평일, 공휴일 구분)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 1) TV 방송시간은 평일 하루에 몇 시간인가?
- 2) TV 방송시간은 공휴일에 몇 시간인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2.3. TV 방송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수용자는 TV방송에 만족하고 있는가?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	

<해설>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8조 제2항은 “소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수용자의 반응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방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들이 실제 구금시설의 TV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수용자설문조사로 평가한다.

<평가지침>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

[설문조사] F32. 귀하는 시설측이 방영하는 TV프로그램에 만족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 ③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F6.3. 방송을 통한 정보권보장을 위한 구급시설의 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3.1. 방송프로그램의 선택에 수용자의 의사의 반영 정도	방송프로그램의 선택에 수용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다.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이상이다.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이다.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p>&lt;해설&gt;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구급시설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수용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용자에게 채널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수용자간의 다툼의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지 구급시설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선택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용자들이 자신의 의사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실제 얼마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F33. 귀하는 TV방송프로그램의 선택에 수용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수용자의 의사가 거의 다 반영된다                  ② 수용자의 의사가 대체로 반영되는 편이다                  ③ 수용자의 의사가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④ 수용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3.2. 수용자 반응도의 주기적 평가	방송효과에 관한 수용자 반응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8조에 의하여 수용자설문조사를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b. 수용자설문조사서는 방송에 관한 수용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c. 수용자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d.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방송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8조 제1항은 소장에게 방송의 효과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수용자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송에 대한 반응도를 측정하고 이를 방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본 평가항목은 구급시설이 이러한 설문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방송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평가자는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a. 전년도 1년간 수용자설문조사를 매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b. 설문조사양식의 문항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문항들이 수용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극히 형식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c. 설문조사를 최소한 시설 내 수용자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d.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시설의 공식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구급시설에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실제 방송프로그램의 변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확인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F54.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8조에 의한 수용자설문조사에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서술  
 ① 전년도 1년간 수용자설문조사 실시횟수, 실시일자 및 실시방법(설문대상 수용자수, 설문조사의 실시방법을 반드시 기재)  
 ②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8조에 의한 수용자설문조사 양식(가장 최근 것)  
 ③ 설문조사분석결과(가장 최근 것) 및 주간방송계획에의 반영내역(주간방송계획에의 반영내역에는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송프로그램이 신설 내지 변경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기재해야 함)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 수용자설문조사를 시설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3.3.	방송프로그램	세부지표	a. 주간방송계획에 따른 방송프로그램편성	제출자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램에 대하여 수용자에게 적절히 알려주고 있는가?		표를 각 거실에 제공하고 있다. b. 매일 방송을 시작할 때 당일의 방송일정을 자막이나 스피커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c.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전에 자막이나 스피커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수용자가 TV방송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간방송계획을 미리 각 거실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방송 당일에는 방송 시작 전에 당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주간방송계획과 달리 방송프로그램이 변경된 때에도 미리 방송자막이나 스피커를 통하여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용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고,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해 제출자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a. 주간방송계획이 각 거실에 서면으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b. 당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일 방송시작 전에(오전, 오후, 저녁방송 각각) 자막이나 스피커로 안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c.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자막이나 스피커로 안내하는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F55. 방송프로그램의 안내방법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서술  
① 주간방송계획의 거실 제공여부  
② 매일 당일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하는 방법  
③ TV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경우 안내하는 방법

[면담조사]  
외부교통 및 정보권(F, 단 귀휴는 제외)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F1.4.1. 참조)에게 질문한다.  
1) 주간방송계획을 서면으로 거실에 배부하는가?  
2) 매일 당일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하는가, 한다면 그 방법  
3) TV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6.3.4.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의 시행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	우수(4)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방송과 일치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미흡(2)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 방송과 일치하지 않는다.	
		시정요함(1)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이 없다.	
<p>&lt;해설&gt;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장은 주간방송계획과는 별도로 방송시간이나 내용, 횟수 등 방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자료를 통하여 먼저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의 수립여부를 확인해 본다.</li> <li>2.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은 방송시간, 내용, 횟수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3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li> <li>3.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은 실제 실천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이 실제방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li> </ol> <p>[제출자료] F56. 가장 최근의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제출)</p> <p>[기록조사]</p> <p>제출자료의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을 최근의 방송일지와 비교해 보아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p>				

## F7. 귀휴 및 개방처우

### F7.1. 귀휴에 관한 교육과 수형자의 인지 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1.1. 귀휴에 관한 수형자교육	귀휴에 관한 교육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귀휴에 관한 사항(귀휴의 의미, 자격요건, 사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b. 귀휴의 일반적 자격요건(1년 이상 복역, 형기의 1/3경과, 누진계급 제3급 이상)을 취득한 수형자에게 귀휴의 허가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허가사유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다. c. 귀휴허가자를 대상으로 귀휴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귀휴는 수형자들이 구금시설에서 벗어나 집을 방문하고 가족 등과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휴는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며, 수형자의 사회복귀에도 적잖은 기여를 한다. 그러한 만큼 수형자는 자신이 귀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귀휴의 허가사유 및 귀휴의 일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귀휴의 일반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줌으로서 수형자가 스스로 귀휴를 신청하거나 귀휴를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에서 수형자들에게 귀휴 관련사항을 교육과 고지를 통하여 얼마나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평가해 본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귀휴에 관한 교육 및 고지의 실무현황을 파악하고, 귀휴의 경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p> <p>a. 전체 수형자에 대하여 정신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할 때 귀휴관련사항을 수형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는가를 평가한다. 교육내용에는 귀휴의 의미와 자격요건, 귀휴허가사유 및 허가일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은 반드시 귀휴만을 중심으로 한 교육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교육이나 정신교육 등의 기회에 귀휴관련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라도 상관없다. 충분히 자세한 사항이 교육으로 안내되는가? 여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다. 귀휴관련사항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실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금시설측에 요청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p> <p>b. 귀휴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취득한 수형자에게 귀휴의 자격이 되었다는 사실과 귀휴</p>				

의 허가사유에 대하여 통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러한 통지는 꼭 서면일 필요는 없지만 귀휴담당직원에 의한 공식적인 통지여야 한다. 실제 통지여부는 수용자 면담조사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c. 귀휴를 허가받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가기 전에 귀휴시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F57. 귀휴에 관한 수용자교육과 고지의 실시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서술

- ① 2003년 1년간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신교육 등에서 귀휴관련 사항(귀휴의 의미, 자격요건, 허가사유, 신청방법 등)을 교육한 횟수 및 교육방법
- ② 귀휴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수형자에게 그 사실 및 귀휴허가사유와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는 방법(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하는가를 반드시 기재함)
- ③ 귀휴를 허가받은 수형자가 귀휴를 가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의 실시방법 및 내용

[면담조사]

1. 귀휴에 관한 면담대상자 3인을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고 아래의 귀휴에 관한 평가항목의 수용자면담조사에 적용한다.

- 1) 귀휴를 신청한 경험이 있으나 귀휴를 허가받지 못한 수형자를 1인 포함하도록 한다.
- 2) 나머지 2인은 최근에 귀휴를 허가받아 다녀온 수형자로 선정한다.

2. 귀휴에 관하여 선정된 수형자 3인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평상시 정신교육 등의 시간에 귀휴의 의미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 2) 귀휴의 일반적 자격요건이 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는가?
- 3) 귀휴를 신청해 본 적이 있는가?
- 4) 귀휴를 다녀오기 전에 주의사항 등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우수(4)	보통(3)	
F7.1.2. 귀휴에 관한 수형자의 인지정도	수형자는 귀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다.	설문조사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이다.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이다.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p>&lt;해설&gt; 귀휴제도에 관하여 수형자들이 실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p>				

다.

[설문조사]

F34.(기결수만 대답해 주세요)

귀하는 귀휴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귀휴란 일종의 형벌휴가로써 수형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출 내지 외박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잘 알고 있었다                      ② 대체로 알고 있었다

③ 잘 모르는 편이었다                ④ 전혀 몰랐다

**F7.2. 귀휴의 보장 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2.1. 귀휴의 실적	귀휴의 실적은 양호한가?	탁월(5)	연간 귀휴인원수가 제3급 이상 수형자 인원의 50% 이상이다.	제출자료
		우수(4)	연간 귀휴인원수가 제3급 이상 수형자 인원의 40% 이상 50% 미만이다.	
		보통(3)	연간 귀휴인원수가 제3급 이상 수형자 인원의 30% 이상 40% 미만이다.	
		미흡(2)	연간 귀휴인원수가 제3급 이상 수형자 인원의 20% 이상 30% 미만이다.	
		시정요함(1)	연간 귀휴인원수가 제3급 이상 수형자 인원의 20% 미만이다.	
<p>&lt;해설&gt; 행형법 제44조 제3항은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중 1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휴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허가로 시행된다(귀휴시행규칙 제2조). 따라서 귀휴의 실적은 각 구금시설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오늘날 귀휴는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거나 회복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조치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귀휴는 일부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행형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구금시설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귀휴의 혜택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수형자에게 확대하고 귀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평가항목은 1년간의 귀휴 실적을 통하여 구금시설이 귀휴를 적절하게 보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p> <p>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년도 1년간 귀휴허가인원수를 파악하여 평가한다.</p> <p>2. 연간 귀휴인원수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전년도 1년간 귀휴인원 수 ÷ 전년도 12.31 현재 시설 내 제3급 이상 수형자수 × 100}</p>				

[제출자료] F58. 전년도 1년간 귀휴사유별 실적 (표)

귀휴의 허가사유별		누진계급별 귀휴신청 인원수	누진계급별 귀휴허가 인원수	비고 (귀휴기가내 귀소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귀휴 (행형법 제44조 제3항)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1호	예 : 제0급 0명	예 : 제0급 0명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2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3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4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가 내지 아목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자목			
특별귀휴(행형법 제44조 제4항)				
합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2.2. 수형자의 귀휴 신청권의 보장	수형자에게 귀휴를 신청할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고 있는가?	우수(4)	귀휴의 일반적 자격요건을 갖춘 수형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귀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귀휴신청이 있으면 소장은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휴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미흡(2)	귀휴의 일반적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구급시설에서 귀휴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귀휴허가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귀휴신청을 하게 하거나 그 통지로 신청을 갈음하고 있다.	
		시정요함(1)	귀휴허가사유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으며, 수형자는 사실상 귀휴에 대한 신청의 기회가 없다.	

<해설> 행형법 제44조 제3항은 일반귀휴의 경우 특별히 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귀휴가 수형자에게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게 하는 처우수단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도 휴가의 개념으로 귀휴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귀휴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귀휴허가사유를 규정하여 사실상 귀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귀휴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자목 “기타 교화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허가사유를 보다 일반적 귀휴허가사유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귀휴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취득한 누진계급 제3급 이상의 수형자에게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귀휴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의미에서 귀휴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취득한 수형자에게 실질적으로 귀휴의 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1. 귀휴신청기회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되, 제출자료에 기재된 귀휴신청건수에 대하여 실제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신청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록을 검토해 보고 수용자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2. 제출자료 상 귀휴신청건수와 허가건수가 일치한다면 이는 실제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출자료] F58. 전년도 1년간 귀휴사유별 실적 (표)

귀휴의 허가사유별		누진계급별 귀휴신청 인원수	누진계급별 귀휴허가 인원수	비고 (귀휴기가내 귀소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귀휴 (행형법 제44조 제3항)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1호	예 : 제0급 0명	예 : 제0급 0명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2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3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4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가 내지 아목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자목			
특별귀휴(행형법 제44조 제4항)				
합계				

F59. 귀휴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휴허가사유 발생시 귀휴허가사유를 해당 수형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하는가를 서술함)

[기록조사]

‘귀휴허가심사조사서’와 ‘귀휴심사부’를 검토하여 귀휴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면담조사]

귀휴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3인(선정기준은 F7.1.1. 참조)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귀휴를 신청한 적이 있는가?
- 2) 귀휴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하였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2.3. 귀휴기간의 적절성	수형자의 귀휴기간은 충분히 보장하고	탁월(5)	평균귀휴기간이 7일 이상이다.	제출자료
		우수(4)	평균귀휴기간이 6일 이상이다.	
		보통(3)	평균귀휴기간이 5일 이상이다.	
		미흡(2)	평균귀휴기간이 4일 이상이다.	

있는가?	시정요함(1)	평균귀휴기간이 4일 미만이다.		
<p>&lt;해설&gt; 행형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귀휴의 기간은 연중 10일 이내이다. 귀휴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사회적 유대의 지속이라는 귀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됨은 분명하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일반귀휴는 연 1회, 형기 중 5회로 제한하였으나(구 귀휴시행규칙 제14조), 2004.4.3 귀휴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러한 제한은 폐지되었다.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다. 귀휴의 건수가 전체적으로 매우 적은 현실에서 이에 더하여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귀휴를 비교적 단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휴건수도 적은데다가 단기귀휴를 중심으로 귀휴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귀휴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평가항목은 행형법 제44조 제3항이 규정한 바, “연중 10일 이내”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귀휴의 기간은 최소한 5일 이상이어야 하며 7일 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귀휴기간을 산출하여 평가한다.</p> <p>[제출자료] F60. 전년도 1년간 귀휴의 기간 (표)</p>				
귀휴의 허가사유별		1회 귀휴당 평균귀휴기간 (일단위로 소수점첫째자리까지 계산)	귀휴기간별 귀휴인원수 (예 : 3일 3명, 4일 5명 등)	비고
일반귀휴 (행형법 제44조 제3항)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1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2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3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4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가 내지 아목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자목			
특별귀휴(행형법 제44조 제4항)				
전체평균				

### F7.3. 귀휴심사위원회 심사의 적절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3.1. 귀휴심사위 원회의 원회의 구성 구성	귀휴심사위 원회의 구성은 적절한가?	우수(4)	외부위원 3인이 참여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보통(3)	외부위원 2인이 참여하고 있다.	
		미흡(2)	외부위원 1인이 참여하고 있다.	
		시정요함(1)	외부위원의 참여가 없다.	
<p>&lt;해설&gt; 귀휴심사위원회규칙 제2조 제2항은 귀휴심사위원회 위원 8인 중 외부위원을 2인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휴심사위원회는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귀휴허가사항을</p>				

심의하게 되는데, 외부위원의 역할은 구급시설 직원들이 귀휴에 대하여 귀소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교정사고의 우려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귀휴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평가지침에서는 외부위원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지침>

1. 전년도 1년간 외부위원의 위촉현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외부위원 3인 혹은 그 이상이면 “우수”로, 외부위원 2인이면 “보통”으로 평가한다.
2.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외부위원의 실제 활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휴심사부’ 기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제출자료] F61. 전년도 1년간 귀휴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인원 및 직위)

[기록조사] ‘귀휴심사부’ 기록을 검토해 보아 외부위원의 실제 활동여부를 확인해 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3.2. 귀휴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	귀휴심사위원회는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귀휴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b. 귀휴심사위원회 회의 중 외부위원이 참여한 회의가 전체의 50% 이상이다. c. 충분한 정도의 회의시간을 갖고 심사한다. d. 귀휴허가심사조사서에는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충실하게 조사되어 있다. e. 귀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였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귀휴심사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귀휴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귀휴심사위원회규칙 제5조) 외부위원의 참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부위원을 위촉한 취지를 살리려면 외부위원의 참여가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귀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귀휴심사위원회규칙 제5조) 적시에 귀휴를 심사하여 허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귀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기준들과 함께 회의시간이 충분한가 여부, 귀휴허가심사조사서의 기재의 충실성, 회의록작성의 충실성도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와 ‘귀휴허가심사조사서’ 및 ‘귀휴심사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한다. 기록조사는 ‘귀휴허가심사조사서’와 ‘귀휴심사부’를 검토하고, 각 10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샘플 조사하는 방법에 의한다.

- a. 귀휴심사위원회의 회의의 개최빈도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심사가 있어야 한다.
- b. 전년도 1년간 총 귀휴심사위원회 회의건수 대비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참석한 회의건수를 백분율로 계산한다.
- c. 1건당 평균회의시간을 산출하여 1건당 평균회의시간이 15분 이상이어야 충분한 것으로 평가한다. 1건당 회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건당 평균회의시간 = 1년간 회의시간의 총합 ÷ 1년간 총 귀휴심의건수}
- d. ‘귀휴허가심사조사서’에 귀휴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실질적인 귀휴심사가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한다.
- e. ‘귀휴심사부’의 회의록의 기재가 충실한지를 평가한다. 기재의 충실성은 귀휴의 허가 및 불허의 사유와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출자료] F62. 전년도 1년간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별 세부내용 (표)

귀휴심사위원회	회의일시 및 회의시간	참석인원 (외부위원참석 여부 표시)	심의한 귀휴건수	허가한 귀휴건수	비고
제1차					
제2차					

[기록조사]

- d. ‘귀휴허가심사조사서’에서 샘플사례 10건을 선정하여 귀휴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요구하는 심사항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실질적인 귀휴심사가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한다.
- e. ‘귀휴심사부’에서 임의로 10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귀휴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기재가 충실한 것인지를 평가한다.
- a, b, c. ‘귀휴허가심사조사서’와 ‘귀휴심사부’의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3.3.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의견표명 기회	귀휴심사위원회는	우수(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90% 이상이다.	설문조사
	수형자에게 충분하게	보통(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이다.	
	의견표명의 기회를	미흡(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이다.	
	부여하고	시정요함(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50% 미만이다.	

	있는가?			
<p>&lt;해설&gt; 귀휴허가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귀휴의 대상자인 수형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평가항목에서는 귀휴심사위원회의 회의 시 해당 수형자에게 충분한 정도로 의견표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해당수형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해 본다.</p> <p>&lt;평가지침&gt; 귀휴 경험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과 ②를 합한 비율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F35. (귀휴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귀하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귀하에게 의견표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충분히 부여했다고 생각한다          ②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견표명의 기회가 있었다          ③ 의견표명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④ 의견표명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p>				

**F7.4. 기타 개방처우의 활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4.1. 외부통근작업의 활용	외부통근작업을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3개 이상의 외부업체와 외부통근작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b. 1년간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수형자 인원수가 시설 내 전체 수형자 인원수의 10% 이상이다. c. 외부통근자의 선정절차가 공정하다. d. 외부통근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에게 외부사회의 기업체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로 오늘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장려되어야 할 제도 중의 하나이다. 행형법 제35조 제2항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p>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부통근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에게 사회복지의 보다 유용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외부통근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구금시설의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에서 외부통근작업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수형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하여 외부통근자업의 실시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부통근작업자명단’ 및 ‘취업계약서’의 기록조사를 통하여 외부통근자업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a. 구금시설에서 외부의 기업체와 외부통근작업을 위한 취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있는 업체수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b. 전년도 1년간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수형자 인원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전년도 1년간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수형자 인원 ÷ 전년도 12.31 현재 수형자 수 × 100}

c. 외부통근작업의 수형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자는 선정심의회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검토해 봄으로써 외부통근작업운영규칙 제4조가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 수형자가 선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d. 취업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F63. 전년도 1년간 외부통근기업체 현황 및 작업내역  
 F64. 전년도 1년간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수형자 인원  
 (※ 외부통근기업체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통계작성)  
 (※ 인원은 전년도 1년 동안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수형자 수를 말한다)

[기록조사]

a. d. ‘취업계약서’를 검토하여 확인한다.  
 b. ‘외부통근작업자명단’(전년도)을 확인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면담조사]

최근 3개월 이내에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형자 3인을 선정하여 다음을 질문한다.

- 1)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절차와 공정성
- 2) 외부통근작업장의 근로조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7.4.2. 가족만남의 집의 활용	가족만남의 집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우수(4)	1년간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수형자가 제2급 이상 수형자의 30% 이상이다.	제출자료
		보통(3)	1년간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수형자가	

있는가?		제2급 이상 수형자의 20% 이상 30% 미만이다.
	미흡(2)	1년간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수형자가 제2급 이상 수형자의 10% 이상 20% 미만이다.
	시정요함(1)	1년간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수형자가 제2급 이상 수형자의 10% 미만이거나 아예 이용실적이 없다.

<해설> 가족만남의 집은 귀휴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거나 자격요건이 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귀휴를 갈 수 없는 수형자에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 법무부예규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제3조 제1호는 가족만남의 집을 “행형구역 내에 수용자와 그 가족이 숙식할 수 있도록 가재도구가 갖추어진 주택 형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그 대상자를 “1.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1/3(무기형은 7년)을 경과하고 누진계급 2급 이상인자, 2.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 기타 수용처우 및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에서는 타 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구금시설은 가족만남의 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평가항목은 가족만남의 집의 활용빈도를 측정해 본다.

<평가지침> 가족만남의 집의 활용빈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

{전년도 1년간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수 ÷ 전년도 12.31. 현재 시설 내 제2급 이상 수형자 수 × 100}

[제출자료]

F65. 전년도 1년간 가족만남의 집 활용실적(※ 누진계급별로 인원수를 기재함)

## F8.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 F8.1. 수용자 및 타인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8.1.1. 개인정보의 수집과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개인정보를 적정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수집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그의 동의를 받는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b.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그 정보의 수집목적과 용도를 알려준다.	
			c. 수용자의 동의 없이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게 정보취득의 목적과 용도 및 취득한 정보의 내용을 즉시 알려준다.	
			d.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정보취득의 목적, 용도를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준다.	
			e. 수용자 이외의 자의 개인정보를 수용자나 타인, 타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게 정보취득의 목적과 용도 및 취득한 정보의 내용을 즉시 알려준다.	
			탁월(5)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개인이 외부의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정보(수집)권 내지 알권리라고 한다면, 이와는 반대되는 측면에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늘날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를 보통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지배권이라 부르며, 여기에서는 자기정보통제권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제17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근거를 둔 기본권으로서, 요즘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하여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권리로 부각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 그 공개여부 및 이용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정보통제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구금시설의 수용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물론 자기정보통제권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행형법에는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및 그 제한에 관하여 전혀 규정이 없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p>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헌법적 기본권인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구금시설에서는 처우의 필요에 의하여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이 수집하게 된다. 수용자 개인별로 작성되는 수용자 신분카드가 대표적인 것이며, 그 외에도 재소자건강진단부라든가, 귀휴허가심사조사서, 정보사항처리부 등이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들이다. 그런데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개인적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가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수집, 관리되기is커녕, 매우 비체계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수집, 관리되고 있으며,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직원이나 수용자에게 노출되는 일도 발생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구금시설의 직원이 작업장에 출역하는 수용자 개인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있는 수번, 성명, 죄명, 생년월일, 형기, 만기, 주소, 가족관계, 학력, 행장급수, 종교, 출역일자, 입소일자, 범죄개요, 참고사항 등의 항목에 개인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집필보조수용자로 하여금 이를 기록하게 한 진정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적 근거 없이 업무수행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이를 타 수용자가 취득,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하고, 해당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신상명세서의 폐기를,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는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수집, 관리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04.7.14.자, 03진인1424, 5104 병합결정).

자기정보통제권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성된다. 첫째, 개인은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제공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둘째,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나 타 기관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 개인은 그 정보의 취득사실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셋째, 자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이나 문서의 열람을 청구하고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타인이나 타 기관은 개인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수용자도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을 향유하는 주체이다. 물론 구금시설은 행형목적 상 필요한 범위에서는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개방처우나 귀휴, 가석방 등 교정처우에 관한 결정을 위해서는 수용자 개인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 등 타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수용자와 타인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점은 구금시설이 행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행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평가항목은 헌법적, 인권법적 관점에서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방식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방식에 의해야 하며, 이 때 구금시설직원은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지, 그 정보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수용자에게 알려주고 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난동을 부리다 실신한 수용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처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수

집된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주체인 수용자에게 구금시설에서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며 그 목적과 용도는 무엇인가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은 무의미해 지기 때문이다. 셋째, 구금시설에서는 수요자의 개인정보를 수용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타 기관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수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며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넷째, 구금시설이 수용자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수용자의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모르는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구금시설에서는 해당 정보주체인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취득하였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및 타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소 모호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에게 고유한 연관성을 가지는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 내지 물질적 생활관계에 관한 개별적인 정보를 통칭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용모와 체격 및 건강관련사항, 종교, 성격, 아이큐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물론, 개인이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예를 들어 가족관계)를 포함한다. 그 정보는 현재의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상관없다. 정보의 수집시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a. 구금시설직원은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수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구두로 동의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라도 상관없다. 수용초기 수용자신분카드를 작성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용 도중에 처우의 필요에 의하여 - 예를 들어 귀휴심사를 위한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수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b. 구금시설직원이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항상 그 정보의 수집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보의 용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a.와 마찬가지로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경우에 항상 필요하다.  
c. 수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정보의 취득목적과 용도 및 취득한 정보의 내용이 무언인지를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즉시란 해당수용자에게 정보수집에 관하여 알려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난동을 부리다 실신한 수용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경우 수용자가 정신을 차리면 곧바로 정보수집의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d. 수용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정보의 수집목적과 용도 및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은 다른 수용자 혹은 해당수용자의 가족, 의사 등 다양할 수 있다.  
e. 구금시설이 수용자 이외의 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정보취득사실과 취득목적 그리고 취득한 정보의 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인 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형적인 예는 수용자로부터 그의 부모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이다. 이 때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부모에게 수집한 정보의 내용과 목적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제출자료로 구금시설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 기

록조사와 수용자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기록조사는 면담조사의 보조용으로 활용하며, 면담조사에서는 면담대상 수용자 모두가 긍정하는 대답을 할 때 세부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F66.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하여 다음 항목을 서술

- ① 수용자의 신분카드를 작성할 때, 그리고 기타 수용자로부터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용자에게 정보의 수집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수용자의 동의를 받는지 여부
- ② 수용자의 동의 없이 그로부터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우 정보수집의 목적과 용도 및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주는지 여부
- ③ 타인(다른 수용자 포함)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수집목적과 용도 및 수집된 정보의 내용을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주는지 여부
- ④ 수용자로부터 외부인(예를 들어 수용자의 가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해당 외부인에게 정보취득의 목적과 용도 및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알려주는지 여부

[기록조사]

면담대상 수용자 3인에 관한 수용자신분카드를 검토하여 수용자의 개인정보의 항목내용들과 수집경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면담조사에 활용한다.

[면담조사]

1.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수용자면담조사 대상자 3인을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고, 아래 평가항목의 수용자면담조사에도 적용한다.
  - 1) 교도소의 경우 수형자 2인, 미결수용자 1인으로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 미결수용자 2인, 수형자 1인으로 선정한다.
  - 2) 수형자는 수용기간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소위 문제수용자 1인과 외부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수용자 1인으로 선정한다. 미결수용자는 수용기간 3개월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2. 수용자 3인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설명해야 함).
  - 1) 수용초기 신분카드를 작성할 때 구금시설 직원이 어떠한 목적에서 신분카드를 작성하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는가?
  - 2) 신분카드를 작성하는 외에 수용자의 개인적 정보를 구금시설에서 파악하는 자료나 기록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그 기록이나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
  - 3) 면담자는 신분카드에 기재된 수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수용자의 인지여부와 언제 인지하였는가를 질문해 본다.
  - 4) 가족에 관한 정보를 구금시설에 제공한 후에, 구금시설에서 당신의 가족에게 정보취득 사실을 알려주었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8.1.2. 개인정보의 엄격한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세부지표	a.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다른 수용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b. 수용자의 질병 등 건강관련정보는 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현장조사

관리 및 공개금지	공개하고 있지 않은가		른 수용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c. 수용자의 종교나 신념, 사상에 관한 정보는 다른 수용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d. 수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의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준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의 수집과정에서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한다.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서는 수집한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수집목적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구금시설직원이 수용자로부터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다른 수용자나 직원이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강조된 사항이다 (2004.7.14.자, 03진인1424, 5104 병합결정). 그리고 개인정보 중에서도 종교나 사상에 관한 정보와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특별히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와 같은 정보에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행형법 제182조는 종교나 신념, 그리고 의료처우에 관한 개인정보는 시설 내에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거실 밖 표시판에 수용자의 종교라든가 신념, 건강, 질병에 대하여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나 타 기관에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정보제공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금시설에도 적용된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수용자면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면담조사에서는 면담대상 수용자 모두가 긍정하는 대답을 할 때 세부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a. 수용자의 신분카드를 작성하거나 기타 수용자로부터 그 자신 또는 타인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다른 수용자나 그 개인정보의 수집에 업무관련이 없는 다른 직원이 관여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처럼

다른 수용자나 직원이 해당 수용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여 대답을 들어 이를 기록하는 경우는 물론, 해당 수용자가 개인정보를 말하는 때에 옆에 배석하여 그 정보를 - 엿듣겠다는 의도와 상관없이 -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 세부지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 시 의사와 의료관계직원 외에 다른 수용자가 진료를 받는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들을 수 없는 위치에 대기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본 세부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b.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질병 등 건강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가 알 수 있게끔 공개하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병사거실 밖에 부착된 현황판에 수용자의 질병상태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세부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수용자들이 사동복도를 지나면서 특정 수용자의 질병 관련 개인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직원이 특정 수용자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다른 수용자에게 공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혼거실의 경우 원만한 거실생활을 위하여 한 수용자의 질병상태에 관하여 다른 수용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c.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종교나 신념, 사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가 알 수 있게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거실 밖에 부착된 현황판에 수용자의 종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 세부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 외에도 직원이 특정 수용자의 종교나 사상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다른 수용자에게 공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d. 구금시설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그리고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구금시설 외의 타인이나 타 기관에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우 그 정보제공사실을 즉시 정보주체인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제출자료]

F67. 수용자의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항목을 서술

- ① 수용자 신분카드를 작성할 때 작성담당자, 작성장소, 작성방식
- ② 전년도 1년간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의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한 전체건수 및 제공대상기관별 건수
- ③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의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수용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알려주는지 여부

#### [면담조사]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선정기준은 F8.1.1. 참조)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신분카드를 작성할 때 누가 질문하고 기록하였는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작성하였으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는가?
- 2) 신분카드 작성 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직원에게 말하게 되는 경우 - 예를 들어, 귀후나 '가족만남의 집' 이용에 관련하여 심사를 위한 경우 등 -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하였는가, 다른 수용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가?
- 3) 구금시설에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해 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 4) 구금시설 직원이 수용자들에게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예: 질병이나 사상, 과거 경력 등)를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가?

<p>[현장조사]</p> <p>a. 의무과 진료실을 방문하여 진료현장에서 다른 수용자가 의료직원과 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통해 진료받는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p> <p>b. 병사 거실을 방문하여 거실 밖에 부착된 현황표의 기재사항에 병명이나 기타 수용자의 건강관련정보가 공개되는지를 확인한다.</p> <p>c. 종교거실과 일반사동 중 1곳을 방문하여 거실 밖에 부착된 현황표의 기재사항에 종교나 사상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지를 평가한다.</p>
---

### F8.2. 수용자의 정보열람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F8.2.1. 수용자의 정보기록 열람권 보장	수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가?	탁월(5)	①의 응답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의 응답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보통(3)	①의 응답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의 응답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의 응답비율이 30% 미만	

<해설>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자신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정보를 담은 기록이나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정보의 열람청구권과 정정청구권은 자기정보통제권의 핵심적인 권리내용이 된다. 따라서 수용자는 구금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 중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담은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을 열람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정보처리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자기정보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구금시설에서 보유한 수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가는 의문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개인정보파일대장”의 범위 안에서 정보열람권을 가지게 되는데, 동법 제6조 제2항과 제8조는 형의 집행, 교정처분 및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핵심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자기정보열람권은 헌법적 기본권의 하나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훨씬 전인 1991년에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었던 자가 자신의 형사소송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된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등 자신에 관한 형사소송기록의 열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1.5.13 선고, 90헌마133). 수용자의 경우에도 구금시설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열람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열람하는 정보가 수용자 스스로에 관한 정보라면 그 정보열람이 결코 수용자의 재사회화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평가항목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담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①의 비율로 평가한다.

[설문조사]

F36. 귀하는 자신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정보(성명, 직업, 주소, 건강과 의료, 종교, 가족관계 등)를 담고 있는 구금시설의 기록(신분카드 내지 신분장파일, 재소자건강진단기록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 ① 언제든지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 ②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지만 열람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 ③ 신청하여도 열람할 수 없다.

## G. 작업, 직업훈련, 교육

### G1. 작업

#### G1.1. 작업 미지정인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1.1.1. 작업 미지정인원	작업이 가능하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인원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	탁월(5)	2%미만	제출자료
		우수(4)	2%이상 5% 미만	
		보통(3)	5%이상 10%미만	
		미흡(2)	10%이상 20%미만	
		시정요함(1)	20% 이상	

<해설> 작업은 모든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정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자나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징벌 중에 있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지만 기결수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작업에 참여해야 책임접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결수들이 나태하여 작업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가지침> [취업이 가능하나 불 취업한 인원(미 지정인원) ÷ (수형자 총인원 - 취업불가능한 인원)] × 100

1. 미결수는 제외하고 기결수, 즉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미지정인원을 파악한다.
2. 먼저 수형자 총인원을 파악하고 그 중 작업이 불가능한 인원(평가시점에서 환자, 고령자, 임산부, 징벌집행 중인자 등)을 빼면 작업이 가능한 인원이 된다. 작업이 가능한 인원 중에서 취업하지 않은 인원을 빼면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나온다. 여기서 작업이 가능하나 작업종목이나 작업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해서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을 미지정인원으로 보고 취업가능한 인원 중 미지정인원의 비율을 구한다.
3. 취업불가능한 인원과 취업가능인원을 합하면 수형자 총인원이 되어야 하고, 취업인원과 미지정인원을 합하면 취업가능인원의 수와 같아야 한다.

[제출자료]

G1. 수형자, 취업불가능인원, 취업가능인원 수

(평가자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항의 인원을 제시)

수형자총인원	
취업불가능한인원(환자, 고령자, 임산부,	

징별집행 중)		
취업가능인원	취업인원	
	미지정인원	
	합계	

**G1.2. 작업유형과 작업조건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G1.2.1. 작업결정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가?	작업지정에 있어 본인의 적성이나 선호가 얼마나 반영되는가?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설문조사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p>&lt;해설&gt; 작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수용자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행형법 제35조는 교도작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자 본인의 의사는 빠져 있으며 실제로도 거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수용자의 출소 후 계획과 희망직업, 의사를 최대한 감안하여 작업을 지정하는 것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최저기준규칙 제71조 제6항은 “수형자는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는 노동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때라는 전제에 바탕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G1. 귀하가 작업을 배정받을 때 본인의 적성이나 선호가 어느 정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②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p> <p>③ 어느 정도 고려되었던 것 같다      ④ 충분히 고려되었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G1.2.2. 사회복귀 후	작업이 출소 후에 어느 정도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이상 50% 미만	설문조사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도움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90% 이상
<p>&lt;해설&gt; 교도소에서의 노동은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 적응과 재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실제 사회에 돌아간 후 얼마나 효용성 있게 이용될 수 있는 작업경험을 쌓을 수 있느냐는 교도작업의 기능과 효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최저기준규칙 제71조제4항은 “가능한 한 작업은 석방 후 정직하게 생계비를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도작업이 출소 후 사회복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G2. 귀하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 경험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1.2.3. 작업에 관련된 교육내용의 충실도	작업관련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교육이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이상 50% 미만	
	실제로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도움이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되는가?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90% 이상	
<p>&lt;해설&gt; 계호근무규칙 제172조는 신규취업자에 대해 작업과정, 작업방법, 기계·기구·제품·재료의 취급요령 및 작업규율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177조는 “위험성이 있는 작업은 시작하기 전에 위험물취급자가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수용자에게 안전수칙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업과 관련된 교육이 명목상에 그치고 있는 지 아니면 실제로 작업수형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G4. 작업 관련 교육의 내용(안전교육 포함)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p> <p>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p> <p>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p> <p>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p> <p>④ 많이 도움이 된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1.2.4. 작업변경 허가 정도	지정된 작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보통(3)	정당한 이유로 작업변경을 원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거의 다 허용을 해준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미흡(2)	정당한 이유로 작업변경을 원하는 경우라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송이나 징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시정요함(1)	정당한 이유로 작업변경을 원하는 경우라도 전혀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송이나 징벌의 사유가 된다.	
<p>&lt;해설&gt;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9조를 보면 제 4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전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우 또는 작업형편에 의하여 전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4급 수형자에 한해서 전업이 원칙적으로 불허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업과 관련된 유사한 규정으로 행형법시행령 120조에 의하면 신청에 의해 취업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신청에 의해 작업을 하는 자에게는 작업중지나 작업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신청이 아니라 의무에 의해 작업을 하는 수용자들은 전혀 작업변경(전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지를 밝히는 것이 이 지표의 의도이다.</p> <p>&lt;평가지침&gt;</p> <p>제출자료와 수용자면담을 통해 작업변경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정당한 이유란 다른 직종에 더 기술이 있다거나, 다른 직종의 기술을 익히고 싶다거나 등의 이유로, 단지 하기 싫어서거나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어서 등 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이유가 아니라 작업과 관련된 기술과 적성,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무리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p> <p>[제출자료]</p> <p>G2. 전년도 작업변경 요청사례별 사유와 허용여부, 그리고 조치내용(변경, 이송, 징벌등)</p> <p>[수용자면담]</p> <p>1. 작업거부나 변경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지(본인과 주위의 경험 모두)</p>				

- 2. 요청해본 적이 있으면 그 사유
- 3. 바꾸고 싶으나 전업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 4. 작업변경을 요청했다가 이송이나 징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G1.3. 작업 중 상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1.3.1. 작업 중 상해발생 여부	작업 중 상해의 빈도는 얼마나 되나?	우수(4)	평균값 3.5이상	설문조사
		보통(3)	평균값 2.5이상 3.5미만	
		미흡(2)	평균값 1.5이상 2.5미만	
		시정요함(1)	평균값 1.5미만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74조제2항은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로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직업병 등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 사고통계에 잡히는 작업 중 상해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상해인 데 반해 실제로 작업 중에 일어나는 많은 사소한 상해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그냥 묻혀질 것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실제로 발생하는 작업관련 상해의 빈도를 경미한 유형을 포함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제 수용자와의 면담에서 작업과정에서 본드 등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눈 충혈 등 안과질환, 그리고 먼지흡입 등으로 인한 기관지 계통의 통증 등이 언급되었으나 작업 중 상해에 대한 제출자료 상에는 이러한 유형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볼 때, 드러나지 않지만 경미하거나 약간 심각한(mild to moderate) 작업 중 상해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평가지침> 작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해의 발생빈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점수의 합계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 때 기타 란에 기입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통계분석시 7개 항목을 더한 후 7로 나누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든다(새로운 변수 = G6+ G7+ G8+ G9+ G10+ G11+ G12÷7). 이것은 7개 상해유형의 평균값이 되는데, 각 사례별 평균값의 평균값(mean)을 구해서 평가를 한다. 이 값은 1점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평균값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평균값 1.5미만=시정요함  
 평균값 1.5이상-2.5미만=미흡  
 평균값 2.5이상-3.5미만=보통  
 평균값 3.5이상=우수

[설문조사]  
 ※ 다음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를 열거한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지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

항 목	의 건			
	매우자주 일어난다(4)	가끔 일어난다(3)	거의일어나지 않는다(2)	전혀 안 일어난다(1)
G6. 종이나 칼 등에 베이거나 찰과상				
G7. 두통이나 관절통				
G8. 습진 등 피부병				
G9. 안과질환(눈 충혈, 눈이 부시거나 따가움)				
G10. 호흡곤란				
G11. 허리나 목 디스크				
G12. 골절이나 절단				
G13.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세요)				

G1.4. 작업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1.4.1. 작업량의 적정성	일일 작업량은 적당한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90% 이상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71조에 따르면 작업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하루의 작업일에 활동적으로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작업량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도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작업량이 너무 적은 것도 개인의 활동성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절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작업량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먼저 교도작업 규정(예규작업 제601호) 제13조에 따르면 취업수용자의 작업성적, 작업상여금 계산비율 및 시간 등을 참고하여 작업을 부과되 개인별 일, 월간 책임량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71조의 3항은 “통상의 작업일에 수행자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작업하게 하기 위해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량이 부과되더라도 통상의 작업시간에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작업량이 주어지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징벌이나 기타 처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부당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p>				

<평가지침>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설문조사]

G5. 귀하가 출역하는 작업장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하루 작업량이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작업량이 지나치게 많다
- ② 작업량이 많은 편이다
- ③ 작업량이 적당한 편이다
- ④ 작업량이 적은 편이다

**G1.5. 작업상여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1.5.1. 작업상여금의 수준: 직영작업	직영작업의 상여금은 평균 얼마나 되나?	탁월(5)	최저임금의 90%이상	제출자료
		우수(4)	최저임금의 70%이상 90%미만	
		보통(3)	최저임금의 50%이상 70%미만	
		미흡(2)	최저임금의 30%이상 50%미만	
		시정요함(1)	최저임금의 30%미만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76조 제1항은 수용자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체계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일환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투여된 노동에 대한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도작업은 작업상여금이라는 형태의 “은전적 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형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도작업 규정에 따르면 작업의 종류에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도금작업, 관용작업 등이 있다. 수용자작업상여금 규정에 따른 작업상여금의 일일 액수는 최저 500원에서 최고 4,000원 사이에서 누진계급에 따라, 그리고 작업의 종류별로, 그리고 작업의 특성 및 기술에 따라 달리 책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한달에 25일을 일한다고 할 때, 최저 12,500원에서 100,00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달에 이 정도의 액수는 상당한 기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생활을 위한 기반으로서는 많이 모자라는 액수로 보인다. 행형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작업상여금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할 때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작업상여금이 출소 후 거쳐마련이나 취업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즉 사회정착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실사회의 화폐가치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70조에 따라 상여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 내에서 개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데, 수용자면담결과 1인당 월 평균 생필품구입비용(영치금) 사용액수가 10만원 정도임을</p>				

감안할 때, 상여금의 현실화는 여러 측면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래 전에 만들어져 사용되어 온 일액표를 사회전체의 임금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때 상여금 책정은 “노동의 투여”라는 측면에서의 일반사회 노동자와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평가지침>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에서부터 그 다음해 8월까지이다. 2004년 9월부터 05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2,840원, 일급 22,720원, 월급 641,840원이다. 최저임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제출자료가 급수별로 제출되므로, 이들의 평균을 구해서 평가한다.

[제출자료] G3. 직영작업 유형별, 급수별 월 평균 상여금 액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타월(5)	최저임금의 90%이상	
G1.5.2 작업상여 금의 수준: 평균 관용작업 얼마나 되나?	관용작업 의 상여금은 평균 얼마나 되나?	우수(4)	최저임금의 70%이상 90%미만	제출자료
		보통(3)	최저임금의 50%이상 70%미만	
		미흡(2)	최저임금의 30%이상 50%미만	
		시정요함(1)	최저임금의 30%미만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76조 제1항은 수용자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체계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일환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투여된 노동에 대한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도작업은 작업상여금이라는 형태의 “은전적 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형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도작업 규정에 따르면 작업의 종류에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도금작업, 관용작업 등이 있다. 수용자작업상여금 규정에 따른 작업상여금의 일일 액수는 최저 500원에서 최고 4,000원 사이에서 누진계급에 따라, 그리고 작업의 종류별로, 그리고 작업의 특성 및 기술에 따라 달리 책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한달에 25일을 일한다고 할 때, 최저 12,500원에서 100,00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달에 이 정도의 액수는 상당한 기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생활을 위한 기반으로서는 많이 모자라는 액수로 보여진다. 행형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작업상여금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할 때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작업상여금이 출소후 거처마련이나 취업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즉 사회정착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실사회의 화폐가치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수형자분류처우</p>				

규칙 제70조에 따라 상여금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내에서 개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수용자면담결과 1인당 월 평균 생필품구입비용(영치금) 사용액수가 1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상여금의 현실화는 여러 측면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래 전에 만들어져 사용되어 온 일액표를 사회전체의 임금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때 상여금 책정은 “노동의 투여”라는 측면에서의 일반사회 노동자와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평가지침>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에서부터 그 다음해 8월까지이다. 2004년 9월부터 05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2,840원, 일급 22,720원, 월급 641,840원이다. 최저임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제출자료가 급수별(1급-4급)로 제출되므로, 이들의 평균을 구해서 평가한다.

[제출자료]  
G4. 관용작업 유형별, 급수별 월 평균 상여금 액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1.5.3. 작업상여금의 수준: 위탁작업	위탁작업의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나?	탁월(5)	최저임금의 90%이상	제출자료
		우수(4)	최저임금의 70%이상 90%미만	
		보통(3)	최저임금의 50%이상 70%미만	
		미흡(2)	최저임금의 30%이상 50%미만	
		시정요함(1)	최저임금의 30%미만	
<p>&lt;해설&gt; 위탁작업에 출역하는 수용자의 월 평균 지급액의 수준을 평가한다. 위탁작업의 공임에 대한 규정은 위탁작업운영지침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탁작업 공임책정은… 사회임금상승 등을 참작하여 동일 또는 유사직종과 비교 적절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업자 1인 1일 평균 공임액은 최저기준치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책정된 일반사회에서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 시급2,840원(일급 22,720원, 월급 641,840원)이다. 최저기준규칙 제76조 제1항은 수용자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체계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작업상여금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할 때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작업상여금이 출소 후 거처 마련이나 취업을 위한 기반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즉 사회정착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실사회의 화폐가치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70조에 따라 상여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내에서 개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수용자면담결과 1인당 월 평균 생필품구입비용(영치금) 사용액수가 10</p>				

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상여금의 현실화는 여러 측면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래 전에 만들어져 사용되어 온 일액표를 사회전체의 임금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때 상여금 책정은 “노동의 투여”라는 측면에서의 일반사회 노동자와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평가지침>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에서부터 그 다음해 8월까지이다. 2004년 9월부터 05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2,840원, 일급 22,720원, 월급 641,840원이다. 최저임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제출자료가 급수별(1급-4급까지)로 제출되므로, 이들의 평균을 구해서 평가한다.

[제출자료] G5. 위탁작업 유형별 급수별 월 평균 상여금 액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1.5.4. 작업상여 금의 수준: 외부통근 작업	외부통근 작업의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나?	탁월(5)	최저임금의 90%이상	제출자료
		우수(4)	최저임금의 70%이상 90%미만	
		보통(3)	최저임금의 50%이상 70%미만	
		미흡(2)	최저임금의 30%이상 50%미만	
		시정요함(1)	최저임금의 30%미만	
<p>&lt;해설&gt; 외통작업에 출역하는 수용자의 월 평균 지급액의 수준을 평가한다. 최저기준규칙 제76조 제1항은 수용자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체계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일환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투여된 노동에 대한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통근작업 운영규칙 제28조(공임의 결정)은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기술수준, 근로자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실제지급임금 등을 감안하여 공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책정된 일반사회에서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 시급2,840원(일급 22,720원, 월급 641,840원)이다.</p> <p>&lt;평가지침&gt;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에서부터 그 다음해 8월까지이다. 2004년 9월부터 05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2,840원, 일급 22,720원, 월급 641,840원이다. 최저임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제출자료가 급수별(1급-4급)로 제출되므로, 이들의 평균을 구해서 평가한다.</p> <p>[제출자료] G6. 외부통근작업 유형별, 급수별 월 평균 상여금 액수</p>				

--

### G1.6. 휴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1.6.1. 휴일허용 여부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수용자들에게 휴일을 허용하는가?	탁월(5)	보조인력이나 대체인력을 투입해 누구든지 1주일에 1일은 작업을 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보통(3)	보조인력이나 대체인력은 없으나 누구든지 순환적으로 1주일에 1일은 쉴 수 있게 팀을 운영한다.	
		시정요함(1)	1주일에 1일도 전혀 쉬지 못한다.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75조 제2항에서는 작업을 하는 수용자들이 주당 하루의 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던 간에 주당 1일의 휴일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형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경우에 적어도 1주일 중 일요일은 작업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항에서 취사나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고 함으로써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작업종류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수용자면담에서 특히 취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휴일이 없을 뿐 아니라 기상시간이나 취침시간, 식사시간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작업의 성격이 하루라도 그 일이 행해지지 않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작업을 놓을 수는 없을 지라도, 보조 작업자나 대체작업자를 투입하여 순환적으로라도 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한다.

[제출자료]

G7.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정원과 현원

G8.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수용자들의 작업시간표

G9.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여부(현원이 모두 동시에 작업에 참여하는 지 아니면 순환적으로 휴업을 하는 인원이 있는 지의 여부)

G10.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수용자들의 1주일에 1일 휴무 엄수여부

G11.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수용자들에게 1주일에 1일 휴무를 허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

## G2. 직업훈련

### G2.1. 직업훈련의 유형과 효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2.1.1. 직업훈련 유형	시행중인 직업훈련 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탁월(5)	7개 이상의 직종이 시행됨	제출자료
		우수(4)	5개 이상 7개 미만의 직종이 시행됨	
		보통(3)	3개 이상 5개 미만의 직종이 시행됨	
		미흡(2)	1개 이상 3개 미만의 직종이 시행됨	
		시정요함(1)	직업훈련과정이 없음	
<p>&lt;해설&gt; 수용자직업훈련규정 제3조는 직업훈련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의 각종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 또는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종류로 정예직업훈련, 지원직업훈련, 외부출장 직업훈련, 작업병행 직업훈련, 교육병행직업훈련으로 대별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직종을 보면 용접, 가구·창호, 건축시공, 타일, 미장, 자동차정비, 양복 등 전통적인 직종과 정보기기운용, 컴퓨터 그래픽, PC 정비사 등 신종직종이 있다. 물론 직종이 많다는 것이 직업훈련이 효과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직종의 다양성은 직업훈련에 대한 소 당국의 관심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p> <p>&lt;평가지침&gt; 직업훈련 직종에 대한 제출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p> <p>[제출자료] G12. 직업훈련 직종과 직종별 대상인원</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2.1.2. 직업훈련 종목 결정에 본인의사 반영정도	직업훈련 종목을 결정하는데 본인의 적성이나 선호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90% 이상	
<p>&lt;해설&gt; 직업훈련 종목을 결정함에 있어 수용자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지에 대해 평가한다. 수용자직업훈련 규정 제 7조에는 직업훈련생 선발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기가 직업훈련 이수를 할 만큼 남아있고 기본소양이 갖춰져 있고 출소 후 관련</p>				

직중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중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직업훈련은 개인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다는 부분이 이 평가 지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점이다.

<평가지침>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

[설문조사]

G14. 직업훈련을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본인의 적성이나 선호가 어느 정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②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③ 어느 정도 고려되었던 것 같다  
 ④ 충분히 고려되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2.1.3. 사회복귀 후 도움정도	직업훈련 이 출소 후 얼마나 도움이 될것이라 고 생각하는 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90% 이상	

<해설> 교도소에서의 직업훈련은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적응과 재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저기준 규칙 제71조의 작업에 관한 규정을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제71조 제4항은 제공되는 작업이 석방 후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 사회에 돌아간 후 얼마나 효용성 있게 이용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냐는 교도소에서의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설문조사]

G15. 귀하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훈련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 ④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G2.2. 직업훈련교사의 확보여부와 전문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2.2.1 직업훈련 을 위한 교사 확보	직업훈련 교사 확보율은 얼마나 되는가?	탁월(5)	100% 이상	제출자료
		우수(4)	90% 이상 100% 미만	
		보통(3)	70% 이상 90% 미만	
		미흡(2)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50% 미만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49조제2항은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훈련 강사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교도관직무 규칙 제83조는 직업훈련교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자들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4조는 직업훈련교사로 하여금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과목별 교안을 작성하며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8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직업훈련 직종별 교사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서 교사가 없거나 한 교사가 복수의 직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직종별 교사확보가 중요하다.</p> <p>&lt;평가지침&gt; (전체 직업훈련 교사의 수 ÷ 전체 직업훈련 종류의 수) × 100 시행중인 직업훈련의 유형과 교사확보여부를 파악하여 평가한다.</p> <p>[제출자료] G13. 직업훈련 직종별 인원과 직종별 교사의 수</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2.2.2. 직업훈련 담당 행정직원 확보여부	직업훈련 담당 행정직원 이 확보되어 있는가?	보통(3)	직업훈련 교사와는 별도로 직업훈련 담당 행정직원이 확보되어 있다	제출자료
		시정요함(1)	직업훈련교사가 직업훈련관련 행정도 담당하고 있다	

<해설> 교도관직무규칙 제83조는 직업훈련교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자들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4조는 직업훈련교사로 하여금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과목별 교안을 작성하며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87조). 수용자직업훈련규정 제40조는 소장은 직업훈련 행정을 담당할 직원을 배치해야 하며 직업훈련생이 200명 이상이면 2인 이상의 직업훈련 행정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업훈련교사에게 행정을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은 직업훈련교사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준비와 교육에 집중을 하게 하면서 관련 행정업무는 행정담당 직원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업무의 효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침> 직업훈련과 관련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직업훈련담당 직원의 확보여부를 제출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직업훈련교사가 직업훈련과 관계된 교육에서부터 사무처리, 행정업무까지 다 수행하는 지 아니면 직업훈련 교사는 교육과 관련된 교재개발과 강의 등에 집중하고 행정담당 직원은 직업훈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G14. 직업훈련 전담 행정직원의 수(직업훈련 교사와는 별도로 직업훈련 관련 행정업무 담당 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2.2.3.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강사의 비율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인력은 충분한 전문성을 가졌는가?	탁월(5)	90%이상인 전문자격증을 소지	제출자료
		우수(4)	70%이상 90%미만이 전문자격증을 소지	
		보통(3)	50%이상 70%미만이 전문자격증을 소지	
		미흡(2)	30%이상 50%미만이 전문자격증을 소지	
		시정요함(1)	30%미만이 전문자격증을 소지	
<p>&lt;해설&gt; 직업훈련을 지도하는 강사확보에 있어 전문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냐는 교육훈련의 내용의 질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p> <p>교도관직무규칙 제88조에 따르면 직업훈련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 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훈련직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강사에 위촉하거나 시간강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직업훈련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교사나 강사의 전문성은 효과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 항목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p>				

<평가지침>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 ÷ 전체 직업훈련 교, 강사의 수) × 100  
 직업훈련 강사의 전체 인원(자체강사와 외부강사, full time, part-time 교사 합해서)의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평가의 기준은 전체교사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로 평가한다. 1회에 한하여 초빙된 강사는 제외한다. 적어도 6개월 이상 훈련을 담당하는 외부인을 외부강사로 본다.

[제출자료]

G15. 전체 직업훈련 교사와 강사의 수

G16. 직업훈련 교사와 강사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

G17. 자격증의 내용

### G3. 교육(신입자교육, 정신교육, 학과교육 등)

#### G3.1. 신입자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3.1.1. 신입자교육의 공식성	신입자교육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가?	세부지표	a. 별도의 신입자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다. b. 신입수용자가 들어온 후 3일 이내에 실시한다. c. 교육시간은 평균 세 시간 이상이다. d. 교육은 신입자교육 담당교도관이 수행한다. e. 비디오나 차트, 유인물 등 보조 자료를 사용 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수용자정신교육지침(예규교화 제581호) 제19조는 “구금으로 인한 초조와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고 명랑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신입자 교육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는 입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7시간 범위 내에 미결신입자와 기결신입자를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22조는 교육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신입자교육은 구금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규율과 규칙의 고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신입자교육의 공식성이란 신입자가 교도소에 입소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시간에 별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법률이 정한대로 진지하게 진행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a. 별도의 신입자교육장이 있다는 것은 사무실이나 관구실 등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신입자교육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b. 3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것은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다. c.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범위 내라고 하여 최대한의 시간을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을 교육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한 것이 된다. 하지만 신입자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다루어야 할 내용을 다 다루려면 적어도 최대한으로 주어진 시간의 반 정도는 투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무리 없을 것이다. d. 담당교도관이 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동담당 교도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입자교육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별도로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e.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자료를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평가한다. 다만 거실에 비치된 책자로 대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입자교육 상황에 대한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수용자면담과정에 이 부분을 질문한다. 수용자는 구금된 지 1개월이 안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p>				

<p>[제출자료] G18. 신입자 교육의 담당자, 장소, 교육시간, 교육내용, 시청각자료 사용 등에 대한 자료</p> <p>[면담조사] 신입자 교육의 담당자, 장소, 교육시간, 교육내용, 시청각자료 사용 등에 대해 질문한다.</p>
---

**G3.2 정신교육의 효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3.2.1. 정신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정신교육의 실제적 효과에 대해 수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90% 이상	
<p>&lt;해설&gt; 수용자정신교육지침(예규교화 제581호)은 수용자에 대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심신단련을 도모하는 한편 수용생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신교육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에 대한 정신교육은 수용자정신교육과 생활지도 교육으로 분류된다(동 지침 제3조). 이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수용자정신교육이다. 동 지침 제5조에 따르면 정신교육은 매년 1회 2주 동안 실시되는데 학과교육이나 직업훈련, 또 외부통근이나 외부출장 직업훈련 등을 시행중인 수용자는 1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교육과목을 정신수련에 필요한 과목과 신체단련에 필요한 과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신교육이 형식적으로 흘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현행 정신교육이 실제로 수용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 지를 수용자들의 평가를 통해 측정해 보고자 하는 항목이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 G16. 귀하는 일년에 한번씩 받는 수용자정신교육이 자신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④ 많이 도움이 된다</p>				

G3.3. 학과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3.3.1. 학과교육 유형	수용자를 위한 학과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부지표	a. 초·중·등 학과교육, b.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c. 전문대학교육, d.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교육, e. 외국어 및 한자교육 f. 정보화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제출자료
		탁월(5)	4개 이상 해당	
		우수(4)	3개 이상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77조는 수용자를 위한 학과교육에 대한 규정인데 제1항은 “성인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모든 수행자들에게 행해지도록 해야 하며,” 특히 문맹자와 소년수행자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 국가의 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행해져서 석방 후에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형법 제32조도 최저기준규칙 제1항과 맥을 같이 하여 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행자에 대해 연령과 지식정도를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학과교육의 종류는 수행자등교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를 위한 교육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학과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전문대학교육,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교육, 외국어 및 한자교육이 있다.(수행자등교육규칙 제2조). 여기에 정보화교육 규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교육 등도 포함한다. 물론 교육의 대상자가 없으면 교육을 개설하지 못하며, 또 현재 교도소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범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은 소년교도소에서 시행중이며 외국어교육 중점교도소는 의정부교도소 등이다(학과교육 관련 세부 시행사항). 따라서 모든 구급시설이 반드시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다 갖추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점교도소 지정이 다른 교도소에서는 특정 학과교육이 실시되지 않아도 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지침> 현재 시행중인 학과교육의 유형을 파악한다. 검정고시반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학과교육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제출자료] G19. 시행 중인 학과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유형별 참여인원

	프로그램유무	참여인원
a. 초·중·등 학과교육,		
b.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c. 전문대학교육,		
d.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교육,		
e. 외국어 및 한자교육		
f. 정보화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3.3.2. 학과교육 과정 결정에 본인의사 반영정도	학과교육 유형을 결정하는 데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90% 이상	
<p>&lt;해설&gt; 수용자등교육규칙(안) 제4조는 교육생을 선발할 때 수용자의 분류심사표, 연령, 적성, 희망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G17.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p> <p>②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p> <p>③ 어느 정도 고려되었던 것 같다</p> <p>④ 충분히 고려되었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3.3.3. 사회복귀 후 도움정도	수용자교 육이 출소후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90% 이상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수형자들에 대한 교육은 가능한 한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에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에서의 학과교육은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적응과 재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실제 사회에 돌아간 후 얼마나 효용성 있게 이용될 수 있는 학과교육을 하고 있느냐는 교도소에서의 학과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

[설문조사]

G18. 귀하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3.3.4 학과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비율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은 충분한 전문성을 가졌는가?	탁월(5)	90%이상	제출자료
		우수(4)	70%이상 90%미만	
		보통(3)	50%이상-70%미만	
		미흡(2)	30%이상-50%미만	
		시정요함(1)	30%미만	

<해설> 법무부가 2004년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시달한 내용 중에 ‘수용자교육 규칙(안)’ 제7조를 보면, 교육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과교육은 학습지도능력이 있는 교회직 공무원이 담당하지만 교회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학과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지도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원칙적으로는 교사자격증으로 소지한 교사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지침>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전체 학과교육 교, 강사의 수)×100

1. 1회에 한하여 초빙된 강사는 제외한다.  
 2. 적어도 6개월 이상 교육을 하는 외부인을 외부강사로 본다.

<p>[제출자료]</p> <p>G20. 전체 수용자 학과 교육별 상임교사와 외부강사(교회직 공무원, 경비교도대, 교육위원, 교정참여인사 등 신분을 세분해서)의 직업별 분포와 명 수(1회에 한하여 초빙된 강사는 제외한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강사로 활동한 외부인을 외부강사로 본다.)</p> <p>G21. 교사와 강사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와 각 자격증의 내용(대학교수나 학원 강사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p>
--

### G3.4. 수용자인권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G3.4.1 수용자 인권교육 의 실시	수용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 인권교육을 위한 공식적이고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b. 인권단체 활동가나 인권관련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된다. c. 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해진다.	제출자료
		탁월(5)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여기서 수용자인권교육이란 ‘수용자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에서 인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타인들의 인권을 해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피해자에 대한 참회와 보상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수용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교육하여 집단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국은 인권의 보호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p> <p>&lt;평가지침&gt;</p> <p>a. ‘수용자 인권교육을 위한 공식적이고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수용자 인권교육(또는 이와 유사한)이라는 공시적 제목하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인권’이 교육내용에 들어가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신교육을 실시하거나 종교집회를 하는 도중에도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공식적 인권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다.</p> <p>b. ‘인권단체 활동가나 인권관련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된다’는 것의 의미는 강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권단체에서 실무를 하고 있거나 교육기관(대학, 연구소)에서 인권관련 연구를 축적해 온 인사들을 말한다.</p>				

c. ‘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인권교육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도화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것이다.

[제출자료]

G22. 수용자대상 인권교육 실시여부, 교육내용, 개최빈도, 1회당 교육인원, 강사

## H. 수용생활

### H1. 종교생활

#### H1.1. 종교집회(의례)의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1.1. 3대 종교의 정기의례 의 보장	기독교, 불교, 카톨릭 3대 종교의 종교별 정기집회 (종교의례) 가 보장되는가?	세부지표	a. 3대 종교 모두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의례를 개최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b. 정기의례는 각 종교별로 필수적인 집회일에 개최된다(주일미사, 주일예배 등).	
			c. 정기의례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집전한다.	
			d. 정기의례 시에는 해당 종교의 성상 등의례에 필요한 종교용품이 이용된다.	
			탁월(5)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헌법 제20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구금시설 수용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저기준규칙 제6조 제2항은 “피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2항은 종교의 대표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정기적인 의례를 행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제42조는 피구금자가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구금시설 내에서도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의 종교집회의 허용권고(2002.10.19.자, 01진차2 결정)와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의 허용권고(2004.1.27)를 통하여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행형법은 “교회(敎誨)”라는 제목 하에 “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고 규정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행형법에서 사용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종교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회는 널리 정신감화를 통해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교정교화의 수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형법 제31조 제2항은 수형자와 성직자와의 만남에 대하여 이를 “특별교회”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보다는, 이미 “교회”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종교를 정신적 교화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입법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교회 및 복지활동 지침’ 제9조는 “소장은 수용자들이 신앙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용

자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앙생활을 교화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형법의 태도와 실무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종교를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에게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행형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은 종교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에선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행형법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의 보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20조에 근거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규정하지 않는 셈이다. 독일행형법 제54조 제1항이 종교의례 및 그 밖의 종교행사에의 참석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과 대비된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 제20조 제1항을 출발점으로 하여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예배, 미사, 법회 등 해당 종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종교의례에 참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구금시설의 특성상 수용자가 외부사회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허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구금시설 수용자는 국가에 의하여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환경에서 격리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종교의례 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서 종교의례가 거행될 수 있도록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고 수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3조 제2항에서 “소장은 교정시설 내에서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6조 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여부를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중에서 “종교의례에 참석할 권리”를 구금시설에서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신도수가 비교적 많은 3대 종교인 기독교, 카톨릭, 불교의 종교의례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지침>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의례는 구금시설에서 시행하는 모든 종교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회의 해당 종교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행하는 공식적인 예식에 상응하는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종교의 신도들에게 참석의무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의 주일예배, 카톨릭의 주일미사, 불교의 일요법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의 종교의례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집전하는 공식적인 의례여야 하고, 외부사회의 종교의례에 준하는 절차와 형식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해당종교의 성상이 설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최근 3개월 동안 3대 종교의 종교의례의 개최현황을 파악한 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평가한다.

- a. 종교의례의 주기적 개최회수를 평가한다. 3대 종교 모두 주 1회 이상 종교의례를 개최해야 한다. 반드시 특정 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주 1회 이상 개최되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b. 구금시설의 정기적인 종교의례가 각 종교에서 통상적으로 종교의례를 개최하는 특정 요일에 개최되는가를 평가한다. 3대 종교의 경우 일요일에 개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형법시행령 제107조는 “교회는 휴업일에 한다. 다만,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평일에 종교의례가 개최된다면, 예를 들어 외부통근 수용자 등은 종교의례의 참석이 아예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c. 종교의례가 외부사회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종교의 성직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집전되는 것을 말한다.

d. 종교의례 시 해당종교의 성상(예수십자가상, 불상 등)이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성상은 탈 부착식이어도 상관없으며, 종교의례 시에 성상이 설치되는가 여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H1.1. 현재 수용자의 종교현황

(※ 기독교 00명, 불교 00명 등으로 모든 종교의 수용자 수를 기재)

(※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여 기재함)

H1.2. 최근 3개월간의 각 종교별 집회의 일시 및 장소, 집회장소의 성상설치여부, 각 집회별 참가인원 (표)

(※ 각 종교별로 성직자가 집전하는 공식적인 예식(미사, 예배 등)을 말하며, 성경공부 등 소모임성격의 집회는 제외함)

(※ 종교의례에 해당하는 모든 집회를 건별로 기재함)

종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집전자	성상설치여부
			수형자	미결수용자		
기독교						
:						
카톨릭						
:						
불교						
:						
여호와의 증인						
:						

[면담조사]

1. 종교생활(H1.)에 관한 면담대상 수용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7인을 선정하고, 아래 종교생활에 한 평가항목의 수용자면담조사에도 적용한다.

1) 수용자 7인은 수형자 5인, 미결수용자 2인으로 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금시설에서는 수형자 5인-7인을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 미결수용자 5인, 수형자 2인으로 한다.

2) 수용자 7인 중 수형자 5인(구치소의 미결수용자 5인)은 기독교 1인, 카톨릭 1인, 불교 1인, 기타 종교 2인으로 선정한다. 기타 종교 2인은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소수종교 중에서도 비교적 다수인 종교 순으로 2인을 선정하되, 유대교나 이슬람교 수용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 선정한다. 미결수용자 2인(구치소의 수형자 2인)은 3대 종교 중 1인, 소수종교 중 1인으로 선정한다.

3)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구금시설의 수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선정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기간 3개월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4) 수형자의 경우 종교적 활동모임에 참여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출자료를 통하여 구금시설의 종교적 활동모임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여 선정한다.

2. 선정된 수용자 7인 중 3대 종교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는 다음을 질문한다.

- 1)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 2)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주 1회 이상 개최하였는가?
- 3)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개최하였는가?
- 4) 종교의례는 성직자가 집전하는가?
- 5) 종교의례 시 성상이 설치되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1.2. 3대종교 이외의 소수종교 의 종교의례 의 보장	3대 종교를 제외한 소수종교의 종교의례를 얼마나 보장하는가?	세부지표	a. 모든 소수종교에서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의례를 개최한다. b. 정기의례는 각 종교별로 필수적인 집회일에 개최된다. c. 종교의례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집전한다. d. 종교의례에는 해당 종교의 성상 등의례에 필요한 용품이 이용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위 H1.1.1.이 비교적 신자수가 많은 3대 종교의 종교의례에 관한 것이라면, 이 평가항목은 3대 종교를 제외한 소수종교의 종교의례의 보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금시설 내에서 허용되는 종교의례 내지 종교집회는 종교의 종류나 신자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이 종교집회가 불허되는 것에 대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종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들에게 구금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수용자가 구금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특정 종교를 믿는 수용자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종교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2002.10.19.자, 01진차2 결정). 그러므로 구금시설에서는 3대 종교 이외의 소수종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종교의례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소수종교의 종교의례의 보장정도는 3대 종교의 그것과 같아야 할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소수종교의 종교의례의 보장에 관하여 위 H1.1.1.과 동일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침>

1. 3대 종교를 제외한 소수 종교 모두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의례는 구금시설에서 시행하는 모든 종교집회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회의 해당 종교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행하는 공식적인 예식에 상응하는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종교의 신도들에게 참석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종교의례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집전하는 공식적인 의례여야 하고, 외부사회의 종교의례에 준하는 절차와 형식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해당종교의 성상이 설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최근 3개월 동안 구금시설의 소수종교의 종교의례의 개최현황을 파악한 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확인·평가한다.

- a. 종교의례의 주기적 개최회수를 평가한다. 구금시설 내에 신도수용자 1명 이상 있는 모든 소수종교에서 주 1회 이상 종교의례를 개최해야 한다. 반드시 특정 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주 1회 이상 개최되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b. 구금시설의 정기적인 종교의례가 각 소수종교에서 통상적으로 종교의례를 개최하는 특정요일 내지 특정일에 개최되는가를 평가한다.
- c. 소수종교의 종교의례가 외부사회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종교의 성직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집전되는 것을 말한다.
- d. 종교의례 시 해당종교의 성상이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성상은 탈부착식이어도 상관없으며, 종교의례 시에 성상이 설치되는가 여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H1.1. 현재 수용자의 종교현황

(※ 기독교 00명, 불교 00명 등으로 모든 종교의 수용자 수를 기재)

(※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여 기재함)

H1.2. 최근 3개월간의 각 종교별 집회의 일시 및 장소, 집회장소의 성상설치여부, 각 집회별 참가인원 (표)

(※ 각 종교별로 성직자가 집전하는 공식적인 예식(미사, 예배 등)을 말하며, 성경공부 등 소모임성격의 집회는 제외함)

(※ 종교의례에 해당하는 모든 집회를 건별로 기재함)

종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집전자	성상설치여부
			수형자	미결수용자		
기독교						
:						
카톨릭						
:						
불교						
:						
여호와의 증인						
:						

[면담조사]

종교생활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H1.1.1. 참조) 중 소수종교 수용자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 2)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주기적으로 개최하였는가, 개최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 3)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개최하였는가?
- 4) 종교의례는 성직자가 집전하는가?
- 5) 종교의례 시 성상이 설치되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1.3. 미결수용 자의 종교의례 참석권 보장	미결수용자 에게도 종교의례 참석권이 보장되는가?	보통(3)	미결수용자에게도 수형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교의례에의 참석이 허용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미흡(2)	미결수용자에게는 수형자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수형자와는 별도의 종교의례가 개최된다.	
		시정요함(1)	미결수용자에게는 종교의례에 참석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해설> 행형법 제31조 제2항은 특별교회의 대상을 기본적으로 “수형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 오로지 교정교화의 수단으로만 인식한 결과이다. 하지만 종교활동은 단지 교정교화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종교의례에의 참석권 역시 수형자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정하였다(2004.1.27).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의 참석을 허용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행형법 제67조 제1항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교회 및 복지활동 지침’과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은 종교활동의 대상을 수형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및 시설부족, 공범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4.5.27.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리수용원칙 때문에 미결수용자의 종교의례를 수형자와 별도로 개최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결수용자에게도 종교의례의 참석권이 수형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본 평가항목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의례 참석권의 보장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에서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종교의례의 현황을 파악한 후, 미결수용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미결수용자의 종교의례는 각 종교별 개최횟수, 성직자의 집전여부 및 성상설치여부 등

에서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의례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준일 때 ‘보통’으로 평가한다. 일부 종교의 경우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의례는 개최되는데 비하여 미결수용자에게는 개최되지 않거나, 성직자가 집전하고 성상이 설치된 종교의례가 개최되기는 하지만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의례보다 그 횟수가 적다면 ‘미흡’으로 평가한다.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의례의 참석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3. 종교의례의 의미는 위 평가항목 H1.1.1.의 설명을 참조한다.

4.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본 평가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제출자료]

H1.1. 현재 수용자의 종교현황

(※ 기독교 00명, 불교 00명 등으로 모든 종교의 수용자 수를 기재)

(※ 수행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여 기재함)

H1.2. 최근 3개월간의 각 종교별 집회의 일시 및 장소, 집회장소의 성상설치여부, 각 집회별 참가인원 (표)

(※ 각 종교별로 성직자가 집전하는 공식적인 예식(미사, 예배 등)을 말하며, 성경공부 등 소모임성격의 집회는 제외함)

(※ 종교의례에 해당하는 모든 집회를 건별로 기재함)

종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집전자	성상설치여부
			수행자	미결수용자		
기독교						
:						
카톨릭						
:						
불교						
:						
여호와의 증인						
:						

[면담조사]

종교생활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H1.1.1. 참조) 중 미결수용자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 2)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주기적으로 개최하였는가, 개최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 3)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개최하였는가?
- 4) 종교의례는 성직자가 집전하는가?
- 5) 종교의례 시 성상이 설치되는가?

### H1.2. 종교적 활동의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2.1.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 모임의 보장	종교적 활동을 위한 수용자의 모임이 얼마나 보장되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위한 모임이 3대 종교별로 각 1개 이상씩 있다. b. 3대 종교를 제외한 소수종교의 종교활동을 위한 모임이 1개 이상 있다. c. 각 종교활동 모임에는 적합한 장소가 제공되고 있다. d. 각 종교활동 모임을 위하여 성상, 성물 등 필요한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수용자의 종교활동의 권리는 비단 해당종교의 공식적인 종교의례에 참석하는 권리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종교의례 외에도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종교적 활동모임 내지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교적 모임과 활동은 종교적 실천의 자유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수용자에게 다양한 종교적 활동의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사회화 내지 교정교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물론이다. 종교적 활동모임의 예는 성가대나 불가대, 성경이나 불경 등의 교리학습반, 성화반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다양한 종교적 활동을 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종교단체의 성직자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의 종교단체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예규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교활동의 설비제공을 교도소측의 재량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히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사상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종교적 활동모임의 구체적인 일정은 교도소의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모임을 적절히 보장하고 이를 위한 설비와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을 위한 모임이 얼마나 보장되는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하여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을 위한 모임의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하며, 수용자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종교적 활동을 위한 모임이라 함은 공식적인 종교의례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 10인 이상의 수용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가대나 불가대, 성경공부반이나 불경공부반, 성화반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한 모임은 주기적인 집회가 가능해야 하며,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a. 수용자의 수가 많은 3대 종교(기독교, 카톨릭, 불교)의 경우에 종교적 활동의 모임이 각 종교별로 1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p>				

- b. 3대 종교를 제외한 소수종교의 종교적 활동모임의 수를 평가한다. 1개라도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c. 종교활동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평가한다. 종교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임에 적합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관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구금시설의 실무에서는 기독교관, 불교관 등의 명칭으로 종교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활동의 모임 수만큼의 장소가 별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또 종교활동 모임이 반드시 종교관이라는 명칭의 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각 종교활동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 활동에 적합한 장소여야 한다. 종교관 등의 장소가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활동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가대 모임을 가지는 장소는 피아노나 울겐 등의 악기가 있어야 하며, 성경공부반의 장소는 수용자들이 둘러앉아 공부모임을 가질 수 있는 탁자와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d. 종교활동 시에 해당종교의 성상이나 성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H1.3. 최근 3개월간의 수용자의 종교 활동을 위한 모임의 현황 (표)

(※ 성경공부반, 찬송가합창반 등 종교적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수용자의 모임을 말함)

(※ 각 종교활동 모임 별로 지난 3개월간의 활동상황을 기재함)

모임의 명칭	해당 종교	모임의 내용	참여인원		지도자 (직업과 활동기간)	지난 3개월 간의 모임현황	모임의 장소	1회 모임의 활동시간
			수형자	미결 수용자				
(예 : 성가대)								
:								
:								
:								

[면담조사]

종교생활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H1.1.1. 참조) 중 종교활동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어떤 종교활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모임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
- 2) 모임의 참여인원은 몇 명인가?
- 3) 모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모임의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 4) 모임의 장소는 어디인가, 그 장소는 모임의 활동에 적합한가?
- 5)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내지 설비는 어떤 것들인가?

[현장조사]

c.와 d.에 관하여는 종교활동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그 장소가 종교적 활동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적합한가, 그 장소에는 성상이나 성물이 비치되어 종교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2.2. 종교적 모임의 활동	종교적 모임의 활동은 얼마나 활발한가?	세부지표	a. 종교적 활동 모임의 50% 이상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b. 매 모임 시 활동시간은 1시간 이상이다. c. 종교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수용자는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d. 해당 종교의 전문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여기에서는 수용자들의 종교활동을 위한 모임의 활동상황을 평가해 본다. 앞의 H1.2.1. 평가항목이 종교활동 모임의 보장에 대한 것이라면, 이 평가항목은 그러한 모임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으며, 수용자의 신앙생활 내지 수용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종교활동 모임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교활동 모임이 실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앙생활 내지 수용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종교활동 모임의 횟수, 활동시간, 수용자의 자율성, 유자격자의 지도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하여 수용자의 종교활동 모임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수용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p> <p>a. 종교활동 모임의 정기적인 회합에 대하여 평가한다. 종교활동 모임은 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최소한 종교활동 모임의 50% 이상은 주 1회 이상의 모임을 가지는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단, 구금시설의 종교활동 모임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주 1회 이상의 모임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b. 매 모임 시 보장되는 활동시간을 평가한다. 각 모임 때마다 활동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이어야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종교활동 모임의 최소한의 활동시간 보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개월 간 개최된 종교활동 모임의 모든 경우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c. 종교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의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수용자 면담조사로 평가한다.</p> <p>d. 종교활동 모임이 해당 종교의 성직자나 기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모임을 이끌어야 한다. 모임의 지도자는 구금시설의 교회직 직원이거나 외부의 종교위원이어도 상관없으나, 해당 종교활동 모임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내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p>				

[제출자료] H1.3. 최근 3개월간의 수용자의 종교 활동을 위한 모임의 현황 (표)  
 (※ 성경공부반, 찬송가합창반 등 종교적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수용자의 모임을 말함)  
 (※ 각 종교활동 모임 별로 지난 3개월간의 활동상황을 기재함)

모임의 명칭	해당 종교	모임의 내용	참여인원		지도자 (직업과 활동기간)	지난 3개월 간의 활동현황	모임의 장소	1회 모임의 활동시간
			수형자	미결 수용자				
(예 : 성가대)								
:								
:								
:								

[면담조사]

종교생활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선정기준은 H1.1.1. 참조) 중 종교활동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지난 3개월 간 모임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 2) 1회 모임의 활동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3) 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 4) 모임은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 지도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2.3. 개인의 신앙생활의 보장	수용자 개인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보장되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는 거실에 성경이나 불경 등 자신의 종교 경전을 소지할 수 있다. b. 수용자는 목주나 염주, 목탁 등 종교용 소품(성물)을 거실 내에 소지할 수 있다. c. 수용자는 개인용 종교용 성상(성모마리아상, 불상, 십자가예수상 등)을 거실에 소지할 수 있다. d. 수용자는 자신의 종교교리에 따른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수용자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수용자는 취침 및 작업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 중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p>				

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용자에게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경전 등의 종교서적과 성상, 성물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42조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교의 경전 및 교리서적을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개인의 신앙생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현행 행형법이 수용자의 신앙생활의 권리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독일행형법은 수용자 개인에게 기본적인 종교서적을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53조 제2항 1문). 성서나 코란과 같은 경전, 교리책자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가집이나 기도서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 종교서적소지권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임을 고려하여 독일행형법은 그것을 “중대한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동 제2항 2문). 종교서적 외에 수용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종교적 용도의 물건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제53조 제3항). 우리나라의 행형법에서는 독일행형법처럼 종교서적의 소지권이 일반도서에 비하여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구금시설에서는 종교서적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소지 및 열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물과 성상의 소지에 관해서는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에 규정이 있다. 성물의 소지에 대해서 동 지침 제8조는 “①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대용으로 제작된 성물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성물을 허가함에는 재질, 수량, 규격, 특징 등을 감안하여 보안상의 위험도 및 타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물의 소지는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것인 만큼 교화상의 필요를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구금시설에서는 특정 성물이 시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 개인에게 성물의 소지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종교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종교거실에는 해당 종교의 성상, 성물, 성화 및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구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유해하거나 다른 거실 수용자의 안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성상의 경우에는 종교거실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성상은 종교거실 수용자가 아니더라도 수용자가 개인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할 것이다. 종교서적, 성상 등의 소지권과 함께 수용자의 신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종교교리에 따른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의 보장문제이다. 실제로 구금시설에서 모든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한 소극적인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금식이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종교교리에 따른 식사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특정 음식재료를 제외한 다른 음식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영양이 유지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수용자가 종교교리상의 음식제한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Kahane v. Carlson, 527 F.2d 492(2nd Cir. 1975) ; Abernathy v. Cunningham, 393 F.2d 775(4th Cir. 1968) ; Masjid Muhammad-D.C.C. v. Keve, 479 F.Supp. 1311(D.De 1979) 등 참조).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종교서적의 소지, 성물과 성상의 소지, 종교적 식사 등에 관하여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와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기록조사를 보완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a. 수용자에게 성경, 불경 등의 종교경전과 기도서 등의 종교교리서적의 소지가 얼마나 보장되는가를 평가한다.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모두에게 종교서적의 소지가 기본적으로 허가되어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와 수용자면담조사로 확인한다.
- b. 종교성물의 거실 내 소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성물이라 함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개인이 소지하는 염주, 목주, 목탁, 단주, 종 등을 말한다(‘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호 참조). 우선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모두에게 성물의 소지가 기본적으로 허가되어야 한다. 이는 제출자료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모두 해당 종교의 신자 수 대비 성물의 소지자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성물 소지 수용자수는 기록조사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성물은 종교단체에서 종교위원 등이 수용자에게 일괄해서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것보다는 수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성물을 영치의 방법으로 반입하여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수용자면담조사로 확인한다. 이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c. 성상의 거실 내 소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성상이라 함은 십자가상, 불상, 성모마리아상, 예수상 등 각 종교를 상징하는 조각품을 말한다. 구금시설에서 제공하여 종교거실에 비치되는 성상은 제외하고, 수용자 개인이 개인의 소지품으로 성상을 소지할 수 있는가를 제출자료와 수용자면담조사로 평가한다.
- d. 수용자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종교교리에 따른 식사 제공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바, 이들 종교의 수용자에게 금식기간의 준수여부 및 특정음식의 금지교리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다. 제출자료와 수용자면담조사로 확인하되, 구금시설에 해당 수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H1.4. 수용자에게 종교생활을 위하여 거실 내 소지가 허용되는 물품내역 (표)  
(※ 허가인원은 현재의 인원수로 하며,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함)

목록	종교서적					성물					성상					비고	
	성경	불경	교리서적	기도서	성가집	기타	목주	염주	목탁	종	기타	십자가상	마리아상	예수상	불상		기타
기본적인 허가여부																	
허가 인원	수형자																
	미결수용자																

H1.5. 유대교와 이슬람교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리에 따른 식사제공여부(해당종교의 수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록조사]

성물소지에 관한 제출자료의 허가상황을 ‘수용자성물소지허가부’의 기록과 대조해 보며, 성물소지 수용자의 인원수를 파악한다.

[면담조사]  
 종교생활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7인(선정기준은 H1.1.1. 참조)에 대하여 질문한다.

- 1) 성경, 불경 등 종교서적은 무엇을 거실 내에 소지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소지하고 있는가?
- 2) 성물로는 무엇을 소지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소지하고 있는가, 성물은 자신이 영치의 방법으로 반입한 것인가?
- 3) 성상으로는 무엇을 소지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소지하고 있는가, 성상은 자신이 영치의 방법으로 반입한 것인가?
- 4) (유대인 혹은 이슬람교 수용자) 종교교리에 따른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2.4. 수용자와 성직자 간의 만남	수용자는 원할 경우 자신의 종교의 성직자와 만날 수 있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성직자와 만날 수 있다. b.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 건수가 시설내 유종교자의 20% 이상이다. c.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은 거실 이외의 독립된 장소에서 가능하다. d. 대화의 비밀이 유지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 성직자로부터 종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속한 종교의 성직자를 만나 종교적 문제나 기타 생활상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등 성직자와의 만남은 신앙생활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사항에 속한다. 수용자의 경우에도 성직자와의 만남 내지 성직자로부터의 종교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접촉이나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수용자의 지위에 상응하여 구금시설은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41조 제2항은 종교의 대표자가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방문상담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은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행형법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에게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의 성직자에 의한 종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제53조 제1항 1문). 이를 위하여 수용자는 종교단체의 성직자와 교통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의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53조 제1항 2문). 이에 비하여 현행 행형법 제31조 제2항이 “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도소장에게 “중개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구금시설의 중개 없이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헌법적 해석에 충실하자면 위의 재량은 “0”으로 축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은 양쪽 입장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우선 수용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종교의 성직자와 만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41조 제3항의 요청사항이며, 이는 세부지표 a.에 반영된다. 그리고 성직자는 자신의 종교에 속하는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을 방문하고 수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최저기준규칙 제41조 제2항의 요청사항이며, 세부지표 b.에 반영된다. 어느 경우에도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은 대화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지표 c.와 d.는 이를 반영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하여 수용자가 성직자와 만나 개인적으로 상담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한 후, 수용자면담조사를 거쳐 평가한다.

- a.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이 수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가능함을 말한다. 제출자료로 그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실제 성직자와의 만남이 주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b. 성직자와의 만남의 건수를 평가한다.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수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원활히 보장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3개월간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의 건수가 종교를 가진 수용자수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c. 수용자가 성직자와 상담 등을 위해 만날 때 거실 외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대화의 장소가 제공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d. 수용자와 성직자가 만날 때 구금시설 직원의 감시가 없이 대화의 비밀이 보장되는가를 평가한다.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기록할 수 없으며, 청취가 불가능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시각감시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출자료]

H1.6. 최근 3개월간 수용자가 해당종교의 성직자와 개별적인 만남을 가진 사례(※ 성직자와의 만남은 고백성사, 상담 등의 경우를 말한다)

- ① 각 종교별로 성직자와 수용자의 만남의 건수
- ② 성직자와의 만남 시 이용되는 장소
- ③ 성직자와의 만남 시 대화의 감시방법(구체적으로 서술)

[면담조사]

종교생활에 관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7인(선정기준은 H1.1.1. 참조)에 대하여 다음을 질문한다.

- 1) 최근 3개월 간 해당 종교의 성직자와의 상담이나 고백성사 등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는가?  
는가?
- 2) 최근 3개월 간 실제 성직자와의 만남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몇 번이었는가 ?
- 3)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가?
- 4) 성직자와 상담 등을 할 때 구금시설직원은 어떻게 감시하였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3.1. 종교위원의 위촉현황	종교위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위촉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종교위원 1인당 수용자수는 20명 미만이다. b. 종교위원에는 3대 종교의 성직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c. 수용자의 종교적 분포에 따라 소수종교의 종교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d. 일반신도를 제외한 종교위원수가 전체 종교위원의 50% 이상이다.	제출자료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법무부예규 ‘교정위원제도 운영지침’은 각 구금시설에서 교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교정위원은 분야에 따라 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으로 구분된다. 종교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종교위원)에 대해서 동 지침 제4조 제2항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지도급 인사로서 수용자 신앙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위원은 실제 종교집회를 집전하거나 수용자의 종교활동 모임을 지도하고, 수용자와 개별적으로 상담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용자에게 구금의 폐해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하며 수행자의 교정교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종교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각 구금시설은 종교위원을 적절한 규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교정위원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은 종교위원의 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로 전체 교정위원의 수에 대하여 구금시설의 규모에 따라 그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교정위원 기능별 분포비율은 기관실정을 감안하여 소장이 정한다. 다만, 종교분야에는 종교별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 제1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전체 교정위원의 수의 하한선은 대략 교정위원 1인당 수용자 12-17명 정도의 수준이다. 종교위원을 비롯한 교정위원이 수용자와의 상담은 물론 지속적인 결연활동과 출소후의 사회정착지원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동 지침 제7조 참조) 교정위원 1인당 수용자수가 10명 미만이 되도록 교정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평가항목에서는 교정위원 중 종교위원의 수는 종교위원 1인당 수용자수 20명 미만 정도는 되어야 적정규모로 판단한다. 그리고 종교위원 중에는 기독교, 카톨릭, 불교의 3대 종교의 경우 각 성직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 내지 성직자에 의한 종교적 보호를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더불어 소수종교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종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교위원이 위촉되어 있어야 한다. 종교위원은 그 특성 상 종교집회를 집전하거나 수용자의</p>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종교위원 중에는 일반 신도보다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를 비롯하여 전문적인 지도자적 자질이 있는 분이 50% 이상 위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하여 교정위원 중 종교위원의 수와 종교별, 직역별 분포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a.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전체 수용인원 ÷ 종교위원의 수}. 전체 수용인원은 제출자료 A2.를 참조한다.

b. 종교위원 중에 3대 종교의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독교의 목사, 카톨릭의 신부, 불교의 승려가 여기에 해당한다.

c.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종교별 현황(제출자료 H1.)을 참조하여 각 소수종교의 종교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d. 종교위원 중 일반신도를 제외한 종교위원의 수가 전체 종교위원의 50% 이상임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성직자와 전도사 급 종교위원의 수 ÷ 전체 종교위원의 수 × 100}

[제출자료] H1.7. 종교위원의 위촉현황

- ① 현재 종교위원의 수
- ② 종교위원 중 3대 종교의 성직자의 수  
(기독교의 목사, 카톨릭의 신부, 불교의 승려로 나누어 인원수 기재)
- ③ 종교위원의 종교별 분포(각 종교별로 나누어 인원수 기재)
- ④ 종교위원의 직역별 분포(성직자급, 전도사급, 일반 신도급으로 나누어 기재)

**H1.3.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구금시설의 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3.2. 종교관의 설치와 운영	종교관을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탁월(5)	5개 이상의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우수(4)	4개 이상의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다.	
		보통(3)	3개 이상의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다.	
		미흡(2)	2개 이상의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다.	
		시정요함(1)	1개의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거나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종교관(종교실)은 수용자의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수용자들은 종교관에서 종교의례를 가질 수 있으며, 성경공부반 등 종교활동 모임을 개최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종교단체의 성직자 내지 종교위원과 상담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각 구금시설에는 최소한 3대 종교의 종교관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기타 소수종교를 위한 종교관도 2개 이상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법무부예규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제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교관의 설치에 대하여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관은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구금시설은 일정한 수 이상의 종교관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종교관의 설치에 관한 소장의 재량은 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0”으로 축소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참고로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는 구치소와 교도소에 종교실을 최소 3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평가항목은 구금시설이 종교관을 얼마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3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보통’으로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종교관(종교실)의 설치운영현황을 파악한 후, 종교실을 현장조사하여 평가한다.

2. 종교실은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수용정원 500명 미만의 시설은 35㎡, 수용정원 500-1,000명 미만 시설은 50㎡, 1,000-1,500명 미만 시설은 66㎡, 1,500명 이상 시설은 8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관은 실제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에 이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출자료] H1.8. 종교관(종교실)의 설치현황(각 종교별 종교관의 수와 면적을 기재)

[현장조사]  
종교관을 방문하여 종교관의 수와 각 면적을 측정하고, 종교관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1.3.3. 직원 중 성직자의 현황	직원 중 성직자를 고용하고 있는가?	우수(4)	3대 종교의 성직자를 각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	제출자료
		보통(3)	3대 종교 중 2개 종교의 성직자를 각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	
		미흡(2)	3대 종교 중 1개 종교의 성직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	
		시정요함(1)	3대 종교 중 성직자를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41조 제1항은 “시설 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이 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행형법 제157조 1항은 “성직자는 해당 종교신자들과 협의로 직원으로 임명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종교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당종교의 성직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설

에 구금되어 자유롭게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수용자에게 종교적 실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본 평가항목은 3대 종교를 중심으로 구금시설에서 성직자를 직원으로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1.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성직자의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평가한다. 고용은 상근제 고용을 말한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성직자란 해당종파에 전속되어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독교의 경우 목사 외에 선교사, 카톨릭의 경우 신부 외에 수녀를 포함한다.

[제출자료]

H1.9. 현재 직원 중 성직자의 현황(※ 성직자란 해당 종파에 전속되어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한다. 목사, 선교사, 신부, 수녀, 승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H2. 취미활동

### H2.1. 취미활동 모임의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2.1.1.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의 활성정도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은 다양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이 3종류 이상이다. b. 수용자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의 수가 10개 이상이다. c. 각 취미활동모임의 참여인원이 평균 10명 이상이다. d. 각 취미활동모임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수용자에게 다양한 내용의 취미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최저기준 규칙 제78조는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급시설은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련하여 법무부예규인 ‘수용자예능 및 체능 활동 지침’ 제3조는 “① 소장은 기관실정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여 예체능반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체능반 구성은 2개 종목 이상으로 하며 종목별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급시설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예체능반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 제4조 제1항은 예능종목을 “1. 서화, 자수, 문예 등 창작활동, 2. 연극, 음악, 무용, 탈춤 등 연기활동, 3.농악, 악대 등 악기연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체능종목을 “1. 배구, 농구, 탁구 등 구기운동, 2. 에어로빅 등 생활체조, 3. 단전호흡 등 심신수련, 4. 줄다리기 등 레크리에이션, 5. 권투 등 청소년 수형자의 특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의 예체능반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운영규모를 너무 적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2개 종목, 종목당 5인이라는 기준은 대부분의 시설이 1,000명 이상을 수용하고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많은 구급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취미활동모임을 2-3개 정도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예체능반의 편성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수용자에게 취미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에게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용자 취미활동 모임의 현황을 파악한 후,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미활동에는 일상적인 거실 내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독서, 학습, TV시청, 그리고 운동시간에 운동장에서 하는 운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취미활동은 직업훈련과도 구별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미활동에는 직업훈련으로 행해지는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통상 구급시설에서 운영하는 취미활동의 예는 서예반, 합창반, 악기연주반 등이 있다.

a. 취미활동 모임의 종류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취미활동의 모임이 여러 개 있어도 그것은 1종류로 평가한다.

b. 취미활동 모임의 수를 평가한다. 같은 내용의 취미활동 모임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계산한다.

c.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취미활동 참여인원의 합 ÷ 취미활동의 모임 수(종류수가 아님)}

d. 최근 3개월 동안의 모임실적으로 볼 때 각 취미활동 모임이 모두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출자료]

H2.1. 현재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의 활동현황 (표)

(※ 각 취미활동모임 별로 아래 항목을 기재함. 같은 종류의 취미활동 모임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따로 기재함)

(※ 독서, 학습, TV시청, 일상적인 운동, 종교활동 등은 제외함)

모임의 이름	성격과 내용	참여인원수		모임장소	최근 3개월 간의 모임의 날짜와 시간	필요한 용품(예 : 악기 등)의 조달방법 (자비 혹은 관급)
		수형자	미결수용자			

[면담조사]

1. 취미활동에 관한 면담대상 수용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며 이렇게 선정된 면담대상자는 취미활동을 평가하는 아래 평가항목의 수용자면담조사에 적용한다.

- 1) 취미활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
- 2) 수용자 3인은 각 다른 모임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취미활동 모임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모임의 수용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 3) 수형자를 위주로 하여 선정하되, 제출자료에서 미결수용자에게도 취미활동 모임이 허용된다면 미결수용자 1인을 선정한다.

2. 수용자 3인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1) 참여하고 있는 취미활동 모임은 무엇인가?
- 2) 그 모임에는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가?
- 3) 지난 3개월 간 모임은 얼마나 개최되었는가, 모임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2.1.2. 취미활동 모임의 활동보장	취미활동 모임의 활동은 적절하게 보장되는가?	세부지표	a. 취미활동모임의 50% 이상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b. 매 모임 시 활동시간은 2시간 이상 가능하다. c.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수용자는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d. 취미활동에 필요한 기본용품을 구급시설로부터 제공받는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취미활동의 모임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 활동이 저조하거나 활동시간이 너무 짧다면 취미활동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취미활동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 1회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 모임시마다 2시간 이상의 활동시간이 허용되어야 취미활동다운 취미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취미활동 모임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자율적 운영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는 자신이 참여하는 취미활동 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하여 구급시설에서는 기본용품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물품의 비용을 수용자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면 실제 취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용자의 취미활동 모임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본 평가항목은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구급시설에서 취미활동 모임의 활발한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취미활동 모임의 활동상황을 파악한 후, 수용자면담 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p> <p>a. 주1회 이상의 정기모임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시설 내 취미활동의 모임 중 50% 이상의 모임이 주1회 이상의 정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b. 평균 2시간이 아니라, 매 모임 시마다 2시간 이상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p> <p>c. 취미활동 모임의 반장이 있는가, 모임의 운영에 대하여 수용자의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으로 수용자면담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p> <p>d. 수용자의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기본물품(예를 들어 서예반의 경우, 베틀, 붓, 먹 등)을 구급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제출자료] H2.1. 현재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의 활동현황 (표)</p>				

(※ 각 취미활동모임 별로 아래 항목을 기재함. 같은 종류의 취미활동 모임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따로 기재함)

(※ 독서, 학습, TV시청, 일상적인 운동, 종교활동 등은 제외함)

모임의 이름	성격과 내용	참여인원수		모임장소	최근 3개월 간의 모임의 날짜와 시간	필요한 용품(예 : 악기, 서예붓 등)의 조달방법 (자비 혹은 관급)
		수형자	미결수용자			

[면담조사]

취미활동에 관한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선정기준은 H2.1.1. 참조)에 대하여 다음을 질문한다.

- 1) 모임의 활동시간은 얼마나 보장되는가?
- 2) 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 3) 모임에는 반장이 있는가, 반장은 어떻게 선출하는가?
- 4)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기본물품은 구급시설에서 제공하는가, 아니면 본인이 자비로 구입하는가?

H2.2. 수용자의 취미활동 증진을 위한 구급시설의 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2.2.1. 수용자의 외부행사 참여 기회	수용자가 자신의 취미활동과 관련하여 외부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보장되는가?	세부지표	a. 수용자가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한 예가 있다. b. 외부에서 개최하는 해당 분야의 공식 대회에 수용자가 작품을 제출한 예가 있다. c. 외부에서 개최하는 해당 분야의 공식 대회에 수용자가 직접 참가한 예가 있다. d. 외부에서 개최하는 해당 분야의 공식 행사에 수용자가 참관한 예가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취미활동의 성과는 외부의 공식적인 관련행사나 대회 등에 출품하거나 참여함으로써 더욱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은 수용자에게 자신의 취미 내지 특기</p>				

를 살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예능 및 체능 활동지침’ 제6조는 제2항은 “소장은 교정교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계호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예체능행사에 수용자를 참여시키거나 작품을 출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법무부의 교정작품전시회를 제외하고 외부행사에 수용자의 작품을 출품케 하거나 수용자가 참가하게끔 허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에게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외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거나 전시, 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기회가 적절하게 부여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본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년도 1년간 수용자의 출품, 대회참가 등의 현황을 파악한 후, 기록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전년도 1년간 해당 기회가 한번 이상 있었던 경우면 된다.

- a. 법무부에서 개최하는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한 경우를 말한다.
- b.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대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개최되는 해당 분야의 공식대회에 수용자가 작품을 출품하게 한 예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 c. 일반 사회에서 개최되는 해당 분야의 공식대회에 수용자가 직접 참가한 예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 d. 경쟁과 시상을 전제로 하는 대회에 경쟁자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대회를 직접 참관한 경우 혹은 시상이 없는 전시회 등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제출자료]

H2.2. 전년도 1년간 취미활동 관련 외부행사 참여 실적

- ①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한 실적
- ② 외부에서 개최되는 공식대회(경쟁부문)에 수용자가 작품을 출품한 실적
- ③ 외부에서 개최되는 공식대회(경쟁부문)에 수용자가 직접 참가한 실적
- ④ 외부에서 개최되는 공식대회에 경쟁자로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자가 직접 대회를 참관한 실적
- ⑤ 외부에서 개최되는 행사(비경쟁부문)에 수용자가 작품을 출품 내지 전시한 실적

[기록조사] 제출자료에 외부의 대회나 행사에 수용자가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증명기록을 요구하여 확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2.2.2. 수용자의 취미활동 증진을 위한	수용자의 취미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세부지표	a.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하게 하고 있다. b.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c. 시설 내에서 관련 대회를 개최하고 있	제출자료 면담조사

시설의 노력	적절히 노력하고 있는가?		다. d. 외부 행사와 대회에서 수상한 자 내지 실적이 우수한 자에 시설 내에서 포상이 이루어진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형무형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 평가항목은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구금시설의 적극적 지원활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에능 및 체능 활동지침’ 제5조는 “① 소장은 해당 예체능분야에 자격 또는 소질이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지도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지침 제6조는 제1항은 “소장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자 및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예체능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발표회 등을 통한 수용자의 취미활동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많은 구금시설이 시설 내에서 취미활동과 관련한 발표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실정이다. 위 지침 제6조의 규정취지를 살리려면 구금시설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 내에서 발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수용자의 취미활동의 폭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취미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구금시설은 일정 예산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수용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a. 해당 취미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만한 전문가가 배정 내지 위촉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전문가가 직원 중에 배정되거나 외부에서 강사로 위촉되어도 상관없다. 다만, 전문가의 지도는 1회적인 것이면 곤란하다. 전문가는 자신이 담당한 취미활동 모임에 최소한 월 2회 이상 참여하여 수용자를 지도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b.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취미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가를 평가한다.

c. 시설 내에서 취미활동과 관련된 대회를 개최하는지를 평가한다. 모임의 성과, 예를 들어, 서예작품전시회, 합창발표회, 연주회 등을 시설 내에서 개최한 적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독후감쓰기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이는 취미활동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d. 외부 행사나 대회에서 수상한 수용자,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 수용자에게 시설 내에서 포상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H2.3. 전년도 1년간 시설에서 수용자의 취미활동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사항

<p>① 각 취미활동 모임별 전문가(직원 및 외부강사)의 지도실적(※ 전문가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도한 모임의 월별 횟수를 기재함)</p> <p>② 취미활동 모임을 위한 예산액수와 전체 예산 대비 비율, 집행내역</p> <p>③ 시설 내에서 관련대회나 발표회 등을 개최한 실적(※ 발표회 등의 개최일시, 개최 장소, 참여종목 수, 참여수용자수를 기재함)</p> <p>④ 외부행사에서 수상한 수용자 및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p> <p>[면담조사]</p> <p>취미활동에 관한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선정기준은 H2.1.1. 참조)에 대하여 다음을 질문한다.</p> <p>1) 모임은 누가 지도하는가, 지도하는 사람은 지난 3개월 동안에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여 지도하였는가?</p> <p>2) 전년도 1년간 시설 내에서 취미활동과 관련한 대회나 발표회 등을 개최한 적이 있는가?</p> <p>3) 외부행사에서 수상한 수용자나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시설 내에서 포상이 이루어지는가?</p>
---

**H2.3. 수용자를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2.3.1. 수용자를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	수용자를 위한 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가?	a. 동시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현장조사
		b. 문화공간 안에는 5종 이상의 오락 내지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c. 문화공간은 모든 수용자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용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d. 문화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이상 허용된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78조는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당한 정도의 여가활동시간은 수용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해소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는 결국 수용생활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궁극에는 교정교화에도 기</p>			

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급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을 활성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용자 개개인에게도 최소한도의 오락활동 내지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오락과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마련할 것이 권장된다. 그러한 문화공간은 특정 수용자를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수용자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구급시설에는 그와 같은 문화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용자들은 작업에서 돌아와 거실에 수용되면 자유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거실 내에서 보내야 한다. 거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오락활동이라고 해야 TV를 보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정도에 불과하다. 뻘뻘하고 갑갑한 일상에서 수용자들이 그나마 약간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시간은 사실 운동시간이 거의 유일하다. 이러한 수용현실에서 수용자들에게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일정한 오락활동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이 수용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성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본 평가항목은 구급시설에서 수용자의 오락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및 설비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하여 문화공간의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 수용자면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공간이란, 수용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기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실내공간을 말한다. 그 안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 등의 운동시설, 간단한 기구로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잡지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방,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작은 토론방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 a. 문화공간의 면적이 동시에 30명을 수용하여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오락 내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되는가를 평가한다. 면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며, 어떤 설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 동시수용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 b. 문화공간 안에 설치되는 오락 및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이 5종 이상의 오락 내지 문화활동을 보장하는가를 평가한다.
- c.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용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들이 순번대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 d. 문화공간에 한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출자료]

#### H2.4. 시설내 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현황

- ① 시설 내 문화공간의 위치와 면적
- ② 문화공간 안에 설치된 오락시설 및 문화활동시설의 종류(컴퓨터, 탁구 등 실내운동, 기구를 이용한 오락시설, 잡지 등을 읽을 수 있는 독서방 등등)
- ③ 문화공간의 활용방법(모든 수용자에게 허용되는가 여부 및 순환주기)
- ④ 문화공간의 1회 이용시 이용시간

[면담조사]

취미활동에 관한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선정기준은 H2.1.1. 참조)에 대하여 질문한다.

- 1) 시설 내에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가?
- 2) 그 안에는 어떠한 종류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 3) 모든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주기는 언제 돌아오는가?
- 4) 1회 이용 시 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현장조사] 문화공간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장소를 방문하여 30명 이상 동시수용 여부, 그 안에 마련된 오락 및 문화활동 시설의 종류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H3. 수용자-직원 관계와 수용자간의 관계

#### H3.1. 수용자와 교도관의 관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3.1.1. 교도관에 의한 폭언이나 무시당한 경험 여부	교도관으로부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얼마나 들었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평가지표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p>&lt;해설&gt; 교도관에 의한 폭언이나 인간적 무시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모멸감뿐 아니라 수용생활 적응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의 신뢰감이 깨어지면 교정이념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도관에 수용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p> <p>&lt;평가지침&gt; 신체적인 폭행만큼 영향력 있는 것이 언어적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동학대나 아내 학대 등의 경우에서 경험적인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에서도 정서적 학대와 언어적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p> <p>[설문조사]</p> <p>H1.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욕설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3.1.2. 교도관에 의한 신체적 폭행 경험 여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70%이상 9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p>&lt;해설&gt; 교도관에 의한 폭행은 교도관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벌목적의 폭행이나 보복성 폭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건화 된 폭행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수용자 구타는 수용자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p>				

보고 해당 교도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하고 있다(2003.5.7.자 02진인1649 결정). 수용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교정직원의 고문, 학대, 집단폭행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교도관의 물리력 사용은 엄격히 법령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징벌의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멱살을 잡거나 따귀를 때리는 등의 폭력은 가벼운 폭행으로 그리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권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저기준규칙 제54조 제1항은 “시설의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또는 피구금자의 도주기도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와의 관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지침>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설문조사]

H2.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따귀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H3.2 동료수용자와의 관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3.2.1.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언이나 무시당한 경험 여부	동료수용자로부터 욕설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70%이상 9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p>&lt;해설&gt; 동료수용자들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접촉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동료들 간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만큼 동료수용자간의 관계는 수용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입실거부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수용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또한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은근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용생활로 인한 고통이 자유박탈 그자체가 주는 고통을 넘어선 상황이 되는 것으로 최저기준규칙 제57조에 규정된 ‘부가적 고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평가지침>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설문조사]

H3.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동료 수용자로부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3.2.2. 동료수용 자간의 폭행 경험여부	수용자간 에 폭행이 얼마나 발생하는 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70%이상 9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해설> 구금생활에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갈등이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쇄된 공간에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의 갈등은 일단 표면화되면 일반사회에서 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다. 교정당국에서는 징벌 등을 통해 폭력사태를 예방하려고 하지만 갈등의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폭력사태의 책임을 개개인의 수용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적 갈등과 마찰에 따른 개인간의 폭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배태되는 폭력이다. 구금시설 내 폭행, 위협의 우려가 높은 수용자의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하는 등 거실배정이 수용자간의 폭행사건 발생을 방지하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구금시설의 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조직폭력배출신수용자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구금시설 직원이 수용자간의 폭행, 구타 등 불법행위를 묵인, 조장, 교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운동장, 취사장 등 취약지역에서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수용자폭행발생을 은폐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설문조사]

H4.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동료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3.2.3. 동료수용 자간의 성 접촉과 접촉과	수용자간 의 성적 접촉 발생정도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70%이상 9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성희롱 경험여부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해설> 구금생활 중 동성 수용자들 간에 성적인 접촉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으나 존재하고 있다. 징벌사유 중 성 접촉이 발견되며, 군대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도 성폭행과 추행이 있을 것이나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법무부의 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구금시설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사건으로 징벌처분을 받는 남성수용자들이 매년 평균 90-100명 선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57조에 의하면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인권침해의 중요한 단면이며 고통을 만드는 행위이다. 여기서 성적 접촉이란 키스나 애무, 성기접촉과 항문성교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설문조사]

H5.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동료 수용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키스나 애무, 성기접촉과 항문성교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그러한 성적 접촉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H3.3. 신체검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3.3.1. 신체검사 방법	신체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세부지표	a. 불투명한 칸막이가 있다. b.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 c. 가운을 입는다.	면담조사
		우수(4)	3개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행형법 제17조의 2에 의하면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 의류,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43조는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들

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호근무준칙 제73조 제2항은 신체검사 전에는 검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를 할 때에 “머리, 귀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알몸신체검사(strip search)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독일 행형법 제84조 제1항은 일반신체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알몸 신체검사는 위험이 있거나 소장이 명령한 때 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연방규정(CFR) 28편 55211조도 외표검사(pat search)를 원칙으로 하고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알몸신체검사는 금지품을 은닉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알몸신체검사는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알몸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도록 구분된 별도의 거실에서 하여야 하며 수용자들이 불필요한 심적 고통이나 수치심등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례(2000헌마327결정)는 비록 유치장 입감시의 신체검사와 관련된 것이지만, 모든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알몸신체검사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침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2002.10.14.자 02진인 664 결정). 이것은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진정인들이 신체검사 시 가운을 입지 않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요구받았고, 또한 그 중 생리중인 여성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알몸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알몸신체검사는 필요에 의해 실시될 수 있지만 피검사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의 요점이었다.

<평가지침>  
수용자면담을 통해 검신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수용자면담]

1. (신입시 또는 합동접견이 끝난 후, 작업이 끝난 후 등)의 신체검사 방법은? 알몸신체검사인가 아니면 옷을 입은 채 하는 일반신체검사인가?
2. 장소는 어떠한가? 칸막이는 있는가? 검신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3. 여러 명이 한꺼번에 아니면 한 사람씩 하는가?
4. (여성수용자와의 면담에서 질문)여성의 경우, 생리 중일 때 검신을 하게 되는 경우, 상황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3.3.2. 신체검사를 받을 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의 느낌	신체검사를 받을 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70%이상 9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p>&lt;해설&gt; 신입 시 또는 합동접견 후 검신을 할 때 그 방법에 따라 수용자들은 심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 여러 경험 연구의 결과로 밝혀지고 있다.(예, 국가인권위원회(2004),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96-97쪽). 많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부정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의 인격권을 지켜주는 상황에서 검신을 하여야 할 것이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H6.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또는 합동접견후 신체검사를 할 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p> <p>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p>			

### H3.4 거실검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3.4.1. 거실검사 방식	거실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세부지표	a. 검방 후에는 거실 안에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거나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b. 거실검사 후에 기물이 파손된다. c. 해당 수용자는 회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해 회수 전에 고지 받지 않는다.	면담조사
		보통(3)	1개 해당 또는 해당사항 없음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3개 해당	
<p>&lt;해설&gt; 행형법시행령 제42조는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도관직무규칙 제44조는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기타 작업장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 등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호근무규칙 제85조에 따르면 거실검사는 주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거실검사는 가급적 수용자가 거실 안에 없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86조는 거실검사는 도주, 자살, 화재, 난동 등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거실검사시 수용자의 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제88조 제1항), 회수를 요하는 물품은 해당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동 조 제2항), 수용자가 환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수용자가 거실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한다(동 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상 거실검사는 거실에 금지품을 은닉, 소지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p>				

이유가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으며, 징벌이나 보복의 목적으로 검방을 해서는 안 된다.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거실을 불시에 수색, 검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없지만 동시에 수용자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가지침> 면담을 통해서 거실검사와 관련해 a. 검방 후에는 거실 안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지, b. 거실검사 후에 기물이 파손되거나, c. 해당 수용자는 회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해 회수 전에 고지 받는지의 여부를 질문한다.

[수용자면담]

1. 검방은 얼마나 자주 받는가?
2. 검방후에는 거실안의 상태가 어떠한가?
3. 검방후 기물이 파손된 적이 있는가?
4. 회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수용자는 회수 전에 고지를 받는가?

## H4. 상담

### H4.1. 교정상담 전문가 확보와 상담실적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4.1.1. 교정상담 전문가 확보	상담 관련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탁월(5)	상임하는 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가 1명 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교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가 있다.	제출자료
		우수(4)	상주하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는 없으나 교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가 있다.	
		보통(3)	직원 중 범죄심리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다.	
		미흡(2)	직원 중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없으나 임상심리사 자격증이나 범죄심리사 자격증을 가진 교정위원이나 교정참여인사는 있다.	
		시정요함(1)	상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고 있지 못하다.	
<p>&lt;해설&gt; 폐쇄된 시설에서의 교정교화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기본적인 성행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용생활의 고통과 문제점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특히 임상심리학자, 범죄심리사 등과 같은 전문인들이 교정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영입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저기준 규칙 제 22조는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에서는 “가능한 한 직원중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사 및 직업강사가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간제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것을 아울러 권고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정시설마다 임상심리학자(clinical psychologist)나 정신과의사(psychiatrist)들이 고용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전문가의 확보가 개별 소단위에서 가능하지 않으나 지역 전문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으며 또 직원 중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 단위에서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이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한다. 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교정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하며, 교정참여인사란 소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활동을 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p>				

[제출자료]

H4.1. 상근 정신과의사나 임상심리사 명 수

H4.2. 직원 중 범죄심리사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자 수와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

H4.3. 교정위원 중 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 리스트

H4.4. 교정위원이나 교정참여인사 등 기타 자원봉사활동 인원 중 전문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리스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4.1.2. 교정위원 의 수	교정위원 1인당 수용자 수	탁월(5)	1인당 10명 미만	제출자료
		우수(4)	1인당 10명 이상 20명 미만	
		보통(3)	1인당 20명 이상 30명 미만	
		미흡(2)	1인당 30명 이상 40명 미만	
		시정요함(1)	1인당 40명 이상	

<해설> 교정위원제도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697호) 제3조는 “교정위원”을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운영지침은 교도소의 수용규모에 따라 전체 교정위원 수를 정하고 있는데, 제10조에 따르면

수용정원 1,500명 이상 : 100명 이상  
수용정원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 90명 이상  
수용정원 1,000명 미만 : 80명 이상  
수용정원 500명 미만: 40명 이상

으로 하한선만 규정을 하고 있다. 제 7조의 교정위원의 활동분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정신교육으로 수용자상담활동을 주요한 교정위원의 활동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수용자상담의 시간과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지침> 수용자 현재인원÷총 교정위원수  
수용자 인원은 A4.를 참조한다. 위에 제시된 인원수를 보면 그 기준은 대략 교정위원 1인당 수용자수를 12-17명 내외로 잡은 것이다. 이 하한선을 보통으로 하여 수용인원 대비 교정위원 수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H4.5. 전체 교정위원의 수와 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 별 인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4.1.3. 교회직공무원의 상담실적	교회직 공무원의 상담을 받은 수용자는 얼마나 되나?	탁월(5)	수용자 전원 100% 이상	제출자료
		우수(4)	수용자의 70% 이상 100%미만	
		보통(3)	수용자의 50%이상 70%미만	
		미흡(2)	수용자의 30%이상 50%미만	
		시정요함(1)	수용자의 30%미만	

<해설> 법무부 예규 제 587호 수용자교회 및 복지활동 지침 제 3장 교화상담에 따르면 교화상담은 일반상담과 교화상담으로 나누어, 일반상담은 담당직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교화상담은 교회직 공무원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교회직 공무원의 교화상담은 1) 신입수용자 및 만기석방 예정자, 2) 환자, 독거수용자, 징벌자, 사형 선고자 및 가족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 3) 교도관직무규칙 제8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수용자상담, 4) 기타 수용자요청에 의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80조제2항에서는 1. 성격형성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교정이 필요한 자, 2.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자, 3. 가족의 이산, 재산의 손실 등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4.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자, 5. 본인의 수용생활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상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담자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사항이 있는 수용자들은 교회직공무원이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수용자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차례는 고충처리차원을 넘어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지침> 교회직에 의한 교화상담 건수÷전체 수용인원 × 100  
한 명의 수용자가 여러번의 상담을 받는 경우에 한 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담을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전체수용인원은 제출자료 A4.를 참조한다.

[제출자료]  
H4.6. 전년도 교회직공무원의 교화상담실적 총 횟수를 상담 수용자의 성별로 나누어 제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4.1.4. 교화위원의 상담실적	교화위원의 교화상담을 받은 수용자는 얼마나 되나?	탁월(5)	수용자 전원 100% 이상	제출자료
		우수(4)	수용자의 70% 이상 100%미만	
		보통(3)	수용자의 50%이상 70%미만	
		미흡(2)	수용자의 30%이상 50%미만	
		시정요함(1)	수용자의 30%미만	

<해설> 교정위원제도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은 교화위원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1. 수용자상담, 결연활동 및 정신교육이 첫 번째 임무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 교화위원의 활동은 단순 위로행사나 물질위주의 지원보다는 정신적 감화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인간적 이해(rapport)의 형성과 이에 기반한 교화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수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달성될 수 있다고 볼 때 교화위원의 상담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평가지침> 교화위원에 의한 교화상담 건수 ÷ 전체 수용인원 × 100  
전체수용인원은 제출자료 A4.를 참조한다.

[제출자료]  
H4.7. 전년도 교화위원의 교화상담실적(횟수)을 상담 수용자의 성별로 나누어 제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H4.1.5. 중형이 예상되는 수용자의 자살, 자해 가능성에 대한 상담여부	중형이 예상되는 수용자의 자살과 자해 우려자를 판단하기 위해 상담을 하는가?	탁월(5)	중형이 예상되는 수용자에 대해 ‘모두’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임상심리사나 정신과의사)의 상담결과에 근거한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보통(3)	중형이 예상되는 수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임상심리사나 정신과의사)의 상담결과에 근거한다.	
		시정요함(1)	중형이 예상되는 수용자는 일단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p>&lt;해설&gt; 계구사용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li> <li>2.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li> <li>3.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li> <li>4.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li> <li>5.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li> </ol> <p>이 중 세 번째 해당사항인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 관한 평가가 이 평가항목이 관심을 가지는 측면이다. 중형이 예상되는 수용자란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금되는 수용자들을 말하는데, 일단 이들을 자살과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갑을 일주일 정도 채우고 관찰과 상담을 통해 자살자해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수갑을 푸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물론 구금시설에서 가장 강조를 두는 것 중</p>				

하나가 교정사고의 방지이고, 특히 수용자의 자살과 자해를 막지 못한 경우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교도관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살과 자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높은 강도의 감시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자살과 자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과적으로 아니면 심리진단을 통해 자살과 자해의 우려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의 관행대로라면 중형이 예상되는 범위를 행한 수용자에게는 기계적으로 금속수갑이 채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계적인 자살, 자해 우려 판단은 자살자해의 우려가 실제로 없는 수용자들에게 과도한 통제를 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자살자해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수용초기에 행해진다면 자살자해에 대한 기계적 판단과 기계적 적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지침> 자살자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출자료를 통해 밝히도록 하고, 교도관면담을 통해 실제 행해지는 방식을 파악한다.

[제출자료]

- H4.8. 중형예상 수용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 H4.9. 중형예상 수용자의 자살자해 우려 판단을 위한 상담여부
- H4.10. 자살자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을 받는가?

[교도관면담] 보안과 직원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수용자의 자살, 자해가능성에 대한 상담 여부를 질문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물어본다.

- 1) 자살자해 우려의 판단 근거
- 2) 중형예상 수용자에 대한 금속수갑 착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 I. 권리구제

### I 1. 소장면담

#### I 1.1. 소장면담 제도에 관한 고지 및 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1.1.1. 소장면담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교육의 실시 여부	소장면담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신입자 교육 시 교육을 통해 상세하게 고지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자료
			b. 모든 거실 내에 소장 면담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c. 모든 거실 내에 소장 면담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벽에 부착되어 있다.	
			d. 일반교육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탁월(5)	
우수(4)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와 관련하여 구금시설의 장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소장면담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36조에서도 “수용자는 주중에는 구금시설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구금자보호원칙 제33조에서도 “구금되거나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은 그에 대한 처우에 관해, 특히 고문이나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금시설의 관리를 책임진 당국이나 상위의 당국에,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권한이나 구제권한이 있는 적절한 당국에 불복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소장과의 면담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에게 소장면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수용자에게 소장면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는 일이다. 최저기준규칙 제35조 제1항은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행형법 제8조의2도 신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지사항에는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소장면담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

야 하며, 이에 따라 소장은 구금시설에 입소한 수용자에게 소장면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소장 면담은 수용자 자신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구금시설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구금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입자입소시점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언제든지 처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소장면담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참고로, 계호근무준칙 제79조 제2항은 “수용거실에는 수용자 생활안내 책자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지침>

1. 현장조사를 통해 거실 내에 안내문이나 안내책자가 부착 또는 비치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2. 수용자 면담을 통해 신입교육과 일반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조사한다.
3. 교육 내용에 ‘처우 및 인신 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신청절차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일반 교육’에는, 시청각 교육, 일반 정신교육시간에 이루어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포함한다.

[제출자료]

I 1. 전년도 소장면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수용자교육의 실시내역  
 (※ 신입자교육과 수용자대상교육을 구분하여 서술)  
 (※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현장조사]

1. 일반거실에 들어가 소장면담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 책자나 안내문이 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2. 일반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된 책자, 안내문의 내용을 조사한다.

[면담조사]

수용자 5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신입자 교육 시 소장면담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지 받았는지 여부, 2) 거실 내에 비치된 책자나 부착된 안내문에 소장면담 방법 및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입자 교육 이외에, 일반 교육시간에 소장면담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1.1.2. 소장면담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수용자는 소장면담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절차와	우수(4)	①과 ②의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방법에 대하여	보통(3)	①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인지 여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미흡(2)	①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해설> 수용자들은 소장 면담의 절차와 방법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I 1. 귀하는 소장면담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대체로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I 1.2. 소장면담의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1.2.1. 소장면담 신청권의 보장	교도관이 소장면담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해설> 이의를 제기한 수용자는 지체 없이 구금시설의 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용자가 소장면담 신청을 하더라도 구금시설 직원이 회유나 협박을 통해 수용자의 소장면담 신청을 방해하거나, 보고전을 받더라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소장면담 기회를 박탈한다면, 소장면담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 따라서 소장면담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장면담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법무부의 계호근무준칙 제134조는 “수용자로부터 청원, 소장면담 등 각종 출원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원서 등 출원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상소제기 및 상소의 취하, 포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정용지를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보안본부에 즉시 제출하여 가급적 신속히 법원 등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장 또는 간부직원에 대한 면담신청이 있을 때에는 보고문에 의하여 보안본부를 경유하여 관계 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물품구입, 영치금 환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안본부를 경유하여 관계 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수용자의 각종 출원사항은 당일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17조 제1항은 “수용자로부터 각종 출원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고 해당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정직원은 수용자가 소장면담 신청을 할 때 신속히 (당일에) 처리할 의무가 있다.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I 2. 귀하 혹은 동료수용자가 소장면담을 신청하고자 할 때 교도관이 이를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1.2.2. 소장면담 실적	소장면담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를 답변한 전체 인원 중 ①의 답변이 90% 이상인 경우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를 답변한 전체 인원 중 ①의 답변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보통(3)	①과 ②를 답변한 전체 인원 중 ①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미흡(2)	①과 ②를 답변한 전체 인원 중 ①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시정요함(1)	①과 ②를 답변한 전체 인원 중 ①의 답변이 30% 미만인 경우	

<해설> 소장면담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장면담이 실시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I 3. 최근 1년 동안 귀하는 소장면담을 신청하여 소장을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① 소장면담 신청을 하여 소장을 면담한 적이 있다  
② 소장면담 신청을 하였지만 면담을 할 수 없었다  
③ 소장면담 신청을 한 적이 없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1.2.3. 소장면담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소장면담 절차를 적절히 보장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소장이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인 면담 시간을 정하여 면담을 한다. b. 면담부에 신청사실을 기재하고, 순서에 따라 소장 면담을 한다. c. 소장 면담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3일 이내에 면담이 이루어진다. d. 소장 면담 결과를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p>e. 수용자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 면담을 한다.</p> <p>f. 특정수용자에게 면담이 집중되지 않는다.</p> <p>g. 연간 면담건수가 전체 수용자의 20% 이상이다.</p>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6개 해당	
	보통(3)	5개 해당	
	미흡(2)	3-4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해설> 구금시설의 장은 면담신청 수용자와 면담할 의무가 있다. 구금시설의 장은 매주 일정 시간대를 수용자와의 면담에 할애함으로써 수용자가 신청한 면담이 불필요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자가 구금시설의 장과의 면담을 서면 혹은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즉시 소장면담부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구금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금시설의 장은 수용자와 면담한 후 처리결과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 교도소의 소장면담부를 검토한 결과 소장이 특정수용자(고급공무원, 교직원, 지역 유지 등)를 선별하여 면담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소장은 차별 없이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한다. 소장면담은 수용자가 처우에 대한 불복을 위하여 1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므로 다른 권리구제절차보다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용자 상호간의 갈등이나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1차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장면담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와는 달리 연간 면담건수를 세부지표에 포함시켰다

<평가지침>

1. 소장면담부를 통해 연간 면담건수와 특정수용자에 대한 면담 편중 여부 그리고 면담신청 사실을 기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수용자 출원사항처리부에 기재된 면담 신청일과 소장 면담부에 기재된 면담일자를 비교하여, 신속성 여부와 신청순서에 따라 면담이 이루어지는 평가한다.
3. 수용자 및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기적인 면담 여부 및 소장면담 결과 통지여부를 조사한다.
4. 제출자료를 통해 연간 면담건수를 확인한다.

[제출자료]

- I 2. 전년도 1년간 수용자의 소장면담 신청건수와 실제 면담건수
- I 3. 전년도 소장 면담 불허사유와 사유별 건수
- I 4. 소장면담결과의 통지방법(구술, 서술 등)
- I 5. 소장면담제도의 내부운영기준(지침)

[기록조사] 소장면담부와 수용자 출원사항처리부를 살펴본다.

[직원면담]

1. 소장과 고충처리반 직원에게 소장면담을 어디에서 하는지 질의하고, 면담장소를 확인한다.
2. 소장과 고충처리반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와 면담하는지 확인하다.
3. 소장에게 소장면담 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다.

[수용자면담]

소장면담을 한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소장면담을 한 수용자가 전혀 없는 경우 소장면담을 신청한 수용자에게 1)을 질문한다.)

- 1) 소장면담 신청 시 신속하게 면담이 이루어지는가?
- 2) 소장 면담 후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는가?

## I 2. 청원

### I 2.1. 청원 제도에 관한 고지 및 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2.1.1.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교육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신입자 교육 시 교육을 통해 청원의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고지하고 있다. b. 모든 거실 내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c. 모든 거실 내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벽에 부착되어 있다. d. 일반교육시간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피구금자보호원칙 제33조는 “구금되거나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은 그에 대한 처우에 관해 특히 고문이나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금시설의 관리를 책임진 당국이나 상위의 당국에 불복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원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형법 제6조도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하여 부당처우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구금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작성하여 구금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그 장이 순회점검 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한다. 구두로 청원하고자 한 때에는 구금시설의 장은 순회점검 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용자가 순회점검 공무원 앞에서 구술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두로 청원할 때 교도관 등 당해 구금시설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수용자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수용자에게 이러한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는 일이다. 최저기준규칙 제35조 제1항은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 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행형법 제8조의2도 “구금시설의 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청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용자에게 입소 시에 청원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원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입소할 때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청원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평가지침>

1. 현장조사를 통해 거실 내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나 안내책자가 부착 또는 비치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2. 수용자 면담을 통해 신입교육과 일반교육 시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조사한다.
3. ‘청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청원 절차까지 포함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조사한다.
4. ‘일반 교육’에는, 시청각 교육, 일반 정신교육시간에 이루어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포함한다.

[제출자료]

I 6. 전년도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수용자 교육 실시내역  
 (※ 신입자교육과 수용자대상교육을 구분하여 서술)  
 (※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현장조사]

1. 일반거실에 들어가 청원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 책자나 안내문이 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2. 일반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된 책자, 안내문의 내용을 조사한다.

[면담조사]

수용자 5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신입자교육 시 청원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지 받았는지 여부, 2) 거실 내에 비치된 책자나 부착된 안내문에 청원 방법 및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입자교육 이외에 일반교육시간에도 청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2.1.2.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지 여부	수용자는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미만	

<해설> 수용자들은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I 4. 귀하는 청원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대체로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I 2.2. 청원의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2.2.1. 청원에 대한 보장 여부	교도관이 수용자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해설> 처우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용자가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정직원이 회유나 협박을 통해 방해하거나 청원서를 받고도 발송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행형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구금시설의 장과 직원은 청원서를 절대로 개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수용자가 청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청원서 집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집필허가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집필허가제도는 위헌, 위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필허가제도가 폐지되기 전이라도 교정직원 지체 없이 집필허가절차를 밟아 청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법무부의 수용자청원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는 “수용자가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담당교도관은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장은 당해 수용자에게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I 5. 귀하 혹은 동료 수용자가 청원을 하고자 할 때 교도관이 이를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2.2.2. 청원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청원 절차 및 방법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청원 집필신청 시 집필사유를 말할 필요가 없다. b. 청원서 집필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집필허가를 한다. c. 청원서를 봉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d. 구금시설측이 수용자로부터 청원서를 받은 즉시 송부한다. e. 법무부로부터 청원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f. 연간 청원건수가 전체수용자 인원의 3% 이상이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5개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2-3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청원은 헌법 제26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행형법 제6조는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용자가 처우에 대하여 불복수단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은 구금시설의 지휘·감독기관에게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청원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청원을 통해 수용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청원의 대상은 수용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사실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금시설의 제반문제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원 경험이 있는 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청원절차에 대하여 조사하고, 청원서 작성 시 집필신청 보고의무 여부, 집필허가의 신속성 여부, 비밀성 여부를 조사한다.</li> <li>2. 제출자료를 통해 연간 청원건수를 조사한다.</li> <li>3. 수용자 출원사향처리부에 청원 집필 신청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용자 청원부에 청원서 발송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원절차의 신속성 여부를 조사한다.</li> </ol> <p>[제출자료]</p> <p>I 7. 전년도 1년간 수용자의 청원 건수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구분)</p> <p>[기록조사] 수용자출원사향처리부와 수용자청원부를 조사한다.</p>					

[면담조사]  
 청원경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1) 청원 집필 신청 후 지체 없이 집필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2) 청원 집필신청 시 집필사유를 교정직원에게 알려야 했는지 여부, 3) 청원서를 담당 교도관에게 제출할 때, 본인이 직접 봉해서 제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2.2.3.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진정, 탄원)의 보장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을 허용하는가?	우수(4)	불허한 사실이 없다.	제출자료 설문조사
		시정요함(1)	불허한 사실이 있다.	

<해설>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청원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사항은 피해자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청원법 제4조). 최저기준규칙 제36조 제3항에서도 “모든 피구급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 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행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수용자의 실질적인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3항에는 “수용자가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타 관서로 발송하는 서신은 불허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적 차원의 민원서신은 허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제외)에 대한 청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위 불허사유는 수용자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행정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에 교정처우와 관련한 청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대한 청원의 금지는 위헌, 위법이다. 법원도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위와 같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써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그 제한 조치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392판결).

<평가지침>1. 먼저 제출자료를 통해 불허건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제출자료에서 불허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설문조사 평가자료를 통해 불허여부를 조사한다.

[제출자료]

I 8. 전년도 법무부장관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의 처리를 위한 내부기준과 처리실적(건수)

[기록조사]

1. 불허서신처리부를 검토하여, 1년간 위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원의 내용을 기재한 서신의 발송을 불허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2. 권리구제신청을 많이 한 수용자의 신분장 내용을 조사하여, 법무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서신을 보내려고 했으나 불허 당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조사한다.

[설문조사]

I 6. 법무부장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청원이나 진정을 하기 위하여 청원서나 진정서 등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 I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 I 3.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에 관한 고지 및 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3.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a. 신입자교육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지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b. 모든 거실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c. 모든 거실 내벽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d. 각 사동 입구 등 수용자들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 게시하고 있다.								
		e. 일반 교육시간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border="1"> <tr> <td>탁월(5)</td> <td>모두 해당</td> </tr> <tr> <td>우수(4)</td> <td>4개 해당</td> </tr> <tr> <td>보통(3)</td> <td>3개 해당</td> </tr> <tr> <td>미흡(2)</td> <td>2개 해당</td> </tr> <tr> <td>시정요함(1)</td> <td>1개 이하 해당</td> </tr> </table>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수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면을 제출하거나 면전진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서면진정은 구금시설 직원이 검열할 수 없고, 수용자는 진정서 서신을 스스로 봉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자가 면전진정을 하는 경우, 구금시설의 직원은 이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취 또는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 수용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진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는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진정등업무처리지침’ 제5조에는 “① 소장은 수용자로서 교정시설에 신입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위원회 진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신입자 교육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각 수용사동 입구 등 수용자들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별표 2]의 위원회 진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p> <p>1. 현장조사를 통해 거실 내에 안내문이나 안내책자가 부착 또는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각 사동 입구 등 수용자들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안내서가 비치, 게시되어 있는지</p>										

여부를 조사한다.

2. 수용자 면담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에 관한 신입교육과 일반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3. 교육 내용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신청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일반 교육’은 시청각 교육, 일반 정신교육시간에 이루어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포함한다.

[제출자료]

I 9. 전년도 진정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수용자 교육의 실시내역  
 (※ 신입자교육과 수용자대상교육을 구분하여 서술)  
 (※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현장조사]

1. 일반거실에 들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책자나 안내문이 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일반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된 책자, 안내문의 내용을 조사한다.
3. 각 사동 입구 등 수용자들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안내서가 비치,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면담조사]

수용자 5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신입자 교육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지 받았는지 여부, 2) 거실 내에 비치된 책자나 부착된 안내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방법과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입자교육 이외에, 일반교육시간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3.1.2. 진정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수용자가 진정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p>&lt;해설&gt; 수용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p>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I 7. 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대체로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I 3.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3.2.1. 진정에 대한 보장 여부	교정직원이 진정 절차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해설>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I 8. 귀하 혹은 동료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자 할 때 교도관이 이를 제지

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3.2.2. 서면진정 비밀성의 보장 여부	교정직원이 진정서를 부당하게 개봉 내지 폐기한 적이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정의 비밀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7항에는 “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불이익한 처우를 당할 수 있고, 이러한 염려가 진정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진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 내용의 비밀보장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설문조사]  
 I 9. 귀하 혹은 동료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자 할 때 교도관이 진정서를 부당하게 개봉 내지 개폐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3.2.3. 진정의 신속성 보장 여부	수용자의 진정의사가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 원회에 통보되는가?	우수(4)	진정서를 받은 당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되, 공휴일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접수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근무시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다.	기록조사
		보통(3)	진정서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다.	
		미흡(2)	진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3일 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다.	
		시정요함(1)	진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제31조 제2항에서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3항에서 “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가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서면진정처리부와 면진진정처리부를 보면, 수용자로부터 진정서 및 면진신청서를 접수받은 시간과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 시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은 시간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들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기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서면진정처리부와 면진진정처리부를 조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3.2.4. 진정함의 위치	진정함은 적절한 위치에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진정함 인접한 곳에 용지, 필기도구 및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다. b. 진정함에 ‘진정함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표시되어 있다. c. 각 관구실 앞에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다. d. 각 사동 안쪽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e. 작업장, 교육장 등 기타 시설에 설치되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a, b, c 모두 해당하고, d 또는 e에 해당	
		보통(3)	a, b, c 모두 해당하고, d 또는 e에 해당하지 않음	
		시정요함(1)	a, b, c, 중 일부만 해당함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는 진정함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합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수용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교도관이 진정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수용자가 교도관을 통하지 않고 송부를 요청하고자 할 때, 수용자 자신이 직접 진정함에 진정서를 넣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평가지침> 제출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제출자료] I 10. 현재 진정함의 개수와 설치위치

[현장조사]

1. 구금시설측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대로 설치되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2. 진정함에 ‘진정함 국가인권위원회’라고 기재되었는지 조사한다.
3. 각 관구실에 용지, 필기도구 및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3.2.5. 진정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진정의 절차와 방법이 적절하고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서면진정신청서 또는 면전진정서 집필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작성할 수 있다. b. 수용자가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한 후 교도관에게 제출한다. c. 접수증명원은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d. 열람금지서신을 개봉하지 아니한다. e. 취하를 강요하지 않는다. f. 진정결과서는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4-5개 해당	
		미흡(2)	3-4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소장면담,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등이 구금시설 또는 구금시설 상급기관에 대한 불복수단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한 구제는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면서 신속한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구금시설 내의 수용자들에게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한 권리구제의</p>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구제의 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정 내용에 대한 검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진정서는 구금시설 직원이 검열할 수 없으며, 수용자에게는 진정서 등 서신을 스스로 봉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금시설의 장은 진정서를 접수한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면전진정을 요청한 경우 구금시설의 장은 그 요청사실을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업무처리지침’에는 진정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평가지침>

1. 국가인권위원회 서면진정처리부와 면전진정처리부를 검토하면, 서면진정신청과 면전진정의사 표명일(진정접수 시각), 그리고 실제 서면진정서를 발송한 날과 면전진정신청을 한 날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날짜를 비교한 다음, 날짜 차이가 크게 나는 수용자 2인을 조사하여, 그와 같이 날짜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서면진정부와 면전진정부에는 수용자의 취하사실도 기재되어 있는데,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용자를 면담하여 취하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다.
3. 위에 열거한 각 진정부를 통해 신속한 접수증명원 교부 및 결정문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제출자료] I 11. 최근 1년간 진정 건수(표)

	수형자의 진정건수	미결수용자의 진정건수	비고
서면진정			
면전진정			
합계			

[기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서면진정처리부와 면전진정처리부를 조사한다.

[면담조사]

1. 서면진정한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1) 진정서를 제출할 때, 본인이 직접 봉해서 제출했는지 여부, 2) 진정신청을 하면 바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여부
2. 서면진정신청일과 진정서면전진정 발송일이 상이한 것으로 기재된 수용자 2인에게는 진정서 작성기간이 길게 된 이유를 질문한다.
3. 진정을 취하한 수용자 2인에게는 취하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다.

## I 4.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 I 4.1.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고지 및 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4.1.1.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교육	소송절차, 형사고소 등의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신입자교육을 통해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고지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b. 모든 거실 내에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설명 및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c. 모든 거실 내에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설명 안내문이 벽에 부착되어 있다.	
			d. 일반 교육시간에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탁월(5)	
	우수(4)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구금시설 측의 수용자에 대한 처분은 국가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언제든지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피구금자보호원칙 제33조도 “구금되거나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은 그에 대한 처우에 관해 특히 고문이나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금시설의 관리를 책임진 당국이나 상위의 당국에 불복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그 내용과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권리구제절차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형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신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35조 제1항도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금시설 신입자에게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지침>

1.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가 포함된다.
2. 현장조사를 통해 거실 내에 안내문이나 안내책자가 부착 또는 비치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3. 수용자면담을 통해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신입교육과 일반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p>4. 교육내용에 소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포함하여야 한다.</p> <p>4. ‘일반 교육’은 시청각 교육, 일반 정신교육시간에 이루어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포함한다.</p> <p>[제출자료]</p> <p>I 12. 전년도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수용자교육의 실시내역 (※ 신입자교육과 수용자대상교육을 구분하여 서술) (※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p> <p>[현장조사]</p> <p>1. 일반거실에 들어가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를 소개한 책자나 안내문이 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일반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된 책자, 안내문의 내용을 조사한다.</p> <p>[면담조사]</p> <p>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신입자 교육 시 권리구제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지 받았는지 여부, 2) 거실 내에 비치된 책자나 부착된 안내문에 권리구제 내용이나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입자교육 이외에 일반교육시간에도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4.1.2.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인지 여부	수용자는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p>&lt;해설&gt; 수용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I 10. 귀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대체로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4.2.1.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보장 여부	권리구제를 적절하고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p>&lt;해설&gt; 수용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소송(민사, 행정, 헌법 소송 등)이나 형사고소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필허가도 받아야 하고 집필문서발송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과정에서 서류작성이나 발송이 지연되거나 불허처분을 받아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구금시설 내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p> <p>[설문조사]</p> <p>I 11. 귀하 혹은 동료수용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하고자 할 때 교도관이 이를 제한한 적이 있습니까?</p> <p>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p>				

**I 4.2. 권리구제 절차의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4.2.2. 징벌조사 및 집행과정 에서의 변호사 접견 및 서신수발	징벌조사자 또는 징벌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 변호사접견 과 서신수발이 허용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일반 접견제한이나 내용검열 없이 접견과 서신교환이 허용된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b. 일반기결수와 마찬가지로의 범위 내에서 접견이나 서신교환이 허용된다.		
			c. 변호사와의 접견과 서신교환이 가능함을 수용자에게 고지한다.		
			탁월(5)		a 와 c 에 해당
			우수(4)		b 와 c 에 해당
미흡(2)	b만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국가인권위원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접견, 서신수발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고(2002.12.9.자, 02진인1064, 02진인126 부분병합결정), 법원도 징벌조사 등에 항의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접견</p>					

하거나 서신수발을 금지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3나3552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4. 6. 1. 선고 2003나5930 판결, ). 따라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위해서는 징벌조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와의 접견이나 서신교환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형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처분을 받은 동안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운동, 신문과 도서열람,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징벌의 내용 속에 접견, 서신수발, 운동 금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비록 금지기간 중의 접견허가 여부가 소장의 재량행위에 속하기는 하나, 피징벌자가 금지처분 자체를 다룰 목적으로 소 제기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한다면 이는 접견허가사유인 ‘처우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경우 당해 피징벌자는 미결수용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기본권 내지 인권보호의 책무를 지는 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당해 수형자가 침해당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당해 금지처분에 대한 불복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와의 접견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장의 접견 허가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새겨도 징벌의 실효성 확보나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에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3나3552 판결). 따라서 피징벌자에 대해서도 재판청구권을 보장을 위하여 변호사와의 접견이나 서신교환을 인정하여야 한다.

<평가지침>

1. 징벌 조사자와 피징벌자에 대한 변호사와의 접견 및 서신교환 인정여부를 조사한다.
2.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징벌조사자와 피징벌자에 대하여 변호사의 접견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평가의 기준은 기결수이다.

[제출자료]

I 13. 전년도 징벌조사자 및 징벌집행자의 변호사 접견 및 서신수발의 허용건수

[기록조사]

방문 당시 징벌 조사자와 징벌 집행자의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처우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요구한다.

[면담조사] (현장조사 시 징벌사동에서)

징벌조사 중에 있는 수용자와 징벌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본다.

- 1) 징벌 조사 기간 중에 변호사와의 접견이나 서신교환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 2) 징벌 조사 기간 중에 변호사와와 접견을 하거나 서신교환을 한 사실이 있는지,
- 3) 징벌 집행 기간 중에 변호사와의 접견이나 서신교환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 4) 징벌 집행 기간 중에 변호사와와 접견을 하거나 서신교환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4.2.3. 법률상담 프로그램	수용자의 법률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탁월(5)	법률전문가(공익법무관, 변호사 등)가 상주하여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법률전문가가 주 3회 이상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한다.	
		보통(3)	법률전문가가 주 1-2회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한다.	
		시정요함(1)	주 1회 이상의 법률전문가 무료상담 프로그램이 없다.	
<p>&lt;해설&gt; 수용자는 입소 이전에 발생한 문제나 구금시설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런데 외부와 격리되어 있어 법률전문가(공익법무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용자가 자신의 법률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여기서 법률전문가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하는 사법연수원생이나,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을 포함한다.</p> <p>[제출자료] I 16. 수용자의 법률적 상담요청에 부응하는 시설 내 프로그램에 대하여 서술하고, 전년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무료법률상담프로그램 등)</p> <p>[면담조사] 고충처리반이나 보안과 직원에게 법률전문가가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 구금시설을 방문하는지 여부와 방문하는 경우 그 횟수 및 상담건수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4.2.4. 법률상담 기회 제공 여부	수용자에게 법률상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법률상담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한다. b. 법률상담 날짜와 법률상담 장소 등에 관하여 고지한다. c.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법률전문가와 대면 상담할 수 있다. d. 서면으로 법률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 e. 법률상담 시간이 충분하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수용자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고, 구금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서도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수용자의 법률상담은 구금시설 내의 일반직원 및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에 의하여 외부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법률전문가의 방문상담)이 있을 수 있다.</p> <p>&lt;평가지침&gt; 수용자 면담조사와 담당 교도관을 통해 조사한다.</p> <p>[제출자료] I 17. 전년도 수용자의 법률상담의 건수와 내역 (표)</p> <p>[직원면담] 보안과 담당 직원에게, 법률상담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고, 수용자가 법률상담 신청을 하면 얼마 지나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한다.</p> <p>[수용자면담] 수용자 5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1) 구금시설 측에서 법률상담 날짜와 법률상담 장소 등에 관하여 고지하는지, 2) 구금시설 측에서 법률상담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는지, 3)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법률전문가와 대면 상담할 수 있는지, 4) 서면으로 법률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지 여부와 5) 법률상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본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I 4.2.5. 법률서적 구비 여부	도서실에 법률서적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법령집과 법률관련 서적을 각 사동마다 구비하고 있다. b. 법령집과 법률관련 서적을 도서실에 구비하고 있다. c.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수용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관련 서적을 구비하고 있다. d. 법령집과 법률관련 서적은 모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탁월(5)	모두해당	
		우수(4)	b, c, d 모두 해당	
		보통(3)	b, c, d 중 2개 해당	

		미흡(2)	b, c, d 중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수용자에게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서적을 구비하여 열람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한다.</p> <p>[제출자료]</p> <p>I 18. 도서실에 비치된 법률서적의 내용(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법률 관련서적의 종류</th> <th>장서 수</th> <th>전체 장서수 대비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최근 2년 사이에 발행된 법령집</td> <td></td> <td></td> </tr> <tr> <td>2년 이상 4년 미만 전에 발행된 법령집</td> <td></td> <td></td> </tr> <tr> <td>법학교과서류(대학에서 통상 교재로 활용하는 기본도서로서 최근 4년 이내에 발간된 서적)</td> <td></td> <td></td> </tr> <tr> <td>교과서 외 법률지식 관련 도서</td> <td></td> <td></td> </tr> <tr> <td>기타 법률 관련 도서</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r> </tbody> </table> <p>[현장조사] 각 사동 책꽂이와 도서실을 방문하여 법령 및 법률서적의 내용을 살펴본다.</p>					법률 관련서적의 종류	장서 수	전체 장서수 대비 비율	최근 2년 사이에 발행된 법령집			2년 이상 4년 미만 전에 발행된 법령집			법학교과서류(대학에서 통상 교재로 활용하는 기본도서로서 최근 4년 이내에 발간된 서적)			교과서 외 법률지식 관련 도서			기타 법률 관련 도서			합계		
법률 관련서적의 종류	장서 수	전체 장서수 대비 비율																							
최근 2년 사이에 발행된 법령집																									
2년 이상 4년 미만 전에 발행된 법령집																									
법학교과서류(대학에서 통상 교재로 활용하는 기본도서로서 최근 4년 이내에 발간된 서적)																									
교과서 외 법률지식 관련 도서																									
기타 법률 관련 도서																									
합계																									

## J. 교정직원

### J1. 교정인력과 업무수행

#### J1.1. 교정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우수(4)	100% 이상	
J1.1.1. 교도관 정원 대비 현재인원	교도관 정원에 비추어볼 때 현재 인원은 어느정도 인가?	보통(3)	95%이상 100% 미만	제출자료
		미흡(2)	90%이상 95%미만	
		시정요함(1)	90%미만	
		<p>&lt;해설&gt; 현재의 과밀수용상황에서는 교도관 정원이 다 채워진 경우라도 교도관 1인당 업무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정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서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과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교도관 정원과 비교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적으면 1인당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수용자처우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p> <p>&lt;평가지침&gt; (교도관 현원÷교도관 정원)×100 해당년도 제출자료를 가지고 계산한다.</p> <p>[제출자료] J1.과 소속별 교도관 정원과 현재인원</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탁월(5)	1인당 2명 미만	
J1.1.2. 교정공무 원 1인당 수용자수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 는?	우수(4)	1인당 3명 미만	제출자료
		보통(3)	1인당 4명 미만	
		미흡(2)	1인당 5명 미만	
		시정요함(1)	1인당 5명 이상	
		<p>&lt;해설&gt; 교정공무원 수 대비 수용자수는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처우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수용자수가 많은 대규모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가 적절하게 유지된다면 효율적인 수용자처우가 가능할 것이고 소규모시설이라 하더라도 1인당 수용자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효과적인 수용자처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적정 수준의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3월 기준으로 1: 5.1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외국과 비교해 볼 때</p>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외국의 교정직원 대 수용자 비율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법무부 교정국 교정과 제공).

구분	한국	미국(연방)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비율	1:5.1	1:3.9	1:3.0	1:2.2	1:1.9	1:1.3

<평가지침> 전체수용자인원(A.4 참조)과 전체 교도관수(J.1 참조)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서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계산방식: 전체수용인원÷전체교도관 인원

[제출자료] J2.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1.1.3. 사동근무자 1인당 수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사동근무자 1인당 수용자수는 얼마나 되는가?	탁월(5)	1인당 30명 미만	제출자료
		우수(4)	1인당 30명이상 50명 미만	
		보통(3)	1인당 50명이상 80명 미만	
		미흡(2)	1인당 80명이상 100명 미만	
		시정요함(1)	1인당 100명 이상	
<p>&lt;해설&gt;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461호) 제128조에 따르면 사동근무자는 사동안의 보안 및 수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동근무자의 직무는 대단히 다양하다. 사동근무자는 거실 안에 있는 수용인원을 확인 시찰하면서 자살 또는 도주우려가 없는지, 통방은 하지 않는지, 흡연이나 낙서 등 규율위반행위, 물품파손, 수용자간 폭행, 외설행위, 우두머리 행세 부정물품 제작, 거실의 청소상태, 특이행동자, 신입식 여부 등을 (제1항) 관찰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실을 시찰하고 최소한 30분에 1회 이상 시찰시간표에 서명해야 한다(제2항). 또한 수용자와의 고충상담(제130조), 환자의 조기발견(제131조), 사복관리(제133조), 청원, 소장면담 등에 대한 출원사항처리(제134조), 소송서류대필(제135조)과 소송절차 설명(제136조), 작업신청자 보고(제137조), 배식(제138조), 징벌자동정보고(제141조)등을 수행해야 한다. 즉 사동근무 교도관은 수용자들과 제일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 교도관이다. 거실에서의 생활질서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수용자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렵게 된다. 이것이 수용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에게 업무의 과도함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수용자처우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한다.</p> <p>[제출자료] J3. 사동근무자 수와 1인당 수용자수</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1.1.4. 교무과 직원 1인당 수용자수	교무과직원 1인당 수용자수는 얼마나 되는가?	탁월(5)	1인당 20명 미만	제출자료
		우수(4)	1인당 20명 이상 30명 미만	
		보통(3)	1인당 30명 이상 50명 미만	
		미흡(2)	1인당 50명 이상 80명 미만	
		시정요함(1)	1인당 80명 이상	
<p>&lt;해설&gt; 교도관직무규칙 제72조는 교회직 공무원의 직무를 수용자의 교육, 교회, 서신, 집필, 독서, 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에서는 수형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상담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복지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무과 소속 직원들의 주요업무는 수용생활과 이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상담이나 교정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등 범죄자의 교화개선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교무과 직원 1인당 수용자수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각급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참고로 보면 한 학급에 30명 정도가 교사 1인이 개별적인 지도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수로 알려져 있다. 개별화된 처우(individualized treatment)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으나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을 위한 계호인력과 교화를 위한 치료인력의 지나친 불균형이 시정될 때 개별처우의 철학인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한다.</p> <p>[제출자료] J4. 교무과직원 1인당 수용자수</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1.1.5. 전체교도관 중보안근무 교도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	전체교도관 중보안근무 교도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	탁월(5)	60% 미만	제출자료
		우수(4)	60% 이상 70% 미만	
		보통(3)	70% 이상 80% 미만	
		미흡(2)	8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90% 이상	
<p>&lt;해설&gt; 구금확보와 수용자 교정교화는 교정행정의 양대 목표이다. 교정조직상 구금확보의 역할은 보안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정교화는 교무과, 분류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도관직무규칙 제5조제2항에서 “보안근무”란 계호업무를 주된 직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직무는 대개 보안과, 출정과, 접견영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 구분에 대해서는 소장에게 재량을 주고 있다(동 조 제3항). 운영상에서 지나치게 보안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교정행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인 범죄자 교정을 포기하는 것</p>				

으로 여겨 질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도 1997년 1월 기준으로 총 237,041명의 교정직원 중 보안근무 담당 교도관이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안중심의 교정활동은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출처: Norman A. Carlson, Karen M. Hess, and Christine M.H. Orthmann, Corrections in the 21st Century: A practical approach, 1999, p. 431). 이 평가지표는 보안근무 담당 교도관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화담당 직원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키고, 균형있는 교정행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평가지침> (보안근무자의 수 ÷ 전체교도관 수) × 100  
 제출자료를 가지고 계산한다.

[제출자료]  
 J1. 전체교도관 현재인원  
 J5. 보안근무자 인원과 사무근무자의 인원

**J1.2. 업무수행**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①	②	
J1.2.1. 담당업무 외의 업무	업무분장이 확실하여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다른 업무는 하지 않는가?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p>&lt;해설&gt; 교도관의 업무만족도는 수용자처우의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업무만족도를 결정하는 여러 측면 중 하나는 명문화된 업무분장 이외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식자료에 의해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교도관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p> <p>&lt;평가지침&gt; 담당업무외의 업무란 정관과 내규, 그리고 지침 등 공식문서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해야 할 업무로 할당된 일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무과 직원들은 수용자 상담과 교육에 관련된 일이 주요업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을 분류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이 공식적인 업무이외의 일에 대한 교도관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교도관들의 근무상황의 단면을 파악한다.</p> <p>[교도관설문조사]</p>				

J2. 우리 소에서 업무분장은 매우 공식적이고 확실하며 담당업무 이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1.2.2. 업무순환 과 배치의 공정성	업무순환 과 배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 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해설> 관행적으로 교도관들은 보안계열은 2년, 사무계열은 3년에 한번 정도씩 업무순환을 통해 다양한 직무에 배치된다. 여러 직무 중 교도관들이 더 선호하는 직무와 덜 선호하는 직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순환과 배치의 기준이 얼마나 공정하게 행사되느냐는 교도관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주며 따라서 수용자와의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가지침>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교도관들의 인식을 평가하기로 한다.

[교도관설문조사]  
 J3. 우리 소에서는 업무순환과 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1.2.3. 상급자-하 급자간의 의사소통 원활성	하급자들의 의견이 상급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해설> 교도관의 직제는 상당히 위계적이다. 군대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는 상명하달은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만 하급자들의 소신이나 의견이 상급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어렵다. 하지만 조직의 유연성과 의사소통의 원활성은 교도관들의 직업의식과 직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수용자처우의 수준에

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

<평가지침> 의사소통의 원활성은 수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우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몇 사람의 의견만 청취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교도관들 다수에게 설문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을 취한다.

[교도관 설문조사]

J1. 우리 소에서는 하급자의 의견이 상급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며 업무수행에 잘 반영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1.2.4. 직원간의 업무갈등 정도	직원간에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얼마나 존재하는 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70%이상 9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p>&lt;해설&gt; 직원간의 업무갈등이란 성격이나 취향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인간적 갈등이 아니라 보다 조직구조상의 문제로 업무의 성격이 상충되거나 중복됨으로써 생겨나는 갈등을 말한다.</p> <p>&lt;평가지침&gt; 업무갈등의 존재여부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어느 조직에나 있기 때문에 무기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한다.</p> <p>[교도관설문조사]</p> <p>J6. 우리 소는 업무와 관련해 직원간에 갈등이 존재한다.</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1.2.5. 직원인권 교육	직원인권교육 개설의 공식성과 교육담당자	우수(4)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인권교육 전문 강사에 의해 시행되고 이와 함께 소장, 보안과장, 담당교감 등에 의해 수시로 인권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제출자료
		보통(3)	공식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나 소장, 보안과장, 담당교감 등에 의해 수시로	

		인권교육이 행해진다.	
	미흡(2)	담당교감에 의한 수시교육만 행해지고 있다.	
	시정요함(1)	인권교육이라 명명할 만한 교육이 없다.	
<p>&lt;해설&gt; 과거에 비해 인권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인권의식이 흐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뿐 아니라 수시로 인권에 대한 민감성 교육(sensitivity training)이 행해져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인권교육의 공식성과 정기적 개최여부, 그리고 수시교육 여부를 평가한다. 인권교육 전문강사란 인권위원회에서 파견된 강사나 인권관련 전공 교수, 인권단체 활동가, 기타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p> <p>[제출자료] J6. 전년도 직원인권교육의 일정과 내용, 1회 평균 대상인원, 강사, 이수시간</p>			

## J2. 근무여건

### J2.1. 근무시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2.1.1. 사무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은 얼마나 되는가?	사무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은 얼마나 되는가?	탁월(5)	주당 40시간 이하	제출자료
		우수(4)	주당 40시간 초과-44시간 이하	
		보통(3)	주당 44시간 초과-48시간 이하	
		미흡(2)	주당 48시간 초과-52시간 이하	
		시정요함(1)	주당 52시간 초과	
<p>&lt;해설&gt; 교도관의 직무형태는 사무계열과 보안계열로 구분된다(교도관직무규칙 제5조). 사무직이란 서무과, 교무과, 명적과, 의무과, 용도과 등을 말하고 보안계열이란 보안과, 출정과, 접견영치과 등을 말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17조는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제 18조는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사무직 직원은 다른 공무원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는 반면 보안계열 근무자는 주간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로 나뉘는 데 주간근무자는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p> <p>&lt;평가지침&gt; 사무직원의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제출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p> <p>[제출자료] J7. 사무직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2.1.2. 교대제근 무자의 주당 근무시간 은 얼마나 되는가?	교대제근 무자의 주당 근무시간 은 얼마나 되는가?	탁월(5)	주당 40시간 이하	제출자료 면담조사
		우수(4)	주당 40시간 초과 44시간 이하	
		보통(3)	주당 44시간 초과 48시간 이하	
		미흡(2)	주당 48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시정요함(1)	주당 52시간 초과	
<p>&lt;해설&gt; 교도관직무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교대제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제1부, 제2부 및 제3부의 3개부로 나누어 상호 교대하여 1일(24시간)씩 근무하게 한다. 교대제근무자들의 업무패턴인 3일간의 당무, 비번, 일근의 형태를 반복하는 3교대제도는 교도관들의 노동시간을 상당히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타 공무원들과는 달리 토요일휴무제에 대한 보장도 미흡하다. 장시간의 업무, 특히 주야를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는 교도관들은 직무와 관련한 과로와 상해의 위험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교도관과 근무의 특수성이나 환경이 유사한 다른 공무원과의 근무시간비교를 통해 보아도 교도관들의 근무시간은 상당히 장시간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주요기관별 근무시간 및 근무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p>				

기관	소방	경찰	교정	지하철공사	한국통신교환원
주당 근무시간	84시간	56시간	75시간	42시간	56시간
근무방식	24시간 2교대	12시간 3교대	혼합3교대	8시간3교대	1일 3교대

출처: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2003), 321쪽, 형사정책연구원

교대제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에는 24시간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전야와 후야로 교대되는 5시간의 취침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취침시간을 포함시킨 이유는 이 취침시간은 휴식의 측면보다는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평가지침> 3교대제의 경우 업무패턴이 한바퀴 도는 데는 6주정도가 소요되므로 6주간의 총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그것을 6으로 나누면 주당 노동시간이 나온다. 자료상의 노동시간과 실제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교도관 면접 시 확인절차를 거친다.

[제출자료]

J8. 교대제 근무자의 주당 노동시간에 관한 자료와 함께 야근직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책정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를 작성, 제출

[면담조사] 야근직원에게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질문한다.

### J3. 후생복지

#### J3.1. 사기진작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3.1.1. 사기진작 노력정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p>&lt;해설&gt; 구성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사기진작을 위해 각 교도소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p> <p>&lt;평가지침&gt;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교도관들의 인식을 평가하기로 한다.</p> <p>[교도관설문조사]</p> <p>J4. 우리 소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 J3.2. 시설접근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3.2.1. 교정직원 의 출퇴근 용이성	직원들은 출퇴근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고있는 가?	탁월(5)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통근버스 이용가능	면담조사
		우수(4)	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편이고 통근버스 이용가능	
		보통(3)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만 통근버스 이용가능	
		미흡(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지만 통근버스 이용가능	
		시정요함(1)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하고 통근버스도 이용할 수 없음	
<p>&lt;해설&gt; 시설의 입지는 직원의 근무여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저기준규칙 제 46조 제 3항 후단과 유럽형사시설규칙 제 54조 제 2항 후단은 직원의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이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설의 직원이 가능하면 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입지여건이 직원들의 출퇴근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p>				

<평가지침> 현장에서 확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여건을 확인한다. 교정관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제외한다.

[면담조사]  
 용도과 담당직원에게 직원들의 출퇴근 방법과 대중교통 접근성(버스노선, 배차시간, 택시 이용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J3.3. 휴가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3.3.1. 병가, 휴가, 보건휴가 등의 허용정도	병가, 휴가, 보건휴가 등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p>&lt;해설&gt; 병가나 휴가 등은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언제나 용이한 것은 아니다. 조직업무의 특성이나 조직문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도 눈치를 보고 알아서 삼가는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행의 존재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p> <p>&lt;평가지침&gt;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교도관들의 인식을 평가하기로 한다.</p> <p>[교도관설문조사]                      J5. 우리 소에서 병가나 휴가, 보건휴가 등을 원할 때에는 상급자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J3.4. 시설과 환경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3.4.1. 교도관을 위한	직원식당 의 청결과 음식 맛	우수(4)	평균값 3.5이상	설문조사
		보통(3)	평균값 2.5이상-3.5미만	
		미흡(2)	평균값 1.5이상-2.5미만	

시설만족 정도		시정요함(1)	평균값 1.5미만
<p>&lt;해설&gt; 교도관들의 업무가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미 보고하고 있다. 업무 중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이라고 보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 휴게실의 여건, 침실의 구조 등이 교도관의 직무피로를 덜어 줄 수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후생복리의 차원에서 시설내의 여러 여건들에 대해 교도관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해 본다. 먼저 직원식당의 청결성과 음식 맛에 대해 평가를 한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통계분석시 각 문항의 %가 아니라 2개 항목의 문항점수를 (즉 매우불만은 1점, 조금불만은 2점, 조금만족은 3점, 매우만족은 4점 식으로) 더한 후 2로 나누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든다. 이것은 새로운 변수의 평균값이 되는데, 이 새로운 변수의 값은 1점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평균값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평균값 1.5미만=시정요함                  평균값 1.5이상-2.5미만=미흡                  평균값 2.5이상-3.5미만=보통                  평균값 3.5이상=우수</p> <p>[교도관설문조사]                  J9. 여러분들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불만    조금불만    조금만족    매우만족                            ①            ②            ③            ④</p> <p>1) 직원식당의 음식맛                  2) 직원식당의 청결</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3.4.2. 교도관을 위한 시설만족 정도	숙소 만족도	우수(4)	평균값 3.5이상	설문조사
		보통(3)	평균값 2.5이상-3.5미만	
		미흡(2)	평균값 1.5이상-2.5미만	
		시정요함(1)	평균값 1.5미만	
<p>&lt;해설&gt; 교도관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미 보고하고 있다. 업무 중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이라고 보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 휴게실의 여건, 침실의 구조 등이 교도관의 직무피로를 덜어 줄 수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후생복리의 차원에서 시설내의 여러 여건들에 대해 교도관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p>				

가해 본다. 여기서는 숙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숙소는 교대제근무를 하는 교도관들이 전야, 후야로 나누어 5시간씩 취침을 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숙소의 협소함,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서 자야 하는 것, 개인침구가 없어 위생이 불량한 경우, 숙소의 냉난방 등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점차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격무를 감안할 때 취침여건은 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침>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통계분석시 각 문항의 %가 아니라 3개의 문항점수를 (즉 매우불만은 1점, 조금불만은 2점, 조금만족은 3점, 매우만족은 4점 식으로) 더한 후 3으로 나누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든다. 이것은 새로운 변수의 평균값이 되는데, 이 새로운 변수의 값은 1점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평균값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평균값 1.5미만=시정요함  
 평균값 1.5이상-2.5미만=미흡  
 평균값 2.5이상-3.5미만=보통  
 평균값 3.5이상=우수

[교도관설문조사]  
 J9. 여러분들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불만    조금불만    조금만족    매우만족  
 ①                    ②                    ③                    ④

3) 숙소의 냉난방  
 4) 숙소의 침구  
 5) 숙소에서 1회당 함께 잠자는 사람의 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3.4.3. 교도관을 위한 시설만족 정도	휴게실의 여건	우수(4)	평균값 3.5이상	설문조사
		보통(3)	평균값 2.5이상-3.5미만	
		미흡(2)	평균값 1.5이상-2.5미만	
		시정요함(1)	평균값 1.5미만	

<해설> 교도관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미 보고하고 있다. 업무 중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이라고 보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 휴게실의 여건, 침실의 구조 등이 교도관의 직무피로를 덜어 줄 수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시설내의 여러 여건들에 대해 교도관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해 본다. 휴게실은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고 담소를 나누는 등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휴게실이 실제로 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휴게실이 형식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지침>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통계분석시 각 문항의 %가 아니라 3개의 문항점수를 (즉 매우불만은 1점, 조금불만은 2점, 조금만족은 3점, 매우만족은 4점 식으로) 더한 후 3으로 나누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든다. 이것은 새로운 변수의 평균값이 되는데, 이 새로운 변수의 값은 1점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평균값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평균값 1.5미만=시정요함

평균값 1.5이상-2.5미만=미흡

평균값 2.5이상-3.5미만=보통

평균값 3.5이상=우수

[교도관설문조사]

J9. 여러분들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불만    조금불만    조금만족    매우만족

①

②

③

④

6) 휴게실의 크기

7) 휴게실의 소파 등 가구

8) 휴게실의 냉난방

## J4. 수용자와의 관계

### J4.1. 수용자로부터의 욕설과 무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4.1.1. 수용자로부터의 욕설과 무시경험	수용자로부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투를 얼마나 경험하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70%이상 9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p>&lt;해설&gt; 교도관의 직무상 수용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갈등과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폭행은 교도관에 의해서건 수용자에 의해서건 발생할 수 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직무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며 수용자와의 관계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p> <p>&lt;평가지침&gt; 교도관들은 수용자로부터 폭언이나 협박, 나아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 그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의 발생이 교도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보는 관행 때문에, 또 교도관으로서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보는 조직문화 때문에 사태의 결과가 상당히 심각한 사례만이 공개되고 알려진다고 한다. 이러한 관행과 문화를 고려할 때 기록된 사건보다는 무기명의 설문이 더 타당하고 실재에 근접한 결과를 가져 올거라 생각된다.</p> <p>[교도관설문조사]                      J10.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수용자로부터 욕설이나 인신공격, 무시하는 말투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p>				

### J4.2. 수용자로부터의 신체적 폭행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4.2.2. 수용자로부터의 신체적 폭행경험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얼마나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70%이상 9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경험하는가?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p>&lt;해설&gt; 교도관의 직무상 수용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갈등과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폭행은 교도관에 의해서건 수용자에 의해서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직무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며 수용자와의 관계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p> <p>현재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폭행은 사회전체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위의 적극적 권고와 감시로 과거보다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데 반해 수용자로부터 인신공격이나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의 경우는 사회로부터도, 인권위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교도관의 업무와 지위 상 수용자의 폭행과 교도관의 폭행이 단순비교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폭행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표출적(expressive) 특성을 가진 행위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현상에 대한 시각의 균형을 위해서도 수용자와 교도관의 관계를 양쪽 시각에서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p> <p>&lt;평가지침&gt; 교도관들은 수용자로부터 폭언이나 협박, 나아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 그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의 발생이 교도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보는 관행 때문에, 또 교도관으로서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보는 조직문화 때문에 사태의 결과가 상당히 심각한 사례만이 공개되고 알려진다. 이러한 관행과 문화를 고려할 때 기록된 사건보다는 무기명의 설문이 더 타당하고 실재에 근접한 결과를 가져 올거라 생각된다.</p> <p>[교도관설문조사]</p> <p>J11.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수용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따귀를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p> <p>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p>			

## J5. 여성교도관과 양성평등

### J5.1. 여성교도관의 업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5.1.1. 여성교도관 대 여성수용자수	여성교도관의 1인당 여성수용자수는?	탁월(5)	1인당 3명 미만	제출자료																						
		우수(4)	1인당 5명 미만																							
		보통(3)	1인당 8명 미만																							
		미흡(2)	1인당 10명 미만																							
		시정요함(1)	1인당 10명 이상																							
<p>&lt;해설&gt; 행정법상 여성수용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p> <p>&lt;평가지침&gt; (여성수용자수 ÷ 여사근무 여성교도관 수)                      여성교도관 중 여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서무과나 용도과 등의 사무직원과 간호사, 영양사, 민원실 근무자, 교환원 등 여직원은 제외하고 여사에서 근무하는 여성교도관 1인당 여성수용자수를 계산한다. 여성수용자수는 A.4 참조</p> <p>[제출자료] J9. 여성교도관의 과 소속별 인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서무과</th> <th>보안과</th> <th>분류심사과</th> <th>작업과</th> <th>용도과</th> <th>교무과</th> <th>의무과</th> <th>출정과</th> <th>명적과</th> <th>접견영치과</th> <th>여사근무 여자교도관</th> </tr> </thead> <tbody> <tr> <td> </td> </tr> </tbody> </table>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용도과	교무과	의무과	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	여사근무 여자교도관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용도과	교무과	의무과	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	여사근무 여자교도관																

### J5.2. 여직원을 위한 편의시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5.2.1. 여성교도관을 위한 편의시설 구비정도	여성교도관을 위한 시설은 잘 마련되어 있는가?	a. 여성전용 휴게실		현장조사
		b. 별도의 탈의실		
		c. 별도의 화장실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여성전용 교도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여성교도관은 소수이다. 또한 일반교도소에서 여사를 제외하고(여사에는 여성직원을 위한 시설들이 대개는 갖추어져 있음) 여성교도관은 더 소수이다. 그 결과 여사를 벗어나면 주요업무부서가 있는 건물에</p>				

여성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심지어 여성용 화장실이 없고 남성용 화장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직원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교도관을 위한 여러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양성평등적 관점이 없이는 어렵다. 여사안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아닌 주요부서가 있는 건물에 마련된 여성직원 편의시설의 여부를 통해 교정조직의 양성평등적 인식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평가지침> 여사가 아닌 주요부서가 있는 건물에 근무하는 여성교도관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존재여부를 관찰하여 평가한다.

[현장조사]  
교도소의 주요부서가 있는 건물에 있는 여성직원용 시설의 유무를 확인한다.  
직원에게 시설유무를 확인한다.

### J5.3. 양성평등적 근무평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5.3.1. 근무평정과 업무분장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근무평정과 업무분장에서 남녀교도관에 차등을 두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p>&lt;해설&gt;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양성평등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회 내에서의 남녀차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차별 보다는 더 미묘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타당해 보이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여성차별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근무평정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무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데 직무교육 과전에 여성보다는 남성직원을 보낸다거나 또는 업무배치에서 여성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은 과에 배치를 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결과 중 여성교도관의 응답만을 가지고 평가한다. 설문에 응답하게 될 여성교도관의 수는 여성전용 교도소를 제외하고는 매우 소수일 것이다(10명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에 대한 남성교도관의 응답은 측정하고자 하는 측면을 제대</p>				

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학상 일반화의 오류를 감수하고서라도 여성직원의 응답만을 가지고 평가한다.

[교도관설문조사]

J7. 우리 소에서는 근무평정과 업무분장에서 남녀교도관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J5.4. 모성지원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5.4.1. 여성교도관을 위한 모성지원책	여성교도관을 위한 지원책이 잘 이용되는가?	탁월(5)	① 과 ②의 비율이 3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 과 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보통(3)	① 과 ②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미흡(2)	① 과 ②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	
		시정요함(1)	① 과 ②의 비율이 90% 이상	
<p>&lt;해설&gt; 여성교도관은 일과 함께 출산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탁아시설의 마련과 출산휴가, 보건휴가 등을 여성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 결과 중 여성교도관의 응답만을 가지고 평가한다. 설문에 응답하게 될 여성교도관의 수는 여성전용 교도소를 제외하고는 매우 소수일 것이다(10명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에 대한 남성교도관의 응답은 측정하고자 하는 측면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학상 일반화의 오류를 감수하고서라도 여성직원의 응답만을 가지고 평가한다.</p> <p>[교도관설문조사]</p> <p>J8. 우리 소는 여성교도관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출산휴가, 육아휴직, 보건휴가, 탁아시설 설치 등)이 잘 활용되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p>				

**J5.5. 직무교육 기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J5.5.1. 여성교도관을 위한 직무교육 기회 등	여성직원을 위한 교육기회는 얼마나 제공되는가?	우수(4)	여성교도관과 남성교도관의 비율 사이에 5%미만의 차이가 날때	제출자료
		보통(3)	여성교도관과 남성교도관의 비율 사이에 5%이상 15%미만의 차이가 날때	
		미흡(2)	여성교도관과 남성교도관의 비율 사이에 15%이상 25%미만의 차이가 날때	
		시정요함(1)	여성교도관과 남성교도관의 비율 사이에 25%이상의 차이가 날때	
<p>&lt;해설&gt; 이 항목은 여성교도관에게 남성동료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기준규칙 제47조제3항에 의하면 교정공무원들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제공되는 연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지식과 전문적 능력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도관들의 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직무교육 이수인 인사고과에 포함되어 향후 승진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직무교육에의 참여기회는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는 지의 여부는 양성평등 원칙상 매우 중요하다. 이 평가항목에서 직무교육이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의 교육프로그램과 기타 다수의 직원 중 어떠한 형식으로든 선발을 통해 소수의 직원만이 참여하게 되는 교육프로그램만을 말한다.</p> <p>&lt;평가지침&gt; 성별 직무교육 참여자 수를 가지고 계산한다.  직무교육(법무연수원 교육 등 선발된 소수직원이 참여하는 교육)에 참여한 남자교도관수 ÷ 총남자교도관 수 × 100 과 직무교육(법무연수원 교육 등 선발된 소수직원이 참여하는 교육)에 참여한 여자교도관수 ÷ 총여자교도관 수 × 100을 비교하여 평가한다.</p> <p>[제출자료]  J10. 직무교육(법무연수원 교육 등 소수의 직원만이 선발, 참여하는 교육) 참가자 성별 분포</p>				

## K. 소수수용자

### K1. 여성수용자

#### K1.1. 여성수용자 작업, 직업훈련 그리고 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1.1. 여성수용자 작업유형	여성수용자를 위한 작업유형이 얼마나 다양한가?	탁월(5)	직원식당 취사나 청소, 세탁 이외에도 기타 작업유형이 4개 이상 있다.	제출자료
		우수(4)	직원식당 취사나 청소, 세탁 이외에도 기타 작업유형이 3개 있다.	
		보통(3)	직원식당 취사나 청소, 세탁 이외에도 기타 작업유형이 2개 있다.	
		미흡(2)	직원식당 취사나 청소, 세탁 이외에도 기타 작업유형이 1개 있다.	
		시정요함(1)	직원식당 취사나 사동청소, 세탁 이외에 다른 작업이 아무것도 없다.	
<p>&lt;해설&gt;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한 일반교도소의 여성수용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 때문에 작업이나 교육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업의 경우에, 여성수용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작업의 내용은 직원식당에서 취사를 하거나 사동청소(사소), 세탁을 하는 것이며 이외의 작업은 거의 없거나 수적으로 적다. 이것은 여성수용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작업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여성의 역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취사나 사동청소, 세탁 등에 여성수용자들의 작업이 집중되어 있고 다른 작업 유형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성의 직업인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London King's College부설 국제교도소센터에서 발간한 『교도소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교도관을 위한 지침서』도 “여성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에게 바느질이나 수공예 같은 활동만 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p.101)고 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수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많은 여성수용자들이 일을 하기는 원하지만 일할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를 볼 때 여성수용자를 위한 작업이 비록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더라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p> <p>&lt;평가지침&gt; 여성수용자의 작업유형을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취사나 청소 등의 작업은 없이 다른 유형의 작업이 있는 경우 취사나 작업등을 제외한 작업 개수로 평가한다.</p> <p>[제출자료] K1.1. 여성수용자를 위한 작업의 종류 및 참여인원(취사, 사동청소, 세탁을 포함할 것)</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1.2. 여자수형 자 중 미지정인 원의 비율	여자수형 자 중 작업을 하지 않는 수용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탁월(5)	미지정인원의 비율이 2% 미만	제출자료
		우수(4)	미지정인원의 비율이 2%이상 5% 미만	
		보통(3)	미지정인원의 비율이 5% 이상 10%미만	
		미흡(2)	미지정인원의 비율이 10% 이상 20%미만	
		시정요함(1)	미지정인원의 비율이 20% 이상	

<해설> 교도작업의 목적은 근로의식의 함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 그리고 교도소 생활의 권태로움 해소 등 여러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기결수들은 작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데, “미지정”이란 작업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미지정의 사유는 병자나 임산부, 노약자, 외국인 등 이외에도 징벌로 인한 일시적 작업 중지와 작업이 없어 본인이 작업을 하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신체적인 문제나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할 작업이 없어 작업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병자 등을 제외하고 미지정인원이 많다는 것은 교정당국이 새로운 작업을 개발하는 일을 활발히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미지정인원의 문제는 여성수용자들에게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교도소의 여사에 있는 여성수용자들을 위한 작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수용자들은 거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미지정인원의 비율을 통해 여성수용자들의 작업과 관련한 상황을 이해하고 여성수용자들을 위한 작업유형 개발과 도입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지표라 할 수 있다.

<평가지침>  $\text{취업이 가능하나 미 취업한 인원 (미지정인원)} \div (\text{여성수형자 총인원} - \text{취업 불가능한 인원}) \times 100$

1. 미결수는 제외하고 기결수, 즉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미지정인원을 파악한다.
2. 먼저 수형자 총인원을 파악하고 그 중 취업이 불가능한 인원(평가시점에서 환자,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징벌집행 중인자 등)을 빼면 취업가능한 인원이 된다. 이 취업가능한 인원은 실제 작업에 참여 중인 인원과 취업하지 않은 인원(미지정인원)으로 구분된다. 취업 불가능한 인원과 취업가능인원을 합하면 여성수형자 총인원이 되어야 하고, 취업인원과 미지정인원을 합하면 취업가능인원의 수와 같아야 한다.

[제출자료] K1.2. 여성수형자 인원, 취업불가능인원, 취업가능인원 등 (평가자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항의 인원을 제시)

여성수형자총인원		
취업 불가능한 인원(환자, 고령자, 임산부, 징벌집행 중)		
취업가능인원	취업인원	
	미지정인원	
	합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1.3. 여성수용 자를 위한 직업훈련 기회 부여	여성수용 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 얼마나 있는가?	탁월(5)	4개 이상의 직업훈련 종목이 있다.	제출자료
		우수(4)	3개 이상의 직업훈련 종목이 있다.	
		보통(3)	2개의 직업훈련 종목이 있다.	
		미흡(2)	1개의 직업훈련밖에 없다.	
		시정요함(1)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p>&lt;해설&gt; 이제 더 이상 여성에게 직업이란 선택이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여성수용자들 중 많은 수가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로 돌아간 후 자녀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거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보조적으로 구색 맞추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여성수용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 여겨지는 미용, 봉제, 요리 등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 컴퓨터 워드 교육을 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수용자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에 조리(한식, 양식, 제빵 등), 컴퓨터, 미용, 봉제, 홈패션, 자수 등과 함께 자동차운전이나 정비, 원예 등도 포함되어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2000). 이를 통해서 여성수용자를 위한 직업훈련 종목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항목에서는 각 교도소가 여성수용자를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적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여성수용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유형을 파악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일이라고 여겨져 온 미용이나 봉제, 자수, 요리 외에 어떤 직업훈련 종목이 있는 지를 파악하여 평가한다.</p> <p>[제출자료] K1.3. 여성수용자를 위한 직업훈련 종목과 참여인원</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1.4. 여성수용 자를 위한 학과교육 기회 부여	여성수용 자를 위한 학과교육 프로그램 이 얼마나 있는가?	세부지표	a. 초, 중, 고등 학과교육 b.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c. 전문대학교육 d.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교육 e. 외국어 및 한자교육 f. 정보화교육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제출자료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77조에 의하면 모든 피구금자의 최소한의 개인적 필요성과 희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교육프로그램이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수용자들에게도 당연히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의 London King's College부설 국제교도소센터에서 발간한 『교도소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교도관을 위한 지침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성수용자의 수가 적거나 제한된 시설 때문에 여성수용자들의 활동은 남성보다 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기술훈련의 기회도 더 적다. 작업기회도 여성의 전통적인 작업으로 생각되는 바느질이나 청소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교정당국은 여성도 남성수용자들처럼 교육과정과 기술훈련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수용자 중 학과교육을 받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수용자 중 학과교육을 받는 여성수용자 비율의 2배를 넘는다고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1999, pp. 64-65). 그만큼 여성수용자들은 학과교육의 기회에서도 남성수용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여자교도소가 아닌 일반교도소의 여사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수용자들은 더 심각한 기회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K1.4. 여성수용자를 위한 학과교육 프로그램 종류와 참여인원

**K1.2. 여성성 유지를 위한 지원 실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2.1. 화장품 구매가능성과 다양성	기초화장품,	탁월(5)	원하는 모든 종류와 회사의 제품을 살 수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구입용이성과	보통(3)	스킨과 로션, 영양크림만 2개 이상의 회사제품 중에서 비교 구매할 수 있다.	
	물품다양성	시정요함(1)	스킨과 로션, 영양크림 중 한 두개만 한 회사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해설> 행형법시행령 제94조는 “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말하는 화장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 교도소들의 상황을 보면 “화장품”이 색조화장품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

명해 진다. 그러나 기초화장품으로 한정하더라도 기초화장품의 품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리 쉽게 대답을 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는 스킨과 로션이 기초화장품으로서 간주되었으나 점차 기초화장품과 피부 관리에 여성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초화장품의 구성품목에 대해서도 품목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수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났는데, 추가하기를 원하는 화장품은 영양크림이었고, 한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제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한 일반교도소의 여성수용자들은 스킨, 로션과 같은 기초화장품의 구입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수용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한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여성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평가지침> 제출된 구매물품과 구매의약품 목록을 확인하여 스킨, 로션, 영양크림 구매가 가능한 지, 한개 이상의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본다. 구매물품 목록에 있는 것과 의약품 목록에 있는 니베아나 존슨 앤 존슨 제품의 종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K1.5. 여성용 화장품 구매물품 목록 및 제품회사 명(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모두)

[수용자면담]

여성수용자에게 현재 구입이 가능한 기초화장품의 종류를 묻고, 화장품 브랜드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2.2. 여성용 속옷 구입가능성과 다양성	여성용 속옷은 종류별로 구입용이하고 사이즈도 다양한가?	우수(4)	브래지어나 팬티, 런닝 모두 자기 체형에 맞는 치수로 구매가능하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보통(3)	팬티, 런닝은 자기체형에 맞는 치수로 구매가능하나 브래지어는 구입할 수 없다.	
		미흡(2)	팬티, 런닝은 구입 가능하지만 치수는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수인 중간치수 밖에 없으며 브래지어는 구입할 수 없다.	
		시정요함(1)	여성용 속옷의 구입이 불가능하다.	

<해설>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한 일반교도소의 여성수용자들은 여성용품의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급물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매물품구입에서라도 여성용품의 구입이 수월해야 한다. 여성수용자들의 수가 적은 시설에서는 여성용 속옷이 아니라 남성용 속옷만 제공되고 있는 곳도 있다.

<평가지침> 브래지어와 팬티, 런닝이 사이즈별로 구입가능한지, 구입 가능한 사이즈 종류 등을 제출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수용자면담에서 확인한다.

[제출자료] K1.6. 여성용 속옷 구입가능성과 치수 다양성

	구매가능여부	구매가능한 사이즈종류
브래지어		
런닝		
팬티		

[수용자면담]  
여성수용자에게 1) 런닝, 팬티, 브래지어를 구매가능한지 여부, 2) 원하는 사이즈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2.3. 관급생리대 지급여부	생리대는 원칙적으로 관급으로 지급하는가?	우수(4)	여성수용자에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생리대를 관급으로 제공한다.	제출자료
		미흡(2)	관급으로 지급하지만, 부족하다.	
		시정요함(1)	관급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p>&lt;해설&gt; 생리는 여성 특유의 신체적 특성이다. 사람이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하는 것처럼 가임기 여성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한달에 한번씩 생리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리대는 여성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이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살 수 없다고 해서 생리대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성수용자에게 생필품에 해당하는 생리대는 관급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생리대의 관급지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p> <p>[제출자료] K1.7. 관급생리대 지급여부 및 지급기간</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2.4. 관급생리대의 품질과 양	관급으로 지급되는 생리대는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충분히	세부지표	a. 생리대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이다. b. 한 달에 한번 이상 지급된다. c. 생리대의 품질이 구매품과 유사하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2개 해당	

제공되는가?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여성수용자에게 생리대는 원칙적으로 관급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생리대의 양이 충분해야 하며, 생리의 양에 따라 생리대의 종류를 조절할 수 있게 두 가지 이상의 생리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제공되는 생리대의 품질은 구매할 수 있는 생리대의 품질과 같아야 한다. 이 점은 특히 중요한데, 생리대의 품질에 따라 여성건강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지침> 관급 생리대의 제공여부, 제공되는 물품의 종류, 지급기간, 1회 지급되는 양 등에 대해 제출자료를 참조하고, 수용자면담에서 아래의 질문을 통해 평가한다. 관급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K1.7. 관급 생리대의 종류와 지급기간, 지급량

[수용자면담]  
여성수용자에게 ‘관급생리대의 품질과 양은 만족할 만한가? 사용하는가?’를 묻는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2.5. 생리대 다양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탁월(5)	원하는 종류는 다 구매가능하다.	면담조사
		보통(3)	두 가지 종류만 구매가능하다.	
		시정요함(1)	한 가지 종류만 구매가능하다.	

<해설>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한 일반교도소의 여성수용자들은 여성용품의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급물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매물품구입에서라도 여성용품의 구입이 수월해야 한다. 생리대의 경우, 크기에 따라 대, 중 두가지 종류가 주로 제공되고 있으나, 생리대 가격을 고려할 때 양이 적은 날을 위한 팬티라이너가 선택가능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평가지침> 팬티라이너, 오버나잇, 날개, 슬립, 요실금용 등 다양한 생리대 종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수용자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수용자면담] 여성수용자에게 생리대 구매여부와 원하는 사이즈 및 종류를 물어본다.

**K1.3. 여성을 위한 상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3.1.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회직공무원의 상담실적	교회직공무원에 의해 상담을 받은 여성수용자는 얼마나 되는가?	탁월(5)	여성수용자 상담비율이 남성수용자 상담비율보다 30%이상 높을 때	제출자료
		우수(4)	여성수용자 상담비율이 남성수용자 상담비율보다 20%이상 높을 때	
		보통(3)	여성수용자 상담비율이 남성수용자 상담비율보다 10%이상 높을 때	
		미흡(2)	여성수용자 상담비율이 남성수용자 상담비율보다 10%미만으로 높을 때	
		시정요함(1)	여성수용자 상담비율과 남성수용자 상담비율이 5%미만으로 높거나, 남성수용자 상담비율이 여성상담비율보다 더 높을 때	

<해설> 법무부 예규 제 587호 ‘수용자교회및복지활동지침’ 제 3장 교화상담에 따르면 교화상담은 일반상담과 교화상담으로 나누어, 일반상담은 담당직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교화상담은 교회직공무원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교회직공무원의 교화상담은 1) 신입수용자 및 만기석방 예정자, 2) 환자, 독거수용자, 징벌자, 사형선고자 및 가족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 3) 교도관직무규칙 제8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수용자상담, 4) 기타 수용자요청에 의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도관직무규칙 제 80조제2항에서는 1. 성격형성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교정이 필요한 자, 2.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자, 3. 가족의 이산, 재산의 손실 등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4.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자, 5. 본인의 수용생활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상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담자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사항이 있는 수용자들은 교회직공무원이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담에 관한 어느 규정도 여성수용자에게 특별히 상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항의 가족의 이산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의 항목에 여성수용자가 상당히 포함될 개연성은 많다. 여러 연구에 의해 여성이 수감됨으로써 그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와해되어 그것이 여성수용자의 심리상태에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 여성수용자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여성의 심리적 심약성, 특히 우울증을 비롯한 신경병적 징후가 남성들 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수용자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신경병 증세로 인해 수용생활의 부적응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구금시설 내에서의 교화상담에서 여성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화상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상대적 소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지침> [교회직공무원에 의한 여성수용자 교화상담 건수 ÷ 여성수용자 전체인원 ×

100]과 [교회직공무원에 의한 남성수용자 교화상담건수 ÷ 남성수용자 전체인원 × 100]의 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K1.8. 전년도 교회직공무원의 교화상담실적을 성별로 나누어 제시  
 A4. 연령별·성별·범죄별 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K1.4. 의료서비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4.1. 부인과 진료	부인과 진료의 용이성	세부지표	a. 부인과 질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정기검진 제도가 있다. b. 부인과 질환의 검진을 위해 외부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c. 외부진료 신청 후 대개 일주일내로 외부병원에 갈 수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해당	
<p>&lt;해설&gt; 여성은 30대 이후 유방암, 자궁암 등 부인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고 받고 있다. 또 냉대하나 골다공증 등 기타 갱년기 부인과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걸렸을 경우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항목의 취지이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여성수용자 중 부인과 진료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은 사례를 파악하고 외부진료 신청 시 허가된 수를 확인한다. 또한 수용자면담 시 확인한다.</p> <p>[제출자료]                      K1.9. 해당연도 여성수용자 부인암 검진 관련 외부진료 요청건수 및 요청으로부터 외부진료 시까지의 평균기간                      K1.10. 해당연도 여성수용자 중 부인과 진료(냉대하, 골다공증 등 갱년기 장애 포함) 건수와 진료장소 및 진료내용</p> <p>[수용자면담] 여성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본인이 부인과 관련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주위에서 본 적은 있는가?                      2. 부인과 관련으로 아픈 경우 대체로 어떻게 처치하는가, 외부진료 신청이 쉬운가?                      3. 부인과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요청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받고 싶은가?</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4.2. 여성수용 자의 의무과 연출 연출	여성수용 자의 의무관 연출은 수월한가?	탁월(5)	①과 ②의 답변이 10% 미만	설문조사
		우수(4)	①과 ②의 답변이 10% 이상 30% 미만	
		보통(3)	①과 ②의 답변이 30% 이상 50% 미만	
		미흡(2)	①과 ②의 답변이 50% 이상 70% 미만	
		시정요함(1)	①과 ②의 답변이 70% 이상	
<p>&lt;해설&gt; 여성교도소가 아닌 일반 구금시설에서 여성수용자의 수가 적고 의무과는 남자사 동 안에 있기 때문에 여성수용자의 의무과 연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성수용자라고 해서 의무과 연출자체가 남성수용자에 비해 어렵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의사의 진료를 받음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의사가 직접 여사에 가서 진료하는 것은 순회진료의 한 형태에 불과하며 의료장비를 갖춘 의무과에 연출하여 진료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p> <p>&lt;평가지침&gt; 설문조사를 기초로 평가하되 제출자료도 참고한다. D1.의 설문조사에서 여성수용자만 따로 떼어 조사하여 평가한다.</p> <p>[설문조사] D1. 의무과 연출을 신청하면 의무과 연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대체로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④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p> <p>[제출자료] K1.11. 최근 1년간, 최근 1개월간 여자수용자의 의무과 연출인원(각각 명기)</p>				

**K1.5. 여성수용자를 위한 가족접견 실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5.1. 여성수용 자의 부부 또는 가족 만남의집 이용실태	여성수용 자의 '가족만남 의 집' 이용은 어느 정도인가?	탁월(5)	여성수용자 이용비율이 남성수용자 이용 비율보다 15%이상 높을 때	제출자료
		우수(4)	여성수용자 이용비율이 남성수용자 이용 비율보다 10%이상 높을 때	
		보통(3)	여성수용자 이용비율이 남성수용자 이용 비율보다 5%이상 높을 때	
		미흡(2)	여성수용자 이용비율과 남성수용자 이용 비율의 차이가 5%미만으로 높을 때	
		시정요함(1)	남성수용자의 이용비율이 높을 때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79조는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단절을 회복하고 수용자의 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하는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수용생활에의 적응과 삼에 의지를 고양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족)만남의 집은 그 좋은 취지에 무색하게 이용 빈도가 많지 않다. 더군다나 여성 수용자들인 경우, 가족내적인 요인(어린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이혼을 당해 찾아올 가족이 없는 경우)의 영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남성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가족내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일반교도소의 경우, 남성수용자를 위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현상파악이 필요하다. 만약 여성이기 때문에 제도이용에서 불이익이 있다면 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지침> 전년도 부부만남의 집 이용실적을 성별로 비교하여 평가한다.  
 [여성수용자의 부부만남의집 이용건수 ÷ 여성수용자총인원 × 100]과 [남성수용자의 부부만남의집 이용건수 ÷ 남성수용자총인원 × 100]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K1.12. 전년도 ‘부부만남의 집’ 이용실적에 대한 성별빈도  
 A4. 연령별·성별·범죄별 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5.2. 여성수용자의 장소변경 접견 이용비용	여성수용자는 장소변경 접견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탁월(5)	여성수용자 이용비용이 남성수용자 이용비용보다 15%이상 높을 때	제출자료
		우수(4)	여성수용자 이용비용이 남성수용자 이용비용보다 10%이상 높을 때	
		보통(3)	여성수용자 이용비용이 남성수용자 이용비용보다 5%이상 높을 때	
		미흡(2)	여성수용자 이용비용이 남성수용자 이용비용보다 5%미만으로 높을 때	
		시정요함(1)	남성수용자의 이용비용이 더 높을 때	

<해설> 장소변경접견은 일반 접견실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화만 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닌 신체적 접촉이 가능한 만남이다. 이러한 장소변경접견은 구금으로 인해 생소한 가족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수용생활을 하는 여성수용자의 경우, 그 아이를 한 번 안아보는 것이 큰 기쁨이고 위안이 될 수 있으며, 아이에게도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수용자에게 장소변경 접견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각 소당국이 여성수용자들의 심리와 특성을 이해한다면 여성수용자들에게 장소변경접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London King's College부설 국제교도소센터에서

발간한 『교도소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교도관을 위한 지침서』도 모자간의 접견에서는 항상 신체적 접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수용자접견업무지침 제6장제 34조에는 장소변경접견이 교화상 특히 필요할 때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접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각 구금시설의 소장이 재량에 의하여 접견 횟수 및 접견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장소변경접견에 있어서 여성수용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물론 여성수용자가 장소변경 접견을 원하지 않아서 여성수용자의 활용실적이 미진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성수용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용실적은 이용기회 부여에 있어서의 차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평가지침> 전년도 장소변경접견 이용실적을 성별로 비교하여 평가한다.  
 [여성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이용건수 ÷ 여성수용자총인원 × 100]과 [남성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이용건수 ÷ 남성수용자총인원 × 100]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K1.13. 전년도 장소변경접견 이용실적에 대한 성별빈도  
 A4. 연령별·성별·범죄별 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K1.6. 임신수용자와 출산 수용자를 위한 처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6.1. 임신부수용자에 대한 특별처우	임산부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행해지고 있는가?	a. 배방      b. 식사      c. 운동      d. 목욕	제출자료 면담조사
		e. 전화와 접견      f. 정기검진	
		g. 자유롭게 누울수 있다      h. 기타 임신과 관련된 진료	
		탁월(5)      7개 이상의 경우에 특별처우 행함	
		우수(4)      6개의 경우에 특별처우 행함	
보통(3)      5개의 경우에 특별처우 행함			
미흡(2)      4개의 경우에 특별처우 행함			
시정요함(1)      4개 미만의 경우에 특별처우 행함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23조 제1항을 보면 여성 교정시설에는 출산전후에 필요한 모든 보살핌과 치료에 필요한 특별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물리적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특별처우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피구금자보호원칙 제5조 제2항을 보면 “임신한 여성과 아이가 있는 어머니, 아동과 청소년, 고령자, 병자, 장애자 등의 권리와 특별한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되고 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들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수용자에 대한 특별처우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형법 제30조는 “임산부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형법시행령 제106조는 임산부를 “임신</p>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0일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법무부의 계호근무준칙 제147조 제2항은 임신부에게 출산준비 또는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처우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기준과 행형법의 취지가 임신부에 대한 특별처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신부에 대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임신부를 병방에 배정하는 정도의 배려만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임신 중에는 초기(6개월까지) 한달에 1번씩, 그 이후에는 1주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임신한 가족을 교도소에 보내게 된 다른 가족들은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족과의 접견과 전화사용이 임신부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운동이나 목욕, 식사도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며, 기타 임신과 관련된 건강보조식품의 영치나 구입에 대해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

<평가지침> 임신을 하고 아직은 출산을 하지 않은 임신수용자에 대한 특별 처우내용을 제출자료와 여성교도관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임신부와 태아에 대한 처우를 평가한다. 그리고 방문조사 시 임신이나 출산경험 여성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통해 특별처우 내역을 조사한다.

[제출자료]  
K1.14.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여자수용자에 대한 특별처우의 구체적 내용

[교도관면담][수용자면담]  
여성교도관과 여성수용자에게 임신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배방에 있어서의 고려
- 2) 식사에 있어서의 고려
- 3) 운동에 있어서의 고려
- 4) 목욕에 있어서의 고려
- 5) 빈혈제와 비타민제 복용 등 보조의약품 복용에 있어서의 고려
- 6) 전화와 접견에 있어서의 고려
- 7) 진료에 있어서의 고려 내용
- 8) 기타 고려사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6.2. 대동유아실 확보 유무	대동유아수용자는 어디에 수용되는가?	우수(4)	대동유아를 위한 거실이 따로 있으며 자격을 갖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보통(3)	대동유아를 위한 거실이 따로 있다.	
		미흡(2)	병실을 대동유아실로 대신하여 사용한다.	

		시정요함(1)	일반수용자 거실을 대동유아실로 대신하여 사용한다.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 교정시설에는 출산전후에 필요한 모든 보살핌과 치료에 필요한 특별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동유아 수용자에 대한 단독거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2장 제8조 제3항은 “신입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 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당해 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18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 유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교도소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장에게 인도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출산한 수용자와 그 유아에 대해 어떠한 처우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하지만 자녀를 동반한 수용자를 위한 배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장이다. 대동유아의 경우 수용자와 자녀의 안녕을 위해서도 단독공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수용자들을 위해서도 분리된 거실에 대동유아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대동유아가 있을 경우 병실에 주로 환자와 함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나 다른 환자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동유아의 경우에는 독거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대동유아가 있을 경우 수용방식에 대해 제출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다.</p> <p>[제출자료] K1.15. 대동유아 수용자를 위한 특별거실이 있는 지 유무 K1.16. 만일 대동유아 수용자가 생길 경우 어느 곳에 수용하는지</p> <p>[현장조사] 대동유아실을 방문하여 관찰 조사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6.3. 대동유아에 대한 특별처우	유아양육에 필요한 물품공급과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a. 분유는 기본적으로 관급 제공	제출자료 면담조사
		b. 기저귀는 기본적으로 관급 제공	
		c. 젓병소독은 상시가능	
		d. 목욕 하루 2회 이상 가능	
		e. 세탁 하루 2회 이상 가능	
		f. 예방접종 등을 위한 외부 소아과 진료 가능	
		g. 야간 응급 시 외부진료 즉시 가능	
		h. 유아용 장난감 관급 제공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7개 해당	
		보통(3)   5개 또는 6개 해당	

		미흡(2)	3개 또는 4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해설> 시설에 아이를 대동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물론 교도관의 입장에서는 부가적 업무가 많아지는 감이 없지 않으나,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무 죄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동유아에 대한 조치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교도소에 아이를 대동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아이를 대신 맡아주거나 기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영치금 등을 넣어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아양육에 필요한 기본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관급을 해 주어야 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통해 대동유아에 대한 처우내역을 파악하고 수용자면담 시 확인한다.

[제출자료]  
 K1.17. 대동유아 수용자를 위한 특별처우 내용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1) 분유
- 2) 기저귀
- 3) 목욕
- 4) 세탁(삶는 게 가능한지 여부 포함)
- 5) 예방접종 등을 위한 외부소아과 진료
- 6) 야간응급 시 외부진료
- 7) 기타

[수용자면담]  
 여성수용자에게 1) 대동유아 수용자가 여사에 있었는지 여부, 2) 있었다면 그 때 어떤 거실에 있었는지, 아이를 어떻게 길렀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 유아 양육 전반에 걸친 내용을 질문한다.

**K1.7. 여사 폐쇄회로 관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1.7.1. 여사 폐쇄회로 관리	여사동의 폐쇄회로 TV 관리는	보통(3)	폐쇄회로는 여자교도관이 여사에서 모니터링한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시정요함(1)	폐쇄회로는 보안과 사무실에서 남자교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이 남사동과 함께 관리한다.
<p>&lt;해설&gt; 분리수용의 원칙에 의거해서 여자수용자는 남자수용자와 분리되어 수용되고, 또한 남자교도관이 여자수용자를 접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최저기준규칙 제53조 제3항). 하지만 폐쇄회로 관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안과에 마련된 중앙통제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자수용자들의 움직임을 남자교도관이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사 거실에 폐쇄회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이성에게 노출될 위험까지 가지게 된다. 남녀구분수용의 원칙이 폐쇄회로의 관리에서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이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여사에 대한 시설참관 중에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 폐쇄회로가 없는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p> <p>[제출자료]</p> <p>K1.18. 여사 폐쇄회로 설치장소와 모니터링 방법 (설치장소는 복도, 거실 등으로, 모니터링 방법은 여사, 남사 분리 관리 또는 공동관리 식으로)</p> <p>[현장조사]</p> <p>여사를 방문해서 폐쇄회로 설치장소 확인하고, 보안과 중앙통제실을 조사한다.</p>			

## K2. 소년수용자

### K2.1. 소년수용자의 수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2.1.1. 성인/소년 사동의 구별형태	성인과 소년은 구분수용 되고 있는가?	우수(4)	수용시설 자체가 성인수용시설과 소년수용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보통(3)	성인수용자와 소년수용자가 별도의 구역에 수용되어 있다.	
		미흡(2)	성인수용자와 소년수용자가 동일건물 내에서 사동별로 분리되어 있다.	
		시정요함(1)	성인수용자와 소년수용자가 같은 사동 내에 거실별로 분리되어 있거나, 소년 수용거실에 성인이 함께 수용되어 있다.	
<p>&lt;해설&gt; ‘최저기준규칙’ 제8조 d호는 “소년은 성인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제2조 1항과 2항은 교도소와 소년교도소를 구별하여 각각 만20세 이상의 수형자와 만20세 미만의 수용자를 분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때에도 소년수용시설로 구별하여 설치된 별개의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2개의 소년수형자 구금시설이 있는 반면, 소년 미결수용자에 대한 전담 구금시설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불가피하여 소년을 성인구금시설에 수용하더라도 엄격한 구분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별도의 구역에 수용될 필요성이 있다. ‘별도의 구역’이란 출입문을 달리하는 별도의 장벽으로 분리된 구역을 말한다. 현재까지 성인구금시설에 소년을 수용하면서 관행으로 이른바 ‘봉사원’인 성인수용자를 소년들과 같은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행형법 및 ‘최저기준규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용이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에서 소년수용자의 수용상황을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구분수용의 형태를 확인한다.</p> <p>[제출자료] K2.1. 연령별·성별·범죄혐의별 소년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p> <p>[현장조사] 성인구금시설의 경우 보안과에서 소년수용자 수용거실을 파악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구분정도와 소년거실에 성인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2.1.2. 소년수용 에 대한 특별배려	소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년에 대한 특별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입소한 날부터 3일간 신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b. 입소 후 3일 이내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c.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때는 소년과 소년가정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d. 매주 3회 이상 의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유무를 확인한다.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소년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입소 후 얼마간의 적응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저기준규칙 제5조 제2항 후문은 “원칙적으로 소년들에게 구금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들을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되, 감금 이후에도 감금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용 초기에 수용생활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나 사회로부터의 격리감을 완화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예규인 소년수용자 관리지침 제4조는 “소년 신입자에 대하여는 성년과 구분하여 입소한 날부터 3일간 신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침 제10조는 제1항에서 “소년신입에 대하여는 입소 후 3일 이내에 보호자 등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때에는 소년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봉투에 교도소 등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당해 주소와 소장의 성명만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3조 제1항은 “소년수용자의 거실에 대하여는 매주 3회 이상 의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피해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의체검사의 경우 이것이 소년수용자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년수용자를 면담할 때 이러한 의체검사가 오로지 폭행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한다.</p> <p>&lt;평가지침&gt; 기록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위의 지표들을 확인한다.</p> <p>[기록조사] 교무과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내역을 확인한다.</p> <p>[면담조사]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위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p>				

K2.2. 소년수용자의 접견과 서신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2.2.1. 소년수용자의 접견과 서신 장려	소년수용자들의 접견과 서신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시설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접견횟수를 증가시켜 주고 있다. b.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을 실시하고 있다. c. 보호자 등에게 월 1회 이상 서신을 보내도록 권장하고 있다. d. 서신을 보낼 때 우표를 자비부담할 수 없는 소년수용자에 대해 우표를 관급하고 있다.	제출자료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소년수용자들에게 가족 등 외부친족과의 관계가 박탈되는 것은 이후의 사회생활에 치명적 장애가 되므로 수용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가족과의 유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 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수용자 관리지침 제15조는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한 접견횟수를 행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증가시키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침 제16조는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교화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지침 제18조 제1항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보호자 등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한다. 다만 우표 등을 자비부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p> <p>&lt;평가지침&gt;</p> <p>a. c.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b. 제출자료에서 확인한다. d. 기록조사를 통해 확인한다.</p> <p>[제출자료] K2.2. 전년도 소년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횟수</p> <p>[기록조사] 교무과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한 우표 관급 내역을 확인한다.</p> <p>[면담조사]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위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p>				

**K2.3. 소년수용자의 운동과 건강관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2.3.1. 소년수용자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배려	소년수용자들의 위생과 건강 문제에 대해 구금시설은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성인과 구별하여 운동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다. b.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상의 운동기구를 제공하고 있다. c. 소년수용자에 대해 3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d. 독거 중인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소년기는 신체적으로도 성장의 과정에 있는 기간이므로 위생과 건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2항은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 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수용자 관리지침 제20조는 “소년수용자에 대한 운동은 구기와 철봉, 모형인물 때리기, 샌드백치기, 모래주머니 차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침 제23조는 제1항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독거된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검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p> <p>&lt;평가지침&gt;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위의 지표들을 확인한다.</p> <p>a. 별도의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인수용자와 구별된 시간에 소년들만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b. 소년수용자 관리지침에서 정한 ‘모형인물 때리기’ 등의 종목이 소년수용자의 교육상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지침이 정한 취지에 따라 적어도 동시에 3개 이상 종목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운동기구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p> <p>c. 일반직원 뿐 아니라 의무과 직원에게도 질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p> <p>d. 독거수용된 소년수용자가 없으면 이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p> <p>[면담조사]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위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p>				

K2.4. 소년수용자의 교육과 교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2.4.1. 소년수용 자에 대한 자치제 실시와 호칭	소년수용자 들에 대해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정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모든 소년수용자에 대해서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b. 소년수용자를 부를 때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다. c. 미결소년수용자에 대해서도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다.	면담조사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p>&lt;해설&gt; 소년기의 민감한 시기에 강제와 타율에 종속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최대한 자율을 허용하고 인격적 대우를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수용자 관리지침 제25조는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자치제를 실시하여 협동심, 근면성 및 자립심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침 제27조는 제1항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번호 대신에 이름을 호칭한다. 다만, 미결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소년수용자의 번호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p> <p>&lt;평가지침&gt;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위의 지표들을 확인한다. a. 소년교도소가 아닌 일반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들에 대해서도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한다. b. c. 주로 소년들을 대상으로 면담하여 조사하되, c.의 경우는 법무부의 지침에서 번호로 호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결소년들이 수용되어 있는 일반시설은 수용된 소년들이 많지 않고,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미결과 기결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미결 수용자들에게도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한다.</p> <p>[면담조사]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위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2.4.2. 소년수용 자에 대한 교회 활동	소년수용자 들에 대한 교회활동은 적절하게	세부지표	a. 소년수용자에 대해 감독자 등이 적어도 주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b. 소년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가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이루어지고 있는가?		c. 소년수용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다. d. 각각의 소년수용자들에 대해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3개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소년들이 부모나 친지 또는 주변 관계인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보호자 등을 통한 면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자 등과 연계한 교화활동이 어려울 때는 시설에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교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수용자 관리지침 제31조는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감독자 등이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여 그 고충을 신속히 파악·처리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족과도 연계하여 선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침 제32조는 “무의탁자, 불우수용자, 문제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교정위원·성직자 등과 자매결연을 맺게 하거나 감독자 등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하여 개별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조사를 통해 위의 지표들을 확인한다.

a. 법무부의 지침에서 ‘수시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소년수용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c. ‘필요한 경우’라고 함은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의탁자, 불우수용자, 문제수용자’ 등의 소년들을 말한다. 이러한 소년들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자매결연을 맺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평가한다.

[제출자료]  
K2.3. 교정위원 및 성직자 등과 소년수용자들의 자매결연 현황  
K2.4. 소년수용자들에 대한 상담책임자 지정 현황

[면담조사]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위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2.4.3. 소년수용자에 대한	소년수용자들에 대한 교육활동은	세부지표	a. 예·체능에 소질 있는 소년수용자에 대해 특기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b. 소년수용자별로 각각의 교육과정에	제출자료 면담조사

교육 활동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맞추어 학과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c. 소년수용자들에게 학과교육에 필요한 필기구 등 학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우수(4)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미흡(2)	1개 해당	
		시정요함(1)	해당사항 없음	

<해설> 소년들의 대부분은 정규 학과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므로 정규 학과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년수용자들의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 등과정의 학습이나 수능시험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이후 소년수용자들의 사회적응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예·체능의 특기에 소질이 있는 소년수용자들에게는 그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기준규칙 제77조 제1항 제2문은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수용자 관리지침 제38조는 “소년수용자로서 예능·체능 등에 소질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특기를 익힐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침 제39조는 “교육기회를 상실한 소년수용자에게는 가능한 범위에서 검정고시 준비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이수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소년수용자에게 학과교육에 필요한 필기구 등 학用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조사를 통해 위의 지표들을 확인한다. 위의 세부지표들은 소년교도소는 물론 일반 구급시설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K2.5. 소년수용자에 대한 예·체능 특기지도 현황  
K2.6. 소년수용자들의 교육과정별 학과교육 현황

[면담조사]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위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2.4.4. 소년수용자에 대한 성년식 및 생일축하	소년수용자에 대해 성년식과 생일 등의 축하행사를	세부지표	a. 성년이 된 소년수용자에 대해 성년식을 개최하여 축하해 주고 있다. b. 매월 합동생일 축하회를 개최하여 생일을 맞은 소년들을 축하하고 있다. c. 분기별로 합동생일 축하회를 개최하여	제출자료 면담조사

행사	실시하고 있는가?		생일을 맞은 소년들을 축하하고 있다. d. 합동생일 축하회에는 생일을 맞은 소년들의 가족을 초청하고 있다.
		탁월(5)	a. b. d.에 해당
		우수(4)	a. c. d.에 해당
		보통(3)	a. b.에 해당
		미흡(2)	a. c.에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소년들에게는 성년식과 생일 등의 절기에 가족들과 연계하여 축하하고 격려함으로써 사회와의 유대감 및 책임감 등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소년수용자 관리지침 제41조는 “소년수용자가 성년이 된 때에는 성년식을 거행하여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42조는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가족 등을 초청하여 합동생일 축하회를 개최하고 가족과의 유대강화 및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평가지침>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조사를 통해 위의 지표들을 확인한다. 위의 세부지표들은 소년교도소는 물론 일반 구금시설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K2.7. 전년도 소년수용자에 대한 성년식 축하행사 개최 현황  
K2.8. 전년도 소년수용자에 대한 합동생일 축하회 개최 현황

[면담조사]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위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K3: 외국인 수용자

## K3.1. 언어사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3.1.1. 수용생활 안내	외국인 수용자에게 처우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당해 외국어로 번역해서 고지하는가?	우수(4)	해당 외국어로 된 수용생활안내 책자가 외국인 수용거실에 모두 비치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미흡(2)	영어로 된 수용생활안내 책자가 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일부 외국인수용자에 대 해서는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수용생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시정요함(1)	해당 외국어나 영어로 된 수용생활안내 책자가 거실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	
<p>&lt;해설&gt; 행형법 제8조의 2에서 소장은 신입자에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자체 제작한 수용생활안내서를 각 사동 거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생활안내 책자는 외국인 수용자에게도 필요하다. 최저기준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구금자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시설 안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한국말을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 수용자에게 해독 가능한 언어로 수용생활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된 수용생활안내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수용생활안내책자는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해당 외국인수용자 거실에 비치하여 놓아야 한다. 수용생활안내서는 권리구제를 비롯한 수용생활 전반에 걸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유럽형사시설규칙 제6조 제2항은 “이 규칙은 피구금자에게 그 나라의 언어 및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다면 기타의 언어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 수용자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 항목을 ‘평가’하지 않되, 최근 1년 간 외국인을 수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배포했던 외국어로 된 수용생활안내책자가 있다면, ‘우수(4)’로 평가한다.</li> <li>2.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만 해당 외국어로 된 수용생활안내책자가 배포되었다면, 미흡(2)으로 평가한다.</li> <li>3.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예: 조선족)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로 된 수용생활안내 책자를 원하고 있다면,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수용생활안내 책자를 배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수용생활안내 책자가 없다면, 시정요함(1)으로 평가하여야 한다.</li> </ol>				

<p>[제출자료]</p> <p>K3.1. 최근 5년간 외국인수용자 1일 평균 수용인원 (연도별로 작성)</p> <p>K3.2. 현재 외국인 수용인원 (국적별로 구분하여 작성)</p> <p>K3.3. 외국인 수용자의 한국어 실력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상: ○명, 중: ○명, 하: ○명)</p> <p>[현장조사]</p> <p>먼저 제출자료를 통해 현재 수용 중인 외국인의 수와 국적을 미리 파악하고, 외국인 수용자 거실을 방문하여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구금시설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지 조사한다.</p>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3.1.2.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 직원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가?	탁월(5)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며, 외국인수용자와 주 2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기록조사 면담조사
		우수(4)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며, 외국인수용자와 주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미흡(2)	해당 외국어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 직원은 없으나, 최근 1년간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통역 및 번역 위촉 건수가 외국인 수용자 1인당 2건 이상 있다.	
		시정요함(1)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도관이 없고, 최근 1년간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통역 및 번역 위촉 건수도 거의 없다.	

<해설>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5조는 “①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등의 장은 외국어의 해독이 가능한 1명 이상의 교회직공무원 등을 교화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담요원은 수시로 외국인 미결수용자의 수용사동을 순회, 향소이유서 작성 등 그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지침>

1.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 직원’이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 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해당 외국어’라 함은 현재 수용중인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어나 기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회직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용중인 외국인의 언어를 할 줄 모른다면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 직원’이 없는 것으로

로 평가한다. 일부 외국인수용자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교화전담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외국인수용자와 의사소통을 해당 외국어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역시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 직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3. 해당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수용자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 직원’으로 볼 수 없다.

4. 최근 1년간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통역 및 번역 위촉건수가 현재 수용 중인 외국인 수용자 1인당 2건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역 및 번역 위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5. 최근 1년간 외국인을 수용한 적이 없다면 이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수용 중인 외국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1년간 외국인을 1개월 이상 수용한 적이 있다면, 그 외국인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출자료]

K3.4. 외국어 해독이 가능한 교회직공무원의 수  
K3.5. 최근 1년간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통역 및 번역 위촉건수

[직원면담 및 기록조사]

구금시설측이 ‘외국어 해독이 가능한 교회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교도관으로부터, 관련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한다. 즉,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 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면담조사]

외국인수용자와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회직공무원과 개별면담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자신의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 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한다.

**K3.2. 분리수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3.2.1. 분리수용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끼리 혼거수용하지 않고 분리수용하고 있는가?	우수(4)	외국인수용자를 혼거수용 하는 경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을 상호 분리하여 수용한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보통(3)	특별한 분리수용 원칙 없이, 외국인 수용자는 무조건 독거수용을 하고 있다.	
		시정요함(1)	특별한 분리수용 원칙 없이, 거실형편에 따라 외국인수용자를 혼거수용하게 한다.	

<p>&lt;해설&gt;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6조는 “① 외국인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거실 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의 경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상호 분리수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 및 문화 등이 크게 다르고, 생활풍습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외국인수용자를 한 거실에 함께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 상호간에 갈등과 마찰을 빚게 하고 수용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제출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수용실태를 보고, 함께 혼거되어 있는 외국인수용자의 국적, 민족, 문화, 종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이 1명밖에 없고 독거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3)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을 더 수용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수용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li> <li>2. 외국인을 한국인과 함께 수용하고 있는 경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조선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li> </ol> <p>[제출자료] K3.6. 외국인의 거실별 수용현황(한국인과 혼거여부 포함)</p> <p>[현장조사] 혼거의 경우, 어떤 국적을 가진 수용자가 혼거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종교 및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p>				

### K3.3. 거실생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3.3.1. 거실 형태	외국인 문화에 맞는 거실형태 여부	우수(4)	침대문화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수용자를 위해 거실에 침대를 설치했다.	현장조사
		미흡(2)	침대문화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거실에 침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p>&lt;해설&gt;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7조는 ‘소장은 서양계 외국인 수용자의 거실에는 침대를 설치하는 등 가능한 한 당해 외국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lt;평가지침&gt; 외국인수용자 거실을 방문하여 침대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시아계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침대문화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p>				

[현장조사]  
 제출자료를 통해 현재 수용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미리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 거실에 들어가 침대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침대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3.3.2. TV 시청	외국인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외국어로 시청이 가능한가?	탁월(5)	모든 외국인수용자 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외국어방송의 시청이 가능하다.	현장조사 면담조사
		우수(4)	모든 외국인수용자 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어(또는 중국어, 러시아어)방송의 시청이 가능하다.	
		보통(3)	모든 외국인수용자 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으나, 한국어방송만 시청 가능하다.	
		미흡(2)	외국인수용자 거실 중 일부에만 TV가 설치되어 있다.	
		시정요함(1)	모든 외국인수용자 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구금자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시설 안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구금시설의 경우 거실 내에 TV를 설치하고 내국인수용자에게 TV시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TV시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수용거실에 TV를 설치하고, 내국인수용자에게 허용하는 만큼 TV시청을 허용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어 또는 공용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침> 현장조사를 통해 각 외국인수용거실에 TV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외국어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외국어자막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외국어(또는 공용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2. 전체 방송시간 중 3분의 1 이상을 외국어(또는 공용어)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외국어(또는 공용어)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현장조사]  
 외국인수용자 거실을 방문하여 TV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어방송의 시청이 가능한지 사동근무자에게 질문한다.

[면담조사]  
 외국인수용자에게 TV시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고, 외국어방송프로그램의 시청도 가능한지 조사한다.

### K.3.4. 식생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3.4.1. 식생활	모든 외국인 수용자의 식생활관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탁월(5)	외국인이 입소하면 그와 면담하여 그 나라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음식의 종류를 모두 파악하고, 이러한 식생활관습을 철저히 반영하여 식단을 짠다.	제출자료 면담조사 현장조사
		우수(4)	10여 개국 이상의 식생활문화를 미리 파악하여 특정국적의 외국인에게 금기시되는 음식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수용되면 그에게 금기시되는 음식 대신에 대체음식을 제공한다.	
		미흡(2)	일부 외국인수용자의 식생활관습을 존중하여 식단을 짜지만, 나머지 외국인수용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음식을 제공한다.	
		시정요함(1)	외국인수용자와 내국인수용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거의 유사한 식단으로 급식을 하고 있다.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6조 제2항은 “피구급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국가의 식생활문화는 그 나라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생활 중에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9조는 외국인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주·부식은 ‘외국인수용자 주·부식급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곡을 주식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백미 및 맥류를, 그 밖의 외국인에게는 빵, 기타 대체식품을 각각 급여하되, 이슬람교도에게는 돼지고기, 힌두교도에게는 소고기를 각각 급여하지 않는 등 그 음식관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지침>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수용자의 식생활습관을 반영하여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제출자료]

K3.7. 최근 1개월간의 각 외국인수용자에게 제공된 주·부식의 식단표  
 (내국인수용자와 동일할 때는 ‘내국인과 동일’이라고 표시할 것)

<p>[현장조사] 먼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각자에게 부합하는 음식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1) 빵을 주식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주식으로 밥이 아닌, 빵이 제공되는지 여부, 2) 특정육식을 금하고 있는 이슬람교도나 힌두교도 등을 배려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여부, 3) 채식주의자들에게 채식위주의 식단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p> <p>[면담조사] 외국인 수용자에게 제출자료 상의 식단표에 맞게 주·부식이 제공되었는지 질문한다. 식생활문화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조사한다.</p>
---

**K3.5. 종교생활 보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3.7.1. 종교생활 보장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을 내국인과 차별함이 없이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외국인수용자가 요청하는 특정 종교의 성직자와의 접촉을 주선한다. b. 거실 내에서의 예배 등 종교적 의식(의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c. 염주 등 종교적 용도에 사용할 성구나 종교서적의 소지 등을 허용한다. d. 외국인수용자의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허용하며, 내국인수용자와 이점에 있어서 차별이 전혀 없다.	현장조사 기록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6조 제2항은 “피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기준규칙 제42조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10조도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성직자와의 접촉 주선, 거실 내에서의 예배나 종교행사 참석, 염주 등 종교적 용도에 사용할 성구나 종교서적의 소지 등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지침>

외국인수용자의 종교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현장조사 및 기록조사]

1. 교무과에서 외국인수용자가 요청하는 특정 종교의 성직자와의 접촉을 주선하는지 조사한다.
2. 거실 내에서 외국인의 예배 등 특정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3. 외국인의 종교행사 참여를 인정하는지 조사한다.

[기록조사]

교무과에서 외국인수용자와 특정 종교의 성직자와의 접촉을 주선한 사례가 있을 경우 그 관련기록을 달라고 하여 사실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외국인수용자의 특정종교 행사참석이 허용되었던 경우, 역시 관련기록을 달라고 하여 살펴본다.

[면담조사]

외국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1) 성직자와의 접촉을 요구하였는지, 2) 교도관의 성직자의 접촉을 주선하였지, 3) 거실 내에서 예배 등 특정종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 4) 소지할 수 있는 종교적 용도의 도구나 종교서적의 종류, 5) 종교행사 참여를 요청하였을 때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

## K4. 장애수용자

### K4.1. 장애거실 수용능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탁월(5)	10% 이상	
K4.1.1. 장애거실의 수용정원	수용정원에 비추어 장애거실의 최대수용가능인원은 충분한가?	우수(4)	8% 이상 10% 미만	제출자료 현장조사
		보통	5% 이상 8% 미만	
		미흡(2)	3% 이상 5% 미만	
		시정요함(1)	3% 미만	

<해설> 장애수용자를 위한 장애거실의 설치에 장애수용자에 대한 ‘차별’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장애수용자만 별도로 구별하여 분리 수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반수용자와 함께 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수용자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장애수용자도 많다. 그러므로 장애수용자가 원하면, 일반수용자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애거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거실에 비하여 장애수용자가 거하기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거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이곳에 장애수용자와 함께 일반수용자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2004년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491,616명으로 전 국민의 3% 이상에 해당한다. 등록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장애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수용정원의 10% 이상의 수용자를 장애거실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용정원 100명당 10명 이상의 수용자를 장애거실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장애거실의 수용정원 ÷ 수용정원 × 100]

장애거실의 수용정원이란 장애거실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자료]

K4.7. 장애수용거실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 (수용정원 기준)

A1. 수용정원

[현장조사]

제출자료에 명시된 장애거실의 종류와 수를 미리 파악하여 각 사동마다 장애거실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실제로 장애거실의 수용 가능인원과 제출자료상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4.1.2. 장애거실 의 수용밀도	장애거실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은 충분한가?	탁월(5)	7.3㎡ 이상	제출자료
		우수(4)	6.3㎡이상 7.3㎡ 미만	
		보통(3)	4.3㎡이상 6.3㎡ 미만	
		미흡(2)	3.3㎡ 이상 4.3㎡ 미만	
		시정요함(1)	3.3㎡ 미만	
<p>&lt;해설&gt; 몸이 불편한 장애수용자는 일반수용자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거실에 비하여 장애거실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더 커야 한다. 즉, 장애거실에는 일반 거실보다 적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장애거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은 병사거실에 준하여야 한다(D3.1.2. 참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별표2)에 따르면,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인 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시설기준규칙에도 병실의 경우 1인당 4.3㎡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수용자 1인당 최소한 4.3㎡ 이상은 되어야 한다. 특히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할 경우 화장실문을 방안으로 열리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공간이 더 협소해져서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동료수용자를 깨워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장애수용자가 많다. 기본적으로 일반수용자의 경우도 1인당 거실면적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져야 하지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p> <p>&lt;평가지침&gt; [장애거실면적(㎡) ÷ 장애거실의 현재 수용인원]</p> <p>1. 장애거실의 면적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확인하며, 평(坪)은 3.3을 곱하여 평방미터(㎡)로 환산한다.</p> <p>2. 장애거실의 현재 수용인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미리 파악하도록 한다. 현장조사 시에는 각 장애거실의 수용인원을 확인해보고 장애거실의 수용정원과 현재 수용 중인 인원과 비교하여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 시점의 장애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p> <p>[제출자료] K4.7. 장애수용거실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수용정원 기준)과 현재 수용인원</p>				

#### K4.2. 장애수용자의 생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4.2.1. 장애수용 자의 이동 및 활동	장애수용자 의 이동 및 활동의 편의성?	세부지표	<p>a. 휠체어사용이 가능한 특별거실이 기결사동과 미결사동 및 여사에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p> <p>b. 모든 장애거실 내벽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p>	제출자료 현장조사

			<p>c. 모든 장애거실 화장실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용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다.</p> <p>d. 장애거실에는 내부난방(예: 온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p> <p>e. 모든 장애거실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다.</p>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장애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활동하거나 거실 밖에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거실 내에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몸을 지탱해줄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거실내벽과 화장실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쉽도록 좌변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병사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내부난방이 되어 있어야 하며, 쉽게 세면을 할 수 있도록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지침>

- a. 휠체어사용이 가능한 특별거실의 설치 여부
- b. 거실내벽의 안전용 손잡이 설치 여부
- c. 화장실의 좌변기 및 안전용 손잡이 설치 여부
- d. 거실난방의 유무
- e. 세면대 설치 여부

[제출자료]

- K4.8. 휠체어 사용가능 특별거실의 수와 각각의 거실수용정원(미결, 기결, 여사 구분)
- K4.9. 장애수용거실의 화장실에 좌변기가 설치된 거실의 수
- K4.10. 장애수용거실의 화장실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된 거실의 수
- K4.11. 장애수용거실의 내벽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된 거실의 수
- K4.14. 장애수용거실의 난방종류(온돌, 전기판넬 등)

[현장조사] 제출자료를 통해 장애거실의 종류와 수를 미리 파악하고 위의 a, b, c, d, 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4.2.2. 시각장애, 청각장애 수용자에 대한 배려	시각장애, 청각장애 수용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시각장애자를 위하여 점자로 된 수용생활안내서 등이 비치되어 있다. b. 시각장애자를 위해 거실 내벽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c. 시각장애자를 위해 이동통로에 특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d. 청각장애자를 위해 수화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는 수화를 할 줄 아는 수용자를 함께 거하도록 하고 있다. e. 시각장애(또는 청각장애) 수용자를 위한 도우미(간병부)제도를 두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대부분의 구급시설에서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지닌 수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내지 안전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용생활을 함에 있어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다른 어떤 신체장애보다 큰 어려움을 준다. 식사, 운동, 용변, 작업 등 모든 활동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각 구급시설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지닌 수용자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어야 한다.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는 거실에 점자로 된 수용생활 안내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거실 내벽과 화장실에 안전용 손잡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자가 이동을 하는데 필요한 특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자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를 위한 도우미(간병부)제도를 두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 현장조사 시에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를 수용한 거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a, b, c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p> <p>[제출자료]                      K4.12.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별거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편의시설?)                      K4.13. 청각장애자를 위한 특별거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편의시설?)</p> <p>[현장조사]                      보안과 직원에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안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수용자가 거하는 거실을 살펴보고 위의 a, b, c, d, e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p>					

**K4.3. 장애수용자의 운동, 목욕, 작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4.3.1. 장애수용자의 운동	장애수용자들이 운동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세부지표	a. 1회 운동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b. 1회 운동시간이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 c. 장애수용자를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장애수용자들에게도 규칙적인 실외운동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몸이 불편한 장애수용자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실에서 운동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운동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자용 특수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아야 한다. 입소 전에 사고로 다쳐서 들어온 수용자도 많기 특별히 재활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재활치료로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1회 운동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장애수용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의 피구금지처우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실외작업에 출력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면 매일 적어도 1시간 정도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수용자의 경우도 최소한 1시간 정도의 실외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지침>

- a. 1회 운동시간이 1시간 정도이면 1시간 이상으로 평가한다.
- b. 일반수용자보다 장애수용자에게 제도적으로 10분 이상 운동시간을 더 허용할 때 1회 운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반수용자나 장애수용자에게 모두 매일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1회 운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간주한다.
- c. 장애수용자가 운동하는 장소에 장애수용자를 위한 특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제출자료] K4.15. 장애수용자의 운동

	장애수용자	일반수용자와 비교
1회 운동시간 (분)		
운동장과의 접근성		
장애수용자를 위한 특별운동시설의 유무		

[현장조사]

사동근무자에게 장애수용자의 1회 운동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운동장에 장애수용자

를 위한 특수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면담조사]  
 장애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제로 1회 운동시간을 묻고, 다른 일반 수용자와 비교하여 운동시간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알아본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4.3.2. 장애수용자의 목욕	장애수용자가 목욕하기 쉽게 되어 있는가?	세부지표	a.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목욕횟수가 많다. b.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목욕시간이 길다. c. 여름철에도 온수목욕이 가능하다. d. 신체(시각, 청각)장애 수용자에게는 목욕도우미(간병부)의 보조를 받는다. e. 목욕탕에 장애수용자용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f. 샤워꼭지가 목욕탕 벽의 낮은 데도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수용자가 앉아서 목욕을 할 수도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면담조사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5개 해당	
		보통(3)	4개 해당	
		미흡(2)	3개 해당	
시정요함(1)	2개 이하 해당			

<해설> 장애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수용자가 쉽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장애자용 목욕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애수용자라고 해서 목욕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운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수용자를 위해서는 여름철에도 온수목욕을 허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장애수용자에게는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더 많은 목욕시간을 주어야 한다.

<평가지침>

- 동계 목욕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동계 목욕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장애수용자에게 일반수용자보다 공식적으로 10분 이상 더 목욕시간을 줄 때 목욕시간이 긴 것으로 평가한다.
- 여름철에 온수목욕을 원하는 장애수용자에게 온수목욕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간병부의 1회성 목욕보조는 목욕도우미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목욕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목욕도우미로 보아야 한다.

[제출자료] K4.16. 장애수용자의 목욕

	장애수용자	일반수용자와의 비교
목욕횟수 (동계)		
목욕횟수 (하계)		
1회 목욕시간 (동계 기준)		
하계 온수목욕 가능 여부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목욕도우미(간병부) 유무		
목욕탕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탕’ 입수목욕 가능 여부		

[현장조사]  
일반사동근무자에게 장애수용자의 목욕횟수와 목욕시간 등을 묻고 몸이 불편한 장애수용자의 목욕을 어떻게 돕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목욕탕 내부시설을 살펴보고, 장애수용자가 목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샤워꼭지가 목욕탕 벽의 낮은 데도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면담조사]  
장애수용자에게 실제로 목욕횟수와 목욕시간을 묻고, 목욕도우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4.3.3. 장애수용자의 작업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수(4)	일반수형자의 출역비율과 장애수형자의 출역비율이 비슷하다. (편차 10% 미만)	제출자료 현장조사
	장애수용자에 대한	보통(3)	일반수형자의 출역비율과 장애수형자의 출역비율이 10% 이상 20% 미만 차이가 난다.	
	차별은 없는가?	시정요함(1)	일반수형자의 출역비율과 장애수형자의 출역비율이 20% 이상 차이가 있다.	
<p>&lt;해설&gt; 작업출역은 승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수용자라 하더라도 작업을 아예 못하게 해서 안 된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경우 작업출력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작업의 성격과 내용이 장애수용자에게 적합하여야 한다.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p> <p>&lt;평가지침&gt; 장애수형자의 출역비율과 전체 수형자의 출역비율을 비교하여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한다. 다만, 장애수형자가 하고 있는 작업의 종류와 성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p>				

<p>[제출자료]</p> <p>K4.17. 모든 장애수용자(일반거실에 수용된 자 포함, 미결수용자 제외) 중에서 출역인원과 미 출역인원 (각각의 비율)</p> <p>K4.18. 모든 수형자 중에서 출역인원과 미 출역인원 (각각의 비율)</p> <p>K4.19. 장애거실수용자(수형자) 중에서 출역인원과 미 출역인원 (각각의 비율)</p> <p>[현장조사]</p> <p>장애수형자의 작업하는 곳을 방문하여 작업의 성격이 장애수용자에게 적합한지 조사한다.</p>
--

#### K4.4. 장애수용자의 외부교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4.4.1. 장애수용자의 외부교통 (접견, 서신, 전화 등)	접견, 서신교환, 전화사용에 있어서 장애수용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a. 접견장소로 이동함에 있어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잡고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다. b. 언어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수용자에게는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더 많은 접견시간을 주고 있다. c. 서신교환이 어려운 시각장애 수용자에게는 급수에 상관없이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장조사
		탁월(5)	모두 해당	
		보통(3)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p>&lt;해설&gt; 장애수용자의 경우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접견이나 서신교환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특히 청각장애자 및 언어장애자의 경우는 접견 시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일반수용자와 비교하여 충분한 접견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자의 경우 서신교환이 용이하지 않다. 편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부마저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급수에 상관없이 전화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구급시설이 시각장애수용자에게 출역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사용이 가능한 1급이나 2급으로 진급하기가 사실상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전화사용마저 어렵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화사용을 급수에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 (일반수용자에게도 급수에 상관없이 전화사용을 허용해야 한다.)</p>				

<p>&lt;평가지침&gt;</p> <p>a. 일반사동과 접견실 사이에 높은 계단이 있거나 높은 ‘턱’이 있다면 휠체어로 다니기 어렵다고 평가해야 한다.</p> <p>b.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접견시간이 10분 이상 더 허용하고 있다면, 더 많은 접견시간을 허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일반수용자나 청각(언어)장애수용자에게 모두 1회 30분 이상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c. 시각장애수용자에게는 급수에 상관없이 전화사용을 허용하는지 조사한다. 일반수용자에게도 급수에 상관없이 전화사용을 허용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p> <p>[현장조사]</p> <p>일반사동과 접견실간의 이동통로를 유심히 살피고,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접견 시에 청각(언어)장애 수용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시각장애자에게는 급수에 상관없이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p>
---

**K4.5.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의 처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자료
K4.5.1.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의 처우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부지표	<p>a. 입소 시에 정신지체장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p> <p>b. 정신지체 장애등급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하고 있다.</p> <p>c. 정기적인 정신과 전문의 방문 진료 및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p> <p>d.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수용자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 의료시설로 이송하고 있다.</p> <p>e. 석방 후에도 사회복지단체 또는 갱생보호단체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p>	<p>제출자료</p> <p>현장조사</p> <p>면담조사</p>
		탁월(5)	모두 해당	
		우수(4)	4개 해당	
		보통(3)	3개 해당	
		미흡(2)	2개 해당	
시정요함(1)	1개 이하 해당			

<해설> 최저기준규칙 제82조는 “①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용자는 교도소에 구금해 두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용자는 의료관리를 받는 전문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③ 이들 수용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④ 구금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4.6.4.자 03진인1328 결정). 우선 입소 시에 정신질환 여부를 면밀히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이 의심스런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구금시설에 수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석방 후에 또다시 구금시설에 들어오지 않도록 석방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단체 또는 갱생보호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83조는 “필요한 경우 석방 후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사회 정신의학적 사후치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관과 연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지침> a. 신입자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 중에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의무관의 단순한 문진으로 끝나는 정도의 건강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b. 정신지체 장애등급별로 수용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필요한 처우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정신지체 장애수용자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c. 정기적인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D1.3.1. 참조) 최소한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활동을 해야 한다.

d. 중증 정신질환자의 전문치료시설로의 이송실적을 파악하고, 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유무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의 석방(가석방 포함)을 대비하여 사회복지단체나 갱생보호단체와 연계된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제출자료]

K4.5. 정신장애 수용자의 수

D4. 정신과의사의 시설방문 진료 여부, 진료시간

[직원면담]

의무과 직원에게 신입자 입소 시 정신건강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정신지체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 장애등급에 따라 구별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정신과 진료 및 상담 현황, 정신질환 판명 후 전문 의료시설(예: 진주교도소)로의 이송절차 미 최근 이송사건, 석방 후에 사회복지단체 및 갱생보호시설과의 연계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다.

[수용자면담]

장기 수용자와 면담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와 함께 생활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와 면담이 가능한 상태일 때는

그와 면담하여 1) 입소 시에 면밀한 정신건강진단을 받았는가, 2) 정신지체 장애등급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하고 있는가, 3)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 [부록]

1. 요청자료목록
2. 면담조사목록
3. 현장조사
  - 1) 시설분야 현장점검표
  - 2) 현장조사목록
4. 기록조사목록
5. 설문지
  - 1) 수용자설문지
  - 2) 교도관설문지
6. 평가양식

## 1. 요청자료목록

### A. 시설

- A1. 수용정원
- A2. 현재 수용인원
- A3. 최근 5년간 1일 평균 수용인원
- A4. 연령별·성별·범죄별 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 A5. 연령별·성별·범죄혐의별 미결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 A6. 전체수용인원 중 독거수용인원의 비율  
(자료제출일 현재, 독거실 수용인원이 아니라 실제 독거수용 중인 인원)
- A7. 모든 독거실의 종류별 개수와 각각의 면적
- A8. 모든 혼거실의 종류별 면적과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범례]

종류별(사동)	실 번호	면적	수용정원	현 수용인원

- A9. 사동별 거실 수와 수용인원  
(위 A7, A8, A9는 하나의 표에 합산하여 제출 가능)
- A10. 운동장의 종류별 면적
- A11. 목욕탕의 종류별 면적
- A12. 탈의실의 면적
- A13. 수용자 이발실의 종류별 면적
- A14. 작업장의 종류별 취업인원과 면적
- A15. 교육장의 종류별 교육인원과 면적
- A16. 취사장의 면적
- A17. 신입실의 면적
- A18. 출정실의 면적

### B. 분류 및 누진처우

- B1. 분류과 직원의 직역별, 성별 구성인원
- B2. 분류직원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
- B3. 전년도 분류과 직원의 분류직 관련 재교육 내역

- B4. 전년도 1년간 신입심사 및 정기·부정기재심사 실시 대상인원
- B5. 전년도 분류심사 관련 관계기관 조회 건수
- B6. 전년도 분류심사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건수
- B7. 전년도 신입심사 관련 정밀분류심사 실시 건수
- B8. 수형자에 대한 행형성적의 고지방법 및 불만처리방법
- B9. 전년도 진급정지의 사유별 건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2조의 사유별 건수)
- B10. 전년도 진급정지의 감경 및 면제 건수
- B11. 전년도 강급조치의 사유별 건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5조의 사유별 건수)
- B12. 전년도 강급의 유예조치 건수
- B13. 현재 수형자의 누진처우와 관련하여 각급별 수용인원
- B14. 현재 자치사동 거주 수용자의 처우 급별 인원
- B15. 수형자 자치활동의 내용
- B16. 전년도 1년간 제2급 이상 수형자의 경기 및 오락회 개최 내역  
(경기 내용, 일시, 장소, 참여인원 등)
- B17. 전년도 1년간 제2급 이상 수형자의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활동의 실시내역  
(일시, 방문장소, 인원 등)
- B18. 전년도 1년간 제1급 수형자의 외부종교행사 참석 실시내역  
(일시, 행사내용 및 장소, 인원 등)
- B19. 전년도 1년간 제1급 수형자의 외부영화 관람허가 내역  
(일시, 장소, 영화제목, 인원 등)

### C. 급여 및 영치

- C1. 관급의류의 지급종류와 품목별 전년도 지급현황
- C2. 관급침구의 지급종류와 품목별 전년도 지급현황
- C3. 관급 생활용품의 종류와 전년도 지급현황
- C4. 지난 3개월간의 식단표 (자료제출일 기준)
- C5. 구매 가능한 자변부식의 종류와 지난 달의 구매 현황
- C6. 전년도 특별급식의 지급 현황
- C7. 자변으로 구매 가능한 영치물품의 종류 가격
- C8. 영치물품 보관창고의 면적

### D. 보건의료

- D1. 의료인력(의사 ○명, 약사 ○명, 간호사 ○명, 약사 ○명, 의료기사 ○명)

D2.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전임여부 (전임, 비전임, 공보의 구분)	전공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으로 명기함)	비전임인 경우: 진료시간 (예: 월-금, 10:00~12:00)	직책 (예: 의무과장, 의무관)

D3. 치과의사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전임여부 (전임, 비전임, 공보의 구분)	진료시간 (전임, 비전임 모두 명기) (예: 월-금, 10:00~12:00)	전문의 여부 (‘전문의’와 ‘일반’으로 구분)

D4. 정신과의사의 시설방문 진료 여부, 진료시간

D5. 방문의사(자원봉사)의 전공과 진료시간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전공	진료시간 (예: 월-금, 10:00~12:00)	소속(병/의원)
1			
2			
3			
4			
5			
6			
7			
8			
9			

D6.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재활치료사 유무

D7. 의사, 약사, 간호사를 제외한 의무과(정복)직원의 업무 (총 인원 별도 명기)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의무과 (정복)직원의 주요업무내역 (예: 진료보조, 행정, 방역)	직위, 직급
1		
2		
3		
4		

5		
6		
7		
8		
9		
10		
11		

- D8. 의무과의 실별 종류 및 각각의 면적
- D9. 진료실(치과진료실 제외)의 면적
- D10. 진료대기실의 면적 (좌석 수도 함께 명기 함)
- D11. 약제실의 면적
- D12. 치과진료실의 면적 (치과유닛 수도 함께 명기함)
- D13. 방사선실의 면적 (있는 경우에 한함)
- D14. 의료기자재창고의 면적 (있는 경우에 한함)
- D15. 임상병리사실의 면적 (있는 경우에 한함)
- D16. 구비하고 있는 주요 의료장비(의료기구)의 구체적인 내역(종류, 수)
- D17. X-ray, 혈액검사기, 심전도기, 초음파기, 내시경기구, 적외선치료기 등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주요 의료장비가 더 있는 경우 보충할 것)

	구비유무 (장비의 수)	최근 1개월간의 활용횟수 (기간 명시)	노후 여부 (구입연도)
X-ray기			
혈액검사기			
심전도기			
초음파기			
내시경기구			
적외선치료기			
응급처치기(산소호흡기)			

- D18. 수술세트 구비 여부
- D19. 건강검진용 의료기구의 종류와 수
- D20. 병사의 실별 종류 및 각각의 면적
- D21. 병사수용정원 및 현재 병사수용인원
- D22. 격리병실의 종류와 수 (독거실과 혼거실을 구분할 것)
- D23. 격리병실의 관리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지난 1개월간의 소독 횟수 (기간 명시)	
소독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	
지난 1개월간의 모포교환 횟수 (기간 명시)	

지난 1개월간의 모포털이 횟수 (기간 명기)	
격리병실 수용자의 목욕방법과 목욕횟수	
기타 특별관리 내역 (있는 경우에 한함)	

- D24. 전염병 환자 격리 여부 (구체적으로 명기)
- D25. 중환자실 설치 여부
- D26. 병동거실의 화장실 (좌변기 설치된 거실의 수)
- D27. 병동거실의 난방의 종류 (온돌, 전기판넬 등)
- D28. 병사운동(장)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병사수용자	일반수용자와 비교
1회 운동시간 (분)		
운동장과의 접근성	도보 ( )분 이내	
운동장의 크기 (가로, 세로 길이)	(병사운동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함)	

- D29. 병사수용자의 목욕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병사수용자	일반수용자와 비교
목욕횟수 (동계)		
목욕횟수 (하계)		
1회 목욕시간 (동계기준)		
하계 온수목욕 가능 여부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목욕도우미(간병부) 유무		
목욕탕 안전손잡이 설치여부		
'탕' 입수목욕 가능 여부	(예: '샤워'만 가능)	

- D30. 최근 1개월간의 진료인원과 진료건수(기간 명시), 1일 평균진료인원  
(투약환자, 치과환자, 외부진료환자 제외함)
- D31. 최근 1개월간의 의무과연출인원(기간 명시)과 1일 평균 의무과연출인원  
(투약환자, 치과환자 제외함)
- D32. 최근 1년간, 최근 1개월간의 여자수용자의 의무과 연출인원 (각각 명기)
- D33. 순회진료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최근 1개월간의 순회진료인원 (기간 명시)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순회진료인원	
최근 1개월간의 1중일 평균 순회진료인원	
순회진료의 장소	
순회진료시간 (의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D34. 최근 1개월간의 투약인원과 1일 평균 투약인원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투약종류	최근 1개월간의 투약인원 및 건수 (기간 명시)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인원 및 건수

관 지급 약품		(처방인원 및 건수)
차입약품		(투약인원 및 건수)
자변약품		(자변약품 구매건수)

- D35. 현재 수용인원 중 투약인원(차입약 제외, 자변약품 제외)의 비율
- D36. 현재 수용인원 중 투약인원(차입약 포함, 자변약품 제외)의 비율
- D37. 최근 1개월간의 치과진료인원(기간 명시)과 1주일 평균 치과진료인원
- D38. 현재 치과진료대기자 수와 1개월 전 치과진료대기자 수 (기일 명시)
- D39. 현재 치과진료 대기기간과 1개월 전 치과진료 대기기간 (기일 명시)
- D40. 최근 1년간 정신과 진료인원 및 진료건수 (기간 명시)
- D41. 중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서술하십시오.
- D42. 전염병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서술하십시오.
- D43. 최근 1개월간의 외부진료인원(기간 명시)
- D44. 최근 1년간의 외부병원 입원자 수 및 입원일수(총계, 평균) (기간 명시)
- D45. 진료내역별 외부진료 횟수 및 진료대기기간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최근 1년간 외부진료횟수 (기간 명시)	현재 외부진료대기기간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정신과		

- D46. 현재 협약을 맺고 있는 외부병원(의원)의 종류와 규모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병원 이름	규모 (병상 수)	전용병실 설치 여부

- D47. 최근 1년간 수용자 외부병원 진료비용 총액 (기간 명시)
- D48. 최근 1년간 수용자 외부병원 진료비용 중 수용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기간 명시)
- D49. 최근 1년간 수용자 의료관련지출비용 총액 (기간 명시)
- D50. 최근 1년간 의약품 구입 총액 (기간 명시)
- D51. 최근 1년간 의약품 자변구매 총액 (기간 명시)
- D52. 최근 1년간 수용자 수술횟수 (기간 명시)
- D53. 최근 1년간 수용자 所內 수술횟수 (기간 명시)
- D54. 최근 1년간 수용자 외부병원 수술횟수 (기간 명시)
- D55. 최근 1년간 정신과 질환 발생 횟수 (기간 명시)
- D56. 현재 수용인원 중에서 약물/알코올중독(의심)인원
- D5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용자 사망사고 횟수와 각각의 사망원인(병명)
- D58. 최근 1년간 수용자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 실시횟수 (기간 명시)
- D59.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실시 횟수와 실시대상 총인원 (기간 명시)
- D60. 최근 건강검진 일시 및 검진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 D61. 징벌집행 전후의 건강검진을 누가 하며, 주로 어떤 부분을 검사하는가? (구체적으로 작성)
- D62. 최근 1년간 방역 횟수와 방역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 D63. 최근 1개월간 거실 소독 횟수 소독방법과 소독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 D64. 작년 1년 방역예산과 지출내역, 금년 방역예산
- D65. 여름철 방충활동에 관하여 서술하십시오.
- D66. 일반수용자 목욕횟수 및 목욕시간 (하계와 동계를 구분)
- D67. 세탁횟수 및 세탁시간, 세탁허용장소 (사제담요 세탁방법)
- D68. 모포털이 장소 및 매달 모포털이 횟수
- D69. 일반수용자의 운동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미결수용자	수형자(출력자)	수형자(미지정)
1회 운동시간			
허용되는 운동기구			
운동장소			
운동시설 (예: 농구대)			

- D70. 급수시간 및 급수 양(예: 수용자 1인당 몇 리터) 및 온수공급(시간과 양)

식수 제공 방법 (예: 별도 제공, 수돗물 사용)	
온수 제공 방법 (동계 기준)	
급수(온수)시간 (동계 기준)	
급수(온수)양 (동계 기준)	

**E.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 E1. 신입자교육 시 규율과 징벌에 대한 교육(고지) 방법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E2. 전년도 1년간 신입자교육의 실시현황
- E3. 전년도 1년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규율 및 징벌에 대한 교육의 실시내용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E4. 전년도 1년간 시설 내에서 발생한 규율위반행위의 건수와 인원 수 (표)

전년도 12. 31 현재수용인원	규율위반행위 건수	규율위반행위 수용자수	규율위반행위 건수/수용인원	규율위반 수용자수/수용인원
수형자				
미결수용자				

- E5. 전년도 1년간 징벌집행 중에 발생한 규율위반행위 건수 및 인원 수
- E6. 전년도 1년간 규율위반혐의로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된 수용자의 수 (표)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구분	징벌혐의자 수	조사실 등 격리수용된 수용자수
2004.1.1.- 2004.6.28		
2004.6.29 - 2004.12.31	증거인멸의 우려	
	타 수용자를 해칠 우려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계	
합계		

(\*수용자에게 두개 이상의 격리수용사유가 중복적용된 경우 주된 사유 한건으로 기재함)

<2005년 이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구분	징벌혐의자 수	조사실 등 격리수용된 수용자수
격리수용사유	증거인멸의 우려	
	타 수용자를 해칠 우려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합계	

(\*수용자에게 두개 이상의 격리수용사유가 중복적용된 경우 주된 사유 한건으로 기재함.)

- E7. 전년도 1년간 규율위반혐의로 격리수용된 수용자의 격리수용기간별 인원수 및 격리수용기간의 평균 (표)

격리수용기간	인원수(%)	1인당 평균 격리수용기간
7일 이내		(※격리수용기간의 합÷인원수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계산)
7일 초과 14일 이내		
14일 초과		

E8. 전년도 1년간 징벌협약자의 조사기간 (표)

(※ 조사기간 = 조사착수일로부터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일 전일까지의 기간)

조사기간	인원수(%)	평균 조사기간
7일 이내		(※조사기간의 합 ÷ 인원수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계산)
7일 초과 14일 이내		
14일 초과		
합계		

E9. 전년도 1년간 징벌협약자에 대한 처우제한의 현황 (표)

(※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

구분		인원수	징벌협약자 대비 비율(%)	
징벌규칙 제11조 제2항	접견의 제한 및 금지			
	서신수발의 제한 및 금지			
	전화통화의 제한 및 금지			
징벌규칙 제11조 제3항	운동의 제한 및 금지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참석의 제한 및 금지			
	기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의 차단	목욕		
		기타*		
기타	집필의 제한 및 금지			
	신문도서의 열람의 제한 및 금지			
	라디오와 TV 시청의 제한 및 금지			
	자변물품사용의 제한 및 금지			

(\*기타는 목욕 외에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E10. 전년도 1년간 징벌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 외부위원의 수와 직업(외부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명시)

E11. 전년도 1년간 징벌위원회의 개최현황 (표)

징벌위원회	회의일시 및 회의시간	개최장소	징벌위원중 참석위원 수	참석한 외부위원 수	징벌의결 건수
제1차					
제2차					

(※ 징벌위원회의 개최현황을 순차적으로 모두 작성함.)

E12. 징벌위원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서술하십시오.

- ① 다른 수용자가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과 최근 1년간의 사례건수
- ② 외부인이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과 최근 1년간의 사례 건수
- ③ 징벌혐의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징벌위원회에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방청이 가능하다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과 최근 1년간의 사례건수
- ④ 징벌혐의자 외의 다른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방청이 가능하다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과 최근 1년간의 사례건수

E13. 전년도 1년간 수용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징벌위원회의 개최횟수 및 징벌의결 건수

E14. 전년도 1년간 조사종결처분의 현황 (표)

(※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재함)

구분	수용자 수	징벌혐의자 중 비율(%)
징벌위원회 징벌의결 요구		
징벌혐의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징벌혐의자에 대한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합계		100

E15. 전년도 1년간 징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징벌의 내역 (표)

규율(징벌규칙 제3조)	징벌건수	징벌내용 (예 : 금치 20일 0건, 금치 1월 0건 등)	가중 여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1호위반부터 제21호위반까지 같은 표양식으로 기재함)

(※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

(※ 집행유예의 경우 별도표기 안하고 선고된 징벌내역을 기재함)

E16. 전년도 1년간 징벌로 금치가 선고된 경우 금치기간별 현황 (표)

(※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

금치기간	금치선고건수 (금치의 집행유예 포함)	금치선고건수 중 집행유예 선고건수	평균 금치기간  (금치기간의
5일 이내			

6-10일			총합÷금치선고건수) ※일단위로 계산하되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
11-20일			
21일-1월			
1월 초과 2월			
2월 초과			
합계			

E17. 전년도 1년간 금치 집행 중 연속하여 금치선고를 한 건수(집행유예는 제외)

E18. 전년도 1년간 징벌집행유예의 건수 및 전체 징벌선고건수 대비 비율

E19. 전년도 1년간 행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징벌감경 및 징벌면제의 건수

E20. 전년도 1년간 금치집행 수용자의 권리제한의 현황 (표)

(※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현황만을 기재함)

(※ 권리가 허용된다 함은 통상적인 수용시와 마찬가지로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일회적인 허용은 권리의 허용이 아님)

권리의 구분	권리가 허용된 금치집행수용자 수	권리가 제한된 금치집행수용자 수	전체 금치수용자 수 대비 권리가 허용된 수용자의 비율(%)
접견			
집필			
서신수발			
운동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의 비치 및 사용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E21. 금치집행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진단(최근 3개월 동안의 통상적인 방법)

- ① 금치집행 전 건강진단(진단의 주체, 진단방법, 진단항목을 기재)
- ② 금치집행 중 건강진단(진단의 주체, 진단방법, 진단항목을 기재)
- ③ 금치집행 후 건강진단(진단의 주체, 진단방법, 진단항목을 기재)

E22. 소장의 계구사용명령(긴급사용 제외)에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 ① 소장의 명령이 있기까지의 보고 체계
- ② 소장에게 보고 시 첨부하는 서류목록
- ③ 계구규칙 제10조에 의한 매일심사의 방법
- ④ 전년도 1년간 소장이 사전에 계구사용을 명령(긴급사용은 제외)한 총 건수(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건수)
- ⑤ 전년도 1년간 소장이 계구사용명령 전에 해당 수용자를 면담한 건수(2004년의 경우 2004.6.29 이후의 건수)

E23.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긴급사용을 포함하며, 2004년의 경우

2004.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함)

- E24. 전년도 1년간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의 총 건수, 그 중 긴급사용의 건수,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에서 해당 수용자가 사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은 건수,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의 긴급사용 건수 중 의사의 즉시진찰(30분 이내)을 받은 건수(2004년의 경우 모두 2004.6.2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건수로 기재함)
- E25.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이외에 실시한 계호방법 및 그 활용정도
- ① 시설내 보호실(혹은 안정실)의 수,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만 계구사용 없이 보호실(혹은 안정실)에 수용한 건수
  - ② 대면계호를 활용한 건수 및 그 중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만 계구사용 없이 대면계호를 활용한 건수
  - ③ 자살·자해 우려자와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의 내용(자격증소지자에 의한 체계적 상담프로그램을 말함) 및 활용건수, 활용건수 중 계구사용 없이 수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수
  - ④ 자살·자해 우려자와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의 내용(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말함) 및 활용건수, 활용건수 중 계구사용 없이 수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수
- E26. 전년도 1년간 계구의 종류별/사용방법별 사용건수와 평균사용시간 (표)
- (※ 호송 시 계구사용은 제외함)
- (※ 동일 수용자에게 두개 이상의 계구를 중복사용한 경우 사용건수는 각 계구별로 한건으로 기록함)
- (※ 평균사용시간 = 사용시간의 합 ÷ 사용건수)
- (※ 평균사용시간은 항목별로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함)
-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계구의 종류	2004.1.1 - 2004.6.28			2004.6.29 - 2004.12.31		
	사용방법	사용건수	평균사용시간	사용방법	사용건수	평균사용시간
수갑	금속수갑			금속수갑		
	가죽수갑			벨트수갑 플라스틱수갑		
포승	신사승			간이승		
	양수승			상체승		
	하퇴승			하체승		
	하지승					
사슬	양수승과 같은 방법			긴 사슬		
	양수승의 변형방법					
	하퇴승과 같은 방법					
	짧은 사슬 (외부병원 입원시)			짧은 사슬 (외부병원 입원시)		
안면보호구	머리보호형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안면보호구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					
--	----------------	--	--	--	--	--

<2005년 이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사용건수	평균사용시간
수갑	금속수갑		
	벨트수갑		
	플라스틱수갑		
포승	간이승		
	상체승		
	하체승		
사슬	긴 사슬		
	짧은 사슬 (외부병원 입원시)		
안면보호구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E27. 전년도 1년간 계구의 사용시간별 건수 (표)

(※ 호송 시 계구사용은 제외함)

계구의 사용시간	전체 계구사용 건수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	계구사용시간 전체평균
1시간 이내			계구사용 총 시간 ÷ 계구사용 총 건수 (시간단위로 계산하며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
1시간 초과-3시간 이내			
3시간 초과-6시간 이내			
6시간 초과-12시간 이내			
12시간 초과-24시간 이내			
24시간 초과-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72시간 이내			
72시간 초과-5일 이내			
5일 초과-7일 이내			
7일 초과-14일 이내			
14일 초과			
합계			

E28. 호송 시 사용하는 계구와 계구사용방법에 대해 서술

E29.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검진 실시내용 및 방법

- ① 의사가 계구사용수용자를 방문하여 건강검진하는 횟수와 방법
- ② 의사가 계구사용수용자를 방문하여 건강검진할 때의 검진내용(체중, 혈압 등 체크하는 항목)
- ③ 최근 6개월 간 의사가 계구사용 중지를 소장에게 건의한 건수 및 내용

E30.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수용자의 거실수용 현황

(혼거실수용 건수와 독거실수용 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E31. 계구의 일시 완화 및 일시해제의 실시방법

(목욕, 식사, 용변, 치료, 운동을 구분하여 각 경우에 계구를 일시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내부기준 및 실시방법을 서술)

F. 외부교통 및 정보권

F1. 접견실의 수와 위치 (표)

구분		수	위치
칸막이접견실	남자접견실		
	여자접견실		
변호인접견실			
장소변경접견실			

F2. 신입수용 시 수용자 가족에게 접견에 관한 안내를 하는 방법(안내문의 발송여부 및 안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안내문을 첨부함)

F3. 접견제한사실(예 : 조사중 혹은 징벌)을 가족에게 통지하는 방법

- ① 통지의 방법(전화, 우편 등)
- ② 통지의 내용(접견금지이유와 금지기간 등)
- ③ 통지의 시기(접견금지사실 발생 후 얼마만에 통지하는가)
- ④ 통지여부에 대한 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F4. 최근 3개월간 수형자가 실제 사용한 접견의 횟수 (표)

(※ 급외자도 처우기준에 상응하여 누진계급별 인원수에 포함함)

(※ 수형자 1인당 월평균접견횟수= 최근 3개월간 접견횟수 ÷ 수형자수 ÷ 3)

누진계급별	시설내 수형자 수	최근 3개월간 접견횟수	수형자 1인당 월 평균접견횟수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F5.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가 실제 사용한 접견의 횟수 (표)

(※ 변호인접견은 제외)

(※ 미결수용자1인당 월평균접견횟수 = 최근 3개월간 총접견 횟수 ÷ 미결수용자수 ÷ 3)

시설 내 미결수용자의 수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의 총접견횟수	미결수용자 1인당 월 평균접견횟수

--	--	--

F6.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1회 당 실제접견시간

F7. 공휴일 접견의 실시방법과 최근 3개월간의 실시현황

- ① 원거리 거주자로 제한하는가 여부, 제한하고 있다면 공휴일 접견이 불허되는 시도의 범위
- ② 당해 주간의 평일에 접견한 자의 공휴일 접견을 제한하는가 여부
- ③ 기타 공휴일 접견의 실시기준
- ④ 최근 3개월 간 공휴일 접견의 실시건수(월별 건수로 기재)

F8. 접견예약제의 실시방법 및 최근 3개월간의 실시건수

- ① 접견예약의 가능한 모든 방법
- ② 최근 3개월간 접견예약제의 실시건수(월별 건수로 기재)

F9. 원격화상접견의 실시방법 및 최근 3개월간의 실시건수

- ① 원격화상접견실의 설치현황
- ② 화상접견의 예약의 가능한 모든 방법
- ③ 최근 3개월 간 화상접견의 실시건수(월별 건수로 기재)

F10. 전년도 1년간 합동접견의 실시내역

- ① 실시일시와 각 합동접견 시 참여수형자수
- ② 수형자 1인당 접견가족수의 제한기준
- ③ 합동접견의 실시장소
- ④ 합동접견 시 계호의 방법

F11. 전년도 1년간 무계호접견(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실시현황 (표)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실시횟수	장소
제1호		
제2호		
제3호		

F12. 최근 3개월간 장소변경접견(행형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실시횟수와 장소 (실시횟수를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

F13. 전년도 1년간 접견의 강제종료(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례의 건수 (표)

접견 강제종료의 사유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건수	비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F14. 전년도 1년간 접견불허건수 및 사유별 현황

F15. 서신업무에 관한 기관내규(제출)

F16. 시설의 서신발송 및 교부절차(시간대별로 서술)

(※ 발송의 경우 사동직원이 서신을 취합하는 최종시점으로부터 우체국직원에게 서신을 인계하는 시점까지, 교부의 경우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신을 접수 받은 시점부터 수용자에게 교부하는 시점까지임)

F17. 최근 1개월간 수형자의 전체 서신발송횟수 및 서신교부횟수

F18. 최근 1개월간 미결수용자의 전체 서신발송횟수 및 서신교부횟수

(※ 변호인과의 서신은 제외함)

F19.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의 검열현황 (표)

미결수용자 수	최근 3개월간 변호인과의 서신교환 총 건수 (발송 및 교부)		최근 3개월간 변호인과의 서신 중 검열된 건수		최근 3개월간 변호인과의 서신 중 검열 후 발송 및 교부가 불허된 건수	
	총건수 ( )	발송건수 ( )	총 건수 ( )	발송시검열건수 ( )	총 건수 ( )	발송불허건수 ( )
		교부건수 ( )		교부시검열건수 ( )		교부불허건수 ( )

F20.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의 발송 및 교부절차에 관하여

- ①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발송하고자 할 때의 발송절차 (특히 일반서신발송절차와 다른 점을 서술)
- ② 변호인으로부터 접수된 서신을 미결수용자에게 교부할 때의 교부절차 (특히 일반서신발송절차와 다른 점을 서술)

F21. 현재 서신검열제외대상자 통계 (표)

행형법 제58조 제2항 각호	인원수	비고
제1호		
제2호		
제3호		

F22. 시설 내 우편취급소의 유치여부 및 위치

F23. 인터넷홈페이지의 전자서신제도의 실시방법에 대하여

- ① 전자서신의 전담직원의 여부와 그 수
- ② 전자서신의 교부방법
- ③ 전자서신의 교부절차

F24. 발송서신과 교부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

F25. 전년도 1년간 서신발송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 (표)

서신발송불허의 사유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건수	폐기여부 (예 : 폐기 0건, 영치 0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합계		

F26. 전년도 1년간 서신교부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 (표)

서신교부불허의 사유 (행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건수	폐기여부 (예 : 폐기 0건, 영치 0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합계		

F27. 서신발송불허처분 시 조치에 대해

- ① 수용자에게 발송불허서신을 돌려주는지 아니면 영치, 폐기 여부 및 전년도 1년간 발송불허서신의 각 처리건수
- ② 발송불허처분 시 수용자에게 발송불허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F28. 서신교부불허처분 시 조치에 대해

- ① 전년도 1년간 교부불허서신의 영치건수와 폐기건수
- ② 영치와 폐기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
- ③ 교부불허처분 시 수용자에게 교부불허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F29. 최근 3개월간 수형자의 허가받은 집필건수 및 내역 (표)

(※서신작성 등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제3조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는 집필은 제외함)

집필내용(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참조)	건수(%)	비고
소송서류의 작성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		
정보공개청구		
기타		
합계		

F30.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의 허가받은 집필건수 (표)

(※ 서신작성 등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제3조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는 집필은 제외함)

집필내용(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참조)	건수(%)	비고
소송서류의 작성(미결수용자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한 소송서류의 작성은 제외)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		
정보공개청구		
기타		
합계		

F31. 집행용구의 소지에 관한 내부기준 및 운용현황

F32. 다음 중 사전허가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적시하십시오.

- ① 소송서류의 작성
- ②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 ③ 청원서 작성
- ④ 정보공개의 청구서 작성
- ⑤ 고소장이나 고발장 작성
- ⑥ 기타 민원서류 작성

F33. 전년도 1년간 집행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 (표)

집행불허처분의 사유(행형법 제33조의 3 제1항)	건수	비고
제1호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주시오)		
제2호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주시오)		
합계		

F34. 시설 내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의 설치현황

(기결사동 0대, 미결사동 0대, 여사 0대 등으로 구분)

F35. 최근 1개월간 수형자가 실제 전화를 사용한 횟수 (표)

(※ 급외자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5조의 급외자의 누진계급편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각 누진계급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함)

누진계급별	시설내 수형자 수	최근 한달간 총 전화이용횟수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전화이용횟수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전체			

F36. 최근 1개월간 미결수용자가 실제 전화를 사용한 횟수 (표)

시설 내 미결수용자 수	최근 1개월간 총 전화이용횟수	미결수용자 1인당 월 평균 전화이용횟수

- F37.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에게 허가되는 전화통화 1회당 통화시간(분단위)
- F38. 최근 1개월간 긴급한 용무를 이유로 수용자에게 전화사용을 허가한 건수  
 사유  
 (※ 긴급한 용무란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횟수제한을 초과하여 전화사용을 허가한 경우를 말하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 및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상의 통상적인 전화사용범위 내의 경우는 제외함)  
 (※ 긴급한 용무의 허가사유를 구분하여 건수를 계산함)
- F39.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의 허가에 관한 내부기준과 전년도 1년간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 건수  
 ①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의 허가에 관한 내부기준  
 ② 평가 전년도 1년간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건수
- F40. 전년도 1년간 전화통화의 차단처분의 건수 (표)

전화통화차단의 사유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4조 참조)	건수	비고
외국어사용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유해한 내용		
범죄의 모의, 교사		
증거인멸의 시도		
합계		

- F41. 전년도 1년간 전화사용 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 (표)

전화통화불허처분의 사유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5조 참조)	건수	비고
외국어사용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유해한 내용		
범죄의 모의, 교사		
증거인멸의 시도		
합계		

- F42. 현재 수용자의 관용도서 열람현황 (표)

관용도서열람	수형자수	미결수용자수	수용자 수 (수형자+ 미결수용자)	비고
도서열람 안함				
5권 이하 열람				
6-10권 열람				
10권 이상 열람				
합계				

- F43. 수용자 1인당 구독가능 신문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내부기준  
 (혼거실 수용자와 독거실 수용자의 구분하여 설명)
- F44. 신문열람실(거실과 별개의 열람실)의 운영여부 및 운영에 관한 내부기준
- F45. 수용자 1인당 거실 내 소지가능한 도서의 수에 관한 내부기준

F46. 도서관의 운영현황

- ① 도서관의 장서의 수
- ② 도서관의 전담직원의 배치현황
- ③ 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분류와 대출, 검색시스템)

F47. 신문기사삭제방식에 관한 내부기준과 뒷면보전방법

(예를 들어, 칼로 오른다든가, 매직으로 지운다든가 등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F48. 전년도 1년간 신문기사 삭제처분의 내역별 건수 (표)

신문기사 삭제의 사유별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 제1항)	삭제건수 (※동일신문의 동일기사삭제는 배포부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취급하며, 다른 신문의 서로 유사한 기사의 삭제는 신문종류별로 1건으로 취급함)	비고
제1호		
제2호		
합계		

F49. 전년도 1년간 개인도서 불허처분의 사유별 건수와 도서명 (표)

도서열람불허처분 (수용자열람도서관리규정 제3조 제1항)	건수 (※동일도서라도 열람을 신청한 수용자가 다른 경우 각기 한건으로 취급)	도서명 (※모두 기재)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합계		

F50. 거실종류별 TV설치현황

(TV가 설치되지 않은 거실의 종류와 거실수를 제시하시오)

F51. 최근 1개월 간의 주간방송계획

F52. 최근 1개월간 실제 방송한 TV프로그램의 성격별 구분 (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건수(%)	방송시간(%)	비고
교화용방송		예 : 00건(00%)	예 : 00시간00분 (00%)	
사회방송TV 뉴스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교양 및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오락프로그램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스포츠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드라마	생방송			
	녹화방송			
사회방송TV 영화	생방송			
	녹화방송			
교화용제작 외의 비디오테이프				
합계				

F53. 최근 1개월 동안의 평균 TV방송시간(평일, 공휴일 구분)

F54.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8조에 의한 수용자설문조사에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서술

- ① 전년도 1년간 수용자설문조사 실시횟수, 실시일자 및 실시방법  
(설문대상 수용자수, 설문조사의 실시방법을 반드시 기재)
- ②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8조에 의한 수용자설문조사 양식(가장 최근 것)
- ③ 설문조사분석결과(가장 최근 것) 및 주간방송계획에의 반영내역  
(주간방송계획에의 반영내역에는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송프로그램이 신설 내지 변경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기재해야 함)

F55. 방송프로그램의 안내방법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서술

- ① 주간방송계획의 거실 제공여부
- ② 매일 당일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하는 방법
- ③ TV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경우 안내하는 방법

F56. 가장 최근의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제출)

F57. 귀휴에 관한 수용자교육과 고지의 실시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서술

- ① 2003년 1년간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신교육 등에서 귀휴관련 사항(귀휴의 의미, 자격요건, 허가사유, 신청방법 등)을 교육한 횟수 및 교육 방법
- ② 귀휴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수형자에게 그 사실 및 귀휴허가사유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는 방법(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하는가를 반드시 기재함)
- ③ 귀휴를 허가받은 수형자가 귀휴를 가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의 실시방법 및 내용

F58. 전년도 1년간 귀휴사유별 실적 (표)

귀휴의 허가사유별	누진계급별 귀휴신청 인원수	누진계급별 귀휴허가 인원수	비고 (귀휴기가내 귀소하지 않은 경우 등)
-----------	----------------------	----------------------	----------------------------------

일반귀휴 (행형법 제44조 제3항)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1호	예 : 제0급 0명	예 : 제0급 0명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2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3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4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가 내지 아목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자목			
특별귀휴(행형법 제44조 제4항)				
합계				

F59. 귀휴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휴 허가사유발생 시 귀휴허가사유를 해당 수형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하는가를 서술함)

F60. 전년도 1년간 귀휴의 기간 (표)

귀휴의 허가사유별		1회 귀휴당 평균귀휴기간 (일단위로 소수점첫째자리까지 계산)	귀휴기간별 귀휴인원수 (예 : 3일 3명, 4일 5명 등)	비고
일반귀휴 (행형법 제44조 제3항)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1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2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3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4호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가 내지 아목			
	귀휴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 중 자목			
특별귀휴(행형법 제44조 제4항)				
전체평균				

F61. 전년도 1년간 귀휴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인원 및 직위)

F62. 전년도 1년간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별 세부내용(표)

귀휴심사위원회	회의일시 및 회의시간	참석인원 (외부위원참석 여부 표시)	심의한 귀휴건수	허가한 귀휴건수	비고
제1차					
제2차					

F63. 전년도 1년간 외부통근기업체 현황 및 작업내역

F64. 전년도 1년간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수형자 인원

(※ 외부통근기업체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통계작성)

(※ 인원은 전년도 1년 동안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수형자 수를 말한다)

F65. 전년도 1년간 가족만남의 집 활용실적

(※ 누진계급별로 인원수를 기재함)

F66.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하여 다음 항목을 서술

- ① 수용자의 신분카드를 작성할 때, 그리고 기타 수용자로부터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용자에게 정보의 수집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수용자의 동의를 받는지 여부
- ② 수용자의 동의 없이 그로부터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우 정보수집의 목적과 용도 및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주는지 여부
- ③ 타인(다른 수용자 포함)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수집목적과 용도 및 수집된 정보의 내용을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주는지 여부
- ④ 수용자로부터 외부인(예를 들어 수용자의 가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해당 외부인에게 정보취득의 목적과 용도 및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알려주는지 여부

F67. 수용자의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항목을 서술

- ① 수용자 신분카드를 작성할 때 작성담당자, 작성장소, 작성방식
- ② 전년도 1년간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의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한 전체건수 및 제공대상기관별 건수
- ③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의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수용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알려주는지 여부

**G. 작업, 직업훈련, 교육**

G1. 수형자, 취업불가능인원, 취업가능인원

수형자총인원		
취업불가능한인원(환자, 고령자, 임산부, 징벌집행 중)		
취업가능인원	취업인원	
	미지정인원	
	합계	

G2. 전년도 작업변경 요청사례별 사유와 허용여부 및 그 조치내용(변경, 이송, 징벌 등)

G3. 직영작업 유형별, 급수별 월 평균 상여금 액수

G4. 관용작업 유형별, 급수별 월 평균 상여금 액수

G5. 위탁작업 유형별, 급수별 월 평균 상여금 액수

G6. 외부통근작업 유형별, 급수별 월 평균 상여금 액수

G7.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정원과 현원

G8.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수용자들의 작업시간표

G9.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여부 (현원이 모두 동시에 작업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순환적으로 휴업을 하는 인원이 있는지의 여부)

G10.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수용자들의 1주일에 1일 휴무 엄수여부

G11.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수용자들에게 1주일에 1일 휴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G12. 직업훈련 직종과 직종별 대상인원

G13. 직업훈련 직종별 인원과 직종별 교사의 수

G14. 직업훈련 전담 행정직원의 수(직업훈련 교사와는 별도로 직업훈련 관련 행정 업무 담당 직원이 있는 지, 있다면 몇 명인지)

G15. 전체 직업훈련 교사와 강사의 수

G16. 직업훈련 교사와 강사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

G17. 자격증의 내용

G18. 신입자 교육의 담당자, 장소, 교육시간, 교육내용, 보조자료(시청각) 등에 대한 자료

G19. 시행 중인 학과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유형별 참여인원

	프로그램유무	참여인원
a. 초중등 학과교육,		
b.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c. 전문대학교육,		
d.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교육,		
e. 외국어 및 한자교육		
f. 정보화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 G20. 전체수용자 학과교육별 상임교사와 외부강사의 직업별 분포와 명 수  
 (교회직공무원, 경비교도대, 교육위원, 교정참여인사 등 신분을 세분함)  
 (1회에 한하여 초빙된 강사는 제외한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강사로 활동한 외부인사를 외부강사로 본다.)
- G21. 교사와 강사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와 각 자격증의 내용  
 (대학교수나 학원 강사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G22. 수용자대상 인권교육 실시여부, 교육내용, 개최빈도, 1회당 교육인원, 강사

**H. 수용생활**

**H1. 종교생활**

H1.1. 현재 수용자의 종교현황

- (※ 기독교 00명, 불교 00명 등으로 모든 종교의 수용자 수를 기재)
- (※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여 기재함)

H1.2. 최근 3개월간의 각 종교별 집회의 일시 및 장소, 집회장소의 성상설치여부, 각 집회별 참가인원 (표)

- (※ 각 종교별로 성직자가 집전하는 공식적인 예식(미사, 예배 등)을 말하며, 성경공부 등 소모임성격의 집회는 제외함)
- (※ 종교의례에 해당하는 모든 집회를 건별로 기재함)

종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집전자	성상설치여부
			수형자	미결수용자		
기독교						
:						
카톨릭						
:						
불교						
:						
여호와의 증인						
:						

H1.3. 최근 3개월간의 수용자의 종교 활동을 위한 모임의 현황 (표)

- (※ 성경공부반, 찬송가합창반 등 종교적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수용자의 모임을 말함)
- (※ 각 종교활동의 모임 별로 지난 3개월간의 활동상황을 기재함)

모임의 명칭	해당 종교	모임의 내용	참여인원		지도자 (직업과 활동기간)	지난 3개월 간의 활동현황	모임의 장소	1회 모임의 활동시간
			수형자	미결 수용자				

(예 : 성가대)																	
:																	
:																	
:																	

H1.4. 수용자에게 종교생활을 위하여 거실 내 소지가 허용되는 물품내역 (표)  
(※ 허가인원은 현재의 인원으로 하며,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함)

목록	종교서적					성물					성상					비고	
	성경	불경	교리서적	기도서	성가집	기타	목주	염주	목탁	종	기타	십자가상	마리아상	예수상	불상		기타
기본적인 허가여부																	
허가 인원	수형자																
	미결수용자																

H1.5. 유대교와 이슬람교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리에 따른 식사제공여부  
(해당종교의 수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H1.6. 최근 3개월간 수용자가 해당종교의 성직자와 개별적인 만남을 가진 사례  
(※ 성직자와의 만남은 고백성사, 상담 등의 경우를 말한다)

- ① 각 종교별로 성직자와 수용자의 만남의 건수
- ② 성직자와의 만남 시 이용되는 장소
- ③ 성직자와의 만남 시 대화의 감시방법(구체적으로 서술)

H1.7. 종교위원의 위촉현황

- ① 현재 종교위원의 수
- ② 종교위원 중 3대 종교의 성직자의 수(기독교의 목사, 카톨릭의 신부, 불교의 승려로 나누어 인원수 기재)
- ③ 종교위원의 종교별 분포(각 종교별로 나누어 인원수 기재)
- ④ 종교위원의 직역별 분포(성직자급, 전도사급, 일반 신도급으로 나누어 기재)

H1.8. 종교관(종교실)의 설치 현황(각 종교별 종교관의 수와 면적을 기재)

H1.9. 현재 직원 중 성직자의 현황

(※ 성직자란 해당 종교에 전속되어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한다. 목사, 선교사, 신부, 수녀, 승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H2. 취미활동

H2.1. 현재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의 활동현황 (표)

(※ 각 취미활동모임 별로 아래 항목을 기재함. 같은 종목의 취미활동 모임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따로 기재함)

(※ 독서, 학습, TV시청, 일상적인 운동, 종교활동 등은 제외함)

모임의 이름	성격과 내용	참여인원수		모임장소	최근 3개월 간의 모임의 날짜와 시간	필요한 용품(예 : 악기 등)의 조달방법 (자비 혹은 관급)
		수형자	미결수용자			

H2.2. 전년도 1년간 취미활동 관련 외부행사 참여 실적

- ①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한 실적
- ② 외부에서 개최되는 공식대회(경쟁부문)에 수용자가 작품을 출품한 실적
- ③ 외부에서 개최되는 공식대회(경쟁부문)에 수용자가 직접 참가한 실적
- ④ 외부에서 개최되는 공식대회에 경쟁자로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자가 직접 대회를 참관한 실적
- ⑤ 외부에서 개최되는 행사(비경쟁부문)에 수용자가 작품을 출품 내지 전시한 실적

H2.3. 전년도 1년간 시설에서 수용자의 취미활동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사항

- ① 각 취미활동 모임별 전문가(직원 및 외부강사)의 지도실적  
(※ 전문가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자자로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도한 모임의 월별 횟수를 기재함)
- ② 취미활동 모임을 위한 예산액수와 전체예산 대비 비율
- ③ 시설 내에서 관련대회나 발표회 등을 개최한 실적  
(※ 발표회 등의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여종목 수, 참여수용자수를 기재함)
- ④ 외부행사에서 수상한 수용자 및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H2.4. 시설내 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현황

- ① 시설 내 문화공간의 위치와 면적
- ② 문화공간 안에 설치된 오락시설 및 문화활동시설의 종류(컴퓨터, 탁구 등 실내운동, 기구를 이용한 오락시설, 잡지 등을 읽을 수 있는 독서방 등 등)
- ③ 문화공간의 활용방법(모든 수용자에게 허용되는가 여부 및 순환주기)
- ④ 문화공간의 1회 이용시 이용시간

H3. 수용자 및 교도관 상호관계

- H3.1. 2003년 직원에 대한 수용자 고소, 고발 건수 (인권위 진정 제외)
- H3.2. 수용자 고소/고발로 직원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건수(2003년 기준)
- H3.3.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 건수 (연도별로 작성)
- H3.4. 최근 5년간 직원이 수용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구체적 내역(예: 전치 3주)

(연도별로 작성)

H3.5. 최근 5년간 수용자 자살건수와 자살기도건수 (연도별로)

H3.6. 최근 5년간 수용자 자살(기도)로 인해 직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

#### H4. 상담

H4.1. 상근 정신과의사나 임상심리사의 수

H4.2. 직원 중 범죄심리사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자 수와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

H4.3. 교정위원 중 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 리스트

H4.4. 교정위원이나 교정참여인사 등 기타 자원봉사활동 인원 중 전문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리스트

H4.5. 전체 교정위원의 수와 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 별 인원

H4.6. 전년도 교회직공무원의 교화상담실적(횟수)을 상담 수용자의 성별로 나누어 제시

H4.7. 전년도 교화위원의 교화상담실적(횟수)을 상담 수용자의 성별 분포

H4.8. 중형예상 수용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H4.9. 중형예상 수용자의 자살자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H4.10. 자살자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을 받는가?

#### I. 권리구제

I 1. 전년도 소장면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수용자교육의 실시내역

(신입자교육과 수용자대상교육을 구분하여 서술)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I 2. 전년도 1년 동안 수용자의 소장면담 신청건수와 실제 면담건수

I 3. 전년도 소장면담 불허사유 및 사유별 건수

I 4. 소장면담결과의 통지방법(구술, 서술 등)

I 5. 소장면담제도의 내부운영기준(지침)

I 6. 전년도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수용자 교육 실시내역

(신입자교육과 수용자대상교육을 구분하여 서술)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I 7. 전년도 1년 동안 수용자의 청원 건수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구분)

I 8. 전년도 법무부장관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의 처리를 위한 내부기준과 처리실적(건수)

I 9. 전년도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수용자 교육의 실시내역

(신입자교육과 수용자대상교육을 구분하여 서술)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I 10. 현재 진정함의 개수와 설치위치

I 11. 전년도 1년 동안 진정 건수(표)

	수형자의 진정건수	미결수용자의 진정건수	비고
서면진정			
면전진정			
합계			

I 12. 전년도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수용자교육의 실시내역

(신입자교육과 수용자대상교육을 구분하여 서술)

(교육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I 13. 전년도 징별조사자 및 징별집행자의 변호사 접견 및 서신수발의 허용건수

I 14. 전년도 1년 동안 수용자의 소송 건수(표)

(미결수용자의 해당형사소송사건은 제외함)

소송절차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건수	수용자를 피고(인)로 한 소송건수	합계
민사소송	시설내 권리침해 대상			
	기타 사유			
형사소송	시설내 권리침해 대상			
	기타 사유			
행정소송	시설내 권리침해 대상			
	기타 사유			
헌법소원	시설내 권리침해 대상			
	기타 사유			
합계				

I 15. 전년도 1년 동안 수용자가 소송을 위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건수 및 서신발송 불허건수(사유별)

I 16. 수용자의 법률적 상담요청에 부응하는 시설내 프로그램에 대하여 서술하고 전년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무료법률상담프로그램 등)

I 17. 전년도 수용자의 법률상담의 건수와 내역(표)

소송절차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한 건수(변호사와의 개별접견은 관호안에 건수표시)	시설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프로그램에 의하여 수용자가 변호사와 상담한	수용자가 시설내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건수	합계

			건수		
민사소송	시설내 권리침해 대상				
	기타 사유				
형사소송	시설내 권리침해 대상				
	기타 사유				
행정소송	시설내 권리침해 대상				
	기타 사유				
헌법소원	시설내 권리침해 대상				
	기타 사유				
합계					

I 18. 전년도 징벌조사자 및 징벌집행자의 변호사 접견 및 서신수발의 허용건수

I 19. 도서실에 비치된 법률서적의 내용(표)

법률 관련서적의 종류	장서 수	전체 장서수 대비 비율
최근 2년간 발행된 법령집		
2년 이상 4년 미만 전에 발행된 법령집		
법학교과서류 (대학에서 통상 교재로 활용하는 기본도서) 최근 4년 이내 발행분		
교과서 외 법률지식 관련 도서		
기타 법률 관련 도서		
합계		

**J. 교정직원**

J1. 과 소속별 교도관 정원 과 현재인원

J2.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

J3. 사동근무자 수와 1인당 수용자수

J4. 교무과직원 1인당 수용자수

J5. 보안근무자 인원과 사무근무자의 인원

J6. 전년도 직원인권교육의 일정과 내용, 1회당 평균 대상인원, 강사, 이수시간

J7. 사무직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J8. 교대제 근무자의 주당 노동시간에 관한 자료와 함께 야근직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책정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를 작성, 제출

J9. 여성교도관의 과 소속별 인원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용도과	교무과	의무과	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	여사근무 여자교도관

J10. 직무교육 (법무연수원 교육 등 소수의 직원만이 선발, 참여하는 교육) 참가자의 성별 분포

K. 소수 수용자

K1. 여성수용자

K1.1. 여성수용자를 위한 작업의 종류 및 참여인원(취사, 사동청소, 세탁을 포함할 것)

K1.2. 여성수형자, 취업가능인원, 취업불가능인원

여성수형자총인원		
취업불가능인원(환자, 고령자, 임신부, 징벌집행 중)		
취업가능인원	여성취업인원	
	미지정인원	
	합계	

K1.3. 여성수용자를 위한 직업훈련 종목과 참여인원

K1.4. 여성수용자를 위한 학과교육 프로그램 종류와 참여인원

K1.5. 여성용 화장품 구매물품 목록 및 제품회사 명(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모두)

K1.6. 여성용 속옷 구입가능성과 치수 다양성

	구매가능여부	구매가능한 사이즈종류
브래지어		
런닝		
팬티		

K1.7. 관급 생리대의 종류와 지급기간, 지급량

K1.8. 전년도 교회직공무원의 교화상담실적을 성별로 나누어 제시

K1.9. 전년도 여성수용자 부인암 검진 관련 외부진료 요청건수 및 요청으로부터 외부진료 시까지의 평균기간

K1.10. 전년도 여성수용자 중 부인과 진료(냉대하, 골다공증 등 갱년기 장애 포함) 건수와 진료장소 및 진료내용

K1.11. 최근 1년간, 최근 1개월간 여자수용자의 의무과 연출인원(각각 명기)

K1.12. 전년도 ‘부부만남의 집’ 이용실적에 대한 성별빈도

K1.13. 전년도 장소변경접견 이용실적에 대한 성별빈도

K1.14.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여자수용자에 대한 특별처우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할 것

- 1) 배방에 있어서의 고려
- 2) 식사에 있어서의 고려
- 3) 운동에 있어서의 고려
- 4) 목욕에 있어서의 고려
- 5) 빈혈제와 비타민제 복용 등 보조의약품 복용에 있어서의 고려
- 6) 전화와 접견에 있어서의 고려

- 7) 진료에 있어서의 고려 내용
- 8) 기타 고려사항
- K1.15. 대동유아 수용자를 위한 특별거실이 있는 지 유무
- K1.16. 만일 대동유아 수용자가 생길 경우 어느 곳에 수용하는지
- K1.17. 대동유아 수용자를 위한 특별처우 내용(각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1) 분유
  - 2) 기저귀
  - 3) 목욕
  - 4) 세탁(삶는 게 가능한지 여부 포함)
  - 5) 예방접종 등을 위한 외부소아과 진료
  - 6) 야간응급 시 외부진료
  - 7) 기타
- K1.18. 여사동 폐쇄회로 설치장소와 모니터링 방법(설치장소는 복도, 거실 등으로, 모니터링 방법은 여사, 남사 분리 관리 또는 공동관리 식으로)

## **K2. 소년수용자**

- K2.1. 연령별·성별·범죄혐의별 소년수용자 인원 (자료제출일 기준)
- K2.2. 전년도 소년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횟수
- K2.3. 교정위원 및 성직자 등과 소년수용자들의 자매결연 현황
- K2.4. 소년수용자들에 대한 상담책임자 지정 현황
- K2.5. 소년수용자에 대한 예·체능 특기지도 현황
- K2.6. 소년수용자들의 교육과정별 학과교육 현황
- K2.7. 전년도 소년수용자에 대한 성년식 축하행사 개최 현황
- K2.8. 전년도 소년수용자에 대한 합동생일 축하회 개최 현황

## **K3. 외국인 수용자**

- K3.1. 최근 5년간 외국인수용자 1일 평균 수용인원 (연도별로 작성)
- K3.2. 현재 외국인 수용인원 (국적별로 구분하여 작성)
- K3.3. 외국인 수용자의 한국어 실력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상: 0 명, 중: 0 명, 하: 0 명)
- K3.4. 외국어 구사능력(해독능력)이 있는 교회직공무원의 수
- K3.5. 최근 1년간 외국인수용자를 위한 통역 및 번역 위촉건수 (기간 명시)
- K3.6. 외국인의 거실별 수용현황 (한국인과 혼거 여부 포함)
- K3.7. 최근 1주일간의 각 외국인 수용자에게 제공된 주·부식 식단표  
(내국인 수용자와 동일할 때는 '내국인과 동일함'이라고 표시할 것)

**K4. 장애(노약)수용자**

- K4.1. 장애급수별 수용인원 (장애등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 K4.2. 신체적 거동장애 수용자의 수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제외)
- K4.3. 시각장애 수용자의 수
- K4.4. 청각장애 수용자의 수
- K4.5. 정신장애 수용자의 수
- K4.6. 장애수용거실의 종류와 수, 각각의 면적과 총면적
- K4.7. 장애수용거실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 (수용정원 기준)
- K4.8. 휠체어 사용가능 특별거실의 수와 각각의 거실수용정원  
(미결, 기결, 여사 구분)
- K4.9. 장애수용거실의 화장실에 좌변기가 설치된 거실의 수
- K4.10. 장애수용거실의 화장실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된 거실의 수
- K4.11. 장애수용거실의 내벽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된 거실의 수
- K4.12.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별거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편의시설?)
- K4.13. 청각장애자를 위한 특별거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편의시설?)
- K4.14. 장애수용거실의 난방종류(온돌, 전기판넬 등)
- K4.15. 장애수용자의 운동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장애수용자	일반수용자와 비교
1회 운동시간 (분)		
운동장과의 접근성	도보 ( )분 이내	
장애수용자를 위한 특별운동시설의 유무		

- K4.16. 장애수용자의 목욕 →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

	장애수용자	일반수용자와 비교
목욕횟수 (동계)		
목욕횟수 (하계)		
1회 목욕시간 (동계기준)		
하계 온수목욕 가능 여부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목욕도우미(간병부) 유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목욕탕 안전손잡이 설치여부		
‘탕’ 입수목욕 가능 여부	(예: ‘샤워’만 가능)	

- K4.17. 모든 장애수용자(일반거실에 수용된 자 포함, 미결수용자 제외) 중에서 출력인원과 미 출력인원 (각각의 비율)
- K4.18. 모든 수형자 중에서 출력인원과 미 출력인원 (각각의 비율)

K4.19. 장애거실수용자(수형자) 중에서 출력인원과 미 출력인원 (각각의 비율)

K4.20. 노약자(고령자) 거실의 종류와 수

K4.21. 노약자(고령자) 거실과 일반수용거실의 구체적 차이점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 면담조사목록

### 1) 수용자면담조사

#### [면담방법]

- ※ 각 영역 서두에 면담대상자 선정방법을 명시하였다.
- ※ 전체 영역을 모두 조사할 때는 면담조사관별로 면담대상자를 선정한다.
- ※ 동일인에 대한 (영역간의) 중복면담이 가능하다.

#### A. 시설

##### [면담대상자]

당해 구급시설에서 1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 3~5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1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역한 수용자를 선정한다.  
(C. 급여 및 영치 영역과 동일함)

#### A2.4.2. 사동의 샤워실

샤워실의 이용현황(세부지표 a, b, c, d, e 참조)을 조사한다.

- 사동별로 샤워실을 갖추고 있다.
- 샤워실의 면적은 3평 이상이다.
- 샤워실은 매일 이용되고 있다.
- 샤워실은 주로 하절기에만 이용한다.
- 샤워실에 온수가 보급된다.

#### A2.4.3. 사동의 세탁시설

세탁실의 이용현황(세탁시간, 세탁장소, 세탁방법 등)을 조사한다.

#### A2.4.4. 사동의 식당시설

식당의 이용현황(식사장소, 별도의 식당시설 유무 등)을 조사한다.

#### A3.1.3. 운동장의 시설

우천 이후 운동장 바닥의 상태와 배수 상태, 운동시설과 운동기구의 이용에 대해 조사한다.

#### A3.2.4. 이발실의 시설과 운용

이발실의 이용실태(세부지표 a, b, c, d, e 참조)를 조사한다.

- 수용자들이 대부분 이발실을 이용하고 있다.
- 이발실의 바닥과 벽면은 깨끗하며, 곰팡이 얼룩 등이 없다.
- 이발의자가 구비되어 있고 잘 작동한다.
- 거울은 깨끗하고 조명이 잘 되어 있다.
- 이발도구는 깨끗하며 잘 작동한다.

#### B. 분류 및 누진처우

##### [면담대상자]

입소 후 1개월 이내인 수형자 2명, 1급, 2급, 3급, 4급 수형자 각 1명, 자치사동 수형자 2명(1급 수형자와 중복 가능)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신입수형자를 제외한 각 급수별 수용자는 가능하면 당해 구급시설에서 1년 이상 복역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1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간 그 시설에서 거주하였던 자를 선정한다.

**B1.2.2. 신입심사**

신입수형자에게 신입심사 당시 독거실에 수용되었는지 확인한다.

**B1.2.3. 재심사**

각 급수별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의 실시현황을 파악한다.

**B1.3.1. 분류심사와 수용자의 참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b. c. d.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b. 수용자는 분류심사와 관련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c. 수용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다.

d. 수용자는 분류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B1.3.2. 분류심사의 공개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음 c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c. 분류직원은 분류심사 결과에 대한 수형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B2.1.1. 행형성적의 평가과정에 대한 정보권의 보장**

수형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세부지표에 대해 확인한다.

a.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수형자에게 소득점수를 고지하고 있다.

b. 수형자는 원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행형성적(책임점수, 소득점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c. 수형자는 행형성적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류과장 혹은 담당직원과 면담하도록 보장된다.

**B2.2.1. 수형자 자치활동의 실시 대상인원**

자치사동에 거주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의 구성내용을 조사한다.

**B2.2.2. 수형자 자치회의 조직**

자치사동에 거주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치회의 조직 내용을 조사한다.

**B2.2.3. 수형자 자치활동의 내용**

자치사동에 거주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치활동 내용을 조사한다.

**B2.3.1. 경기 및 오락회 개최**

제2급 이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제2급 이상 수형자의 경기 및 오락회 개최는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우수(4)	경기 또는 오락회를 연간 1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1회 당 평균 참여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80% 이상이다.
보통(3)	경기 또는 오락회를 연간 6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1회 당 평균 참여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80% 이상이다.
미흡(2)	경기 또는 오락회를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1회 당 평균 참여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60% 이상이다.
시정요함(1)	경기 또는 오락회를 연간 3회 이하로 개최하거나 1회 당 평균 참여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60% 미만이다.

**B2.3.2. 견학 및 사회봉사 활동**

제2급 이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제2급 이상 수형자에게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고 있는가?

우수(4)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1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연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80% 이상이다.
보통(3)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6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연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70% 이상이다.
미흡(2)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연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60% 이상이다.
시정요함(1)	사회견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연간 3회 이하로 최하거나, 참여연인원이 제2급 이상 수형자의 60% 이하이다.

**B2.4.1. 외부종교행사참석**

제1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제1급 수형자에게 외부종교행사 참석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는가?

우수(4)	외부종교행사 참석허가 건수가 연 4회 이상이다.
보통(2)	외부종교행사 참석허가 건수가 연 2-3회이다.
시정요함(1)	외부종교행사 참석허가 건수가 없다.

**B2.4.2. 외부영화 관람**

제1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제1급 수형자에게 외부영화 등의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우수(3)	외부 영화 등 관람의 허가 건수가 연 4회 이상이다.
보통(2)	외부 영화 등 관람의 허가건수가 연 2-3회이다.
시정요함(1)	외부 영화 등 관람의 허가건수가 없다.

**C. 급여 및 영치**

[면담대상자]

당해 구급시설에서 1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 3~5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1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역한 수용자를 선정한다.

(A. 시설 영역과 동일함)

**C1.1.1. 의류의 지급**

용도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의류의 종류별 지급상황 및 지급시기와 교환시기에 대해 확인한다.

**C1.1.2. 이불의 지급**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다.

- 이불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우수(4)	원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이불이 지급되고 있다.
미흡	수형자 중 일부에게만 이불이 지급되고 있다.
시정요함(1)	이불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다.

**C1.1.3. 매트리스의 지급**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다.

- a. 일반매트리스가 모든 수용자에게 1매씩 지급된다.
- b. 일반매트리스가 모든 거실의 바닥 면적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다.
- c. 일반매트리스가 일부 수용자에게만 지급된다.
- d. 환자매트리스가 1인 1매씩 지급된다.
- e. 환자매트리스가 일부 환자에게 지급된다.

**C1.1.4. 담요와 베개의 지급**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다.

- a. 담요는 원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2매 이상씩 지급된다.
- b. 담요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환된다.
- c. 베개가 1인 1개씩 지급된다.
- d. 베개는 1년에 1회 교환된다.

**C1.2.1. 생활용품의 지급**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다.

- a. 생활용품이 지급기준에 따라 원하는 모든 수형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 b. 생활용품이 지급기준에 따라 원하는 모든 미결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 c. 수용자들은 생활용품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다.

**C1.3.1. 주·부식의 급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들이 식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C1.3.2. 자변부식**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변부식의 가격과 질에 대한 만족 여부, 그리고 자변부식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C1.3.3. 식수의 제공**

수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온수제공 여부, 식수의 위생상태와 질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C2.1.1. 영치물품의 종류와 질**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구입 가능한 자변물품 종류, 구입하고자 하는 자변물품의 종류와 구입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의 가능 여부 등을 질문하여 평가한다.

**D. 보건의료**

[면담대상자]

*병사수용자 2명, 외부진료경험이 있는 수용자 2명, 의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일반거실 수용자 2명, 장애거실수용자 2명 (상호 중복가능)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당해 구급시설에서 1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 1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역한 수용자를 선정한다.*

**D1.1.1. 의사 1인당 수용정원**

의무관이 비전임인 경우 수용자에게 정기 진료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본다.

**D1.2.1. 치과의사**

수용자면담을 통해 제출자료상의 치과진료시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치과진료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무슨 요일, 몇 시에 있습니까?”

### D3.2.2. 격리병실의 관리

병사수용자와 면담을 통해 제출자료의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출자료] D23. 격리병실의 관리

지난 1개월간의 소독 횟수 (기간 명기)	
소독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	
지난 1개월간의 모포교환 횟수 (기간 명기)	
지난 1개월간의 모포털이 횟수 (기간 명기)	
격리병실 수용자의 목욕방법과 목욕횟수	
기타 특별관리 내역 (있는 경우에 한함)	

### D3.3.2. 병사수용자의 운동

병사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1회 운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다.

### D4.2.1. 의사진료의 만족도

수용자에게 아래의 2개 설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물어본다.

D.2 의무관은 당신이 호소하는 얘기를 잘 들어 주는 편입니까?

- ① 전혀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 ② 나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편이었다.
- ③ 나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편이었다.
- ④ 나의 이야기를 매우 잘 들어 주었다

D.3 의무관은 진찰 후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D4.3.1. 응급환자치료

아래의 설문과 동일한 내용을 수용자에게 질문한다.

설문 D.4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 ① 의사면담을 신청한 날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 ② 의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경미한 증세라서 간호사나 의무과 직원을 통해 약을 받았다.
- ③ 하루나 이틀 지나서 평일 진료시간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 ④ 의사를 만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외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⑤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D4.4.2. 순회 진료의 만족도

아래의 설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용자에게 질문한다.

(의무과가 아닌, 일반사동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만 대답해주세요.)

설문 D.5 진료를 하는 의사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 ① 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설명도 잘 해 주지 않았다.
- ② 건성으로 나의 말을 듣고 설명도 대충 대충 해주는 편이었다.
- ③ 조금 친절하고 성의가 있는 편이었다.
- ④ 매우 친절하고 성의도 많았다.

(의무과가 아닌, 일반사동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만 대답해주세요.)

설문 D.6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이 나았습니까?

- ① 전혀 낫지 않았다.
- ② 경미한 증세라서 저절로 나았던 것 같다.

③ 조금 호전되었다.

④ 깨끗이 나왔다.

**D4.5.1. 병사 수용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병사수용자에게 a, b, c, d, e, f 관련 질문을 한다.

- a. 중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 b. 전염병환자를 세분하여 구별 수용하면서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 c. 약물/알코올 중독(의심)환자를 구별해서 치료해주고 있다.
- d.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e. 병사수용자에게는 일반수용자와 달리 거실에서의 정좌의무(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함)를 면제하고 있다.
- f. 의무과 연출을 요구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준다.

**D4.7.1. 약품의 처방과 복용**

수용자에게 약품처방과 약품납용 여부를 질문한다.

**D4.8.1. 외부진료 가능성**

수용자와 면담을 할 때 외부진료 대기기간을 물어본다.

**D4.9.1. 건강검진 실시여부**

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건강검진의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D4.9.2. 건강검진 내역**

건강검진의 주요내역에 대해 질문한다. 특히 신장, 체중, 시력, 청력 등 신체계측은 물론 혈압 검사, 체성분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호흡기능검사, 안압 검사, 초음파검사, X-선검사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D5.3.1. 목욕탕의 구조**

‘탕’시설 활용가능 여부와 온수의 온도조절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D5.3.2. 목욕기회**

수용자에게 a, b, c, d 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질문한다.

- 목욕횟수와 목욕시간 및 목욕방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평가한다.
- a. 설문조사 결과 ①, ②, ③의 응답비율이 합하여 50% 미만이면 1회 목욕시간이 30분 이상으로 평가한다.
- b. 제출자료와 면담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 c. 여기서 목욕탕이란 동계 일반수용자가 목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d. 온수목욕을 원하는 수용자에게 목욕탕에서 목욕을 허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D5.4.1. 담요세탁**

수용자에게 담요세탁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물어보고, 정기적인 모포세탁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D5.4.2. 담요(모포)털이 및 건조**

최근 1개월간의 모포털이 횟수를 물어보고, 모포털이 주기를 조사한다.

**D5.5.1. 세탁**

수용자에게 세탁장소, 세탁시간, 세탁방법 등에 대해 질문한다.

**D6.1.1. 실외운동 가능성**

수용자에게 a, b, c, d, e, f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 일반수용자의 운동시간, 독거수용자의 운동시간, 목욕시간의 운동시간 대체 여부, 조사실수

용자의 운동허용 여부, 실내운동장의 존재 유무

- a. 설문조사결과 ①과 ②의 응답비율이 합하여 50% 이상인 때에는 1일 평균 운동시간이 40분 미만으로 평가한다. (제출자료 참조)
- b. 독거수용거실의 수용자에게 1회 운동시간을 질문하여 확인한다.
- c. 일반사동 수용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동계 목록 시)
- d. 징벌사동 수용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 e. 조사실 수용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 f. 특히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운동장이 실외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D6.2.1. 운동장

운동장의 배수가 잘 되는지 여부를 묻는다. 특히 비가 온 다음에도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 D6.2.2. 운동기구

수용자에게 실제로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를 질문한다.

### E.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면담대상자]

- 1) 최근 1개월 사이에 징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최근 1개월 내의 징벌경험자 중 아래의 요건에 맞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의 징벌경험자 중에서 면담대상자를 선정한다).
- 2) 수용자 3인은 모두 금치처분을 선고받아 집행을 완료한 자로 한다.
- 3) 수용자 3인은 가급적 수형자 2인과 미결수용자 1인으로 하도록 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급시설에서는 수형자 3인으로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에는 수형자 1인, 미결수용자 2인으로 선정한다.
- 4) 수용자 3인 모두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한다.
- 5) 면담대상 수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시설측에 최근 1개월간(혹은 3개월 간)의 “징벌자현황” 및 “조사자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단, E2.3.1.(계구사용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점검)항목에서는

- 최근 1개월 사이에 계구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수용자 3인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최근 1개월 내의 경험자 중 아래의 요건에 맞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의 계구경험자 중에서 면담대상자를 선정한다).
- 1) 수용자 3인 중 1인은 미결수용자로 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시설은 수형자로 3인을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를 2인으로 한다.
  - 2) 수용자 3인 중 1인은 포승이나 사슬의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한다.
  - 3) 수용자 3인 중 1인은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자로 한다.

#### E1.1.1. 신입자에 대한 규율·징벌의 고지와 교육의 적절성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여 확인해 본다.

- 1) 신입자교육을 받았는가 여부
- 2) 신입자교육을 받았다면 규율과 징벌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 3)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의 자료와 교육시간, 교육방법

**E1.1.2. 규율에 관한 정기교육의 충실성**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정신교육 등의 교육시간에 규율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가 여부
- 2)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의 자료와 교육시간, 교육방법
- 3) 규율에 관한 설명책자의 거실비치여부

**E1.4.4. 조사기간 중 징벌혐의자의 권리제한**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규율위반의 내용과 징벌의 내용
- 2) 조사기간 중 수용거실
- 3)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의 제한 여부
- 4) 운동과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의 제한 여부
- 5) 목욕의 제한 여부
- 6) 집필의 제한 여부
- 7) 신문도서의 열람, 라디오 및 TV 시청의 제한 여부

**E1.5.3. 징벌위원회 의결절차의 적정성**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았는가 여부
- 2)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날과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일 사이의 기간

**E1.5.4. 징벌위원회와 적법절차의 보장**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다른 수용자가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 외부인이 징벌혐의자의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 3) 징벌혐의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징벌위원회에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
- 4) 징벌혐의자 외의 다른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

**E1.5.5.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의 진술권 보장**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징벌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술하였는가?
- 2) 징벌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들었는가(‘반성하고 있습니까’ 따위의 요식적인 질문은 제외한다)?

**E1.7.3. 금치집행수용자의 권리보장**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여 확인한다.

- 1) 금치기간 중 접견권의 허용 여부
- 2) 금치기간 중 집필권의 허용 여부
- 3) 금치기간 중 서신수발권의 허용여부
- 4) 금치기간 중 운동의 허용여부
- 5) 금치기간 중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의 비치 및 사용의 허용 여부
- 6) 금치기간 중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의 허용 여부

**E1.7.4. 금치집행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진단**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징벌집행 전의 건강진단은 누가 어떻게 하였는가?

2) 징벌집행 중에 본인 원해서 의무과 연출을 한 것을 제외하고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건강진단을 하였는가?

3) 징벌집행 후의 건강진단은 누가 어떻게 하였는가?

#### E1.8.4. 징벌실의 운영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징벌실 수용 당시 2인 이상이 동시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가

2) 징벌실 수용 당시 다른 징벌실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수용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 E2.3.1. 계구사용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점검 (면담대상자 선정 주의할 것)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계구사용기간 중 의사가 방문한 적이 있는가, 얼마나 자주 방문하였는가

2) 의사가 방문하였다면, 의사와 몇 분 정도 면담을 하였는가, 의사와의 면담에서 오고간 대화의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

3) 의사가 방문시 실시한 의료적 진단은 어떠한 것들인가(예를 들어 체중, 혈압 등)

## F. 외부교통 및 정보권

[면담대상자]

F(외부교통 및 정보권)영역에 관한 면담대상자는 다음 기준으로 7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1) 원칙적으로 수형자 4인, 미결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시설에서는 수형자 5-7인을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 수형자 3인, 미결수용자 4인으로 선정한다.

2) 수형자 4인은 해당 구금시설에 입소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누진계급별로 각 1인씩 선정하고, 미결수용자는 해당 구금시설에 입소한 지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3) 수형자 4인 중에는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을 많이 하여 소위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자를 2인 포함하도록 한다(‘문제수용자 관리지침’ 제3조 제3호 “교도관을 처벌받게 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이를 왜곡, 과장하여 상습적으로 진정, 고소, 고발 등을 반복하는 자”).

4) 미결수용자 중에는 변호인과의 서신교환의 경험이 있는 수용자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측에 최근 3개월간 변호인과의 서신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명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5) 구금시설에서 서신검열제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중 1인은 서신검열제외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검열제외대상자명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6) 서신의 발송불허처분과 교부불허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를 각 1인씩 포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불허서신처리부’를 요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F1.2.4.(가족에 대한 접견사실)항목은

E(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영역 면담대상자에게 질문하도록 한다.

F7.1.1.(귀휴에 관한 수형자교육)과 F7.2.2.(수형자의 귀휴 신청권의 보장) 항목의 경우는 면담대상자 3인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1) 귀휴를 신청한 경험이 있으나 귀휴를 허가받지 못한 수형자를 1인 포함하고,

2) 나머지 2인은 최근에 귀휴를 허가받아 다녀온 수형자이어야 한다.

F7.4.1.(외부통근작업의 활용) 항목의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형자 3인을 선정한다.

F8(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항목의 경우는

면담대상자 3인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 1) 교도소의 경우 수형자 2인, 미결수용자 1인으로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 미결수용자 2인, 수형자 1인으로 선정한다.
- 2) 수형자는 수용기간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소위 문제수용자 1인과 외부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수용자 1인으로 선정한다. 미결수용자는 수용기간 3개월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F1.2.4. 가족에 대한 접견금지사실의 통보

E(규율과 징벌) 영역의 면담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규율과 징벌 영역의 평가자에게 면담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한다).

- 1) 접견제한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할 것인가 여부를 구금시설직원이 물어보았는가?
- 2) 통지해 달라고 하였는가?
- 3) 통지하지 말라고 한 경우 직원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았는가?

F1.4.1. 수형자의 접견시간

선정된 수용자 7인 중 수형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실제 접견시간은 몇 분인가?

F1.4.2. 미결수용자의 접견시간

선정된 7인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실제 접견시간은 몇 분인가?

F1.5.1. 공휴일 접견의 실시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공휴일 접견을 해 본 적이 있는가?
- 2) 공휴일 접견의 요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F1.5.4. 합동접견의 실시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합동접견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 2) 합동접견의 장소는 어디인가, 그곳은 음식물을 먹기에 적당한 장소인가?
- 3) 1년에 몇 번 합동접견을 실시하는가?
- 4) 합동접견 시 가족 등 접견인은 몇 명이 입장할 수 있는가?
- 5) 합동접견 시 교도관은 어떻게 감시하는가,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지는 않는가?

F2.3.1. 서신발송의 신속성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서신을 작성하여 사동직원에게 인계하는 시점은 하루 중 언제인가
- 2) 그 후에 사동직원은 수용자로부터 받은 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3) 서신의 발송절차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F2.3.2. 서신교부의 신속성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직원으로부터 서신을 교부받는 시점은 하루 중 언제인가?
- 2) 서신의 교부절차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F2.4.3.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의 검열금지 원칙의 준수**

선정된 7인중 미결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변호인과 서신을 교환해 본 경험이 있는가?
- 2) 변호인에게 서신을 발송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직원에게 서신을 건네주는가, 수용자가 스스로 서신을 봉할 수 있는가?
- 3) 변호인에게서 온 서신을 교부받을 때 직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가, 이미 개봉된 채로 전달받는가 아니면 수용자 앞에서 직원이 개봉하는가?

**F2.5.1. 서신검열제외제도의 활용**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서신검열제외제도를 알고 있는가?
- 2) 서신검열제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가?
- 3) 포함되어 있다면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수용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F2.5.4. 서신검열도장의 날인 여부**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발송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지 여부

**F2.6.3. 발송불허서신의 처리**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서신의 발송불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
- 2) 있었다면, 서신 중 무슨 내용 때문이었는가?
- 3) 있었다면, 발송불허서신을 돌려받았는가 아니면 영치되어 있는가?
- 4) 있었다면, 발송불허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었는가?

**F2.6.4. 교부불허서신의 처리**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서신의 교부불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
- 2) 있었다면, 서신 중 무슨 내용 때문이었는지 아는가?
- 3) 있었다면, 교부불허서신이 영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영치 내지 폐기여부를 알고 있는가?
- 4) 있었다면, 교부불허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었는가?

**F3.2.1. 집필 사전허가의 폐지 운영정도**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다음 중 허가없이 집필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 ① 소송서류의 작성
- ②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 ③ 청원서 작성
- ④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⑤ 고소장이나 고발장 작성
- ⑥ 기타 민원서류 작성

**F4.4.1. 전화통화시간**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전화를 사용해 본 적은 있는가
- 2) 월 몇 회나 사용할 수 있는가
- 3) 1회 당 통화시간은 몇 분인가

**F4.6.3. 통화감시의 고지**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전화사용의 경험이 있는가?
- 2)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감청 사실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려주는가?
- 3) 상대방에게 감청사실을 알려준 후에 '전화통화를 하시겠습니까?'라고 하여 통화결정의 기회를 주는가?

**F5.2.1. 수용자 1인당 구독가능한 신문의 종류**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인당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부수에 제한이 있는가?

**F5.2.3. 수용자 1인당 거실내 소지가가능한 도서의 수**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거실 내 도서소지의 수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는가?
- 2) 있다면 몇 권까지인가?

**F5.2.4. 도서실의 운영**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도서실을 방문하여 소장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가?

**F5.3.1. 신문의 기사삭제처분**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어떠한 기사가 주로 삭제되는가?
- 2) 기사를 삭제한 후 뒷면은 어떻게 보전해 주는가?

**F6.2.1. TV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적 적합성**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TV는 어떠한 방송을 주로 하는가, 어제 하루의 방송프로그램을 기억해 보시오
- 2) 최근 1주일 사이에 생방송으로 방송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 3) 뉴스는 하루에 몇 번 방송하며, 뉴스시간은 몇 분인가
- 4) 뉴스는 녹화인가 생방송인가, 녹화라면 언제 뉴스인가
- 5) 뉴스 외의 다른 프로그램은 사회방송보다 얼마나 늦게 녹화방송되는 것인가

**F6.2.2. TV 방송시간**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TV 방송시간은 평일 하루에 몇 시간인가
- 2) TV 방송시간은 공휴일에 몇 시간인가

**F6.3.2. 수용자 반응도의 주기적 평가**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수용자설문조사를 시설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F6.3.3.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선정된 7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주간방송계획을 서면으로 거실에 배부하는가?
- 2) 매일 당일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하는 가, 한다면 그 방법
- 3) TV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는가?

**F7.1.1. 귀휴에 관한 수형자교육**

귀휴와 관련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평상시 정신교육 등의 시간에 귀휴의 의미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 2) 귀휴의 일반적 자격요건이 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는가?
- 3) 귀휴를 신청해 본 적이 있는가?
- 4) 귀휴를 다년오기 전에 주의사항 등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F7.2.2. 수형자의 귀휴 신청권의 보장**

귀휴와 관련하여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귀휴를 신청한 적이 있는가?
- 2) 귀휴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하였는가?

**F7.4.1. 외부통근작업의 활용**

최근 3개월 이내에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형자 3인을 선정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절차와 공정성
- 2) 외부통근작업장의 근로조건

**F8.1.1. 개인정보의 수집과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설명해야 함).

- 1) 수용초기 신분카드를 작성할 때 구금시설 직원이 어떠한 목적에서 신분카드를 작성하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는가?
- 2) 신분카드를 작성하는 외에 수용자의 개인적 정보를 구금시설에서 파악하는 자료나 기록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그 기록이나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
- 3) 면담자는 신분카드에 기재된 수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수용자의 인지여부와 언제 인지하였는가를 질문해 본다.
- 4) 가족에 관한 정보를 구금시설에 제공한 후에, 구금시설에서 당신의 가족에게 정보취득사실을 알려주었는가?

**F8.1.2.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및 공개금지**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신분카드를 작성할 때 누가 질문하고 기록하였는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작성하였으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는가?
- 2) 신분카드 작성 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직원에게 말하게 되는 경우 - 예를 들어, 귀휴나 '가족만남의 집' 이용에 관련하여 심사를 위한 경우 등 -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하였는가, 다른 수용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가?
- 3) 구금시설에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해 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 4) 구금시설 직원이 수용자들에게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예: 질병이나 사상, 과거 경력 등)를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가?

**G. 작업, 직업훈련, 교육**

[면담대상자]

G1.2.4.(작업변경 허가 정도) 항목의 경우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수형자 3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관용작업, 직영작업, 위탁작업 등 작업의 종류별로 각각 1인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3.1.1.(신입자교육의 공식성) 항목의 경우는

입소 3개월 이내의 수용자를 선정하여 면담한다.

G1.2.4. 작업변경 허가 정도

1. 작업거부나 변경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지(본인과 주위의 경험 모두)
2. 요청해본 적이 있으면 그 사유
3. 바꾸고 싶으나 전업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4. 작업변경을 요청했다가 이송이나 징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지

G3.1.1. 신입자교육의 공식성

신입자 교육의 담당자, 장소, 교육시간, 교육내용, 시청각자료 사용 등에 대해 질문한다.

H. 수용생활

[면담대상자]

H1. 종교생활

종교생활(H1.)에 관한 면담대상 수용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7인을 선정한다.

- 1) 수용자 7인은 수형자 5인, 미결수용자 2인으로 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급시설에서는 수형자 5인-7인을 선정하고, 구치소의 경우 미결수용자 5인, 수형자 2인으로 한다.
- 2) 수용자 7인 중 수형자 5인(구치소의 미결수용자 5인)은 기독교 1인, 카톨릭 1인, 불교 1인, 기타 종교 2인으로 선정한다. 기타 종교 2인은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소수종교 중에서도 비교적 다수인 종교 순으로 2인을 선정하되, 유대교나 이슬람교 수용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 선정한다. 미결수용자 2인(구치소의 수형자 2인)은 3대 종교 중 1인, 소수종교 중 1인으로 선정한다.
- 3)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구급시설의 수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선정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기간 3개월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 4) 수형자의 경우 종교적 활동모임에 참여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출자료를 통하여 구급시설의 종교적 활동모임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여 선정한다.

H2. 취미활동

취미활동에 관한 면담대상 수용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 1) 취미활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수용자 3인을 선정한다.
- 2) 수용자 3인은 각 다른 모임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취미활동 모임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모임의 수용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 3) 수형자를 위주로 하여 선정하되, 제출자료에서 미결수용자에게도 취미활동 모임이 허용된다면 미결수용자 1인을 선정한다.

H3. 수용자-직원 관계와 수용자 상호관계

종교활동(H1)과 취미활동(H2)에 관한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10인에게 질문한다.

H1.1.1. 3대 종교의 정기의례의 보장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7인 중 다수종파(3대 종교)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는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 2)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주 1회 이상 개최하였는가?
- 3)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개최하였는가?
- 4) 종교의례는 성직자가 집전하는가?
- 5) 종교의례 시 성상이 설치되는가?

#### H1.1.2. 소수종교의 종교의례의 보장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 중 소수종교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 2)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주기적으로 개최하였는가, 개최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 3)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개최하였는가?
- 4) 종교의례는 성직자가 집전하는가?
- 5) 종교의례 시 성상이 설치되는가?

#### H1.1.3. 미결수용자의 종교의례 참석권 보장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 중 미결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 2)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주기적으로 개최하였는가, 개최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 3) 지난 3개월 간 종교의례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개최하였는가?
- 4) 종교의례는 성직자가 집전하는가?
- 5) 종교의례 시 성상이 설치되는가?

#### H1.2.1.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 모임의 보장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 중 종교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어떤 종교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모임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
- 2) 모임의 참여인원은 몇 명인가?
- 3) 모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모임의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 4) 모임의 장소는 어디인가, 그 장소는 모임의 활동에 적합한가?
- 5)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내지 설비는 어떤 것들인가?

#### H1.2.2. 종교적 모임의 활동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7인 중 종교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지난 3개월 간 모임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 2) 1회 모임의 활동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3) 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 4) 모임은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 지도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 H1.2.3. 개인의 신앙생활의 보장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7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성경, 불경 등 종교서적은 무엇을 거실 내에 소지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소지하고 있는가?
- 2) 성물로는 무엇을 소지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소지하고 있는가, 성물은 자신이 영치의 방법으로 반입한 것인가?

3) 성상으로는 무엇을 소지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소지하고 있는가, 성상은 자신이 영치의 방법으로 반입한 것인가?

4) (유대인 혹은 이슬람교 수용자) 종교교리에 따른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가?

#### H1.2.4. 수용자와 성직자 간의 만남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7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최근 3개월 간 해당 종교의 성직자와의 상담이나 고백성사 등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는가?

2) 최근 3개월 간 실제 성직자와의 만남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몇 번이었는가?

3)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가?

4) 성직자와 상담 등을 할 때 구금시설직원은 어떻게 감시하였는가?

#### H2.1.1.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의 활성화정도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참여하고 있는 취미활동 모임은 무엇인가?

2) 그 모임에는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가?

3) 지난 3개월 간 모임은 얼마나 개최되었는가, 모임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가?

#### H2.1.2. 취미활동 모임의 활동보장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모임의 활동시간은 얼마나 보장되는가?

2) 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3) 모임에는 반장이 있는가, 반장은 어떻게 선출하는가?

4)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기본물품은 구금시설에서 제공하는가, 아니면 본인이 자비로 구입하는가?

#### H2.2.2. 수용자의 취미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의 노력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모임은 누가 지도하는가, 지도하는 사람은 지난 3개월 동안에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여 지도하였는가?

2) 전년도 1년간 시설 내에서 취미활동과 관련한 대회나 발표회 등을 개최한 적이 있는가?

3) 외부행사에서 수상한 수용자나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시설 내에서 포상이 이루어지는가?

#### H2.3.1. 수용자를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3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시설 내에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가?

2) 그 안에는 어떠한 종류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3) 모든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주기는 얼마 만에 돌아오는가?

4) 1회 이용 시 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H3.3.1. 신체검사 방법

1. (신입 시 또는 합동접견이 끝난 후, 작업이 끝난 후 등)의 신체검사 방법은? 알몸신체검사인가 아니면 옷을 입은 채 하는 일반신체검사인가?

2. 장소는 어떠한가? 칸막이는 있는가? 검신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3. 여러 명이 한꺼번에 아니면 한 사람씩 하는가?

4. (여성수용자와의 면담에서 질문)여성의 경우, 생리 중일 때 검신을 하게 되는 경우, 상황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H3.4.1. 거실검사방식**

1. 검방은 얼마나 자주 받는가?
2. 검방 후에는 거실안의 상태가 어떠한가?
3. 검방 후 기물이 파손된 적이 있는가?
4. 회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수용자는 회수전에 고지를 받는가?

**I. 권리구제**

[면담대상자]

수용자 중에서 소장면담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자 1인, 청원을 한 경험이 있는 자 1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한 적이 있는 자 1인, 고소·고발·소송제기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포함하여 5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단, I 3.2.5(진정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항목의 경우

서면진정의 경험이 있는 수용자 1인과 진정취하경험이 있는 수용자 2인을 별도로 찾아 면담한다. (다른 면담대상자와 중복가능)

**I 1.1.1. 소장면담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교육의 실시 여부**

수용자 5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신입자 교육 시 소장면담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지 받았는지 여부, 2) 거실 내에 비치된 책자나 부착된 안내문에 소장면담 방법 및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입자 교육 이외에, 일반 교육시간에 소장면담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I 1.2.3. 소장 면담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소장면담을 한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소장면담을 한 수용자가 전혀 없는 경우 소장면담을 신청한 수용자에게 1)을 질문한다.)

- 1) 소장면담 신청 시 신속하게 면담이 이루어지는가?
- 2) 소장 면담 후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는가?

**I 2.1.1.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교육**

수용자 5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신입자교육 시 청원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지 받았는지 여부, 2) 거실 내에 비치된 책자나 부착된 안내문에 청원 방법 및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입자교육 이외에 일반교육시간에도 청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I 2.2.2. 청원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청원경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 1) 청원 집필 신청 후 지체 없이 집필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2) 청원 집필신청 시 집필사유를 교정직원에게 알려야 했는지 여부, 3) 청원서를 담당 교도관에게 제출할 때, 본인이 직접 봉해서 제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

**I 3.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교육**

수용자 5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신입자 교육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지 받았는지 여부, 2) 거실 내에 비치된 책자나 부착된 안내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방법과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입자교육 이외에, 일반교육시간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방법과 절

차에 대하여 설명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I 3.2.5. 진정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서면진정한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 1) 진정서를 제출할 때, 본인이 직접 봉해서 제출했는지 여부, 2) 진정신청을 하면 바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여부
2. 서면진정신청일과 진정서면전진정 발송일이 상이한 것으로 기재된 수용자 2인에게는 진정서 작성기간이 길게 된 이유를 질문한다.
3. 진정을 취하한 수용자 2인에게는 취하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다.

**I 4.1.1.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교육**

수용자 5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신입자 교육 시 권리구제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지 받았는지 여부, 2) 거실 내에 비치된 책자나 부착된 안내문에 권리구제 내용이나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입자교육 이외에 일반교육시간에도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I 4.2.2. 징벌조사 및 집행과정에서의 변호사 접견 및 서신수발**

징벌조사 중에 있는 수용자와 징벌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본다. (징벌사동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물어본다.)

- 1) 징벌 조사 기간 중에 변호사와의 접견이나 서신교환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 2) 징벌 조사 기간 중에 변호사와의 접견을 하거나 서신교환을 한 사실이 있는지,
- 3) 징벌 집행 기간 중에 변호사와의 접견이나 서신교환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 4) 징벌 집행 기간 중에 변호사와의 접견을 하거나 서신교환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I 4.2.5. 법률상담 기회 제공 여부**

수용자 5인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 1) 구금시설 측에서 법률상담 날짜와 법률상담 장소 등에 관하여 고지하는지,
- 2) 구금시설 측에서 법률상담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는지,
- 3)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법률전문가와 대면 상담할 수 있는지,
- 4) 서면으로 법률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지 여부와
- 5) 법률상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본다.

**K. 소수수용자**

[면담대상자]

*여성수용자 3인, 소년수용자 2인, 외국인수용자 2인, 장애수용자 3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당해 구금시설에서 1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 1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역한 수용자를 선정한다.*

**K4.5.1(정신지체 장애수용자의 처우)항목의 경우**

*당해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생활한 장기수용자 2인을 선정하여 면담한다.  
(가능하면 다른 영역에서 이미 면담대상자로 선정된 자)*

**K1.2.1. 화장품 구매가능성과 다양성**

여성수용자에게 현재 구입이 가능한 기초화장품의 종류를 묻고, 화장품 브랜드의 다양성에 대

해서도 질문한다.

**K1.2.2. 여성용 속옷 구입가능성과 다양성**

여성수용자에게 1) 런닝, 팬티, 브래지어를 구매가능한지 여부, 2) 원하는 사이즈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K1.2.4. 관급생리대의 품질과 양**

여성수용자에게 ‘관급생리대의 품질과 양은 만족할 만한가? 사용하는가?’를 묻는다.

**K1.2.5. 생리대 다양성**

여성수용자에게 생리대 구매여부와 원하는 사이즈 및 종류를 물어본다.

**K1.4.1. 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본인이 부인과 관련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주위에서 본 적은 있는가?
2. 부인과 관련하여 아픈 경우 대체로 어떻게 처치하는가, 외부진료 신청이 쉬운가?
3. 부인과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요청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받고 싶은가?

**K1.6.1. 임신부수용자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수용자에게 임신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배방에 있어서의 고려
- 2) 식사에 있어서의 고려
- 3) 운동에 있어서의 고려
- 4) 목욕에 있어서의 고려
- 5) 빈혈제와 비타민제 복용 등 보조의약품 복용에 있어서의 고려
- 6) 전화와 접견에 있어서의 고려
- 7) 진료에 있어서의 고려 내용
- 8) 기타 고려사항

**K1.6.3. 대동유아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수용자에게 1) 대동유아 수용자가 여사에 있었는지 여부, 2) 있었다면 그 때 어떤 거실에 있었는지, 아이를 어떻게 길렀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 유아 양육 전반에 걸친 내용을 질문한다.

**K2.1.2. 소년수용에 대한 특별배려**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a. 입소한 날부터 3일간 신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 b. 입소 후 3일 이내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 c.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때는 소년과 소년가정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d. 매주 3회 이상 의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유무를 확인한다.

**K2.2.1. 소년수용자의 접견과 서신 장려**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a. 시설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접견횟수를 증가시켜 주고 있다.
- b.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을 실시하고 있다.
- c. 보호자 등에게 월 1회 이상 서신을 보내도록 권장하고 있다.
- d. 서신을 보낼 때 우표를 자비부담할 수 없는 소년수용자에 대해 우표를 관급하고 있다.

**K2.3.1. 소년수용자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배려**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a.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성인과 구별하여 운동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다.
- b.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상의 운동기구를 제공하고 있다.
- c. 소년수용자에 대해 3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d. 독거 중인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K2.4.1. 소년수용자에 대한 자치제 실시와 호칭**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a. 모든 소년수용자에 대해서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 b. 소년수용자를 부를 때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다.
- c. 미결소년수용자에 대해서도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다.

**K2.4.2.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화 활동**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a. 소년수용자에 대해 감독자 등이 적어도 주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 b. 소년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가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c. 소년수용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다.
- d. 각각의 소년수용자들에 대해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K2.4.3.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육 활동**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a. 예·체능에 소질 있는 소년수용자에 대해 특기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b. 소년수용자별로 각각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과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c. 소년수용자들에게 학과교육에 필요한 필기구 등 학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K2.4.4. 소년수용자에 대한 성년식 및 생일축하행사**

직원과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a. 성년이 된 소년수용자에 대해 성년식을 개최하여 축하해 주고 있다.
- b. 매월 합동생일 축하회를 개최하여 생일을 맞은 소년들을 축하하고 있다.
- c. 분기별로 합동생일 축하회를 개최하여 생일을 맞은 소년들을 축하하고 있다.
- d. 합동생일 축하회에는 생일을 맞은 소년들의 가족을 초청하고 있다.

**K3.1.2.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직원**

외국인수용자에게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회직공무원과 개별면담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자신의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 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한다.

**K3.3.2. TV 시청**

외국인수용자에게 TV시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고, 외국어방송프로그램의 시청도 가능한지 조사한다.

**K3.4.1. 식생활**

외국인 수용자에게 제출자료 상의 식단표에 맞게 주·부식이 제공되었는지 질문한다. 식생활문화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조사한다.

**K3.5.1. 종교생활 보장**

외국인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 1) 성직자와의 접촉을 요구하였는지,
- 2) 교도관의 성직자의 접촉을 주선하였지,
- 3) 거실 내에서 예배 등 특정종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

- 4) 소지할 수 있는 종교적 용도의 도구나 종교서적의 종류,
- 5) 종교행사 참여를 요청하였을 때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

**K4.3.1. 장애수용자의 운동**

장애수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제로 1회 운동시간을 묻고, 다른 일반 수용자와 비교하여 운동시간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알아본다.

**K4.3.2. 장애수용자의 목욕**

장애수용자에게 실제로 목욕횟수와 목욕시간을 묻고, 목욕도우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K4.5.1.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의 처우**

장기수용자와 면담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와 함께 생활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와 면담이 가능한 상태일 때는 그와 면담하여

- 1) 입소 시에 면밀한 정신건강진단을 받았는가,
- 2) 정신지체 장애등급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하고 있는가,
- 3)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 2) 교정직원 면담조사

[면담대상자]

현장에서 관련내용을 잘 아는 직원을 찾아 면담하도록 한다. 면담대상자의 수는 각 과에서 1인 내지 3인으로 하며, 관련내용을 가장 잘 아는 근무자와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B1.1.2. 분류전담직원의 전문성

분류과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 분류직원은 분류업무에만 종사하는가? 다른 잡무의 정도는?
- 분류직원은 분류직과 관련한 전문적인 재교육을 받고 있는가?

### B1.1.3. 분류처우예비회의의 운영

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의 세부지표를 확인한다.

- a. 분류처우예비회의의 구성은 10-15인이다.
- b. 분류처우예비회의의 구성인원은 적정하다.
- c. 예비회의는 매월 7일에 개최되고 있다.
- d. 예비회의에서는 회의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B1.1.4. 분류처우회의의 운영

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의 세부지표를 확인한다.

- a. 분류처우회의의 구성은 7-9인이다.
- b. 분류처우회의의 구성원은 7급 이상 교도관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c. 분류처우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되고 있다.
- d. 회의에서는 회의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B1.2.1. 분류조사의 적정성

기록조사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세부지표를 확인한다.

- a. 분류조사의 조사내용은 충실하다.
- b. 심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 c. 수형자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d. 분류처우심사표는 빠짐없이 잘 작성·비치되고 있다.

### B1.2.4. 분류심사에서 여성의 고려

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 분류조사지표와 심리검사, 적성검사의 내용에서 여성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 B1.3.1. 분류심사와 수용자의 참여

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의 b. c. d.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b. 수용자는 분류심사와 관련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c. 수용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다.
- d. 수용자는 분류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B1.3.2. 분류심사의 공개성

분류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평가한다.

- 분류직원은 분류심사 결과에 대한 수형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C1.1.1. 의류의 지급**

용도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류의 종류별 지급상황 및 지급시기와 교환시기에 대해 확인한다.

**C1.1.2. 이불의 지급**

용도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다.

- 이불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우수(4)	원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이불이 지급되고 있다.
미흡	수형자 중 일부에게만 이불이 지급되고 있다.
시정요함(1)	이불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다.

**C1.1.3. 매트리스의 지급**

용도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다.

- 일반매트리스가 모든 수용자에게 1매씩 지급된다.
- 일반매트리스가 모든 거실의 바닥 면적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다.
- 일반매트리스가 일부 수용자에게만 지급된다.
- 환자매트리스가 1인 1매씩 지급된다.
- 환자매트리스가 일부 환자에게 지급된다.

**C1.1.4. 담요와 베개의 지급**

용도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다.

- 담요는 원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2매 이상씩 지급된다.
- 담요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환된다.
- 베개가 1인 1개씩 지급된다.
- 베개는 1년에 1회 교환된다.

**C1.2.1. 생활용품의 지급**

용도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다.

- 생활용품이 지급기준에 따라 원하는 모든 수형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 생활용품이 지급기준에 따라 원하는 모든 미결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 수용자들은 생활용품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다.

**C1.3.3. 식수의 제공**

용도과 직원을 대상으로 겨울철 온수제공 여부, 식수의 위생상태와 질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C1.3.4. 특별급식**

용도과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급식의 급여상황을 파악하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 이를 확인한다.

**D1.1.1. 의사 1인당 수용정원**

의무과에서 의무과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본다.

- 1) 의사의 수, 전임-비전임 여부, 의무관의 전공, 공중보건의학사의 수 및 전공
- 2) 의무관이 비전임인 경우 '1주일 정기 진료시간' (진료요일, 진료횟수)

**D1.2.1. 치과의사**

의무과직원과 면담하여 제출자료의 치과진료시간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D1.3.1. 정신과 의사**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정신과진료현황을 살펴보고, 정기적인 정신과진료가 이루어지  
알아보도록 한다.

**D1.4.1. 전문의에 의한 진료 가능성**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전문의로부터 진료가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D1.5.2. 약사 1인당 1일 투약인원**

약품 담당 의무과 직원에게 1일 평균 투약인원에 대해서 질문한다.

**D2.1.1. 1일 평균 진료인원 대비 진료실의 면적**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1일 의무과연출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확인한다.

**D2.3.1. 기본의료장비**

의무과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각종 의료장비의 활용도를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기록(예: 심  
전도기 사용일지)을 검토한다.

**D4.4.1. 순회 진료 방법과 장소**

의무과직원에게 순회진료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질문한다.

**D4.5.1. 병사 수용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의무과직원에게 다음의 a, b, c, d, e, f 관련 질문을 한다.

- a. 중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 b. 전염병환자를 세분하여 구별 수용하면서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 c. 약물/알코올 중독(의심)환자를 구별해서 치료해주고 있다.
- d.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e. 병사수용자에게는 일반수용자와 달리 거실에서의 정좌의무(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함)를 면제하고 있다.
- f. 의무과 연출을 요구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준다.

**D4.7.1. 약품의 처방과 복용**

의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약품처방과 약품복용 실태를 조사한다.

**D4.8.1. 외부진료 가능성**

외부진료 담당 의무과 직원에게 외부진료 대기기간에 대해서 질문한다.

**D4.9.1. 건강검진 실시여부**

건강검진 담당 의무과 직원에게 최근 1년 동안의 건강검진 현황에 대해 질문한다.

**D4.9.2. 건강검진 내역**

의사에게 건강검진 내역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 의무과직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주  
요항목에 대해서 물어본다. 특히 신장, 체중, 시력, 청력 등 신체계측은 물론 혈압검사, 체성  
분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호흡기능검사, 안압검사, 초음  
파검사, X-선검사 등이 실제로 행해지는지 조사한다.

**D5.1.1. 정기적 방역활동**

위생(방역)담당 의무과 직원에게 최근 1개월간의 방역활동내역과 여름철 방역활동내역에 대  
해 질문한다.

**D5.3.2. 목욕기회**

일반사동근무자에게 다음의 a, b, c, d 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질문한다.

- a. 동계 1회 목욕시간이 30분 이상이다.
- b. 동계 주1회, 하계 매일 정기적인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

- c. 하계에도 주1회 목욕탕에서 정기적인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
- d. 하계에도 온수목욕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 1회에 한하여 온수목욕을 허용하고 있다.

#### D5.4.1. 담요세탁

사동근무자에게 담요세탁(방법, 시기, 장소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 D6.1.1. 실외운동 가능성

운동장소와 운동시설을 관찰하고 제출자료의 내역을 확인한다. 또한 사동근무자에게 a, b, c, d, e, f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 a. 일반수용자의 경우 1일 평균 40분미만 운동시킨다.
- b. 일반수용자와 독거수용자의 운동시간이 동일하다.
- c. 동계에 목욕을 하는 날에는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 d. 징벌집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 e. 조사실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는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 f. 특정수용자에 대해서는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실내 거실만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 D6.2.2. 운동기구

운동 담당 보안과 직원에게 실제로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를 묻고, 수용자들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결수용자 가운데 출력하지 않고 미지정 상태에 있는 수용자와 미결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를 묻도록 한다.

#### E2.1.2. 소장의 계구사용 명령의 적정성

구금시설의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을 질문한다.

- 1) 계구사용명령 시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특정하여 명령하는지 여부
- 2) 계구의 계속사용여부(사용중지여부)를 매일 심사하는지 여부, 매일 심사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 3) 계구사용명령 전에 해당 수용자를 면담하는지 여부, 면담한다면 어느 장소에서 하며, 무엇을 질문하는가

**H4.1.5.** 보안과 직원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수용자의 자살, 자해가능성에 대한 상담여부를 질문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물어본다.

- 1) 자살자해 우려의 판단 근거
- 2) 중형예상 수용자에 대한 금속수갑 착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 I 1.2.3. 소장 면담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1. 소장과 고충처리반 직원에게 소장면담을 어디에서 하는지 질의하고, 면담장소를 확인한다.
2. 소장과 고충처리반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와 면담하는지 확인하다.
3. 소장에게 소장면담 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다.

#### I 4.2.3. 법률상담프로그램

고충처리반이나 보안과 직원에게 법률전문가가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 구금시설을 방문하는지 여부와 방문하는 경우 그 횟수 및 상담건수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 I 4.2.4. 법률상담 기회 제공 여부

보안과 담당 직원에게, 법률상담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고, 수용자가 법률상담 신청을 하면

얼마 지나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한다.

**J2.1.2. 교대제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

야근직원에게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질문한다.

**J3.2.1. 교정직원의 출퇴근 용이성**

용도과 담당직원에게 직원들의 출퇴근 방법과 대중교통 접근성(버스노선, 배차시간, 택시이용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K1.6.1. 임신부수용자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교도관과 여성수용자에게 임신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 1) 배방에 있어서의 고려
- 2) 식사에 있어서의 고려
- 3) 운동에 있어서의 고려
- 4) 목욕에 있어서의 고려
- 5) 빈혈제와 비타민제 복용 등 보조의약품 복용에 있어서의 고려
- 6) 전화와 접견에 있어서의 고려
- 7) 진료에 있어서의 고려 내용
- 8) 기타 고려사항

**K2.1.2. 소년수용에 대한 특별배려**

소년 담당 직원에게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한다.

- a. 입소한 날부터 3일간 신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 b. 입소 후 3일 이내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 c.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때는 소년과 소년가정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d. 매주 3회 이상 의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유무를 확인한다.

**K2.2.1. 소년수용자의 접견과 서신 장려**

소년 담당 직원에게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한다.

- a. 시설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접견횟수를 증가시켜 주고 있다.
- b.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을 실시하고 있다.
- c. 보호자 등에게 월 1회 이상 서신을 보내도록 권장하고 있다.
- d. 서신을 보낼 때 우표를 자비부담할 수 없는 소년수용자에 대해 우표를 관급하고 있다.

**K2.3.1. 소년수용자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배려**

소년 담당직원에게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한다.

- a.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성인과 구별하여 운동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다.
- b.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상의 운동기구를 제공하고 있다.
- c. 소년수용자에 대해 3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d. 독거 중인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K2.4.1. 소년수용자에 대한 자치제 실시와 호칭**

소년 담당 직원에게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한다.

- a. 모든 소년수용자에 대해서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 b. 소년수용자를 부를 때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다.

c. 미결소년수용자에 대해서도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다.

**K2.4.2.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화 활동**

소년 담당 직원에게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한다.

- a. 소년수용자에 대해 감독자 등이 적어도 주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 b. 소년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가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c. 소년수용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다.
- d. 각각의 소년수용자들에 대해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K2.4.3.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육 활동**

소년 담당 직원에게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한다.

- a. 예·체능에 소질 있는 소년수용자에 대해 특기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b. 소년수용자별로 각각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과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c. 소년수용자들에게 학과교육에 필요한 필기구 등 학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K2.4.4. 소년수용자에 대한 성년식 및 생일축하행사**

소년 담당 직원에게 다음의 지표들에 대해 질문한다.

- a. 성년이 된 소년수용자에 대해 성년식을 개최하여 축하해 주고 있다.
- b. 매월 합동생일 축하회를 개최하여 생일을 맞은 소년들을 축하하고 있다.
- c. 분기별로 합동생일 축하회를 개최하여 생일을 맞은 소년들을 축하하고 있다.
- d. 합동생일 축하회에는 생일을 맞은 소년들의 가족을 초청하고 있다.

**K3.1.2.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직원**

구금시설측이 ‘외국어 해독이 가능한 교회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교도관으로부터, 관련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한다. 즉,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 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현장조사 및 기록조사)

**K4.5.1.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의 처우**

의무과 직원에게 신입자 입소 시 정신건강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정신지체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 장애등급에 따라 구별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정신과 진료 및 상담 현황, 정신질병 판명 후 전문 의료시설(예: 진주교도소)로의 이송절차 미 최근 이송사건, 석방 후에 사회복지단체 및 갱생보호시설과의 연계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다.

### 3. 현장조사

#### 1) 시설분야 현장조사표

##### A. 시설

##### A1. 전체시설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A1.2.1. 교통여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도보          분 이내 버스운행간격: 전철:	
A1.2.2. 주변여건	a. 일반주민 주거지와와의 경계:          km b. 법원·검찰청까지의 거리: 차량이동          분 c. 종합병원까지의 거리: 차량이동          분 d. 취업가능한 외부공장: 차량이동          분/ 없음	
A1.3.1. 기결/미결의 구분수용	별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별도구역 <input type="checkbox"/> 별도사동 <input type="checkbox"/> 별도거실 <input type="checkbox"/>	
A1.3.2. 남성/여성의 구분수용	별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별도구역 <input type="checkbox"/> 별도사동 <input type="checkbox"/> 별도거실 <input type="checkbox"/>	

##### A2. 거실

##### A2.1. 독거실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A2.1.1. 독거수용인원			
A2.1.2. 독거실면적	사동번호	거실번호	실측면적
A2.1.3. 독거실설비	a. TV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b. 선풍기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c. 식탁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d. 사물함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e. 침구보관용선반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A2.1.4. 독거실화장실	a. 변기 -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좌변기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b. 차폐시설:          cm c. 출입문(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A2.1.5. 독거실세면대	일반 세면대 <input type="checkbox"/> 간이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 A2.2. 혼거실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사동번호	거실번호	실측면적	
A2.2.1. 혼거실면적				
A2.2.2. 혼거실정원	정원책정□ 정원표기□ 정원초과 수용거실: 있음□ 없음□			
A2.2.3. 혼거실화장실	b. 변기 - 수세식□/좌변기□ (전부□/일부□) c. 차폐시설: cm d. 출입문(전부□ 일부□ 없음□)			
A2.2.4. 혼거실세면대	a. 세면실 분리□ (전부□/일부□) b. 일반 세면대□ 간이세면대□ 없음□ (전부□/일부□)			
A2.2.5. 혼거실설비	a. TV (전부□ 일부□ 없음□) b. 선풍기 (전부□ 일부□ 없음□) c. 식탁 (전부□ 일부□ 없음□) d. 사물함 (전부□ 일부□ 없음□) e. 침구보관용선반 (전부□ 일부□ 없음□)			

## A2.3. 거실의 조건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A2.3.1. 난방시설	바닥온돌□ 거실라디에이터□ 복도라디에이터□ 없음□			
A2.3.3. 창문재질	창호 - 강화유리□ 아크릴□ 비닐□ 창틀 - 플라스틱·알루미늄□ 목재□			
A2.3.4. 창문규격	거실종류	외부창문	복도창문	
	혼거실A			
	혼거실B			
	혼거실C			
	혼거실D			
	독거실A			
	독거실B			
		창문개폐여부	가능□ 불가능□	
A2.3.8. 취침조명시설	있음□ 없음□			
A2.3.9. 방충망	a. 설치여부: 모두설치□ 부분설치□			
	b. 파손된 곳: 있음□ 없음□			
	c. 개폐여부: 개폐식□ 고정식□			
A2.3.10 화장실 위생상태	a. 바닥과 벽면: 양호□ 불량□			
	b. 채광과 환기: 양호□ 불량□			
	c. 악취확산여부: 양호□ 불량□			

A2.4. 사동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A2.4.1. 사동의 구조	구조: 단방식 <input type="checkbox"/> 복방식 <input type="checkbox"/> 사동의 정원: 50명 이하 <input type="checkbox"/> 80명 이하 <input type="checkbox"/> 80명 초과 <input type="checkbox"/>	
A2.4.2. 샤워시설	a. 사동별 샤워실: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b. 샤워실 면적: c. d. 샤워실 이용여부: 매일 <input type="checkbox"/> 하절기에만 <input type="checkbox"/> e. 온수보급여부:	
A2.4.3. 세탁시설	a. 세탁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b. 건조시설: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c. 사용여부: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A2.4.4. 식당시설	a. 식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b. 사용여부: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A3. 공동이용시설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A3.1.1./A3.1.2. 운동장형태	기결수 운동장: 미결수 운동장:	
A3.1.3. 운동장시설	a. 바닥상태(재질): b. 배수상태: c. 운동시설: e. 운동기구:	
A3.2.1. 목욕탕시설	b. 바닥상태와 배수: c. 벽면과 천장의 상태: d. 샤워꼭지: e. 물 사용 조절 여부:	
A3.2.2. 탈의실	b. 바닥상태: c. 벽면과 천장의 상태: d. 보관함: e. 난방 여부:	
A3.2.3. 이발실 규모	전체 이발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면적- )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동 이발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면적- ) 없음 <input type="checkbox"/>	
A3.2.4. 이발실 시설	a. 이발실 이용 여부: 이용 <input type="checkbox"/> 미이용 <input type="checkbox"/> b. 바닥과 벽면: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c. 이발의자: d. 거울과 조명: e. 이발도구:	
A3.3.1. 작업장조건	b. 채광: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c. 환기: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d. 조명: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A3.3.2. 작업장시설	a. 난방시설 <input type="checkbox"/> b. 선풍기 <input type="checkbox"/>	

	c. 샤워실: 양호□ / 불량□ 화장실: 양호□ / 불량□ d. 식당시설□	
A3.3.3. 교육장조건	b. 채광: 양호□ 불량□ c. 환기: 양호□ 불량□ d. 조명: 양호□ 불량□	
A3.3.4. 교육장시설	a. 난방시설□ b. 선풍기□ c. 샤워실: 양호□ / 불량□ 화장실: 양호□ / 불량□ d. 식당시설□	
A3.3.5. 취사장	b. 환기: 양호□ 불량□ c. 채광과 조명: 양호□ 불량□ d. 샤워실: 양호□ / 불량□ 화장실: 양호□ / 불량□ e. 바닥상태: 양호□ 불량□	
A3.4.1. 신입실	b. 조명: 양호□ 불량□ c. 탈의용 칸막이: 있음□ 없음□ d. 샤워실: 양호□ / 불량□ 화장실: 양호□ / 불량□ e. 난방여부: 양호□ 불량□	
A3.4.2. 출정실	b. 바닥과 벽면: 양호□ 불량□ c. 탈의용 칸막이: 있음□ 없음□ d. 선풍기: 있음□ 없음□ e. 난방여부: 양호□ 불량□	

C. 급여와 영치

C2. 영치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C2.2.2. 영치물품의 관리	a. 영치물품 보관창고의 면적: b. 영치물품 보관창고의 소독 여부:	

D. 보건의료

D2. 의료시설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D2.1.2. 진료대기실	a. 환기상태 및 선풍기 설치여부: b. 의자의 수: 석 c. 의자의 상태(편의성): d. 난방시설 설치여부:	
D2.2.1. 의무과의 실별 종류	a. 약제실: 있음□/없음□ b. 방사선실: 있음□/없음□ c. 임상병리실: 있음□/없음□ d. 약품창고: 있음□/없음□ e. 재활(물리)치료실: 있음□/없음□ f. 기타 시설:	

D3. 병사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병사종류	면적	수용정원	수용인원	
D3.1.1. 병사수용정원					
D3.1.3. 병사수용인원					
대비 병사면적					
계					
D3.2.1. 격리병실의 종류와 체계	a. 전염병 환자 거실의 전염차단설비: b. 중환자실의 설치 여부: 있음□/없음□ 중환자실의 수용정원: c. 중환자실의 구조와 설비: d. 중환자실의 간병부 근무 여부: e. 병동거실의 분류상황:				
D3.3.1. 병동거실	a. 화장실의 좌변기: 모두□/일부□/없음□ b. 세면대: 일반적 세면대□/간이세면대□/없음□ c. 난방: 온돌난방□/기타난방□/없음□ d. 냉방: 에어컨□/선풍기□/없음□				
D3.3.2. 병사운동장	c. 병사운동장과 병동거실의 거리: 도보 ( )분 d. 병사운동장의 크기:				
D3.3.3. 병사목욕탕	c. 여름철 온수보급여부: d. 목욕도우미(간병부)의 보조 여부: e. 환자용 안전손잡이 설치여부: f. '탕' 입수 목욕 가능 여부: g. 수용자의 온수 온도조절 가능 여부: h. 샤워꼭지의 위치:				

D4. 의료서비스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D4.4.1. 순회진료장소	c. 순회진료장소의 상태(쾌적함, 청결함, 조용함): d. 컴퓨터로 진료프로그램 접속 가능 여부:	

D5. 위생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D5.3.1. 목욕탕의 구조	a. 목욕탕의 정돈상태: b. d. 샤워꼭지의 위치: 천정□/높은 벽□/낮은 벽□ c. 온수온도 조절 가능 여부: e. '탕'내 입수 목욕 가능 여부: f. '탕'내의 온수 사용 가능 여부: g. 목욕탕 내 화장실 설치 여부: h. 탈의실의 온돌난방 여부:	
D5.5.1. 세탁	세탁실의 시설: a. 탈수기 - 있음□/없음□	





	d. 각 사동 안쪽 입구 <input type="checkbox"/> e. 작업장, 교육장 등 기타 시설 ( )	
--	---	--

## J. 교정직원

## J3. 후생복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J3.2.1. 직원의 출퇴근 수단	a. 버스: b. 전철: c. 기타 대중교통: d. 통근버스:	
J5.2.1. 본부건물 내 여직원을 위한 편의시설	a. 여성전용 휴게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b. 별도의 탈의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c. 별도의 화장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K. 소수 수용자

## K1. 여성수용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K1.6.2. 대동유아실	a. 별도의 대동유아거실 설치 <input type="checkbox"/> b. 병실을 대동유아거실로 대치 <input type="checkbox"/> c. 일반수용자거실을 대동유아실로 사용 <input type="checkbox"/> d. 육아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의 근무 <input type="checkbox"/>	
K1.7.1. 여사동의 폐쇄회로 TV 관리	a. 여자 교도관이 여사에서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b. 보안과 사무실에서 남자교도관이 관리 <input type="checkbox"/> c. 여사동에 폐쇄회로 TV 없음 <input type="checkbox"/>	

## K2. 소년수용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K2.1.1. 성인/소년의 구분수용	별도시설 <input type="checkbox"/> 별도구역 <input type="checkbox"/> 별도사동 <input type="checkbox"/> 별도거실 <input type="checkbox"/> 소년거실 내 성인수용자(‘봉사원’) 거주 <input type="checkbox"/>	

## K3. 외국인수용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K3.2.1. 분리수용	외국인 수용자의 분리수용 상황:	
K3.3.1. 외국인 수용 거실의 형태	침대설치 여부:	
K3.3.2. TV 시청	a. 거실 내 TV 설치 여부: b. 외국어 방송 여부:	

K4. 장애(노약)수용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장애거실의 종류(번호)	면적	수용정원	갯수	수용인원	
K4.1.1./K4.1.2 장애거실						
	계					
K4.2.1. 장애수용자의 이동 및 활동	a.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특별거실의 설치여부: 기결사동 - ( )개, 미결사동 - ( )개, 여사 - ( )개 b. 장애거실 내의 안전손잡이: 모두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c. 장애거실 내 화장실의 좌변기 및 안전손잡이 : 모두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d. 장애거실 내의 내부난방: 모두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e. 장애거실 내의 세면대: 모두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K4.2.2. 시각·청각 장애수용자에 대한 배려	a.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별장치: b. 수화가 가능한 직원의 배치 <input type="checkbox"/> 수화가 가능한 수용자와 함께 생활 <input type="checkbox"/> c. 시각·청각 장애자를 위한 도우미 배치 <input type="checkbox"/>					
K4.3.1. 장애수용자의 운동	c. 장애수용자를 위한 특수운동기구:					
K4.3.2. 장애수용자의 목욕	c. 여름철 온수목욕 가능 <input type="checkbox"/> d. 목욕도우미(간병부)의 보조 <input type="checkbox"/> e. 목욕탕 내 장애수용자용 안전손잡이 <input type="checkbox"/> f. 장애수용자를 위해 낮은 위치의 샤워꼭지 설치 <input type="checkbox"/>					
K4.4.1. 장애수용자의 외부교통	a. 장애거실과 접견실 간의 휠체어 이동 가능 여부:					

## 2) 현장조사목록

### A1.2.1. 구급시설의 교통여건

직접 구급시설과 전철역 또는 버스정류장과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용도과에서 버스시간표를 확인한다.

### A1.2.2. 구급시설의 주변여건

a. 일반주민 거주지의 경계에서 구급시설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때 일반 주민 거주지의 경계는 상업시설 및 주택들이 연이어 밀집해 있는 곳의 끝 지점을 경계로 한다. 즉, 외따로 떨어져 있는 주택이나 공장 등은 경계로 삼지 않는다. b. c. 서무과에서 법원 및 검찰청, 그리고 병원과 구급시설의 거리를 조사한다. d. 작업과에서 외부통근 작업장의 위치와 거리를 조사한다.

### A1.3.1. 기결/미결사동의 구분형태

기결수와 미결수가 함께 수용된 시설의 경우 보안과에서 사동별 수용현황을 파악하고 각 사동을 현장확인하여 구분정도를 평가한다.

### A1.3.2. 남성/여성사동의 구별형태

여성수용시설을 현장조사하되, 진료실, 접견실, 교회당, 작업장, 분류심사실 등의 부대시설이 여성전용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 A2.1.1. 독거실과 혼거실의 수용인원 비율

독거수용인원은 실질적으로 독거수용되고 있는 인원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독거실이지만 혼거수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도 독거수용인원에서 제외한다. 조사의 토대는 제출자료 이외에 구급시설 방문조사 당일에 보안과에서 모든 거실의 수용인원 현황이 파악된 현황표를 요구하여 이를 토대로 파악한다.

### A2.1.2. 독거실의 면적

제출자료에 제시된 (제출자료-A7. 모든 독거실의 종류별 개수와 각각의 면적 참조)독거실의 종류별로 모두 실측하여 면적을 기록한다. 실측할 때는 화장실면적을 제외하고 측정하여 도면을 기재한다. 거실 내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그리고 독거실의 규모가 각각 다를 경우 평균값이 아닌 가장 작은 면적의 거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A2.1.3. 독거실의 기본설비

독거실의 종류별로 방문하여 독거실 내의 기본시설을 확인한다.

### A2.1.4. 독거실의 화장실 구조

현장조사를 통해 독거실의 종류별로 화장실의 구조를 확인한다. 이때 화장실이 거실과 구별되지 않고 거실 내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b.와 c.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 A2.1.5. 독거실의 세면시설

독거실의 종류별로 화장실을 조사하여 세면시설의 상태를 파악한다.

### A2.2.1. 혼거실의 면적

다음에 제시된 거실의 종류별로 모두 실측하여 면적을 기록한다. 실측할 때는 화장실면적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실측한 결과에 따른 총 면적을 자료제출 당시의 수용인원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다.

### A2.2.2. 혼거실의 정원

혼거실의 정원책정 여부와 정원책정의 적정성, 정원의 준수여부 등을 혼거실별로 점검한다.

**A2.2.3. 혼거실의 화장실 구조**

혼거실의 종류별로 화장실의 구조를 확인한다.

**A2.2.4. 혼거실의 세면시설**

혼거실의 종류별로 세면시설의 구조를 파악한다.

**A2.2.5. 혼거실의 기본설비**

혼거실을 종류별로 각각 방문하여 혼거실 내의 기본시설을 확인한다.

**A2.3.1. 거실의 난방형태**

사동과 거실별로 방문하여 난방형태를 파악한다.

**A2.3.3. 거실창문의 재질**

거실창문과 사동복도의 창틀 및 창호의 재료를 가능한 한 모두 살펴 평가한다.

**A2.3.4. 거실창문의 규격**

거실의 종류별로 외부에 면한 창문면적, 복도에 면한 창문의 면적 및 복도바닥으로부터의 높이, 창문개폐의 여부 등을 확인한다.

**A2.3.8. 거실의 취침조명**

거실 종류별로 취침등이나 조도조절장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A2.3.9. 거실의 방충망 설비**

거실을 조사할 때 방충망 설비여부를 조사하며, 용도과에서 전체 시설의 방충망 설비 현황을 조사한다.

**A2.3.10. 거실 내 화장실의 위생상태**

a.의 경우 변기 주변 바닥과 벽면을 타일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닥과 벽면에 패인 곳이 없고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을 경우 긍정의 평가를 내린다. 화장실 바닥에 수용자들의 세면용구 등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부정의 평가를 내린다.

b.의 경우 화장실이 거실 외부를 향해 위치하지 않고 거실 내에 폐쇄적 구조로 위치하여 채광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부정의 평가를 내린다.

c.의 경우 조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더불어 수용자들에게 현장에서 질문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A2.4.1. 사동의 구조**

현장조사를 통해 단방식인지 복방식인지를 확인한다.

**A2.4.2. 사동의 샤워실**

사동별로 샤워실의 설치여부와 면적을 조사한다.

**A2.4.3. 사동의 세탁시설**

사동별로 세탁실의 설치여부와 시설을 조사한다.

**A2.4.4. 사동의 식당시설**

사동별로 식당의 설치여부와 시설을 조사한다.

**A3.1.1. 기결수 운동장**

실외운동장의 형태와 면적, 실내운동시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A3.1.2. 미결수 운동장**

실외운동장의 형태와 면적, 실내운동시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A3.1.3. 운동장의 시설**

운동장 바닥의 상태와 운동시설, 운동기구를 확인한다.

#### A3.2.1. 목욕탕의 시설

목욕탕을 방문하여 바닥과 벽, 천정 등을 살펴보고 수도꼭지의 작동여부, 수용자의 물 조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 A3.2.2. 탈의실의 시설

탈의실의 바닥과 벽면, 천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관함과 난방의 운용실태를 확인한다.

#### A3.2.3. 이발실의 규모

전체이발실과 사동이발실의 설치여부와 실제면적을 점검한다.

#### A3.2.4. 이발실의 시설과 운용

이발실별로 시설을 점검한다. 현재는 사동별 이발실이 없으므로 전체이발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A3.3.1 작업장의 면적과 기본여건

작업장 종류별로 실제면적과 조명, 환기 상태를 점검한다. 조명은 조도측정장치를 이용하여 300LUX 이상의 조도가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고 환기와 채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창문크기를 바닥면적에 비교하여 평가한다.

#### A3.3.2. 작업장의 시설

a. 난방시설은 고정식 방열기(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동식 연탄난로는 난방시설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작업의 성격상 난방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평가한다. b. 선풍기는 여름철에 조사할 때는 직접 설치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겨울철에 조사할 때는 선풍기 설치가능한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면담을 통해 선풍기 설치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작업의 성격상 선풍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장의 경우 평가에서 예외로 한다. c. 작업장의 샤워실은 차폐시설이 갖추어진 제대로 된 샤워실인지 아니면 단지 간이 세면시설인지를 확인하여, 제대로 설치된 샤워실의 경우에만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화장실의 경우에도 차폐시설이 잘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d. 작업장을 방문하여 별도의 식당시설의 설비여부를 확인한다.

#### A3.3.3. 교육장의 기본여건

교육장 종류별로 실제면적과 조명, 환기 상태(세부지표 a, b, c, d 참조)를 점검한다.

- a. 교육장의 면적은 적정하다.
- b. 교육장은 채광이 잘 된다.
- c. 교육장은 환기가 잘 되고 있다.
- d. 교육장의 인공조명은 충분히 밝다.

#### A3.3.4. 교육장의 시설

a. 난방시설은 고정식 방열기(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동식 연탄난로는 난방시설로 평가하지 않는다. b. 선풍기는 여름철에 조사할 때는 직접 설치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겨울철에 조사할 때는 선풍기 설치가능한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면담을 통해 선풍기 설치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c. 교육장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d. 교육장에 별도의 식당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A3.3.5. 취사장의 시설

취사장의 환기시설은 그 설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채광과 조명은 일반 작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한다(A.3.3.1. 참조). 샤워실과 화장실도 작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A3.4.1. 신입실의 시설**

신입실을 방문하여 조명상태와, 탈의시설, 샤워실, 난방시설 등(세부지표 a, b, c, d, e 참조)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 a. 신입실의 면적은 적정하다.
- b. 신입실의 조명은 충분히 밝다.
- c. 탈의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 d. 샤워실은 깨끗이 관리되고 있다.
- e. 겨울철 신입실, 탈의실, 샤워실은 난방이 된다.

**A3.4.2. 출정실의 시설**

출정실을 방문하여 면적과 청결상태, 탈의시설, 난방시설 등(세부지표 a, b, c, d, e 참조)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 a. 출정실의 면적은 적정하다.
- b. 출정실의 바닥과 벽면은 깨끗하다.
- c. 출정실에는 탈의를 위한 구별시설이 있다.
- d. 출정실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 e. 출정실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C1.1.1. 의류의 지급**

거실과 작업장, 병동 등의 현장에서 수용자들의 의류착용상황을 확인한다.

**C1.3.1. 주·부식의 급여**

의무과 의사를 대상으로 급식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소장에게 조언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C2.2.2. 영치물품의 관리**

영치물품 보관창고를 방문하여 면적과 관리상태를 파악한다.

**D1.1.2. 의사 1인당 병사수용정원과 진료인원**

병사를 방문하여 각 실별 수용정원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 조사한다.

**D1.5.1. 간호사 1인당 병사수용정원과 진료인원**

병사를 방문하여 각 실별 수용정원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 조사한다.

**D2.1.2. 진료대기실의 환자 편의성**

- a. 환기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b. 의자가 몇 석인지 조사한다.
- c. 의자가 딱딱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한다. 직접 앉아보고, 의자가 앉기에 편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d.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조사한다.

**D2.2. 의무과의 실별 종류**

의무과 시설조사를 할 때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실별 종류를 확인한다.

진료실을 제외한 의무과의 실별 종류	있음	없음
a. 약제실		
b. 방사선실		
c. 임상병리실		
d. 약품창고		
e. 재활(물리)치료실		
f. 기타 시설 ( )		

**D3.1.1. 병사수용정원**

병사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본다. 일반수용거실에 비하여 더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수용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병사수용정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D3.1.3. 병사수용인원 대비 병사면적**

제출자료 시점의 병사수용인원과 시설방문시점의 병사수용인원이 큰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다. 공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D3.2.1. 격리병실의 종류와 체계**

병사를 조사할 때 격리병실의 종류와 수를 조사한다. 병사수용인원현황판을 보면서 각 병실의 체계적 분류와 환자의 질병에 따른 적절한 분리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전염병환자거실과 중환자실의 존재 여부와 각 격리병실의 설비와 구조를 자세하게 조사한다.

**D3.3.1. 병동거실**

병동거실의 기본설비구조를 확인하고 다음의 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병사수용자	일반수용자와 비교
1회 운동시간 (분)		
운동장과의 접근성	도보 ( )분 이내	
운동장의 크기 (가로, 세로 길이)	(병사운동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함)	

**D3.3.2. 병사수용자의 운동**

병사운동장의 크기를 확인하고, 병동거실과 병사운동장과 도보 몇 분 이내의 거리에 놓여 있는지 살펴본다.

**D3.3.3. 병사수용자의 목욕**

병사수용자의 목욕시설을 관찰하고,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와 탕(욕조)안에 들어가 목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샤워용 수도꼭지의 구조를 살펴보고 온도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한다.

**D4.4.1. 순회 진료 방법과 장소**

순회 진료장소를 2~3곳 방문하여 조사한다.

**D5.3.1. 목욕탕의 구조**

목욕시설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의 a, b, c, d, e, f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a. 목욕탕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
- b. 샤워꼭지가 천정이 아닌 벽에 붙어 있어서 물이 직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c. 온수의 온도를 수용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d. 샤워꼭지가 낮은 데도 달려 있어 몸이 불편한 수용자가 앉아서 목욕할 수 있다.
- e. 탕 안에 들어가 목욕할 수 있다.
- f. 탕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D5.4.2. 담요(모포)털이 및 건조**

최근 1개월간의 모포털이 횟수가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 2~3개 사동 수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질문하여 조사한다.

**D5.5.1. 세탁**

사동입구 세면장(샤워장)에서의 세탁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곳에 탈수기, 세탁기, 건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사동 밖에 건조대 시설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건조대를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알아본다.

**D6.1.1. 실외운동 가능성**

운동장소와 운동시설을 관찰하고 제출자료의 내역을 확인한다.

**D6.2.1. 운동장**

각 운동장을 종류별로 관찰하고, 가로 및 세로 길이를 재 보도록 한다. 그리고 각 운동장에 충분한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비가 온 다음에 배수가 잘 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D6.2.2. 운동기구**

운동 담당 보안과 직원에게 실제로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를 묻고, 수용자들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결수용자 가운데 출력하지 않고 미지정 상태에 있는 수용자와 미결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를 묻도록 한다.

**E1.1.2. 규율에 관한 정기교육의 충실성**

거실에 비치된 생활안내책자를 살펴본다. 그 안에 규율에 관한 설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한다.

**E1.8.1. 징벌실의 면적**

징벌실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제외한 징벌실의 면적을 실측한다. 면적이 다른 징벌실을 모두 실측해야 한다.

**E1.8.2. 징벌실의 구조**

징벌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세부지표의 해당여부를 평가한다.

- a. 화장실의 차폐시설의 높이를 측정하고, 변기의 상태와 막힘현상, 오물과 얼룩을 확인한다. 변기의 막힘현상 여부는 현장조사 시 징벌수용자에게 질문해 본다.
- b. 세면기의 설치여부와 설치높이 및 크기를 확인하고, 세면기의 파손여부, 배수의 원활성, 얼룩과 오물을 확인한다. 배수의 원활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시 징벌수용자에게 질문해 본다.
- c. 창문의 면적과 투명성의 정도, 창문 바깥의 외벽설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 d. 창문의 개폐여부와 창문을 열었을 때 창문의 열린 부분의 면적 등을 확인한다.
- e. 조도측정기구로 실제 조도를 측정해 보거나, 아니면 징벌실 내에 설치된 형광등의 W(와트)를 확인한다.
- f. 거실의 난방형태를 확인한다.

**E1.8.3. 징벌실의 설비**

징벌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세부지표의 해당여부를 평가한다.

- a. 고정된 사물함이나 사물보관용 선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b. 칫솔·치약의 보관대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높이를 측정한다.
- c. d. e. 책상, 선풍기, 빨래걸이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E2.2.1. 계구사용 의 보충성 : 대안의 강구**

a. 보호실의 구조와 수를 조사한다. 보호실은 거실 벽 등에 머리 등을 부딪쳐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설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거실 벽에 나무판자를 덧대어 놓은 정도로는 안전설비라 할 수 없다.

**F1.1.1. (칸막이)접견실의 수**

다음의 제출자료에 제시된 접견실이 실제 접견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여자접견실은 별도로 현장조사해야 한다.

[제출자료] F1. 접견실의 수와 위치 (표)

구분		수	위치
칸막이접견실	남자접견실		
	여자접견실		
변호인접견실			
장소변경접견실			

**F1.1.2. 변호인접견실의 수**

변호인접견실을 방문조사하여 실제 변호인접견실의 수를 확인한다.

**F1.1.3. 칸막이접견실의 구조**

칸막이접견실 중 1개실을 방문하여 a.-d.의 해당여부를 확인해 본다. a.에서는 실제 대화를 해 보아야 한다. c.에서는 접견실 내 민원인측 방의 면적을 실측해 보아야 한다.

- a. 청취가 양호하다.
- b. 시야가 상대방을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 c. 접견실의 민원인 쪽 면적이 6.6㎡(2평) 이상이며, 동시에 5인의 민원인이 접견가능하다.
- d. 장애인용 접견실이 1개실 이상 있다.

**F1.1.4. 변호인접견실의 구조**

변호인접견실 중 1개실을 방문하여 a.-d.의 해당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교도관의 근무위치에서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지를 실제 재연해 보아야 한다.

- a. 대화의 비밀이 잘 유지된다.
- b. 서류와 물건을 함께 열람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 c. 수용자는 필기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 d. 동시에 3명의 변호인이 접견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F1.1.5.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접견실의 구비**

다음의 제출자료에 제시된 장소변경접견실을 방문하여 실제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접견실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다른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출자료] F1. 접견실의 수와 위치 (표)

--	--	--	--

구분		수	위치
칸막이접견실	남자접견실		
	여자접견실		
번호인접견실			
장소변경접견실			

**F1.2.2. 외부인에 대한 접견안내**

접견민원실을 방문하여, a.에 관해서 ①기본적인 접견의 절차에 대한 안내 ②접견예약안내 ③화상접견안내 ④공휴일접견안내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c.에 관해서 접견민원실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F1.2.3. 수용자의 가족에 대한 접견안내**

1. 접견민원실에서 안내문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다.
2. 접견민원실에서 수용초기 가족에게 안내문을 보낸 발송대장을 확인하여 안내문의 발송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F1.4.2. 미결수용자의 접견시간**

접견실을 방문하여 미결수용자의 접견의 실제시간을 샘플로 측정해 보도록 한다.

**F1.5.2. 접견예약제의 실시**

접견민원실을 방문하여 접견예약에 대한 안내여부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등의 접견예약의 방법에 대하여 민원실 직원에게 샘플을 확인해 본다.

**F1.5.3. 원격화상접견의 실시**

1. 화상접견실을 방문하여 화상접견실의 화상접견시설을 확인한다. 컴퓨터의 화상과 음질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접견민원실을 방문하여 화상접견에 대한 안내여부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등의 화상접견예약의 방법에 대하여 민원실 직원에게 샘플을 확인해 본다.

**F1.5.4. 합동접견의 실시**

합동접견에 이용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그 장소가 음식물을 나누어 먹기에 적절한 장소인가를 확인한다.

**F1.5.5. 무계호접견의 실시**

무계호접견의 실시건수가 있으면, 그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대화감시를 하지 않고 접견이 가능한 장소인지를 확인해 본다.

**F2.3.1. 서신발송의 신속성**

교무과를 방문하여 서신담당직원의 서신발송 및 교부과정을 살펴보고, 또 서신담당직원에게 질문하여 봄으로써 방문시점에 제출자료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서신발송업무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본다.

**F2.3.2. 서신교부의 신속성**

교무과를 방문하여 서신담당직원의 서신발송 및 교부과정을 살펴보고 또 서신담당직원에게 질문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서신교부업무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본다.

**F2.5.3. 전자서신제도의 이용**

교무과를 방문하여 전자서신의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신의 교부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하여 실무상의 운영상황을 체크해 본다.

**F4.1.1. 전화설비의 수**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의 대수를 확인한다. 그리고 전화기

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F4.1.2. 미결수용사동과 여성수용사동의 전화설치**

미결수용사동과 여성수용사동의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의 대수를 확인한다.

#### **F4.1.3. 전화실의 구조와 전화기의 상태**

전화실을 방문하여 a, b, c의 해당여부를 직접 확인해 본다.

- a. 청취가 양호하며 잡음이 없다.
- b. 타인(입회교도관 1인 제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할 수 있다.
- c. 수화기의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 **F4.4.1. 전화통화시간**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통화과정을 지켜보면서 통화시간을 평가해 본다.

#### **F4.6.3. 통화감시의 고지**

전화실을 방문하여 실제 수용자의 통화과정을 지켜보면서 구급시설 직원이 통화초기에 상대방에게 통화감시사실을 어떻게 고지하는지를 살펴본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전화실 직원에게 통화상대방에게 감청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물어본다.

#### **F5.2.2. 신문열람실의 설치와 운영**

신문열람실을 방문하여 세부지표 a, b, c, d의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b.에 대해서는 신문열람실의 운영직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 a. 신문열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b. 신문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용자를 제한하지 않는다(예컨대 급수에 따른 제한 등).
- c. 신문열람실에는 최소한 10종 이상의 일간신문이 1부 이상 비치되어 있다.
- d. 신문열람실의 이용시간이 1회당 1시간 이상 보장되고 있다.

#### **F5.2.4. 도서실의 운영**

도서실을 방문하여 a, b, c, d, e의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도서실 직원에게 관련사항을 질문하여 확인한다.

- a. 수용자 1인당 도서실의 장서 수가 20권 이상이다.
- b. 도서실의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 c. 도서의 분류와 대출 등 도서실의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다.
- d. 소장도서의 검색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e. 수용자는 도서실을 방문하여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 **F8.1.2.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및 공개금지**

- a. 의무과 진료실을 방문하여 진료현장에서 다른 수용자가 의료직원과 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통해 진료 받는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b. 병사 거실을 방문하여 거실 밖에 부착된 현황표의 기재사항에 병명이나 기타 수용자의 건강관련정보가 공개되는지를 확인한다.
- c. 종교거실과 일반사동 중 1곳을 방문하여 거실 밖에 부착된 현황표의 기재사항에 종교나 사상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지를 평가한다.

#### **H1.2.1.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 모임의 보장**

c와 d에 관하여는 종교활동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그 장소가 종교적 활동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적합한가, 그 장소에는 성상이나 성물이 비치되어 종교적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c. 각 종교활동 모임에는 적합한 장소가 제공되고 있다.

d. 각 종교활동 모임을 위하여 성상, 성물 등 필요한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 **H1.3.2. 종교관의 설치와 운영**

종교관을 방문하여 종교관의 수와 각 면적을 측정하고, 종교관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H2.3.1. 수용자를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

문화공간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장소를 방문하여 30명 이상 동시수용 여부, 그 안에 마련된 오락 및 문화활동 시설의 종류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I 1.1.1. 소장면담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교육의 실시 여부**

1) 일반거실에 들어가 소장면담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 책자나 안내문이 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2) 일반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된 책자, 안내문의 내용을 조사한다.

#### **I 2.1.1.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교육**

1) 일반거실에 들어가 청원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 책자나 안내문이 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2) 일반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된 책자, 안내문의 내용을 조사한다.

#### **I 3.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지 및 교육**

1) 일반거실에 들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책자나 안내문이 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일반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된 책자, 안내문의 내용을 조사한다.

3) 각 사동 입구 등 수용자들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안내서가 비치,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I 3.2.4. 진정함의 위치**

1) 구금시설측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대로 설치되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2) 진정함에 '진정함 국가인권위원회'라고 기재되었는지 조사한다.

3) 각 관구실에 용지, 필기도구 및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 **I 4.1.1.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교육**

1) 일반거실에 들어가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를 소개한 책자나 안내문이 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일반거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부착된 책자, 안내문의 내용을 조사한다.

#### **I 4.2.5. 법률서적 구비 여부**

각 사동 책꽂이와 도서실을 방문하여 법령 및 법률서적의 내용을 살펴본다.

#### **J5.2.1. 여성교도관을 위한 편의시설 구비정도**

교도소의 주요부서가 있는 건물에 있는 여성직원용 시설의 유무를 확인한다. 직원에게 시설 유무를 확인한다.

#### **K1.6.2. 대동 유아실 확보 유무**

대동유아실을 방문하여 관찰 조사한다.

**K1.7.1. 여사 폐쇄회로 관리**

여사를 방문해서 폐쇄회로 설치장소 확인하고, 보안과 중앙통제실을 조사한다.

**K2.1.1. 성인/소년사동의 구별형태**

성인구금시설의 경우 보안과에서 소년수용자 수용거실을 파악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구분정도와 소년거실에 성인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K3.1.1. 수용생활 안내**

먼저 제출자료를 통해 현재 수용 중인 외국인의 수와 국적을 미리 파악하고, 외국인 수용자 거실을 방문하여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구금시설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K3.2.1. 분리수용**

혼거의 경우, 어떤 국적을 가진 수용자가 혼거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종교 및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K3.3.1. 거실 형태**

제출자료를 통해 (제출자료-K3.2. 참조) 현재 수용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미리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 거실에 들어가 침대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침대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K3.3.2. TV 시청**

외국인수용자 거실을 방문하여 TV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어방송의 시청이 가능한지 사동근무자에게 질문한다.

**K3.4.1. 식생활**

먼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각자에게 부합하는 음식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1) 빵을 주식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주식으로 밥이 아닌, 빵이 제공되는지 여부, 2) 특정육식을 금하고 있는 이슬람교도나 힌두교도 등을 배려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여부, 3) 채식주의자들에게 채식위주의 식단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K3.7.1. 종교생활 보장**

1) 교무과에서 외국인수용자가 요청하는 특정 종교의 성직자와의 접촉을 주선하는지 조사한다.

2) 거실 내에서 외국인의 예배 등 특정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3) 외국인의 종교행사 참여를 인정하는지 조사한다.

**K4.1.1. 장애거실의 수용정원**

[제출자료] K4.7. 장애수용거실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 (수용정원 기준)

장애거실의 종류와 수를 미리 파악하여 각 사동마다 장애거실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실제로 장애거실의 수용 가능인원과 제출자료 상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K4.2.1. 장애수용자의 이동 및 활동**

[제출자료]

K4.8. 휠체어 사용가능 특별거실의 수와 각각의 거실수용정원(미결, 기결, 여사 구분)

K4.9. 장애수용거실의 화장실에 좌변기가 설치된 거실의 수

K4.10. 장애수용거실의 화장실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된 거실의 수

K4.11. 장애수용거실의 내벽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된 거실의 수

K4.14. 장애수용거실의 난방종류(온돌, 전기판넬 등)

제출자료를 통해 장애거실의 종류와 수를 미리 파악하고 다음의 a, b, c, d, e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a. 휠체어사용이 가능한 특별거실의 설치 여부
- b. 거실내벽의 안전용 손잡이 설치 여부
- c. 화장실의 좌변기 및 안전용 손잡이 설치 여부
- d. 거실난방의 유무
- e. 세면대 설치 여부

**K4.2.2. 시각장애, 청각장애 수용자에 대한 배려**

보안과 직원에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안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수용자가 거하는 거실을 살펴보고 위의 a, b, c, d, e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a. 시각장애자를 위하여 점자로 된 수용생활안내서 등이 비치되어 있다.
- b. 시각장애자를 위해 거실 내벽에 안전용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 c. 시각장애자를 위해 이동통로에 특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d. 청각장애자를 위해 수화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는 수화를 할 줄 아는 수용자를 함께 거하도록 하고 있다.
- e. 시각장애(또는 청각장애) 수용자를 위한 도우미(간병부)제도를 두고 있다.

**K4.3.1. 장애수용자의 운동**

사동근무자에게 장애수용자의 1회 운동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운동장에 장애수용자를 위한 특수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K4.3.2. 장애수용자의 목욕**

일반사동근무자에게 장애수용자의 목욕횟수와 목욕시간 등을 묻고 몸이 불편한 장애수용자의 목욕을 어떻게 돕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목욕탕 내부시설을 살펴보고, 장애수용자가 목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샤워꼭지가 목욕탕 벽의 낮은 데도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K4.3.3. 장애수용자의 작업**

장애수용자의 작업하는 곳을 방문하여 작업의 성격이 장애수용자에게 적합한지 조사한다.

**K4.4.1. 장애수용자의 외부교통 (접견, 서신, 전화 등)**

일반사동과 접견실간의 이동통로를 유심히 살피고,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접견 시에 청각(언어)장애 수용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시각장애자에게는 급수에 상관없이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4. 기록조사목록

### B1.1.3. 분류처우예비회의의 운영

평가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일년간 분류처우예비회의 회의록

### B1.1.4. 분류처우회의의 운영

평가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일년간 분류처우회의 회의록

### B1.2.1. 분류조사의 적정성

수용자 10명의 분류처우심사표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다.

### B1.2.2. 신입심사

분류처우심사표 10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신입심사 결과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다.

### B1.2.3. 재심사

1. 분류처우심사표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심사내역을 평가한다
2. 전년도 분류처우회의록을 조사하여 정기·부정기 재심사의 결과를 평가한다.

### B1.2.4. 분류심사에서 여성의 고려

전년도 분류처우예비회의록 및 분류처우회의록

#### B2.1.1. 행형성적의 평가과정에 대한 정보권의 보장

「행형성적재점 및 고지서」 10개 이상을 확인한다.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서 행형성적과 관련한 불만처리사례를 확인한다.

#### B2.1.2. 진급정지 및 강급의 적용실태

분류처우예비회의 및 분류처우회의 회의록

### C1.1.1. 의류의 지급

수용자피복수급계획(용도과)

### C1.1.2. 이불의 지급

용도과에서 이불지급 기록을 조사한다.

### C1.1.3. 매트리스의 지급

용도과에서 매트리스 지급 기록을 조사한다.

### C1.1.4. 담요와 베개의 지급

용도과에서 담요와 베개 지급 기록을 조사한다.

### C1.2.1. 생활용품의 지급

용도과에서 생활용품 지급 기록을 조사한다.

### C1.2.4. 특별급식

‘주·부식 급여결과 보고서(월보 및 연보)’ (용도과)

### D1.1.2. 의사 1인당 병사수용정원과 진료인원

의무과 기록(연보, 월보, 일일보고서)을 검토하여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과 순회 진료인원을 산출한다. {예} <A 구급시설> 병사수용인원: 53명, 1일 평균 진료인원: 220명, 의사의 수: 2.5명 →  $\{(220 \times \frac{1}{3}) + 53\} \div 2.5 = 50.5$

### D1.3.1. 정신과 의사

월보 및 연보를 살펴보고, 정신과 진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 D1.4.1. 전문의에 의한 진료 가능성

진료일지(월보, 연보)를 검토하여 각 전공별 진료가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A 구급시설> 시설의사: 비전임 1명(정형외과), 공중보건의 1명(내과), 자원봉사: 피부과 전문의가 매주 목요일 1시~2시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함 → 3개 과목

**D1.5.1. 간호사 1인당 병사수용정원과 진료인원**

의무과 기록(연보, 월보, 일일보고서)을 검토하여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과 순회 진료인원을 산출한다. {예} <A 구급시설> 병사수용인원: 53명, 1일 평균 진료인원: 220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5 →  $\{(220 \div 12) + 53\} \div \{2 + (5 \div 2)\} = 15.85$

**D1.5.2. 약사 1인당 1일 투약인원**

의무과 투약기록(연보, 월보, 일일보고서)을 검토하여 1일 평균 투약인원을 정확히 산출한다.

**D2.1.1. 1일 평균 진료인원 대비 진료실의 면적**

진료일지(1일 보고서, 월보, 연보)를 검토하여 하루 평균 의무과연출인원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여 제출자료의 인원과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D4.8.1. 외부진료 가능성**

외부진료신청보고전과 실제 외부진료기록을 대조해 본다.

**D4.9.1. 건강검진 실시여부**

최근 1년간의 건강검진기록을 살펴본다.

**E1.1.1. 신입자에 대한 규율·징벌의 고지와 교육의 적절성**

‘신입안내교육일지’를 조사하여, 신입자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입자교육에서 규율과 징벌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E1.1.2. 규율에 관한 정기교육의 충실성**

1. 규율에 관한 교육자료(영상자료 등)의 내용을 확인한다.
2. 전년도 1년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규율에 관한 교육의 일지를 제출자료와 대조하여 봄으로써 규율에 관한 교육의 실시여부 및 실시내용을 확인한다.

**E1.3.1. 규율위반행위의 발생정도**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 혹은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통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규율위반건수를 확인해 본다.

**E1.3.2. 징벌집행 중 규율위반행위의 발생 정도**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검토하여 징벌집행 중에 발생한 규율위반건수를 확인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E1.4.1. 징벌혐의로 조사실등에 격리수용된 수용자 수**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과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통하여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 현황을 파악한다.

**E1.4.2.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기간**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과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통하여 징벌혐의자의 격리수용기간의 현황을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E1.4.3. 조사기간의 적정성**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조사기간을 확인해 본다. ‘징벌위원회회의록’에는 조사일수와 징벌기간에의 산입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특히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건수를 제출자료와 대조해 보아야 한다.

**E1.4.4. 조사기간 중 징벌협약자의 권리제한**

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건의 사례를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10건의 사례는 징벌에 관한 아래 평가항목의 기록조사 중 사례조사를 실시하는데 함께 활용한다.

- 1)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의 사례 중에서 선정한다.
  - 2) 10건의 사례는 모두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1개 이상의 권리제한을 받은 사례여야 한다. 징벌수용자에게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었던 사례는 선정하지 않는다. 만약 조사기간 중의 권리제한 현황이 ‘징벌위원회회의록’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먼저 2배수(20건) 정도의 사례를 선정하고 각 건에 대하여 구금시설의 일일보고자료인 “조사자현황” 또는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 등의 기록을 요구하여 권리제한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10건의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3) 10건의 사례 중 5건은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건으로 선정한다.
2. 선정된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징벌위원회회의록’에 기재된 규율위반행위의 내용을 파악하고 난 후, “조사자현황” 또는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 기록을 통하여 권리제한 현황을 파악하여 위 a.-g. 지표에의 해당여부를 평가한다. 10건 모두에서 a.-g.의 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1건이라도 지표상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E1.5.1. 징벌위원회의 구성**

‘징벌위원회회의록’에는 징벌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다.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을 검토하여 외부위원의 실제 참석실적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참석실적이 전혀 없는 외부위원은 위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E1.5.2. 징벌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을 검토하여 외부위원의 참석여부, 개최장소, 회의시간을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임의로 3-5개의 징벌위원회회의록을 제출자료와 대조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4.4. 참조).
3.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충분한 회의시간을 가지고 심리가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징벌위원회회의록’에는 회의시간이 기재된 경우가 많은데, 기재된 회의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회의록 상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정도의 심리가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E1.5.3. 징벌위원회 의결절차의 적정성**

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4.4. 참조).
2.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위 b. - d. 항목의 해당여부를 평가한다.

**E1.5.5.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의 진술권 보장**

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4.4. 참조).
2. 선정된 10개의 사례 중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한 5개의 사례에 대하여 징벌위원회 회의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는가를 평가한다.

**E1.6.2. 금치이외의 징벌의 활용정도**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의 징벌내용을 검토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해 본다. 예를 들어, 비교적 선고건수가 적은 징벌인 작업상여금의 삭감 건수를 징벌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하여 제출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볼 수 있다.

**E1.6.3. 금치의 활용의 적정성**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을 검토하여 5일 이내의 단기금치의 선고건수와 30일 이하의 금치의 선고건수를 확인하고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E1.7.1. 징벌집행유예제도의 활용정도**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을 통하여 징벌집행유예의 건수를 확인하고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E1.7.2. 징벌감면제도의 활용정도**

‘수용자징벌(집행)부’(전년도)를 통하여 징벌감면의 건수를 확인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E1.7.3. 금치집행수용자의 권리보장**

1. ‘징벌위원회회의록’(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1.4.4. 참조).
2.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해당 ‘징벌집행통지서’를 요구하여 그 안에 기재된 권리제한(처우제한)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해 본다.

**E1.7.4. 금치집행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진단**

1. ‘수용자징벌(집행)부’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금치집행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진단방법이나 진단항목 등이 제출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수용자징벌(집행)부’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금치집행 수용자 중에서 임의로 3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의무과에 해당 수용자의 ‘재소자건강진단부’를 요구하여 기록을 확인해 본다.

**E1.8.4. 징벌실의 운영**

최근 3개월 간의 “징벌자현황” 자료 혹은 “거실수용현황” 자료를 통하여 금치수용자의 징벌실 수용현황을 파악한다.

**E2.1.1. 계구사용에 관한 기록의 적정성**

1.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전의 기록은 ‘계구사용감독부’를 조사하고, 2004.6.29 이후의 기록은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한다. 2005년 이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한다.
2. ‘계구사용심사부’에서 10개의 사례를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10건의 사례는 계구사용에 관한 아래 평가항목의 기록조사 중 사례조사를 실시하는데 함께 활용한다.
  - 1)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4.6.29 이후의 사례 중에서 선정한다.
  - 2) 10개의 사례는 모두 평가 당시 해당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사례로 선정한다.
  - 3) 10개의 사례 중 8건은 계구사용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사례로 선정하며, 그 중 사용시간이 3일 이상인 사례를 5건 이상 포함하도록 선정한다.
  - 4) 10개의 사례 중에는 포승을 사용한 경우가 1-2건, 사슬을 사용한 경우가 2-3건이 포함되도록 선정한다.
  - 5) 10개의 사례 중에는 자살·자해의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 사례가 7건이 되도록 선정한다.
  - 6) 10개의 사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 6-7인, 미결수용자 3-4인으로 선정한다. 미결수용자가 없는 구금시설에서는 수형자만으로 10개의 사례를 선정하며, 구치소의 경우 수형자 3-4인, 미결수용자 6-7인으로 선정한다.
3.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다음을 조사한다. 10개의 사례 모두에서 세부지표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a. ‘계구사용심사부’의 “계구사용사항”란에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이 특정되어 기재있는가 여부를 확인한다.

- b. ‘계구사용심사부’의 “수용자동정 확인사항”란과 “관계자 의견”란에 계구사용이유로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한다.
- c. ‘계구사용심사부’의 “계구사용사항”란에 계구의 종류별, 사용방법별로 사용날짜와 시각, 해제날짜와 시각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한다.
- d. ‘계구사용심사부’에 포승 중 하체승과 사슬을 사용한 사례에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매 시간 기록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한다. ‘계구사용심사부’에 이에 관한 기록이 없더라도 별도의 “동정시찰보고”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다.

#### **E2.1.2. 소장의 계구사용 명령의 적정성**

1.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2.1.1. 참조).
2.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다음을 조사한다. 10개의 사례 모두에서 세부지표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 a. ‘계구사용심사부’의 “소장심사”란에 계구사용명령 시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특정하여 결재하는가를 확인한다.
  - b. ‘계구사용심사부’의 “소장심사”란에 계구의 계속사용여부에 관한 매일의 심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c. ‘계구사용심사부’혹은 다른 기록, 예를 들어 ‘소장면담부’등에서 소장이 계구사용 전에 해당 수용자와 면담한 것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건수를 제출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본다.

#### **E2.1.3. 자살·자해의 우려자에 대한 의사의 사전진찰**

‘계구사용심사부’에서 자살, 자해의 우려를 이유로 한 사례를 모두 검토하여 ‘계구사용심사부’의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직원”란에 사전진찰의 사실 내지 즉시진찰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건수를 조사하여 제출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본다. 제출자료의 건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 기록조사에서 확인된 건수로 평가한다.

#### **E2.2.1. 계구사용 의 보충성 : 대안의 강구**

- a.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보호실(안정실)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조사한다.
- b.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대면계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조사한다.
- c.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전문가가 운영하는 심리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조사한다.
- d. 전년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 5인의 신분장 기록을 조사한다.

#### **E2.2.2. 계구사용의 보충성 : 계구사용 건수**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의 계구사용 총 건수를 확인하여 제출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본다.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전의 건수는 ‘계구사용감독부’를 조사하고, 2004.6.29 이후의 건수는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하면 된다.

#### **E2.2.3. 계구사용요건과 최소침해의 원칙**

1.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2.1.1. 참조).
2.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위의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각 계구사용이 사용요건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한다. 먼저 판단의 자료로는 ‘계구사용심사부’에 기재된 수용자동정사항과

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에 나타난 계구사용관련 “동정시찰보고”기록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계구사용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수용자의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계구사용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계구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평가해야 한다. 판단의 구체적인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계구사용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판단하면 된다.

**E2.2.4. 계구의 비인도적 사용금지의 원칙(사슬)**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를 통하여 전년도 1년간 사슬의 총 사용건수를 확인하여 제출자료의 건수와 대조해 본다.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전의 건수는 ‘계구사용감독부’를 조사하고, 2004.6.29 이후의 건수는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하면 된다.

**E2.2.7. 호송 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방법**

최근 1개월간의 ‘호송계획서’를 검토하여 각 계구사용방법 별로(금속수갑만, 금속수갑 + 간이승, 금속수갑 + 상체승) 건수와 비율을 측정한다.

**E2.3.1. 계구사용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점검**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에서 10개의 사례를 선정한다(선정기준은 E2.1.1. 참조). 선정된 10개의 사례에 대하여 ‘계구사용심사부’의 기재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을 확인한다.

- a. 의사의 건강점검횟수의 기재사항
- c. 의사의 건강점검의 내용에 관한 기재사항
- d. 최근 6개월간의 ‘계구사용심사부’를 통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계구사용중지 건의 건수를 확인해 본다.

**E2.3.2. 계구사용 수용자의 거실**

- 1) ‘계구사용심사부’(전년도)에는 계구사용 중 수용자의 수용거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독거실수용과 혼거실수용의 건수를 조사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 2) 2004년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4.6.29 이전의 것은 ‘계구사용감독부’를 조사하고, 2004.6.29 이후의 기록은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한다. 2005년 이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구사용심사부’를 조사한다.

**F1.2.4. 가족에 대한 접견금지사실의 통보**

‘조사징벌대상자 접견금지 통보부’의 기록을 확인한다.

**F1.5.2. 접견예약제의 실시**

접견민원실에서 ‘접견예약현황표’(최근 3개월 분)를 조사하여 접견예약건수를 확인한다.

**F1.5.3. 원격화상접견의 실시**

‘화상접견예약신청원’(최근 3개월 분)의 기록을 조사하여 화상접견의 실시건수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수는 해당 구금시설의 수용자가 접견한 건수를 말한다.

**F1.5.4. 합동접견의 실시**

합동접견의 실시기록을 요구하여 실시건수와 참여수형자 수, 외부접견인의 수를 제출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해 본다.

**F1.5.5. 무계호접견의 실시**

제출자료에 실시건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무계호접견의 실시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확인한다.

**F1.5.6. 장소변경접견의 실시**

장소변경접견의 실시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실시건수를 확인한다.

**F1.6.1. 접건의 강제종료**

전년도 1년간 접건의 강제종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그 사례 중 임의로 10건을 선정하고, 그것이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조사한다. 강제종료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1건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기록상 강제종료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강제종료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이는 강제종료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F1.6.2. 접견불허처분**

전년도 1년간 접견불허처분사례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그 사례 중 임의로 10건을 선정하고, 그것이 행형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조사한다. 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1건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기록상 접견불허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이는 접견불허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F2.4.1. 수형자의 서신수발이용**

1)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에는 날짜별로 서신의 수발신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최근 1개월간의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의 기록을 검토하여 제출자료의 건수를 확인해 본다. 최근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이라는 서류 대신에 수용자의 서신을 관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접수와 발신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금시설에서는 최근 1개월간의 서신수발현황을 컴퓨터의 해당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 수용자 개인별로는 ‘서신표’라는 것이 있다. 필요하다면, 일부 수용자의 ‘서신표’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F2.4.2. 미결수용자의 서신수발 이용**

1)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에는 날짜별로 서신의 수발신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최근 1개월간의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의 기록을 검토하여 제출자료의 건수를 확인해 본다. 최근 많은 구금시설에서는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이라는 서류 대신에 수용자의 서신을 관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접수와 발신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금시설에서는 최근 1개월간의 서신수발현황을 컴퓨터의 해당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 수용자 개인별로는 ‘서신표’라는 것이 있다. 필요하다면, 일부 수용자의 ‘서신표’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F2.5.1. 서신검열제외제도의 활용**

‘서신검열제외대상자명부’를 검토하여 제출자료의 인원수를 확인한다.

**F2.6.1. 서신의 발송불허처분**

서신발송불허건수가 있어 기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허서신처리부’의 기록을 우선 검토하여 10건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한다. 전체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선정하여 검토한다.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불허서신처리부’에 기재된 발송불허사유에 합치하는 판단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영치되어 있는 해당서신을 요구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F2.6.2. 서신의 교부불허처분**

서신교부불허건수가 있어 기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허서신처리부’의 기록을 우선 검토하여 10건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한다. 전체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선정하여 검토한다.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불허서신처리부’에 기재된 교부불허사유에 합치하는 판단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영치되어 있는 해당서신을 요구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야 한다.

**F2.6.3. 발송불허서신의 처리**

‘불허서신처리부’를 검토하여 발송불허서신의 처리현황을 확인한다.

**F2.6.4. 교부불허서신의 처리**

‘불허서신처리부’를 검토하여 교부불허서신의 영치, 폐기여부 및 각 해당건수를 확인한다.

**F3.1.1. 수형자의 집필 이용**

1) 최근 3개월 간의 ‘집필허가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을 조사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집필건수를 확인한다.

2) 특히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서 집필보고전을 낸 것으로 기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샘플로 10건에 대하여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을 확인하여 집필이 실제 허가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F3.1.2. 미결수용자의 집필 이용**

1. 최근 3개월 간의 ‘집필허가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을 조사하여 제출자료에 기재된 집필건수를 확인한다.

2. 특히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서 집필보고전을 낸 것으로 기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샘플로 10건에 대하여 해당 수용자의 신분장을 확인하여 집필이 실제 허가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F4.3.1. 수형자의 전화사용**

최근 1개월간의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을 검토하여 수형자의 전화이용건수를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F4.3.2.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

최근 1개월간의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의 기록을 검토하여 미결수용자의 전화이용건수를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F4.5.1. 긴급한 경우의 전화사용의 보장**

‘공중전화관리기록부’와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에서 긴급한 용무에 해당하는 사례건수를 확인하고 그 허가사유를 검토하여 긴급한 용무의 해석과 운영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F4.5.2.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

‘공중전화관리기록부’ 등 수신자부담의 전화사용을 허가한 기록을 요구하여 확인한다.

**F4.6.1. 전화통화의 차단처분의 적절성**

전화통화차단사례가 있다면 그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그 중 10건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한 후, 전화통화차단처분이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4조의 사유에 합치하는 것인가를 평가한다.

**F4.6.2. 전화사용의 불허처분**

전화사용불허사례가 있다면 그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여 그 중 10건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한 후, 전화통화불허처분이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14조의 사유에 합치하는 것인가를 평가한다.

**F5.2.1. 수용자 1인당 구독가능한 신문의 종류**

‘수용자신문열람허가자명부’의 기록을 조사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F5.3.1. 신문의 기사삭제처분**

‘열람제외기사검토부’에서 삭제된 기사의 전건에 대하여 삭제된 기사내용이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 제1항에 엄격히 합치하는가를 조사한다.

**F5.3.2. 도서열람 불허처분**

제출자료와 ‘도서열람불허대장’ 그리고 수용자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열람불허도서에 대하여 그 내용이 평가지침에서 제시한 열람불허사유에 해당하는가를 평가한다. ‘수용자열람도서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지침에서 설명한 열람불허사유에 해당하는가가 기준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F6.3.4.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의 시행**

제출자료의 자체방송세부실천계획을 최근의 방송일지와 비교해 보아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F7.2.2. 수형자의 귀휴 신청권의 보장**

‘귀휴허가심사조사서’와 ‘귀휴심사부’를 검토하여 귀휴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F7.3.1. 귀휴심사위원회의 구성**

‘귀휴심사부’ 기록을 검토해 보아 외부위원의 실제 활동여부를 확인해 본다.

**F7.3.2.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의 공정성**

d. ‘귀휴허가심사조사서’에서 샘플사례 10건을 선정하여 귀휴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요구하는 심사항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실질적인 귀휴심사가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한다.

e. ‘귀휴심사부’에서 임의로 10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귀휴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기재가 충실한 것인지를 평가한다.

a. b. c. ‘귀휴허가심사조사서’와 ‘귀휴심사부’의 기록을 검토한다.

**F7.4.1. 외부통근작업의 활용**

a. d. ‘취업계약서’를 검토하여 확인한다.

b. ‘외부통근작업자명단’(전년도)을 확인하여 제출자료와 대조해 본다.

**F8.1.1. 개인정보의 수집과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면담대상 수용자 3인에 관한 수용자신분카드를 검토하여 수용자의 개인정보의 항목내용들과 수집경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면담조사에 활용한다.

**H1.2.3. 개인의 신앙생활의 보장**

성물소지에 관한 제출자료의 허가상황을 ‘수용자성물소지허가부’의 기록과 대조해 보며, 성물소지 수용자의 인원수를 파악한다.

**H2.2.1. 수용자의 외부행사 참여 기회**

제출자료에 외부의 대회나 행사에 수용자가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증명기록을 요구하여 확인한다.

**I 1.2.3. 소장면담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소장면담부와 수용자 출원사항처리부를 살펴본다.

**I 2.2.2. 청원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수용자출원사항처리부와 수용자청원부를 조사한다.

**I 3.2.3. 진정의 신속성 보장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서면진정처리부와 면전진정처리부를 조사한다.

**I 3.2.5. 진정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국가인권위원회 서면진정처리부와 면진진정처리부를 조사한다.

**I 4.2.2. 징벌조사 및 집행과정에서의 변호사 접견 및 서신수발**

방문 당시 징벌 조사자와 징벌 집행자의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처우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요구한다.

**K2.1.2. 소년수용에 대한 특별배려**

교무과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내역을 확인한다.

**K3.1.2.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화전담직원**

구금시설측이 ‘외국어 해독이 가능한 교회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교도관으로부터, 관련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한다. 즉,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 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현장조사 및 기록조사)

**K3.5.1. 종교생활 보장**

교무과에서 외국인수용자와 특정 종교의 성직자와의 접촉을 주선한 사례가 있을 경우 그 관련기록을 달라고 하여 사실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외국인수용자의 특정종교행사참여가 허용되었던 경우, 역시 관련기록을 달라고 하여 살펴본다.

## 5. 설문지

# 수용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빠짐없는 답변은 여러분들의 생활상 불편함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맞고 틀린 정답은 없으며, 이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다음은 여러분들의 거실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A1. 겨울철 거실의 난방상태는 지내기에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춥다      ② 춥다      ③ 따뜻하다      ④ 매우 따뜻하다

A2. 귀하의 거실은 낮에 실내등을 켜지 않고도 책을 읽기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한 편이다  
③ 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불편하지 않다

A3. 귀하의 거실은 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 ① 환기가 전혀 안 된다      ② 환기가 잘 안되는 편이다  
③ 환기가 잘 되는 편이다      ④ 환기가 매우 잘 되고 있다.

A4. 독서나 편지쓰기 등을 고려할 때 야간의 거실조명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어둡다      ② 어두운 편이다      ③ 밝은 편이다      ④충분히 밝다

A5. 귀하의 거실은 밤에 잘 때 조명을 낮추어 잠자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취침조명을 실시하지 않는다.  
② 취침조명을 실시하지만 여전히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  
③ 취침조명을 실시하여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있다.

다음은 분류처우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B1. 귀하는 귀하에 대한 구금시설의 분류심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B2. 분류과 직원은 귀하에게 분류심사의 절차와 기준,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까?

- ①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      ② 거의 설명해주지 않았다  
③ 조금 설명해 주었다      ④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B3. 귀하는 분류심사 과정에서 분류과 직원과 상담을 하였습니까?

- ① 전혀 상담하지 않았다      ②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③ 상담을 한 편이다      ④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B4. 귀하가 앞으로 진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능성이 전혀 없다                      ② 가능성이 없는 편이다
- ③ 가능성이 조금 있다                      ④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C1. 관급되는 의류는 착용하기에 편안하고 귀하의 건강유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2. 관급되는 침구는 청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3. 관급되는 생활용품(치약,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등)의 질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한 편이다
- ③ 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불편하지 않다

C4. 식사는 식단은 짜여진 대로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5. 매일 제공되는 식사의 질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C6. 영치금으로 구입하는 부식의 가격은 시중가격과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비싸다                              ② 비싼 편이다
- ③ 저렴한 편이다                              ④ 매우 저렴하다

C7. 영치금으로 직접 구입하는 부식의 질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D2. (구급시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의무관은 당신이 호소하는 얘기를 잘 들어 주는 편입니까?

- ① 전혀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 ② 나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편이었다
- ③ 나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편이었다
- ④ 나의 이야기를 매우 잘 들어 주었다

**D3. (구급시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의무관은 진찰 후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까?

- ① 아니요            ② 예

**D4.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몸이 아파서 의사의 진료를 요청한 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 ① 의사면담을 신청한 날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 ② 의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경미한 증세라서 간호사나 의무과 직원을 통해 약을 받았다
- ③ 하루나 이틀 지나서 평일 진료시간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 ④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마침내 외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 ⑤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D5. (의무과가 아닌, 일반사동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진료를 하는 의사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 ① 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설명도 잘 해 주지 않았다
- ② 건성으로 나의 말을 듣고 설명도 대충 대충 해주는 편이었다
- ③ 조금 친절하고 성의가 있는 편이었다
- ④ 매우 친절하고 성의도 많았다

**D6. (의무과가 아닌, 일반사동에서 의사의 순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이 나았습니까?

- ① 전혀 낫지 않았다            ② 경미한 증세라서 저절로 나았던 것 같다
- ③ 조금 호전되었다            ④ 깨끗이 나았다

**D7. (최근 1년 이내에 치과진료를 신청한 경험이 있거나, 치과진료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동료수용자를 알고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치과진료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 ①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②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 ③ 1주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④ 1주일 이내에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E9. 시설의 직원이 귀하에게 혹은 귀하의 동료수용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교도봉이나 전기교도봉 등을 사용하겠다고 부당하게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본인에게 한 적이 있다
- ② 본인에게 한 적은 없지만 동료수용자에게 한 경우를 목격하였다
- ③ 그러한 경험이 없다

다음은 접견과 서신 및 집필, 외부교통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F1. 귀하는 접견횟수나 시간, 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충분히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F2. 접견 도중에 교도관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부당하게 접견의 대화내용을 제지하거나, 강제로 접견을 끝내게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런 적이 매우 많다
- ② 그런 적이 많은 편이다
- ③ 그런 적이 가끔 있다
- ④ 그런 적이 없다

F3. **(징벌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이어서 접견을 못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 소환되어 접견을 못한 경우, 접견횟수초과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접견이 가능한데 접견을 못한 경우만 생각해서 대답해 주세요)**

최근 3개월 동안에 외부사람이 귀하를 접견하러 왔다가 접견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런 경우가 두 번 이상 있다
- ② 그런 경우가 한 번 있다
- ③ 그런 경우가 없다

F4. 귀하는 서신수발의 횟수와 방법, 서신에 집필해서는 안 되는 내용 등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충분히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F5.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에 서신을 발송하고자 했으나, 교도관이 발송을 못하게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두 번 이상 있다
- ② 한 번 있다
- ③ 없다



F23. 귀하는 만약 동료수용자가 글을 쓸 줄 모르는 경우 집필을 원한다면 동료 수용자가 대신 집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허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허용되며, 교도관이 전혀 제지하지 않는다
- ② 허용되는 편이지만, 교도관이 제지하는 경우도 있다
- ③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교도관이 안다면 주로 제지하는 편이다
- ④ 전혀 허용되지 않으며, 항상 교도관의 단속대상이다

F24.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집필을 하기 위하여 집필보고전을 제출하였는데 집필이 불허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을 집필하려고 한 때였습니까?

- ① 두 번 이상 있다 ⇒ 불허된 집필의 내용 ( )
- ② 한 번 있다 ⇒ 불허된 집필의 내용 ( )
- ③ 한 번도 없다

F25. 귀하는 전화사용의 방법이나 횟수, 요건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충분히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F26. 귀하는 최근 1년 동안에 전화사용신청을 하였으나 부당하게 전화사용이 불허된 적이 있습니까?

- ① 두 번 이상 있다
- ② 한 번 있다
- ③ 한 번도 없다

F27. *(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최근 1년 동안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에 교도관이 부당하게 전화통화를 강제로 차단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두 번 이상 있다
- ② 한 번 있다
- ③ 한 번도 없다

다음은 도서 및 신문열람, TV시청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F28. 귀하는 관용도서를 얼마나 열람하고 있습니까?

- ① 자주 열람한다
- ② 가끔 열람하는 편이다
- ③ 별로 열람하지 않는 편이다





G6-G13. 다음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를 열거한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지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항목	의견			
	매우 자주 일어난다 (4)	가끔 일어난다 (3)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1)
G6. 종이나 칼 등에 베이거나 찰과상				
G7. 두통이나 관절통				
G8. 습진 등 피부병				
G9. 안과질환(눈 충혈, 눈이 부시거나 따가움 등)				
G10. 호흡곤란이나 가슴답답증				
G11. 허리나 목 디스크				
G12. 골절이나 절단				
G13.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다음은 여러분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분만 응답해 주세요.)

G14. 직업훈련을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본인의 적성이나 선호가 어느 정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②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 ③ 어느 정도 고려되었던 것 같다
- ④ 충분히 고려되었다

G15. 귀하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훈련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 ④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정신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용자 정신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G16. 귀하는 일년에 한번씩 받는 수용자 정신교육이 자신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④ 많이 도움이 된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학과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학과교육이나 방통대, 전문대, 독학사, 외국어, 한자교육 등의 교육을 받은 분만 응답해 주세요.)

G17.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②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 ③ 어느 정도 고려되었던 것 같다
- ④ 충분히 고려되었다

G18. 귀하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 ④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여러분의 수용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H1.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교도관으로부터 욕설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H2. 귀하는 최근 6개월동안 교도관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따귀를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15. 귀하 혹은 동료수용자가 청원을 하고자 할 때 교도관이 이를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16. 법무부장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청원이나 진정을 하기 위하여 청원서나 진정서 등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17. 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대체로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18. 귀하 혹은 동료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자 할 때 교도관이 이를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19. 귀하 혹은 동료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자 할 때 교도관이 진정서를 부당하게 개봉 내지 폐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110. 귀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대체로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111. 귀하 혹은 동료수용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하고자 할 때 교도관이 이를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거의 없다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하거나 답을 적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몇입니까? 만 \_\_\_\_\_ 세
3. 귀하는 이곳에 얼마동안이나 계셨습니까? \_\_\_\_\_년\_\_\_\_\_개월
4. 앞으로 출소하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_\_\_\_\_년\_\_\_\_\_개월
5. 이번에 교도소에 오게 된 죄명은 무엇입니까?  
\_\_\_\_\_
6. 귀하는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없다 ② 2범 ③ 3범 ④ 4범이상
7.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_\_\_\_\_ ⑤ 종교없음
8.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9. 귀하는 현재 기결/미결 상태입니까?  
① 현재 미결상태 ② 현재 기결수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교도관 직무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직무에 임하고 계시는 교도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구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본 설문은 교도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안을 찾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질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통계분석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여건향상을 위한 좋은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월

국가인권위원회

항목	의견			
	매우그렇다 (4)	그런편이다 (3)	안그런편이다 (2)	전혀안그렇다 (1)
J.1. 우리 소에서는 하급자의 의견이 상급자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며 업무수행에 잘 반영된다.				
J.2. 우리 소에서 직원의 업무분장은 매우 공식적이고 확실하며 담당 업무 이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				
J.3. 우리 소에서는 업무순환과 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J.4. 우리 소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J.5. 우리 소에서 병가나 연가, 월차, 보건의휴가 등을 원할 때에는 상급자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J.6. 우리 소는 업무와 관련해 직원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J.7. 우리 소에서는 근무평정과 업무분장에서 남녀교도관을 차별하지 않는다.				
J.8. 우리 소는 여성교도관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출산휴가, 육아휴직, 보건의휴가, 탁아시설 마련 등)이 잘 활용되고 있다.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부록 6. 평가양식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 [평가양식 활용방법]

1. 각 평가항목별로 평점을 매긴다.
2.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은 '미평가'라고 비교란에 적고, 이때는 평점 및 만점을 모두 0점 처리한다.
3. 점수합산은 각 평가영역의 1단계 평가항목(예: A1. 전체시설, B2. 누진처우 등)까지 하여 평균평점{ $\text{평점(합)} \div \text{만점(합)}$ }을 산출한다.
  -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컨대, 시설(A)영역의 전체시설(A1)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으나, 분류 및 누진처우(B)영역의 누진처우(B2)부분에서는 1.5점을 얻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균평점이 5점인 경우는 '탁월', 4점대인 경우는 '우수', 3점대인 경우는 '보통', 2점대인 경우는 '미흡', 1점대인 경우는 '시정요함'으로 평가한다.
4. 모든 평점을 합산하여 전체취득점수의 평균평점을 산출하는 것은 지양한다.
  - 특정 평가항목에서 지나치게 나쁜 점수를 받아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여 시급히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전국 모든 구금시설의 등수를 매기려는 것이 본 평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 [평가양식]

## A. 시설

### A1. 전체시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A1.1.1.	수용정원	수용정원: 명		5	
A1.1.2.	정원 대비 수용인원	현재수용인원: 명, 정원대비 수용비율: %		5	
A1.2.1.	구급시설의 교통여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도보 분 이내 버스은행간격: 전철:		5	
A1.2.2.	구급시설의 주변여건	a. 일반주민 주거지와의 경계: km b. 법원·검찰청까지의 거리: 차량이동 분 c. 종합병원까지의 거리: 차량이동 분 d. 취업가능한 외부공장: 차량이동 분/ 없음 ( ) ( ) 해당		5	
A1.3.1.	기결/미결 사동의 구분형태	별도시설( ) 별도구역( ) 별도사동( ) 별도거실( )		4	
A1.3.2.	납성/여성 사동의 구분형태	별도시설( ) 별도구역( ) 별도사동( ) 별도거실( )		4	

### A2. 거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A2.1.1.	독거수용인원의 비율	독거수용인원: 명, 전체 수용인원 중 비율: %		5	
A2.1.2.	독거실의 면적	가장 작은 독거실의 실측면적: 평		5	
A2.1.3.	독거실의 기본설비	a. TV ( ) b. 선풍기 ( ) c. 식탁 ( ) d. 사물함 ( ) e. 침구보관용선반 ( )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 ) 해당			
A2.1.4.	독거실의 화장실 구조	a. 좌변기 설치 ( ) b. 차폐시설 설치 ( ) c. 출입문 설치 ( ) ( ) 해당		4	
A2.1.5.	독거실의 세면시설	a. 일반 세면대: 전부( )/일부( ) b. 간이세면대: 전부( )/일부( ) c. 세면대 없음: 전부( )/일부( )		4	
A2.2.1.	혼거실의 면적	혼거실의 1인당 평균면적: 평		5	
A2.2.2.	혼거실의 정원	a. 정원채장 및 정원표기 ( ) b. 정원채장의 적정성 ( ) c. 3인 - 8인의 혼거실 정원 준수 ( ) d. 정원초과 수용거실: 있음( )/없음( ) ( ) 해당		5	
A2.2.3.	혼거실의 화장실 구조	a. 화장실과 세면실 분리 ( ) b. 좌변기 설치 ( ) c. 차폐시설 설치 ( ) d. 출입문 설치 ( ) ( ) 해당		4	
A2.2.4.	혼거실의 세면시설	a. 별도의 세면실에 일반 세면대: 전부( )/일부( ) b. 일반세면대: 전부( )/일부( ) c. 간이세면대: 전부( )/일부( ) d. 세면대 없음: 전부( )/일부( )		5	
A2.2.5.	혼거실의 기본설비	a. TV ( ) b. 선풍기 ( ) c. 식탁 ( ) d. 사물함 ( ) e. 침구보관용선반 ( ) ( ) 해당		4	
A2.3.1.	거실의 난방형태	바닥온돌( ) 거실라디에이터( ) 복도라디에이터( ) 없음( )		5	
A2.3.2.	거실의 난방상황	설문 A1. ①과 ②의 응답비율: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A2.3.3.	거실창문의 재질	창호: 강화유리( ) 아크릴( ) 비닐( ) 창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 목재( )		5	
A2.3.4.	거실창문의 규격	a. 외부 측 창문면적 ( ) b. 복도 측 창문면적 ( ) c. 창문개폐의 원활성 ( )		4	
A2.3.5.	거실의 채광	설문 A2. ①과 ②의 응답비율: %		5	
A2.3.6.	거실의 환기	설문 A3. ①과 ②의 응답비율: %		5	
A2.3.7.	거실의 조명	설문 A4. ①과 ②의 응답비율: %		5	
A2.3.8.	거실의 취침조명	취침조명시설 ( ) 설문 A5.에서 ③의 응답비율: %		4	
A2.3.9	거실의 방충망 설비	a. 모든 창문에 방충망 설치 ( ) b. 파손된 곳 없음 ( ) c. 개폐식 방충망 ( ) ( ) 해당		4	
A2.3.10.	거실 화장실의 위생상태	a. 바닥과 벽면: 양호( ) 불량( ) b. 채광과 환기: 양호( ) 불량( ) c. 악취확산여부: 양호( ) 불량( )		4	
A2.4.1.	사동의 구조	사동의 구조: 단방식( ) 복방식( ) 사동의 정원: 50명 이하( ) 80명 이하( ) 80명 초과( )		4	
A2.4.2.	사동의 샤워실	a. 사동별 샤워실 설치 ( ) b. 샤워실 면적 3평 이상 ( ) c. 샤워실 매일 이용 ( ) d. 샤워실 하절기에만 이용 ( ) e. 샤워실에 온수 보급 ( ) ( ) 해당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A2.4.3.	사동의 세탁시설	세탁실: 전부( )/일부( )/없음( ) - 사용여부: 모두사용( )/일부사용( )/미사용( ) 건조시설: 전부( )/일부( )/없음( ) - 사용여부: 모두사용( )/일부사용( )/미사용( )		4	
A2.4.4.	사동의 식당시설	식당: 있음( ) 없음( ) [전부( )/일부( )] 사용여부: 모두사용( )/일부사용( )/미사용( )		4	

### A3. 공동이용시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A3.1.1.	기결수 운동장	a. 실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설치 ( ) b. 수용인원에 비례한 실외운동장 면적 확보 ( ) (기준:1,500평) c. 실외 운동장은 장방형의 전용운동장 ( ) ( ) 해당		4	
A3.1.2.	미결수 운동장	a. 실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설치 ( ) b. 수용인원에 비례한 실외운동장 면적 확보 ( ) c. 실외 운동장은 장방형의 전용운동장 ( ) ( ) 해당		4	
A3.1.3.	운동장의 시설	a. 바닥상태 양호 ( ) b. 배수상태 양호 ( ) c. 세 종목 이상의 운동시설 설치 ( ) e. 운동기구 지급 및 자유로운 이용 ( ) ( ) 해당		5	
A3.2.1.	목욕탕의 시설	a. 수용정원에 비례한 목욕탕 면적 ( ) (기준:15평) b. 바닥 및 배수상태 양호 (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c. 벽면 상태 양호 ( ) d. 수도꼭지 작동상태 양호 ( ) e. 수용자가 물 사용 조절 가능 ( ) ( ) 해당			
A3.2.2.	탈의실의 시설	a. 탈의실 면적 확보 ( ) b. 바닥상태 양호 ( ) c. 벽면 상태 양호 ( ) d. 보관함 상태 양호 ( ) e. 겨울철 난방 실시 ( ) ( ) 해당		5	
A3.2.3.	이발실의 규모	전체 이발실: 있음( ) (면적- ) 없음( ) 사동 이발실: 있음( ) (면적- ) 없음( )		5	
A3.2.4.	이발실의 시설과 운용	a. 수용자 대부분이 이발실 이용 ( ) b. 바닥과 벽면 양호 ( ) c. 이발의자 설치 및 작동상태 양호 ( ) d. 거울과 조명상태 양호 ( ) e. 이발도구 상태 양호 ( ) ( ) 해당		5	
A3.3.1.	작업장의 기본여건	a. 작업장의 면적 확보 ( ) b. 작업장 채광 상태 양호 ( ) c. 작업장 환기 상태 양호 ( ) d. 작업장 인공조명 상태 양호 ( ) ( ) 해당		4	
A3.3.2.	작업장의 시설	a. 난방시설 ( ) b. 신풍기 ( ) c. 샤워실과 화장실 상태 양호 ( ) d. 식당시설 ( ) ( ) 해당		4	
A3.3.3.	교육장의 기본여건	a. 교육장의 면적 확보 ( ) b. 교육장 채광 상태 양호 ( ) c. 교육장 환기 상태 양호 ( ) d. 교육장 인공조명 상태 양호 ( ) ( ) 해당		4	
A3.3.4.	교육장의 시설	a. 난방시설( ) b. 신풍기( ) c. 샤워실과 화장실 상태 양호( ) d. 식당시설( )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A3.3.5.	취사장 시설	( ) 해당 a. 취사장 적정면적 확보 ( )    b. 환기 상태 양호 ( ) c. 채광과 조명 양호 ( )        d. 샤워실 및 화장실 상태 양호 ( ) e. 바닥상태 양호 ( )		4	
A3.4.1.	신입실의 시설	( ) 해당 a. 신입실 적정면적 확보 ( )    b. 조명 상태 양호 ( ) c. 탈의용 칸막이 설치 ( )        d. 샤워실 상태 양호 ( ) e. 겨울철 난방 실시 ( )		5	
A3.4.2.	출정실의 시설	( ) 해당 a. 출정실 적정면적 확보 ( )    b. 바닥과 벽면 상태 양호 ( ) c. 탈의용 칸막이 설치 ( )        d. 난방시설 ( ) e. 선풍기 설치 ( )		4	

## B. 분류 및 누진처우

### B1.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B1.1.1.	분류전담직원의 확보	분류직원 1인당 사용자 수: 명 a. 분류전담직원은 분류심사업무에만 종사함 ( ) b. 분류심사과에 보조 사무직원 확보 ( ) c. 분류전담직원의 전문자격증 보유 ( ) d. 분류직원의 정기적 재교육 ( ) ( ) 해당		5	
B1.1.2.	분류전담직원의 전문성	a. 분류처우예비회의의 구성인원 확보 ( ) b. 분류처우예비회의의 직역별 구성분포 적정 ( ) c. 매월 7일 예비회의 개최 ( ) d. 예비회의의 실질적 운영 ( ) ( ) 해당		4	
B1.1.3.	분류처우예비회의의 운영	a. 분류처우회의의 구성인원 확보 ( ) b. 분류처우회의의 직역별 구성분포 적정 ( ) c. 매월 10일 분류처우회의 개최 ( ) d. 분류처우회의의 실질적 운영 ( ) ( ) 해당		4	
B1.1.4.	분류처우회의의 운영	a. 분류조사 내용의 충실성 ( ) b. 관계기관 조회 ( ) c. 수행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실시 ( ) d.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 ) ( ) 해당		4	
B1.2.1.	분류조사의 적정성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B1.2.2.	신입심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신입심사는 정해진 기간 내 실시 ( )</li> <li>b. 신입심사대상자는 심사기간 동안 독거실 수용 ( )</li> <li>c. 정밀분류심사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해 정밀분류심사 실시 ( )</li> <li>d. 신입심사 실시결과 적정 ( )</li> </ul>		4	
B1.2.3.	재심사의 적정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정기재심사는 정해진 기간에 실시 ( )</li> <li>b. 부정기재심사는 사유가 있을 때 적절하게 실시 ( )</li> <li>c. 정기재심사 실시결과 적정성 ( )</li> <li>d. 부정기재심사 실시결과 적정성 ( )</li> </ul>		4	
B1.2.4.	분류심사에서 여성의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분류직 직원 중에 여성을 담당하는 여성직원 확보 ( )</li> <li>b. 분류처우예비회의에 여성교도관이 참여 ( )</li> <li>c. 분류처우회의에 여성교도관이 참여 ( )</li> <li>d. 분류조사 내용에서 여성의 특성 고려 ( )</li> </ul>		5	
B1.3.1.	분류심사와 수용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설문 B1.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li> <li>b. 분류심사와 관련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 ( )</li> <li>c. 수용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다 ( )</li> <li>d. 수용자는 분류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li> </ul>		5	
B1.3.2.	분류심사의 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설문 B2.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li> <li>b. 설문 B3.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li> <li>c. 수형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직원의 친절한 설명 ( )</li> </ul>		4	

B2. 누진처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B2.1.1.	행형성적의 평가과정에 대한 정보권 보장	a. 매월 정기적으로 수형자에게 소독점수 고지 ( ) b. 수형자의 행형성적 열람 가능 ( ) c. 수형자의 행형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 ( ) 해당		4	
B2.1.2.	진급정지 및 강급의 적정한 운용	a. 진급정지사유의 적정성 ( ) b. 진급정지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한 사례가 있다 ( ) c. 강급의 사유의 적정성 ( ) d. 강급처분을 유예한 사례가 있다 ( ) ( ) 해당		5	
B2.1.3.	진급에 대한 수형자의 기대	설문 B4.에 대한 수형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5	
B2.2.1.	자치활동 실시대상 인원	a. 제2급 이상의 수형자의 80% 이상 참여 ( ) b. 제2급 이상의 수형자의 50% 이상 참여 ( ) c. 제3급 이하의 수형자의 자치활동 참여 ( ) ( ) 해당		5	
B2.2.2.	수형자 자치회의 조직	a. 자치회장은 제1급 수형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 ( ) b. 자치총회가 구성되어 최소한 월1회 총회 개최 ( ) c. 자치회장 외에 거실별 분임장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 ) d. 자치활동 수형자들이 매주 1회 토론회 개최 ( ) ( ) 해당		5	
B2.2.3.	수형자 자치활동의 내용	a. 자치활동 시간에 거실간 통방 허용 ( ) b. 자치활동에서는 자치수형자의 급에 따른 차이 없음 ( ) c. 자치활동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없음 ( ) ( ) 해당		4	
B2.3.1.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한 경기 및 오락회 개최	연간 개최횟수: 회 제2급 이상 수형자 중 참여비율: %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B2.3.2.	제2급 이상 수형자의 사회 견학 및 사회봉사 활동	연간 개최횟수: 회 제2급 이상 수형자 중 참여비율: %		4	
B2.4.1.	제1급 수형자의 외부종교행 사 참석	연간 외부종교행사 참석허가 건수:		4	
B2.4.2.	제1급 수형자의 외부영화 관람	연간 외부영화 관람 허가 건수:		4	

## C. 급여 및 영치

### C1. 급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C1.1.1.	의류의 지급	a. 규정에 따른 의류 지급 ( ) b. 정해진 시기에 동복, 춘추복, 하복 지급 ( ) c. 정해진 기간에 의류 교환 ( ) d. 설문 C1.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 ) 해당		4	
C1.1.2.	이불의 지급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 )/일부에게 지급( )/지급하지 않음( )		4	
C1.1.3.	매트리스의 지급	일반매트리스: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 )/거실크기에 맞춰 지급( ) 일부에게 지급( )/지급하지 않음( ) 환자매트리스: 모두에게 지급( )/일부에게 지급( )/지급하지 않음( ) a. 담요는 원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2매 이상씩 지급 ( ) b. 담요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환 ( ) c. 베개가 1인 1개씩 지급 ( ) d. 베개는 1년에 1회 교환 ( ) ( ) 해당		5	
C1.1.4.	담요와 베개의 지급			4	
C1.1.5.	침구의 지급상태	설문 C2.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4	
C1.2.1.	생활용품의 지급	a. 모든 수형자에 대한 생활용품 정량 지급 ( ) b. 모든 미결수용자에 대한 생활용품 정량 지급 ( ) c. 설문조사 C3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 ) 해당		4	
C1.3.1.	주·부식의 급여	a. 식단의 적절한 편성 ( ) b. 설문 C4.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c. 설문 C5.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 식단에 대한 수용자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 ( ) ( ) 해당			
C1.3.2.	자변부식의 질과 지급상황	a. 자변부식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 ( ) b. 자변부식의 가격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 ( ) c. 설문 C6.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d. 자변부식의 종류와 가격에 대한 수용자의 공식적 의견제시 ( ) ( ) 해당		4	
C1.3.3.	식수의 제공	a. 설문 C7.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b. 겨울철의 온수 제공 ( ) c. 설문 C8.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a. 국경일 등에 연간 9회 특별급식 급여 ( ) b. 규정에 의한 연간 9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급식 지급 ( ) c. 환자, 노약자, 임산부 및 유아 등에게 특별급식 급여 ( ) d. 설문 C9.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 ) 해당		4	
C1.3.4.	특별급식의 급여			4	

## C2. 영치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C2.1.1.	영치물품의 종류와 질	a. 영치물품의 다양한 종류 보장 ( ) b. 설문 C10.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c. 설문 C11.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d. 영치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대한 수용자의 공식적 의견제시 ( )		5	
C2.2.1.	영치물품의 구매절차 준수	설문 C12.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a. 영치물품 보관창고의 적정 면적 확보 ( ) b. 영치물품 보관창고의 주기적 소독 ( )		4	
C2.2.2.	영치물품의 관리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c. 설문 C13.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에서 ①과 ②의 비율: %			

## D. 보건의료

### D1. 의료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1.1.1.	의사 1인당 수용정원	의사의 수: 수용정원: 수용정원 ÷ 의사의 수 =		5	
D1.1.2.	의사 1인당 병사수용정원과 진료인원	의무과 연출인원: 순회진료인원: 병사수용정원: $[(\text{의무과연출인원} + \text{순회진료인원}) \div 3] + \text{병사수용정원} \div \text{의사의 수}$ =		5	
D1.2.1.	치과 진료 가능성	a. 전임 치과의사 ( ) b. 매주 3회 이상 치과전문의의 진료 ( ) c. 치과의사 1인당 수용정원 1,000명 이하 ( ) ( ) 해당		4	
D1.3.1.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가능성	a. 전임 정신과 의사 ( ) b. 매주 1회 이상 시설 방문 방문 진료 (비전임) ( ) c. 매월 1회 이상 시설 방문 진료 (비전임) ( ) d. 매주 1회 이상 시설 방문 진료 (자원봉사) ( ) e. 매월 1회 이상 시설 방문 진료 (자원봉사) ( ) f. 부정기적으로 시설 방문 진료 ( ) ( ) 해당		5	
D1.4.1.	전문의를 위한 진료 가능성	시설의사가 전문의인 경우: 매주 1회 이상 방문 진료하는 의사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의에 의한 진료과목의 수: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1.5.1.	간호사 1인당 병사수용정원과 진료인원	<p>진입 간호사:  의무과 직원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  간호사의 수: 전입 간호사+ (간호조무사×0.5) =  1일 평균진료인원: 의무과 연출인원 + 순회진료인원:  병사수용정원:  {(1일 평균 진료인원÷12)+ 병사수용정원}÷간호사의 수 =  약사의 수:  1일 평균 투약인원:  1일 평균 투약인원 ÷ 약사의 수 =</p>		5	
D1.5.2.	약사 1인당 1일 투약인원	a. 방사선기사 ( ) b. 임상병리기사 ( ) c. 재활(물리)치료사 ( ) ( ) 해당		5	
D1.5.3.	의료기사	의무과 정복 직원의 수: 수용정원: 수용정원 ÷ 의무과 정복 직원의 수 =		4	
D1.5.4.	의무과 직원 1인당 수용정원			5	

## D2. 의료(의무과)시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2.1.1.	1일 평균 진료인원 대비 진료실의 면적	<p>진료실의 면적: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  진료실의 면적 ÷ 1일 평균 의무과 연출인원 =</p>		5	
D2.1.2.	진료대기실의 환자 편의성	a. 바람이 잘 통함 (선풍기 설치) ( ) b. 10석 이상 의자 설치 ( )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c. 편안한 의자 ( ) d. 난방시설 ( ) ( ) 해당			
D2.1.3.	치과진료실	a. 치과진료실의 면적: b. 치과유닛의 수: c. 치과위생사 유무: ( ) 해당		4	
D2.2.1.	의무과의 실별 종류	a. 약제실(약국) ( ) b. 방사선실 ( ) c. 임상병리실 ( ) d. 약품보관실(창고) ( ) e. 재활(물리)치료실 ( ) ( ) 해당		4	
D2.3.1.	기본의료장비	X-ray기 ( ) 혈액검사기 ( ) 심전도기 ( ) 초음파기 ( ) 내시경기구 ( ) 적외선치료기 ( ) 응급처치기(산소호흡기) ( ) ( ) 점		5	

### D3. 병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3.1.1.	병사수용정원	병사수용정원: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수용정원: 수용자 100명당 병사수용정원: 병사수용정원÷수용정원×100= 병사면적:			
D3.1.2.	병사수용정원 대비 병사면적	병사수용정원: 병사면적÷병사수용정원 = 병사면적:		5	
D3.1.3.	병사수용인원 대비 병사면적	현재 병사수용인원: 병사면적 ÷ 병사수용인원 =		5	
D3.2.1.	격리병실의 종류와 체계	a. 전염병예방을 위한 차단설비 ( ) b. 중환자실 유무 ( ) c. 병상 수 대비 중환자실 수용정원 ( ) d. 중환자실 구조와 설비 ( ) e. 간병부 유무 ( ) f. 병실의 체계적 분류 ( ) ( ) 해당		5	
D3.2.2.	격리병실의 관리	격리병실의 소독횟수: 격리병실의 담요세탁: 격리병실의 모포털이: 환자 퇴소 후 소독방법: 격리병실 수용자의 목욕방법: 격리병실 수용자의 목욕시간: ( ) 점		5	
D3.3.1.	병동거실	화장실 좌변기 ( ) 세면대 ( ) 난방(겨울) (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선풍기(여름) ( ) 점			
D3.3.2.	병사수용자의 운동	a. 1회 운동시간 1시간 이상 ( ) b. 일반수용자와의 운동시간 비교: c. 운동자의 접근성 ( ) d. 운동장의 크기 (20M, 100M) ( ) ( ) 해당 a. 목욕횟수: b. 목욕시간: c. 하계 온수목욕 ( ) d. 목욕도우미 ( ) e. 목욕탕 환자용 안전손잡이 시설 ( ) f. 탕 안에 들어가 목욕 ( ) g. 온수의 온도 조절 ( ) h. 샤워꼭지 낮은 테도 설치됨 ( ) ( ) 해당		4	
D3.3.3.	병사수용자의 목욕			5	

#### D4. 의료서비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4.1.1.	의무과연출의 수월성	설문 D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D4.2.1.	의사진료의 만족도	설문 D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설문 D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D4.3.1.	응급환자치료	설문 D4. ①의 응답비율: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①과 ②와 ③의 응답비율의 합: a. 순회진료가 매일 이루어짐 ( ) b. 의사 1인당 순회진료 인원: c. 순회진료 장소 (폐적함, 청결함, 조용함 여부) ( ) d. 순회진료장소에 컴퓨터 프로그램 연결 여부 ( ) e. 정별사동(조사실 포함) 순회 여부 ( ) ( ) 해당		4	
D4.4.1.	순회진료 방법과 장소	설문 D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설문 D6.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a. 중환자관리시스템 구축 ( ) b. 전염병환자 구별 및 특별처우 ( ) c. 약물/알코올 중독환자 치료시스템 ( ) d. 최근 3년간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 e. 정좌의무 면제 ( ) f. 의무과 연출이 수월함 ( ) ( ) 해당		5	
D4.4.2.	순회진료의 만족도	설문 D7.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설문 D8.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설문 D9.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a. 최근 1개월간의 외부진료인원 (수용정원 대비 비율): b. 최근 1년간의 외부병원 임원자의 수 (수용정원 대비 비율): c. 외부진료 평균 대기시간 (7일 이내): d. 미결수용자 외부의사 방문 진료 허용 여부 ( ) 협력병원의 수: 전용병실의 수:		5	
D4.5.1.	병사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협력병원의 수: 전용병실의 수: 설치 여부		5	
D4.6.1.	치과진료대기시간			5	
D4.7.1.	약품의 처방과 복용			5	
D4.8.1.	외부진료가능성			4	
D4.8.2.	외부병원과의 진료협조			5	
D4.8.3.	외부병원의 수용자 전용병실 설치 여부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4.8.4.	외부진료에 대한 만족도	설문 D10.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D4.8.5.	외부진료 비용부담	전년도 수용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용: 전년도 외부진료 비용 총액: 자기부담 진료비용÷외부진료비총액×100=		5	
D4.9.1.	건강검진 실시여부	최근 1년간 건강검진인원: 정기검진횟수: 수용인원: 건강검진인원÷검진횟수÷수용인원×100=		4	
D4.9.2.	건강검진 내역	a. 신장, 체중, 시력, 청력 등 신체계측 ( ) b. 혈압검사 ( ) c. 체성분검사 ( ) d. 구강검사 ( ) e. 소변검사 ( ) f. 대변검사 ( ) g. 혈액검사 ( ) h. 심전도검사 ( ) i. 호흡기능검사 ( ) j. 안압검사 ( ) k. 초음파검사 ( ) l. X-ray검사 ( ) m. 정신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 ) n. 4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암검사 ( ) ( ) 해당		5	
D4.9.3.	건강검진의 효용성	설문 D1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D5. 위생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5.1.1.	정기적 방역활동	a. 지역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연막소독 연4회 이상 실시 ( ) b. 구급시설 자체적으로 여름철 주 1회 이상 연막소독 실시 ( ) c. 분무기소독 주3회 이상 실시 ( ) d. 거실소독 주3회 이상 실시 ( ) e. 외부방역회사에 위탁하여 연중 방역 실시 ( ) ( ) 해당		4	
D5.1.2.	방역예산	연간 방역예산: 수용인원: 방역예산÷수용인원= 설문 D12. ①의 응답비율:		5	
D5.2.1.	방충활동	a. 목욕탕이 깨끗함 ( ) b. 샤워꼭지가 천정이 아닌 벽에 붙어 있음 ( ) c. 온수의 온도 조절 가능 ( ) d. 샤워꼭지가 벽의 낮은 데도 부착되어 있음 ( ) e. 탕 안에 들어가는 목욕 가능 ( ) f. 탕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음 ( ) g. 목욕탕 내에 화장실 있음 ( ) h. 목욕탕 탈의실에 온돌난방 됨 ( ) ( ) 해당		5	
D5.3.1.	목욕탕의 구조			5	
D5.3.2.	목욕기회	a. 동계 1회 목욕시간 30분 이상 ( ) b. 동계 주1회, 하계 1일 1회 이상씩 목욕실시 ( ) c. 하계에도 주1회 목욕탕에서 목욕실시 ( ) d. 하계에도 온수목욕 가능 ( ) e. 특정수용자(조사실, 징벌실)에 대한 목욕제한 없음 ( ) ( ) 해당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5.4.1.	담요세탁	담요세탁주기:		5	
D5.4.2.	모포털이(담요건조)	모포털이 주기: a. 주1회 1시간 이상의 세탁시간 허용 ( ) b. 사동입구 세면장(샤워장)에서 주1회 이상 세탁가능 ( ) c. 사동입구 세면장(샤워장)에 탈수가 있음 ( ) d. 사동입구 세면장(샤워장)에 세탁기 있음 ( ) e. 사동 밖에 세탁물 건조 가능 ( ) f. 비가 오는 날에는 사동입구 세면장에 세탁물 건조 가능 ( ) ( ) 해당		5	
D5.5.1.	세탁			5	

## D6. 운동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6.1.1.	실외운동가능성	a. 운동시간이 1일 평균 40분 미만임 ( ) b. 독거수용자와 혼거수용자의 운동시간이 동일함 ( ) c. 동계에 목욕하는 날은 운동이 없음 ( ) d. 징벌집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운동제한 ( ) e. 조사실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는 운동제한 ( ) f. 특정수용자에 대해서는 실외운동 불허 (실내거실만 사용) ( ) ( ) 해당 a. 넓은 운동장임 (병사운동장: , 여사운동장: ) b. 각 운동장에 운동시설 3개 이상 설치됨 c. 배수시설 잘 되어 있음 ( ) 해당		5	
D6.2.1.	운동장	허용되는 운동기구(종류와 수 및 대상:		4	
D6.2.2	운동기구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	------	------	----	----	----

## E. 규율과 징벌, 계구 및 보안장비의 사용

### E1. 규율과 징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E1.1.1.	신입자에 대한 규율·징벌의 고지와 교육의 적절성	<p>신입자교육 시 규율 및 징벌에 대하여 상세한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고지 ( )</p> <p>신입자교육 시 규율 및 징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세한 설명이나 교육자료 없이 규율과 징벌에 대하여 고지 ( )</p> <p>신입자교육 시 규율 및 징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규율 목록을 서면으로 고지 ( )</p> <p>신입자교육 시 규율 및 징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규율에 관한 서면고지도 없음 ( )</p>		4	
E1.1.1.2.	규율에 관한 정기교육의 충실성	<p>a.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규율에 관한 교육을 실시( )</p> <p>b. 비디오 등 영상자료를 활용 ( )</p> <p>c. 교육담당직원이 정해져 있음 ( )</p> <p>d. 거실 내에 규율에 관한 설명책자가 비치되어 있음 ( )</p> <p>( )에 해당</p>		5	
E1.2.1.	규율에 관한 수용자의 인지도	<p>설문 E1.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p>		4	
E1.3.1.	규율위반행위의 발생정도	<p>수용인원 100명당 규율위반건수</p>		5	
E1.3.2.	징벌집행 중 규율위반행위의 징벌집행 중 규율위반행위의 발생 건수의 비율: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발생 정도				
E1.4.1.	징벌협의로 조사실등에 격리수용된 수용자 수	조사실 등에 격리수용된 수용자 수 ÷ 전체 징벌협의로의자 수(규율위반행위 수용자수) × 100=		5	
E1.4.2.	징벌협의로의자의 격리수용기간	7일 이내 격리수용된 수용자수÷격리수용된 전체 수용자수×100= 격리수용기간의 합 ÷ 격리수용된 전체 수용자 수=		5	
E1.4.3.	조사기간의 적정성	7일 이내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징벌협의로의자 수 ÷ 전체 징벌협의로의자 수 × 100=		5	
E1.4.4.	조사기간 중 징벌협의로의자의 권리제한	a. 점건, 서신수발, 전화통화의 제한 내지 금지하는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의 방지필요라는 요건에 따라 개별적인 점건, 서신수발, 전화통화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함 ( ) b. 점건, 서신수발, 전화통화의 제한 내지 금지는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방지필요라는 요건에 합치 ( ) c. 운동,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음 ( ) d. 운동,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의 참석의 제한 내지 금지 사제가 있지만, 타인을 해칠 우려라는 요건에 합치 ( ) e. 목욕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음 ( ) f. 집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음 ( ) g. 신문도서의 열람과 라디오 및 TV 시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음 ( ) ( )에 해당		5	
E1.4.5.	조사기간중 권리제한을 받는 징벌협의로의자의 비율	권리제한을 받은 수용자 수 ÷ 징벌협의로의자 수 × 100=		5	
E1.4.6.	조사기간 중 수용자의 기술의 기회	설문 E2.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E1.5.1.	징벌위원회의 구성	외부위원의 수: 외부위원 중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이상의 직에 있는 자의 수: a. 외부위원 1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가 전체 징벌위원회 회의의 90% 이상 ( ) b. 외부위원 2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가 전체 징벌위원회 회의의 50% 이상 ( ) c.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서 개최됨 ( ) d. 충분한 정도의 회의시간을 갖고 심리 ( ) ( )에 해당		5	
E1.5.2.	징벌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a. 징벌위원회는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징벌 회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 ( ) b. 징벌위원회는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결 ( ) c.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 ) d.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을 준수 ( ) ( )에 해당		5	
E1.5.3.	징벌위원회 의결절차의 적정성	a. 다른 수용자가 징벌협의의 수용자를 위하여 대리인으로 징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b. 외부인이 징벌협의의 수용자를 위하여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c. 징벌협의의 수용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징벌위원회의 의결과정을 방청할 수 있다. d. 다른 수용자가 징벌위원회의 의결과정을 방청할 수 있다. ( )에 해당		5	
E1.5.4.	징벌위원회와 적법절차의 보장	충분한 진술의 보장 ( ) 진술권 보장의 미흡 ( ) 진술권을 거의 보장하지 않음 ( ) ( $\text{훈계처분} + \text{징벌위원회 회부보류처분}$ ) ÷ 전체 징벌협의자 × 100=		3	
E1.6.1.	징벌 외의 다른 대처방법	금치이외의 징벌의 활용된 징벌 종류:		5	
E1.6.2.	금치이외의 징벌의 활용정도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E1.6.3.	금치의 활용의 적정성	금치 이외의 징벌의 선고건수의 합 ÷ 전체 징벌선고건수 × 100= a. 5일 이하의 단기금치를 활용 ( ) b. 30일 이하의 금치선고자가 전체 금치선고건수의 95% 이상 ( ) c. 선고된 금치의 평균기간이 20일 미만 ( ) d. 금치집행 중 연속하여 금치를 선고한 경우가 전체 금치선고건수의 5% 미만 ( ) ( )에 해당		5	
E1.7.1.	징벌집행유예제도의 활용정도	징벌집행유예의 건수 ÷ 전체 징벌선고건수 × 100=		5	
E1.7.2.	징벌감면제도의 활용정도	징벌감면건수 ÷ 집행유예를 제외한 전체 징벌선고건수 × 100= a. 접견 ( ) b. 집필 ( ) c. 서신수발 ( ) d. 운동 ( ) e. 수용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의 비치, 사용 ( ) f. 종교·학술·문학 등 교양도서의 열람 ( ) ( )에 해당		5	
E1.7.3.	금치 집행수용자의 권리보장	a. 금치집행 전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진단 ( ) b. 금치집행 중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1회 이상 진단 ( ) c. 금치집행 후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진단 ( ) d. 금치집행 전 의사는 수용자가 금치집행을 견딜만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 ) ( )에 해당		5	
E1.7.4.	금치 집행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진단	a. 금치집행 전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진단 ( ) b. 금치집행 중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1회 이상 진단 ( ) c. 금치집행 후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진단 ( ) d. 금치집행 전 의사는 수용자가 금치집행을 견딜만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 ) ( )에 해당		5	
E1.8.1.	징벌실의 면적	징벌실의 면적(화장실의 면적 제외): a.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있으며, 위생상태가 양호 ( ) b.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생상태가 양호 ( ) c. 창문으로 충분한 자연채광이 가능 ( ) d. 창문으로 충분한 환기가 가능 ( ) e. 조명은 야간에 책을 읽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 ( )		5	
E1.8.2.	징벌실의 구조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 난방은 바닥 난방 ( ) ( )에 해당			
E1.8.3.	정밀실의 설비	a. 사물함 또는 사물보관용 선반 ( ) b. 칫솔·치약의 보관대 ( ) c. 책상 ( ) d. 선풍기 ( ) e. 빨래걸이 ( ) ( )에 해당		5	
E1.8.4.	정밀실의 운영	정밀실에 2인 이상을 수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3	

## E2. 계구의 사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E2.1.1.	계구사용에 관한 기록의 적정성	a. 사용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이 특정 ( ) b. 계구사용이유가 충분히 자세하게 기록 ( ) c. 계구의 종류별로, 사용방법별로 사용날짜와 시각 및 해제날짜와 시각이 기록 ( ) d. 하체승으로 포승을 사용하거나 사슬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매 시간 기록 ( ) ( )에 해당		5	
E2.1.2.	소장의 계구사용 명령의 적정성	a. 소장은 계구사용명령 시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특정 ( ) b. 소장은 계구사용의 중지여부(계속사용여부)를 매일 1회 이상 심사하여 결정 ( ) c. 소장은 계구사용명령 전에 계구사용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수용자와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실시 ( )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E2.1.3.	자살·자해의 우려자에 대한 의사의 사전진찰	( )에 해당 (사전진찰건수 + 즉시진찰건수) ÷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의 총 건수 × 100=		5	
E2.1.4.	계구사용이유의 고지	설문 E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설문 E4. ①의 응답비율 :		4	
E2.1.5.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경고의 납용여부	설문 E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E2.2.1.	계구사용 의 보충성 : 대안의 강구	a. 보호실(안정실)을 2개실 이상 갖추고 있으며, 계구사용 없이 보호실에 수용한 건수가 계구사용건수의 10% 이상 ( ) b. 계구사용 없이 대면계호를 활용한 건수가 계구사용건수의 30% 이상 ( ) c. 자살·자해 우려자나 비정상적으로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활용실적이 계구사용건수의 30% 이상 ( ) d. 자살·자해 우려자나 비정상적으로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정신과치료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활용실적이 계구사용건수의 30% 이상 ( ) ( )에 해당		5	
E2.2.2.	계구사용의 보충성 : 계구사용 건수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총 건수 ÷ 전년도 12.31 현재 수용인원 × 100=		5	
E2.2.3.	계구사용요건과 최소침해의 원칙	계구사용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건수:		4	
E2.2.4.	계구의 비인도적 사용금지의 원칙(사슬)	전년도 1년간 사슬의 총 사용건수 ÷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의 총 건수 × 100=		5	
E2.2.5.	계구 사용시간과 최소침해의 원칙	a. 계구의 사용시간이 7일을 초과한 건수가 전체 계구사용건수의 5% 미만 (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E2.2.6.	자살·자해 우려자에 대한 계구사용	<p>b. 계구의 평균사용시간이 72시간 미만 ( )</p> <p>c. 포승과 사슬의 평균사용시간이 각 12시간 미만 ( )</p> <p>d. 안면보호구의 평균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 ( ) ( )에 해당</p> <p>a.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가 전체 계구사용 건수의 60%미만 ( )</p> <p>b.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건수 중 사용기간이 7일을 초과한 건수가 10%미만이며, 14일을 초과한 경우가 없다 ( )</p> <p>c. 자살·자해의 (현저한) 우려로 인한 계구사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 ) ( )에 해당</p>		4	
E2.2.7.	호송 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방법	<p>호송 시</p> <p>금속수갑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 ( )</p> <p>금속수갑과 간이승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 ( )</p> <p>금속수갑과 함께 간이승 혹은 상체승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 )</p> <p>금속수갑과 함께 상체승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 )</p> <p>a. 의사는 매일 1회이상 계구사용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 )</p> <p>b. 의사는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자를 면담하고 필요한 진단을 시행 ( )</p> <p>c. 의사는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충실하게 기록 ( )</p> <p>d. 의사는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악화의 우려 등을 이유로 계구사용의 중지 등을 소장에게 건의 ( ) ( )에 해당</p>		4	
E2.3.1.	계구사용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점검	<p>계구사용 수용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점검</p> <p>a. 의사는 매일 1회이상 계구사용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 )</p> <p>b. 의사는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자를 면담하고 필요한 진단을 시행 ( )</p> <p>c. 의사는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충실하게 기록 ( )</p> <p>d. 의사는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악화의 우려 등을 이유로 계구사용의 중지 등을 소장에게 건의 ( ) ( )에 해당</p>		5	
E2.3.2.	계구사용 수용자의 거실	<p>계구사용건수 중 독거수용 건수 ÷ 전년도 1년간 계구사용 총 건수 × 100=</p>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E2.3.3.	계구의 일시완화와 해제	설문 E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설문 E6.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설문 E7.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 E3. 보안장비의 사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E3.1.1.	무기의 남용 여부	설문 E8.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E3.2.1.	보안장비의 남용여부	설문 E9.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 F. 외부교통 및 정보권

### F1. 점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1.1.1.	(칸막이)점진실의 수	전체 수용인원 ÷ 전체 점진실 수 = 여자 수용인원 ÷ 여자점진실 수 =		5	
F1.1.2.	번호인점진실의 수	미결수용인원 ÷ 번호인점진실 수 = a. 청취가 양호 ( ) b. 시야가 상대방을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 ( ) c. 점진실의 민원인 쪽 면적이 6.6㎡(2평) 이상이며, 동시에 5인의 민원인이 점진가능 ( ) d. 장애인용 점진실이 1개실 이상 있음 ( ) ( )에 해당		5	
F1.1.3.	칸막이점진실의 구조	a. 대화의 비밀이 잘 유지 ( ) b. 서류와 물건을 함께 열람하거나 검토할 수 있음 ( ) c. 수용자는 필기도구를 이용할 수 있음 ( ) d. 동시에 3명의 변호인이 점진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있음 ( ) ( )에 해당		5	
F1.1.4.	번호인점진실의 구조	수용인원 ÷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점진실의 수 =		5	
F1.1.5.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점진실의 구비	설문 F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1.2.1.	점진권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정도	a. 민원실에 점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안내가 상세히 게시 ( ) b. 홈페이지에 점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안내가 상세하게 게시 ( ) c. 민원실에 점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안내책자(브로슈어)가 비치되어 민원인이 가져갈 수 있음 ( ) ( )에 해당		4	
F1.2.2.	외부인에 대한 점진안내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1.2.3.	수용자의 가족에 대한 접견안내	수용초기 수용자 가족에게 접견 등에 관한 안내문의 발송여부: 접견제한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할 것인가 여부를 구금시설직원이 물어보았는지 여부: 통지하지 말라고 한 경우 직원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았는지 여부:		4	
F1.2.4.	가족에 대한 접견금지사실의 통보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접견횟수] 최근 3개월간 누진계급별 수형자의 접견횟수 ÷ 해당 누진계급의 수형자 수 ÷ 3= [수형자 1인당 전체월평균접견횟수] 누진계급별 월평균접견횟수의 합 ÷ 4=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 ÷ 미결수용자수 ÷ 3= 접견시간: ____분 접견시간: ____분		4	
F1.3.1.	수형자의 접견 이용정도	[수형자 1인당 전체월평균접견횟수] 최근 3개월간 누진계급별 수형자의 접견횟수 ÷ 해당 누진계급의 수형자 수 ÷ 3= [수형자 1인당 전체월평균접견횟수] 누진계급별 월평균접견횟수의 합 ÷ 4=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 ÷ 미결수용자수 ÷ 3= 접견시간: ____분 접견시간: ____분		5	
F1.3.2.	미결수용자의 접견 이용정도	최근 3개월간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 ÷ 미결수용자수 ÷ 3= 접견시간: ____분 접견시간: ____분		4	
F1.4.1.	수형자의 접견시간	접견시간: ____분 접견시간: ____분		5	
F1.4.2.	미결수용자의 접견시간	접견시간: ____분 접견시간: ____분		5	
F1.5.1.	공휴일 접견의 실시	모든 접견인에게 평일과 동일하게 공휴일접견을 허용 ( ) 원거리 접견인(타시도거주)에게만 공휴일접견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일에 접견한 접견인에게는 공휴일 접견을 허용 ( ) 평일에 접견한 접견인에게는 공휴일 접견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휴일접견을 아예 실시하지 않음 ( ) a.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 그리고 방문시 접견예약이 가능 ( ) b.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견예약이 가능 ( ) c. 접견민원실과 홈페이지에는 접견예약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음 ( ) d. 최근 3개월 동안 접견예약체의 이용률이 동기간 전체접견횟수의 10% 이상임 ( ) ( )에 해당		4	
F1.5.2.	접견예약체의 실시	모든 접견인에게 평일과 동일하게 공휴일접견을 허용 ( ) 원거리 접견인(타시도거주)에게만 공휴일접견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일에 접견한 접견인에게는 공휴일 접견을 허용 ( ) 평일에 접견한 접견인에게는 공휴일 접견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휴일접견을 아예 실시하지 않음 ( ) a.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 그리고 방문시 접견예약이 가능 ( ) b.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견예약이 가능 ( ) c. 접견민원실과 홈페이지에는 접견예약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음 ( ) d. 최근 3개월 동안 접견예약체의 이용률이 동기간 전체접견횟수의 10% 이상임 ( ) ( )에 해당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1.5.3.	원격화상점건의 실시	<p>a. 원격화상점건실이 잘 구비되어 있으며, 화상이 양호 ( )</p> <p>b. 홈페이지와 점건민원실에 원격화상점건을 자세하게 안내 ( )</p> <p>c. 원격화상점건의 신청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로 할 수 있음 ( )</p> <p>d. 최근 3개월 동안 원격화상점건의 이용률이 동기간 전체점건횟수의 5%이상임 ( )</p> <p>( )에 해당</p>		5	
F1.5.4.	합동점건의 실시	<p>a. 연간 8회 이상 실시 ( )</p> <p>b. 수형자 1인당 5인까지 점건인을 만날 수 있음 ( )</p> <p>c. 합동점건의 장소가 쾌적하고 음식물을 나눠먹으며 자유로이 대화할 수 있음 ( )</p> <p>d. 합동점건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전체 수형자의 20%이상임 ( )</p> <p>( )에 해당</p>		5	
F1.5.5.	무계호점건의 실시	<p>최근 3개월간 무계호점건의 실시횟수 ÷ 동기간 전체 점건횟수 × 100 =</p>		5	
F1.5.6.	장소변경점건의 실시	<p>최근 3개월간 장소변경점건의 실시횟수 ÷ 동기간 전체 점건횟수 × 100 =</p>		5	
F1.6.1.	점건의 강제종료	<p>점건의 부당한 강제종료사례 건수:          설문 F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p>		5	
F1.6.2.	점건불허처분	<p>점건불허처분 중 무당한 사례건수:          설문 F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p>		5	

## F2. 서신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2.1.1.	서신에 관한 기관내규의 적절성	<p>수용자의 서신수발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항목: ___개</p> <p>서신수발권을 법령보다 제한하는 항목: ___개</p>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2.2.1.	서신수발권에 관한 수용자의 인지도	실문 F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2.3.1.	서신발송의 신속성	발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___ 시간		4	
F2.3.2.	서신교부의 신속성	교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___ 시간		4	
F2.4.1.	수행자의 서신수발이용	최근 1개월간 수행자의 총 서신발송횟수÷시설 내 수행자수=		5	
F2.4.2.	미결수용자의 서신수발 이용	최근 1개월간 미결수용자의 총 서신발송횟수÷시설내 미결수용자수=		5	
F2.4.3.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의 검열금지 원칙의 준수	a. 발신의 경우에는 직원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변호인과의 서신임을 확인한 후 봉하여 제출 ( ) b. 교부의 경우 직원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을 개봉하여 마약 등 금지품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수용자에게 교부 ( ) ( )에 해당		4	
F2.5.1.	서신검열제외제도의 활용	서신검열제외제도의 활용여부: 행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사유 적용 개수:		4	
F2.5.2.	시설 내 우편취급소의 유지	시설 내에 우편취급소를 유지 여부: a. 전담직원이 배정되어 있음 ( ) b. 홈페이지 상에 전자서신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전자서신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음 ( ) c. 24시간 이내에 수용자에게 교부됨 ( ) ( )에 해당		4	
F2.5.3.	전자서신제도의 이용			4	
F2.5.4.	서신검열도장의 날인 여부	서신검열도장의 날인 여부:		4	
F2.6.1.	서신의 발송불허처분	부당한 발송불허사태건수: 실문 F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F2.6.2.	서신의 교부불허처분	부당한 교부불허사태 건수:		3	
F2.6.3.	발송불허서신의 처리	발송불허사유를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모두 본인에게 돌려줌 ( ) 발송불허사유를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영치 ( ) 발송불허사유를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폐기 ( )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2.6.4.	교부불허서신의 처리	교부불허사유를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교부불허서신을 모두 영치하여 석방 시 가지고 갈 수 있게 함 ( ) 교부불허사유를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하고 교부불허서신을 일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영치하거나 폐기 ( ) 교부불허사유를 통지하지 않거나, 교부불허서신을 모두 폐기 ( )		4	

### F3. 집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3.1.1.	수형자의 집필 이용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 최근 3개월 간 수형자의 총 집필건수 ÷ 수형자 수 ÷ 3= [집필내용의 분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집필내용</th> <th>건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소송서류의 작성</td><td></td><td></td></tr> <tr><td>문학작품 등 창작활동</td><td></td><td></td></tr> <tr><td>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td><td></td><td></td></tr> <tr><td>정보공개청구</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r> </tbody> </table>	집필내용	건수(%)	비고	소송서류의 작성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			정보공개청구			기타			합계				4	
집필내용	건수(%)	비고																								
소송서류의 작성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																										
정보공개청구																										
기타																										
합계																										
F3.1.2.	미결수용자의 집필 이용	[미결수용자 1인당 월평균 집필건수] 최근 3개월 간 미결수용자의 총 집필건수 ÷ 미결수용자 수 ÷ 3= [집필내용의 분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집필내용</th> <th>건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소송서류의 작성(미결수용자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한 소송서류의 작성은 제외)</td><td></td><td></td></tr> </tbody> </table>	집필내용	건수(%)	비고	소송서류의 작성(미결수용자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한 소송서류의 작성은 제외)				4																
집필내용	건수(%)	비고																								
소송서류의 작성(미결수용자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한 소송서류의 작성은 제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청원서, 민원서류 등 작성 정보공개청구 기타 합계																																	
F3.1.3.	휴일과 휴게시간의 집필의 자유	설문 F7.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3.1.4.	작업장 안에서 집필의 자유	설문 F8.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3.1.5.	집필용구의 소지	<table border="1"> <thead> <tr> <th>종이 종류</th> <th colspan="4">노트( )권</th> </tr> </thead> <tbody> <tr> <td>블렌</td> <td>검정색( )자루</td> <td>파랑색( )자루</td> <td>빨강색( )자루</td> <td>빨강색( )자루</td> </tr> <tr> <td>수성펜</td> <td>검정색( )자루</td> <td>파랑색( )자루</td> <td>빨강색( )자루</td> <td>파랑색 혹은 초록색( )자루</td> </tr> <tr> <td>형광펜</td> <td>노랑색( )자루</td> <td>주황색 혹은 분홍색( )자루</td> <td>파랑색 혹은 초록색( )자루</td> <td></td> </tr> <tr> <td>연필과 샤프</td> <td>연필( )자루</td> <td>샤프</td> <td></td> <td></td> </tr> <tr> <td>지우개</td> <td>지우개 ( )개</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이 종류	노트( )권				블렌	검정색( )자루	파랑색( )자루	빨강색( )자루	빨강색( )자루	수성펜	검정색( )자루	파랑색( )자루	빨강색( )자루	파랑색 혹은 초록색( )자루	형광펜	노랑색( )자루	주황색 혹은 분홍색( )자루	파랑색 혹은 초록색( )자루		연필과 샤프	연필( )자루	샤프			지우개	지우개 ( )개					4	
종이 종류	노트( )권																																		
블렌	검정색( )자루	파랑색( )자루	빨강색( )자루	빨강색( )자루																															
수성펜	검정색( )자루	파랑색( )자루	빨강색( )자루	파랑색 혹은 초록색( )자루																															
형광펜	노랑색( )자루	주황색 혹은 분홍색( )자루	파랑색 혹은 초록색( )자루																																
연필과 샤프	연필( )자루	샤프																																	
지우개	지우개 ( )개																																		
F3.2.1.	집필 사전허가의 폐지 운영정도	a. 소송서류의 작성 시 ( ) b. 문학작품 등 창작활동 시 ( ) c. 청원서 작성 시 ( ) d.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서 작성 시 ( ) e. 고소장이나 고발장 작성 시 ( ) f. 기타 민원서류 작성 시 ( ) ( )에 해당		5																															
F3.2.2.	수용자의 집필물 소지권의 보장	설문 F2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F3.2.3.	수용자가 스스로 집필할 수 없는 경우 집필보장	설문 F2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설문 F23. ①의 응답비율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3.3.1.	집필불허처분	집필불허처분의 건수: 설문 F2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 F4. 전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4.1.1.	전화설비의 수	수용자 총수 ÷ 전화대수=		5																									
F4.1.2.	미결수용사동과 여성수용사동의 전화설치	미결사동 및 여성사동에 모두 전화가 1대 이상 별도로 설치 ( ) 미결사동과 여성사동 중 한곳에만 전화가 1대 이상 설치 ( ) 미결사동 및 여성사동 모두에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 a. 청취가 양호하며 잡음이 없음 ( ) b. 타인(입회교도관 1인 제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 가능 ( ) c. 수화기의 위생상태가 양호 ( ) ( )에 해당		4																									
F4.1.3.	전화실 의 구조와 전화기의 상태			4																									
F4.2.1.	전화사용권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도	설문 F2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4.3.1.	수형자의 전화사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누진계급별</th> <th>시설 내 수형자 수</th> <th>최근 한달간 총전화 이용횟수</th> <th>수형자 1인당 월평균 전화 이용횟수</th> </tr> </thead> <tbody> <tr> <td>제1급</td> <td></td> <td></td> <td></td> </tr> <tr> <td>제2급</td> <td></td> <td></td> <td></td> </tr> <tr> <td>제3급</td> <td></td> <td></td> <td></td> </tr> <tr> <td>제4급</td> <td></td> <td></td> <td></td> </tr> <tr> <td>전체</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누진계급별	시설 내 수형자 수	최근 한달간 총전화 이용횟수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전화 이용횟수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전체					4	
누진계급별	시설 내 수형자 수	최근 한달간 총전화 이용횟수	수형자 1인당 월평균 전화 이용횟수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전체																													
F4.3.2.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	최근 1개월간 미결수용자 전화이용 총횟수÷시설내 미결수용자수=		5																									
F4.4.1.	전화통화시간	전화통화의 허가시간:		5																									
F4.5.1.	긴급한 경우의 전화사용의	최근 1개월간 긴급한 용무로 인한 전화사용 건수 ÷ 동기간 전체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보장	진화사용건수 × 100=			
F4.5.2.	수신자부담의 진화사용	수신자부담 진화사용의 허가여부: 수신자부담 진화사용의 내부기준 마련여부:		4	
F4.6.1.	진화통화의 차단처분의 적절성	진화통화차단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 설문 F27.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4.6.2.	진화사용의 불허처분	진화사용불허처분 중 부당한 사례건수: 설문 F26.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4.6.3.	통화감시의 고지	상대방에게 통화감시의 고지유무: 상대방에게 통화여부에 관한 결정의 기회 제공유무:		4	

#### F5. 신문도서의 구독과 열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5.1.1.	관용도서의 활용정도	설문 F28.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5.1.2.	휴일과 휴게시간의 신문도서열람권의 보장정도	설문 F29.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5.2.1.	수용자 1인당 구독 가능한 신문의 종류	종류와 부수에 제한없이 허용 ( ) 일부 수용자에게는 2종류 이상의 범위에서 수량과 부수를 제한 ( ) 일부 수용자에게는 1종류만 허용 ( ) a. 신문열람실을 별도로 운영 ( ) b. 신문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용자를 제한하지 않음(예를 들어, 급수에 따른 제한 등) ( ) c. 신문열람실에는 최소한 10종이상의 일간신문이 1부이상 비치 ( ) d. 신문열람실의 이용시간이 1회당 1시간 이상 보장 ( ) ( )에 해당		3	
F5.2.2.	신문열람실의 설치와 운영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5.2.3.	수용자 1인당 거실 내 소지가능한 도서의 수	제한하지 않거나 제한기준이 51권 이상 ( ) 31권 이상 50권 이하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제한 ( ) 11권 이상 30권 이하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제한 ( ) 10권 이하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제한 ( ) a. 수용자 1인당 도서실의 장서 수가 20권 이상 ( ) b. 도서실의 진담직원이 배치 ( ) c. 도서의 분류와 대출 등 도서실의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음 ( ) d. 소장도서의 검색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 e. 수용자는 도서실을 방문하여 도서를 열람 및 대출 가능 ( ) ( )에 해당		4	
F5.2.4.	도서실의 운영	삭제된 기사내용이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에 불합치 건수: 기사 삭제시 복사 등으로 뒷면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여부: 열람불허처분 및 설문조사 F30.에서 나타난 열람불허도서의 내용이 열람불허사유에 합치하지 않는 건수:		5	
F5.3.1.	신문의 기사삭제처분			4	
F5.3.2.	도서열람불허처분			4	

## F6. TV 시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6.1.1.	TV모니터의 설치현황	TV가 설치된 거실의 수 ÷ 전체 거실 수(징벌실 제외) × 100=		5	
F6.1.2.	거실 TV의 관리실태	설문 F3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a. 생방송의 비율이 전체방송시간의 30% 이상 ( ) b. 뉴스를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30분 이상 방송하고 있음 ( ) c. 드라마, 교양 및 시사, 오락, 스포츠, 영화 각 장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정 장르에 방송이 편중되어 있지 않음 ( )		4	
F6.2.1.	TV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적 적합성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 뉴스를 제외하고, 녹화방송의 경우 일반사회방송에 비하여 발생하는 시간지체가 2일 이내임 ( ) ( )에 해당			
F6.2.2.	TV 방송시간	평일 ( )시간 공휴일( )시간		4	
F6.2.3.	TV 방송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설문 F3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6.3.1.	방송프로그램의 선택에 수용자 의사의 반영 정도	설문 F3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6.3.2.	수용자 반응도의 주기적 평가	a. 수용자교화방송지침 제8조에 의하여 수용자설문조사를 매분기 1회 이상 실시 ( ) b. 수용자설문조사서는 방송에 관한 수용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 c. 수용자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실시 ( ) d.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방송계획 수립에 반영 ( ) ( )에 해당		5	
F6.3.3.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a. 주간방송계획에 따른 방송프로그램편성표를 각 거실에 제공 ( ) b. 매일 방송을 시작할 때 당일의 방송일정을 자막이나 스피커를 통해 알려주고 있음 ( ) c.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전에 자막이나 스피커를 통해 알려주고 있음 ( ) ( )에 해당		4	
F6.3.4.	자체방송체부실천계획의 시행	자체방송체부실천계획의 수립여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방송과 일치하는지 여부:		4	

F7. 귀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7.1.1.	귀휴에 관한 수형자교육	<p>a.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귀휴에 관한 사항(귀휴의 의미, 자격요건, 사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음 ( )</p> <p>b. 귀휴의 일반적 자격요건(1년 이상 복역, 형기의 1/3경과, 누진계급 제3급 이상)을 취득한 수형자에게 귀휴의 허가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허가사유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음 ( )</p> <p>c. 귀휴허가자를 대상으로 귀휴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음 ( )</p> <p>( )에 해당</p>	4	4	
F7.1.2.	귀휴에 관한 수형자의 인지정도	<p>설문 F3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p> <p>전년도 1년간 귀휴인원 수 ÷ 전년도 12.31 현재 시설내 제3급 이상 수형자수 × 100=</p>	5	5	
F7.2.1.	귀휴의 실적	<p>귀휴의 일반적 자격요건을 갖춘 수형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귀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귀휴신청이 있으면 소장은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휴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p> <p>귀휴의 일반적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구금시설에서 귀휴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귀휴허가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귀휴신청을 하게 하거나 그 통지로 신청을 갈음하고 있음 ( )</p> <p>귀휴허가사유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으며, 수형자는 사실상 귀휴에 대한 신청의 기회가 없음 ( )</p>	4	4	
F7.2.2.	수형자의 귀휴 신청권의 보장				
F7.2.3.	귀휴기간의 적절성	1회 귀휴당 평균귀휴기간(일단위로 소수점첫째자리까지 계산):	5	5	
F7.3.1.	귀휴심사위원회의 구성	참여 외부위원의 수:	4	4	
F7.3.2.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의	a. 귀휴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 )	5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공정성	b. 귀후심사위원회 회의 중 외부위원이 참여한 회의가 전체의 50% 이상 ( ) c. 충분한 정도의 회의시간을 갖고 심사 ( ) d. 귀후허가심사조사서에는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충실하게 조사 ( ) e. 귀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 ( ) ( )에 해당			
F7.3.3.	귀후심사위원회에서 수행자의 의견표명 기회	설문 F3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4	
F7.4.1.	외부통근작업의 활용	a. 3개 이상의 외부업체와 외부통근작업의 계약을 체결 ( ) b. 1년간 외부통근작업에 참여한 수형자 인원수가 시설내 전체 수형자 인원수의 10% 이상 ( ) c. 외부통근자의 선정절차가 공정 ( ) d. 외부통근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음 ( ) ( )에 해당		5	
F7.4.2.	가족만남의 집의 활용	전년도 1년간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수 ÷ 전년도 12.31. 현재 시설내 제2급 이상 수형자 수 × 100=		4	

#### F8. 수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8.1.1.	개인정보의 수집과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a.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그의 동의를 받음 ( ) b. 수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그 정보의 수집목적과 용도를 알려줌 ( ) c. 수용자의 동의 없이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게 정보취득의 목적과 용도 및 취득한 정보의 내용을 즉시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알려줌 ( ) d.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정보취득의 목적, 용도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줌 ( ) e. 이용자 이외의 자의 개인정보를 사용자나 타인, 타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게 정보취득의 목적과 용도 및 취득한 정보의 내용을 즉시 알려줌 ( ) ( )에 해당			
F8.1.2.	개인정보의 관리와 공개금지	a.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다른 사용자가 진혀 관여하지 않음 ( ) b. 이용자의 질병 등 건강관련정보는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음 ( ) c. 이용자의 종교나 신념, 사상에 관한 정보는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음 ( ) d.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의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 공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줌 ( ) ( )에 해당		5	
F8.2.1.	이용자의 정보기록열람권의 보장	설문 F36. ①의 응답비율 :		5	

## G. 작업, 직업훈련, 교육

### G1. 작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G1.1.1.	작업미지정인원의 비율	수형자충인원: 취업불가능인원: 취업인원: 미지정인원: 비율=(미지정인원수÷수형자충인원-취업불가능인원)×100 =		5	
G1.2.1	작업에서의 본인적성반영 정도	설문 G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G1.2.2	작업의 출소후 도움정도	설문 G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G1.2.3	작업관련 교육의 충실도	설문 G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전년도 작업변경 요청건수 요청사유 조치내용		5	
G1.2.4	작업변경 허가정도	요청사유 조치내용		3	
G1.3.1.	작업 중 상해발생빈도	상해발생 정도 평균값(설문 G6.-G12.까지의 합÷7)		4	
G1.4.1.	1일 작업량에 대한 인식	설문 G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G1.5.1.	직영작업	월 평균 상여금 액수: 원		5	
G1.5.2.	관용작업	월 평균 상여금 액수: 원		5	
G1.5.3.	위탁작업	월 평균 상여금 액수: 원		5	
G1.5.4.	외부통근작업	월 평균 상여금 액수: 원		5	
G1.6.1.	취사, 청소, 간호 등 작업의 휴일제공 여부	취사, 청소, 간호 등의 작업인원: 작업방식: 1주일에 1일 휴업여부		5	

## G2. 직업훈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G2.1.1	시행중인 직업훈련 유형	직업훈련 종목 수:		5	
G2.1.2	직훈유형 결정에 본인의사 반영정도	설문 G1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G2.1.3	사회복귀후 도움정도	설문 G1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G2.2.1	교사확보율은?	전체 직업훈련교사의 수 ÷ 전체 직업훈련 종목의 수 × 100 =		5	
G2.2.2	행정담당직원확보여부	행정담당직원 유무		3	
G2.2.3	전문강사의 비율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수 ÷ 전체 직업훈련 교사의 수 × 100 =		5	

## G3. 교육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G3.1.1.	신입자교육의 공식성	a. 별도의 신입자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다. ( ) b. 신입수용자가 들어온 후 3일 이내에 실시한다. ( ) c. 교육시간은 평균 세시간 이상이다. ( ) d. 교육은 신입자교육 담당교도관이 수행한다. ( ) e. 비디오나 차트, 유인물 등 보조 자료를 사용한다. ( ) ( ) 해당		4	
G3.2.1.	정신교육의 효과	설문 G16.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a. 초중등 학교교육 ( ) b.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 ) c. 진문대학교육 ( ) d.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교육 ( ) e. 외국어 및 한자교육 ( )		5	
G3.3.1.	프로그램의 종류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f. 정보화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 ( ) 해당			
G3.3.2.	학과교육결정에 본인의사 반영도	실문 G17.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G3.3.3.	학과교육의 출소후 도움정도	실문 G18.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G3.3.4.	학과교육담당자진문인력	진문자격증소지자의 수 ÷ 전체 학과교육강사의 수 × 100=		5	
G3.4.1.	수용자대상 인권교육	a. 수용자 인권교육을 위한 공식적이고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 ) b. 인권단체 활동가나 인권관련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된다. ( ) c. 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해진다. ( ) ( ) 해당		5	

## H. 수용생활

### H1. 종교생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H1.1.1.	3대 종교의 정기의례의 보장	a. 3대 종교 모두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의례를 개최 ( ) b. 정기의례는 각 종교별로 필수적인 집회일에 개최(주일미사, 주일 예배 등) ( ) c. 정기의례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집진 ( ) d. 정기의례 시 해당 종교의 의례에 필요한 종교용품 이용 ( ) ( ) 해당		5	
H1.1.2.	3대종교 이외의 소수종교의 종교의례의 보장	a. 모든 소수종교에서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의례를 개최 ( ) b. 정기의례는 각 종교별로 필수적인 집회일에 개최 ( ) c. 종교의례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집진 ( ) d. 종교의례에 해당 종교의 성상 등 의례에 필요한 용품이 이용 ( ) ( ) 해당		5	
H1.1.3.	미결수용자의 종교의례 참석권 보장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종교의례의 현황: 미결수용자의 참석현황:		3	
H1.2.1.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 모임의 보장	a.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위한 모임이 3대 종교별로 각 1개 이상 ( ) b. 3대 종교를 제외한 소수종교의 종교활동을 위한 모임이 1개 이상 ( ) c. 각 종교활동 모임에는 적합한 장소 제공 ( ) d. 각 종교활동 모임을 위하여 성상, 성물 등 필요한 용품을 이용 가능 ( ) ( ) 해당		5	
H1.2.2.	종교적 모임의 활동	a. 종교적 활동 모임의 50% 이상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임 가능 (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p>b. 매 모임 시 활동시간은 1시간 이상 ( )</p> <p>c. 종교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수용자는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임 운영 가능 ( )</p> <p>d. 해당 종교의 전문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음 ( ) ( ) 해당</p>			
H1.2.3. 개인의 신앙생활의 보장		<p>a. 수용자는 거실에 성경이나 불경 등 자신의 종교 경전을 소지 가능 ( )</p> <p>b. 수용자는 목주나 염주, 묵탁 등 종교용 소품(성물)을 거실 내에 소지 가능 ( )</p> <p>c. 수용자는 개인용 종교용 성상(성모마리아상, 불상, 십자가예수상 등)을 거실에 소지 가능 ( )</p> <p>d. 수용자는 자신의 종교교리에 따른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 ) 해당</p>		5	
H1.2.4. 수용자와 성직자 간의 만남		<p>a. 수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성직자와 만날 수 있음 ( )</p> <p>b.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 건수가 시설내 유종교자의 20%이상 ( )</p> <p>c. 수용자와 성직자와의 만남은 거실이외의 독립된 장소에서 가능 ( )</p> <p>d. 대화의 비밀이 유지됨 ( ) ( ) 해당</p>		5	
H1.3.1. 종교위원의 위촉현황		<p>a. 종교위원 1인당 수용자수는 20명 미만 ( )</p> <p>b. 종교위원에는 3대 종교의 성직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됨 ( )</p> <p>c. 수용자의 종교적 분포에 따라 소수종교의 종교위원을 위촉하고 있음 ( )</p> <p>d. 일반신도를 제외한 종교위원수가 전체 종교위원의 50% 이상 ( ) ( ) 해당</p>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H1.3.2.	종교관의 설치와 운영	5개 종교관 설치 ( ) 4개 종교관 설치 ( ) 3개 종교관 설치 ( ) 2개 종교관 설치 ( ) 1개 종교관 설치, 또는 종교관 없음 ( ) 3대 종교의 성직자를 각 1명 이상 고용 ( ) 3대 종교 중 2개 종교의 성직자를 각 1명 이상 고용 ( ) 3대 종교 중 1개 종교의 성직자를 1명 이상 고용 ( ) 3대 종교 중 성직자를 한명도 고용하지 않음 ( )		5	
H1.3.3.	직원 중 성직자의 현황			4	

## H2. 취미활동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H2.1.1.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의 활성정도	a. 수용자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이 3종류 이상 ( ) b. 수용자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의 수가 10개 이상 ( ) c. 각 취미활동모임의 참여인원이 평균 10명 이상 ( ) d. 각 취미활동모임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됨 ( ) ( ) 해당		5	
H2.1.2.	취미활동 모임의 활동보장	a. 취미활동모임의 50% 이상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을 가질 수 있음 ( ) b. 매 모임 시 활동시간은 2시간 이상 가능 ( ) c.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수용자는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임을 운영 가능 ( ) d. 취미활동에 필요한 기본용품을 구급시설로부터 제공받음 (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H2.2.1.	수용자의 외부행사 참여 기회	( ) 해당 a. 수용자가 교정작품진사회에 출품한 예가 있음 ( ) b. 외부에서 개최하는 해당 분야의 공식 대회에 수용자가 작품을 제출한 예가 있음 ( ) c. 외부에서 개최하는 해당 분야의 공식 대회에 수용자가 직접 참가한 예가 있음 ( ) d. 외부에서 개최하는 해당 분야의 공식 행사에 수용자가 참여한 예가 있음 ( ) ( ) 해당		5	
H2.2.2.	수용자의 취미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의 노력	a.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하게 하고 있음 ( ) b. 수용자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 c. 시설 내에서 관련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 d. 외부 행사와 대회에서 수상한 자 내지 실적이 우수한 자에 시설 내에서 포상이 이루어짐 ( ) ( ) 해당		5	
H2.3.1.	수용자를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	a. 동시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 ( ) b. 문화공간 안에는 5종 이상의 오락 내지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 c. 문화공간은 모든 수용자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용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 ) d. 문화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이상 허용 ( ) ( ) 해당		5	

H3. 사용자-직원 관계와 사용자 상호관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H3.1.1.	교도관으로부터의 폭언, 욕설	설문 H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H3.1.2.	교도관으로부터의 신체적 폭행	설문 H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H3.2.1.	동료수용자로부터의 폭언, 욕설	설문 H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H3.2.2.	동료수용자로부터의 신체적 폭행	설문 H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H3.2.3.	동료수용자간의 성접촉과 성폭행	설문 H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H3.3.1.	신체검사 방법	a. 불투명한 칸막이가 있다. ( ) b.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 ( ) c. 가운을 입는다. ( ) ( ) 해당		4	
H3.3.2.	신체검사의 느낌	설문 H6.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5	
H3.4.1.	거실검사 방법	a. 검방 후에는 거실 안에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거나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 ) b. 거실검사 후에 기물이 파손된다. ( ) c. 해당 수용자는 회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해 회수 전에 고지 받지 않는다. ( ) ( ) 해당		3	

#### H4. 상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H4.1.1.	상담관련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얼마나 있는가?	<p>상근 정신과의사나 임상심리사 명 수: 직원 중 범죄심리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자 수: 교정위원 중 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 리스트: 교정위원이나 교정참여인사 등 기타 자원봉사활동 인원 중 전문자격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리스트: 수용자 현재인원: 교정위원의 수: 교회직공무원의 상담실적 교화위원의 상담실적 중형이상자의 자살 자해 여부 려에 대한 전문상담 여부</p>	5	5	
H4.1.2.	교정위원 수	수용자 현재인원: 교정위원의 수:		5	
H4.1.3.	교회직공무원의 상담실적	교회직에 의한 상담건수: 전체수용인원 × 100 =		5	
H4.1.4.	교화위원의 상담실적	교화위원에 의한 상담건수: 전체수용인원 × 100 =		5	
H4.1.5.	중형이상자의 자살 자해 려에 대한 전문상담 여부	중형이상자의 자살자해 판단의 근거:		5	

## I. 권리구제

### I 1. 소장면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I 1.1.1.1.	소장면담 제도에 대한 고지 및 교육 여부	a. 신입자 교육 시 교육을 통해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고지함 ( ) b. 모든 거실 내에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책자가 비치됨 ( ) c. 모든 거실 내에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벽에 부착됨 ( ) d. 일반 교육 시간에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 ) 해당		5	
I 1.1.2.	수용자의 인지 여부	설문 I 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1.2.1.	교도관의 제지 여부	설문 I 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1.2.2.	소장 면담 보장 정도	설문 I 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1.2.3.	소장 면담 절차 보장 여부	a.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인 면담시간에 면담함 ( ) b. 소장 면담부에 장신청사실 기재하고, 순서에 따라 면담함 ( ) c.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면담이 이루어짐 ( ) d. 소장 면담 결과를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함 ( ) e. 수용자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 면담함 ( ) f. 특정수용자에게 면담이 집중되지 않음 ( ) g. 연간 면담건수가 전체 수용자의 20% 이상 ( ) ( ) 해당		5	

### I 2. 청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I 2.1.1.	청원 제도에 대한 고지 및	a. 신입자 교육 시 교육을 통해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고지함 (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교육 여부	b. 모든 거실 내에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책자가 비치됨 ( ) c. 모든 거실 내에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벽에 부착됨 ( ) d. 일반 교육시간에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 ( ) 해당			
I 2.1.2.	수용자의 인지 여부	설문 I 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2.2.1.	교도관의 제지 여부	설문 I 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2.2.2.	청원절차의 보장 여부	a. 청원서 집필 신청시 집필 사유를 말할 필요 없음 ( ) b. 청원서 집필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집필허가를 함 ( ) c. 청원서를 봉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 d. 구급시절측이 수용자로부터 청원설르 받은 즉시 송부함 ( ) e. 법무부로부터 청원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수용자에게 교부함 ( ) f. 연간 청원건수가 전체 수용자 인원의 3% 이상임 ( ) ( ) 해당		5	
I 2.2.3.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이외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청원 가능 여부	설문 I 6.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4	

### I 3.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I 3.1.1.	진정 대한 고지 및 교육 여부	a. 신입자 교육 시 교육을 통해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고지함 ( ) b. 모든 거실 내에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책자가 비치됨 ( ) c. 모든 거실 내에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벽에 부착됨 ( ) d. 일반 교육시간에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 e. 각 사동 입구 등 수용자들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진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 게시하고 있음 (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 ) 해당			
I 3.1.2.	수용자의 인지 여부	설문 I 7.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3.2.1.	교도관 체지 여부	설문 I 8.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3.2.2.	서면 진정의 비밀성 보장 여부	설문 I 9.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3.2.3.	진정의 신속성 보장 여부	수용자로부터 진정서를 받은 때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 a. 진정함 인접한 곳에 용지, 필기도구 및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봉합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음 ( ) b. 진정함에 '진정함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표시되어 있음 ( ) c. 각 관구실 앞에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음 ( ) d. 각 사동 안쪽 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 ) e. 작업장, 교육장 등 기타 시설에 설치되어 있음 ( ) ( ) 해당		4	
I 3.2.4.	진정함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a. 서면진정신청서 또는 면진진정서 집필 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작성할 수 있음 ( ) b. 수용자가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한 후 교도관에게 제출함 ( ) c. 접수증명원은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교부함 ( ) d. 열람금지 서신을 개봉하지 않음 ( ) e. 취하를 강요하지 않음 ( ) f. 진정결과서는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함 ( ) ( ) 해당		5	
I 3.2.5.	진정 절차의 적절한 보장 여부			4	

I 4.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I 4.1.1.	고지 및 교육 여부	a. 신입자 교육 시 교육을 통해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고지함 ( ) b. 모든 거실 내에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책자가 비치되어 있음 ( ) c. 모든 거실 내에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벽에 부착됨 ( ) d. 일반 교육시간에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 ( ) 해당		5	
I 4.1.2.	수용자의 인지 여부	설문 I 10.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4.2.1.	교도관 체지 여부	설문 I 1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I 4.2.2.	징벌조사자 또는 피징벌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인정 여부	a. 일반 점견제한이나 내용검열 없이 점견과 서신교환이 허용됨 ( ) b. 일반기결수와 마찬가지로의 범위 내에서 점견이나 서신교환이 허용됨 ( ) c. 변호사와의 점견과 서신교환이 가능함을 수용자에게 고지함 ( ) ( ) 해당		5	
I 4.2.3.	법률상담 프로그램 존재 여부	a. 법률전문가가 상주하여 있는지 ( ) b. 법률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다면, 1주일에 몇 회 방문하는지 ( ) ( ) 해당		5	
I 4.2.4.	법률상담 기회 보장 여부	a. 법률상담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함 ( ) b. 법률상담 날짜와 법률상담 장소 등에 관하여 고지함 ( ) c.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법률전문가와 대면 상담할 수 있음 ( ) d. 서면으로 법률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음 ( ) e. 법률상담 시간이 충분함 ( ) ( ) 해당		5	
I 4.2.5.	법률서적 구비 여부	a. 법령집과 법률관련 서적을 각 사동마다 구비하고 있음 ( ) b. 법령집과 법률관련 서적을 도서실에 구비하고 있음 ( ) c.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수용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법률관련 서적을 구비하고 있음 ( ) d. 법령집과 법률관련 서적은 모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 ( ) 해당			

## J. 교정직원

### J1. 교정인력과 업무수행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J1.1.1.	교도관 정원 대비 현재인원	교도관 현재인원 ÷ 교도관 정원 × 100 =		4	
J1.1.2.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	전체수용인원 ÷ 전체 교도관 수 =		5	
J1.1.3.	사동근무자 1인당 수용자수	1인당 사동 근무자 수:		5	
J1.1.4.	교무과 직원 1인당 수용자수	1인당 수용자 수:		5	
J1.1.5.	보안근무자의 비율	보안근무자의 수 ÷ 전체교도관 수 × 100:		5	
J1.2.1.	업무분장의 공식성	설문 J2.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J1.2.2.	업무순환과 배치의 공정성	설문 J3.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J1.2.3.	의사소통 원활성	설문 J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J1.2.4.	업무관련 갈등	설문 J6.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J1.2.5.	직원인권교육	직원인권교육 개최일정: 교육내용: 회당 평균 대상인원: 강사:		4	

### J2. 근무여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J2.1.1.	사무직원의 주당 노동시간	주당 평균노동시간:		5	
J2.1.2.	교대제근무자의 주당 노동시간	주당 평균노동시간:		5	

### J3. 후생복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J3.1.1.	사기진작에 대한 인식	설문 J4.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J3.2.1.	직원들의 출퇴근 편리성	직원들의 출퇴근 수단: 대중교통 접근성:		5	
J3.3.1.	휴가, 보건의료, 연가등 사용에 대한 인식	설문 J5.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J3.4.1.	직원식당의 청결과 맛	설문 J9.의 1)과 2)의 평균값:		4	
J3.4.2.	숙소만족도	설문 J9.의 3), 4), 5)의 평균값:		4	
J3.4.3.	휴게실	설문 J9.의 6), 7), 8)의 평균값:		4	

### J4. 수용자와의 관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J4.1.1.	수용자의 욕설과 무시	설문 J10.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J4.2.1.	수용자의 폭행	설문 J11.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5	

### J5. 여성 직원과 양성평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J5.1.1.	여성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	여성수용자 수:여성교도관 수=		5												
J5.1.2.	얼마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가?	여성교도관의 소속별 인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서부</td> <td>보안</td> <td>분류심사</td> <td>작업</td> <td>율도</td> <td>교무</td> <td>의무</td> <td>출장</td> <td>명적</td> <td>접견영치</td> <td>여사근무</td> </tr> </table>	서부	보안	분류심사	작업	율도	교무	의무	출장	명적	접견영치	여사근무		5	
서부	보안	분류심사	작업	율도	교무	의무	출장	명적	접견영치	여사근무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J5.2.1.	편의시설 구비정도	a. 여성진용 휴게실 ( ) b. 별도의 탈의실 ( ) c. 별도의 화장실 ( ) ( ) 해당 설문 J7 여성교도관의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설문 J8 여성교도관의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 직무교육(범무연수원 교육 등 선발된 소수직원이 참여하는 교육)에 참 여한 남자교도관수÷총남자교도관 수 × 100= 직무교육(범무연수원 교육 등 선발된 소수직원이 참여하는 교육)에 참 여한 여자교도관수÷총여자교도관 수 × 100= 두 비율의 비교:										4		
J5.3.1.	근무평정과 업무분장의 공정성											5		
J5.4.1.	모성보호책 활용에 대한 인식											5		
J5.5.1.	여성직원을 위한 직무기회가 남성직원과 유사한가?											4		

## K. 소수수용자

### K1. 여성수용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K1.1.1. 작업유형		여성수용자를 위한 작업의 유형 :		5	
K1.1.2. 미지정인원		여자미지정인원의 비율: 여성수용자총인원 취업불가능한인원(환자, 고령자, 임산부, 징벌집행 중) 여성취업인원 취업가능인원 미지정인원 합계		5	
K1.1.3. 직업훈련 유형		여성수용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종류:		5	
K1.1.4. 학과교육 유형		a. 초, 중, 고등 학과교육 ( ) b.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 ) c. 전문대학교육 ( ) d.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교육 ( ) e. 외국어 및 한자교육 ( ) f. 정보화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 ( ) 해당 구입 가능한 화장품 품목 및 제조회사 명:		4	
K1.2.1. 화장품구매가능				4	
K1.2.2. 숙웃 구매편의성		구매가능여부 구매가능여부 구매가능한 사이즈종류 브래지어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런닝 팬티         </div>			
K1.2.3.	관급생리대 지급여부	지급 여부 ( ) a. 생리대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이다 ( ) b. 한 달에 한번 이상 지급된다 ( ) c. 생리대의 품질이 구매품과 유사하다 ( ) ( ) 해당		3	
K1.2.4.	관급생리대의 품질과 양	구매가능 생리대 종류와 사이즈: 교회직에 의한 여성수용자 교회상담 건수 ÷ 여성수용자 전체인원 × 100= 교회직에 의한 남성수용자 교회상담건수 ÷ 남성수용자 전체인원 × 100= 두 비율의 비교:		5	
K1.3.1.	교회직공무원은 여성수용자를 얼마나 상담하나?	a. 부인과 질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정기검진 체도가 있다 ( ) b. 부인과 질환의 검진을 위해 외부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 ) c. 외부진료 신청후 대개 일주일내로 외부명원에 갈 수 있다 ( ) ( ) 해당		5	
K1.4.1.	부인과 관련진료	설문 D1.의 남자수용자의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설문 D1.의 여자수용자의 ①과 ②의 응답비율의 합: 두 비율 비교:		4	
K1.4.2.	여성수용자 의무과 연출 이용 이성	여성수용자의 부부만남의 집 이용건수 ÷ 여성수용자총인원 × 100= 남성수용자의 부부만남의 집 이용건수 ÷ 남성수용자총인원 × 100= 두 비율 비교:		4	
K1.5.1.	가족만남의 집 이용실태	여성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이용건수 ÷ 여성수용자총인원 × 100= 남성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이용건수 ÷ 남성수용자총인원 × 100= 두 비율 비교:		5	
K1.5.2.	장소변경 접견 이용실태	여성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이용건수 ÷ 여성수용자총인원 × 100= 남성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이용건수 ÷ 남성수용자총인원 × 100= 두 비율 비교: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K1.6.1.	임산부 수용자를 위한 특별 처우의 내용	a. 배방 ( ) b. 식사 ( ) c. 운동 ( ) d. 목욕 ( ) e. 전화와 접견 ( ) f. 정기검진 ( ) g. 자유롭게 누울 수 있다 ( ) h. 기타 임신과 관련된 진료 ( ) ( ) 해당 단독의 대동유아실 ( ) 대동유아를 위한 자격을 갖춘 직원 확보 여부 ( ) ( ) 해당		5	
K1.6.2.	대동유아실 확보여부	a. 분유는 기본적으로 관급 제공 ( ) b. 기저귀는 기본적으로 관급 제공 ( ) c. 젓병소독은 상시가능 ( ) d. 목욕 하루 2회 이상 가능 ( ) e. 세탁 하루 2회 이상 가능 ( ) f. 예방접종 등을 위한 외부 소아과 진료 가능 ( ) g. 야간 응급 시 외부진료 즉시 가능 ( ) h. 유아용 장난감 관급 제공 ( ) ( ) 해당		4	
K1.6.3.	유아용품 제공여부	폐쇄회로 설치 있다: ( ) 없다: ( ) 관리방법 보안과 사무실에서서 ( ) 여사동에서서 ( )		5	
K1.7.1.	폐쇄회로 설치여부와 모니터링 방법			3	

## K2. 소년수용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K2.1.1.	성인/소년 사동의 구분형태	별도시설( ) 별도구역( ) 별도사동( ) 별도거실( )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K2.1.2.	소년수용에 대한 특별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입소한 날부터 3일간 신입자 교육 실시 ( )</li> <li>b. 입소 후 3일 이내에 가정통신문 발송 ( )</li> <li>c.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때 소년 등의 명예보호를 위한 조치 ( )</li> <li>d. 매주 3회 이상 의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유무 확인 ( )</li> </ul>		4	
K2.2.1.	소년수용자의 점견과 서신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소년수용자에 대한 점견횟수 확대 ( )</li> <li>b. 소년수용자에 대한 장소변경 점견 실시 ( )</li> <li>c. 보호자 등에게 월 1회 이상 서신을 보내도록 권장 ( )</li> <li>d. 우표를 자비부담할 수 없는 소년수용자에 대한 우표 관급 ( )</li> </ul>		4	
K2.3.1.	소년수용자의 운동과 건강에 대한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성인과 구별된 운동시간과 장소 제공 ( )</li> <li>b. 세 가지 이상의 운동기구 제공 ( )</li> <li>c. 3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li> <li>d. 독거 중인 소년수용자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정기검진 실시 ( )</li> </ul>		4	
K2.4.1.	소년수용자에 대한 자치제 실시와 호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모든 소년수용자에 대한 자치제 실시 ( )</li> <li>b. 소년수용자를 부를 때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 ( )</li> <li>c. 미결소년수용자를 부를 때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 ( )</li> </ul>		4	
K2.4.2.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감독자 등이 적어도 주 1회 이상 면담 실시 ( )</li> <li>b. 가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실시 ( )</li> <li>c.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다 ( )</li> <li>d. 소년수용자들에 대해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지도 ( )</li> </ul>		5	
K2.4.3.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예·체능에 소질 있는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기지도 실시 ( )</li> <li>b. 소년수용자별로 교육과정에 맞춘 학과교육의 기회 부여 ( )</li> </ul>		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c. 학과교육에 필요한 필기구 등 학용품 지급 ( ) ( ) 해당			
K2.4.4.	소년수용자에 대한 성년식 및 생일 축하행사	a. 성년이 된 소년수용자에 대한 성년식 개최 ( ) b. 매월 합동생일 축하회 개최 ( ) c. 분기별로 합동생일 축하회 개최 ( ) d. 합동생일 축하회에 생일을 맞은 소년들의 가족 초청 ( ) ( ) 해당		5	

### K3. 외국인수용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K3.1.1.	외국어로 고지하는지 여부	a. 외국어로 번역 여부 ( ) b. 번역된 외국어 수:			
K3.1.2.	외국어 사용가능한 교회직공 무원 존재 여부	a.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회전담 직원 존재 여부 ( ) b. 교회 전담 직원이 외국인 수용자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지 여부(정 기적으로 할 경우, 1주일에 몇 회하는지) ( ) c. 최근 1년간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통역 및 번역 위촉 건수가 존재 하는지 여부(존재한다면 건수는) ( ) ( ) 해당			
K3.2.1.	분리수용여부	혼거수용하는 경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을 상호 분리하여 수용하는지 여부			
K3.3.1.	거실형태 여부	침대문화의 나라로부터 온 외국인 수용자 거실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 는지 여부 ( )			
K3.3.2.	TV 시청 가능 여부	a. TV 설치 ( ) b. 외국어 방송 가능 ( ) ( ) 해당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K3.4.1.	식생활 습관 반영하는지 여부	a. 외국인 입소 시 면담을 통해 식생활 관습 파악함 ( ) b. 외국인의 식생활관습을 반영함 ( ) ( ) 해당			
K3.5.1.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를 보호하는지 여부	a. 외국인수용자가 요청하는 특정 종교의 성직자와의 접촉을 주선함 ( ) b. 거실 내에서의 예배 등 종교적 의식(의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c. 염주 등 종교적 용도에 사용할 성구나 종교서적의 소지 등을 허용함 ( ) d. 외국인수용자의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허용하며, 내국인수용자와 이점이 있어서 차별이 전혀 없음 ( ) ( ) 해당			

#### K4. 장애수용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K4.1.1.	장애거실의 수용정원	장애거실의 수용정원(최대 수용 가능인원): 수용정원: 장애거실의 수용정원 ÷ 수용정원 =		5	
K4.1.2.	장애거실의 수용밀도	장애거실면적(m <sup>2</sup> ): 장애거실의 현재 수용인원(비장애수용자 포함): 장애거실면적÷장애거실의 현재 수용인원 =		5	
K4.2.1.	장애수용자의 이동 및 활동	a. 휠체어사용이 가능한 특별거실 (기결: , 미결: , 여사: ) b. 장애거실 내벽에 안정용 손잡이 설치 ( ) c. 장애거실 화장실 좌변기 설치/미설치, 안전용 손잡이 설치/미설치 d. 장애거실에 내부 난방(온돌) 가능 (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e. 모든 장애거실에 세면대 설치 됨 ( ) ( ) 해당			
K4.2.2.	시각장애, 청각장애 사용자에 대한 배려	a.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로 된 수용생활안내서 비치 ( ) b. 시각장애를 위하여 거실 내벽에 안전용 손잡이 설치 ( ) c. 주요 이동통로에 시각장애자용 특수설비 갖춤 ( ) d.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가능 직원( ), 수화가능 수용자( ) e. 시각(청각)장애자를 위한 도우미(간병부): 있음, 없음 ( ) 해당		5	
K4.3.1.	장애수용자의 운동	a. 1회 운동시간: b. 1회 운동시간이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더 많음 ( ) c. 장애수용자를 위한 재활치료시설 ( ) ( ) 해당		5	
K4.3.2.	장애수용자의 목욕	a.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목욕횟수가 많음 ( ) b. 일반수용자에 비하여 목욕시간이 길다 ( ) c. 하계에도 온수목욕 가능 ( ) d. 신체(시간, 청각)장애 수용자에게는 목욕도우미 있음 ( ) e. 목욕탕에 장애수용자용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 ) f. 샤워꼭지가 목욕탕 내벽 낮은 데도 설치되어 있음 ( ) ( ) 해당		5	
K4.3.3.	장애수용자의 작업	일반수용자의 출역비율: % 장애수용자의 출역비율: % 일반수용자와 장애수용자의 출역비율의 편차: %		4	
K4.4.1.	장애수용자의 외부교통 (점권, 서신, 전화 등)	a. 점권장소로 이동통로: 휠체어, 목발 사용 불편함 없음 ( ) b. 언어장애나 청각장애 수용자에게는 더 많은 점권시간 허용 ( ) c. 시각장애 수용자에게는 급수에 상관없이 전화사용 허용 ( ) ( ) 해당		5	
K4.5.1.	정신지체 장애수용자의 처우	a. 입소 시에 정신건강진단 실시 ( ) b. 정신지체 장애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실시 ( )		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점	만점	비고
		c. 주1회 이상 정신과 전문의의 시설행문 진료 및 상담 ( ) d. 정신과 전문 의료시설로의 신속한 이송 ( ) e. 석방 후 사회복지단체 또는 갱생보호단체와 연계치료 주선 ( ) ( ) 해당			